202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Ⅰ. 2023회계연도 결산 개관 ····· 1

1.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총평 ····· 27

Ⅱ. 재정총괄 검토 ····· 99

1. 재정건전성 ····· 101
2. 재정수입 결산 ····· 118
3. 기금 결산 ····· 165
4. 재무결산 ····· 212
5. 예비비 결산 ····· 230
6. 공공기관 결산 ····· 248
7.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 349
8. 성과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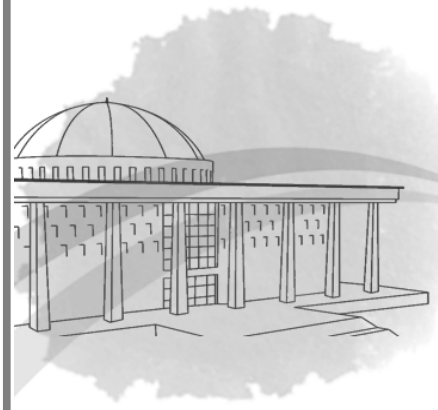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Ⅲ. 유형별 결산 검토 ····· 393

1. 국가 R&D 사업 ····· 395
2. 국고보조사업 ····· 439
3.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 487
4. 정보화사업 ····· 513
5. 수시배정사업 ····· 569
6. 정책금융 사업 ····· 591
7. 기관운영 및 사업출연금 사업 ····· 700

Ⅳ. 주제별 결산 검토 ····· 727

1. 지방소멸 대응 사업 ····· 729
2. 일자리 사업 ····· 752
3. 건강보험 재정 사업 ····· 830
4. 교육분야 재정 사업 ····· 869
5. 글로벌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사업 ····· 894
6. 생활물가 안정사업 ····· 929

Ⅰ. 2023회계연도 결산 개관



1.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가. 결산 개요

(1) 총수입 및 총지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573.9조원으로 예산 625.7조원에 51.8조원(△8.3%) 미달하였고 전년 대비 43.9조원(△7.1%)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것임.

총지출은 610.7조원으로 예산 638.7조원에 28.0조원(△4.4%) 미달하였고 전년 대비 71.7조원(△10.6%)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2022년도에 코로나19에 따른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사실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단위 : 조원)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Ⅰ. 총수입[1]	617.8	625.7	573.9	△51.8	△43.9
1. 국 세	395.9	400.5	344.1	△56.4	△51.9
2. 세외수입	30.8	25.0	28.5	3.5	△2.3
3. 기 금	190.8	200.3	201.1	0.8	10.3
※ 세입예산외[2]	0.3	-	0.3	0.3	△0.0
Ⅱ. 총지출[1]	682.4	638.7	610.7	△28.0	△71.7
1. 일반회계	379.9	369.4	343.5	△25.9	△36.4
2. 특별회계	59.7	71.6	69.6	△2.0	10.0
3. 기 금	231.2	197.7	196.5	△1.1	△34.6
※ 세출예산외[3]	11.6	-	1.0	1.0	△10.6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제외됨
2)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3)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 심지헌 예산결산총괄팀장 sjh0125@assembly.go.kr (02-6788-5684)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 400.5조원에 56.4조원(△14.1%) 미달하였고 전년도 실적 395.9조원 대비 51.9조원(△13.1%) 감소하였음.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33.9조원으로 예산 390.3조원 대비 56.3조원(△14.4%),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1조원으로 예산보다 0.1조원(△1.0%) 각각 미달하였음.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15.8조원으로 예산 대비 16.0조원(△12.2%) 적게 수납(전년 대비 △12.9조원, △10.0%)되었고, 법인세는 80.4조원으로 예산 대비 24.6조원(△23.4%) 미달하였으며(전년 대비 △23.2조원, △22.4%), 부가가치세는 73.8조원으로 예산 대비 9.4조원(△11.3%) 수납액이 감소(전년 대비 △7.9조원, △9.7%)하였음.

이와 같은 대규모 국세수입 감소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하여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실적 저조,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실적 감소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세수입 합계	395.9	400.5	344.1	△56.4	△51.9
○ 일반회계	385.2	390.3	333.9	△56.3	△51.2
- 내국세	352.3	358.0	306.1	△51.9	△46.2
· 소득세	128.7	131.9	115.8	△16.0	△12.9
· 법인세	103.6	105.0	80.4	△24.6	△23.2
· 상속증여세	14.6	17.1	14.6	△2.5	0.0
· 부가가치세	81.6	83.2	73.8	△9.4	△7.9
· 개별소비세	9.3	10.2	8.8	△1.4	△0.5
· 증권거래세	6.3	5.0	6.1	1.1	△0.2
· 인지세	0.8	0.8	0.8	△0.0	△0.0
· 과년도수입	7.3	4.8	5.7	0.9	△1.6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3	△0.3
- 관세	10.3	10.7	7.3	△3.4	△3.0
- 교육세	4.6	4.7	5.2	0.4	0.5
- 종합부동산세	6.8	5.7	4.6	△1.1	△2.2
- 방위세	0.0	0.0	0.0	0.0	0.0
○ 특별회계	10.8	10.2	10.1	△0.1	△0.6
- 주세	3.8	3.2	3.6	0.4	△0.2
- 농특세	7.0	7.0	6.6	△0.4	△0.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및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세외수입 실적은 28.5조원으로 예산 25.0조원 대비 3.5조원(14.0%) 초과 수납(전년 대비 △2.3조원, △7.5%)되었으며, 이는 주로 경상이전수입이 예산 대비 2.3조원 더 징수되고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도 예산 대비 1.1조원 초과 수납된 것에 기인함.

기금수입 실적은 201.1조원으로 당초계획액 200.3조원 대비 0.8조원(0.4%) 더 수납(전년 대비 10.3조원, +5.4%)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5.2조원, 사회보장기여금이 당초 계획 대비 2.8조원 초과 수납된 것에 주로 기인함.

[2023회계연도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실적(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세외수입	30.8	25.0	28.5	3.5	△2.3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5	6.9	8.0	1.1	1.5
- 재산수입	7.8	2.9	3.4	0.5	△4.4
- 경상이전수입	12.4	10.0	12.3	2.3	△0.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3	2.9	2.6	△0.3	0.3
- 수입대체경비수입	0.2	0.2	0.3	0.1	0.1
- 관유물매각대	0.7	1.2	1.1	△0.1	0.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0.8	0.9	0.8	△0.1	0
■ 기금수입	190.8	200.3	201.1	0.8	10.3
- 사회보장기여금	83.4	86.1	88.9	2.8	5.5
- 재산수입	39.5	33.7	38.9	5.2	△0.5
- 경상이전수입	32.2	36.4	35.7	△0.7	3.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0	9.4	9.7	0.3	0.7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0.0	0.0
- 관유물매각대	2.3	2.7	2.6	△0.1	0.3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4.3	32.0	25.3	△6.7	1.0
□ 합 계	221.5	225.2	229.6	4.3	8.1

주) 2023년 기금수입의 예산은 당초계획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12대 분야별 결산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가 101.9%로 가장 높고, 이어 보건・복지・고용분야(99.7%), R&D분야(99.4%), 공공질서・안전분야(98.7%), 농림·수산·식품분야(98.4%), 국방분야(97.9%) 순이었으며, 외교·통일분야가 78.1%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전년 대비 증감률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가 △64.0%,[1] SOC분야 △12.3%, 교육분야 △9.9%, 문화・체육・관광분야 △6.7%, 일반・지방행정분야 △4.3%, 보건・복지・고용분야 △1.1%로 전년보다 집행규모가 감소한 반면, 외교・통일분야와 국방분야, R&D분야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1.1%, 6.9%, 5.5%를 기록하였음.

[2023회계연도 12대 분야별 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예산 (B)	결 산 (C)	집행률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보건·복지·고용	227.8	226.0	225.3	99.7	△2.5	△1.1
○ 교육	95.0	96.3	85.6	88.9	△9.4	△9.9
○ 문화·체육·관광	9.0	8.6	8.4	97.7	△0.6	△6.7
○ 환경	11.0	12.2	11.3	92.6	0.3	2.7
○ R&D	29.3	31.1	30.9	99.4	1.6	5.5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3.7	26.0	26.5	101.9	△47.2	△64.0
○ SOC	26.8	25.0	23.5	94.0	△3.3	△12.3
○ 농림·수산·식품	23.2	24.4	24.0	98.4	0.8	3.4
○ 국방	52.2	57.0	55.8	97.9	3.6	6.9
○ 외교·통일	4.5	6.4	5.0	78.1	0.5	11.1
○ 공공질서·안전	22.4	23.0	22.7	98.7	0.3	1.3
○ 일반·지방행정	108.1	112.2	103.5	92.2	△4.6	△4.3

주 1) 세입세출예산외가 제외된 수치임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이 26.8조원임에 따라 결산액이 본예산을 초과함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23회계연도 총지출의 성질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외지출을 제외하고 상환지출(22.8%), 예비비 및 기타(9.1%), 인건비(3.8%) 항목이 전년 대비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전출금등(△100.0%), 물건비(△7.4%), 이전지출(△12.1%), 자산취득(△6.6%)은 전년 대비 집행액이 감소하였음.

1) 2022년에는 2회의 추경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대하였으므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재원 규모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성질별 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예산 (B)	결산 (C)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총지출	682.4	638.7	610.7	95.6	△71.7	△10.5
○ 인건비	44.2	46.9	45.9	97.9	1.7	3.8
○ 물건비	33.7	30.7	31.2	101.6	△2.5	△7.4
○ 이전지출	486.6	448.3	427.6	95.4	△59.0	△12.1
○ 자산취득	85.8	84.7	80.1	94.6	△5.7	△6.6
○ 상환지출	19.3	23.0	23.7	103.0	4.4	22.8
○ 전출금등	0.05	0.0	0.00	0.0	△0.05	△100.0
○ 예비비 및 기타	1.1	5.2	1.2	23.1	0.1	9.1
○ 예산외지출	11.6	-	1.0	-	△10.6	△91.4

자료: 기획재정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3년도 의무지출 결산은 325.1조원으로 예산 340.3조원 대비 95.5%가 집행되었고, 전년보다 7.6조원(△2.3%) 감소하였음.

또한 재량지출 결산은 284.6조원으로 예산 298.4조원 대비 95.4%가 집행되었으며, 전년보다 집행액이 53.5조원(△15.8%)이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전년 대비	
	본예산	추경	결산 (A)	예산 (B)	결산 (C)	(C/B)	증감액 (D=C-A)	비율 (D/A)
□ 총지출	607.7	679.5	682.4	638.7	610.7	95.6	△71.7	△10.5
○ 의무지출	303.2	329.7	332.6	340.3	325.1	95.5	△7.6	△2.3
(비 중)	(49.9)	(48.5)	(48.7)	(53.3)	(53.2)	99.8		
○ 재량지출	304.5	349.8	349.7	298.4	284.6	95.4	△53.5	△15.8
(비 중)	(50.1)	(51.5)	(51.2)	(46.7)	(46.6)	99.8		

주) 결산치 세출외 항목으로 의무·재량 총합과 총지출 간 차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GDP 대비 △1.6%)로, 적자규모는 예산 대비 23.7조원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27.8조원 감소하였음.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0.3조원 흑자(GDP 대비 2.2%)를 기록하였으며, 흑자규모는 예산 대비 5.1조원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2.2조원 감소하였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7.0조원 적자(GDP 대비 △3.9%)로서, 적자규모는 예산 대비 28.8조원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30.0조원 감소하였음.[2)]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되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추경이 없었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하여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2023년도 예산상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였으며, 매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64.6 (△3.0)	△13.1 (△0.6)	△36.8 (△1.6)	△23.7 (△1.1)	27.8 (1.3)
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GDP 대비)	52.5 (2.4)	45.1 (2.0)	50.3 (2.2)	5.1 (0.2)	△2.2 (△0.2)
Ⅲ.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17.0 (△5.4)	△58.2 (△2.6)	△87.0 (△3.9)	△28.8 (△1.3)	30.0 (1.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용보험기금은 1.4조원 흑자로 전년도 1.4조원 적자에 비해 2.8조원 개선되었고, 국민연금기금은 48.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4.3조원 악화되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0.6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1.2조원 악화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1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0.5조원 개선되었음.

2) 기획재정부는 2024.6.5.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2015→2020년)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2023년 △3.9%에서 △3.6%로 변동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기준연도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합 계	52.5	45.1	50.3	5.2	△2.2
○ 고용보험기금	△1.4	0.8	1.4	0.6	2.8
○ 국민연금기금	52.7	44.1	48.4	4.3	△4.3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6	0.2	△0.6	△0.8	△1.2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0.6	0.0	1.1	1.1	0.5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26.7조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하였음.[3] 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7.6조원 감소하고 전년 대비로는 59.0조원 증가한 것임.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1,092.5조원으로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9.2조원 감소하고 전년 대비 59.1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 중에서 국고채권이 전년 대비 60.5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적으로 34.2조원으로 전망되어 예산 대비 1.6조원, 전년보다 0.3조원 증가할 전망임.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잠정)	1,067.4	1,134.4	1,126.7	△7.6	59.0
(GDP 대비, %)	(49.4)	(50.4)	(50.4)	(△0.1)	(1.0)
○ 중앙정부 채무(A)	1,033.4	1,101.7	1,092.5	△9.2	59.1
■ 국 채	1,031.5	1,100.3	1,091.1	△9.2	59.6
- 국고채권	937.5	999.0	998.0	△1.0	60.5
- 국민주택채권	82.2	86.8	81.6	△5.2	△0.5
- 외평채권(외화)	11.8	14.5	11.5	△3.1	△0.3
■ 차입금	1.9	1.2	1.2	-	△0.7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2	-	0.1
○ 지방정부 순채무(B)	33.9	32.6	34.2	1.6	0.3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기획재정부는 2024.6.5.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2015→2020년)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0.4%에서 46.9%로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증가요인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가 726.4조원이며 금융성 채무가 400.3조원을 차지하고 있음.[4] 적자성 채무는 예산 대비 5.1조원 많았고, 전년 대비로는 47.4조원 증가하였으며, 적자성 채무 중에서도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무가 660.1조원으로 전년 대비 54.3조원 증가하였음.

금융성 채무는 예산 대비 12.7조원 적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9.0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14.7조원 감소하였음에도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한 채무가 23.8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067.4	1,134.4	1,126.7	△7.6	59.4
○ 적자성 채무(A)	676.0	721.3	726.4	5.1	47.4
(구성비)	(63.3)	(63.6)	(64.5)	(0.9)	(1.2)
- 일반회계적자보전	605.8	656.6	660.1	3.5	54.3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70.1	64.7	66.3	1.6	△3.8
○ 금융성 채무(B)	391.3	413.0	400.3	△12.7	9.0
(구성비)	(36.7)	(36.4)	(35.5)	(△0.9)	(△1.2)
- 외환시장 안정	265.7	278.7	251.0	△27.7	△14.7
- 서민주거 안정 등	125.6	134.4	149.4	15.0	23.8

주) 지방정부순채무(2023년 잠정치 34.2조원)는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국채전환 등'에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4) 국가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됨.

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총세입 497.0조원 - 총세출 490.4조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이 발생하였음.[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결산 (A)	총세출 결산 (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497.0	490.4	6.5	3.9	2.7
일반회계	407.9	405.9	2.0	2.0	0.04
특별회계	89.0	84.5	4.5	1.9	2.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총세입 497.0조원은 전년 대비 76.9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37.0조원 적은 규모임. 이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407.9조원으로 전년보다 86.0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38.3조원 미달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입은 89.0조원으로 전년 대비 8.9조원 증가하고 예산보다 1.3조원 초과하였음.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	573.9	534.0	497.0	△37.0	△76.9
일반회계	493.9	446.2	407.9	△38.3	△86.0
특별회계	80.1	87.7	89.0	1.3	8.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총세입·총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계로 산출되어 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총수입·총지출과는 차이가 있음.

세입예산의 성질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51.9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56.4조원 미달하였음.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1조원 감소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및 전년도 이월금과 세계잉여금 이입 등에 따라 예산 대비 19.4조원 초과하였음.

[2023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2022 결산	2023		2022 결산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합 계	395.9	400.5	344.1	178.0	133.5	152.9
일반회계	385.2	390.3	333.9	108.7	56.0	74.0
특별회계	10.8	10.2	10.2	69.3	77.5	78.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총세출 490.4조원은 전년 대비 69.3조원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보다 49.5조원 적었음. 이 중 일반회계 총세출은 405.9조원으로 전년 대비 79.2조원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43.2조원 적었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은 84.5조원으로 전년 대비 9.8조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보다 6.4조원 적었음.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결산 (C)	예산현액 대비 (C-B)	
합 계	559.7	533.9	540.0	490.4	△49.5	△69.3
일반회계	485.0	446.2	449.1	405.9	△43.2	△79.2
특별회계	74.7	87.7	90.9	84.5	△6.4	9.8

주) 예산현액(B)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및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07조 9,28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482조 8,031억원의 84.5%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85조 9,390억원이 감소하고 예산 대비로는 38조 3,139억원 적게 수납된 것임.

이 중 국세수입 수납액은 333조 9,39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400조 1,945억원의 83.4%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51조 2,200억원이 감소하고 예산 대비로는 56조 3,143억원 덜 수납된 것임.

세외수입 수납액은 73조 9,88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82조 6,086억원의 89.6%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34조 7,190억원이 감소하고 예산 대비로는 18조 4억원이 더 수납된 것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결산 (A)	2023					전년 대비 (D-A)
		예산 (B)	징수 결정액 (C)	수납액 (D)	수납률 (D/C)	예산 대비 (D-B)	
합 계	4,938,673	4,462,422	4,828,031	4,079,283	84.5	△383,139	△859,390
국세수입	3,851,596	3,902,539	4,001,945	3,339,396	83.4	△563,143	△512,200
세외수입	1,087,077	559,883	826,086	739,887	89.6	180,004	△347,19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수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400조 1,945억원 대비 83.4%인 333조 9,396억원이 수납되었으며 2조 2,835억원은 불납결손 처리되고 63조 9,714억원은 미수납되었음.

세목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115조 8,330억원, 법인세 80조 4,195억원, 부가가치세 73조 7,749억원, 상속·증여세 14조 6,341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 8,436억원, 개별소비세 8조 8,209억원, 관세 7조 2,883억원, 증권거래세 6조 803억원, 과년도수입 5조 6,999억원, 교육세 5조 1,516억원, 종합부동산세 4조 5,965억원, 인지세 7,969억원, 방위세 1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851,596	3,902,539	4,001,945	3,339,396	22,835	639,714
■ 내국세	3,522,750	3,579,676	3,692,179	3,060,595	22,586	608,998
1.소득세	1,287,486	1,318,632	1,223,137	1,158,330	71	64,736
2.법인세	1,035,704	1,049,969	823,181	804,195	8	18,979
3.상속증여세	145,940	171,274	157,083	146,341	-	10,742
4.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828,118	737,749	255	90,115
5.개별소비세	93,182	101,943	92,089	88,209	1	3,880
6.주세	-	-	409	-	5	404
7.증권거래세	63,029	49,739	60,872	60,803	-	69
8.인지세	7,988	8,158	7,972	7,969	-	3
9.과년도수입	73,155	47,926	499,318	56,999	22,247	420,070
■ 관세	103,241	107,237	87,957	72,883	15	15,059
■ 방위세	9	-	5	1	-	4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4	111,471	108,683	108,436	71	177
■ 교육세	46,444	47,022	52,158	51,516	30	612
■ 농어촌특별세	-	-	2,550	-	46	2,504
■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58,412	45,965	88	12,36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73조 9,887억원이 수납되어 예산 대비 18조 4억원이 더 수납되었고 전년 대비로는 34조 7,190억원 감소하였음. 수납액 규모는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55조 6,908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기타경상이전수입 4조 2,086억원,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조 7,391억원, 전년도이월금 2조 7,933억원, 세계잉여금 2조 7,511억원,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조 345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775억원 정부출자수입 9,4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2 실적 (A)	2023			전년대비 (C-A)
		예산 (B)	실적 (C)	예산 대비 (C-B)	
합 계	1,087,077	559,883	739,887	180,004	△347,190
■ 재산수입	74,456	25,949	30,831	4,882	△43,625
- 관유물대여료	836	838	1,074	236	238
- 정부출자수입	16,826	10,787	9,412	△1,375	△7,414
- 전대차관이자수입	0.004	-	-		△0.004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6,793	14,324	20,345	6,021	△36,448
■ 경상이전수입	77,878	56,708	82,570	25,862	4,692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4,740	30,628	37,391	6,763	2,651
- 변상금및위약금	1,195	2,006	5	△2,001	△1,190
- 가산금	3,986	3,488	3,087	△401	△899
- 기타경상이전수입	37,957	20,586	42,086	21,500	4,12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936	11,018	9,775	△1,243	1,839
■ 수입대체경비수입	1,685	2,307	2,583	276	898
■ 관유물매각대	979	1,206	1,776	570	797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	3	1	△2	△1
■ 전년도이월금	26,477	-	27,933	27,933	1,456
■ 세계잉여금	32,618	-	27,511	27,511	△5,107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64,782	462,691	556,908	94,217	△307,874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63	-	-	-	26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액은 405조 8,86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0.3%이며, 전년 대비 79조 1,629억원 감소하였음. 16대 기능별 결산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집행액이 87조 3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 분야 86조 2,880억원, 사회복지 분야 75조 4,149억원, 국방 분야 56조 1,4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행률이 90.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교육 분야(89.0%), 교통 및 물류 분야(88.5%), 일반·지방행정 분야(82.0%) 및 예비비(15.7%)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합 계	4,850,492	4,462,422	4,490,672	4,058,863	90.3	△791,629
일반·지방행정	1,035,007	1,059,364	1,060,985	870,300	82.0	△164,707
공공질서및안전	214,765	211,684	212,664	209,897	98.7	△4,868
통일·외교	31,410	36,069	37,024	34,942	94.4	3,532
국방	524,668	573,474	585,891	561,476	95.8	36,808
교육	941,944	969,532	969,739	862,880	89.0	△79,064
문화및관광	42,785	45,764	46,535	44,482	95.6	1,697
환경	57,849	57,016	57,116	52,608	92.1	△5,241
사회복지	756,997	787,547	790,004	754,149	95.5	△2,848
보건	293,704	162,314	170,546	168,015	98.5	△125,689
농림수산	68,399	91,168	95,146	91,950	96.6	23,55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47,206	113,354	115,274	114,400	99.2	△432,806
교통및물류	166,633	142,719	143,400	126,920	88.5	△39,713
통신	10,250	9,706	9,708	9,637	99.3	△613
국토및지역개발	75,348	75,615	76,594	70,887	92.5	△4,461
과학기술	77,767	81,095	81,386	80,248	98.6	2,481
예비비	5,760	46,000	38,660	6,072	15.7	31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특별회계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89조 313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 9,618억원 증가하였고, 예산 대비 1조 3,04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총괄]

(단위: 억원)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A+B)	800,695	877,266	890,313	13,046	89,618
■ 기타특별회계 소계(A)	674,984	737,111	741,464	4,353	66,48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97,427	95,951	△1,476	95,951
교도작업특별회계	1,180	1,215	1,242	27	62
교통시설특별회계	169,874	156,127	149,097	△7,029	△20,7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8,561	119,273	127,711	8,438	9,15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209	5,996	6,828	833	△38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2,011	146,226	154,161	7,936	△7,849
등기특별회계	3,173	4,303	3,011	△1,292	△16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4,380	23,462	24,171	709	△2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684	1,523	1,661	139	△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290	57,704	53,138	△4,566	△152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040	10,408	9,653	△754	△38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1	34,700	34,880	180	△4,041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176	8,799	9,090	291	9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283	2,250	2,749	498	△1,53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41	357	332	△25	△110
환경개선특별회계	71,761	67,342	67,787	445	△3,974
■ 기업특별회계 소계(B)	125,712	140,155	148,849	8,694	23,137
양곡관리특별회계	22,270	23,248	24,290	1,042	2,02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8,744	44,157	56,173	12,016	17,428
우편사업특별회계	45,663	54,244	48,584	△5,660	2,921
조달특별회계	5,731	5,172	6,366	1,194	63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304	13,333	13,436	103	13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10조 1,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6,483억원 감소하였으며, 예산 대비 717억원 미달하였음. 세외수입은 78조 8,999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6,101억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을 1조 3,763억원 초과하였음.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성질별 세입 수납액]

(단위: 억원)

구 분	2022 실적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실적(C)	예산 대비 (C-B)	
합 계	800,695	877,267	890,313	13,046	89,618
■ 국세수입	107,797	102,031	101,314	△717	△6,483
- 주세	37,665	32,151	35,686	3,535	△1,979
- 농특세	70,132	69,880	65,628	△4,252	△4,504
■ 세외수입	692,898	775,236	788,999	13,763	96,101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5,212	68,869	80,245	11,376	15,033
- 재산수입	3,203	2,776	3,388	612	185
· 관유물대여료	851	915	856	△59	5
· 정부출자수입	1,039	521	507	△14	△53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13	1,340	2,025	685	712
- 경상이전수입	46,393	42,770	40,114	△2,656	△6,279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57	669	567	△102	10
· 변상금및위약금	83	118	103	△15	20
· 가산금	54	73	48	△25	△6
· 기타경상이전수입	45,698	41,911	39,395	△2,516	△6,30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360	17,671	15,801	△1,870	441
- 수입대체경비수입	67	44	76	32	9
- 관유물매각대	6,178	11,139	9,646	△1,493	3,468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212	9,059	8,078	△981	△134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6	-	-	-	△36
- 전년도이월금	8,296	-	19,732	19,732	11,436
- 세계잉여금	55,424	12,902	32,530	19,628	△22,894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4,516	610,006	579,389	△30,617	94,873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특별회계 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집행액은 84조 5,282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 90조 8,963억원의 93.0%를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9조 8,398억원 증가하였음. 주요 회계별로 살펴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9조 5,941억원이 순증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조 8,659억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7,292억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5조 760억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4,563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4조 2,169억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1조 9,048억원 감소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조 4,700억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3,590억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합 계	746,884	877,266	908,963	845,282	93.0	98,398
■ 기타특별회계 소계(A)	626,633	737,111	763,447	711,488	93.2	84,85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427	97,473	95,941	98.4	95,941
교도작업특별회계	1,097	1,215	1,215	1,130	93.1	33
교통시설특별회계	161,217	156,127	162,277	142,169	87.6	△19,0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1,367	119,273	122,319	118,659	97.0	7,29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568	5,996	8,316	6,039	72.6	1,47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7,355	146,226	157,377	148,743	94.5	1,388
등기특별회계	2,493	4,303	4,333	2,642	61.0	14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3,958	23,462	23,462	23,457	100.0	△5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87	1,523	1,587	1,388	87.4	10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197	57,704	59,527	50,760	85.3	4,56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491	10,408	10,411	8,579	82.4	8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	34,700	34,700	34,700	100.0	△3,59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842	8,799	9,133	8,862	97.0	1,0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742	2,250	2,719	1,801	66.2	△1,94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3	357	361	312	86.5	△61
환경개선특별회계	68,359	67,342	68,236	66,305	97.2	△2,054
■ 기업특별회계 소계(B)	120,251	140,155	145,515	133,793	91.9	13,542
양곡관리특별회계	21,873	23,248	23,248	23,248	100.0	1,37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6,865	44,157	49,175	45,397	92.3	8,532
우편사업특별회계	44,829	54,244	54,370	47,600	87.5	2,771
조달특별회계	4,773	5,172	5,247	4,941	94.2	1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911	13,333	13,474	12,608	93.6	69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집행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16개 기타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93.2%이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1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98.4%), 환경개선특별회계(9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7.0%) 등이 높은 집행실적을 보인 반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7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66.2%), 등기특별회계(61.0%)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음.

한편 5개 기업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91.9%이며, 양곡관리특별회계(100.0%), 조달특별회계(94.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93.6%), 우체국예금특별회계(92.3%) 등이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우편사업특별회계(87.5%)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4) 이월 및 불용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 규모는 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23.5%)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이 2.0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28.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17.7%)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이월액 (A)	2023년			전년 대비	
		예산현액 (B)	이월액 (C)	이월액 비율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합 계	5.1	540.0	3.9	0.7	△1.2	△23.5
일반회계	2.8	449.1	2.0	0.4	△0.8	△28.2
특별회계	2.3	90.9	1.9	2.0	△0.4	△17.7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 규모는 45.7조원으로 전년 대비 32.8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임. 이와 같은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세수결손에 따른 지출 조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결산상 불용액을 ① 국세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조정(세입여건변화, 18.6조원), ② 회계간,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내부거래, 16.4조원), ③ 예비비 미집행, 지출소요 조정 및 기타 집행계획변경 등(사실상 불용, 10.8조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불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년			2023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불용액	12.9	10.1	2.8	45.7	41.2	4.5
세입여건변화	2.1	2.1	-	18.6	18.6	-
내부거래	3.4	2.1	1.3	16.4	14.8	1.5
사실상 불용	7.4	5.9	1.6	10.8	7.8	3.0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지출 마감결과

(5) 세계잉여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6조 5,451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3조 8,617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6,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4,663억원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884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총 2조 6,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80억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세계잉여금 (A)	2023					전년대비 증감액 (G=F-A)
		총세입(B)	총세출(C)	결산상잉여금 (D=B-C)	이월액 (E)	세계잉여금 (F=D-E)	
합 계	91,498	4,969,596	4,904,145	65,451	38,617	26,835	△64,663
□ 일반회계	60,248	4,079,283	4,058,863	20,420	20,056	364	△59,884
□ 특별회계	31,250	890,313	845,282	45,031	18,561	26,470	△4,78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95,951	95,941	10	7	3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728	154,161	148,743	5,418	6,078	△660	△6,388
교통시설특별회계	2,507	149,097	142,169	6,928	6,461	467	△2,040
등기특별회계	650	3,011	2,642	369	25	344	△306
교도작업특별회계	83	1,242	1,130	112	7	105	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085	53,138	50,760	2,378	12	2,366	△4,719
환경개선특별회계	2,509	67,787	66,305	1,482	1,304	178	△2,33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546	9,653	8,579	1,074	4	1,070	△47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	9,090	8,862	228	228	0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3	2,749	1,801	948	878	70	△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1	6,828	6,039	789	840	△51	△37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4	332	312	20	5	15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333	1,661	1,388	273	117	156	△1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48	127,711	118,659	9,052	1,796	7,256	3,10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630	34,880	34,700	180	-	180	△45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422	24,171	23,457	714	0	714	292
양곡관리특별회계	397	24,290	23,248	1,042	1	1,041	644
조달특별회계	883	6,366	4,941	1,425	152	1,273	390
우편사업특별회계	707	48,584	47,600	984	455	529	△17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862	56,173	45,397	10,776	79	10,697	8,83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02	13,436	12,608	828	113	715	△587

주) 세계잉여금이 음수(△)라는 것은 해당 규모만큼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 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합 계	21,228	93,549	233,226	91,498	26,835
일반회계	619	57,192	179,949	60,248	364
특별회계	20,609	36,357	53,275	31,250	26,47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채무상환, 추경안 편성,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등의 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근거법률에 따른 조치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조치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
2.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1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3. 다음 각 호의 채무상환에 사용(1+2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 국채·차입금 원리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차입 원리금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4.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5. 최종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조치

자료: 「국가재정법」 제90조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을 전액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예정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사용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A)	처리내역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B)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C)		채무상환(D)		추경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비율 (C/(A-B))		비율 (D/(A-B-C))		
2019 (2020)	619	619	-	-	-	-	-	-
2020 (2021)	57,192	22,653	10,362	30.0	7,253	30.0	16,924	-
2021 (2022)	179,949	113,382	19,970	30.0	13,979	30.0	32,618	-
2022 (2023)	60,248	4,103	16,843	30.0	11,790	30.0	27,511	
2023 (2024)	364	364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68개 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액은 889.8조원으로 전년 대비 60.4조원이 증가하였음.

기금 수입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내부수입(248.1조원), 여유자금회수(243.8조원), 자체수입(214.3조원), 차입금(183.5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기금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운용(273.4조원), 정부내부지출(268.9조원), 사업비(178.7조원), 차입금원금상환(138.8조원), 차입금이자상환(26.9조원), 기금운영비(2.9조원) 순으로 규모가 큼.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정부내부지출(38.6조원), 차입금원금상환(28.0조원), 여유자금운용(26.5조원), 차입금이자상환(3.2조원), 기금운영비(0.1조원) 순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사업비(△35.9조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입	자체수입	203.0	212.6	211.7	214.3	2.67	11.3
	정부내부수입	236.3	262.6	275.1	248.1	△27.0	11.7
	차입금	178.7	191.7	192.9	183.5	△9.4	4.8
	여유자금회수	211.3	226.2	240.9	243.8	2.9	32.5
합 계		829.4	893.1	920.6	889.8	△30.8	60.4
지출	사업비	214.5	180.9	185.5	178.7	△6.9	△35.9
	기금운영비	2.8	2.9	3.0	2.9	△0.1	0.1
	정부내부지출	230.3	257.7	280.0	268.9	△11.2	38.6
	차입금원금상환	111.0	139.1	142.2	138.8	△3.3	28.0
	차입금이자상환	23.8	27.6	28.1	26.9	△1.1	3.2
	여유자금운용	246.9	285.0	281.7	273.4	△8.3	26.5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유형별로 수입·지출 실적을 살펴보면,[6]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440조 5,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7,499억원 증가하였고,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268조 8,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1,601억원 증가하였음. 또한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149조 7,30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 9,659억원 감소하였고,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30조 6,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0억원 증가하였음.

수정계획 대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결산규모가 28조 2,516억원 초과한 반면, 계정성기금은 27조 4,226억원, 사업성기금은 29조 2,392억원, 금융성기금은 2조 3,987억원 각각 미달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 실적 (A)	2023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수정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8,293,590	8,931,295	9,205,671	8,897,582	△308,089	603,991
■ 사회보험성기금(6개)	2,506,955	2,403,795	2,406,040	2,688,556	282,516	181,601
■ 계정성기금(5개)	3,507,948	4,409,626	4,679,674	4,405,447	△274,226	897,499
■ 금융성기금(8개)	301,724	330,261	330,261	306,274	△23,987	4,550
■ 사업성기금(49개)	1,976,963	1,787,613	1,789,696	1,497,304	△292,392	△479,659

자료: 기획재정부

6) 총 68개 기금 중 사회보험성기금(6개)으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있고, 계정성기금(5개)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 있으며, 금융성기금(8개)으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사업성기금(49개)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있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총평

이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① 2023년 재정운용의 성과를 당초 전망했던 주요 경제지표와 연계하여 살펴보고, ② 세입결손,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 활용, 자치단체보조금 관리 미흡, 출연금 정산체계 부재 등 2023년 재정운용의 주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③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사례들을 예시하였음.

가. 2023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2023년 경제성장·민간소비 및 물가안정 지표는 당초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취업자 증가폭 및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 등 다양한 주체의 여러 활동,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 등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경제활동의 결과물을 정부 재정운용만의 성과로는 설명할 수 없음.

그러나 정부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예측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며, 재정정책 및 규제 등을 통해 여러 경제주체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경제활동의 결과물을 재정운용 성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세계교역량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민생안정,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것임.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제반 환경을 인식하여 2022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당시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였음. 정부는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1.6%로 2022년 2.5% 대비 하향하여 전망하였고, 민간소비증가율도 2.5%로 전년도 4.6% 대비 하향 전망하였음. 또한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도 81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로 2022년 5.1% 대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경상수지는 210억불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7)]

실제 거시경제지표가 시현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였고, 민간소비증가율도 1.8%에 그쳐 당초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예상했던 1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32만 7,000명을 기록하여 예상치보다는 호조를 보였음.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로 당초 예상치보다 소폭 높았으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는 355억불 흑자를 시현하여 당초 전망치 210억불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

[2023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및 실제 통계 비교]

구 분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2023년 주요 거시경제전망(A)	2023년 실제 통계 (B)	차이(B-A)
경상성장률(%)	4.0	3.4	△0.6%p
실질성장률(%)	1.6	1.4	△0.2%p
민간소비증가율(%)	2.5	1.8	△0.7%p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6	+0.1%p
취업자증감(만명)	10	32.7	+22.7
경상수지(억불)	210	355	+145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연도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민간에 비해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2019년, 2020년과 달리 2021년부터는 주로 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높고 정부의 기여도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3%p 중 정부가 1.5%p로 민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기여도를 보였고,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음(-)의 값으로 전환된 가운데 정부지출이 양(+)의 값을 보여 민간의 음(-)의 성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반면에, 이후부터는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가 역전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민간의 기여도가 4.0%p로 정부의 기여도 0.7%p의 5배를 상회하고 있고, 2022년 및 2023년에도 민간의 기여도가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참고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2022년 9월) 정부가 전제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2023년 전망치는 실질성장률 2.5%, 민간소비증가율 3.2%, 취업자증감 15만명,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등 2022년 12월 전망치보다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경향을 보였음.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3	△0.7	4.6	2.7	1.4
민 간	0.8	△1.8	4.0	2.3	1.1
정 부	1.5	1.0	0.7	0.5	0.3

자료: 통계청 KOSIS, 지출항목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2024.6.

한편, 정부는 2023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나,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신속집행이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023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로서 정부의 예상과 유사하게 비교적 상저하고(上低下高) 추세를 보였음.[8] 정부는 상반기 급격한 경기하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음.

이에 정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지출 중 주요사업비 내 관리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연간계획(242.9조원) 대비 65.0%인 157.9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실제로는 159.8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당초 목표치를 0.7%p 초과 달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를 보면, 정부기여도가 1분기 △0.3%p, 2분기 △0.2%p 등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고, 3분기 0.3%p, 4분기 0.2%p 등 하반기에 비로소 양의 값을 나타냈음. 즉,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반기에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기 곤란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의 성과를 단언하기 어려움.

[분기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p)

구 분	2023.1/4	2023.2/4	2023.3/4	2023.4/4	2024.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0.4	0.6	0.8	0.5	1.3
민 간	0.6	0.8	0.4	0.4	1.2
정 부	△0.3	△0.2	0.3	0.2	0.1

자료: 통계청 KOSIS, 지출항목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2024.6.

8)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2015년 → 2020년) 반영(2024.6.)

이처럼 신속집행 효과가 저조했던 것은 신속집행 대상사업 중 상당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수요가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 등 그 성질상 신속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재정집행의 효과가 민간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신속집행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그 성질상 신속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함. 예컨대, 기초연금 지급(18.5조원), 의료급여(9.1조원), 생계급여(6.0조원) 사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법정 의무지출사업은 지자체에서 매달 수급요건 등을 고려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지출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보조금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효과만 나타남. 또한, 주택자금·전세자금 융자(10.4조원), 전세임대 융자(4.2조원) 등은 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정부가 공급자로서 재정지출을 독려할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임.

[2023년 주요 신속집행 대상사업]

(단위: 억원)

사업유형	세부사업	세목	2023년 연간계획
			2,428,790
의무지출	기초연금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	185,078
기타재량지출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	기타민간융자금	103,800
의무지출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90,961
의무지출	생계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60,125
기타재량지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출연금	45,644
기타재량지출	전세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41,750
기타재량지출	다가구매입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32,370
의무지출	영유아보육료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251
기타재량지출	소상공인지원(융자)	기타민간융자금	30,000
의무지출	주거급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5,237
의무지출	아동수당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	22,563
기타재량지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기타민간융자금	22,300
기타재량지출	무공해차 보급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1,746
기타재량지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일반출자금	19,875
의무지출	장애인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9,681
기타재량지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7,504
기타재량지출	민간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17,088

(단위: 억원)

사업유형	세부사업	세목	2023년 연간계획
기타재량지출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6,367
기타재량지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6,214
기타재량지출	분양주택(융자)	기타민간융자금	13,955
기타재량지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3,563
기타재량지출	통합공공임대융자	기타민간융자금	11,900
기타재량지출	신성장기반자금(융자)	기타민간융자금	11,850
경직성지출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사업출연금	11,678
경직성지출	항공장비(유지)	시설장비유지비	11,018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매년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흐름의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전제로 20년 이상 일률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해온 현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차입비용에 대해서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신속집행 정책의 목적은 상반기 급격한 경기하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런데 신속집행 정책은 매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항상 경기흐름의 상저하고(上低下高)만을 전제하고 상반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년 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만약 실제 경기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2015~2024년 중앙부처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연간 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초과달성분	
		금액 (B)	집행률 (C=B/A)	금액 (D)	집행률 (E=D/A)	금액 (D-B)	집행률 (E-C)
2015	260.2	152.5	58.6	156.5	60.1	4.0	1.5
2016	229.6	137.1	59.7	140.5	61.2	3.4	1.5
2017	233.8	135.7	58.0	139.2	59.6	3.5	1.6
2018	238.6	138.9	58.2	149.3	62.6	10.4	4.4
2019	252.6	155.9	61.7	166.2	65.8	10.3	4.1
2020	261.4	164.6	63.0	175.6	67.2	11.0	4.2
2021	293.3	187.4	63.9	203.2	69.3	15.8	5.4
2022	199.4	125.6	63.0	128.3	64.4	2.7	1.4
2023	242.9	157.9	65.0	159.7	65.7	1.8	0.7
2024	252.9	164.4	65.0	-	-	-	-

자료: 기획재정부

예컨대, 2022년의 경우 1분기 경제성장률이 0.7%, 2분기는 0.8%였으나, 3분기 0.2%, 4분기 △0.3% 등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진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3.0%로 설정하고 이를 1.4%p 초과달성한 바 있음.

한편,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많은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량이 증가하여 조달비용이 발생하게 됨. 특히 2023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일시차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하였음.

따라서 신속집행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시 신속집행 추진의 대가로서 차입비용의 존재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일시차입 관련 통계]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 일시차입 한도	3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142.5	36.4	50.5	162.1	124.4
- 한은차입	97.2	7.5	34.2	117.6	83.6
- 재정증권	45.3	28.9	16.3	44.5	40.8

자료: 기획재정부

나.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검토사항

이하에서는 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입결손 발생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②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인 운용 사례, ③ 회계·기금별 보유재원의 불균형 및 개선방안,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잔액의 미반납 관행, ⑤ 사업출연금의 정산 원칙 부재 및 ⑥ 국민연금급여지급의 과소계상에 따른 국가재정 규모의 부정확성 등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1) 세입결손 현황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

(가) 세입결손 현황

2023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입결손(56.4조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6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감소하는 등 세수부족 문제가 2024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임.

2023년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이 수납되어 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14.1%)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법인세가 80.4조원으로 예산보다 24.6조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소득세도 예산 대비 16.0조원이 부족한 115.8조원이며,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17.6조원으로 예산 대비 12.2조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실적 (A)	2023년		2022년 실적대비		2023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증감액 (E=C-B)	증감률 (E/B)
총국세	3,959,393	4,004,570	3,440,711	△518,682	△13.1	△563,859	△14.1
○ 내국세	3,522,750	3,579,676	3,060,595	△462,155	△13.1	△519,081	△14.5
1.소득세	**1,287,486**	**1,318,632**	**1,158,330**	**△129,156**	**△10.0**	**△160,302**	**△12.2**
신 고 분	561,722	544,452	389,928	△171,794	△30.6	△154,524	△28.4
-종합소득세	239,389	247,255	214,368	△25,021	△10.5	△32,887	△13.3
-양도소득세	**322,333**	**297,197**	**175,560**	**△146,773**	**△45.5**	**△121,637**	**△40.9**
원 천 분	725,764	774,180	768,402	42,638	5.9	△5,778	△0.7
2.법인세	**1,035,704**	**1,049,969**	**804,195**	**△231,509**	**△22.4**	**△245,774**	**△23.4**
3.상속증여세	145,940	171,274	146,341	401	0.3	△24,933	△14.6
4.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737,749	△78,517	△9.6	△94,286	△11.3
5.개별소비세	93,182	101,943	88,209	△4,973	△5.3	△13,734	△13.5

구 분	2022년 실적 (A)	2023년		2022년 실적대비		2023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증감액 (E=C-B)	증감률 (E/B)
6.증권거래세	63,029	49,739	60,803	△2,226	△3.5	11,064	22.2
7.인지세	7,988	8,158	7,969	△19	△0.2	△189	△2.3
8.과년도수입	73,155	47,926	56,999	△16,156	△22.1	9,073	18.9
○ 교통세	111,164	111,471	108,436	△2,728	△2.5	△3,035	△2.7
○ 관세	103,241	107,237	72,883	△30,358	△29.4	△34,354	△32.0
○ 교육세	46,444	47,022	51,516	5,072	10.9	4,494	9.6
○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45,965	△22,023	△32.4	△11,168	△19.5
○ 방위세	9	-	1	△8	△88.9	1	-
○ 주세	37,665	32,151	35,686	△1,979	△5.3	3,535	11.0
○ 농특세	70,132	69,880	65,628	△4,504	△6.4	△4,252	△6.1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2024년 6월 기준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누계액이 168.6조원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178.5조원) 대비 10.0조원 감소하는 등 세수오차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6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 세목	2023년 실적	2024년 예산	6월까지 누계			6월 진도율		
			2023년	2024년	증감	2023년	최근5년	2024년
■ 총 국 세	344.1	367.3	178.5	168.6	△10.0	51.9	52.6	45.9
■ 일반회계	333.9	356.1	173.6	163.5	△10.1	52.0	52.7	45.9
ㅇ 내국세	306.1	321.6	160.5	150.9	△9.6	52.4	53.4	46.9
- 소득세	115.8	125.8	57.9	58.1	0.2	50.0	52.0	46.2
- 법인세	80.4	77.7	46.7	30.7	△16.1	58.1	57.9	39.5
- 상속증여세	14.6	14.7	7.9	7.9	△0.0	54.2	51.6	54.0
- 부가가치세	73.8	81.4	35.7	41.3	5.6	48.3	48.8	50.7
- 개별소비세	8.8	10.2	4.4	4.4	△0.0	49.9	49.3	42.8
- 증권거래세	6.1	5.4	3.0	2.7	△0.3	49.4	52.6	50.5
- 인지세	0.8	0.9	0.4	0.4	0.0	48.2	49.7	50.3
- 과년도수입	5.7	5.7	4.4	5.4	1.0	78.1	82.9	95.5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5.3	5.3	5.3	0.0	48.9	50.2	34.9
ㅇ 관세	7.3	8.9	3.5	3.3	△0.2	48.3	50.0	37.3
ㅇ 교육세	5.2	6.2	2.7	2.8	0.1	51.5	51.0	44.8
ㅇ 종합부동산세	4.6	4.1	1.6	1.2	△0.4	35.4	22.6	28.8
■ 특별회계	10.1	11.2	5.0	5.0	0.1	48.9	49.9	45.1
ㅇ 주세	3.6	3.6	1.7	1.6	△0.1	48.8	50.1	45.1
ㅇ 농특세	6.6	7.6	3.2	3.4	0.2	49.0	49.3	45.1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세수결손의 원인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큰 규모의 세수예측 오차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2023년에 국세수입 결손규모가 가장 컸던 세목은 법인세(△24조 5,774억원), 양도소득세(△12조 1,637억원), 부가가치세(△9조 4,286억원), 관세(△3조 4,354억원)이며, 정부는 주요 수입감소 사유로 양도소득세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 감소, 법인세는 기업 영업실적 악화,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수입액 감소를 각각 제시하였음.[9)]

그러나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미지급되는 등 재정운용상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던 만큼, 세수오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국회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그동안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세수추계 모형 개선,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국제기구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국세수입 오차율(본예산 기준)이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로 여전히 높을 뿐 아니라, 세수오차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고 변동폭이 큰 상황이므로,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9)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관세 수입감소 주요 사유

구 분	2023년 예산 대비 수입 감소 주요 사유
법인세	○ 예산 대비 24조 5,774억원(△23.4%) 감소: (주요 사유) 2022~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2021) 119.7 → (2022) 81.7 (△31.8%) (2022 상반기) 63.6 → (2023 상반기) 18.8 (△70.4%)
양도소득세	○ 예산 대비 12조 1,637억원(△40.9%) 감소: (주요 사유)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 -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021.11~2022.10) 72.4 → (2022.11~2023.10) 48.9 (△32.4%)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예산 대비 부가가치세 9조 4,286억원(△11.3%) 감소, 관세 3조 4,354억원(△32.0%) 감소 - 수입액 변동: (2022) 7,314억 달러 → (2023) 6,427억 달러 (△12.1%)

자료: 기획재정부

[2014~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본예산(A)	216.5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추경예산(B)	216.5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결산(C)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5.1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추경 대비 [(C-B)/B]	△5.1	1.0	4.2	5.7	9.5	△0.5	2.1	9.5	△0.2	0.8

주) 2023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나) 정부의 세입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정부는 2023년 9월, 세입결손에 대하여 세입경정 추경을 통한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및 통상적 불용을 고려하여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에 따라 대응하였음.

정부는 2023년 9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세수결손 규모를 59.1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세입경정 추경을 통한 국채 추가발행 및 지출 증액 없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우선, 4조원 내외의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24조원 내외의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을 고려하여 관리하면서,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23조원 내외)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음.

세입경정 추경을 통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충분한 세입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지출 여력에도 제한이 발생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음.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하였다면 국가채무가 약 60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정부가 여유재원 등 주어

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한 국채발행 없이 세입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치함에 따라 당장의 재정건전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음.

이처럼 정부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세입결손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임.

그러나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채발행을 늘리면 세입재원 확보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지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국채발행을 통한 세입재원 확보 없이 세입결손에 대응한 결과 세입재원 부족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 규모는 45.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정부는 2023년 결산상 불용액의 유형을 ① 세입여건 변화(18.6조원), ② 내부거래(16.4조원) 및 ③ 사실상 불용(10.8조원)의 3가지로 구분하고, 사실상 불용 규모를 고려할 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불용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정부는 '2023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결과'를 발표하면서 45.7조원의 불용액을 크게 ① 세입여건 변화, ② 내부거래 및 ③ 사실상 불용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우선 '세입여건 변화(18.6조원)'는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불용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을 통해 보전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함.[10)]

다음으로 '내부거래(16.4조원)'는 회계 간,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로, 이는 회계·기금 간 중복계상되는 것이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정부는 설명함.

마지막으로 '사실상 불용(10.8조원)'은 예비비 불용(3.3조원)과 통상적 수준의 사업비 불용(7.5조원)으로 구성되며, 하반기에 재난·재해 발생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감소하여 예비비가 불용되었고, 통상적 수준의 사업비 불용(7.5조원)은 전년도 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함.[11)]

---

10)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수입의 19.24%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입의 20.79% 등으로 구성됨.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4.2.8., p.9.

[2023회계연도 불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년			2023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불용액	12.9	10.1	2.8	45.7	41.2	4.5
세입여건변화	2.1	2.1	-	18.6	18.6	-
내부거래	3.4	2.1	1.3	16.4	14.8	1.5
사실상 불용	7.4	5.9	1.6	10.8	7.8	3.0
예비비 미집행	0.6	0.6	0.0	3.3	3.3	0.0
사업비 불용 등	6.8	5.3	1.6	7.5	4.5	3.0

자료: 기획재정부

즉, 세입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입경정 추경 없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년과 다름없는 정상적인 정부지출을 유지하였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정부의 대응 결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①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미배정의 문제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예산액을 기준으로 모두 교부하고 사후정산하는 형태로 운용되었는데,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번에 18.6조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사전에 미교부하는 선례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지방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관행을 살펴보면, 매년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배정비율대로 교부하고,[12)13)]

□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18.6조원) 및 정부 내부거래(16.4조원) 제외시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
 ㅇ (지방교부세·금) 관계법에 따라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
 ㅇ (내부거래)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사실상 불용은 지출소요 발생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3.3조원) 및 통상적 수준의 사업비 불용(7.5조원)에 해당
 ㅇ (예비비)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 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지출 소요 감소
  * '23년 예비비: (예산) 4.6조원 (지출결정) 1.4조원 → (불용) 3.3조원
 ㅇ (사업비)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6.8조원)와 유사한 수준

12)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등

13)「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차후 정산을 통해 차차년도 교부재원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14]

그러나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입예산액이 아니라 세입결손액을 감안한 실제 예상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18.6조원(지방교부세 8.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을 미배정 후 교부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전정산을 실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은 선례가 존재하고, 예산의 배정은 정부 고유의 권한으로서 금번 미배정은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15]에 따른 배정유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선례의 미배정 규모는 2013년 2.0조원, 2014년 1.5조원으로,[16] 금번과 같이 18.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미교부는 발생한 선례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수결손을 이유로 대규모 미배정을 실시함에 따라, 향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재원이 예산액과 관계없이 언제든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14)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5)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 2013년 2.0조원(지방교부세 1.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 2014년 1.5조원(지방교부세 7,5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00억원) 각각 미배정

또한 재원의 미배정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은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만 예산 대비 전액 교부하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예산 대비 감액 교부함에 따라 교부비율이 68.6%, 23.5%, 7.8%로 나타나 법정비율이 준수되지 않았음.[17]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대비 교부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A)	비율	최종 교부액(B)	비율	미교부액(A-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100.0	65,363,666	100.0	10,397,000
○ 보통교부금	73,533,444	97.1	63,416,456	97.0	10,116,988
○ 특별교부금	2,227,222	2.9	1,947,210	3.0	280,012
- 국가시책	1,336,333	(60.0)	1,336,333	(68.6)	0
- 지역현안	668,167	(30.0)	458,158	(23.5)	210,009
- 재난안전	222,722	(10.0)	152,719	(7.8)	70,003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를 매년 1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나,[18] 하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② 내부거래 불용의 문제점

내부거래 불용(16.4조원)과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 미상환(8.6조원) 등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현재의 상환의무를 미래로 연기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내부거래가 회계·기금 간 중복계상되는 것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미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정부는 2024년 2월 '2023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거래 불용액(16.4조원)과 관련하여, 내부거래가 회계·기금 간 중복계상되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설명하였음.

예컨대, 2023년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예정된 전출금은 8.1조원이었으나 세수부족으로 인해 6.6조원만 전출되고 1.5조원은 불용되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이 1.3조원 발생하였음. 이 경우 두 회계의 불용액 합계는 2.8조원이나,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불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당액만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출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부 중복계상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임.

하지만 내부거래 불용액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중복계상은 발생한 불용액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음.

일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이자상환의 경우 당초 14.5조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5.9조원만 상환하고 8.6조원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불용처리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불용이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에 근거한 예산의 배정유보 조치로서,[19] 2014년에도 예수이자상환 유예 후 2016년에 전액 상환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는 향후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의 예수이자 규모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이 추가되므로, 결국 오늘의 재정부담을 내일로 미룬 결과를 낳게 됨.

---

19)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과정에서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원금상환의 2023년도 계획액은 당초 49.8조원이었으나, 조기상환을 위해 당초 계획액보다 14.4조원(28.9%) 증가한 64.2조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20]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기금간거래(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프로그램)의 계획변경비율은 28.9%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한도인 20%를 초과함에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수금과 차입금은 모두 빌린 자금으로서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원금상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제출의 예외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4호다목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집행지침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차입금과 예수금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21] 차입금의 대상은 모두 정부 외부로서 내부거래를 포

---

20)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함하지 않은 반면,[22] 예수금의 대상은 “타 회계 또는 기금” 등 정부 내부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23]

또한, 「국가재정법」에 사용된 ‘차입금’의 개념도 대부분 예산집행지침과 마찬가지로 정부 외부로부터의 차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국가재정법」 제18조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세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면서,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의 개념에 정부 내부거래인 예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90조제4항제3호[24]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의 차입금에 예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그 외의 「국가재정법」상 차입금에는 예수금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제70조제5항[25]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가 제3항제4호다목(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명세서에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항제4호다목의 차입금을 국채 발행 및 상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수금과는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21) 국내차입금 상환(510-01목), 해외차입금상환(510-02목), 예수금 원금 상환(510-04목)

22) 국내차입금 상환(510-01)의 대상은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차입금, 국공채, 한국은행 차입금 6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해외차입금상환(510-02)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차관, 기타 해외채무로서 정부 내부거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88)
“510-04 예수금 원금 상환”
1.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4)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5)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1조제3항제3호[26]는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차입금’에 대한 해석은 「국가재정법」의 조항의 취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임.[27]

그러나 동 조항은 국가채무의 구성내역인 ‘차입금’의 개념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오히려 ‘차입금’이 정부 외부로부터 조달한 재원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국가재정법」상 ‘차입금’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보다는 사전에 제출 여부에 대하여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예수금 조기상환은 그 자체로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세수결손 상황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금번 외국환평형기금의 대규모 조기상환의 배경에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향후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수급 안정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

---

26)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7)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의 채무관리 효율화라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의 채무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상환한 것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식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향후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비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③ 사실상 불용의 문제점

사실상의 불용(10.8조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출소요 발생 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사업비 불용 규모(7.5조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에 크게 증액편성된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2023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3년 목적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할 재해복구 의무 중 일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2024년으로 이연되었을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부는 사실상의 불용(10.8조원) 규모 중 예비비 불용(3.3조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난·재해 발생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사업비 불용 규모(7.5조원)는 전년(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2023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청주 지하차도 침수 등 풍수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대책비 용도의 목적예비비 집행액은 73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집행실적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 용도의 목적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목적예비비 편성액	18,000	42,100	81,000	37,000	28,000
목적예비비 지출액	15,887	41,228	78,714	33,473	2,121
- 재해대책비	6,654	40,167	58,330	5,437	738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편성된 재해대책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원 가까운 규모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2024년에 발생할 재난에 대한 대책이 아닌, 2023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24년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처	세부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B)	증액분(B-A)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150,035	600,040	450,005
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	250,000	250,000
	재해대책비	-	50,000	50,00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200,000	280,000	80,0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20,000	100,000	80,000
해양수산부	양식 등 재해대책비	16,346	50,000	33,654
계		**386,381**	**1,330,040**	**943,65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예산은 2023년 1,500억원에서 2024년 6,000억원으로 4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5,400억원은 2023년 7~8월 중앙합동조사 및 2023년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수해 및 태풍 복구계획에 기반하여 2023년 재난대책비 등으로 지원되지 않은 자금을 2024년에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환경부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2,500억원 규모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을 신설하였고, 이 중 2,300억원은 역시 2023년 7~8월 중앙합동조사 및 2023년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하천 관련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계획에 기반하여 2023년에 지원되지 않은 자금을 2024년에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에 발생한 재해복구의 성질을 감안하여, 긴급한 경우는 2023년에 복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으로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나, 세수부족에 따라 시급히 복구되어야 할 재난대응이 이연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소결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은 추가적인 국가채무 부담을 유발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① 미래 재정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그 효과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고, ②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③ 향후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 한계도 있다고 할 것임.

추경 없는 세입결손 대응은 표면상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의무를 이연하는 등 사실상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로 일부 전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제고에 일정부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하겠음.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향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선례를 만든 문제도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불가피하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적인 관점의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법률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 추진 필요

2023년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2024년에도 세입결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감면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이 예상됨.

2022년 국세감면 실적은 63.5조원, 2023년 전망치는 69.5조원, 2024년 전망치는 77.1조원으로 최근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는 국세감면율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2023년도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8%로, 2023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3%를 상회하는 것이며 2024년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법정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28)]

28) 2024년 3월 기준 2023년도 국세감면액과 지방소비세 이체분이 미확정 상태인 관계로, 2024년 8월에 해당 수치가 확정되어 최종적인 국세감면율이 도출될 예정임.

[연도별 국세감면율 추이(2022~2024)]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63.5	69.5	77.1
○ 국세수입총액[1] (B)	422.9	369.1	394.9
○ 국세감면율 [A/(A+B)]	13.0	15.8	16.3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6	14.3	14.6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4.3.

정부는 최근 국세감면 증가는 경제활력과 민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최근 세수감소는 경기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제개편이 세수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세제개편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국회에 제공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최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과도하여 대규모 조세감면 도입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29]에 따르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1~2023년 동안 매년 1건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 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이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은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사실상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 취지가 퇴색된 상황임.

[2018년 이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비타당성평가대상(A)	10	5	5	4	8	7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2	3	1	1	1
예비타당성평가 면제(B)	9	3	2	3	7	6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제1호					
면제 비율(B/A)	90.0	60.0	40.0	75.0	87.5	85.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는 모두「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제5항제1호에 따른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추상적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한편 2020~2023년까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은 6건 중 4건이 “타당성 낮음”으로 나타나 평가를 거친 경우 과도한 조세감면을 억제하는데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2020~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연도	과제명	수행기관	평가기간	평가결과
2020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연	2020.2.~2020.9.	타당성 낮음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KDI	2020.2.~2020.9.	타당성 낮음
2020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 등록 · 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 · 분석비용 세액공제	KDI	2020.2.~2020.9.	일부 도입 타당
2021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조세연	2021.2.~2021.9.	도입 타당
2022	선박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KDI	2022.1.~2022.9.	타당성 낮음
2023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KDI	2023.1.~2023.9.	타당성 낮음

자료: 기획재정부

(2) 대규모 재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2023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유발한 사례들이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 7,000억원 불용

의료급여 사업은 2022년말 기준 6,000억원 이상의 잔액이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어 집행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를 하였다면 불용예상 재원을 다른 용도로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의료급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면 시도에서 보조금과 지자체 매칭비용으로 별도의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예탁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2023년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의료급여	9,098,368	9,098,368	-	△36,047	9,062,321	8,362,283	-	700,038	8,937,713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금의 연도별 실집행잔액을 보면, 매년 1,3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말 기준 약 6,126억원의 잔액이 잉여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어 있었음.

따라서 2023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지자체의 집행여력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추계하면서 오히려 3,384억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추가 편성하였음. 그 결과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함은 물론, 실집행단계에서도 1,377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의료급여기금 내 누적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7,50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2023년도 말 현재 의료급여기금 누적 결산 잉여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적립액	2023년도 적립액 (2024.4월 기준)	2023년도 말 현재 누적 결산 잉여금
합계	193,220	137,728	750,321

자료: 보건복지부

(나)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 연례적인 불용 과다(2023년 6,563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천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재산정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 크게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공해차보급사업	2,565,224	2,565,224	30	±10	2,565,254	1,908,899	61	656,294	2,319,254
전기자동차 보급	1,918,000	1,918,000	-	-	1,918,000	1,572,969	-	345,031	1,734,000
수소차 보급	633,400	633,400	-	-	633,400	322,320	-	311,080	571,350

자료: 환경부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 내역사업의 경우 신규 구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해 2023년 예산현액 1조 9,180억원 중 3,450억원(18.0%)이 불용되었는데, 지자체로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단계에서의 불용액이 2,173억원임을 고려하면 총 불용액 규모가 5,623억원에 달하며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최근 5개년 전기차 보급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2019	457,720	457,720	-	457,720	30,669	488,389	353,525	72,556	62,308	72.4
2020	817,008	817,008	-	817,008	72,556	889,564	568,833	194,133	126,598	64.0
2021	1,027,463	1,027,463	-	1,027,463	194,133	1,221,596	1,030,585	111,001	80,009	84.4
2022	1,719,000	1,446,291	272,709	1,446,291	111,001	1,557,292	1,388,714	97,351	71,227	89.2
2023	1,918,000	1,572,969	345,031	1,572,969	96,596	1,669,565	1,339,691	112,613	217,261	80.2

자료: 환경부

한편 수소차 보급 내역사업은 2023년 예산액 6,334억원 중 3,111억원이 교부단계에서 불용되었고, 실집행단계에서의 최종 불용액은 696억원임. 동 내역사업 역시 단일 차종에 따른 수요 창출의 한계,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2021~2023년 수소차 보급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A)	추경	자치단체 교부액(B)	불용+ 이용	전년도 이월액(C)	교부현액 (B+C)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A)
2021	365,500	365,500	229,010	136,490	45,660	274,670	199,608	15,698	59,364	54.6
2022	679,505	454,505	288,813	165,693	15,698	304,510	243,748	23,698	37,064	35.9
2023	633,400	633,400	322,320	311,080	23,585	345,905	185,574	90,688	69,643	29.3

자료: 환경부

2023년 한 해에만 불용액이 6,563억원에 달하고, 실집행까지 고려하면 불용규모가 약 1조원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의 과다편성 및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다) 환경부의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실집행단계의 미집행액 9,680억원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집행되는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교부 및 위탁으로 인하여 2023년 말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잔액이 9,680억원에 달하는 비효율이 유발되고 있음.

환경부는 지자체의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하여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국고보조금과 매칭 지방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가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 또한 과다한 자금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액은 9,025억원인데, 집행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9,680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한국환경공단의 과다한 자금 보유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공단의 연말 보유자금은 2019년 1조 4,610억원에서 2023년 9,680억원으로 매년 그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2019~2023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자금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초 자금(A)	수령(B)	집행(C)	반환(D)	기타(E)	연말 자금 (A+B-C-D+E)
2019	1,565,621	665,809	715,483	90,666	35,747	1,461,028
2020	1,461,028	673,195	687,956	139,562	15,330	1,322,035
2021	1,322,035	797,422	743,602	78,547	16,764	1,314,072
2022	1,314,072	693,341	859,041	54,487	23,068	1,116,953
2023	1,116,953	798,073	902,518	96,309	51,824	968,023

주 1) 기타 = 예금이자 등
2)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액에는 동 사업 예산 집행액 외에 공단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출결산 내역과 차이가 있음

자료: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따라서 환경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지자체가 수탁사업자의 공정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자금을 공단에 위탁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실집행단계에서 5,491억원 이월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실집행단계에서 이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수탁기관으로 교부되고 있음.

어촌뉴딜300은 사업기간이 3년이고 연부율은 1차년도 15~35%, 2차년도 36~45%, 3차년도 20~49%[30]로 설계되었는데,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30%대 이하로 부진하여 2019년 이후 매년 최저 1,230억원, 최고 5,928억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2019~2023년 어촌뉴딜300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19	171,500	171,500	171,500	171,500	-	171,500	48,513	171,500	48,513	**122,985**	2	**28.3**
2020	430,500	430,500	430,500	430,500	122,985	553,485	166,867	430,500	99,460	**386,577**	41	**23.1**
2021	518,000	518,000	510,331	510,331	386,577	896,908	333,448	510,331	80,078	**561,026**	2,434	**15.5**
2022	514,500	514,500	474,492	474,492	561,026	1,035,518	434,648	474,492	80,078	**592,798**	8,071	**15.6**
2023	278,216	278,216	255,420	255,420	592,798	848,218	295,840	255,420	98,238	**549,089**	3,289	**35.3**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경우 매년 예산서에 어촌뉴딜300 사업의 차기이월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서 작성 시 이미 차기이월사업비가 확정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탁기관으로 교부되고 있음을 나타냄.

30) <어촌뉴딜300 사업 연부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9년 선정사업	35%	45%	20%
2020년 선정사업	25%	40%	35%
2021년 선정사업	20%	40%	40%
2022년 선정사업	15%	36%	49%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2024년 예산서 중 일부 발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예산(A)	2024예산(B)	증감(B-A)	%
차기이월	402,786	247,461	△155,325	△38.6%
□ 차기이월잉여금	1,447	1,619	172	11.9%
□ 차기이월사업비	**401,339**	**245,842**	**△155,497**	**△38.7%**

주) 어촌뉴딜300사업의 차기이월사업비 규모: 2023년 3,282억 3,600만원, 2024년 1,751억 2,600만원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미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매년 어촌뉴딜300 사업비 대부분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다시 어촌어항공단 등 수탁기관에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원이 특별한 용도 없이 공공기관 내에 유보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마)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실집행단계에서 3,008억원 이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민금융진흥원에 1회 전액 출연되어, 이 중 432억원만 실집행되고 미집행된 3,008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서 유보되는 비효율이 있었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2023년 내 가입자 수를 306만명, 예상 납입률을 80%로 예상하고 기여금 지원액을 3,440억 3,700만원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3년 말 가입계좌 수는 51만 1,000건, 해지계좌 및 특별중도해지자를 제외한 계좌 유지건수는 46만 9,000건에 불과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추계치의 15.3% 수준에 불과하였음.

이처럼 청년도약계좌의 추계치와 실적치의 차이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받은 기여금 3,440억 3,700만원 중 432억 2,100만원만 집행하고(실집행률 12.6%), 3,008억 1,600만원은 이월하였음.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재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344,037	344,037	344,037	344,037	-	-	43,221	344,037	43,221	300,816	-	12.6
인프라 구축	23,610	23,610	23,610	23,610	-	23,610	21,059	23,610	21,059	2,551	-	89.2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치금리가 높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이라는 의견이나,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한 만큼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도약계좌의 실제 가입실적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의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실제 사용되지 못할 예산이 출연기관에 유보되어 이자수익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바) 고용노동부의 5개 사업: 2년 연속 1조원 이상 불용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사업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에 실패하는 등 사업수요를 과다추계하여 2023년에만 1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불용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사례가 2년 연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31]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보험기금)’ 등 5개 사업은 2년 연속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로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2023년 8,8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1,696억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이 주된 사업내용인데, 고용유지율이 예상보다 낮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2022년에는 3,09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31)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을 통해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2023년 1조 7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152억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당초 계획 대비 사업참여 수요가 많지 않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며, 2022년에는 3,31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2023년 1조 2,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3,000억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역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6,12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고용노동부 집행부진 사업 중 3개 일반회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889,078	889,078	-	-	889,078	719,429	-	169,649	657,680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1,076,405	1,076,405	-	-	1,076,405	861,232	-	215,173	837,516
국민취업 지원제도	1,225,455	1,225,455	160	-	1,225,615	925,569	40	300,006	942,515

자료: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소관 사업인 위 3개 사업과 달리 이하 2개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소관 사업이나 동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므로,[32] 기금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이 기금 내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8,8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319억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국민에 대한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훈련기간이 장기과정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저조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827억원이 불용되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29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1,590억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

32) 2022년 1조 3,000억원, 2023년 3,000억원, 2024년 4,000억원

되었으나, 긴 지원기간(3년),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와 업무 변경 등을 이유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6,196억원이 불용된 바 있음.

[2개 고용보험기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내일배움카드	887,312	887,312	76	887,388	655,434	32	231,922	734,20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29,358	229,358	-	229,358	70,389	-	158,969	17,071

자료 : 고용노동부

(3)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재원의 불균형 및 개선방안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임.[33)]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재원이 기금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34)]

이처럼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별도의 수입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지출 간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33)「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4)「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나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① 보유재원이 과다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재원운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지출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반대로 ② 수입재원이 부족하거나 독립적인 재원을 지니지 못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민간에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가) 국민체육진흥기금(문체부): 과도한 여유재원 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당해연도 기금사업비의 1.5배 이상인 약 2.7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복권기금 전입금,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액 등을 재원으로, 생활체육·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육성 등에 지출하고 있음.

동 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2021년 1.7조원, 2022년 1.8조원, 2023년 1.6조원 등 약 1.7조원 내외에 머물고 있으나, 여유자금 규모(연중 평잔)는 2021년 0.9조원, 2022년 1.2조원, 2023년 1.7조원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나아가, 여유자금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잔액도 2023년 결산 기준 9,600억원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처럼 여유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2021년 5,200억원→2022년 5,600억원→2023년 7,000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수입-지출 불균형으로 인하여 과다재원 보유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을 확대할 것을 권고받았음.[35)]

이처럼 기금 여유재원이 과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 규모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구조적인 수입-지출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금의 여유재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를 확대할수록 체육진흥기금

35) 현재 중기가용자산 수준을 사업지출의 증가로만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액을 현재(2022년 말 기준 8,800억원)보다 증액하는 동시에 예탁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중기가용자산규모를 조정할 것을 권고함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p.117.

의 재원이 기금 설립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수입규모 조정 및 지출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 구조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최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차입을 통한 외부재원 조달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및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석유수입부과금 등 법정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원금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기술개발 등에 지출하는 것임.

2023년 기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조원 수준으로, 동 회계는 매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하고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규모는 2022년 0.4조원에서 2023년 1.2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2.2조원을 예수할 계획임.

이처럼 최근 들어 구조적인 수입-지출 불균형에 따라 차입을 통한 외부재원 조달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기부): 시급한 구조개선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융자사업의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부실률 증가로 재원부족 문제가 향후 더욱 악화될 전망이므로 신규 재원 발굴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융자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을 주된 자체수입원으로 하고, 일반회계전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해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고 있음.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결산내역]

(단위: 조원)

융자원금회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일반회계전입	기타	총계
2.7	3.0	0.6	0.6	6.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로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3년 기준 기금의 자산은 14.7조원, 부채는 20.7조원으로 순자산이 △6.0조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5.2조원 대비 0.8조원 적자가 심화된 것임.

또한 동 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은 20.6조원으로 2023년 기금사업비 규모인 4.0조원의 5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2.6조원을 추가로 예수할 계획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시행되었던 각종 대출의 거치기간(2년)이 도래함에 따라 부실률 또한 2021년 1.6%에서 2023년 10.0%로 급증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기금 사업비(결산 기준)	9.6	21.2	47.8	4.0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액	2.8	6.0	5.2	3.0
기금 순자산	△0.2	△2.4	△5.2	△6.0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이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하여 차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사업 부실에 따른 리스크 문제로 인하여 재원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또한 세입결손으로 인해 세수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현행 수입-지출 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재원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라)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자본잠식 해결 필요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은 자산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 자본잠식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은 모두 재무결산상 순자산이 음(-)의 값을 지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으며, 2022년 대비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3개 기금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국민건강증진기금	14,940	18,826	39,787	46,125	△24,847	△27,299
방송통신발전기금	5,800	4,429	15,074	16,859	△9,274	△12,430
정보통신진흥기금	3,082	2,068	24,760	28,936	△21,678	△26,86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수지 불균형 부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은 4.5조원에 이르러 2023년 사업비 지출규모인 3.7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분담금・주파수할당대가 및 R&D기술료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디지털뉴딜(ICT) 사업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기금의 순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23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은 1.3조원으로 2023년 사업비 지출규모 1.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R&D기술료 및 융자원금회수액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디지털뉴딜(ICT) 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차입이 이루어졌고, 2023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은 2.2조원으로 2023년 사업비 지출규모 1.3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재원 발굴 및 현행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마) 국제교류기금·질병퇴치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제도개편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 고려 필요

정부는 2024년 3월 부담금의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 정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제교류기금・질병퇴치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수입재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되므로, 기금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3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1개 부담금 중 총 32개 부담금을 폐지(18개) 또는 감면(14개)할 계획을 밝혔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담금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이들 부담금 중 상당수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 기금의 수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경우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① 외교부의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주된 수입재원인 ‘국제교류기여금’ 부담금을 약 20% 인하할 계획인데, 대체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금의 지출사업비 규모도 함께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② ‘출국납부금’의 정비로 인하여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은 폐지될 예정인데 해당 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들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역시 이로 인해 수입재원이 일부 감소할 전망이므로 지출사업 또한 함께 감축될 가능성이 있음.

③ 문체부의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주된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될 계획이며, 정부는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기금의 자체수입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 등 일반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기금재정의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있음.

정부는 위 부담금 폐지를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므로,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부담금의 경감 또는 폐지가 관련된 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부담금 정비와 관련된 주요 기금]

(단위: 억원)

부처	기금	부담금	부담금수입(2023)	기금사업비 규모(2023)	정비계획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국제교류기여금	675	631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유효기간 10년(1.5→1.2만원), 유효기간 5년(1.2→0.9만원)
외교부	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294	361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천원 인하(11→7천원)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하여 가족여행시 부담 경감 * (외교부) 1천원 → 폐지, (문체부) 1만원 → 7천원 (△3천원)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2,888	10,844	
문체부	영화발전기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63	696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잔액 미반납에 대한 관리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3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할 의무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해 차년도 중에 보조금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지자체보조사업이 완료, 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36]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28조 및 제31조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심사를 통해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납받도록 하고 있으며,[3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는 사업완료 차년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8]

그런데 반납해야 할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정산을 마무리한 이후에 잔액을 즉시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반납해야 할 규모가 정산결과와 달라지게 되므로, 보조금 잔액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반납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는 반납해야 할 것임.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3년 지자체보조사업의 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았고, 이 중 1,556억원은 2022년 이전에 징수결정되었음에도 미반납되었음.

2023년까지 잔액 반납 의무가 있는 지자체보조사업의 반납 현황을 보면, 23개 부처 총 1조 140억원이 연말까지 반납되지 않아 미수납처리되었으며,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5,552억원, 질병관리청 1,907억원, 환경부 664억원 등의 순으로 미수납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23년 징수결정액 3조 3,528억원 중 7,212억원(17.7%)은 과거연도 미반납에 대한 재징수 결정액으로, 이 중 1,556억원은 2023년 말까지 반납이 완료되지 못하였음.

지자체의 주된 미반납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 인데, 연말까지 추경편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미편성을 이유로 잔액을 반납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짐.

납기가 도래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주된 사유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1조 1억원)' 으로, 2023년 전체 미수납액 1조 1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반납 규모는 3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한 이후에 확정이 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반납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하여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 잔액을 반납하기 어렵다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예산 확정분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추경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연중에 필요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는 등 통상적으로 매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음. 따라서 연말까지 추경편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미편성을 이유로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보조사업 잔액 미반납 관행은 추경편성이라는 구조에 그 원인에 있기보다는 지자체의 반납 의지 부족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이 법률에 반하여 국고에 반납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에 비효율을 야기하고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 차원의 개별 사업별 반납 독려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보조금 잔액 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반납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재원이 국고로 수납되지 못하게 되면 국가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러한 미반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의 미반납 사유인 '지자체 예산 미편성'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개별 사업별로 반납을 독려할 계획만 밝히고 있음.

이처럼 지자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 예산 미편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예컨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나,[39] 국고보조금을 지자체 재원과 혼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미반납 보조금의 규모가 클수록 투명한 정산 및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보조사업의 잔액 미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보조사업의 잔액 미반납,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이와 달리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해서만 법률을 관용적으로 적용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39)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출연금 정산 의무화 필요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 또는 적립되고 있음.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40] 일반출연금(350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구분됨.

이 중 일반출연금은 非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 등으로 구분되며,[41]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로 정의되고,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됨.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에 관하여 출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처리하고 있음.[42]

반면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은 통일된 근거 법률이 없고,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사업출연금(350-02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법령이나 중앙관서의 지침에 의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43]

---

4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41)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 민간기금 출연금(350-04) 세목도 있으나 금융성기금 출연금은 금융성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출연금이고, 민간기금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금으로의 출연금이므로 다른 출연금과 성격과 달라 이하 검토에서 제외함.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 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4-2. 기타 출연금(350-01목, 350-02목, 360목)
나. 세부지침
○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이처럼 일반적인 규범이 부재함에 따라,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자체 정관에 따라 장기간 보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은 정산 없이 전액 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차년도로 이월 또는 적립되고 있고,[44]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지원하는 사업출연금의 경우 집행잔액이 정산 없이 이월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해당 이월금액의 사용실적이 전무함.[45]

이처럼 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모든 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며 사업출연금만 그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는 예산의 원칙 중 하나로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으며,[46] 이에 따르면 재정이 투입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예산과정의 투명성에 부합하는 집행이라 할 것임.

그런데 다른 재정활동과 달리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나 별도의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출연금도 다른 모든 재정활동과 동일하게 정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예산집행지침에서도 기관운영출연금과 달리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출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집행이 완료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야 할 것임.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ㅇ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44) 차년도 세입으로 산입된 사업출연금 잔액규모는 2021년 3억 7,600만원, 2022년 12억 3,200만원, 2023년 18억 9,700만원임.

45) 2021년 3억 5,700만원, 2022년 3억 9,800만원, 2023년 4억 9,000만원의 사업출연금 잔액이 이월되었으나 해당 금액은 기관 수입에 계상되지 않고 기관 내부에 유보된 상태임.

46)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출연금의 정산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출연금 집행 시 “투명성”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음.

나아가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하여만 단서조항을 달아 예외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율한 취지는,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출연금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없고 정산 및 반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예산집행지침은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 계상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범위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은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47] 이는 사업비 목적의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을 기관이 임의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출연금과 달리 사업종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액을 반납토록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임.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업출연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4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0)

ㅇ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은 제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2022.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상기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정산·회수 등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48] 따라서 연구개발출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일반적인 규율이 정립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출연금과 같은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앞서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출연금은 정산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을 정립하여 출연금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국민연금급여 과소추계에 따른 국가재정 규모 정보의 부정확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은 2년 연속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총지출 규모 등 적정수준의 재정총량을 도출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연금기금 사업으로서 2023년 예산은 36.2조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9조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39.1조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도 30.6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3.5조원을 증액하여 최종 34.1조원을 집행하였음.

4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 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26,603,440	26,601,911	-	26,601,911	25,654,071	96.4	96.4	-	947,840
2021	29,172,591	29,172,591	-	29,172,591	29,136,791	99.9	99.9	-	35,800
2022	30,608,472	34,127,303	-	34,127,303	34,020,076	99.7	99.7	-	107,227
2023	36,228,728	39,085,909	-	39,085,909	39,040,227	99.9	99.9	-	45,68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기재정전망과 달리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인해 계획보다 급여액이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였다는 입장이나, 계획액 대비 집행액 오차율이 2020년 3.6%, 2021년 0.1%로 낮게 나타나던 상황에서 2022년 11.1%, 2023년 7.8%로 최근 2년 사이 오차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재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규모를 정확히 추계할 유인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으나, 과소추계로 인해 큰 규모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국가재정 총 규모가 과소추계 됨으로써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목표로 할 적정 재정규모를 산출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시하였는데, 만약 2024년에도 과거와 같이 약 3조원의 과소추계 경향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총지출 규모는 659.9조원, 총지출 증가율은 3.3%가 되어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제시한 값보다 0.5%p나 상승하게 됨.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급여지급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문제사업 및 개선과제

이하에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 법령 등 회계질서를 위반한 사례, 재정제도 개선과제 등 2023회계연도 재정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문제사업 및 개선과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검토하였음.

(1) 비효율적인 집행 등

(가) 비효율적인 집행

일부 부처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여 투입된 재정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거나,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을 지출한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가 있었음. 또한, 일부 부처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등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제작한 방사성제논탐지 장비가 연구부정행위로 인하여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2023년 내부감사를 통해 발견하고 다른 유사장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가용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관련 예산 10억 9,000만원을 전액 불용함으로써 장비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2023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되었음.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2018년까지 2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국내기술로 개발된 방사성제논탐지장비 국내에서 제작하여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에 시스템 구축비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내부감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당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6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활용 여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였음.

이에 해당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구축 또한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수단으로 다른 유사장비의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도입에 실패하고 해당 예산 10억 9,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개발 사업 및 개발된 장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2023년 방사성제논탐지장비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전면 무산되고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3년부터 5년간 투입한 연구개발비 23억원 또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되었음.

둘째, 농림부는 지방비 100%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저수지 또는 담수호의 수혜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본조사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농림부는 2023년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에서 기본조사지구 7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수혜면적이 50ha 미만인 1개 지구가 포함되었고, 해당 사업의 기본조사비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을 배정하지 않고 불용하였음.

이처럼 국고보조 사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였음.

셋째, 국가유산청은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 6억원에 달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1호는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즉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49]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당초 '경복궁종합정비' 세부사업에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를 위한 비용만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타 내역사업[50]의 집행잔액 일부(4억 100만원)와 4억 7,000만원을 전용을 통해 조달하여 총 8억 7,1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행사비에 충당하였으며, 이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51]

---

4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50) 영훈당 권역 복원 내역사업

또한 국가유산청은 행사의 긴급성 및 보안성을 이유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6억 3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계획에 없는 신규사업 추진에 왜 ‘긴급성’이 필요하였는지, 행사 추진에 어떠한 ‘보안성’이 요구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52]

51)「국가재정법」제46조제3항제1호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됨.

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 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정성·투명성·신뢰성·형평성 등 제고 필요

사업대상 선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예고 없이 중단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된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첫째, 통계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위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하여, 특정 기관이 통계청의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 장기간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시를 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통계청은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 고시)」 에 의해 위탁사업 및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동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53] 또한, 2018년 고시 제정 당시 위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였음.[54]

그런데 2018년 통계청은 고시에 따라 위탁사업을 공고하면서, 그 범위로 통계간행물 발간 및 관리, 통계작성 및 홍보, 통계교육, 통계품질진단, 국제협력 등 “통계발전지원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사실상 이는 통계법상 통계청이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중 정보화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무임.[55]

---

53)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사업위탁 및 계약)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54) 이후 2021년 12월 고시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였음.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통계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5)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37조(위임 및 위탁)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 · 진흥 · 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수탁기관 선정 시 이처럼 포괄적 범위의 업무를 ‘통계발전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공고함에 따라 (재)한국통계진흥원이 단독 응찰하여 5년간 사업자로 선정되었음. 만약 위탁사무의 범위를 개별 사무로 분할하여 공고하였다면 특정 위탁사업에 특화된 다양한 기관이 지원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나, 통계청은 하위 행정규칙인 고시를 근거로 특정 단체에게 포괄적인 사무를 장기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외적인 수의계약을 일반적인 용도로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소방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마음건강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해당 사실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해 국가지원을 기대했던 소방관들이 자부담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국가정책의 신뢰도가 저해되었음.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세부사업 내 ‘마음건강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 사업은 소방관 개인의 상담·검사·진료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5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음.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사업수요가 예산을 초과하게 되자 소방청은 지원사업을 종료하였으며, 325건 1,823만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등을 지원하지 못하였음. 이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원종료가 사업수혜자인 소방관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지원을 기대하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던 소방관들이 자부담으로 진료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이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향후 소방청이 주관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셋째, 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친환경설비투자’ 사업추진 과정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하였음에도 수입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부 예산의 집행을 차년도로 연기하여 연내 융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 사업대상자들의 자금운용계획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음.

환경부는 2023년에 당초 계획액 1,00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친환경설비투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166억원을 이월하였음.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융자기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에 융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음에도 기후대응기금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융자금 중 일부를 연내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자금운용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음.

넷째, 금융위원회의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고정된 목표금리와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출금리의 차이를 모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금융기관이 금리를 높게 설정할수록 금융기관의 이익이 커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 270억원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은 목표금리를 2.5%로 고정하고, 각 대출건별로 실제 대출금리와 목표금리 간 차이를 이차보전 지원분으로 계상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처럼 이차보전율을 목표금리에 맞추어 개별 대출 건별로 연동하는 지원방식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종 대출금리가 2.5%로 고정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경쟁을 통해 수급자를 유치하려는 유인이 제공되기 어렵고,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할수록 이차보전 지원규모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높일 유인이 존재하게 됨.

이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보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 대출금리인 3.80%의 약 2배에 가까운 7%가 넘는 금리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음.

[2023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평균 산출금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정 방식					
은행명	최종대출금리 (A)	지원금리 (B)	미지원금리 (C)	평균 산출금리 (A+B+C)	대상 자금
SC	2.5	0.91	0.39	3.80	6,222
경남		1.27	0.54	4.31	60,671
광주		3.20	1.37	7.07	6,894
국민		2.61	1.12	6.23	138,489
농협		2.27	0.97	5.74	145,659
대구		1.49	0.64	4.63	61,582
부산		1.38	0.59	4.47	116,091
수협		3.04	1.30	6.84	3,607
신한		2.38	1.02	5.90	264,519
씨티		2.15	0.92	5.57	3,275
우리		2.40	1.03	5.93	193,967
전북		1.90	0.81	5.21	7,319
제주		2.52	1.08	6.10	3,308
하나		2.24	0.96	5.70	282,209
대상자금 가중평균		2.18	0.96	5.61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이차보전율을 목표금리에 맞추어 개별 대출 건별로 연동하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타 금융기관 대비 평균 산출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의 지원금 청구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법령 등 회계질서 위반

(가) 「국가재정법」 위반

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이월 요건 위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임.[56]

‘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음. 이월은 국가재정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명시이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비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경우에는 이월요건이 보다 제한적임.[57][58]

이하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그 예외인 이월 요건을 위반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함.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감소로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1억원의 재원 없는 이월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전년도 국회 결산

---

5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5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8)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정요구와도 상충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이월 요건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만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은 주된 수입원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급감에 따라 수입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174억원)’,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101억원)’, ‘친환경설비투자(166억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4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수입재원 부족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이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할 수 없으며, 해당 예산은 불용처리했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을 차년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음.

한편,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법적 근거 없는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미 발생한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에 대해서는 2023년도 수입 여건을 고려하여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올해 중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주의)”을 채택하였음에도 2022년 421억원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되었음.

둘째, 새만금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이월사유와 맞지 않고, 이월을 하여도 2024년에 집행이 불투명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예산을 이월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은 2021년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맞추어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4억 1,300만원 중 1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음.

새만금청은 MP 초안이 2024년 상반기 내 도출될 경우 변경된 지표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월하였다고 설명하나, 해당 사유는 「국가재정법」상 이월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MP 변경이 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월한 금액이 2024년에 집행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임.

따라서 해당 예산은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새만금청은 이와 같은 이월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은 사업개시연도 3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n년도 예산이 (n+1)년도에도 집행되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현금(계좌이체)에서 바우처로 변경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는데,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2024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등이 차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충분한 활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육급여 바우처는 일단 신청하고 나면 실제 사용기간은 장시간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에 맞게 조정하여 국회 결산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이·전용 규정 위반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확정한 취지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국가재정법」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59] 또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위하여 이용과 전용 등의 제도를 둠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음.

이하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해당 원칙의 예외인 이·전용 요건 등을 위반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봄.

첫째, 정부는 연중 225억원을 전용 등을 통해 조달하여 46개 부처에서 1,950여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5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1호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정부는 2023년 1월 46개 부처에 총 2,000명의 청년인턴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용 등을 통해 약 225억원의 예산을 조달하여 연중 청년인턴 채용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4,770명을 선발하기 위하여 본사업 예산으로 626억원을 편성하였음.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인턴 사업의 효과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전용은 「국가재정법」상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금지 규정에 위배되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과를 검증한 후 차년도 예산에 본사업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연중에 46개 부처에서 일괄 추진할 시급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둘째, 외교부는 국회 감액 사업에 대하여 전용을 통해 증액 집행함으로써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2호는 예산의 전용이 불가한 경우로서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전용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됨.

그러나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세부사업 중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내역사업에 대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집행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 개최를 이유로 동 내역사업을 전용을 통해 5,65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음.

외교부는 향후 예산을 국회가 심의·확정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③ 연중 계획변경을 통한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의 적정성 검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연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금번 사례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민간의 재원이 국가재정 운용목적으로 활용되는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법정부담금)이 당초 계획 대비 적게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연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음.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각호 및 제3항에 따라 우체국보험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와 적립금 운용수익금, 회계의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순보험료란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으로서 민간 고객에게 지급될 예정인 보험료를 의미함.[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용도에 '국가에 대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61]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한 선례도 있으므로,[62] 적립금의 차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63] 이러한 국채 및 차입금 한도액 규정은 무분별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6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6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62) 1999년 2,000억원, 2000년 3,999억원, 2001년 3,000억원, 2002년 5,787억원, 2003년 4,036억원, 2004년 1,669억원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되었음.

63) 「국가재정법」

국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에 통제하려는 데 있음.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에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부재함.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제9조 2023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9,0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2,7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따라서 개별법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달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매년 예산총칙에 차입금 등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 선례가 금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가 국가에게 있고,[64] 동 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므로,[65] 당해 대출은 ‘차입금’이 아닌 ‘회계·기금 간 거래’에 해당하여 차입금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는 「국가재정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므로 그 실질은 민간이 조성한 재원이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시 적용되는 ‘예수금(94항)’ 예산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정부외부로부터의 차입 시 적용되는 ‘민간차입금(82항)’ 예산과목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 · 차입금(외국정부 ·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6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6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따라서 금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금번 사례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민간의 재원을 국가재정 운용목적으로 활용되는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나) 개별법령 위반

개별 법률이나 시행령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주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첫째, 개별법률에서 조정·심의·심판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제6항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71건 중 109건(위반비율 63.7%)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위반비율은 2020년 48.8%, 2021년 30.8%, 2022년 36.2% 등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

②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제38조제3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처분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감사원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재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474일로 법정기한인 60일의 7배를 상회하고 있고,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213일, 2021년 294일, 2022년 325일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③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업무인 조세심판은 「국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2023년 172일로서 법정기한의 약 2배에 이르고 있고, 2020년 178일, 2021년 196일, 2022년 234일 등 매년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정처리기한의 위반은 주로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원인

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정은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법률에 처리기한을 명시한 것은 이해당사자 등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기한 준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지출토록 하고 있으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대상에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지출을 하였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하고 있음.[66]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사업(944억원)을 집행하면서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사업 중 채널진출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20% 이내 범위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접객효과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확대될 수 있고, 중소기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중소기업 지원의 간접적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부적절한 집행이라 할 것임.

(다) 예산집행지침 위반

예산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으로,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 및 자체 이용·전용권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2023년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되는 주요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함.

첫째, 예산집행지침은 공사비 낙찰차액의 임의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타 용도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사비·정보화사업·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공사비의 경우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없이 임의집행한 경우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제재조치를 요구토록 하고 있음.[67]

그런데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여러 부처에서 위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청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3,400만원을 문 교체 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p.220~221.)

관세청도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 중 1억 4,700만원을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둘째, 예산집행지침은 보조사업 수행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부처에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교부하여 실집행단계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음.

예산집행지침은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토록 하고, 엄격한 사전 검토를 거쳐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음.[68]

마. 낙찰차액 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낙찰차액 처리
ㅇ 중앙관서의 장은「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총사업비관리지침」제26조(낙찰차액 감액)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는「총사업비관리지침」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에 한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당해연도 종료월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ㅇ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관리지침」제111조(지침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 부과 또는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2.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 포함)

68)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17)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부처에서 위 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단계에서 예산의 이월 등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① 보건복지부의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감염병 환자 치료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긴급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민간자본보조), 2023년 예산액 2,570억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탁비용 2억 1,000만원에 그쳤음.

보건복지부는 6월과 8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추진부터 완공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자금을 전액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2,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유발하였음.

② 교육부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을 집행하면서 2023년 3,837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였으나, 연말 실집행액은 2,213억원으로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57.7%에 그쳤음. 결과적으로 약 1,624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교부되었음. 특히 동 사업의 국비보조율은 30%이고, 지방비 부담률이 70%여서 실제 총사업비의 실집행률은 36.8%로 나타나, 비효율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임.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연수사업’ 집행 과정에서 2023년 6월 강원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 사업 예산 200억원 전액을 강원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교부할 것을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됨. 또한, 실제 집행된 금액은 교부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48억 8,000만원으로서 집행되지 못할 자금이 불필요하게 일시 교부되었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지자체보조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70억 4,100만원 중 63억 8,600만원이 교부되었음.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단계에서 집행이 부진한데,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2023년 34.0%에 불과함. 또한, 매년 실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액도 다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새로운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교부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예산집행지침은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포상금 성격의 승

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예산집행지침은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고 규율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69]

국세청은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승소한 경우에 포상 성격으로서 ‘승소장려금’ 을 포상금(310-03목) 목에서 지출하고 있는데(2023년 5억 8,200만원), 법령에 승소장려금의 지급근거 및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세청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되므로,[70]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후 지급할 필요가 있음.

(3) 재정제도 개선과제

(가) 예비비사용명세서 분기별 제출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같이 분기별로 그 집행내역을 연중에 국회에 제출토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목적과 내용 없이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71]

---

6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6.

70)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 ①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마다 승소금액비율과 승소노력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세부지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승소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 제55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제60조의2(소송사무의 점검) 규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지급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승소장려금의 개인별 지급한도액은 연간 1,600만원으로 한다.

7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비총괄명세서를 차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그 때 공개되어 해당 시점부터 국회의 심의를 받아 사후승인을 얻게 됨.[72]

국회의 연도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35건, 2021년 22건, 2022년 27건 등 매년 다양한 시정요구가 채택되고 있음. 이처럼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는 것은 사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국회로부터 심의받지 않고 정부가 포괄적인 재량을 지니고 집행한다는 예비비의 성질에도 원인이 있으나, 예비비 집행내역이 차년도에 가서야 공개됨에 따라 예비비 집행 당시에는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차년도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예비비의 지출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인 점도 있음.

정부는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집행은 정부의 권한 사항이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차년도에 사후적 통제한다는 원칙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현행 예비비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집행이 정부의 권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재정통제 및 견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집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중에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토록 한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내역의 국회 제출' 제도라는 선례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예비비 또한 연중에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토록 할 경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73]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6.27.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8월 현재 심사 중에 있음.[74]

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72)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7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배정내역 분기별 제출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수시배정 지정내역 및 그 사유를 연중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와 달리 해당 예산을 배정·집행하지 않는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토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배정' 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75)]

예산집행지침은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은 정부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국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수시배정 제도' 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함.

그러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수시배정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위임규정을 두고 하위법령에 명확히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집행과정에서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수시배정 지정 사유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타당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등 12인) : 2024.6.24. 제안, 의안번호 2200863호

75)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예산의 배정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집행 단계에서의 국회의 재정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이미 국회가 심의한 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이·전용내역 및 기금운용계획변경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이라는 동일한 취지에서 수시배정내역 또한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수시배정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76]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다) 현물출자 국회 관리강화방안 마련 필요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국회는 이를 다음연도 결산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제60조[77]에 따르면 정부는 ①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②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음.

2023년에 정부는 총 2조 8,228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 각각 유가증권 2조원과 유가증권 4,350억원을 출자하였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SR에 각각 건물 288억원과 유가증권 3,590억원을 출자하였음. 또한 정부는 2024년에도 6월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4조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각각 2조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출자하였음.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78]에 따라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등 10인) : 2022.4.29. 제안, 의안번호 2115447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등 11인) : 2022.6.15. 제안, 의안번호 2115962호

77)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8) 「국가재정법」

로 처리할 수 있어 정부는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사전에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물출자는 지분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출자대상이 현물인 점 외에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2018년 이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액
2018	한국해양진흥공사	유가증권	13,500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970
	소 계		24,470
2021	한국자산관리공사	유가증권	6,500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차량정비기구 등	1,80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03
	소 계		8,707
2022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5,650
	한국자산관리공사	유가증권	5,00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25
	소 계		11,075
2023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20,000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4,35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288
	㈜ SR	유가증권	3,590
	소 계		28,228
2024.6.	주택도시보증공사	유가증권	40,000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20,000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20,000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현행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관한 국회의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79]과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80]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라) 기금 이월명세서의 국회 제출

세출예산과 달리 기금은 이월명세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국회에서 기금 이월 사유별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기금 이월명세서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세출예산(지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함.

또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81]은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의 보고서에 이월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이월명세서에는 부처별 세출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이월액 및 불용액과 함께, 부처별・회계별로 사유별 이월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세입세출결산과 달리 동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수입지출결산 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월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금지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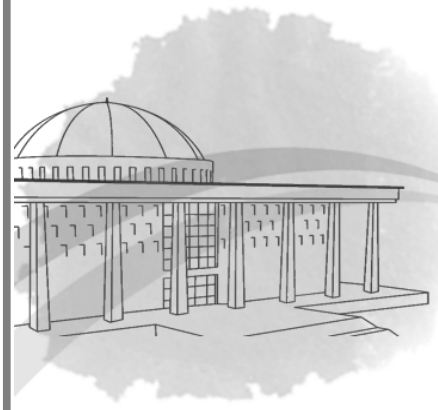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등 10인) : 2021.1.25. 제안, 의안번호 2107629호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1인) : 2022.10.17. 제안, 의안번호 2117836호

81)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이월명세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세출예산과 같이 결산보고서를 통해 이월규모 및 사유별 이월내역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회의 결산심사 내실화를 위해 기금지출 이월명세서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재정총괄 검토



1. 재정건전성

가. 개 요

(1)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GDP 대비 △1.6%)로 예산 대비 23.7조원 악화되고 전년보다는 27.8조원 개선된 것임.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0.3조원 흑자(GDP 대비 2.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예산 대비 5.1조원 개선되고 전년보다는 2.2조원 악화된 것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87.0조원 적자(GDP 대비 △3.9%)로 나타났으며, 적자규모는 예산 대비 28.8조원 크고 전년보다는 30.0조원 감소한 것임.

[2023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64.6 (△3.0)	△13.1 (△0.6)	△36.8 (△1.6)	△23.7 (△1.1)	27.8 (1.3)
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GDP 대비)	52.5 (2.4)	45.1 (2.0)	50.3 (2.2)	5.1 (0.2)	△2.2 (△0.2)
Ⅲ.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17.0 (△5.4)	△58.2 (△2.6)	△87.0 (△3.9)	△28.8 (△1.3)	30.0 (1.5)

주) 명목 GDP는 2024년 3월 5일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2022년 2,161.8조원, 2023년 2,236.3조원(잠정)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지가 각각 48.4조원 흑자, 0.6조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4.3조원, 1.2조원 악화되었으며,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각각 1.4조원, 1.1조원 흑자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2.8조원, 0.5조원 개선되었음.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 결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합 계	52.5	45.1	50.3	5.2	△2.2
○고용보험기금	△1.4	0.8	1.4	0.6	2.8
○국민연금기금	52.7	44.1	48.4	4.3	△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6	0.2	△0.6	△0.8	△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0.6	0.0	1.1	1.1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제91조제2항·제3항[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다만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발행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부는 부채의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고 있음.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나, 중앙정부 기금 중

1)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하고 있음.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미지급금·예수금 및 선수금 등 발생주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함.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포함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음.

[부채의 유형별 개념 및 활용]

유형	규모(2022년)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067.4조원 (49.4%)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157.2조원 (53.5%)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588.7조원 (73.5%)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26.7조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하였으며,[2] 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7.6조원 적고 전년 대비 59.0조원 증가한 것임.[3]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4]로 구성되고, 이 중 중앙정부 채무가 1,092.5조원으로 국가채무의 9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9.2조원 적고 전년 대비로는 59.1조원 증가하였음.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지방정부 순채무는 잠정적으로 34.2조원으로 예산 기준보다 1.6조원이 많고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할 전망임.

2) 참고로, 한국은행은 6월 5일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공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도 2023년 50.4%에서 46.9%로 하락하게 되며,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3.9%에서 △3.6%로 개선됨. 다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기준연도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3년 지방정부 순채무 잠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정부 순채무 확정치에 따라 2023년 국가채무 확정 규모도 변동될 수 있음.

4) 지방정부 순채무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됨.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D-A)
		예산 (B)	결 산 (D)	예산 대비 (D-C)	
□ 국가채무(A+B, 잠정)	1,067.4	1,134.4	1,126.7	△7.6	59.0
(GDP 대비, %)	(49.4)	(50.4)	(50.4)	(△0.1)	(1.0)
○ 중앙정부 채무(A)	1,033.4	1,101.7	1,092.5	△9.2	59.1
■ 국 채	1,031.5	1,100.3	1,091.1	△9.2	59.6
- 국고채권	937.5	999.0	998.0	△1.0	60.5
- 국민주택채권	82.2	86.8	81.6	△5.2	△0.5
- 외평채권(외화)	11.8	14.5	11.5	△3.1	△0.3
■ 차입금	1.9	1.2	1.2	-	△0.7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2	-	0.1
○ 지방정부 순채무(B)	33.9	32.6	34.2	1.6	0.3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됨.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보면, 적자성 채무가 전년 대비 47.4조원 증가한 726.4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성 채무는 전년보다 9.0조원 증가한 400.3조원으로 나타났음.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가 660.1조원으로 예산 기준 대비 3.5조원, 전년 대비 54.3조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금융성 채무 중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무가 예산 기준 대비 27.7조원, 전년 대비 14.7조원 각각 감소하였고, 서민주거 안정 등 채무가 예산 기준 대비 15.0조원, 전년 대비 23.8조원 각각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067.4	1,134.4	1,126.7	△7.6	59.4
○ 적자성 채무(A)	676.0	721.3	726.4	5.1	47.4
(구성비)	(63.3)	(63.6)	(64.5)	(0.9)	(1.2)
- 일반회계적자보전	605.8	656.6	660.1	3.5	54.3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70.1	64.7	66.3	1.6	△3.8
○ 금융성 채무(B)	391.3	413.0	400.3	△12.7	9.0
(구성비)	(36.7)	(36.4)	(35.5)	(△0.9)	(△1.2)
- 외환시장 안정	265.7	278.7	251.0	△27.7	△14.7
- 서민주거 안정 등	125.6	134.4	149.4	15.0	23.8

주) 지방정부순채무(2023년 잠정치 34.2조원)는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국채전환 등'에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중앙정부 채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채가 전년 대비 59.6조원 증가한 1,091.1조원으로, 이 중 국고채권이 전체 국채의 91.5%인 998조원으로 전년 대비 60.5조원 증가하였음. 국고채권 중에서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이 660.1조원으로 전년 대비 54.3조원 늘었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권이 239.5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조원 감소하였으며, 그밖에 공적자금상환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국고채권이 전년보다 20.6조원 증가한 98.4조원이었음.

[2023년 국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증감(B-A)
	규모(A)	구성비	규모(B)	구성비	
▣ 국 채	1,031.5	100.0	1,091.1	100.0	59.6
ㅇ 국고채권	937.5	90.9	998.0	91.5	60.5
일반회계(적자보전)	605.8	58.7	660.1	60.5	54.3
외국환평형기금(예탁)	253.9	24.6	239.5	22.0	△14.4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77.8	7.5	98.4	9.0	20.6
ㅇ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8	1.1	11.5	1.1	△0.3
외화표시	11.8	1.1	11.5	1.1	△0.3
ㅇ 국민주택채권	82.2	8.0	81.6	7.5	△0.5
제1종 국민주택채권	82.2	8.0	81.6	7.5	△0.5
제2종 국민주택채권	0.0	0.0	0.0	0.0	△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또한 국채 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화표시) 발행규모가 11,5조원, (제1종)국민주택채권 발행실적이 81.6조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3조원, 0.5조원 감소하였음.

차입금은 전액 국내차입금으로 전년 대비 0.7조원 감소한 1.2조원을 기록하였음.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전년 대비 각각 0.1조원 증가한 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총 0.9조원을 상환함으로써 전체적인 차입금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2023년 차입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차입금	1.9	100.0	1.2	100.0	△0.7
ㅇ 국내차입금	1.9	100.0	1.2	100.0	△0.7
국민체육진흥기금	0.9	46.2	1.0	79.7	0.1
국제교류기금	-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	0.1	4.1	0.1
기술보증기금	0.2	10.2	0.2	16.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5	27.8	-	-	△0.5
신용보증기금	0.3	13.1	-	-	△0.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1	2.6	-	-	△0.1

주) 해외차입금은 2016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전년 대비 0.14조원 증가한 0.2조원으로서, 이는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 공여협정 이행을 목적으로 1억 1,600만달러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증가한 것임.

[2023년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증감(B-A)
	규모(A)	구성비	규모(B)	구성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0.05	100.0	0.20	100.0	0.14
ㅇ 일반회계	0.00	0.0	0.14	72.2	0.14
기획재정부	-	-	0.14	72.2	0.14
ㅇ 특별회계	0.05	100.0	0.05	27.8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0.05	100.0	0.05	27.8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나. 검토의견

(1) 관리재정수지 개선 노력 강화 필요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6%로 전망하였으나, 세수부족 등에 따라 2023년 관리재정수지가 △3.9%를 기록하였고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를 GDP 대비 △3.9%로 조정하는 등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 대비 악화된 상황이므로, 세수확충 및 재정지출 절감 등 관리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예산 대비 51.8조원 감소한 573.9조원, 총지출은 예산보다 28.0조원 감소한 610.7조원을 기록하였음.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로 예산 기준 전망치 대비 23.7조원 적자가 증가하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예산 대비 흑자규모가 5.1조원 늘어난 50.3조원을 기록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예산 기준 전망치 58.2조원 적자보다 28.8조원 악화된 87.0조원 적자로 나타났음.

[2023회계연도 재정총량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 산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총 수 입	617.8	625.7	573.9	△51.8	△43.9
총 지 출	682.4	638.7	610.7	△28.0	△71.7
통합재정수지	△64.6	△13.1	△36.8	△23.7	27.8
(GDP 대비)	(△3.0)	(△0.6)	(△1.6)	(△1.1)	(1.3)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2.5	45.1	50.3	5.1	△2.2
(GDP 대비)	(2.4)	(2.0)	(2.2)	(0.2)	(△0.2)
관리재정수지	△117.0	△58.2	△87.0	△28.8	30.0
(GDP 대비)	(△5.4)	(△2.6)	(△3.9)	(△1.3)	(1.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관리재정수지가 예산 기준 대비 악화된 이유는 국세수입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서 총수입이 예산보다 51.8조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의 감소폭은 28.0조원으로 총수입 감소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국민연금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흑자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전년 대비 2.8%p 개선된 △2.6%로 전망하였으나,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총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를 기록해 당초 전망치 대비 1.3%p 악화되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1.5%p 개선된 것에 그쳤음.

또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전망치가 GDP 대비 △2.5%였으나, 정부는 2023년에 세수여건이 악화되자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를 GDP 대비 △3.9%로 수정하였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치 변화]

(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본예산	추경					
관리재정수지	2022~2026년 계획 (GDP 대비)	△94.1 (△4.4)	△110.8 (△5.1)	△58.2 (△2.6)	△58.6 (△2.5)	△57.4 (△2.3)	△56.6 (△2.2)	
	2023~2027년 계획 (GDP 대비)			△58.2 (△2.6)	△92.0 (△3.9)	△72.2 (△2.9)	△69.5 (△2.7)	△65.8 (△2.5)
통합재정수지	2022~2026년 계획 (GDP 대비)	△54.1 (△2.5)	△70.4 (△3.3)	△13.1 (△0.6)	△14.0 (△0.6)	△13.7 (△0.6)	△13.4 (△0.5)	
	2023~2027년 계획 (GDP 대비)			△13.1 (△0.6)	△44.8 (△1.9)	△22.9 (△0.9)	△19.2 (△0.7)	△14.6 (△0.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특히 현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재정기조를 확장재정 →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설명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의 안착을 위해 준칙한도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에 한도를 명시하는 등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22년 9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GDP 대비 △3%로 하되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는 경우 GDP 대비 △2%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음.

[2023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중 '재정혁신' 주요 내용]

건전재정 기조의 안착을 위해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 국제기준에 맞춰 준칙한도를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에 한도를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구속력 확보 추진
- 다만,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준칙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준칙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 예정

※ 금년(2022년) 정기국회 내 준칙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중 '재정혁신' 부분 일부 발췌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따른 목표인 △3%를 초과한 △3.9%를 기록하였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을 2023년 실적보다 23.2조원 늘어난 367.3조원으로 추계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9%로 전망하였으나, 2024년 6월 말 기준 국세수입 누계액이 168.6조원으로서 전년 동기 실적(178.5조원) 대비 10.0조원 감소하고 있어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세수확충 및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증가속도 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필요

국가채무 중에서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므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증가속도 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환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등 금융성 채무는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환율이나 부동산가격 등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채무발생 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현금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적자성 채무보다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또한 적자성 채무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수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이와 달리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규모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 의지 및 재정운용의 결과가 반영되며, 대응자산이 없어 결국 미래세대의 국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할 수밖에 없음.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간 국가채무(D1)의 증가현황을 보면, 2012년 말 443.1조원에서 2023년 말 1,126.7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8.9% 증가하였으며,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0.8%에서 2023년 50.4%로 크게 상승하였음.

국가채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1.5% 증가하여 금융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5.5%의 2배를 상회하였으며, 적자성 채무 중에서도 일반

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가 연평균 14.5% 증가해 국가채무 및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2~2023년 국가채무(D1) 성질별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7	1,126.7	8.9
(GDP 대비 %)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6)	(43.8)	(46.7)	(49.4)	(50.4)	-
적자성 채무	220.0	253.1	286.4	330.8	359.9	374.8	379.2	407.6	512.7	597.5	676.3	726.4	11.5
(비중)	(49.6)	(51.7)	(53.7)	(55.9)	(57.4)	(56.8)	(55.7)	(56.4)	(60.6)	(61.6)	(63.3)	(64.5)	-
일반회계 적자보전	148.6	172.9	200.6	240.1	271.3	289.6	300.4	334.7	437.5	523.1	605.8	660.1	14.5
(비중)	(33.5)	(35.3)	(37.6)	(40.6)	(43.3)	(43.9)	(44.1)	(46.3)	(51.7)	(53.9)	(56.7)	(58.6)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71.4	80.2	85.9	90.7	88.6	85.1	78.8	72.9	75.2	74.4	70.5	66.3	△0.7
(비중)	(16.1)	(16.4)	(16.1)	(15.3)	(14.1)	(12.9)	(11.6)	(10.1)	(8.9)	(7.7)	(6.6)	(5.9)	-
금융성 채무	223.1	236.7	246.7	260.6	267.0	285.4	301.3	315.6	333.9	373.2	391.3	400.3	5.5
(비중)	(50.4)	(48.3)	(46.3)	(44.1)	(42.6)	(43.2)	(44.3)	(43.6)	(39.4)	(38.4)	(36.6)	(35.5)	-
외환시장 안정	153.0	171.0	185.2	198.3	209.8	222.3	234.9	247.2	256.4	263.8	265.7	251.0	4.6
(비중)	(34.5)	(34.9)	(34.7)	(33.5)	(33.5)	(33.7)	(34.5)	(34.2)	(30.3)	(27.2)	(24.9)	(22.3)	-
서민주거 안정 등	70.1	65.7	61.6	62.3	57.2	63.1	66.4	68.5	77.5	109.3	125.6	149.4	7.1
(비중)	(15.8)	(13.4)	(11.5)	(10.5)	(9.1)	(9.6)	(9.8)	(9.5)	(9.2)	(11.3)	(11.8)	(13.3)	-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국가채무 1,417.6조원의 68.3%가 적자성 채무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7.5%는 같은 기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5.8%, 금융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2.9%를 크게 상회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3~2027년 국가채무(D1) 유형별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예산	결산					
국가채무	1,134.4	1,126.7	1,196.2	1,273.3	1,346.7	1,417.6	5.8
(GDP 대비)	(50.4)	(50.4)	(51.0)	(51.9)	(52.5)	(53.0)	-
적자성 채무	721.3	726.4	792.4	849.8	910.4	968.6	7.5
(비중)	(63.6)	(64.5)	(66.2)	(66.7)	(67.6)	(68.3)	-
금융성 채무	413.0	400.3	403.7	423.5	436.3	449.0	2.9
(비중)	(36.4)	(35.5)	(33.8)	(33.3)	(32.4)	(31.7)	-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23년 결산 대비 2027년 국가채무(전망)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첨부서류「국가채무관리계획」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고 향후에도 다른 국가채무 유형보다 증가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국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정부의 정책의지 및 재정운용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증가속도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속도에 관한 지속적 점검 필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22년 53.5%를 기록하였고 이는 2018년 40.0%보다 13.5%p 상승한 것으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반정부 부채 증가속도에 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정부)부채에 관한 통계는 국가채무(D1)가 아닌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국제적 비교를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순채무를 제외하면 다음연도 5월 말에 확정되는 국가채무(D1)와 달리 일반정부 부채(D2)의 확정적인 통계는 다음다음연도 12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1,157.2조원으로 GDP 대비 53.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 51.3%보다 2.2%p, 2018년 40.0%보다 13.5%p 상승한 것임.

[주요 국가의 2018~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단위: %)

구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호주	41.8	46.7	57.2	55.9	50.7
캐나다	90.8	90.2	118.9	115.1	107.4
프랑스	97.8	97.4	114.7	113.0	111.8
독일	61.9	59.5	68.7	69.0	66.1
이탈리아	134.4	134.1	154.9	149.9	144.4
일본	232.4	236.4	258.6	255.1	260.1
한국	**40.0**	**42.1**	**48.7**	**51.3**	**53.5**
네덜란드	52.4	48.5	54.7	51.6	50.1
스웨덴	39.2	35.5	39.8	36.4	32.7
스위스	39.8	39.6	43.2	41.1	40.9
영국	85.2	84.5	104.6	105.2	101.9
미국	107.4	108.7	133.5	126.4	121.3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2023.12.)

주요 국가의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 260.1%, 이탈리아 144.4%, 미국 121.3%, 캐나다 107.4%, 프랑스 111.8%, 영국 101.9%로 100%를 상회하는 반면, 스웨덴 32.7%, 스위스 40.9%, 호주 50.7%, 독일 66.1%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2018년 40.0%에서 2022년 53.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전체적인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등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부채의 증가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음.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4.4.)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3년 55.2%에서 2029년 59.4%로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향후에도 정부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 국가의 2023~2029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

(단위: %)

국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7년	2029년
한국	**55.2**	**56.6**	**57.3**	**57.9**	**58.4**	**58.9**	**59.4**
일본	252.4	254.6	252.6	251.3	251.0	251.0	251.7
이탈리아	137.3	139.2	140.4	142.6	143.1	144.7	144.9
미국	122.1	123.3	126.6	128.9	130.7	132.6	133.9
프랑스	110.6	111.6	112.8	113.4	114.1	114.6	115.2
캐나다	107.1	104.7	102.1	100.2	98.6	97.1	95.4
영국	101.1	104.3	106.4	107.3	108.3	109.2	110.1
독일	64.3	63.7	62.3	61.0	59.8	58.7	57.7
스웨덴	35.9	36.0	35.0	34.0	33.0	32.3	31.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4.4.)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정부 부채 증가 추이 및 속도에 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연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소관 '기타민간차입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당초 계획액은 없었으나 계획변경을 통해 2,500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음.[5)]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 결산]

(단위 : 백만원)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A)							
-	250,000	-	250,000	250,000	250,000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중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법정부담금)이 당초 계획 대비 적게 수납될 것을 예상하고, 그 대안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여유자금 2,000억원을 활용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근거함.[6)]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각호 및 제3항에 따라 우체국보험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와 적립금 운용수익금, 회계의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순보험료란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으로서 민간 고객에게 지급될 예정인 보험료를 의미함.[7)]

---

5) 정보통신진흥기금 - 기타민간차입금(82-824)(정보통신산업정책관)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현황]

구분	내용
차입기간	ㅇ 2023.11.23. ~ 2026.11.22. (36개월)
차입금액	ㅇ 250,000백만원
이자율	ㅇ 연 4.04%, 고정 금리
이자납부방식	ㅇ 2024.1.25. 최초 납부 이후 매 3개월마다 납부 -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상환방식	ㅇ 3년 거치 후 차입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용도에 '국가에 대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8]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한 선례도 있으므로,[9] 적립금의 차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국가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0]

이러한 국채 및 차입금 한도액 규정은 무분별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국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에 통제하려는데 있음. 그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에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없었음.

---

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9) 1999년 2,000억원, 2000년 3,999억원, 2001년 3,000억원, 2002년 5,787억원, 2003년 4,036억원, 2004년 1,669억원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되었음.

10)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 · 차입금(외국정부 ·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제9조 2023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9,0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2,7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따라서 개별법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달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매년 예산총칙에 차입금 등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 선례가 금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가 국가에게 있고,[11] 동 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므로,[12] 당해 대출은 ‘차입금’이 아닌 ‘회계·기금 간 거래’에 해당하여 차입금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는 「국가재정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므로 그 실질은 민간이 조성한 재원이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시 적용되는 ‘예수금(94항)’ 예산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정부 외부로부터의 차입 시 적용되는 ‘민간차입금(82항)’ 예산과목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의 차입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금번 사례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민간의 재원을 국가재정 운용목적으로 활용되는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

1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5)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상 국가채무 범위 통일 필요

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각각 제출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의 '국가채무' 범위가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같이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13]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4항[14]은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하고,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포함하고 있음.

다만,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결산 관련 정부 보도자료[15]에는 '지방정부 순채무'[16]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는 반면,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는 지방정부 순채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 채무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명시된 국가채무의 범위 및 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결산 관련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2023년 국가채무가 1,126.7조원(GDP 대비 50.4%)이나 2023년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따른 국가채무는 1,192.5조원(GDP 대비 48.9%)으로 지방정부 순채무 잠정치 규모만큼의 차이가 있음.

---

1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14)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4.4.11.)

16) 지방정부 순채무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됨.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비교]

(단위: 조원, %, %p)

구 분	국가채무관리계획상 국가채무(A)	국가채무관리보고서상 국가채무(B)	차이 (B-A)
□ 국가채무	1,126.7	1,192.5	34.2
(GDP 대비, %)	(50.4)	(48.9)	(△1.5)
○ 중앙정부 채무	1,092.5	1,192.5	-
■ 국 채	1,091.1	1,091.1	-
- 국고채권	998.0	998.0	-
- 국민주택채권	81.6	11.5	-
- 외평채권(외화)	11.5	81.6	-
■ 차입금	1.2	1.2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
○ 지방정부 순채무	34.2	-	△34.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다음연도 5월 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지방정부 순채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상 국가채무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므로 지방정부 순채무도 결국에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 순채무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국가채무의 규모를 산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1997년 이후 매년 지방정부 순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한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각종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지방정부 순채무 확정치가 집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순채무 잠정치를 기준으로 국가채무(D1)를 집계할 수 있을 것임.[17)]

따라서 정부는 국가채무의 범위 및 관련 통계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순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한 국가채무(D1) 기준으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지방정부 순채무의 잠정치와 확정치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국가채무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2. 재정수입 결산

가. 개 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수입은 573.9조원으로 예산액 625.7조원 대비 51.8조원(△8.3%)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전년 실적 617.8조원보다 43.9조원(△7.1%) 감소하였음

국세수입은 344.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실적 395.9조원 대비 51.9조원(△13.1%) 감소하였고, 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14.1%)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국세외수입 중 예산수입 수납액은 28.5조원으로 전년 실적 30.8조원 대비 2.3조원(△7.5%) 감소하였으며, 예산 25.0조원 대비 3.5조원(14.0%) 초과 수납되었음. 기금수입은 201.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실적 190.8조원 대비 10.3조원(5.4%) 증가하였고, 당초 계획액 200.3조원 대비 0.8조원(0.4%) 초과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		결산 (C)	본예산 대비 (C-A)	추경 대비 (C-B)	예산(D)	결산 (E)	예산 대비 (E-D)	전년 대비 (E-C)
	본예산 (A)	추경 (B)							
총수입	553.6	609.1	617.8	64.2	8.7	625.7	573.9	△51.8	△43.9
1. 국세수입	343.4	396.6	395.9	52.6	△0.7	400.5	344.1	△56.4	△51.9
2. 국세외수입	210.2	212.4	221.5	11.4	9.1	225.2	229.6	4.3	8.1
- 예산수입	26.1	28.3	30.8	4.7	2.4	25.0	28.5	3.5	△2.3
- 기금수입	184.1	184.1	190.8	6.7	6.7	200.3	201.1	0.8	10.3
3. 세입세출외	-	-	0.3	0.3	0.3	-	0.3	0.3	△0.0

주) 세입세출외는 국고금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나. 국세수입

(1) 현황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전체 국세수입의 97.0%인 333.9조원이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1조원임.[1]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3조원, 전년 대비 51.2조원이 각각 적게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0.1조원, 전년 대비 0.6조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예산 (A)	결산 (B)	추경예산 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 대비 (D-C)	전년 대비 (D-B)
총국세	396.6	395.9	△0.7	400.5	344.1	△56.4	△51.9
일반회계	386.2	385.2	△1.1	390.3	333.9	△56.3	△51.2
특별회계	10.4	10.8	0.4	10.2	10.1	△0.1	△0.6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세목별 2023년도 수납실적을 보면, 소득세가 115.8조원으로 예산 대비 16.0조원, 전년 대비 12.9조원 감소하였고, 소득세 중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예산 대비 12.2조원, 전년 대비 14.7조원 적게 수납된 17.6조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음.

또한 법인세는 80.4조원으로 예산 대비 24.6조원, 전년 대비 23.2조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73.8조원으로 예산 대비 9.4조원, 전년 대비 7.9조원 감소하였고, 이밖에 전년 대비 감소폭이 큰 세목은 관세(△3.0조원), 종합부동산세(△2.2조원), 과년도수입(△1.6조원) 등이 있음.

반면, 전년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세목은 소득세 중 이자소득세(+2.6조원)와 근로소득세(+1.7조원), 사업소득세(+0.3조원) 등이 있고, 이밖에 교육세(+0.5조원), 상속증여세(+0.04조원)도 전년보다 수납액이 증가하였음.

1) 특별회계 국세수입: 주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실적 (A)	2023년		2022년 실적대비		2023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D)	증감액 (E=D-A)	증감률 (E/A)	증감액 (F=D-C)	증감률 (F/C)
총국세	3,959,393	4,004,570	3,440,711	△518,682	△13.1	△563,859	△14.1
○ 내국세	3,522,750	3,579,676	3,060,595	△462,155	△13.1	△519,081	△14.5
1.소득세	1,287,486	1,318,632	1,158,330	△129,156	△10.0	△160,302	△12.2
신 고 분	561,722	544,452	389,928	△171,794	△30.6	△154,524	△28.4
-종합소득세	239,389	247,255	214,368	△25,021	△10.5	△32,887	△13.3
-양도소득세	322,333	297,197	175,560	△146,773	△45.5	△121,637	△40.9
원 천 분	725,764	774,180	768,402	42,638	5.9	△5,778	△0.7
-이자소득세	26,277	26,934	52,068	25,791	98.2	25,134	93.3
-배당소득세	41,577	49,745	40,623	△954	△2.3	△9,122	△18.3
-사업소득세	40,962	45,490	43,665	2,703	6.6	△1,825	△4.0
-근로소득세	574,418	606,216	591,442	17,024	3.0	△14,774	△2.4
-연금소득세	3,656	4,903	4,562	906	24.8	△341	△7.0
-기타소득세	22,572	24,577	24,028	1,456	6.5	△549	△2.2
-퇴직소득세	16,301	16,315	12,014	△4,287	△26.3	△4,301	△26.4
2.법인세	1,035,704	1,049,969	804,195	△231,509	△22.4	△245,774	△23.4
3.상속증여세	145,940	171,274	146,341	401	0.3	△24,933	△14.6
4.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737,749	△78,517	△9.6	△94,286	△11.3
5.개별소비세	93,182	101,943	88,209	△4,973	△5.3	△13,734	△13.5
6.증권거래세	63,029	49,739	60,803	△2,226	△3.5	11,064	22.2
7.인지세	7,988	8,158	7,969	△19	△0.2	△189	△2.3
8.과년도수입	73,155	47,926	56,999	△16,156	△22.1	9,073	18.9
○ 교통세	111,164	111,471	108,436	△2,728	△2.5	△3,035	△2.7
○ 관세	103,241	107,237	72,883	△30,358	△29.4	△34,354	△32.0
○ 교육세	46,444	47,022	51,516	5,072	10.9	4,494	9.6
○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45,965	△22,023	△32.4	△11,168	△19.5
○ 방위세	9	-	1	△8	△88.9	1	-
○ 주세	37,665	32,151	35,686	△1,979	△5.3	3,535	11.0
○ 농특세	70,132	69,880	65,628	△4,504	△6.4	△4,252	△6.1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로, 정부는 2023년에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 대비 크게 저조함에 따라 국세수입 재추계를 실시하여 2023년 9월에 발표하였으며, 재추계 결과인 341.4조원과 비교해서는 국세수입이 2.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국세수입 예·결산내역 및 재추계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 (A)	2023년도 재추계(B)	2023년도 결산(C)	증감			
				예산 대비	%	재추계 대비	%
총 국 세	4,004,570	3,413,896	3,440,709	△563,861	△14.1	26,813	0.8
[일반회계]	3,902,539	3,311,102	3,339,395	△563,144	△14.4	28,293	0.9
◇ 내 국 세	3,579,676	3,031,216	3,060,595	△519,081	△14.5	29,379	1.0
ㅇ 소 득 세	1,318,632	1,142,039	1,158,330	△160,302	△12.2	16,291	1.4
■ 종 합 소 득 세	247,255	211,498	214,368	△32,887	△13.3	2,870	1.4
■ 양 도 소 득 세	297,197	174,825	175,560	△121,637	△40.9	735	0.4
■ 근 로 소 득 세	606,216	586,113	591,442	△14,774	△2.4	5,329	0.9
ㅇ 법 인 세	1,049,969	796,171	804,195	△245,774	△23.4	8,024	1.0
ㅇ 상 속 증 여 세	171,274	137,944	146,341	△24,933	△14.6	8,397	6.1
ㅇ 부 가 가 치 세	832,035	739,029	737,749	△94,286	△11.3	△1,280	△0.2
ㅇ 개 별 소 비 세	101,943	89,693	88,209	△13,734	△13.5	△1,484	△1.7
ㅇ 증 권 거 래 세	49,739	64,602	60,803	11,064	22.2	△3,799	△5.9
ㅇ 인 지 세	8,158	7,743	7,969	△189	△2.3	226	2.9
ㅇ 과 년 도 수 입	47,926	53,995	56,999	9,073	18.9	3,004	5.6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	108,377	108,436	△3,035	△2.7	59	0.1
◇ 관 세	107,237	72,598	72,883	△34,354	△32.0	285	0.4
◇ 교 육 세	47,022	52,254	51,516	4,494	9.6	△738	△1.4
◇ 종합부동산세	57,133	46,657	45,965	△11,168	△19.5	△692	△1.5
[특별회계]	102,031	102,793	101,314	△717	△0.7	△1,479	△1.4
◇ 주 세	32,151	34,904	35,686	3,535	11.0	782	2.2
◇ 농어촌특별세	69,880	67,889	65,628	△4,252	△6.1	△2,261	△3.3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최근 10년간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은 2014년 153.1조원에서 2023년 270.0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3대 세목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2014년 74.5% → 2019년 77.2%)하다가 2020년에 74.8%, 2021년 74.3%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 79.3%로 크게 상승한 후 2023년에 78.5%로 소폭 감소하였음.

[최근 10년(2014~2023)간 국세수입 대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세수입(A)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소득세 수입(B)	53.3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7.8	115.8
비중(B/A)	25.9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법인세 수입(C)	42.7	45.0	52.1	59.2	70.9	72.2	55.5	70.4	103.6	80.4
비중(C/A)	20.8	20.7	21.5	22.3	24.2	24.6	19.4	20.5	26.2	23.4
부가가치세 수입(D)	57.1	54.1	61.8	67.1	70.0	70.8	64.9	71.2	81.6	73.8
비중(D/A)	27.8	24.9	25.5	25.3	23.8	24.1	22.7	20.7	20.6	21.4
소계(E=B+C+D)	153.1	159.8	182.4	201.4	225.4	226.6	213.5	255.7	313.4	270.0
비중(E/A)	74.5	73.4	75.2	75.9	76.8	77.2	74.8	74.3	79.3	78.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예산 기준 3대 세목의 규모는 320.0조원으로, 이는 전체 국세수입 예산 400.5조원의 79.9%에 해당하나, 3대 세목에서 각각 결손규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78.5%로 감소한 것임.

(2) 검토의견

(가) 국세수입 오차 과다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23년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결손(56.4조원)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일부 미집행되는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추계모형 고도화, 국내외 주요 전문가 및 기관과 협업 강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4조원이 감소한 344.1조원으로 본예산 기준 오차율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오차 비율로는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세 번째 높고, 절대 규모로는 두 번째 높은 수치임.

[2014~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본예산(A)	216.5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추경예산(B)	216.5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결산(C)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차이	본예산 대비 (C-A)	△10.9	△3.3	19.6	23.1	25.4	△1.3	△6.5	61.3	52.6	△56.4
	추경 대비 (C-B)	△10.9	2.2	9.9	14.3	25.5	△1.3	5.8	29.8	△0.7	2.7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5.1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추경 대비 [(C-B)/B]	△5.1	1.0	4.2	5.7	9.5	△0.5	2.1	9.5	△0.2	0.8

주) 2023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에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주요 사유는 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하였던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실제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예를 들어, 정부는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상성장률을 4.5%, 실질성장률을 2.5%, 민간소비증가율을 3.2%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2023년 경상성장률은 3.4%, 실질성장률 1.4%, 민간소비증가율 1.8%를 기록하는 등 정부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차이는 세목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거래량·기업의 영업실적 및 수입규모 등에도 직·간접

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3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및 실제 통계 비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3년 전망 (A)	2023년 실제 통계 (B)	차이(B-A)
경상성장률(%)	4.5	3.4	△0.9%p
실질성장률(%)	2.5	1.4	△0.9%p
GDP 디플레이터(%)	2.0	1.9	△0.1%p
민간소비증가율(%)	3.2	1.8	△1.4%p
소비자물가상승률(%)	3.0	3.6	0.6%p
취업자증감(만명)	32.0	32.7	+0.7

주) 2023년 경상성장률은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2023년에 국세수입 결손규모가 가장 컸던 세목은 법인세(△24조 5,774억원), 양도소득세(△12조 1,637억원), 부가가치세(△9조 4,286억원), 관세(△3조 4,354억원)로서, 주요 수입감소 사유는 양도소득세가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 감소, 법인세는 기업 영업실적 악화,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수입액 감소였음.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관세 수입감소 주요 사유]

구 분	2023년 예산 대비 수입 감소 주요 사유
법인세	○ 예산 대비 24조 5,774억원(△23.4%) 감소: (주요 사유) 2022~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2021) 119.7 → (2022) 81.7 (△31.8%) (2022 상반기) 63.6 → (2023 상반기) 18.8 (△70.4%)
양도소득세	○ 예산 대비 12조 1,637억원(△40.9%) 감소: (주요 사유)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 -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021.11~2022.10) 72.4 → (2022.11~2023.10) 48.9 (△32.4%)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021.11~2022.10) 57.1 → (2022.11~2023.10) 53.0 〈△7.1%〉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예산 대비 부가가치세 9조 4,286억원(△11.3%) 감소, 관세 3조 4,354억원(△32.0%) 감소 - 수입액 변동: (2022) 7,314억 달러 → (2023) 6,427억 달러 (△12.1%)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1회계연도에 국세수입 오차가 크게 발생하자 2022년 2월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에도 세수추계 모형 개선,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국제기구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정부「세제 업무 개선방안」주요 내용]

1 (모형)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2 (절차)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 경제분야별 자문기관 다양화, 지표별 복수기관의 전망치 활용 √ 추계모형 고도화 및 지속 검증 √ 회귀모형 보완 위한 추세선(trend-line) 분석 도입	√ 집단지성 활용을 위해 세제실內「조세심의회」도입 √ 타실국, 징수기관 등 소통·협업 강화 √「세수추계위원회」신설로 외부전문가 검증 강화
3 (점검)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4 (평가)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
√ 이상징후 대응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경기변동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 성과평가 Pass/Fail 시스템 도입 √ 원인분석 등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보도참고: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2022.2.11.

[정부의 세수추계 개선방안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정부의 세수추계 개선방안 관련 주요 내용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관련 설명자료 (2022.8.)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일부 자산세수의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 - 회귀모형을 단순화하고 세무조정 등 국세통계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산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관련 설명자료 (2023.8.)	- 올해 세수 전망치를 토대로(최신 정보 반영)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지표-세수 간 관계 체계적 반영)하여 내년 세수추계 - 변동성이 큰 상장기업의 실적 추정시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한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 활용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23.9.)	-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통해 세목별 추계모형 발전,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 강화 -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 강구 -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국세수입 오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국회는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수오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세수입 추계모형 정합성을 확보하고 검증절차를 개선하며, 중립적인 세수전망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등 세수 추계모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2)]

2) 2021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수오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2022회계연도 결산: 1)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변동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8월 재추계 시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한 세목들의 추계모형을 재점검하며, 추계모형을 개선하였음에도 재추계 오차가 더 커진 세목의 경우 그 이유를 점검하여 보완할 것(제도개선), 2)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세수입 추계모형 정합성을 확보하고 검증절차를 개선하며, 중립적인 세수전망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등 세수 추계모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시정)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개선방안 발표 및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에 국세수입 오차규모가 △56.4조원, 오차율이 △14.1%로 나타났음.

2024년 6월 기준 국세수입 현황을 보더라도 누계액이 168.6조원으로 전년 동기(178.5조원) 대비 10.0조원 감소하는 등 세수오차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3)]

[2024년 6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 세목	2023년 실적	2024년 예산	6월까지 누계			6월 진도율		
			2023년	2024년	증감	2023년	최근5년	2024년
■ 총 국 세	344.1	367.3	178.5	168.6	△10.0	51.9	52.6	45.9
■ 일반회계	333.9	356.1	173.6	163.5	△10.1	52.0	52.7	45.9
○ 내국세	306.1	321.6	160.5	150.9	△9.6	52.4	53.4	46.9
- 소득세	115.8	125.8	57.9	58.1	0.2	50.0	52.0	46.2
- 법인세	80.4	77.7	46.7	30.7	△16.1	58.1	57.9	39.5
- 상속증여세	14.6	14.7	7.9	7.9	△0.0	54.2	51.6	54.0
- 부가가치세	73.8	81.4	35.7	41.3	5.6	48.3	48.8	50.7
- 개별소비세	8.8	10.2	4.4	4.4	△0.0	49.9	49.3	42.8
- 증권거래세	6.1	5.4	3.0	2.7	△0.3	49.4	52.6	50.5
- 인지세	0.8	0.9	0.4	0.4	0.0	48.2	49.7	50.3
- 과년도수입	5.7	5.7	4.4	5.4	1.0	78.1	82.9	95.5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5.3	5.3	5.3	0.0	48.9	50.2	34.9
○ 관세	7.3	8.9	3.5	3.3	△0.2	48.3	50.0	37.3
○ 교육세	5.2	6.2	2.7	2.8	0.1	51.5	51.0	44.8
○ 종합부동산세	4.6	4.1	1.6	1.2	△0.4	35.4	22.6	28.8
■ 특별회계	10.1	11.2	5.0	5.0	0.1	48.9	49.9	45.1
○ 주세	3.6	3.6	1.7	1.6	△0.1	48.8	50.1	45.1
○ 농특세	6.6	7.6	3.2	3.4	0.2	49.0	49.3	45.1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2023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예산보다 적게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세수오차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 국내외 주요 전문가 및 기관과 협업 강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저조사유는 소득세가 기업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법인세는 사업실적 저조, 관세는 수입액 감소임.

(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및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필요

첫째, 2023년과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4]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으로 전망되며,[5] 2024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1조원으로 2023년 전망치 대비 7.6조원 증가하고, 주요 증가항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3.6조원), 근로·자녀장려금(+0.9조원), 연금계좌세액공제(+0.2조원)가 있음.

[연도별 국세감면율 추이(2022~2024)]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잠정	2024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63.5	69.5[1)]	77.1
○ 국세수입총액[2)] (B)	422.9	369.1	394.9
○ 국세감면율 [A/(A+B)]	13.0	15.8[1)]	16.3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3)]	14.6	14.3	14.6

주 1) 2023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은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작성한 2023년 전망치이며, 2024년 8월에 2023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이 확정될 예정임
2)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4.3.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6]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2023년 확정적인 국세감면액은 2024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6)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

수입총액[7]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2년 실적은 13.0%인데 반해, 2023년과 2024년 전망치는 각각 15.8%, 2024년 16.3%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출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를 1.5%p, 2024년에도 법정한도 잠정치인 14.6%를 1.7%p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8]

2018년 이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2019년과 2020년도 있으며, 2019년에는 법정상한 13.3%를 0.6%p 상회한 13.9%, 2020년에는 법정한도 13.6%보다 1.2%p 높은 14.8%를 기록하였음. 당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긴 하였으나 2023년 잠정치 15.8%, 2024년 전망치 16.3%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세감면율이 15.0%를 상회하는 것은 2023년이 처음인 상황임.

[2018년 이후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수입액 실적과 전망치]

(단위: 억원, %)

구 분	2018실적	2019실적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잠정	2024전망
조세지출규모	439,533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4,988	771,144
국세수입액	2,935,704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690,578[1)]	3,949,465
국세감면율	13.0	13.9	14.8	13.5	13.0	15.8	16.3
법정상한	14.0	13.3	13.6	14.3	14.6	14.3	14.6

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른 금액으로 2024년 3월 기준 잠정치에 해당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에는 당초 예산 기준 국세수입총액이 428.6조원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14.3%보다 낮은 13.9%로 전망하였으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모수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한 것인 반면, 2024년에는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2022년 대비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국세감면 규모를 크게 늘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8)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2021~202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도출되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2024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확정치도 8월에 도출될 예정임.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규정한 취지는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법정한도 설정을 통해 국세감면액을 적정 규모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9)]

그럼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2회계연도 연속 초과하는 것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규정한 취지,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2021년 75.0%, 2022년 87.5%, 2023년 85.7%로 나타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10)]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현황을 보면, 실시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이고, 면제건수는 2018년 9건,

---

9) 최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크게 늘렸던 2022년보다 2023년에 재정수지가 개선되긴 하였으나, 2023년 예산 대비 결산 기준 재정수지는 총수입 감소에 따라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 기준으로 총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을 증가시킴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3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도 2022년 1,067.4조원, 2023년 1,126.7조원, 2024년 예산 기준 1,195.8조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7건, 2023년 6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건수가 실시건수보다 많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면제 비율이 각각 87.5%, 85.7%로 나타나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2018년 이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비타당성평가대상(A)	10	5	5	4	8	7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2	3	1	1	1
예비타당성평가 면제(B)	9	3	2	3	7	6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제1호					
면제 비율(B/A)	90.0	60.0	40.0	75.0	87.5	85.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은 6건 중 4건이 "타당성 낮음"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정도로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도입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건의 대부분에 대해 평가를 면제한 후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매년 2건씩 실시하는 것으로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1건씩만 실시하였음.

[2020~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연도	과제명	수행기관	평가기간	평가결과
2020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2.~2020.9.	타당성 낮음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한국개발연구원	2020.2.~2020.9.	타당성 낮음
2020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2.~2020.9.	일부 도입 타당
2021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2.~2021.9.	도입 타당
2022	선박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한국개발연구원	2022.1.~2022.9.	타당성 낮음
2023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2023.1.~2023.9.	타당성 낮음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에 규정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제1호가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면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건은 모두 제1호가 적용되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법률안 의결 전에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제도개선)을 의결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자체평가하여 법률안 의결 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완료(2021.11.17.)”한 것으로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도 2023년까지 매년 예비타당성평가를 대부분 면제한 채 1회씩만 실시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11]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비타당성평가를 2건 수행하는 등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2023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조세특례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준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시정요구 목적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의 최소화에 있는 것임에도 예비타당성평가를 대부분 면제하고,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시정요구를 준수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특히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1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역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 적용 등을 통해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1)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세감면 제도 도입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차년도 예산안 제출시 세입예산안에는 반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신규 조세특례의 내역과 면제 사유를 첨부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 의결되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조특법상 면제요건·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

1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향(비상경제장관회의, 2022.9.)의 주요 내용은 ⅰ)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 ⅱ)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실시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이 불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세입결손 대응방안 검토

(가) 세입결손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

2023년에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2023년 9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재정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등 기금 여유재원 활용(24조원 내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부세등”) 미집행(23조원 내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활용(4조원 내외), 기타 통상적 불용(8조원 내외)으로 제시하였음.

[2023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대응방향]

구 분	주요 내용	규모
기금 여유재원 활용	-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최대 20조원) - 그밖에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 공자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 등 조정	24조원 내외
지방교부세·교부금 불용	-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 세계잉여금(7조원) 등 활용하여 보전	23조원 내외
세계잉여금 활용	- 일반회계 2.75조원, 특별회계 1.2조원 내외	4조원 내외
기타 통상적 불용	- 2021년 3.7조원, 2022년 7.9조원 불용	8조원 내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2023.9.18.)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정부는 2023년에 세수부족에 따라 실제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총 18.6조원 미집행(불용)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4.4조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대상액 중 7.8조원을 상환유예하였음.

이외에도 국세수입 결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예산을 1.5조원 불용하였고,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예산 중 1.9조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중 3.3조원을 각각 불용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

[2023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주요 대응조치]

구 분	주요 내용	규모
지방교부세· 교부금 불용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18.6조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 일반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 불용	14.4조원 1.5조원
내부거래 불용	-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유예 -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불용	7.8조원 1.9조원
세계잉여금 활용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활용	4.0조원
예비비 불용	- 일반회계 예비비 불용	3.3조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는 국채 발행규모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부 부득이한 점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등을 대규모 미집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지방교부세등 불용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특별교부세(금) 배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등을 사전에 정산하여 예산보다 덜 지급한다는 이유로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 예산 75조 7,607억원의 13.7%인 10조 3,970억원과 2023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 75조 2,883억원의 10.9%에 해당하는 8조 1,689억원을 각각 불용하였음.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 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보통교부금	73,533,444	73,533,444	63,416,456	-	10,116,988	66,338,469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68,167	668,167	458,158	-	210,009	600,426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22,722	222,722	152,719	-	70,003	200,14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336,333	1,336,333	1,336,333	-	-	1,200,852
합 계	**75,760,666**	**75,760,666**	**65,363,666**	**-**	**10,397,000**	**68,339,88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보통교부세	66,644,552	66,644,552	59,475,700	-	7,168,852	59,843,917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24,469	824,469	824,469	-	-	740,337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06,117	206,117	206,117	-	-	185,084
부동산교부세	5,713,300	5,713,300	4,713,300	-	1,000,000	4,109,80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30,586	1,030,586	1,030,586	-	-	925,421
소방안전교부세	869,242	869,242	869,242	-	-	954,765
합 계	**75,288,266**	**75,288,266**	**67,119,414**	**-**	**8,168,852**	**66,759,32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등을 미지급한 사례는 2013년과 2014년에도 있었음. 2013년에는 총 1조 5,13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5,000억원을 불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1조 5,000억원을 이월하였으나, 2023년과 같이 대규모 미집행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고 볼 수 있음.

[2010년 이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집행내역]

(단위: 억원)

연도	구분	미집행 합계	이월액	불용액
2013	계	20,130	15,130	5,000
	지방교부세	10,130	7,630	2,5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00	7,500	2,500
2014	계	15,000	15,000	-
	지방교부세	7,500	7,5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00	7,500	-
2023	계	185,659	-	185,659
	지방교부세	81,689	-	81,6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3,970	-	103,97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등이 예산액만큼 집행될 것을 전제로 지방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지방교부세등 미지급으로 상당규모의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

또한 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13]과 세계잉여금(7조원)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적립규모가 적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한편「지방교부세법」제4조제2항[14]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97:3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하나, 2023년에 보통교부세에서만 불용액이 발생하고 특별교부세는 전액 집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별교부세는 법정비율인 3%보다 높은 3.3%가 배분되어「지방교부세법」제4조제2항이 준수되지 못하였음.[15]

---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4)「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16]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제1호), 지역현안(제2호), 재난안전관리(제3호)에 각각 60%, 30%, 10%를 교부하여야 하나, 2023년에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만 예산액 전액이 교부되었고 지역현안과 재난안전관리는 각각 2,100억 900만원, 700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023년 특별교부금 집행액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68.6%가 배분된 반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23.5%,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7.8%가 교부되어 법정배분비율이 준수되지 못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대비 교부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A)	비율	최종 교부액(B)	비율	미교부액(A-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100%	65,363,666	100%	10,397,000
○ 보통교부금	73,533,444	97.1%	63,416,456	97.0%	10,116,988
○ 특별교부금	2,227,222	2.9%	1,947,210	3.0%	280,012
- 국가시책	1,336,333	(60.0%)	1,336,333	(68.6%)	0
- 지역현안	668,167	(30.0%)	458,158	(23.5%)	210,009
- 재난안전	222,722	(10.0%)	152,719	(7.8%)	70,003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023년 초에 각각 특별교부세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고 그 이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등 불용이 발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배분비율이 지켜지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등 불용으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준수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5) 참고로,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동되어 내국세 수입의 97%를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는 포함되지 않음.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세수결손 대응 목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을 대규모로 조기상환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적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17]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방안 중 하나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최대 20조원)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중 14조 4,0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음.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세수입 결손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원활한 외국환거래 지원'이라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본래적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프로그램 지출액을 당초 계획액 대비 14조 4,000억원(28.9%)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18]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17)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18)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제출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한도(계정성 기금은 프로그램 지출규모의 20%)를 초과한 것임.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프로그램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프로그램명	2023계획			
		당초(A)	수정(B)	증감(B-A)	증감률
자체변경 (2023.10.24.)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49,801,850	64,201,850	14,400,000	+28.9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차입금과 예수금은 둘 다 빌린 자금으로서 실질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도 타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4호다목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해당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당 조항은 '예수원금'이 아닌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및 개인 등 정부 아닌 주체로부터 빌린 자금인데 반해, '예수금'은 정부내부적으로 회계-기금간 또는 기금간거래를 통해 빌린 자금으로 각각 통용되고 있으며, 외국환평형기금도 '기금간거래(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과 '차입금원금상환'을 별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또한 예산집행지침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차입금과 예수금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19] 차입금의 대상은 모두 정부 외부로서 내부거래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20] 예수금의 대상은 "타 회계 또는 기금" 등 정부 내부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21]

「국가재정법」에 사용된 '차입금'의 개념도 대부분 예산집행지침과 마찬가지로 정부 외부로부터의 차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재정법」 제18조는 국회의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19) 국내차입금 상환(510-01목), 해외차입금 상환(510-02목), 예수금 원금 상환(510-04목)

20) 국내차입금 상환(510-01목)의 대상은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차입금, 국공채, 한국은행 차입금 6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해외차입금 상환(510-02목)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차관, 기타 해외채무로서 정부 내부거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1) "510-04 예수금 원금 상환
1.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88.)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세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면서,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의 개념에 정부 내부거래인 예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90조제4항제3호[22]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의 차입금에 예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그 외의 「국가재정법」상 차입금에는 예수금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제70조제5항[23]은 기금관리주체가 제3항제4호다목(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명세서에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3항제4호다목의 차입금을 국채 발행 및 상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수금과는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 제91조제3항제3호[24]는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차입금'에 대한 해석은 「국가재정법」의 조항의 취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임.[25]

---

22)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24)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5)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의 채무관리 효율화라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의 채무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상환한 것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국가채무의 구성내역은 ‘차입금’의 개념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오히려 ‘차입금’이 정부 외부로부터 조달한 재원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재정법」상 ‘차입금’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보다는 사전에 제출 여부에 대하여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수보전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한도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을 유예했으나, 이는 향후 일반회계의 이자상환부담을 증가시키고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이 추가되어 미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26]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4조 4,843억 2,100만원 중 5조 9,056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40.8%)되고 8조 5,787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14,484,321	14,484,321	-	-	14,484,321	5,905,619	-	8,578,702	18,262,006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불용액의 90.5%에 해당하는 7조 7,674억원은 2023년에 지급했어야 할 예수이자 중 세수부족에 따라 상환유예한 것으로,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자상환유예는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27]에 근거하였고 2014년에도 예수이자상환 유예 후 2016년에 전

26) 일반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711-871)

27)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액 상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2023년 월별 예수이자상환유예 규모]

(단위: 억원)

납부(예정)월	3월	6월	9월	12월	합계
금액	-	4,603	31,594	41,477	77,674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와 같은 이자상환유예는 추후 일반회계의 예수이자상환 규모를 증가시켜 일반회계의 재정여력을 구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비용도 추가되어 미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향후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유예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세외수입

(1) 현황

총수입 기준 2023회계연도 국세외수입 수납실적은 229.6조원으로 전년 대비 8.1조원(3.7%)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 4.3조원(1.9%) 초과 수납되었음. 그 중 예산수입은 28.5조원으로 전년 대비 2.3조원(△7.5%) 감소하였으나, 예산보다 3.5조원(14.0%) 초과 수납되었음. 기금수입은 201.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10.3조원(5.4%) 증가하였고, 당초 계획액보다 0.8조원(0.4%) 초과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예산 (A)	결산 (B)	추경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전년대비 (D-B)
국세외수입	212.4	221.5	9.1	225.2	229.6	4.3	8.1
- 예산수입	28.3	30.8	2.4	25.0	28.5	3.5	△2.3
- 기금수입	184.1	190.8	6.7	200.3	201.1	0.8	10.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외수입은 2019년 179.3조원 → 2021년 226.5조원으로 증가하다 2022년 221.5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29.6조원으로 증가하였음. 2023년 국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는 재산수입(△4.8조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5.5조원), 경상이전수입(+3.2조원),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1.5조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0.9조원) 등 다수 수입관에서 수납액이 늘어났기 때문임.

[국세외수입 연도별 결산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수입관(코드)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국세외수입	179.3	193.2	226.4	221.5	229.6	8.1
사회보장기여금(07)	69.6	74.6	78.1	83.4	88.9	5.5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10)	6.7	6.4	8.1	6.5	8.0	1.5
재산수입(11)	29.0	33.6	56.6	47.2	42.4	△4.8
경상이전수입(12)	36.1	37.6	42.0	44.7	47.9	3.2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9.8	9.8	10.8	11.3	12.2	0.9
수입대체경비수입(14)	0.4	0.1	0.1	0.2	0.3	0.1
관유물매각대(15)	2.7	2.9	2.6	3.0	3.7	0.7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20)	24.9	28.2	28.0	25.2	26.1	0.9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31)	0.1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검토의견

(가) 연례적 수납액 발생 수입과목 예산 미계상

연례적으로 세입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수납액 발생이 예측됨에도 일부 수입과목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부처는 수납액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과목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2~2023회계연도 연속 수납액이 있었음에도 2024년까지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수입과목은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외교부 일반회계 위약금 등이 있음.

[2022~2023년도 세입예산(수입계획) 미계상 수입과목 중 수납액 발생과목 예시]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기금	계정	수입목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	2022	65,827	65,827	-
				2023	64,075	64,075	-
		-	기타재산이자수입	2022	2,143	2,143	-
				2023	2,639	2,63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	기타경상이전수입	2022	137	137	-
				2023	2,295	2,295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기타재산이자수입	2022	2,715	1,910	805
				2023	2,668	1,974	694
		지역지원	기타재산이자수입	2022	871	533	338
				2023	530	299	230
산림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	기타경상이전수입	2022	11,694	10,965	729
				2023	2,932	1,300	1,632
외교부	일반회계	-	위약금	2022	794	404	389
				2023	471	471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	토지매각대	2022	7,546	3,922	3,625
				2023	5,084	5,024	60

주) 위 수입목은 2024년도 세입예산(수입계획) 미계상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일부 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은 해당 회계에 보조금, 자치단체교부금 등 교부성 예산이 편성된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연도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처리하기 위해 세입예산으로 계상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매년 보조금이나 자

치단체교부금 등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또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음.

[미편성 수입 관련 2023년도 교부성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명	계정	2023년 교부성 지출예산		
			보조금·사업출연금	자치단체 교부금	소계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3,470,037	3,470,03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43,485	-	43,485
		지역지원	164,545	-	164,545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매각대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소규모 토지 매각대금을 수입처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년 토지 처분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토지매각대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토지매각대 세입예산 간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실제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 처분계획금액이 28억원이었으나 토지매각대 세입예산은 미편성되었고 수납액이 50억 2,400만원 발생하였음.

[2021~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상 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 처분(매각)계획]

(단위: 억원)

구분	국유재산종합계획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 처분(매각)계획(금액)	13	5	28

자료: 연도별「국유재산종합계획」

따라서 각 부처는 세입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교부성 예산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토지매각대금 발생 등이 예측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입과목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나) 세입·수입예산 과소 계상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일부 수입항목은 연례적으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 계상되고 있으므로, 과거 몇 년 치 연평균 수납액을 기계적으로 반영하기보다 교부성 예산의 편성규모 및 실집행잔액, 금리 추이 등 수납실적과 관계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120%를 상회하는 수입목은 기타경상이전수입・과징금・과태료・징계부과금・국세물납주식매각대・비축물자사업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이 있으며, 2023년도 기준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수입목은 국세물납주식매각대(221.0%)이고 이어 비축물자사업수입(199.0%), 징계부과금(163.2%), 과징금(144.9%), 기타경상이전수입(137.0%) 순으로 나타났음.

[2회계연도(2022·2023) 연속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20% 이상인 수입목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목명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액(A)	수납액(B)	B/A	예산액(C)	수납액(D)	D/C
국세물납주식매각대	44,849	57,635	128.5	47,475	104,940	221.0
비축물자사업수입	2,032	17,526	862.5	7,324	14,573	199.0
징계부과금	480	720	150.1	322	525	163.2
과징금	514,998	857,327	166.5	569,028	824,364	144.9
기타경상이전수입	7,382,711	9,598,325	130.0	7,607,221	10,418,131	137.0
기타재산이자수입	22,026,241	33,311,794	151.2	27,137,493	33,799,143	124.5
과태료	1,021,290	1,327,140	129.9	1,148,377	1,400,544	122.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인 세입・수입과목 예산액 과소편성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보건복지부 :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4,745억 400만원 대비 3.26배인 1조 5,455억 3,6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이 중 1조 662억 4,700만원이 수납(수납률 69.0%)되었으며, 4,792억 8,800만원이 미수납됨.[28)]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치이자 수입 및 연구성과에서 창출된 기술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예산액 97억 9,200만원 대비 3.4배인 징수결정액은 32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206억 2,300만원이 수납(수납률 63.7%)되고 117억 7,400만원이 미수납됨.[29)]

28)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29)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목명	2023							2024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474,504	474,504	474,504	1,545,536	1,066,247	479,288	-	903,336
기타재산이자수입	9,792	9,792	9,792	32,397	20,623	11,774	-	12,312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하게 계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액 반영 시 지출할 수 있었던 사업들의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을 보면, 2021년 160.3%에서 2023년에는 224.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22년 233.6%, 2023년 210.6%로 높은 수준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3년간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474,516	474,516	474,516	1,120,275	760,852	160.3	67.9	359,424	-
2022	474,500	474,500	474,500	1,284,044	933,437	196.7	72.7	350,607	-
2023	474,504	474,504	474,504	1,545,536	1,066,247	224.7	69.0	479,288	-
2024	903,336	903,336	903,336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2021-2023) 기타재산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9,792	9,792	9,792	28,129	22,872	233.6	81.3	5,257	-
2023	9,792	9,792	9,792	32,397	20,623	210.6	63.7	11,774	-
2024	12,312	12,312	12,312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전수입의 예산액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으나, 그럼에도 2022년 및 2023년 수납액 규모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2023년도 미수납액 규모가 크고 2023년도 보조사업의 실집행실적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에도 예산 과소계상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수납액 규모와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② 조달청 : 기타영업외잡수익

‘기타영업외잡수익’은 회전자금 예치이자수입·재활용사업수입·이화학시험수수료 및 대금납입 연체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896억 5,700만원 중 885억 9,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8%)되고, 미수납액 10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음.[30]

[2023년도 기타영업외잡수익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영업외 잡수익	18,519	18,519	89,657	88,590	-	1,067	98.8	53,246

자료: 조달청

기타영업외잡수익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21년 114.2%, 2022년 275.1%, 2023년 478.3%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2020~2023년 기타영업외잡수익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18,000	18,000	18,000	21,817	20,928	116.3
2021	19,148	19,148	19,148	22,841	21,857	114.2
2022	17,572	17,572	17,572	49,088	48,342	275.1
2023	18,519	18,519	18,519	89,657	88,590	478.3

자료: 조달청

기타영업외잡수익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꾸준히 상승하게 된 이유는 동 수입의 주된 수입원인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이 최근의 고금리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조달청은 세입예산 편성시 직전년도 5개년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관성적으로 예치이자 수납액을 추계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결산상 수납액은 2020년 128억 7,700만원에서 2021년 158억 4,500만원, 2022년 432억 1,800만원. 2023년 820억 4,400만원으로 계속하여 증가

30)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기타영업외잡수익(69-697)(기획조정관)

하여 왔음. 이렇게 수납액이 2020년 대비 6.4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동안 예산액은 1.05배 증가하는 데에 그치면서,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게 되었음.

[2020~2023년 회전자금 예치이자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회전자금예치이자(697)	12,655	12,877	12,655	15,845	11,875	43,218	13,284	82,044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기타영업외잡수익 세입예산 편성 시 최신의 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③ 경찰청 : 과태료

'과태료' 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경비업법」 제31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또는 단속법 위반에 대해 질서벌로서 금전적 납부 의무를 부과·징수하는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2조 2,934억 9,100만원 중 1조 2,284억 3,600만원을 수납(수납률 53.6%)하고, 미수납액 1조 609억 8,600만원, 불납결손액 40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음.[31]

[2023년도 경찰청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969,554	969,554	2,293,491	1,228,436	4,069	1,060,986	53.6	1,134,090

자료: 경찰청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21년 123.0%, 2022년 134.5%, 2023년 126.7%를 기록하였음. 2024년도 과태료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되긴 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 수납액보다 적고 미수납액 규모를 고려할 때,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수납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액을 편성하기보다 최근 수납액 증가추이 및 미수납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과소편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1) 일반회계-과태료(56-563)(기획조정관, 교통국)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699,607	699,607	-	699,607	1,759,607	860,688	123.0	48.9	894,690	4,229
2022	848,674	848,674	-	848,674	2,122,089	1,141,266	134.5	53.8	974,404	6,418
2023	969,554	969,554	-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4,069
2024	1,134,090	1,134,090	-	-	-	-	-	-	-	-

자료: 경찰청

(다) 세입·수입예산 과다 계상 및 편성 오류

일부 수입과목은 수납실적에 비해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재원부족에 따른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발생시켰고, 수납가능성이 없는 과목이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오류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입예산 편성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80.0%를 하회하는 수입목은 위약금·기타고정자산매각대·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기타재산이자외수입·입목죽매각대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가 있음. 2023년도 기준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가장 낮은 수입목은 위약금(4.8%)이고 이어 기타고정자산매각대(35.8%),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49.7%), 기타재산이자외수입(78.0%), 입목죽매각대(78.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8.4%) 순으로 나타났음.

[2회계연도(2022·2023) 연속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80.0% 미만인 수입목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목명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액(A)	수납액(B)	B/A	예산액(C)	수납액(D)	D/C
위약금	216,223	114,382	52.9	200,846	9,595	4.8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723	2,867	60.7	5,670	2,027	35.8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536	253	10.0	2,335	1,162	49.7
기타재산이자외수입	966,283	605,795	62.7	1,192,491	930,670	78.0
입목죽매각대	25,731	18,617	72.4	25,707	20,141	78.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6,657,637	21,293,490	79.9	28,549,578	22,386,971	78.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인 세입·수입과목 예산액 과다편성 또는 편성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기획재정부 : 기후대응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대응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배출권 매각(유상할당) 수입의 계상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각종 정산금 및 환급금을 계상하는 것으로,[32] 2023년 계획현액 2,086억 6,000만원 중 1,028억 9,1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996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2억 7,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33]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계획액보다 수입실적이 많았으나, 2021년에는 계획액 4,903억 2,500만원의 60.1%인 2,944억 6,100만원, 2022년에는 계획액 7,305억 8,400만원의 43.6%인 3,188억 2,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23년에는 계획액 4,008억 9,600만원의 21.3%인 852억 3,300만원이 수납되는데 그쳤음. 이에 따라 2023년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875억 6,500만원의 지출액을 감액 조정하였음.

[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A)	204,600	215,818	490,325	730,584	400,896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B)	232,174	248,017	294,461	318,826	85,233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B/A)	113.5	114.9	60.1	43.6	21.3

주) 수입실적은 총거래대금에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환경부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을 3,296억 8,800만원(△45.1%)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실제 수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34]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은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으로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기금 지출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획액보다 수입실적이 크게 저조하게 나타났음.

---

32) 2024년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은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편성 및 수납되고 있음.

33) 기후대응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34)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상할당 수입은 경제상황, 배출권 수급 현황 등 시장여건에 따른 배출권의 가격과 유상할당 업체의 배출량에 따른 경매 수요량 등에 따라 변동되는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2023년 9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수입실적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35]

② 기획재정부 : 외국환평형기금 국공채수입

'국공채수입' 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에 따른 수입을 귀속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3조 4,830억원이나 6,308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36]

2022년 이후 외평채 발행한도와 발행실적을 비교해보면, 2022년에는 발행한도가 외화 10억 달러였으나 발행실적이 없었고, 2023년에는 발행한도가 27억 달러였으나 엔화표시 외평채 700억엔(약 5억 달러) 발행이 유일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18.0조원과 외화 외평채 13억 달러가 발행한도로 설정되었으나, 6월 기준으로 외화 외평채 10억 달러가 발행되었고, 원화표시 외평채는 발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최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 및 발행량]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기준
외평채 발행 한도	10억 달러 (1.3조원)	27억 달러 (3.5조원)	19.7조원 (외화 13억 달러+원화 18.0조원)
외평채 발행실적	-	엔화 700억엔 (약 5억 달러, 0.6조원)	외화 10억 달러

주) 원화 기준 외평채 발행 한도액은 1달러 당 1,300원을 전제로 계산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과 2023년에는 국제금융·외환시장 상황 등 발행 여건, 기존 발행 채권 만기구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화표시 외평채를 한도 대비 적게 발행하였고, 2024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37]

35)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검토(2024년~), 제4차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시 부문·업종별로 배출권 유상할당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함.

36) 외국환평형기금-국공채수입(81-811)(국제금융국)

37) 현행「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 및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채의 범위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으로 한정되므로,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과 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2021년도 이후 국공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당초	수정(A)					
2021	1,825,500	1,825,500	1,825,500	1,558,883	1,558,883	85.4	-
2022	1,131,000	1,131,000	1,131,000	-	-	-	-
2023	3,483,000	3,483,000	3,483,000	630,826	630,826	18.1	-
2024.6.	19,690,000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2024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줄이고 원금상환을 늘려 외평기금의 수지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38] 이에 따라 2024년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계획액이 전년 당초 계획 대비 44조 8457억원(90.0%) 증가한 94조 6,4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따른 것임.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지 못해 2024년 6월 현재까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향후 법률 개정 여부 및 시기에 따라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량이 발행한도 대비 크게 저조할 수 있으며,[39]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인 국공채수입실적 저조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뿐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상황 등 외평채 발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평채 발행한도 및 외국환평형기금 국공채수입 계획액을 설정·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관세청 : 면허료 및 수수료

관세청의 **'면허료 및 수수료'**는 면세점이 납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40]가

38)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국고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예탁이자율을 산정하는 반면,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해 조달한 원화자산으로 외화자산을 매입한 후 안전자산인 달러 중심으로 운용함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보다 통상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함.

39) 참고로, 원화표시 외평채는 만기 1~2년물 위주로 발행될 계획으로,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상호 구축 가능성, 1~2년물 채권 발행량 증가에 따른 단기 채권 금리상승 가능성이 있어 원화 외평채의 월별 발행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40)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는「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면세업체별로 매출액의 0.1~1.0%를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에 대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41] 2023년도 예산액은 749억 1,300만원으로 관세청은 515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15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2,100만원이 미수납하였음.

코로나19 이후 면세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2021년(2020년 매출액)부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고 있으며, 2023년(2022년 매출액)과 2024년(2023년 매출액)에도 특허수수료 감경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은 특허수수료를 감경하지 않고 100% 부과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23년 2월 말에 정부가 특허수수료 감경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 749억 1,300만원의 68.8%인 515억 6,000만원에 그쳤음.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특허수수료를 감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24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을 2023년보다 261억 700만원(34.8%) 증액한 1,01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3월에 특허수수료 감경조치 재연장이 결정되어 2024년에도 면허료 및 수수료의 예산액 대비 과소수납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4년 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22,158	122,158	78,428	78,410	64.2	99.9	18	-
2021	58,595	58,595	24,650	24,633	42.0	99.9	17	-
2022	25,330	25,330	36,949	36,926	145.8	99.9	23	-
2023	74,913	74,913	51,560	51,539	68.8	99.9	21	-
2024	101,020	-	-	-	-	-	-	-

자료: 관세청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이후에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음에도 면허료 및 수수료는 예산안 편성상 계획(특허수수료 100% 부과)과 실제 조치 간에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음.

41)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65-651)(심사국)

이에 따라 관세청의 면허료 및 수수료 과목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수백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세입결손은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예산안 편성단계 또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특허수수료 감경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세입결손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해양수산부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외수입이 계상 및 수납되는 과목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각각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없음.[42]

20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 세입과목이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분리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수납대상이 되는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 2023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세입예산 편성 근거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아닌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2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2023년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4관 제외)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동일 세입과목의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에 해당 세입과목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4관은 별도의 편성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기타재산수입에서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2021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14%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편성한 문제가 있음.

---

42)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22년~'24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편성 및 수납실적('24년 4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2022년	648	648	-	648	2주)	2주)	0.3	-
	2023년	1,511	1,511	-	1,511	-	-	0.0	-
	2024년	2	2	-	-	-	-	-	-
농특회계 (구조개선 사업계정)	2022년	695	695	-	695	-	-	-	-
	2023년	716	716	-	716	-	-	-	-
	2024년	737	737	-	-	-	-	-	-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2022년	124	124	-	124	-	-	-	-
	2023년	128	128	-	128	-	-	-	-
	2024년	132	132	-	-	-	-	-	-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14관)	2022년	-	-	-	-	-	-	-	-
	2023년	146	146	-	146	-	-	-	-
	2024년	-	-	-	-	-	-	-	-
교특회계 (항만계정)	2022년	-	-	-	-	-	-	-	-
	2023년	613	613	-	613	-	-	-	-
	2024년	-	-	-	-	-	-	-	-
에특회계 (투자계정)	2022년	-	-	-	-	-	-	-	-
	2023년	6	6	-	6	-	-	-	-
	2024년	7	7	-	-	-	-	-	-

주) 일반회계의 2022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200만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하는 금액이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잘못 수납된 수납오류임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계정에 동일한 세입과목이 2번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14관의 경우 정부안 편성 시 오류로 인하여 잘못 편성된 세입예산이라는 설명으로, 이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편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세입과목 분리 전에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에 상응하는 수납실적이 없고 수납대상이 되는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으로, 실제 수납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43]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수납대상이 되는 정부재산 및 자산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43) 2022년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수납된 금액 200만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할 금액이 잘못 수납된 것으로 이는 수납측면에서도 동 세입과목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수납 등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위약금과 가산금 등 일부 수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각 부처는 수납실적 저조사유를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낮은 수입목을 보면, 위약금이 2.3%로 가장 저조하고 가산금 5.9%, 징계부과금 8.7%, 변상금 12.8%, 과태료 49.3%, 기타경상이전수입 62.8%, 과징금 64.3% 순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70% 미만인 수입목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목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위약금	200,846	411,253	9,595	401,647	11	2.3
가산금	376,990	5,575,330	329,921	4,981,154	264,255	5.9
징계부과금	322	6,009	525	5,326	158	8.7
변상금	72,771	416,819	53,466	362,970	383	12.8
과태료	1,148,377	2,843,500	1,400,544	1,413,758	29,198	49.3
기타경상이전수입	7,607,221	16,600,282	10,418,131	5,928,257	253,894	62.8
과징금	569,028	1,281,123	824,364	456,292	468	64.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인 수납실적 저조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관세청 : 과태료·과징금·가산금

관세청 소관 과태료의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이고 주요 미수납사유는 ‘체납자무재산’, ‘체납정리중’, ‘납기미도래’ 임. 또한 과징금의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1년 45.8%, 2022년 51.1%, 2023년 54.6%이고 주요 미수납사유는 ‘체납정리중’, ‘체납자무재산’ 이며, 가산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3~0.4%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요 미수납사유가 ‘체납정리중’, ‘정리유예’, ‘체납자무재산’ 임.

[최근 3년(2021~2023)간 과태료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
					계	징수유예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무재산	체납정리중	시효완성
2021	9,247	41,469	5,279	12.7	34,992	6	653	2	1,011	33,320	1,198
2022	4,813	54,887	10,421	19.0	44,273	286	1,729	444	2,233	39,581	194
2023	7,426	64,433	10,780	16.7	53,515	628	6,305	362	24,592	21,627	138

자료: 관세청

[최근 3년(2021~2023)간 과징금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
					계	징수유예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무재산	체납정리중	시효완성
2021	2,541	5,933	2,720	45.8	2,939	466	154	26	40	2,252	274
2022	2,617	6,711	3,431	51.1	3,078	182	60	86	76	2,674	203
2023	3,068	7,318	3,993	54.6	3,319	24	10	82	293	2,910	6

자료: 관세청

[최근 3년(2021~2023)간 가산금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
					계	징수유예	통관진행	정리유예	체납자무재산	체납정리중	시효완성
2021	1,260	459,429	1,473	0.3	454,501	-	177	7,746	29,483	417,095	3,455
2022	1,000	515,459	1,972	0.4	504,916	-	105	12,137	12,323	480,351	8,572
2023	1,356	573,525	1,675	0.3	568,953	-	65	20,521	20,071	528,295	2,896

자료: 관세청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은 법령상 의무 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수단으로서, 수납실적이 저조할 경우 그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 징세기관과의 합동단속 활성화 등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방위사업청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방위사업법」,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정산액, 하자구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과목으로,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6,049억 2,100만원 중 4,154억 5,0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68.7%를 보여 전반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함.

2023년도 항목별 수납실적을 보면, 계약정산액,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손해배상금, 물품대금반환금 등은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소송 등에 따른 정리유예와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의해 대부분 발생되고 있음.[44)]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A)	2023년				증감액 (B-A)
		계(B)	납기미도래	재력부족	정리유예	
방위력개선비불용액	107	-	-	-	-	△107
계약정산액	9,307	9,272	208	1,496	7,568	△34
물품대금반환	80,064	80,241	-	10,955	69,285	176
부당이득금	65,146	65,146	-	65,146	-	△0.2
손해배상금	35,825	32,780	-	3,144	29,636	△3,045
하자구상금	494	732	-	732	-	238
하자지연배상금	75	75	8	67	-	△0.06
기타	1,167	1,225	-	95	1,130	58
합 계	192,185	189,471	216	81,636	107,619	△2,715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재력부족의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사실상 장기 미제채권으로써 수납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정리유예는 소송결과에 따라 일부 수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 미제채권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채권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소송이 장기간 진행 중인 건은 대부분 사건 규모가 큰 건으로써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미수납 채권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정리유예 채권 중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미수납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4) 미수납 채권 중 100억 이상 사건은 블○○(2012년)를 포함하여 총 5건에 1,558억원에 달하고 있음. Thy○○(2022년), G○○ 및 H○○(2014년)는 국외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블○○(2012년)와 넥○(2011년)은 법인 폐업 및 재력부족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어 채무자의 재산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음.

③ 환경부 :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등 총 16개 부과금(부담금)이 수납되는 항목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연도별 수납률은 최근 10년간 50% 수준에 불과함.

[연도별 법정부담금 수납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부과액(A)	18,449	18,867	17,179	16,229	15,258	16,994	16,136	15,009	13,911	13,323
수납액(B)	9,197	9,424	8,095	7,737	7,248	9,017	8,415	8,004	7,249	7,051
불납결손액	328	396	546	429	475	198	600	297	221	139
미수납액	8,923	9,047	8,537	8,063	7,535	7,779	7,122	6,708	6,441	6,133
수납률(B/A)	**49.9**	**49.9**	**47.1**	**47.7**	**47.5**	**53.1**	**52.1**	**53.3**	**52.1**	**52.9**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의 수납 실적 저조는 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실적 저조에 기인함. 2023년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 현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률은 26.9%, 수질배출부과금은 11.7%로 전체 미수납액의 89.0%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법정부담금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합계	**686,442**	**686,442**	**686,442**	**1,332,282**	**705,063**	**13,924**	**613,296**	**52.9**
환경개선부담금	**191,362**	**191,362**	**191,362**	**699,729**	**188,334**	**13,209**	**498,186**	**26.9**
수질배출부과금	**11,132**	**11,132**	**11,132**	**54,612**	**6,382**	**682**	**47,548**	**11.7**
폐기물처분부담금	157,099	157,099	157,099	170,824	167,104	0	3,720	97.8
대기배출부과금	22,865	22,865	22,865	36,148	33,640	1	2,507	93.1
폐기물부담금	200,518	200,518	200,518	232,427	227,295	0	5,132	97.8
수질개선부담금	15,382	15,382	15,382	19,848	15,351	0	4,497	77.3
재활용부과금	23,912	23,912	23,912	35,223	25,380	0	9,844	72.1
생태계보전부담금	60,173	60,173	60,173	64,355	39,939	0	24,416	62.1
기타 부담금 (8개 부담금 합계)	3,999	3,999	3,999	19,115	1,638	32	17,446	8.6

법정부담금의 수납 실적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연례적으로 반영되어 왔으나,[45] 법정부담금 수납률이 소폭(0.8%p) 상승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12년 4월 이후 신규 부과대상 자동차가 없어 징수결정액 중 과년도 체납액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46],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고액장기체납자 3인의 미납금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7.3%인 415억 6,700만원을 차지하므로,[47] 미납액이 큰 지자체 및 고액 장기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등 장기미수납액 징수제고 노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48]

특히, 환경부는 최근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장기미수납액 869억 4,500만원, 수질배출부과금 383억 8,3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는데, 불납결손 처리 이전 장기미수납액의 징수제고를 위한 노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5) 국회는 2017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수질배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지속되는 연례적인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저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

46) '19년 62.4% → '20년 65.7% → '21년 69.0% → '22년 71.3% → '23년 73.9%

47) ㈜남000 369억 7,300만원, ㈜영000 23억, 부000 22억 9,400만원

48)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을 개인별로 하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 일괄 처리함에 따라 장기미납 지자체로 표현하였음.

(마) 기타 :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수납액 마이너스 처리문제

일부 수입과목에서는 수납액보다 과오납금 반환규모가 커 수납액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과오납금이 어느 세입과목에서 추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세입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세입과목의 당해연도 수납된 금액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부족한 금액은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수납액이 음(-)의 값을 가지는 수입목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위약금(△394억 5,900만원), 국세청 일반회계 과징금(△3억 7,9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과태료(△6,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1억 800만원)이 있음.

[2023년도 수납액이 마이너스인 수입목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수입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위약금	164,655	335,370	△39,459	374,828
국세청	일반회계	과징금	-	△379	△379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과태료	110	128	△62	19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1,411	△108	△108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수납액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사유는 해당 연도 수납액보다 과오납금 반환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방위사업청 사례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소송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세입을 통해서는 수납이력이 있는 경우 수납되었던 수입과목에서 과오납 반환처리 하였고, 세출을 통해서는 수납이력이 없거나 세입의 수납액이 부족한 경우 소송배상금 항목에서 집행하여 이원화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연도별 소송지원 관련 배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소송 관련 집행 총 금액	79,276	102,816	101,139	104,578
[세출] 소송배상금 집행액	56,618(11건)	58,805(14건)	65,118(9건)	1,965(9건)
[세입] 과오납금 반환	22,658(9건)	44,011(15건)	36,021(12건)	102,613(15건)

자료: 방위사업청

이에 따라 2023년도 배상금은 세입에서 1,026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세출에서 19억 6,500만원이 지급되어 총 1,045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세입에서 대부분의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세입(위약금)에서 과오납처리로 배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어 2023년도 위약금 항목의 수납액이 음의 값(△394억 5,800만원)를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는 수납액보다 과오납 반환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2023년도 방위사업청 위약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위약금	164,655	164,655	335,370	△39,458	-	374,828	△11.8	164,655

자료: 방위사업청

「국고금관리법」 제15조[49]는 과오납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오납금 반환으로 위약금 과목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회계연도가 지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 수입금으로 반환하면서 세입과목에 음의 값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50]

그러나 과오납처리 반환과 관련하여 과오납 금액이 수납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세입과목의 수납액이 부족하여 음의 값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해당 과오납금이 어느 세입과목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오납금 반환 시 지급 가능한 재원범위를 총 수입금이 아닌 해당 과목의 수납액으로 한정하는 한편, 과오납금 반환규모가 크게

49)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0)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방사청의 과오납금 반환 관련 「국고금관리법」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차례 답변하였다고 설명함.
① (2023.11.) 수입금액이 반환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석
② (2024.6.) 과오납금 반환 지급 결정시 해당 수입과목의 수납액에 한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과오납금 발생시 반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세출예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징수관이 징수한 당해연도 세입금의 범위 내에서 즉시 지급하게 한 과오납금 반환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

발생하여 해당 과목 수납액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출예산으로 잔여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기금 결산

가. 개 요

(1) 기금 총괄 현황

기금이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임.[1] 2023년에 편성된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총 68개로, 농림축산식품부(7개), 기획재정부(7개), 금융위원회(6개), 문화체육관광부(6개) 등 22개 소관 부처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2023년 부처별 기금관리현황]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금 수	7	7	6	6	5	5	4	4	3	3	2
소관 부처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대법원
기금 수	2	2	2	2	2	1	1	1	1	1	1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금은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사회보험성기금 및 계정성기금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2023년에는 각 유형별로 사업성기금 49개, 금융성기금 8개, 사회보험성기금 6개, 계정성기금 5개가 운용됨.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023년 기금유형별 현황]

구 분	기 금 명		
사회보험성 기금 (6개)	- 고용보험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계정성 기금 (5개)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복권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성 기금 (8개)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성 기금 (49개)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기후대응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국가유산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3회계연도 68개 기금 결산 결과 전체 수입·지출액은 889.8조원으로 2023년 당초 기금계획 대비 30.8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60.4조원이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2년 실적 (A)	2023년		계획대비 (C-B)	2022년 대비 (C-A)
			기금계획(B)	결산액(C)		
수입	자체수입	203.0	211.7	214.3	2.7	11.3
	정부내부수입	236.3	275.1	248.1	△27.0	11.7
	차입금	178.7	192.9	183.5	△9.4	4.8
	여유자금회수	211.3	240.9	243.8	2.9	32.5
합 계		829.4	920.6	889.8	△30.8	60.4
지출	사업비	214.5	185.5	178.7	△6.9	△35.9
	기금운영비	2.8	3.0	2.9	△0.1	0.1
	정부내부지출	230.3	280.0	268.9	△11.2	38.6
	차입금원금상환	111.0	142.2	139.0	△3.3	28.0
	차입금이자상환	23.8	28.1	26.9	△1.1	3.2
	여유자금운용	246.9	281.7	273.4	△8.3	26.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 기금 유형별 현황

(가) 사업성기금

사업성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그 목적에 있어 특별회계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함. 2023회계연도 결산 대상 사업성기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주택도시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9개임.

2023회계연도 결산 상 사업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3년 당초 계획 178조 9,699억원 대비 29조 2,395억원(△16.3%) 감소한 149조 7,304억원임. 각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주택도시기금 77조 8,553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조 7,108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7조 9,583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조 8,949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5조 5,18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19년 116조 2,764억원에서 2023년 149조 7,304억원으로 28.8% 증가하였음.

지난 5년간 지출규모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출규모 증가(2019년 3조 3,533억원→2023년 6조 8,949억원), ②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출규모 증가(2019년 64조 1,366억원→2023년 77조 8,553억원)로 보임.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2년 49조 6,696억원까지 수입・지출총계가 급증하였으나 2023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섬.

[최근 5년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1,162,764	1,412,295	1,658,798	1,976,963	1,789,699	1,497,304
과학기술진흥기금	1,818	2,665	2,685	1,220	1,702	1,174
관광진흥개발기금	12,466	13,335	17,844	15,845	17,293	15,955
국민건강증진기금	39,262	41,168	43,007	42,504	47,395	45,238
국민체육진흥기금	29,708	27,182	29,739	32,080	32,205	33,764
국유재산관리기금	19,772	16,082	16,597	22,426	25,829	26,829
국제교류기금	1,503	1,277	1,239	2,108	1,607	1,993
국제질병퇴치기금	868	572	100	591	480	416
군인복지기금	13,107	7,292	7,359	7,845	8,147	8,224
근로복지진흥기금	3,411	4,481	4,220	4,814	4,121	4,257
금강수계관리기금	1,379	1,512	1,618	1,769	1,816	1,852
기후대응기금	-	-	-	20,465	22,992	22,26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99	2,507	2,441	2,415	2,482	2,434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액	지출액
남북협력기금	4,008	7,941	4,929	3,913	18,004	6,6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390	22,743	22,228	27,668	23,274	21,88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136	1,193	1,776	2,132	905	4,002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	26,475	24,186	24,062	28,576	27,817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1,563	1,359	-	-	-	-
농지관리기금	35,017	31,845	27,962	34,669	37,220	31,533
대외경제협력기금	12,781	11,427	13,126	13,082	16,211	15,151
문화예술진흥기금	4,321	4,480	4,230	4,392	5,397	5,756
국가유산보호기금	1,433	1,550	1,550	1,678	1,690	1,83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8,480	56,533	64,120	70,309	86,088	79,583
방송통신발전기금	12,429	13,109	14,530	14,167	14,808	11,68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25	1,044	1,179	1,138	1,133	1,337
보훈기금	2,998	3,161	3,660	3,505	6,515	4,02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46	1,359	1,236	1,333	1,993	1,369
사학진흥기금	3,983	4,035	2,965	4,245	3,588	3,94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33	2,377	2,508	1,391	1,850	1,409
석면피해구제기금	347	600	401	369	439	41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3,533	99,516	240,256	496,696	64,373	68,949
수산발전기금	6,763	7,606	8,275	7,673	8,354	8,59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14	1,310	1,320	1,462	1,388	1,497
양성평등기금	4,347	4,398	5,013	6,371	7,372	6,902
언론진흥기금	291	328	420	485	452	58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44	1,146	1,318	1,528	1,510	1,600
영화발전기금	2,637	2,272	2,021	1,630	2,300	1,671
원자력기금	4,343	4,528	4,717	5,108	5,185	5,390
응급의료기금	4,036	12,459	3,926	5,750	5,730	6,858
임금채권보장기금	8,271	10,518	8,443	7,754	9,169	9,75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97	2,566	2,548	2,606	2,626	2,63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647	7,472	6,721	5,326	5,107	4,26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1,822	13,135	17,178	19,257	19,005	20,960
전력산업기반기금	31,536	44,775	57,235	64,917	46,961	55,181
정보통신진흥기금	12,731	14,735	17,675	19,942	14,576	14,722
주택도시기금	641,366	743,134	831,291	848,237	1,055,355	778,55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86,634	114,929	113,927	100,757	107,151	107,108
지역신문발전기금	102	111	115	114	98	120
청소년육성기금	1,427	1,535	1,559	1,669	1,774	1,806
축산발전기금	10,118	9,675	10,588	11,154	10,628	11,168
한강수계관리기금	6,722	6,843	6,817	6,392	6,825	6,204

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은 특정한 사업 수행 역할이 아닌 보증·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자산신용보증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무역보험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상 금융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3년 당초 계획 33조 261억원 대비 2조 3,987억원(△7.3%) 감소한 30조 6,274억원임. 각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신용보증기금 10조 4,651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조 9,046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조 8,253억원, 무역보험기금 4조 5,814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19년 24조 4,622억원에서 2023년 30조 6,274억원으로 25.2% 증가하였음.

[최근 5년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244,622	283,593	288,449	301,725	330,261	306,274
기술보증기금	28,510	29,811	34,802	31,877	31,743	36,86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692	12,025	21,474	17,592	22,957	14,86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08	678	682	533	542	542
무역보험기금	30,662	38,448	41,052	35,188	60,477	45,8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488	7,129	7,443	12,019	7,701	6,242
신용보증기금	77,544	103,620	104,013	124,294	123,287	104,65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6,436	28,896	38,742	43,457	34,630	49,04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6,582	62,986	40,241	36,765	48,924	48,253

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연금성 기금과 사회 전반적인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 기금으로 구분됨. 2023회계연도 결산 대상 사회보험성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상 사회보험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3년 당초 계획 240조 6,040억원 대비 28조 2,516억원(11.7%) 증가한 268조 8,556억원임. 각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국민연금기금 190조 6,386억원, 공무원연금기금 27조 3,925억원, 고용보험기금 20조 9,133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4조 9,67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19년 205조 4,506억원에서 2023년 268조 8,556억원으로 30.9% 증가하였음.

[최근 5년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2,054,506	2,372,119	2,675,204	2,506,955	2,406,040	2,688,556
고용보험기금	156,358	244,966	248,073	208,362	216,800	209,133
공무원연금기금	209,621	227,450	232,034	248,991	289,508	273,925
국민연금기금	1,454,176	1,640,734	1,912,467	1,752,350	1,535,270	1,906,386
군인연금기금	34,495	35,351	36,488	37,460	41,439	41,4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3,280	90,529	86,307	119,981	132,462	108,02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6,576	133,089	159,834	139,810	190,562	149,678

자료:「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계정성기금

계정성기금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함. 2023회계연도 결산 대상 계정성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복권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등 총 5개 기금임.

2023회계연도 결산 상 계정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3년 당초 계획 467조 9,674억원 대비 27조 4,226억원(△5.9%) 감소한 440조 5,448억원임. 각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285조 4,129억원, 외국환평형기금 137조 3,194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19년 276조 8,766억원에서 2023년 440조 5,448억원으로 59.1% 증가하였음.

[최근 5년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2,768,766	3,821,274	3,741,952	3,507,948	4,679,674	4,405,448
공공자금관리기금	1,791,207	2,687,740	2,682,553	2,507,576	2,992,804	2,854,129
공적자금상환기금	84,578	102,230	70,984	71,077	90,153	88,833
복권기금	58,070	65,350	71,941	76,412	79,098	78,729
양곡증권정리기금	4,357	12,673	2,256	5,407	11,419	10,563
외국환평형기금	830,554	953,281	914,218	847,476	1,506,200	1,373,194

자료:「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현황에 대한 검토

(1) 개 요

(가) 현황

사업성기금의 경우, 재정사업의 수행이 기금운용의 목적으로 당해 수입을 당해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기금이 보유하는 여유자금[2]은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음.[3]

지난 5년간(2019~2023년) 49개 사업성기금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연간 평잔[4]규모는 50조원대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 평잔은 37조 727억원으로, 2022년 평잔 58조 4,890억원 대비 21조 4,167억원 감소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2019년 대비 18조 1,821억원의 여유자금이 감소하여(2019년 38조 4,100억원 → 2023년 20조 2,280억원) 여유자금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농지관리기금의 경우에도 2019년 대비 6,258억 4,000만원의 여유자금이 감소하였음.

---

2)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임.

3) 다만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거나 장래에 지출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여유자금규모를 적정 수준까지 증대시키는 것이 이상적일 것임.

4) 1년간의 여유자금규모의 평균

[2019~2024.5월말 기준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평잔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5
계	51,823,956	50,962,907	59,536,734	58,489,447	37,072,741	34,687,538
과학기술진흥기금	27,531	22,685	21,773	21,591	23,632	25,167
관광진흥개발기금	281,141	218,121	263,314	495,281	219267	174,945
국가유산보호기금	19,423	18,616	25,070	14,619	14,140	14,729
국민건강증진기금	245,549	443,027	503,767	483,972	796,718	748,333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979,727	894,736	945,102	1,234,649	1,695,494	2,018,810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33,230	31,985	24,712	21,146	24,838	26,843
국유재산관리기금	1,302,921	933,706	894,798	923,932	1,332,517	1,520,071
국제교류기금	105,464	74,198	52,905	61,532	79,527	76,240
국제질병퇴치기금	51,174	42,413	4,247	7,719	8,791	9,424
군인복지기금	813,966	785,381	689,039	692,918	752,318	763,994
근로복지진흥기금	106,776	124,814	96,134	123,292	103,111	78,422
금강수계관리기금	9,085	12,170	20,298	31,097	34,279	32,141
기후대응기금				151,410	176,694	186,52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479	8,766	6,125	5,673	6,046	5,573
남북협력기금	87,178	90,220	157,474	153,801	175,124	175,66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4,570	133,530	95,212	104,444	88,946	76,63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63,595	123,159	44,770	140,150	350,304	372,77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87,941	93,942	65,499	186,255	234,115
농지관리기금	905,000	737,000	585,070	1,059,040	280,160	309,425
대외경제협력기금	137,445	117,658	159,692	154,871	206,451	177,477
문화예술진흥기금	148,226	203,738	171,860	126,543	96,918	88,55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656,777	2,876,680	3,095,970	3,365,618	3,862,596	4,021,010
방송통신발전기금	204,769	153,061	109,778	132,535	152,503	148,544
방송통신발전기금	204,769	153,061	109,778	132,535	152,503	148,54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353	5,497	8,522	17,771	43,367	40,987
보훈기금	158,677	119,717	135,132	129,358	112,483	111,10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742	32,922	82,609	56,797	86,686	101,641
사학진흥기금	102,679	113,254	52,328	77,429	102,492	99,70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4,751	71,326	63,407	32,843	43,752	41,023
석면피해구제기금	13,261	23,632	16,211	5,803	5,013	6,50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61,646	489,555	1,957,889	1,345,905	1,476,418	1,401,179
수산발전기금	198,840	169,212	114,175	135,300	134,273	177,74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3,023	80,355	53,509	79,608	88,154	62,183
양성평등기금	23,745	21,619	16,896	13,401	54,481	55,491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5
언론진흥기금	16,034	18,150	19,117	21,560	25,043	23,039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9,660	20,950	33,264	46,637	56,308	58,817
영화발전기금	165,849	89,792	62,285	60,093	55,247	23,586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8,005	22,722	15,597	11,402	7,382	12,927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76,174	95,073	113,205	148,871	181,432	192,286
응급의료기금	90,983	193,962	157,808	135,134	169,663	152,849
임금채권보장기금	826,292	721,458	664,085	640,946	555,898	463,23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3,586	207,928	204,203	141,767	101,459	95,252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200,605	173,831	150,469	145,332	93,818	77,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기금	1,049,743	1,156,281	1,376,260	1,381,229	1,420,346	1,483,040
전력산업기반기금	232,711	225,803	552,415	589,310	671,483	745,567
정보통신진흥기금	256,718	184,106	146,753	145,417	204,122	222,097
주택도시기금	38,410,038	37,977,159	45,041,034	43,064,716	20,227,954	17,327,74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3,457	156,753	113,182	101,451	103,237	98,843
지역신문발전기금	5,674	5,807	6,227	5,746	6,831	7,182
청소년육성기금	24,355	24,041	33,454	30,965	8,890	7,397
축산발전기금	207,394	128,389	68,963	149,482	163,360	130,669
한강수계관리기금	143,166	146,947	106,905	71,307	54,017	33,773

주) 2024.5월은 5월말 기준 최근 1년 평잔을 의미함
자료: 해당 부처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여유자금비중 및 기금존치평가

사업성기금은 기금별로 그 운용목적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기금별로 각기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획일화된 기준을 통해 여유자금규모의 과잉·부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다만 기금의 1년 사업비 지출 대비 여유자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유자금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기금의 1년 지출규모에서 정부내부지출[5] 및 여유자금운용[6]을 제외한 값[7] 대비 기금 여유자금규모[8](이하 '여유자금비중'이라 함)의 비율과 변화 추이를 근거로 여유자금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것임.[9]

[기금 여유자금비중 산출식]

$$(\text{기금 여유자금비중}) = \frac{(n\text{회계연도 기금 여유자금})}{(n\text{회계연도 기금 주요지출})}$$

주 1) 기금 여유자금규모는 연중 운용평잔 기준
2) (기금 주요 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5) 기금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한 것은 정부내부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따라 그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여유자금규모가 과다한 기금이 여유자금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음. 해당 예탁금을 기금 지출에 포함할 경우, 여유자금규모가 과다함에도 여유자금비중이 오히려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

6) 기금 지출에서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것은 여유자금운용은 여유자금으로 납입되는 금액에 해당하여 여유자금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7) 즉, 기금의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 기금을 운용하는 제비용에 해당하는 기금운영비 및 차입금 원금 또는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임.

8) (n회계연도 기금 여유자금 평잔)/(n회계연도 기금지출총계 - n회계연도 정부내부거래)

9) 예를 들어, 어느 기금의 여유자금비중이 3이라는 것은, 동 기금은 1년치 지출규모(정부내부지출 제외)의 3배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여유자금비중이 3보다 큰 기금이 대다수라면, 동 기금은 여유자금규모가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듬해 동 기금의 여유자금규모가 늘었더라도 사업비 증가로 인해 여유자금비중이 3 미만으로 감소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여유자금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이에 더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참조하였음. 정부는 2013년 기금존치평가시부터 “중기가용자산”[10]개념을 사용하여 기금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① 최근 5개년의 실적과 향후 5개년의 추계를 통해 기금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입액과 사업에 필요한 지출액을 활용하여 적정자산을 산출하고, ② 적정자산과 향후 5개년간 유동화가 가능한 순자산을 비교하여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임.

(다) 기금별 여유자금비중 현황

2019년~2023년간 기금별 여유자금비중은 대체로 0.1~2.0배 사이에 분포하나, 2022년・2023년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과 같이 일시적인 사업지출 감소로 인해 여유자금비중이 급증하는 경우도 있음.

[2018~2023년 사업성기금별 여유자금비중]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학기술진흥기금	0.32	0.46	0.37	0.22	0.21	0.21
관광진흥개발기금	0.11	0.29	0.17	0.22	0.41	0.20
국가유산보호기금	0.22	0.16	0.14	0.19	0.10	0.09
국민건강증진기금	0.09	0.07	0.12	0.13	0.13	0.21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0.74	0.77	0.60	0.55	0.69	1.04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49	1.65	1.41	1.07	0.96	1.14
국유재산관리기금	1.34	1.10	0.93	0.96	1.10	1.35
국제교류기금	1.84	1.53	1.28	0.82	0.85	1.02
국제질병퇴치기금	1.16	1.25	0.87	0.63	0.14	0.23
군인복지기금	1.49	1.41	1.45	1.33	1.29	1.24
근로복지진흥기금	0.73	0.73	0.47	0.34	0.39	0.41
금강수계관리기금	0.03	0.08	0.10	0.17	0.25	0.25
기후대응기금	-	-	-	-	0.08	0.08

10) 중기가용자산이란 5년 내에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임. 중기가용자산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지출수요 부족 시 유동화를 통해 기금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음.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05	0.05	0.04	0.03	0.02	0.03
남북협력기금	0.93	1.13	1.94	4.70	1.92	7.0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23	0.12	0.06	0.04	0.04	0.0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6.36	0.46	2.43	0.30	106.90	489.9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	-	0.03	0.04	0.03	0.07
농지관리기금	1.08	0.74	0.48	0.34	0.59	0.15
대외경제협력기금	0.13	0.13	0.13	0.13	0.12	0.14
문화예술진흥기금	0.27	0.55	0.63	0.50	0.31	0.2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2.84	18.18	16.72	18.29	21.66	20.85
방송통신발전기금	0.21	0.24	0.13	0.09	0.11	0.14
방송통신발전기금	0.21	0.24	0.13	0.09	0.11	0.1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0.24	0.14	0.06	0.08	0.23	0.54
보훈기금	1.38	1.25	0.88	0.96	1.01	0.8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0.22	0.24	0.62	1.23	0.79	1.24
사학진흥기금	0.18	0.46	0.48	0.41	0.39	0.65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0.98	1.25	1.83	1.44	0.78	1.05
석면피해구제기금	1.03	0.62	1.10	0.62	0.18	0.1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08	0.12	0.05	0.09	0.03	0.37
수산발전기금	0.25	0.40	0.32	0.19	0.24	0.2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3	0.99	0.90	0.56	0.81	0.86
양성평등기금	0.10	0.06	0.05	0.04	0.02	0.09
언론진흥기금	0.56	0.73	0.83	0.93	1.04	1.2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0.04	0.12	0.26	0.42	0.53	0.62
영화발전기금	3.60	2.26	0.74	0.44	0.58	0.68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0.17	0.17	0.12	0.07	0.05	0.04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0.48	0.78	0.90	1.03	1.30	1.45
응급의료기금	0.46	0.41	0.17	0.67	0.48	0.68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1.85	1.59	1.13	1.06	1.07	0.7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18	3.92	3.96	3.95	2.37	1.6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0.48	0.44	0.33	0.31	0.39	0.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77	2.16	1.96	2.01	1.79	1.64
전력산업기반기금	0.18	0.12	0.09	0.20	0.22	0.27
정보통신진흥기금	0.27	0.28	0.14	0.10	0.08	0.16
주택도시기금	0.79	0.72	0.69	0.76	0.66	0.3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0.01	0.01	0.01	0.01	0.01	0.01
지역신문발전기금	0.63	0.77	0.68	0.70	0.68	0.81
청소년육성기금	0.13	0.20	0.18	0.25	0.21	0.06
축산발전기금	0.19	0.23	0.14	0.07	0.16	0.17
한강수계관리기금	0.23	0.30	0.28	0.20	0.14	0.1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검토의견

(가) 여유자금비중이 크거나 증가하고 있는 기금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여유자금비중이 1.0배를 초과하여 여유자금만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금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임.[11)]

[2023년 여유자금비중 1.0 초과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6.36	0.46	2.43	0.30	106.90	489.9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2.84	18.18	16.72	18.29	21.66	20.85
남북협력기금	0.93	1.13	1.94	4.70	1.92	7.09
문화예술진흥기금	3.76	7.35	8.99	7.42	5.75	4.4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18	3.92	3.96	3.95	2.37	1.6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77	2.16	1.96	2.01	1.79	1.64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0.48	0.78	0.90	1.03	1.30	1.45
국유재산관리기금	1.34	1.10	0.93	0.96	1.10	1.35
언론진흥기금	0.56	0.73	0.83	0.93	1.04	1.27
군인복지기금	1.49	1.41	1.45	1.33	1.29	1.2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0.22	0.24	0.62	1.23	0.79	1.24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49	1.65	1.41	1.07	0.96	1.14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0.98	1.25	1.83	1.44	0.78	1.0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0.74	0.77	0.60	0.55	0.69	1.04
국제교류기금	1.84	1.53	1.28	0.82	0.85	1.02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1) 기금의 수입발생시기와 지출발생시기 간의 불일치, 여유자금 추가 적립의 필요성 등 기금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여유자금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경우 이하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예컨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경우, 2018년 대비 2023년 여유자금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2021~2022년 재해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아 재보험금 지출이 감소하여 기금 지출액의 대부분이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에 지출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경우, 여유자금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20.85배이나, 동 기금의 사업은 향후 장기간·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로 수입과 지출에 시차가 크게 존재하여 현재 시점에서 여유자금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2023년 기준 여유자금비중이 각각 0.25배, 0.62배로 크게 높지 않으며,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0.0%수준으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하의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018~2023년간 여유자금비중이 증가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23개 기금임. 그 중 2018~2023년 간 여유자금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임.

[여유자금비중 증가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6.36	0.46	2.43	0.30	106.90	489.9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2.84	18.18	16.72	18.29	21.66	20.85
남북협력기금	0.93	1.13	1.94	4.70	1.92	7.09
문화예술진흥기금	3.76	7.35	8.99	7.42	5.75	4.45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0.48	0.78	0.90	1.03	1.30	1.45
국유재산관리기금	1.34	1.10	0.93	0.96	1.10	1.35
언론진흥기금	0.56	0.73	0.83	0.93	1.04	1.2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0.22	0.24	0.62	1.23	0.79	1.24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0.98	1.25	1.83	1.44	0.78	1.0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0.74	0.77	0.60	0.55	0.69	1.04
지역신문발전기금	0.63	0.77	0.68	0.70	0.68	0.81
응급의료기금	0.46	0.41	0.17	0.67	0.48	0.68
사학진흥기금	0.18	0.46	0.48	0.41	0.39	0.6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0.04	0.12	0.26	0.42	0.53	0.6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0.24	0.14	0.06	0.08	0.23	0.5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08	0.12	0.05	0.09	0.03	0.37
전력산업기반기금	0.18	0.12	0.09	0.20	0.22	0.27
금강수계관리기금	0.03	0.08	0.10	0.17	0.25	0.25
국민건강증진기금	0.09	0.07	0.12	0.13	0.13	0.21
대외경제협력기금	0.13	0.13	0.13	0.13	0.12	0.1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	0.03	0.04	0.03	0.07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0.01	0.01	0.01	0.01	0.01	0.01
관광진흥개발기금	0.11	0.29	0.17	0.22	0.41	0.20

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여유자금비중 증가율은 기금 설립연도 여유자금 평잔 대비 2023년 기금 여유자금평잔 간의 비율임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① 자체수입 과다로 인한 여유자금비중 과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그 차액이 여유자금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지출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금의 수입지출구조상 자체수입이 사업지출보다 규모가 큰 경우, 여유자금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기금의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적립되어, 전출·예탁을 통해 타 회계·기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2018년 100억원에서 2023년 867억원으로 8.7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0.22배에서 1.24배로 증가하였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배, 억원, %p, %)

구 분		2018년 (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여유자금규모	100	117	329	826	568	867	767	763.6
	여유자금비중	0.22	0.24	0.62	1.23	0.79	1.24	1.02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으로 누적되고 있음. 또한 동 기금은 「2019년 및 2022년 기금존치평가」 시 각각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다 평가를 받아, 여유자금이 과다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2018~202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자체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결산						2024년 계획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체수입 (A)	55,001	84,824	92,527	84,549	76,249	101,733	105,906
지출 (B)	45,475	48,483	53,116	67,139	71,864	70,173	71,596
차액 (C=A-B)	9,526	36,341	39,411	17,410	4,385	31,560	34,310

주) 지출은 기금 지출총계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한 주요지출을 의미함
자료 : 대법원

현재의 수입지출구조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유자금규모가 과다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지출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여유자금비중 증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기가용자산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높아진바, 지출구조개선을 통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면상으로는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같은 부채가 누적되어 여유자금비중이 증가한 경우, 기금이 지출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이 과다해지고, 이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2018년 1,092억원에서 2023년 2,193억원으로 100.8% 증가하였고, 여유자금비중은 2018년 0.11배에서 2023년 0.20배로 증가하였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배, 억원, %p, %)

구 분		2018년 (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관광진흥 개발기금	여유자금규모	1,092	2,811	2,181	2,633	4,953	2,193	1,101	100.8
	여유자금비중	0.11	0.29	0.17	0.22	0.41	0.2	0.09	-

자료: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특별지원사업 지출이 새로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공자기금 예수금 증가로 여유자금규모가 함께 증가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엔데믹에 따라 지출규모가 감소한 결과 여유자금비중이 늘어난 것임.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출국납부금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공자기금 예수금이 증가하여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감소하였으며, 2022년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2.93%로 적정수준인 50%를 초과하여 위험수준이 되었음.[12)]

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20년 기금존치평가시에는 중기가용자산규모 적정 평가를 받았으나, 2023년도에는 과소평가를 받았음. 참고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12)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금존치평가」, 107쪽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72.0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13)]

이는 기금의 명목상 여유자금비중과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그 중 실제로 사업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든 것으로, 관광기금은 수입 및 지출구조개선을 통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기후대응기금: 수입지출구조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기후대응기금은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은 상황인 반면, 주요 자체수입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인 바, 유상할당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입지출구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신설된 기금으로, 2023년 여유자금규모는 1,514억원에서 1,767억원으로 253억원(16.7%) 증가하였음.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배, 억원, %p, %)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규모	1,514	1,767	253	16.7
	여유자금비중	0.075	0.08	0.005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규모(총계)는 2022년 결산 기준 2조 465억원, 2023년 결산 기준 2조 2,267억원이고, 2024년 계획액은 2조 3,918억원임. 이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2024년간 각각 15.8%, 6.1%, 13.1% 수준으로,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같은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은 상황임. 특히, 2023년 결산의 경우, 수입 총계에서 타 회계·기금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3.9%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13) 자산: 3조 4,956억원, 부채: 2조 5,197억원

[2022~2024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2024 계획
			당초	결산	
기후대응기금 수입 총계(A)		2,046,509	2,486,723	2,226,698	2,391,807
자체수입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318,826	400,896	85,233	289,694
	기 타	4,424	-	50,967	24,457
	소 계(B)	323,250	400,896	136,200	314,151
	B/A	15.8	16.1	6.1	13.1
내부거래 (외부재원)	타 회계·기금 전입금	1,263,154	1,813,230	1,817,901	1,757,746
	공자기금 예수금	460,105	272,597	272,597	319,910
	소 계(C)	1,723,259	2,085,827	2,090,498	2,077,656
	C/A	84.2	83.9	93.9	86.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기후기금의 자체수입은 대부분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계획액보다 수입실적이 많았으나, 2021년에는 계획액 4,903억 2,500만원의 60.1%인 2,944억 6,100만원, 2022년에는 계획액 7,305억 8,400만원의 43.4%인 3,167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23년에는 계획액 3,893억 4,000만원의 21.6%인 840억 8,800만원이 수납되는데 그쳤음.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을 3,412억 4,400만원(△46.7%)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실제 수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A)	204,600	215,818	490,325	730,584	389,340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B)	232,174	248,017	294,461	316,714	84,088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B/A)	113.5	114.9	60.1	43.4	21.6

주) 수입실적은 총거래대금에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환경부

동 기금의 주요한 자체수입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기금 지출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어려워지거나,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이 고착화되어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실제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액보다 수입실적이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일부 지출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입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하여, 기금 지출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의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기금의 중장기적인 수입지출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4]

14) 이에 대해 환경부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시장참여자 확대 및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등을 통해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나) 여유자금비중이 작거나 감소하고 있는 기금

2023년 여유자금비중이 0.1배 이하인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10개 기금임.

[2023년 기준 여유자금비중 0.1배 이하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0.01	0.01	0.01	0.01	0.01	0.0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05	0.05	0.04	0.03	0.02	0.03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0.17	0.17	0.12	0.07	0.05	0.0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23	0.12	0.06	0.04	0.04	0.04
청소년육성기금	0.13	0.20	0.18	0.25	0.21	0.06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	0.03	0.04	0.03	0.07
기후대응기금	-	-	-	-	0.08	0.08
양성평등기금	0.10	0.06	0.05	0.04	0.02	0.09
국가유산보호기금	0.22	0.16	0.14	0.19	0.10	0.09
한강수계관리기금	0.23	0.30	0.28	0.20	0.14	0.1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8~2023년간 여유자금비중이 감소한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등 27개 기금임. 그 중 여유자금비중이 절반 이상 감소한 기금은 석면피해구제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12개 기금임.

[여유자금비중 감소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학기술진흥기금	0.32	0.46	0.37	0.22	0.21	0.21
국가유산보호기금	0.22	0.16	0.14	0.19	0.10	0.09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49	1.65	1.41	1.07	0.96	1.14
국제교류기금	1.84	1.53	1.28	0.82	0.85	1.02
국제질병퇴치기금	1.16	1.25	0.87	0.63	0.14	0.24
군인복지기금	1.49	1.41	1.45	1.33	1.29	1.24
근로복지진흥기금	0.73	0.73	0.47	0.34	0.39	0.41

(단위: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05	0.05	0.04	0.03	0.02	0.0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23	0.12	0.06	0.04	0.04	0.04
농지관리기금	1.08	0.74	0.48	0.34	0.59	0.15
방송통신발전기금	0.21	0.24	0.13	0.09	0.11	0.14
보훈기금	1.38	1.25	0.88	0.96	1.01	0.87
석면피해구제기금	1.03	0.62	1.10	0.62	0.18	0.13
수산발전기금	0.25	0.40	0.32	0.19	0.24	0.2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3	0.99	0.90	0.56	0.81	0.86
양성평등기금	0.10	0.06	0.05	0.04	0.02	0.09
영화발전기금	3.60	2.26	0.74	0.44	0.58	0.68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0.17	0.17	0.12	0.07	0.05	0.04
임금채권보장기금	1.85	1.59	1.13	1.06	1.07	0.7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18	3.92	3.96	3.95	2.37	1.6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0.48	0.44	0.33	0.31	0.39	0.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77	2.16	1.96	2.01	1.79	1.64
정보통신진흥기금	0.27	0.28	0.14	0.10	0.08	0.16
주택도시기금	0.79	0.72	0.69	0.76	0.66	0.34
청소년육성기금	0.13	0.20	0.18	0.25	0.21	0.06
축산발전기금	0.19	0.23	0.14	0.07	0.16	0.17
한강수계관리기금	0.23	0.30	0.28	0.20	0.14	0.1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①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23년 부채/자산 비율은 각각 1,399.23%, 380.65%로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 등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2018년 1,774억원에서 2023년 2,041억원으로 15.1%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0.27배에서 0.16배로 감소하였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2018년 1,437억원에서 2023년 1,525억원으로 6.1%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0.21배에서 0.14배로 감소하였음.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배, 억원, %)

구 분		2018년 (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정보통신진흥기금	여유자금규모	1,774	2,567	1,741	1,468	1,454	2,041	267	15.1
	여유자금비중	0.27	0.28	0.14	0.10	0.08	0.16	△0.11	-
방송통신발전기금	여유자금규모	1,437	2,048	1,531	1,098	1,325	1,525	88	6.1
	여유자금비중	0.21	0.24	0.13	0.09	0.11	0.14	△0.07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8년부터 부채/자산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음. 먼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2023년 기준 부채/자산 비율이 1,399.23%에 달함. 이는 2019년 이후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ICT) 추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15] 2020년부터 지속적인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을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코로나19 극복 및 디지털뉴딜을 위해 13개 사업을 증액하였음.

[2020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제3회 추경안(B)	증감 (B-A)	(B-A)/A
1	IoT·AI기반신 데이터댐구축	-	-	-	-	7,056	7,056	순증
2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	-	-	-	4,800	4,800	순증
3	AI융합신규감염병대응시스템	-	-	-	-	2,000	2,000	순증
4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	-	-	-	1,000	1,000	순증
5	AI융합의료영상진료·판독 시스템	-	-	-	-	6,800	6,800	순증

신규로 실시하였기 때문임. 이로 인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8년 140.17%였던 것에서, 2023년 1,399.23%로 급증하였음.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 및 부채/자산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기금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 지출	6,384	8,899	13,297	14,641	17,322	12,986
	총자산(A)	7,505	5,162	2,420	3,532	3,082	2,068
	총부채(B)	**10,520**	**8,073**	**10,023**	**17,299**	**24,760**	**28,936**
	순자산(A-B)	△3,015	△2,911	△7,603	△13,767	△21,678	△26,868
	부채/자산 비율 (B/A)	**140.17**	**156.39**	**414.17**	**489.78**	**803.37**	**1,399.2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유사하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2023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80.65%임.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디지털뉴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20년부터 신규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을 실시하였고,[16] 현재 재원의 전부를 공자기금 예수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제3회 추경안(B)	증감 (B-A)	(B-A)/A
6	AI융합지역특화산업지원	-	-	-	-	1,000	1,000	순증
7	AI융합해안경비 및지뢰탐지시스템	-	-	-	-	4,700	4,700	순증
8	AI융합국민안전 확보및신속대응 지원	-	-	-	-	800	800	순증
9	산업전문인력AI 역량강화	-	-	-	-	3,600	3,600	순증
10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74,306	45,400	45,400	45,400	85,900	40,500	89.2%
11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31,000	76,165	76,165	76,165	424,665	348,500	457.6%
12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6,731	15,944	15,944	15,944	35,944	20,000	125.4%
13	이노베이션아카데미	35,000	25,707	25,707	25,707	26,737	1,030	4.0%

주) 2020년 제4회 추경은 일반회계 1개 세부사업 증액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증액과 무관하여 제외함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및 디지털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통신망고도화' 사업(228억 5,500만원),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적용' (400억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을 증액하였음.

[2020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제3회 추경안(B)	증감 (B-A)	(B-A)/A
1	5G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	-	-	-	-	40,000	40,000	순증

금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차입이 있기 전인 2018년 102.87%에 불과하였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80.65%로 급증하였음.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비 및 부채/자산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기금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비 지출	6,671	8,410	11,860	12,518	12,310	11,239
	총자산(A)	8,406	7,400	4,777	5,723	5,800	4,429
	총부채(B)	**8,647**	**6,637**	**6,809**	**11,170**	**15,074**	**16,859**
	순자산(A-B)	△241	763	△2,032	△5,447	△9,274	△12,430
	부채/자산 비율 (B/A)	**102.87**	**89.7**	**142.54**	**195.18**	**259.89**	**380.6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한편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중기가용자산 및 2023년 기준의 여유자금평잔이 기금 적정규모 최솟값(MIN)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부채자산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소한 중기가용자산(3년 내 현금화 가능 자산)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제3회 추경안(B)	증감 (B-A)	(B-A)/A
	도적용							
2	디지털인프라진단및개선	-	-	-	-	3,000	3,000	순증
3	지역 통신망 고도화	-	-	-	-	22,855	22,855	순증
4	5G기반정부업무망고도화	-	-	-	-	10,000	10,000	순증
5	양자암호통신인프라구축	-	-	-	-	15,000	15,000	순증
6	VR·AR콘텐츠산업육성	50,517	65,930	65,930	65,930	85,930	20,000	30.3%
7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 강화	103,152	106,063	106,063	106,063	154,961	48,898	46.1%
8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27,996	29,313	29,313	29,313	63,563	34,250	116.8%
9	네트워크인프라 구성	14,518	13,860	13,860	13,860	45,860	32,000	230.9%

주) 2020년 제4회 추경은 일반회계 1개 세부사업 증액으로 방송통실반전기금 증액과 무관하여 제외함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자산 적정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 적정규모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MIN	1,267,470	662,350
MAX	2,855,652	1,646,516
2022년 말 기준 중기가용자산	202,662	454,766
2023년 여유자금평잔	204,122	152,503

자료 : 「2023년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5.) 및 부처 제출 자료 재구성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17]

②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구조조정 필요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전입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여유자금 조성이 이루어기 힘든 상황이므로,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 확보 및 외부재원 의존도 감소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육성기금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여유자금규모는 144억원에서 89억원으로 38.2% 감소하였고, 여유자금비중은 0.13배에서 0.06배로 감소하였음

[청소년육성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배, 억원, %p, %)

구 분		2018년 (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청소년육성기금	여유자금규모	144	244	240	335	310	89	△55	△38.2
	여유자금비중	0.13	0.20	0.18	0.25	0.21	0.06	△0.07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청소년육성기금의 여유자금비중과 여유자금규모는 감소 추세임. 이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저소득층·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18] 사업에 미사용한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임.[19]

17)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유사사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평가가 연례적으로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논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

2018년 이후 청소년육성기금의 정부내부수입 중 복권기금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임. 또한 수입 총계에서 복권기금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8.7%에서 2023년 82.8%로 급증하여, 복권기금전입금에의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2024년 계획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소년 육성 기금	자체수입		19,059	18,297	11,883	8,749	2,554	5,784	10,340
	정부내부수입 (A)		97,605	108,373	124,368	128,749	146,238	157,973	155,387
		복권기금전입금 (B)	97,450	107,598	119,418	127,857	135,750	149,473	149,596
		비중 (B/A)	**99.8**	**99.3**	**96.0**	**99.3**	**92.8**	**94.6**	**96.3**
	차입금		-	-	-	-	-	-	-
	여유자금회수 등		25,263	30,937	27,963	31,479	26,299	16,845	4,980
	수입총계(C)		**141,927**	**157,607**	**164,214**	**168,977**	**175,091**	**180,602**	**170,707**
		복권기금전입금 비중 (B/C)	**68.7**	**68.3**	**72.7**	**75.7**	**77.5**	**82.8**	**87.6**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 확보와 외부재원 의존도 감소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 · 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9)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사업은 사업설명자료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 단년도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하는 구조임.

③ 국가유산보호기금: 기금의 독립성 확보 필요 등을 위한 구조개선 필요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과소하여 기금의 독립성·실효성 및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235억원에서 141억원으로 40.0% 감소하였고, 여유자금비중은 0.22배에서 0.09배로 감소하였음.

[국가유산보호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배, 억원, %p, %)

구 분		2018년 (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국가유산 보호기금	여유자금규모	235	194	186	251	146	141	△94	△40.0
	여유자금비중	0.22	0.16	0.14	0.19	0.10	0.09	△0.13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 재원 중 정부내부수입이 평균 8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의 비율은 5.2%에 불과함(5년 연속 9% 미만). 특히, 2023년 자체수입의 비중은 전년보다 더 감소하여 4.0%에 머물렀음.

최근 문화경쟁력으로서 국가유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금 지출 소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기금사업비는 전년 대비 9.1%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5.4%가 감소하여 사업비의 대부분을 사실상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기금사업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중 4.6%(결산기준)).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지출·기금사업비 중 자체수입 등의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입 결산 (A)	자체수입 결산 (B)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 (B/A)	정부내부거래 결산 (C)	수입 중 정부내부거래 비중 (C/A)	기금사업비 결산 (D)	기금사업비 중 자체수입 비중 (B/D)
2019	143,303	12,394	8.6	110,628	77.2	120,360	10.3
2020	154,973	6,390	4.1	128,206	82.7	136,276	4.7
2021	154,992	5,487	3.5	133,939	86.4	133,719	4.1
2022	167,775	9,849	5.9	140,643	83.8	145,975	6.7
2023	183,290	7,346	4.0	158,339	86.4	159,208	4.6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는 경우,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인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기금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고,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20] 사업비 규모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시급성보다 복권기금 전입 여력에 따라 결정되어 신축적 운용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임.

한편 국가유산보호기금의 경우 2025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총 916억원)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자부담이 계속된다는 점(2023년 납입금 15억 8,100만원)[21]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고갈 등 기금의 안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차입일	차입금	차입금리	차입기간	거치기간	원금상환예정일
2018-04-05	2,677	2.578%	2025-03-09	7년	2025-03-09
2018-06-07	5,493	2.578%	2025-03-09	7년	2025-03-09
2019-09-05	9,338	1.817%	2026-06-09	7년	2026-06-09
2020-06-08	33,100	1.557%	2030-03-09	10년	2030-03-09
2021-01-14	27,000	1.547%	2030-12-09	9년	2030-12-09
2021-07-12	13,992	1.912%	2031-06-09	10년	2031-06-09

주) 향후 상환계획: ('25) 81억 7,000만원, ('26) 93억 3,800만원, ('30) 601억원, ('31) 139억 9,200만원
자료: 국가유산청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22] 성과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정비하는 등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1)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납입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6	255	513	1,382	1,581	1,581	5,378

자료: 국가유산청

22) 이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은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납부비율 확대(국가 10→20%, 지방 10→15%),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함.(이와 관련하여 제21대국회에 제출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은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④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급감에 따른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대책 필요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고금리·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약저축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40조 1,602억원에서 20조 2,280억원으로 49.6% 급감하였고, 여유자금비중은 0.79배에서 0.34배로 감소하였음.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배, 억원, %p, %)

구 분		2018년 (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규모	401,602	384,100	379,772	450,410	430,647	202,280	△199,322	△49.6
	여유자금비중	0.79	0.72	0.69	0.76	0.66	0.34	△0.45	△57.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수입은 ①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②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③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④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 수입은 ①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③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됨.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 14. (생 략)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 10. (생 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23]·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됨.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58.7조원에서 2021년 76.1조원까지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62.6조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63.5조원으로 2021년 대비 12.6조원(△16.6%)이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8.7**	**69.7**	**76.1**	**62.6**	**63.5**
○ 차입금	**31.6**	**39.9**	**41.9**	**32.8**	**28.3**
청약	16.2	21.2	23.1	18.3	15.0
채권	15.4	18.7	18.8	14.4	13.4
○ 정부내부수입	**12.7**	**12.0**	**16.6**	**15.1**	**19.1**
일반회계전입금	1.7	2.4	3.6	4.3	3.0
복권기금전입금	0.6	0.6	0.6	0.6	0.5
기금예탁원리금회수	9.8	8.6	11.6	9.6	15.1
계정간전입금(도시)	0.6	0.5	0.9	0.6	0.5
○ 자체수입	**14.4**	**17.9**	**17.5**	**14.8**	**16.0**
융자원리금회수	14.0	17.5	17.1	14.1	15.0
정부출자수입 등	0.4	0.4	0.5	0.7	1.1

주) 여유자금회수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차입금의 경우, 고금리, 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청약 순조성액 감소, 청약통장 가입 구좌 감소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국민주택채권 순조성액 감소에 기인함.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2023년 세수부족으로 인한 1조 5,196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불납결손 발생으로 인해 2023년 기금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융자원리금회수의 경우, 2020년 이후 융자원리금 회수가 정체되며 감소추세임.

이와 같이 2022년을 기점으로 고금리, 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약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감소하고, 청약통장 해지 증가로 기금재원의 순조성이 급감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렇듯 기금 수입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및 주거복지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기금의 지출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효과분석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기금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됨.

[2018~2023년 주택도시기금 지출 총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출	사업비	23,431,609	26,651,586	26,675,852	31,666,210	29,268,216	28,099,617
	기금운영비	860	809	451	354	362	155
	정부내부지출	9,453,343	9,116,452	11,983,822	10,343,636	15,758,089	14,959,437
	차입금원리금 상환	27,578,420	26,515,798	28,452,562	27,526,635	36,025,310	31,468,931
	여유자금운용	8,857,104	12,308,831	33,190,397	47,377,254	26,950,256	20,909,541
	지출총계	69,321,336	74,593,476	100,303,084	116,914,089	108,002,233	95,437,681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2021년 45.0조원에 달하던 기금 여유자금규모(여유자금평잔)가 2023년 20.2조로 급감하고, 2023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84.1%에 달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금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 및 절차

「국가재정법」 제70조는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은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과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음.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4] 다만, 주요항목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범위 내 변경 시 자체변경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변경이 가능함.[25][26]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시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일부 지출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체변경이 가능함.[27]

---

24)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2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사유로「국가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1항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 중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28]

(2)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변경 사례

일부 부처의 경우「국가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문제가 있음.

기금관리주체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규정된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체변경한 경우가 존재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창작지원' 및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은 당초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와 구술채록 20주년 관련 전시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음.

---

27)「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8)「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 등을 위한 기금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현액		기금변경 재원		비고
	세부사업(세목)	금액	세부사업(세목)	금액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	예술창작지원 (일반용역비)	44	예술창작지원 (시설장비유지비)	△44	2024년 관련예산 편성내역: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내 17억원 반영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일반용역비)	80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일반연구비)	△80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20주년 관련 전시 등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일반수용비)	225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시설장비유지비)	△230	사업 결과물과 현황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 예술학 관계자 초청 세미나 운영 등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국내여비)	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해당 특별전 및 전시 등은 행사성 사업으로 긴급추진의 필요가 크지 않고, 각각 30주년과 20주년 기념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을 것이며, 관련 내내역사업이 이미 계속사업 진행 중에 있어[29] 미리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②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은 2023년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 3조 2,370억원 대비 1조 7,038억 8,000만원(52.6%)을 변경(감)하였음.

[2023년도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37,000	1,533,120	-	1,533,120	1,461,701	-	71,419	3,612,000

자료: 국토교통부

29)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은 각각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과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2023년 계획액은 전시지원금 6억원, 운영비 4억 6,300만원으로 총 10억 6,300만원임. 이외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이 같은 내역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음. 2022년에는 국제미술전, 2023년에는 국제건축전을 통해 한국의 미술 등을 선보이고 있음.
-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2023년 계획액은 3억 6,400만원임.(이외에 구술채록 공공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운영, 구술채록 결과물 DB구축비 등이 같은 내역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음.)

국토교통부는 연말 집행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간 변경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던 소요라 볼 수 없고,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30]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자체변경 허용 취지는 기금운용의 자율성 및 신축성 확보이나, 이는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뤄져야 할 것임.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자체변경을 실시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사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30) 한편, 동 사업과 같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과 같이 주요항목(프로그램)의 규모가 큰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가 1조원 내외로 대규모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20% 범위 내 해당하여 별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제출 없이 자체변경 또는 협의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도 존재함.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의 규정 취지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신축적인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주요항목변경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관리·통제를 규정한 것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관리·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자체·협의변경 허용 기준에 변경액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문제

2023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데, 이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 취지에 반하여 그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나, 2023년 집행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남.

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수출기업 글로벌화’ 내역사업은 당초 이차보전지원 형태로 3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하여 직접융자로 집행하였음.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사실상 신규 융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2023년부터 동 사업의 사업수행방식을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변경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3년도 수출기업글로벌화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수출기업글로벌화	3,855	153,855	-	153,855	153,574	-	281	100,500
(기타민간 융자금)	-	**150,000**	-	150,000	150,000	-	-	89,370
(이차보전금)	3,855	3,855	-	3,855	3,574	-	281	11,1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2023년 주택도시기금 당초 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3,839억원)을 통해 당초 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동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집행하였음.

그러나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급감 문제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소요임. 또한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시에도 이러한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관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3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회 기금운용계획 심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31]

31)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당시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한 바 있음.

[2023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383,900	-	383,900	383,900	-	-	700,000

자료: 국토교통부

③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융자)’ 사업은 2023년 당초 계획액(1,179억 5,800만원) 보다 큰 규모로 기금운용계획 변경(1,335억 6,900만원)을 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공공리츠 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 편성 대비 실적을 보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공공리츠 사업에 1,689억원을 집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인 2023년에 수요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3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이미 공공리츠 사업자와 임차인 간 조기 분양전환을 논의 중에 있었으므로 융자금 집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023년 공공임대(융자)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호)

구분	계획액		집행액 (B)	예산상 목표 (호)	실적 (호)
	당초	수정(A)			
신규	57,037		17,370	2,555	14,035
2년차	30,793		21,713	1,858	965
착공	12,918	-	35,967	613	965
준공	17,210		2,648	1,043	939
공공리츠	**-**		**168,880**	**-**	**22,574**
합계	**117,958**	**251,527**	**246,578**	**6,069**	**39,478**

주 1) 신규 승인물량에는 공공임대(5/10년), 선택형, 장기전세 관련 물량 포함
2) 동 사업의 비목은 ‘기타민간융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현액 수정시 공정별 내역(신규, 착·준공 등)이 아닌 총 금액으로 수정 운영 중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은 타 대개도국 사업의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프로그램차관을 집행하는 등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취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수원국 인도네시아) 등 5개 프로그램차관 사업으로 총 4,793억 2,200만원의 계획액 중 4,70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당초 계획액에 ‘미정’으로 반영된 1,029억원 대비 3,675억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프로그램차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은 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차관을 대규모로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중 계획변경을 통한 프로그램차관 신설내역]

(단위: 백만원)

국가	내역사업명	2022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 기금운용계획		
		당초	수정	증감	당초	수정	증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합계		247,362	399,868	152,506	324,356	743,125	418,769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분야 효율성 개선프로그램 Ⅲ	-	66,020	66,020	-	-	-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	-	52,816	52,816	-	78,474	78,474
	산업현대화 및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	-	-	77,508	77,508
방글라데시	기후탄력적 통합개발 프로그램차관	-	-	-	-	121,500	121,500
에콰도르	에너지전환·투자촉진 지원 프로그램(EDCF-IDB협조융자퍼실리티기금지원)	-	-	-	-	66,840	66,840
인도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 I	-	-	-	-	135,000	135,000
미정	프로그램차관	60,000	-	△60,000	102,900	-	△102,900
계획변경 통한 프로그램차관 소계		60,000	118,836	58,836	102,900	479,322	376,4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타민간차입금’ 수입은 당초 2023년 기금운용계획 상 편성되지 않았던 수입이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받았음.

그러나 당해 대출사례는 민간적립금(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대출인데, 민간적립금을 국가예산 부족을 위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회의 심의 등 충분한 검토가 부재하였고, 향후 타 기금에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자금을 보충하는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02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 결산]

(단위 : 백만원)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A)							
-	250,000	-	250,000	250,000	250,000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은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전준비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례와 같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선례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확정권을 형해화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4)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문제

일부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초 계획이 비합리적 방식으로 수립되었던 것을 의미하고,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에 해당하므로, 누적된 추세 정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당초 계획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 반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연례적으로 세부사업 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음.

최근 2회계연도 간 세부사업별 당초 계획액 대비 수정 계획액 비율을 보면, 2022년에는 아시아차관 72.6%, 아프리카차관 96.3%, 중동-CIS차관 26.8%, 중남미차관 78.5%,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61.7%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아시아차관 70.9%, 아프리카차관 77.0%, 중동-CIS차관 8.3%, 중남미차관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29.1%로 2022년 대비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은 당초 계획액의 2배 이상이 증액 변경되었음.

[최근 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내 세부사업별 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계획액			2023년 계획액		
	당초(A)	수정(B)	B/A	당초(C)	수정(D)	D/C
아시아차관	639,379	464,159	72.6	705,400	500,307	70.9
아프리카차관	319,980	308,175	96.3	304,852	234,680	77.0
중동-CIS차관	79,531	21,348	26.8	131,972	10,946	8.3
중남미차관	47,171	37,006	78.5	36,396	13,918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47,362	399,868	161.7	324,356	743,125	229.1

자료: 기획재정부

②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의 ‘임차임대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계획액을 2년 연속 수정하여 감액하는 등 비합리적인 재원배분 문제가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5년 임차임대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 계획액(A)	변경 계획액(B)	집행액(C)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C/A)	계획액 변경(B-A)
2019	40,000	24,992	24,157	60.4	△15,008
2020	29,544	29,544	24,426	82.7	-
2021	22,413	22,413	10,547	**47.1**	-
2022	22,413	7,291	7,239	**32.3**	△15,122
2023	21,293	8,482	8,435	**39.6**	△12,8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③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사업은 최근 3년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 내역변경 등을 통한 연례적인 기금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사업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기금변경 (B-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C)	실집행액 (D)	집행률 (D/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A)	수정(B)							
2021	7,384	7,774	390	-	7,774	7,627	98.1	-	117
2022	7,400	7,810	410	-	7,810	7,684	98.4	17	109
2023	7,690	7,995	305	17	8,012	7,929	99.0	-	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④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사업은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증액소요 발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뤄지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주요 내역]

(단위: 억원)

연 도	변경액 (증액)	건수	주요 내용
2019	6,530	8건	퇴직급여 4,390억원, 공무원연금대부 2,000억원 등
2020	9,076	5건	퇴직급여·퇴직수당 8,685억원,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344억원 등
2021	7,477	5건	퇴직급여 7,274억원, 임대주택건립 182억원 등
2022	8,742	6건	퇴직급여 6,868억원, 퇴직수당 1,851억원 등
2023	**7,186**	**6건**	**퇴직급여·퇴직수당 6,030억원, 주택사업관리 248억원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이 당초 편성 때부터 실제 소요와 부합하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사업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국가재정법」 상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국회 제출 의무 미준수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그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법령상 국회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그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자체변경이나 협의변경 등 변경방식과 무관히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기한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음.[32)]

68개 기금에 대한 부처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 실적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16개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그 중 지연제출은 13건, 미제출 11건으로 총 24건의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였음.

[2023년 부처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의무 미준수 사례]

부처명	기금명	분기	미준수 사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23.1분기	지연제출 (2023.7.10.)
		2023.4분기	지연제출 (2024.2.2.)
	임금채권보장기금	2022.4분기	미제출
		2023.3분기	미제출
		2023.4분기	미제출
국가보훈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023.4분기	미제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023.2분기	지연제출 (2023.9.4.)
		2023.4분기	지연제출 (2024.6.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2022.4분기	지연제출 (2023.2.3.)
	관광진흥개발기금	2022.4분기	지연제출 (2023.2.3.)

32)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처명	기금명	분기	미준수 사유
	언론진흥기금	2022.4분기	지연제출 (2023.2.3.)
	지역신문발전기금	2022.4분기	지연제출 (2023.2.3.)
	국민체육진흥기금	2022.4분기	지연제출 (2023.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23.3분기	미제출
	전력산업기반기금	2023.1분기	지연제출 (2023.7.11.)
		2023.4분기	미제출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2023.2분기	미제출
		2023.3분기	미제출
		2023.4분기	미제출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2023.2분기	지연제출 (2023.11.20.)
		2023.3분기	지연제출 (2023.11.2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3.4분기	미제출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2023.4분기	지연제출 (2024.3.15.)
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	2023.4분기	미제출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 상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기금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도가 무분별하고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의 국회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4. 재무결산

가. 개 요

(1) 현 황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 국가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하위 준칙과 지침 등을 제·개정 및 고시하였으며, 2009~2010회계연도 시범 기간을 거쳐 2011회계연도에 최초로 재무제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고, 부속서류로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를 제공함.[1)]

재무회계의 가장 큰 전제인 '발생주의'란 현금주의에 상대되는 기록방식으로 현금의 유출입 시점이 아닌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란 단식부기에 상대되는 기록방식으로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거래를 기록하여 완전성과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함.

[발생주의·현금주의, 복식부기·단식부기 비교]

발생주의	현금주의
○ 거래 또는 사건 발생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없어도 거래발생 시 기록 - 경제적 실질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만 회계기록 - 현금의 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원가로 기록 후 가액불변
복식부기	**단식부기**
○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 -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자동검증 - 재무제표(명세서) 간 연계정보의 일치	○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기록 - 연계정보 불일치 가능성 존재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국가재정활동의 주요 원천은 조세수입이며, 예산 지출의 특성으로 인해 수지의 명확성과 통제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또한 재정지출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6조의 예산의 원칙[2]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것이 요구되는데, 예산의 원칙에는 재정건전성 확보・국민부담 최소화・재정지출의 성과제고・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제고 등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이러한 국가재정의 특성상 발생주의 재무회계가 세입세출 예・결산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는 기존의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에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고,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내부통제의 기능을 하며, 재무적 관점에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회계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구분]

구 분	재무회계	예산회계
의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보고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회계방식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세입세출결산서, 수입지출결산서 등
보고방식	비교식	단년도
보고형식	회계단위 간 연계와 통합보고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2)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3]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음.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국가통합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3,099.4조원, 부채는 2,439.5조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69.9조원으로 전년 대비 62.3조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통합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조원)

계정과목	2022회계연도 (A)	2023회계연도 (B)	증감액 (B-A)	비 고
자 산 (a)	2,833.6	3,099.4	175.8	
유동자산	513.8	551.3	37.4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1,148.8	1,276.3	127.6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등
일반유형자산	710.4	720.9	10.5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422.9	422.4	△0.4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무형자산	2.5	2.8	0.3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35.2	35.7	0.5	장기미수채권 등
부 채 (b)	2,326.0	2,439.5	113.5	
유동부채	220.0	219.9	△0.1	1년 미만 국고채,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812.2	874.3	62.0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장기충당부채	1,243.2	1,293.4	50.1	연금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50.4	51.9	1.5	장기미지급금(BTL시설임대료) 등
순 자 산 (a-b)	507.6	569.9	6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5.

(가) 자 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산은 3,099.4조원으로, ①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자산 551.3조원, ②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 1,276.3조원, ③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720.9조원, ④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3)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8. (재정상태표의 정의 및 기본구조)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기반시설 422.4조원 등으로 구성됨.

2023년 자산은 전년 대비 175.8조원(6.2%) 증가하였음. 이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0.4조원 감소하였으나,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이 127.6조원 증가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37.4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나) 부 채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채는 2,439.5조원으로, ①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유동부채 219.9조원, ②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확정부채인 장기차입부채 874.3조원, ③ 연금충당부채 등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장기충당부채 1,293.4조원 등으로 구성됨.

2023년 부채는 전년 대비 총 113.5조원(4.9%)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57.7조원 증가 및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48.9조원 증가 등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국가통합 재정상태표 부채 증감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2(A)	2023(B)	증 감(B-A)	증감률 [(B-A)/A]
부채 총계(1+2)	2,326.0	2,439.5	113.5	4.9
1. 국공채 등(①+②)	907.4	967.4	60.0	6.6
① 국·공채(a+b-c)	905.2	965.1	59.9	6.6
a. 국채	1018.6	1,076.3	57.7	5.7
- 국고채권	924.7	983.3	58.6	6.3
- 국민주택채권	82.2	81.6	△0.5	△0.6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8	11.4	△0.3	△2.5
b. 공채	21.6	23.1	1.5	6.9
c. 자기국·공채	135.1	134.4	△0.7	△0.5
② 차입금	2.2	2.3	0.1	4.5
2. 발생주의 부채(③+④+⑤)	1,418.6	1,472.1	53.6	3.8
③ 연금충당부채	1,181.3	1,230.2	48.9	4.1
④ 기타 충당부채	61.9	63.2	1.2	1.9
⑤ 기타 발생주의 부채	175.3	178.7	3.4	1.9

자료: 기획재정부

(다) 순자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69.9조원으로, 2022회계연도의 순자산 507.6조원보다 62.3조원(12.3%)이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조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순자산	555.7	505.4	670.7	507.6	569.9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112.5 (25.4%)	△50.3 (△9.1%)	165.3 (32.7%)	△163.1 (△24.3%)	62.3 (12.3%)

자료: 기획재정부

(3)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며, 특히 프로그램별 원가정보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이윤추구에 따른 수익창출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중심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의 국가재정활동에 소요된 순원가를 의미하는 재정운영순원가는 485.8조원이고,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지급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부담금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417.2조원으로, 이에 따른 재정운영결과는 68.6조원으로 나타남.

[2023회계연도 국가통합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조원, %)

구 분	2022회계연도(A)	2023회계연도(B)	증감액 (C=B-A)	증감률 (C/A)
Ⅰ. 재정운영순원가	512.5	485.8	△26.7	△5.2
1. 프로그램순원가	547.8	495.7	△52.0	△9.5
2. 관리운영비	30.8	32.0	1.3	4.2
3. 비배분비용	19.3	19.8	0.6	3.1
4. 비배분수익	△85.3	△61.8	23.4	△27.4
Ⅱ. 비교환수익 등	464.8	417.2	△47.6	△10.2
1. 국세수익	398.6	351.7	△46.8	△11.7
2. 부담금수익	19.3	19.8	0.6	3.1
3. 제재금수익	5.1	4.5	△0.6	△11.8
4. 사회보험수익	24.4	27.3	2.8	11.5
5. 기타비교환수익	0.2	0.3	0.0	0.0
6. 채무면제이익	0.1	0.1	0.0	0.0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7.1	13.5	△3.6	△21.1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47.8	68.6	20.8	43.5

자료: 기획재정부

(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485.8조원은 국가재정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프로그램순원가 495.7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관의 행정지원 소요비용인 관리운영비 32.0조원, 특정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배분비용 19.8조원과 비배분수익 △61.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회계연도 대비 26.7조원이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프로그램순원가는 495.7조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52.0조원(△9.5%) 감소하였음. 프로그램순원가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2023년 프로그램총원가는 617.2조원으로 전년 대비 75.4조원(△10.9%)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이 전년 대비 76.8조원 감소(△23.4%)한 것에 기인함.

2023년 프로그램수익은 121.5조원으로, 외화 등 평가이익 8.0조원(△485.5%) 감소, 기타수익 18.8조원(△153.1%)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3.4조원(△16.1%)이 감소하였음.

[프로그램순원가 증감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2회계연도(A)	2023회계연도(B)	증감액(C=B-A)	증감률(C/A)
프로그램총원가(a)	692.6	617.2	△75.4	△10.9
프로그램수익(b)	144.9	121.5	△23.4	△16.1
프로그램순원가(a-b)	547.8	495.7	△52.0	△9.5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운영순원가 중 비배분비용은 19.8조원으로 0.6조원(3.1%)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비용이 전년 대비 0.9조원(26.9%) 증가하였으나, 평가손실이 0.3조원(△17.9%) 감소한 데 기인함.

(나) 비교환수익 등

2023회계연도 비교환수익 등은 417.2조원이고, 이 중 국세수익은 351.7조원으로 비교환수익 등의 대부분(84.3%)을 차지함. 국세수익은 전년 대비 46.8조원(△11.7%) 감소하였음. 이 외에 비교환 수익 등은 부담금수익 19.8조원, 제재금수익 4.5조원, 사회보험수익 27.3조원,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3.5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순자산 변동표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냄. 2023회계연도 순자산 변동표상 기초순자산 507.6조원에서 재정운영결과 68.6조원과 조정항목 130.8조원을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569.8조원임.[4)]

4) 2023년 조정항목 130.8조원은 투자증권평가손익에 따른 순자산조정 104.1조원 증가, 자산재평가이익에 따른 조정 1.4조 감소, 기타순자산 증감에 따른 28.2조 증가 등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순자산 변동표 요약]

(단위: 조원)

구 분	2022회계연도(A)	2023회계연도(B)	증감액(B-A)
Ⅰ. 기초순자산	670.7	507.6	△163.1
Ⅱ. 재정운영결과	47.8	68.6	20.8
Ⅲ. 조정항목	△115.4	130.8	246.2
Ⅳ. 기말순자산 (Ⅰ-Ⅱ+Ⅲ)	507.6	569.8	62.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5.

나. 검토의견

(1) 재무제표 오류

첫째, 감사원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 시 특정 부처에서 오류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처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오류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결산의 절차를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는「국가회계법」 제13조[5],「국가재정법」 제58조[6]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 제59조[7] 등에 따라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함. 이후 감사원은「국가재정법」 제60조에 의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정부(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

5)「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 ·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6)「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8)]

[국가결산 절차 및 일정]

중앙관서		기획재정부		감사원		정부(기획재정부)		국회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제출 (2월 말)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원 제출 (4.10.)	⇒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송부 (5.20.)	⇒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5.31.)	⇒	결산 심의·의결 (정기회 개회 전)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사의견이 없고, 재무제표의 오류[9)]에 대한 수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2023년 24건)이 있음.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무제표 관련 오류 금액은 자산 9.0조원, 부채 0.9조원, 재정운영결과 7.9조원, 국유재산 오류금액 1.0조원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감사원 결산검사(재무제표 오류) 실적]

(단위: 조원)

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소계	재정운영결과	국유재산
2019	16.1	0.3	16.4	5.4	0.5
2020	13.4	4.4	17.8	11.8	1.2
2021	30.9	1.1	32.0	30.8	26.4
2022	6.1	0.3	6.4	17.2	0.7
2023	9.0	0.9	9.9	7.9	1.0

주)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의 오류금액은 자산, 부채, 재정운영결과의 계정과목의 합계로 표시하고, 각 계정별 과다계상금액과 과소계상금액의 절대값의 합으로 산정함

자료: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특히 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에서 발생한 감사원 결산검사 재무제표 오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전체 9조 9,165억원의 재무제표 오류 중 방위사업청이 5조 4,371억원(4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1조 4,841억원(7건)의 오류 금액이 발생하였음.

8)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재무제표의 오류는 자산·부채의 누락 및 중복 계상, 자산 평가 오류, 자산·부채의 계정 분류 오류, 수익·비용 인식 등 오류 등임.

따라서 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당 부처가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 결과 2023년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4.0조원으로, 정부부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앙관서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해연도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발견되어 이후 회계연도에 수정하는 것임.[10)]

최초 재무제표 작성 이후 2023회계연도 결산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2년에는 53.6조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음. 이는 2021년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10년만에 실시하였는데,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2022년도에 수정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임.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이러한 국유재산 전면 재평가 이후에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4.0조원 발생하여, 감사원 결산검사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 이후 확정된 과거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11)]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 손익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기오류수정 손익	-	12.6	4.4	13.6	11.9	7.3	15.9	8.8	6.9	9.0	4.6	53.6	4.0

주) 국가회계결산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정부가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결산을 시작한 2011년의 다음연도인 2012년부터 발생함

자료: 기획재정부

10)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주요 원인은 국유재산이나 물품대장을 수정하면서 자산의 이중등재나 누락을 당기에 발견하여 정리하거나, 비용을 프로그램원가와 비배분비용으로 잘못 구분한 것을 수정하기 때문임.

11) 감사원의「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에 따른 2023년 주요 전기오류수정 손익은 다음과 같음. ①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2018년 부산항만공사에 토지를 양여한 후 처분 회계처리를 누락함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2,838억 1,893만원 과소계상되었는데, 2021년 국유재산 전면 재평가가 있었음에도 국유재산(토지) 처분 회계처리가 누락된 것임. ② 장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해당 적금을 만기일(만기일 전 전역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유지하는 경우, 이는 충당부채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국방부 일반회계에서 실제 지급된 재정지원금만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었고, 현재 의무에 따른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어, 전기오류수정손실(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 987억 3,034만원이 과소계상되었음. ③ 방위사업청 일반회계에서 연구개발비로 인식해야 하는 지출액을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거나, 탄두 도입 사업이 완료되어 국방부로 관리전환 되었는데도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여전히 관련 선급금을 계상하고 있는 등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 1조 1,068억 7,093만원이 과소계상되었음.

이러한 국가재무제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지속적인 발생은 국가회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므로, 감사원과 정부부처는 회계결산검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재무제표)에서도 일부 누락된 자산이 발견되었으므로, 감사원은 회계검사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회계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자산의 누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이 아닌 석회 등 그 외 광물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부의 별도 자금인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사용하여 갱도굴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만 관리·감독되고 국가결산상 자산에서도 누락되고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규정인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한·미 정부 간 1960년에 체결한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협정”에 의해 설치된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정부를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고,[12] 같은 규정에 따라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하에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일반광)의 굴진비용에 대한 융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13]

해당 자금의 계좌의 소유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14]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운용실적 및 결산안」에 따르

12) 동 자금은 1960년 6.29. “한미정부간 사업협정(협정 490-0062호)”에 의하여 상공부 광무국에 KOMEP(Korea Office of Mineral Exploration Project)이 설치되면서 시작됨. 이후, 해당 업무가 1962년 국립지질조사소에게 이관되었다가 1967년 “수정 한미정부간 사업협정(협정 629.2-7013호)”에 의거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기금을 관리·운영함.

13)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0조(자금운용계획)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금운용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요한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가 정한다.

14)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2조(운용보고) ①매 회계년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총 26개 광산에 대하여 58억 1,2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였음.

[2023년도 광산별 갱도굴진 지원실적]

구분	광종	광산	지원량 (m)	지원금액 (백만원)	확보광량 (천톤)	가채광량 (천톤)
비금속	석회석	경기금산	270	273	690	619
	석회석	금산평창	185	188	426	383
	석회석	강원머티리얼	171	171	539	484
	석회석	대성단양	200	200	370	332
	석회석	대성삼척	427	427	1,321	1,186
	석회석	대성제천	122	122	244	218
	석회석	디에프씨	180	180	298	267
	석회석	삼호	250	250	47	42
	석회석	삼성옥동	280	280	877	788
	석회석	성신미네필드	223	223	414	372
	석회석	송경	200	203	419	375
	석회석	신동	326	332	974	874
	석회석	용연	110	112	285	254
	석회석	우룡	290	290	549	493
	석회석	지엠씨백운	80	80	240	216
	석회석	청림영월	150	150	293	263
	석회석	청림청삼	250	250	759	682
	석회석	충무정선	240	240	763	686
	석회석	에코이엠씨	211	220	499	446
	석회석	태령	260	263	795	714
	석회석	태영삼도	439	439	1,370	1,230
	석회석	태영청수	170	170	489	439
	백운석	대성석교	170	176	540	486
	백운석	비엠씨백산	170	170	466	417
	백운석	삼보단양	280	280	733	658
	규석	보명	100	123	300	269
소계	26개 광산		5,754	5,812	14,700	13,19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결산상 굴진지원금 융자잔액은 148억 7,300만원이고, 현금예금 21억 1,800만원의 여유재원이 사업자금 안에 유보되어 있음.

② 제1항의 운용보고서에는 예산실적대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23	'22	증감	과 목	'23	'22	증감
□ 자 산	14,513	14,446	67	□ 부 채	1	2	△1
ㅇ 현금예금	2,118	2,129	△11	ㅇ 미지급금	1	2	△1
ㅇ 굴진지원금	14,873	14,730	143	ㅇ 비유동부채		-	-
(대손충당금)	△2,507	△2,438	△69	□ 자 본	14,512	14,444	68
ㅇ 미수수익 등	29	25	4	ㅇ 자본금	14,315	14,315	-
				ㅇ 이월이익잉여금	197	129	68
자산합계	14,513	14,446	67	부채와 자본 합계	14,513	14,446	6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시의무가 있는 「국가회계법」상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갱도굴진사업자금은 해당 법률에 열거되지 않아 국가 자산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음. 광해광업공단 역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회계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해광업공단은 갱도굴진사업자금을 통한 융자사업 수행 및 자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자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②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국가 자산에는 2023년 이전 민간위탁사업비를 통하여 해양환경공단이 취득·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는 해양방사능 분석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유인 장비가 누락되어 있음.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공단은 해당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 실시 및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 국가 자산으로 미계상되었음.[15)]

15)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2024.5월 물품대장 등록 요청을 하여 2024. 7월 등록하였음.

[자산 누락 장비 현황]

연번	장비명	분석핵종	보유현황 (2024년 현재)
1	다검출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239+240Pu, 240Pu/239Pu	2
2	알파스펙트로미터		1
3	저준위알파 /베타카운터	전 베타	1
4	액체섬광계수기	3H, 90Sr	4
5	감마스펙트로미터	134Cs, 137Cs	12
6	다중 사중극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90Sr	1
7	감마스펙트로미터 자동 저온유지장치	보조장비	5
8	134Cs, 137Cs 공침수조	전처리 장비	15
9	90Sr 전처리설비		2
10	3H 전해농축장치		5
총계			50기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2023년에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방사능 장비 구입에 집행하였는데, 해당 장비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소유임에도 장비의 보유 및 관리를 수탁기관에서 하게 되어 해양수산부 자산 미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16][17]

16)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한 장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단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유로, 공단은 협약의 해지 시에는 장비를 장관에게 인계하고, 사전에 합의 없이 타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

[2023년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위탁계약서 일부 발췌]

제16조(재산의 귀속·관리) ① 이사장이 수탁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된 물품과 작성 보관 중인 일체의 문서는 장관의 소유로 하고 협약의 해지 시에는 이를 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본 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장비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관과 사전에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 해양수산부

17) 해양수산부는 해당 장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2024년 5월 물품대장 등록 요청을 하여 2024년 7월에 물품대장에 해당 장비를 등록 완료하였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부의 자산에는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매년 민간위탁사업비로 취득하는 장비의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자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전 부처의 민간위탁사업비로 취득하는 장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산의 미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융자자산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미계상으로 인해 자산이 과다계상된 사례가 다수 있음.

먼저, 농지관리기금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2023년 계획현액 7,650억원, 집행률 100.0%)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입자금을 융자금의 형태로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농어촌공사는 해당 대여금을 이용하여 은퇴·이농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융자금의 만기 일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동 융자자산에 대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따로 계상하지 않은 채 대여금 전체를 국가 재무결산상 자산으로 과다 계상하였음.

또한, 교육부 및 사학진흥기금은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2023년 계획현액 808억 3,300만원, 집행률 100.0%)을 추진하며 1.70%의 저리로 행복기숙사 사업수행 SPC 법인들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18)]

이러한 융자자산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미계상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재무결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산가치의 공정한 인식을 저해하고 회계정보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향후 정부는 적절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계상을 통해 자산 과다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의 금리로 대여금을 빌려와 조달하고 있는데, 「융자회계처리지침」상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한 유사한 국채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예외규정에 따라 유효이자율이 1.5%로 융자사업 이자율 1.7%보다 낮아 충당금을 따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의 입장에서는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1.5%의 대여금은 융자금이 아닌 예탁금으로 「융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융자회계처리지침」상 유효이자율에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아닌 특정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주택도시기금-사학진흥기금의 사례와 같이 정부 내 예수·예탁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기금 간 내부거래를 통해 융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단일 기금 내에서 재원을 조달하였을 때에 비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미설정하고 융자자산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2) 재무정보 미제공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 기금의 근거법률이 아닌 별도의 타 부처의 출연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보증에 관한 재무정보를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등에 미포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 기금의 근거법률(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보증과 달리 다른 법률의 규정[19]이나 타 부처의 출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계정(문화체육관광부의 완성보증계정, 기획재정부의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 산업통상자원부의 녹색보증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20]

「국가회계법」 제13조[21]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해 작성되어야 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22] 및 「보증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충당부채와 보증수

---

1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가 해당됨

20) 2023년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의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완성보증계정으로 각각 60억원, 140억원 출연하였고, ② 기획재정부는 친환경·저탄소 분야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 사업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에 각각 400억원씩 출연하였으며,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분야의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녹색혁신금융(출연) 사업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녹색보증계정)에 각각 200억원씩 출연하였음.

21)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한다.
②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비용 등을 인식하여야 함.[23]

그러나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보증에 관한 재무정보만 포함되어 있고,[24]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타 부처로부터 별도로 출연받아 수행 중인 보증계정에 대해서는 보증충당부채 등의 재무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25]

「국가회계법」 제4조는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6]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보증계정에 대해서도 국가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3) 보증충당부채란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함.

「보증 회계처리지침」
4.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8. (보증수익의 인식) (1)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말한다.
(2) "보증수익"은 보증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 증감액을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24) 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시장안정특별보증, 주력산업 등 유동화회사보증 등이 포함됨

25)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별도로 운영중인 각각의 계정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독립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계정(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만 공개되어 있을 뿐, 그 밖의 보증계정(완성계정,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 녹색보증계정)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26)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재무결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설명 추가 필요

국가결산보고서에는 현금주의인 세입세출결산서와 발생주의인 재무제표를 함께 수록하고 있으나, 두 자료의 유사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없어 결산정보를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음.

「국가회계법」에 제14조[27]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는 현금주의로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수입지출결산서)와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공되고 있음. 두 자료 간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서 재무제표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에서는 현금주의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2023년 6.5조원)[28]과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운영결과(2023년 68.6조원)[29]의 항목별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현금주의인 세입세출결산서와 발생주의인 재무제표상의 유사수치에 대해 비교·설명하거나 예산상의 재정적자와 재정운영결과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재무제표 정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더욱이 예산은 현금주의인 세입세출예산서(수입지출예산서)로만 작성되고 있으므로, 예결산의 연계를 위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요구됨.

참고로, 미국의 결산보고서는 '예산과 재무제표의 수치 차이(Accounting differences Between the Budget and the Financial Report)' 항목에서 재정적자(Budget deficit)와 재정운영결과(Net Operating Cost)가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30]

따라서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상의 유사수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7)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28)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임.

29) 재무제표상 재정운영결과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후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임.

30) Financial Report FY 2022, pp16-18 US Government, 2024.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

5. 예비비 결산

가. 개 요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며, 일반예비비는 주로 새로운 정책 수요와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 목적예비비는 미리 사용 목적을 정하여 대비할 수 있는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음.[1)]

예비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고, 목적예비비는 이와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2)]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음.[3)]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이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① 예비비 사용 신청(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 ②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작성(기획재정부장관), ③ 국무회의 심의, ④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됨.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결산서와 함께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4)]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

1) 다만,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 시 기존의 3가지 편성요건인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외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개정되었음.[5)]

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1) 일반현황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인 4조 6,000억원(일반예비비 1조 8,000억원, 목적예비비 2조 8,000억원)으로, 이 중 1조 3,091억원이 지출되었고 15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조 2,758억원이 불용되었음.[6)]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비비 3억원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46,000	13,940	13,091	151	32,758
특별회계	3	-	-	-	3
합 계	46,003	13,940	13,091	151	32,761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4)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 및 과거 예비비 집행사례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142).

6)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도가 설정된 일반예비비는 2023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에 해당하는 1조 8,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 사용명세서별 현황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사용명세별로 살펴보면, ① 목적예비비는 2조 8,000억원 중 2,121억원이 지출되었고, 용도별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1,383억원), 재해대책비(738억원)에 지출되었음.

② 일반예비비는 1조 8,000억원 중 1조 1,818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1조 970억원이 지출되었고, 15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697억원이 잔액 처리되었음. 일반예비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1,330억원), 수산업 소비촉진 제고(943억원), 연안방사능 조사 확대(152억원) 등에 사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사용 명세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일반회계	○ **목적예비비**	**2,121**	**2,121**	**-**	**-**
	- 재해대책비	738	738	-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83	1,383	-	-
	○ **일반예비비**	**11,818**	**10,970**	**151**	**697**
특별회계		-	-	-	-
(일반회계 전입금)		(4,038)	(3,981)	(23)	(33)
합 계		13,940	13,091	151	697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3) 중앙관서별 현황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1조 3,091억원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17개 기관에서 지출되었음.

예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6,087억원)이며,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1,837억원), 보건복지부(1,676억원), 해양수산부(1,095억원), 농림축산식품부(945억원), 산림청(59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앙관서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원)

소 관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주요내역
기획재정부	6,633	6,087	1	545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소요경비 등
산업통상자원부	1,837	1,837	-	-	에너지바우처 대상확대 및 동절기 단가 인상 지원 등
보건복지부	1,676	1,676	-	-	보육 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등
해양수산부	1,095	1,095	-	-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제고 할인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945	945	-	-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의 손실보상 등
산림청	629	595	34	-	봄철 산불 진화자원 헬기 임차 등
외교부	626	319	40	47	우크라이나 추가 인도적 지원 (지출액 결정액 중 220억원은 재외동포청 으로 이체)
재외동포청	0	155	16	49	재외동포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에서 이체
여성가족부	152	151	-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93	83	-	10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등
대통령경호처	137	70	55	12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및 경호보안 시스템강화
국가보훈부	34	29	-	5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반영한 기관운영예산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25	25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대비 해양감시 확대
법무부	15	8	6	1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운영경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1	7	-	3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등
국회	30	6	-	24	국회 대표단 방미 전용기 운용 등
공정거래위원회	3	3	-	-	공정위 정부청사 외부 입주부서 이동비용
합계	13,940	13,091	151	697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4) 최근 5개년 예비비 편성·지출 추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규모는 2019년까지 3조원대에서 2020년 재해대책비 증액에 따라 5조 6,100억원으로 증가된 후, 2021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조 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2022년에는 재해대책비 축소로 5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9,000억원(△16.4%)이 감소한 4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주로 재해대책비 등 목적예비비 지출 감소로 전년 대비 3조 3,958억원(△72.2%)이 감소한 1조 3,091억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연례적으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최근 5개년 예비비 편성액 및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회계	편성액	30,000	56,100	97,000	55,000	46,000
	지출액	26,901	54,467	92,721	47,049	13,091
특별회계	편성액	10	5	3	2	3
	지출액	-	-	-	-	-
합계	편성액	30,010	56,105	97,003	55,002	46,003
	지출액	26,901	54,467	92,721	47,049	13,091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예비비 사용명세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목적예비비 지출액은 2,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352억원(△93.7%) 감소하였음. 이는 감염병 피해지원 지출이 전년 대비 2조 5,787억원 전액 감소하였고, 재해대책비 지출이 전년 대비 4,699억원(△86.4%) 감소 한 것 등에 기인함.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1조 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5억원(△19.2%) 감소하였음.

[최근 5개년 사용명세별 예비비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목적예비비	15,887	41,228	78,714	33,473	2,121
- 재해대책비	6,654	40,167	58,330	5,437	738
- 감염병 피해지원	-	-	20,384	25,787	-
- 법적의무지출 미지급금 등	6,024	1,018	-	2,091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712	43	-	-	1,383
-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재정지원	2,191	-	-	-	-
- 지역특구법에 따른 재정지원	306	-	-	-	-
- 인건비 (소방청 구급 상황관리 요원)	-	-	-	159	-
일반예비비	11,014	13,239	14,008	13,575	10,970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 의견

(1) 사전 예산편성 미비로 인한 예비비 사용의 문제

2023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집행 외에도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 사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 수행이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들과 유사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연례적인 예비비 집행 문제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을 수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매년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비비를 사용함.

외교부는 정상외교 일정의 특수성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정상외교 수요 증가 추세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여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비비는 새로운 정책 수요와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이고, 정상외교는 그 수요에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계속하여 수행해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비비의 사용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적정 예산편성 및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예비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8년~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19,608	19,608	5	-	6,385	25,998	24,644	125.7	94.8	703	651
2019	23,301	23,301	703	-	1,589	25,593	23,475	100.7	91.7	-	2,118
2020	21,191	11,191	-	△7,000	-	4,191	1,941	17.3	46.3	-	2,250
2021	22,502	22,502	-	-	-	22,502	19,283	85.7	85.7	709	2,510
2022	20,472	20,443	709	-	6,308	27,460	26,199	128.2	95.4	71	1,190
2023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213.5	91.9	1,071	3,633

자료: 외교부

(나)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배정 문제

대통령경호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경호안전 통제단, 각국 정상 전담 경호대를 편성ㆍ운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 50억 5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호장비 임차에 필요한 임차료 14억 1,600만원, 특수활동비 5억원, 경호요원 방탄장비, 경호위해물품 검색 장비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억 1,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22년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고, 외교부의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이 2023년 예산안에 120억원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담당부처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여 소요제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증액요구를 했어야 하나, 전반적인 회의 일정 및 경호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해당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처럼 예비비를 통해 경호장비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장비에 대

한 소요 필요성, 향후 활용계획 등이 심의되지 않아 예산 소요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023년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비비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	-	-	5,005	5,005	4,507	-	498	-
운영비	-	-	-	2,823	2,823	2,495	-	328	-
여비	-	-	-	105	105	105	-	-	-
특수활동비	-	-	-	500	500	500	-	-	-
업무추진비	-	-	-	200	200	199	-	1	-
건설비	-	-	-	364	364	237	-	128	-
유형자산	-	-	-	1,013	1,013	971	-	42	-

자료: 대통령경호처

(다) 법적근거가 마련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 배정 문제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추진을 위한 비용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연중(2023. 3. 22.)에 예비비를 배정하여 추진하였음.

동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23년 예산안 편성 시점 이전인 2022년 1월 4일에 제정되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 사실은 예측가능한 지출 소요에 해당함.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협의에도 2023년 예산안 편성 시점에 전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른 차기 위원회 구성 보류 및 실무조직인 추진단 규모 미확정으로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미확정이 주된 사유라면 본예산 반영 이후에도 수시배정 등에 의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존재하였음.[7)]

향후 국무조정실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7)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재정법」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	-	-	423.6	423.6	245.2	-	178.4	729

자료: 국무조정실

(2)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 문제

예비비 사용에 있어 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예비비를 배정받아 과다 이월이 발생하거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비를 배정받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비비 배정 및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예비비 배정 후 과다 이월한 문제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명목으로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에 예비비 7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 5월 대통령실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장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2023년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음.

다만 예비비가 배정된 일자는 2023년 9월 26일로, 당시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8]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주요직위자 등에 대한 도청 위협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차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대통령경호처의 설명대로 예비비 편성의 ‘시급성’을 인정하더라도, 배정받은 예

8) 2023.4.10.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있었음.

비비 75억 6,600만원 중 13억 4,400만원만 집행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이월(54억 8,500만원)되고 불용(7억 3,700만원)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비해 집행관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관련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	1,100	1,100	'23.9.26.	-	-
경호장비시설개선		7,566	1,344		5,485	737
합 계		8,666	2,444		5,485	737

자료: 대통령경호처

예를 들어, 대통령실 청사 보안강화 공사는 2024년 10월 말 완료예정이라는 점, 외산장비 구매는 납품지연으로 인해 2024년 6월 말 구매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었다는 점에서 예비비의 적시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신청 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청·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비비 배정 문제

기획재정부의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9]은 연구용역 지연에 따른 후속절차 순연에 따라 예비비 배정액 13억 8,700만원의 87.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24일에 예비비 13억 8,7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예비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7억 9,200만원, 정책연구비 2억원, 일반용역비 1억 3,500만원, 일반연구비 1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당초 추진단은 유산취득세 전환[10]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9)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조세개혁의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조세제도 개편 관련 홍보 및 여론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함.

10)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이후 유지되어 온 상속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으로서, 각국의 상속세제가 법제나 문화·관습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하여 왔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주요 국가가 독일, 프랑스 등 비영어권이어서 영어권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문헌자료 수집·분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연구용역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음.

바탕으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등을 위한 홍보, 여론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이 지연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홍보 및 여론조사 등 후속조치를 착수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예비비 배정액 13억 8,700만원 중 1억 1,900만원 집행에 그쳤으며 예비비 배정액의 87.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조세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으로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예비비 배정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지연되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배정된 예비비의 87.8%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를 결정하고, 연구용역 기간을 현실성 있게 설정하는 등 예비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조세개혁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	-	-	-	1,387	1,387	119	50	1,218	736

자료: 기획재정부

(3) 기타 문제점

(가)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예비비 불용 문제

해양수산부의 '산지 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집행가능성이 낮은 부실한 사업계획 및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음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예비비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의 '산지 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 사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기간을 7개월(2022.10~2023.5)로 설정하였고, 연구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2023.9월까지 1차 연장, 2023.12월까지 2차 연장하여, 공청회 개최, 홍보 및 여론조사 실시 등 후속절차는 2024년에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검사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방사능 검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예비비 59억 9,500만원이 배정됨.

예비비 신청서상 산출 근거를 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 및 시료구매비 20억 9,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시료구매 및 검사비 5억 4,600만원, 민간 검사비 20억 5,900만원, 안전필증 사업 7억 7,400만원, 검사장비 이전비 2,500만원 및 앱 개발 5억원임.

그러나 예비비 배정액 59억 9,500만원 중 36억 3,100만원만 집행(집행률 60.6%)되고 23억 6,400만원은 불용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시료구매 비용(2억 3,400만원), 안전필증 비용(7억 7,400만원) 및 검사장비 이전비(2,500만원) 전액과 지방자치단체 검사비의 89.4%(2억 7,900만원), 민간검사비의 34.6%(7억 1,300만원)가 불용된 것에 주로 기인함.

사유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요 부족으로 배정액 대부분이 불용된 지방자치단체 시료구매비 및 검사비는 예비비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의 검사 수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비하였고, 민간 검사비의 경우도 수산물의 시기별 위판 건수가 매년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 신청 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 또한 안전 필증의 경우에도 부착의 현실상 어려움 및 미부착 수산물에 대한 역차별 우려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했던 사항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예비비는 집행가능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실제 예비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 사유]

구분		예산	산출근거	실제 집행내역	불용액 발생 사유
합계		**59억 9,500만원**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 검사비	시료 구매	17억 7,880만원	38개소×3어종×주6회×26주×10만원	17억 7,900만원 중 15억 4,500만원은 일반용역비 전환 -일반용역비 15억 4,500만원 중 15억 1,100만원 실집행 시료구매비 2억 3,400만원 중 1억 3,600만원 실집행	위판장 현장 여건에 따라 시료 채취 어종·횟수 등의 변동사항 발생
	검사비	3억 1,200만원	시험연구비 1식 (수용비, 임차료 등 검사경비)	시험연구비 1식 3억 1,100만원	-
지자체 검사비	**시료 구매**	2억 3,400만원	**5개소×3어종×주6회×26주×10만원**	-	부산, 전북 2개 지자체 수요 3,300만원으로 차액분 불용
	검사비	3억 1,200만원	**검사경비 1식**	**검사경비 1식 - 3,300만원**	
민간 검사비		**20억 5,920만원**	**33개소×주6회×26주×40만원**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 추진 1식 13억 4,600만원**	수산물은 시기별 위판 건수가 변동적이며 특히 해조류의 경우 특정 시기(물김의 경우 11~2월)에 생산되어, 본 사업 추진 시점과 생산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시료위탁분석비의 예산집행이 저조
안전 필증		**7억 7,400만원**	**43개소×180일×10만원**	-	안전 필증 사업 미실시
검사장비 이전비		**2,500만원**	**5개소×500만원**	-	당초 검사장비를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 등 검사장비 보유 기관의 적극협조로 검사장비 이전비 미집행
앱개발		5억원	개발비 1식	개발비 1식 - 2억 9,400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나)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오류 문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은 법률이 아닌 예비타당성 조사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함.

2023년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중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11]에 예비비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의 예비비 편성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2021년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동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수행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예산 편성 시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특별회계 목적예비비 편성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편성[12]하고 있는데,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의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은 사업 추진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근거하여 예비비 편성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승인하였음.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 동 사업 수행 시 예비비 편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여, 예산액 13억 6,500만원에 포함된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2억 4,1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11)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23억원(국고 470억원, 지방비 52.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2026년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억 4,100만원(예산액 13억 6,500만원에서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감액) 중 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600만원을 이월함.

12)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의 신축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예비비 편성 규정이 있을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음(예를 들어, 등기특별회계는 「등기특별회계법」 제6조(예비비)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음).

[2023년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예결산]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365	1,365	-	-	△124	1,241	413	826	2	1,36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향후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에 대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편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목적예비비의 불용액 과다

2023년 재해대책비 용도의 목적예비비 집행액 규모는 최근 5년 내 가장 작은 수준이나, 2024년에 크게 증액 편성된 행안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2023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3년 목적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할 재해복구 의무 중 일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2024년으로 이연되었을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3년에는 풍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대책비 용도의 목적예비비 집행액은 73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집행실적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 용도의 목적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목적예비비 편성액	18,000	42,100	81,000	37,000	28,000
목적예비비 지출액	15,887	41,228	78,714	33,473	2,121
- 재해대책비	6,654	40,167	58,330	5,437	738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정부의 2024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각 부처에 편성된 재해대책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원 가까운 규모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2024년에 발생할 재난에 대한 대책이 아닌, 2023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24년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처	세부사업명	2023 예산	2024 예산	증액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150,035	600,040	450,005
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	250,000	250,000
	재해대책비	-	50,000	50,00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200,000	280,000	80,0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20,000	100,000	80,000
해양수산부	양식 등 재해대책비	16,346	50,000	33,654
계		**386,381**	**1,330,040**	**943,65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예산은 2023년 1,500억원에서 2024년 6,000억원으로 4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5,400억원은 2023년 7월~8월 중앙합동조사 및 2023년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수해 및 태풍 복구계획에 기반하여 2023년 재난대책비 등으로 지원되지 않은 자금을 2024년에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환경부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2,500억원 규모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을 신설하였고, 이 중 2,300억원은 역시 2023년 7~8월 중앙합동조사 및 2023년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하천 관련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계획에 기반하여 2023년에 지원되지 않은 자금을 2024년에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에 발생한 재해복구의 성질을 감안하여, 긴급한 경우는 2023년에 복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24년 예산으로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나, 세수 부족에 따라 시급히 복구되어야 할 재난대응이 이연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제도적 개선방안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이 다음연도 국회 결산과정에서 이루어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등을 통하여 국가 재정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52조[13]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연도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재정관리 측면에서 제도의 점검이 필요함.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 절차를 살펴보면, 각 부처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불용액 등을 정리한 사용명세서와 예비비 사항별 지출결정액, 배정액, 지출액, 대통령 결제일 등을 정리한 사용조서를 작성함.

예비비 사용명세서 및 예비비 사용조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결산 부속 서류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특히 예비비는 사용 목적 및 집행액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예산 편성의 원칙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재원이며, 정부가 예비비 사용 규모 및 시기 등 집행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정보를 국회는 당해연도에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예비비 배정 및 지출에 대하여 당해연도 공개 방안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6조제5항[14], 제47조제4항[15], 제70조제6항[16]에 따라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에 대한 분기별 국회 보고 사례를 참고하여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17]

---

13)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3건의 법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이 다음연도 국회 결산과정에서 이루어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등을 통하여 국가 재정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의안번호 2115414, 2117028, 2117806).
제22대 국회에서도 2024. 7월 현재 예비비 사용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계류중임(의안번호 2200284,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4. 6. 27.) / 의안번호 2200863,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4. 6. 27.)).

6. 공공기관 결산

가. 개 요

공공기관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출연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2024년 6월 기준 총 327개가 지정되어 있음.[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산규모,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 직원 정원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고,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됨.

327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32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55개,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이 240개임.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 유형별 구분 기준]

<table>
<tr><th colspan="2">분류</th><th colspan="3">구분 기준</th><th>예시</th></tr>
<tr><td rowspan="2">공기업</td><td>시장형 공기업</td><td rowspan="4">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비율 50% 이상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85% 이상</td><td>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td></tr>
<tr><td>준시장형 공기업</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 rowspan="2">준정부기관</td><td>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td><td colspan="2">「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td><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td></tr>
<tr><td>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td><td colspan="2">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td><td>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td></tr>
<tr><td colspan="2">기타 공공기관</td><td colspan="3">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td><td>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수출입은행</td></tr>
</table>

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개 기관이 감소하였음. 추가로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강화에 따라 2023년부터 총 43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내역]

(단위: 개)

연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2020	16	20	82	13	209	340
2021	15	21	82	13	218	349
2022	15	21	81	13	220	350
2023	13	19	44	11	260	347
2024	14	18	43	12	240	327

자료: 기획재정부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32개로 2023년 대비 준시장형 공기업 1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음. 준정부기관은 총 55개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었음. 기타공공기관은 총 240개로 3개가 신규로 지정되고 23개가 해제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20개 감소한 327개임.

[2023년~2024년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변동 현황]

(단위: 개)

구분		2023년	2024년 6월	변동 현황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2	-	-	-	-
	시장형	13	14	1	-	-	1
	준시장형	19	18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5	-	-	-	-
	기금관리형	11	12	1	-	-	1
	위탁집행형	44	43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60	240	△20	3	△23	-
계		347	327	△20	3	△23	-

자료: 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신규지정된 3개 기관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신규지정되었음.

해제된 23개 기관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2개 기관으로,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와 합병하며 기관이 해산되어 지정 해제되었고, 나머지 22개 기관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기관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정 해제되었음.

그 밖에 유형변경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개인데, 공기업 ·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음.

[2024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유형변경 상세 현황]

구 분 (개수)	주무 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변경사유 등
신규 (3)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
	산림청	한국치산기술협회	기타공공기관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구 분 (개수)	주무 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변경사유 등
해제 (△23)	환경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지정해제	기관 해산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정해제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기관운영·관리필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형 변경 (±2)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유형 변경 분류 기준에 따라 변경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41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31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28개 순임.

[소관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산업통상자원부	41	국방부	3
문화체육관광부	31	기상청	3
국토교통부	28	법무부	3
보건복지부	28	국가보훈부	3
국무조정실	25	원자력안전위원회	3
교육부	22	행정안전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공정거래위원회	2
해양수산부	17	방위사업청	2
농림축산식품부	12	방송통신위원회	2
중소기업부	11	외교통일부	2
환경부	11	통일부	2
고용노동부	7	경찰청	1
금융위원회	7	관세청	1
특허청	6	농촌진흥청	1
고용노동부	5	국가유산청(문화재청)	1
산림청	5	소방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5	인사혁신처	1
여성가족부	5	재외동포청	1
기획재정부	4	통계청	1

자료: 기획재정부

나. 현 황

(1)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전체 수입은 908.0조원으로 전년 943.6조원 대비 35.5조원(△3.8%)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이 전년 대비 73.3조원(△39.1%), 출자금이 전년 대비 2.3조원(△27.7%) 각각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정부직접지원 수입은 총 11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3.5%) 증가하였음.

한편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전체 지출은 907.4조원으로, 전년 943.0조원 대비 35.6조원(△3.7%) 감소하였음. 지출유형 중에는 사업비가 56.5조원(△8.2%) 감소하여 감소규모 및 감소율이 가장 높았음.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수입·지출 결산]

(단위: 조원, %)

구분			2022 (a)	2023					증감 (b-a)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합계(b)	비중	
수입	정부 직접 지원	출연금	27.8	0.1	19.1	7.2	26.4	2.9	△1.4
		출자금	8.3	5.2	0.5	0.3	6.0	0.7	△2.3
		보조금	19.8	1.2	15.3	4.1	20.7	2.3	0.9
		부담금	1.9	0.0	1.9	0.1	2.0	0.2	0.1
		이전수입	44.0	-	48.6	1.6	50.2	5.5	6.2
		위탁수입	4.5	0.3	2.2	2.2	4.7	0.5	0.2
		기타수입	0.6	0.0	0.5	0.1	0.7	0.1	0.1
		소계	106.9	6.9	88.1	15.7	110.6	12.2	3.7
	자체수입 등		649.3	261.0	273.3	149.1	683.4	75.3	34.1
	차입금		187.3	69.8	36.3	7.8	114.0	12.6	△73.3
	합계		**943.6**	**337.6**	**397.7**	**172.7**	**908.0**	**100.0**	**△35.5**
지출	인건비		30.5	12.1	8.5	10.4	30.9	3.4	0.5
	경상운영비		11.0	6.1	2.0	3.6	11.7	1.3	0.7
	사업비		686.2	233.2	290.1	106.3	629.7	69.4	△56.5
	차입상환금		57.4	45.5	24.7	7.8	78.0	8.6	20.6
	기타		157.8	40.7	72.4	43.9	157.0	17.3	△0.8
	합계		**943.0**	**337.6**	**397.7**	**172.0**	**907.4**	**100.0**	**△35.6**

자료: 기획재정부

(2) 공공기관 자산·부채 현황

2023년 말 공공기관의 자산은 1,096.3조원으로, 전년 1,048.0조원 대비 48.3조원(4.6%) 증가하였고, 부채는 709.0조원으로 전년 670.9조원 대비 38.0조원(5.7%)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524.6조원에서 2023년 709.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를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2018년 161.5%에서 2021년 154.8%까지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177.9%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183.0%까지 증가하였음.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공공기관 자산	849.4	890.2	961.9	1,048.0	1,096.3	48.3
공공기관 부채	524.6	541.8	584.3	670.9	709.0	38.0
부채비율	161.5	155.5	154.8	177.9	183.0	5.1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2023년 전년 대비 13.5조원(18.2%) 증가하여 증가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시장형 공기업 8.2조원(2.6%) 증가 순임. 2019년 이후 4년간 부채 연평균 증감율은 기타공공기관이 10.7%, 시장형 공기업이 10.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5% 순으로 나타났음.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전년비증감 (B-A)	연평균 증감율
공기업	시장형	215.9	219.9	245.4	315.3	323.5	8.2	10.6
	준시장형	168.7	174.2	184.0	192.5	199.4	6.9	4.3
	소계	384.6	394.1	429.4	507.8	522.9	15.1	8.0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58.8	62.2	65.9	74.2	87.7	13.5	10.5
	위탁집행형	61.0	61.9	61.9	61.4	68.2	6.7	2.8
	소계	119.9	124.1	127.8	135.6	155.8	20.2	6.8
기타공공기관		20.1	23.6	27.1	27.5	30.2	2.7	10.7
합 계		**524.6**	**541.8**	**584.3**	**670.9**	**709.0**	**38.0**	**7.8**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시장형 공기업이 전년 대비 14.9%p로 크게 증가하였고 나머지 유형은 소폭의 증가가 있었음. 2019년 이후 4년간 부채비율의 연평균 증감폭은 시장형 공기업이 16.8%p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8.8%p 하락하였음.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전년비증감 (B-A)	연평균 증감
공기업	시장형	162.8	165.6	189.3	288.2	303.1	14.9	16.8
	준시장형	232.7	223.5	214.2	207.9	217.0	9.1	△1.7
	소계	187.5	187.0	199.2	251.4	263.3	11.9	8.9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25.6	109.4	96.9	97.0	104.6	7.6	△4.5
	위탁집행형	233.8	223.8	196.0	157.5	161.5	3.9	△8.8
	소계	164.3	146.9	128.4	117.5	123.7	6.2	△6.8
기타공공기관		43.0	44.5	43.5	46.1	48.2	2.0	2.9
합 계		**161.5**	**155.5**	**154.8**	**177.9**	**183.0**	**5.1**	**3.2**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3.2조원으로 2022년 △14.0조원 대비 10.8조원 개선되었음.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9년 0.8조원에서 2021년 10.8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이익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손실로 전환되었음.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4.2조원, 준시장형 공기업은 3.8조원, 기타공공기관은 0.6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각각 3.5조원, 1.9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1.1	△1.3	△5.2	△23.3	△4.2	19.1
	준시장형	2.2	0.4	3.3	1.2	△3.8	△5.0
	소계	1.2	△0.9	△1.9	△22.1	△8.0	14.1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2.5	1.6	2.8	2.6	1.9	△0.8
	위탁집행형	△3.2	1.5	3.9	6.9	3.5	△3.3
	소계	△0.7	3.1	6.7	9.5	5.4	△4.1
기타 공공기관		0.3	2.9	6.0	△1.4	△0.6	0.8
합 계		0.8	5.2	10.8	△14.0	△3.2	10.8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건전성 지표별로 상위 10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우선 전년 대비 부채 증가 규모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11.3조원, 한국전력공사(및 자회사) 9.6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6.2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2조원, 한국도로공사 2.5조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부채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순위	기관명	2022 실적 (A)	2023 계획 (B)	2023 실적 (C)	전년 대비 (C-A)	계획 대비 (C-B)
1	한국주택금융공사	182,327	331,583	295,124	112,796	△36,459
2	한국전력공사	1,928,047	2,058,400	2,024,502	96,455	△33,898
3	한국토지주택공사	1,466,172	1,544,937	1,528,473	62,301	△16,464
4	국민건강보험공단	106,760	119,343	148,599	41,839	29,256
5	한국도로공사	358,300	387,265	383,391	25,091	△3,874
6	한국자산관리공사	58,470	76,154	77,341	18,871	1,187
7	한국농어촌공사	119,657	131,313	134,514	14,857	3,201
8	서민금융진흥원	34,663	-	44,706	10,043	-
9	한국무역보험공사	20,914	23,621	28,010	7,095	4,389
10	인천국제공항공사	68,726	79,550	75,587	6,861	△3,963

주 1) 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인 3개 공공기관 제외
2)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므로 제외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부채를 합산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운용순원가 기준이며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 미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당기순이익 감소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3.6조원 감소, 주택도시보증공사 3.5조원 감소, 한국가스공사 2.2조원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 0.9조원 감소 순임.

[당기순이익 감소 상위 10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순위	기관명	2022 실적 (A)	2023 계획 (B)	2023 실적 (C)	전년 대비 (C-A)	계획 대비 (C-B)
1	국민건강보험공단	65,310	18,997	29,694	△35,616	10,697
2	주택도시보증공사	△4,087	△17,558	△38,598	△34,511	△21,040
3	한국가스공사	14,970	6,222	△7,474	△22,444	△13,696
4	한국토지주택공사	14,327	1,039	5,158	△9,169	4,119
5	예금보험공사	26,752	21,968	20,738	△6,014	△1,230
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86	-	△5,562	△4,876	-
7	한국주택금융공사	△282	△156	△3,755	△3,473	△3,599

순위	기관명	2022 실적 (A)	2023 계획 (B)	2023 실적 (C)	전년 대비 (C-A)	계획 대비 (C-B)
8	한국광해광업공단	△181	259	△3,120	△2,939	△3,379
9	서민금융진흥원	1,365	-	△1,117	△2,482	-
10	한국철도공사	△2,350	△3,929	△4,516	△2,166	△587

주 1) 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인 3개 공공기관 제외
2)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므로 제외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부채를 합산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운용순원가 기준이며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 미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3)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9년 400,530명에서 2022년 429,4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420,704명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전체 공공기관 수가 감소한 것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별 정원을 감축한 데 기인함.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72,716	74,701	75,530	76,169	75,027	△1,142
	준시장형	73,867	74,891	74,408	74,787	73,515	△1,272
	소계	146,583	149,592	149,938	150,956	148,542	△2,41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29,652	30,106	31,063	31,660	30,890	△770
	위탁집행형	81,389	83,234	85,377	86,679	84,837	△1,842
	소계	111,041	113,340	116,440	118,339	115,727	△2,612
기타 공공기관		142,906	152,311	156,553	160,183	156,434	△3,749
합 계		**400,530**	**415,242**	**422,931**	**429,478**	**420,704**	**△8,774**

자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는 2019년 6,600만원에서 2023년 7,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가 2023년 8,9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200만원, 준시장형 공기업 8,000만원 순임.

[2019년~2023년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85,613	87,362	86,853	88,887	89,191	304
	준시장형	75,387	77,759	77,302	78,470	80,176	1,706
	소계	80,005	82,096	81,481	83,027	84,120	1,093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77,217	79,214	79,508	80,435	81,645	1,210
	위탁집행형	66,671	67,878	68,397	69,171	70,539	1,368
	소계	68,853	70,223	70,696	71,502	72,837	1,335
기타 공공기관		63,373	64,579	65,267	66,276	67,692	1,416
합 계		**65,899**	**67,169**	**67,734**	**68,759**	**70,123**	**1,364**

주 1) 알리오 공시상 일반정규직 기준임
2) 2018년도는 2023년도 공시, 2019년~2023년은 2024년도 공시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4)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2)]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기관의 지출예산 전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다만,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은 출연 또는 보조기관 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받는 기관이고, 출연·보조기관이라도 사업비만 지원받는 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매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수지차 보전기관의 목록 및 예산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해당 기관과 주무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는데,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음.

2) 수지차 보전기관 중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도 현황에 포함하여 작성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

구 분	기 준
지정	①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② 출연·보조기관 ③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정
지정 해제	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은 기관 ②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③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④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①~③ 중 하나와 ④ 충족 시 지정 해제

자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결산 현황

2023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63개 기관으로 출연기관 38개 기관 및 보조기관 25개 기관인데, 이 중 58개 기관은 공공기관이고 5개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임.[3]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58개 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각 1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개 기관이고, 기타공공기관은 39개 기관임.

[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소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기관	38	37	1	-	15	21	1
보조기관	25	21	-	1	2	18	4
합계	63	58	1	1	17	39	5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을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8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부 7개 기관, 고용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각 5개 기관 순임.

3)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중앙회임.

[소관 부처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소관부처명	기관명	구분	공공기관 해당 여부	공공기관 유형
문화체육관광부 (8개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	해당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예술의전당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영상자료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환경부 (7개 기관)	국립공원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립생태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출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고용노동부 (5개 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잡월드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5개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5개 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5개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연	해당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략물자관리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소관부처명	기관명	구분	공공기관 해당 여부	공공기관 유형
국토교통부 (4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법무부 (4개 기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해양수산부 (4개 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개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개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외교부 (2개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외동포재단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2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경찰청 (1개 기관)	도로교통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보훈부 (1개 기관)	독립기념관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가유산청 (1개 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방부 (1개 기관)	전쟁기념사업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농촌진흥청 (1개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1개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여성가족부 (1개 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63개 기관의 2023년도 수지차 보전 결산을 보면, 3조 9,828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3조 9,030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었음. 이 중 출연기관은 38개로 3조 1,619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3조 827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었고, 보조기관은 25개로 8,209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8,203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사업별 2023년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기관수	2023년		집행률 (B/A)	2024예산
		예산(A)	결산(B)		
출연	38	3,161,945	3,082,729	97.4	3,437,769
보조	25	820,942	820,362	99.9	823,216
합계	63	3,982,887	3,903,091	97.9	4,260,985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 중 수지차 지원액이 가장 많이 집행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9,514억 5,900만원의 출연금이 집행되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023억 3,100만원(보조금),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735억 2,700만원(출연금), 국립공원공단 2,240억 8,300만원(출연금) 순임.

[2023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지원액 상위 20개 기관]

(단위: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3 예산	2023 결산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001,418	951,45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보조	302,911	302,33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278,661	273,527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224,083	224,083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88,613	188,613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55,099	155,099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34,934	134,934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출연	103,422	103,422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83,054	83,054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80,269	80,269
국립생태원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73,196	73,196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3 예산	2023 결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72,856	72,856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보조	72,313	72,313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61,075	61,0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58,322	58,32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기타공공기관	보조	57,827	57,827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56,108	32,337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50,853	50,85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50,035	49,683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48,427	48,427

자료: 기획재정부

(나) 수지차 보전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 해제 현황

2018년~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2018년 1개 기관, 2022년 4개 기관 및 2024년 1개 기관으로 총 6개 기관임. 신규 지정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 수입이 있고 수지차 보전 방식의 예산 편성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임.

[2018년~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 신규 지정 현황]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사유	지정연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농촌진흥청	자체수입이 있으며 수지차 보전방식 편성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임	2018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타공공기관	환경부		2022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타공공기관	고용노동부		
한국물기술인증원	비공공기관	환경부		
항공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보전원	기타공공기관	환경부		2024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은 2020년 1개 기관, 2023년 4개 기관 및 2024년 2개 기관으로 총 7개 기관임. 국방기술품질원은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어 지정 해제되었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은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지정 해제되었음. 그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조사업이 폐지되어 지정 해제되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사업방식이 기존 출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정 해제되었고, 재외동포재단은 기관 해산(재외동포청 신설)으로 지정 해제되었음.

[2018년~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현황]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해제 사유	제외연도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방위사업청	고유사업 추진제한	2020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자체수입 부족기관	2023년
한국문학번역원	기타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수입 부족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방식 변경 (출연금 → 민간위탁사업비)	2024년
재외동포재단	기타공공기관	외교부	기관 해산	

자료: 기획재정부

다. 검토의견

(1) 재무건전성

(가) 재무구조 개선 필요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7월말 기준으로도 3조 7,804억원 발생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당기순손실 1,126억원 발생으로 적자 전환되었고,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3조 8,598억원이 발생하였음. 2023년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16.9%로 전년대비 81.5%p 증가하는 등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실적	232,150	515,508	237,797	554,510	314,456	712,676	176,002	410,018
보증잔액	393,162	850,481	456,999	1,047,641	537,775	1,237,635	558,835	1,279,505
보증사고	2,799	5,790	5,443	11,726	19,350	43,347	14,250	30,818
대위변제	2,476	5,041	4,296	9,241	16,040	35,544	11,124	24,177
채권회수실적	1,284	2,114	1,459	2,179	2,799	5,088	2,777	4,406

주) 회수 건수: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 회수 건이라도 1건으로 집계. 단, 해당년도에 1개 구상채권에 회수 이력이 여러 차례 있더라도 1건으로 집계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보증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1.)으로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보증배수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2023.6. 개정), 70배에서 90배로(2024.1. 개정) 상향조정하였음.[4)]

공사의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금 3,839

4) 2024.5.현재 자본금: 8조 4,151억원 - 자본금에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납입자본은 8조 7,759억원

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출자하였고, 2024년 2월 7,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였으며, 3월에는 4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5]하였음.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현황을 보면, 1999년 이후 현금출자 3조 3,230억원, 현물출자 4조원으로 총 7조 3,230억원이 출자되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현금 출자액	현물 출자	
		유형	수량
1999	5,000	-	-
2001	9,470	-	-
2003	3,321	-	-
2018	700	-	-
2021	3,900	-	-
2023	3,839	-	-
2024.2	7,000	-	-
2024.3	-	한국도로공사 주식	40,000주)(359,647,546주)
합계	**33,230**	**-**	**40,000**

주)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 금액 시가(11,122원) 기준 4조원 / 액면가(10,000원) 기준 3조 5,965억원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잔액 급증에도 2024.7월 현재 보증배수는 53.1배로 법정 보증배수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보증배수가 유지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보증잔액(A)	2,506,168	2,715,070	3,108,522	3,593,971	3,700,240	3,607,713
자기자본(B)	55,003	57,281	63,243	66,114	68,201	67,996
보증배수(B/A)	45.6	47.4	49.2	54.4	54.3	53.1
법정 보증배수	50	50	60	60	70	90

자료: 국토교통부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보증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되고 있고, 현물출자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2년 1조 581억원이었던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7월말 기준으로도 3조 7,804억원 발생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 금액 시가(11,122원) 기준 4조원 / 액면가(10,000원) 기준 3조 5,965억원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비율 및 차입금 규모 감축 노력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적자와 차입금 증가 등으로 2023년 부채비율은 95.8% 수준이며, 총 부채액 중 금융부채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023년 979억원 발생하였으므로, 부채비율 및 차입금 감축 노력이 필요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로 당기순손익이 2020년~2022년까지 적자였으나 2023년 여객수요 회복으로 4,913억원 흑자로 전환되었음.[6]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3년간 누적적자 및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하여 2023년 부채비율은 95.8% 수준임.

[2017년~2023년 부채비율 및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별도재무제표 기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채비율	52.7	39.6	31.1	46.6	68.4	92.8	95.8
차입금	22,100	19,200	13,600	26,200	42,130	55,780	59,852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23년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별도재무제표 기준)

구분	2022	2023	증감	증감률
금융부채	55,780	59,852	4,072	7.3
비금융부채	11,709	14,707	2,998	25.6
합계	67,489	74,559	7,070	10.5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23년 총 부채액은 7조 4,559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급감 및 사용료 감면(2.5조원) 등으로 발생한 누적적자 1.7조원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4.8조원) 추진을 위한 대규모 차입으로 발생하였음.

총 부채액 7조 4,559억원 중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5조 9,852억원(80.3%)이며, 이자비용은 2023년 979억원으로 2022년 821억원 대비 19.2%가 증가하였음. 이는 2023년 영업이익 5,224억원의 18.7% 수준이며, 2024년 예산에도 1,263억원의 이자비용을 편성하고 있어 자기자본의 95.8%에 이르는 부채비율 및 금융부채 감축 노력과 더불어 지출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당기순손익, 억원) △4,268 (2020) → △7,549 (2021) → △5,273 (2022) → 4,913 (202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간 부채규모 및 이자부담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총 이자비용은 2.13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부채규모는 153조원, 부채비율은 218%에 이르며, 이 중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채는 사채·주택도시기금 등 88.3조원 규모임. 최근 5년간 전체 부채규모 및 이자부담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자부담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채(A)	127	130	139	147	153
부채비율(부채/자본)	254	234	221	219	218
이자부담부채(B)	65.9	68.8	75.2	81.6	88.3
이자부담부채비율(B/A)	51.9	52.9	54.1	55.5	57.7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당기순손익은 2021년 4.2조원, 2022년 1.4조원, 2023년 0.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총 이자비용은 2.13조원이며,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말 기준 1.52배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총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단위: 조원,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EBITDA (A)	6.3	7.33	9.05	5.37	3.24
총 이자비용 (B)	2.3	2.05	1.93	1.94	2.13
이자보상배율(A/B)	2.72	3.57	4.70	2.78	1.52

주) EBITDA: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2.6.30.)에서 사업수익성 악화 징후 기관으로 간주되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는 경영효율화 및 핵심정책 위주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27년 208%의 부채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7)]

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23년 부채비율 목표는 214%이었으나 2023년 계획에서 목표비율을 220%로 변경하였고, 2023년 결산결과 부채비율은 218%로서 당초 2022년 계획 대비 4%p가 오히려 증가하였음.

[2022~2027년 부채비율 목표 대비 실적]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2 목표(a)	221%	214%	217%	215%	207%	
2023 목표(b)		220%	217%	219%	215%	208%
결산(c)	219%	218%	-	-	-	-
실적	△2%p(a-c)	4%p(a-c) △2%p(b-c)	-	-	-	-

주) (a)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b)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계획 대비 실적으로는 2%p의 부채비율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 계획은 2023년 8월에 설정한 목표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목표치를 현행화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④ 한국철도공사: 부채규모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21.7조원의 부채규모를 2026년 14.9조원으로 약 6.7조원(31.0%) 감축할 계획이며, 2027년 159.1%의 부채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규모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영효율화 등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철도공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3년 당기순손익은 4,516억원 적자로, 2022년 2,350억원 적자 대비 손실액이 92.2% 증가하였고,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익은 5,425억원 적자로, 자회사에서 손실을 줄여주고 있는 상태임.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 (2023) 220% → (2024) 217% → (2025) 219% → (2026) 215% → (2027) 208%

[2023년 한국철도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연결(C)	증감액 (A-C)
		연결(A)	별도(B)	연결효과 (A-B)		
손 익	영업수익	63,730	58,159	5,571	62,039	1,691
	영업비용	68,145	62,902	5,243	66,008	2,137
	영업손익	△4,415	△4,743	328	△3,969	△446
	영업외손익	△961	△1,606	645	△1,612	651
	법인세비용	△860	△924	64	△3,231	2,371
	당기순손익	**△4,516**	**△5,425**	**909**	**△2,350**	**△2,166**
재무 상태	자 산	290,664	287,523	3,141	290,437	227
	부 채	204,654	203,585	1,069	200,405	4,249
	자 본	86,010	83,938	2,072	90,032	△4,022
	부채비율	**237.9%**	**242.5%**	**△4.6%p**	**222.6%**	**15.3%p**

자료: 한국철도공사

2023년 부채는 약 20.5조원으로 전년 대비 4,249억원(2.1%)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237.9%로 전년대비 15.3%p 증가하였으며, 부채규모는 2019년 16.3조원에서 2023년 20.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단위: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부 채	16.3	18.0	18.7	20.0	20.5
부채비율	257.9	247.8	287.3	222.6	237.9

자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부채인수(4.5조원), 철도차량 구입 등 투자(12.1조원), 영업적자 누적(8.1조원) 등으로 2005년 이후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24년 21.7조원의 부채규모를 2026년 14.9조원으로 약 6.7조원(31.0%) 감축할 계획이며, 2027년 159.1%의 부채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사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규모를 2년 동안 30% 이상 감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영효율화 등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한국철도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단위: 억원, 연결기준)

구 분	2022(실적)	2023(실적)	2024	2025	2026	2027
자 산	290,437	290,664	299,386	287,898	240,743	247,494
부 채 (A)	200,405	204,654	216,786	204,208	149,486	151,980
자 본 (B)	90,032	86,010	82,600	83,690	91,257	95,514
부채비율(A/B)	**222.6%**	**237.9%**	**262.5%**	**244.0%**	**163.8%**	**159.1%**
영업이익	△3,969	△4,415	422	2,818	4,984	5,989
당기순손익	△2,350	△4,516	△5,395	△2,765	5,131	2,647

자료: 한국철도공사

⑤ 한국전력공사: 이자역마진 등 재무구조 개선 필요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이 2022년 25조 2,977억원에서 2023년 3조 2,492억원으로 개선되었으나, 이자역마진이 2023년 △2조 7,345억 3,6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함.

2023년 한국전력공사는 하반기 대외 경영여건이 호전되면서 당기순손실이 3조 2,492억 3,300만원으로 전년 25조 2,977억원 대비 개선되었음.

[2020년~2023년 한국전력공사 포괄손익계산서(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K-IFRS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57,989,410	59,660,600	68,951,546	85,825,593
매출원가	53,396,106	65,148,888	100,883,354	90,338,056
매출총이익	4,593,304	△5,488,288	△31,931,808	△4,512,463
당기순이익	1,951,498	△5,607,732	△25,297,712	△3,249,233

자료: 한국전력공사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및 장기 차입금은 2023년 기준 총 133조 6,31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차액을 의미하는 이자역마진은 2023년 △2조 7,345억 3,600만원(이자수익 923억 8,000만원, 이자비용 2조 8,269억 1,600만원)으로 2022년 △1조 3,537억 2,600만원(이자수익 670억 7,600만원, 이자비용 1조 4,208억 2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음.

[2021년~2023년 한국전력공사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현황(별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이자수익(A)	368	671	924
이자비용(B)	6,790	14,208	28,269
이자마진(A-B)	△6,422	△13,537	△27,345

자료: 한국전력공사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부채 관리를 통해 이자역마진 구조를 완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자체수입 등 수입구조 관련

① 한국철도공사: 매년 반복되는 자체수입 과소수납 현실화 필요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예산 대비 과소수납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각 항목별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8,772억원, 2020년 2조 4,850억원, 2021년 1조 6,705억원, 2022년 1조 3,293억원, 2023년 9,719억원의 예산 대비 과소수납이 발생하고 있음.

[2019년~2023년 자체수입 구성 항목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체수입	**86,970**	**78,198**	**91,414**	**66,564**	**92,353**	**75,648**	**101,657**	**88,364**	**100,400**	**90,681**
○정부직접지원	3,528	3,528	3,811	3,528	3,978	3,877	4,145	3,955	4,139	4,099
(보조금)	3,528	3,528	3,811	3,528	3,978	3,877	4,145	3,955	4,139	4,099
○사업수입	57,682	50,187	63,968	39,763	55,471	43,857	60,261	50,456	62,818	54,899
(주요사업)	43,252	38,682	44,081	26,671	36,700	26,224	41,849	37,555	44,487	44,247
(수탁사업)	14,430	11,505	19,887	13,092	18,771	17,634	18,412	12,901	18,330	10,652
○사업외수입	25,760	24,483	23,635	23,273	32,903	27,914	37,251	33,954	33,444	31,683
(기타사업수입)	3,389	3,164	8,176	4,848	5,480	6,071	7,672	6,235	2,638	4,247
(출자금)	742	742	1,064	1,064	1,178	902	819	812	704	704
(차입금)	21,466	20,367	14,248	16,410	26,142	16,600	28,736	26,800	29,963	23,494
(기타)	162	210	146	950	103	4,342	24	107	139	3,238

자료: 한국철도공사

자체수입 과소수납은 주로 사업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도 7,495억원의 과소수납이 발생하였고, 2023년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사업수입은 7,919억원 과소수납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자체수입 항목별 예산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②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악화로 인한 기술료 미수납 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경영악화로 인해 미납된 기술료는 징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기술료가 미납된 47건의 기술이전계약을 살펴보면, 경영악화·실시기업의 경영상 이유·상용화 포기 및 지연·기업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억 9,200만원의 기술료가 수납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47건 미납건 중 32건이 보증 및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징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2019~2023년 5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당해연도 총 기술계약건수	총 기술료 예상 수입 (A)	실제 징수된 기술료 수입 (B)	징수 기일이 미도래한 기술료수입(C)	미납액 (D=A-B-C)	기술료가 미납된 계약 건수
9,557	513,185	471,552	38,442	**3,192**	47

주) 2024년 6월 중순 기준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따라서 과학기술연구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미납된 기술료가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보증 및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미납건 중에서도 경영악화 또는 기업파산 등으로 기술료가 미납된 사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와 관련된 권리를 지체 없이 행사하는 등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8)]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기술료의 납부)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 중기 차원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 필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총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종료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 차원에서 기관의 자체사업 발굴 등 대체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총수입은 2019년 2,378억 7,800만원에서 2023년 7,327억 600만원으로 5년간 308%가 증가하여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총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5년간 기관 총수입의 41.1%를 차지하였고, 기관 자체사업 수입은 없어 기관의 총수입이 2개 사업에 크게 의존하였음.

[2019년~2023년 기관 총수입 대비 어촌뉴딜300 사업·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입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관 총수입(A)	어촌뉴딜300 및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입(B)*	어촌뉴딜300 사업 등 비중 (B/A)
2019년	237,878	107,850	45.3%
2020년	512,519	280,361	54.7%
2021년	759,930	304,057	40.0%
2022년	850,038	268,276	31.6%
2023년	732,706	151,086	20.6%
합계	2,360,365	971,318	41.1%

주) 어촌뉴딜300 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입은 전기이월액을 제외한 당기 수익을 반영함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였는데, 2024년 기준 전체 직원(246명)의 14.2%인 35명이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임.

그러나 어촌뉴딜300 사업은 2024년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30년에 각각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2개 사업의 종료 시 기관의 수입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뉴딜300 사업 등 2개 사업 종료에 대비하여 자체사업 발굴 등 중기 차원에서 대체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사업성과 및 집행 관련

(가) 법령 및 지침 위반 등 회계질서 문제

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집행 부적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계획액의 범위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재원부족을 사유로 2023년 7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사업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사업으로 158억 8,900만원을 전용하였음.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에 따르면, 2023년 고금리 및 고물가에 따른 국고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 등을 사유로 전용하였음.

[기금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증 체크리스트]

<table>
<tr><th>체크 리스트</th><th>검토 내용</th></tr>
<tr><td>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td><td>-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국고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
〈최근 5개년 기준금리 및 물가상승률〉
<table>
<tr><th>구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 6월</th></tr>
<tr><td>기준금리*</td><td>1.75%</td><td>1.25%</td><td>0.5%</td><td>1.0%</td><td>3.25%</td><td>3.5%</td></tr>
<tr><td>물가상승률</td><td>1.5%</td><td>0.4%</td><td>0.5%</td><td>2.5%</td><td>5.1%</td><td>-</td></tr>
</table>
* 연도말 한국은행 기준금리</td></tr>
<tr><td>②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td><td>- 국고대여학자금융자의 2학기 지급이 집중되는 8월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td></tr>
</table>

자료: 교육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발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의 발생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9] 예상과 달리 학자금 융자 수요가 증가한

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음.

다만 동 사업은 교육부의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2.5.)」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2년 계획액(531억 8,200만원) 대비 11% 감축한 472억 9,2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고, 최종 정부안에는 414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음.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계획액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평가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10)]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계획액의 범위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과학창의재단·해양환경공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필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해양환경공단은 성과급 최고등급 지급률이 차하위 또는 최저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성과급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11)]

---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10)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1)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그러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고등급 지급률을 차하위 또는 최저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 운용을 하고 있음.[12)]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년~2023년 성과급 최고등급/최저등급]

(단위 : 배)

연도	최고등급 지급률/차하위 또는 최저등급 지급률
2018	2.17
2019	2.17
2020	1.68
2021	1.30
2022	1.29
2023	1.29

자료: 한국과학창의재단

해양환경공단의 경우에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성과급 등급 수를 6개 등급으로 변경하였으나, 성과급 지급액 차등 수준은 개정하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해양환경공단 성과급 지급 기준(2023년분 지급 기준)]

지급기준			S	A	B	C	D	E	비고
경영평가 성과급	부서장	지급률	134%	114%	100%	86%	66%	0%	지급률 대비율, 최고/차하위 2배 차등
		인원비율	10%	15%	50%	15%	10%		
	부서원	지급률	134%	114%	100%	86%	66%	0%	
		인원비율	10%	15%	50%	15%	10%		
내부평가급	부서장	지급률	670%	570%	500%	430%	330%	0%	최고/차하위 2배 차등
		인원비율	10%	15%	50%	15%	10%		
	부서원	지급률	520%	510%	500%	490%	480%	0%	**최고/차하위 1.08배 차등**
		인원비율	10%	15%	50%	15%	10%		

자료: 해양환경공단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ㅇ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 ㅇ 내부평가급의 지급 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 동 성과급 재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정부출연금과 PBS(수탁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로 구성됨.

따라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등을 통해 지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 중 47개 한시조직은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14조에 반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립된 조직이므로 운영적정성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역조직이 임의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본원 외에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06개소이고 그 중 한시조직(과기회 이사회의 승인 및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설립된 사실상의 지역조직)은 47개소임.[13)]

[전체 지역조직 및 한시조직 현황]

(단위 : 개, 억원)

지역조직 수	지역조직 전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정부수탁금	한시조직 수	한시조직에 대한 출연금 및 정부수탁금
106	7,753.4	47	약 2,208.5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 재구성

지역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7조, 제10조 및 제14조[14)]에 따라 지역조직 설치 이전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한 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적정성 검증을 받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함.

그러나 47개 한시조직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동

13)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조직"이란 연구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14)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7조(지역조직 시범사업의 운영)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타당성조사의 실시) ① 연구회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계획의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원 외 조직 설치의 제반 여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영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후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15)]

또한 이렇게 시범사업 없이 설치되어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조직이 향후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④ 한국과학창의재단: 향후 PBS 인건비 잔액의 신속한 정산 및 반납 필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2020년 이전에 발생한 PBS 인건비 잔액을 연례적으로 이월시킨 후 이를 2024년에 인건비로 집행하였는데, 향후 정부수탁자금에 포함된 인건비 잔액은 매 회계연도 말 정산절차를 통해 즉시 반납하고 수탁자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PBS 인건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의미함.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상 선수금 명세서에 기재된 PBS 인건비 잔액은 총 7억 522만원이며, 그 중 2023년에 발생한 6,947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 잔액임. 이에 대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PBS 인건비 잔액을 인식하지 못한채 지속 이월하였다는 입장임.

[PBS 선수금 세부내역]

(단위: 원)

선수금 발생일자	금액
2018.12.30.	8,708,196
2019.12.29.	404,755,366
2020.12.27	222,289,283
2023.12.31.	69,473,403
계	705,226,248

자료 : 한국과학창의재단

15)「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제17조(한시조직에 대한 운영적정성 검토) ① 연구회는 한시조직 운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조직의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영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시 조치) ①연구기관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연구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중인 본원 외 조직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합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당해 선수금을 2024년 수입으로 인식하고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이사회 의결(2023.12.) 이후, 2024년 1월에 이를 전액 인건비로 지출 완료하였음.

그러나 이는 정부수탁자금에 포함된 인건비 잔액으로서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 후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향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PBS 인건비 잔액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잔액 발생 시 반납할 필요가 있음.

⑤ 한국광해광업공단: 갱도굴진사업자금에 대한 국가결산 공시 누락 문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석탄광물(석외석 등)의 갱도굴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부의 별도 자금인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사용하여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만 관리·감독되고 있고, 국가결산상 자산에서도 누락되고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규정인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하에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일반광)의 굴진비용에 대한 융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16]

해당 자금의 계좌 소유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17]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운용실적 및 결산안」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총 26개 광산에 대하여 58억 1,2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결산상 굴진지원금 융자잔액은 148억 7,300만원이고, 현금예금 21억 1,800만원의 여유재원이 사업자금 안에 유보되어 있음.

---

16)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0조(자금운용계획)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금운용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요한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가 정한다.

17)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2조(운용보고) ①매 회계년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보고서에는 예산실적대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3년도 광산별 갱도굴진 지원실적]

구분	광종	광산	지원량 (M)	지원금액 (백만원)	확보광량 (천톤)	가채광량 (천톤)
비금속	석회석	경기금산	270	273	690	619
	석회석	금산평창	185	188	426	383
	석회석	강원머티리얼	171	171	539	484
	석회석	대성단양	200	200	370	332
	석회석	대성삼척	427	427	1,321	1,186
	석회석	대성제천	122	122	244	218
	석회석	디에프씨	180	180	298	267
	석회석	삼호	250	250	47	42
	석회석	삼성옥동	280	280	877	788
	석회석	성신미네필드	223	223	414	372
	석회석	송경	200	203	419	375
	석회석	신동	326	332	974	874
	석회석	용연	110	112	285	254
	석회석	우룡	290	290	549	493
	석회석	지엠씨백운	80	80	240	216
	석회석	청림영월	150	150	293	263
	석회석	청림청삼	250	250	759	682
	석회석	충무정선	240	240	763	686
	석회석	에코이엠씨	211	220	499	446
	석회석	태령	260	263	795	714
	석회석	태영삼도	439	439	1,370	1,230
	석회석	태영청수	170	170	489	439
	백운석	대성석교	170	176	540	486
	백운석	비엠씨백산	170	170	466	417
	백운석	삼보단양	280	280	733	658
	규석	보명	100	123	300	269
소계	26개 광산		5,754	5,812	14,700	13,19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시의무가 있는 「국가회계법」상 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해석하여, 해당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갱도굴진 사업자금을 국가 자산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역시 기업회계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2023	2022	증감	과 목	2023	2022	증감
□ 자 산	14,513	14,446	67	□ 부 채	1	2	△1
ㅇ 현금예금	2,118	2,129	△11	ㅇ 미지급금	1	2	△1
ㅇ 굴진지원금	14,873	14,730	143	ㅇ 비유동부채		-	-
(대손충당금)	△2,507	△2,438	△69	□ 자 본	14,512	14,444	68
ㅇ 미수수익 등	29	25	4	ㅇ 자본금	14,315	14,315	-
				ㅇ 이월이익잉여금	197	129	68
자산합계	14,513	14,446	67	부채와 자본 합계	14,513	14,446	6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자금은 1960년 미국이 대한민국의 탐광갱도굴진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무상원조로 출연한 미화 85만 8,000달러를 재원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자금이므로, 국가가 운용·관리하는 자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해광업공단은 갱도굴진사업자금을 통한 융자사업 수행 및 자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자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⑥ 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소요를 당초 계획에 반영 필요

기획재정부 및 무역보험기금·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재원을 매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마련하여 지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이를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개별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정 출연 규모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기금·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각각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해 일반출연금을 각각 35억원·116억 700만원 및 312억 4,000만원을 협의변경(증)하였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공공기관명	기금명	구 분	목	세목	금액	계획수정 사유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기금	협의변경(기재부승인)(2023.12.28)	일반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	3,50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의변경(기재부승인)(2023.12.26.)	일반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	11,60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협의변경(기재부승인)(2023.12.26.)	일반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	31,24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46,34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 구간에 따라 기관의 세전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인당 기금 누적액이 많을수록 신규 출연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1인당 기금누적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신규 출연이 불가능한 구조임.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자료: 「2023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각 기관들은 동 규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세전순이익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신규로 출연할 금액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하에 무역보험기금·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내 여유재원을 민간기금출연금으로 협의변경(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는 것임.[18)]

그러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검토하여야 할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긴급한 소요인지 여부,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이를 고려할 때, 2022년도 세전순이익 발생에 따른 2023년도 신규 출연금을 12월 말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집행하여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점인 2022년 8월 당기손익 여부를 예상하여 기타경비 사업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진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모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이 2023년 말 기준 1,500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2019년 대비 1.90~2.7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매년 출연 규모를 결정할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18)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0원이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과 2022년, 2023년 모두 1인당 기금누적액 1,500만원~2,500만원 구간에 해당하여 전년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내에 신규 자금을 출연해왔음.

<2020~2023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도말 기금잔액	8,875	12,234	11,973	15,096
출연액	3,360	-	3,500	3,500
기타수입	188	243	261	313
사용액	189	504	639	600
딩해연도말 기금잔액	12,234	11,973	15,096	18,309
전년도세전순이익	299,465	△115,347	315,992	376,965
출연비율	0.01	-	0.01	0.01
1인당 기금누적액(천원)	16,118	15,712	19,630	23,442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2023년도 기관별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누적액 현황]

(단위: 천원, 배)

기관명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B/A
무역보험공사	12,344	16,118	15,712	19,630	23,442	1.90
신용보증기금	6,560	6,748	6,147	7,965	17,873	2.72
기술보증기금	7,452	7,259	6,884	12,485	20,067	2.6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추출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각 기금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연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실적 미흡

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규모 건설공사의 장기 지연 재발 방지 필요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헬스케어타운·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사업관리 부실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제3차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과 지정면세점 운영, 도민지원 사업 등을 수행함.[19]

[「제3차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및 분류]

제3차 시행계획 추진전략	제3차 시행계획 추진사업(11)	
	계속사업(5)	신규사업(6)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강화	• 영어교육도시	• 글로벌 교류 허브 • 청정제주트램 활용 도심 리노베이션
산업 혁신기반 확보	• 첨단과학기술단지(제1·2단지) • 헬스케어타운	• 스마트혁신도시 • 혁신물류단지
제주 고유가치 증진	• 신화역사공원 • 휴양형 주거단지	• 미래농업센터 • 곶자왈생태공원

자료: JDC

제3차 시행계획 추진사업 중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부지에 총사업비 1조 5,966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20]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1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나 2017년 6월 녹지그룹이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임.

2024년 4월 현재 JDC는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녹지그룹 사업장 일부를 인수해 직접 개발·운영하며, 녹지그룹은 부지 매각 금액을 활용해 나머지 시설 완공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2007년 10월부터 예래동 일대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였고,[21] 총 2조 5,148억원을 투입하여 2017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 (사업면적) 1,539천㎡ (사업비) 1조 5,966억원, (사업기간) 2008~2024년, (주요시설) 메디컬스트리트, 웰니스몰, 전문병원, 호텔, 콘도 등

년까지 휴양콘도와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5년 3월 토지수용 관련 소송패소 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손해배상으로 약 1,6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24년 4월 현재 JDC는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보상액이 약 7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인·허가를 준비 중임.

이와 같이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주거단지 건설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간 개발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손해배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따라서 JDC는 국비나 지방비가 직접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확보한 예산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사업관리 부실로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2년 이후 지연된 공공형 에너지화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은 가축분뇨의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과 퇴액비화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40~50%와 융자 20~30%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22)]

제주의 경우 동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 및 지연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처리하여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JDC는 2022년 제주지역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당초에는 3년간 총사업비 400억원 중 50%를 국고보조하고 20%를 융자 지원하며, 20%는 지방비, 10%는 자부담으로 구성되었으나,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21) (사업면적) 741천㎡, (사업비) 2조 5,148억원, (사업기간) 2005~2015년, (주요시설) 휴양시설(호텔·콘도시설 등), 기반시설(도로 등), 기타(상가 등)

22) 농림축산식품부(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3735-329,330)-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지연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2년~2023년 JDC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21억원의 교부액이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3억 5,000만원을 JDC에 교부하였으나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되어 2년간 실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제주)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사업시행주체(JDC)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2,100	2,100	2,100	-	2,100	-	2,100	-	-	-	-	-	-
2023	5,250	5,250	5,250	2,100	7,350	7,350	-	7,350	-	-	-	7,3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선정부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었고, 새로운 부지확보를 위하여 제주도·축협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11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JDC는 2022년 이후 지연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전력공사: 수탁사업 집행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 및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효율향상' 사업 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보조사업인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사업의 경우 2023년 보조금 계획현액 300억원이 전액 교부되었음.[23)]

23)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효율향상(5145-302)

그러나 실제 사업 대상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려는 사업 수요가 많지 않아 20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3년 한국전력공사의 수탁사업 지출계획 대비 실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산업부 보조사업명	한국전력공사 수탁사업명	2023		
		계획	실집행액	잔액
전력효율향상	소상공인 냉난방기교체	300	95	205
	냉장고 문달기	100	6	94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30	4	26

자료: 한국전력공사

같은 사업 내 다른 보조사업인 '냉장고 문달기' 사업 또한 편성된 보조금 100억원이 전액 한국전력공사로 교부되었으나, 식품매장 입장에서 고객 유인 및 상품 진열에 대한 시각적 유인 등을 이유로 냉장고에 문을 달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 94억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다른 보조사업인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은 송·배전망에 이미 접속된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2021년~2025년까지 정보제공장치 설치 및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24] 사업시작연도인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예산현액	6,000	6,000	3,000
교부액(A)	6,000	6,000	3,000
실집행액(B)	3,707	2,436	417
실집행률(B/A)	61.8	40.6	13.9

자료: 한국전력공사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자의 사업참여 동의율 저조 및 동의 철회로 인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불가,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감시 및 제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업을 거부하거나 현장출입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작업진행 불가 등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보조금 교부 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사업의

24) 전력산업기반기금-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구축(5203-341)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③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 확대 후 대규모 불용액 발생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사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가 예산이 소진되어 다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이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은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균등 분할 상환을 기본 조건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음.[25)]

[2023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53,520	95,559	-	95,559	78,953	-	16,606	45,492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정부는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2023.2.15.)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생계비 대부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시적(23.3.1.~6.30.)으로 확대하였음. 이러한 한시적 대부한도 확대로 일시적으로 대부 수요가 급증하여 예산이 소진되었고, 7월 한 달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예산 소진으로 인한 대부 지원 중단 문제는 2021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였음.

이후 부족분을 조달하고자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420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여 결산 결과 166억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확대 후 예산소진으로 인한 지원 중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후 대규모 불용액 발생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5) 고용보험기금-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1160-352)

(다) 사업성과 미흡

①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거래금액 지속 감소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거래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은 산림분야 데이터를 생산·가공 유통하여 산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데이터 거래량	601	6,487	9,880	15,667	19,356
데이터 거래금액	1,851	1,364	355	257	499
데이터 이용기업	110	573	283	436	509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이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해당 플랫폼 활용 증대, 산림 분야 데이터 저변 확산 및 데이터 생태계 획산을 위해 기존 유료 데이터 중심 유통정책에서 무료 중심 데이터 유통정책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무료 중심 데이터 유통정책은 해당 플랫폼에서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거래를 차단하고 단순 기초 데이터만 유통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도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산림데이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포함하여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2020년 12월 준공 및 개장하였으나 2024년 6월까지 사기업의 유치실적은 1건이고 2024년 6월 기준 공실률이 86.6%에 달하여 당초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제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핵심산업으로 해운항만물류 R&D 사업을 선정하였고, 물류 R&D 연관기업·연구소 및 교육시설 등 연관기업의 동반 입주를 추진하고 다양한 산업의 물류 R&D 테스트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이에 따라 총 사업기간 4년(2017년~2020년) 동안 총 287,884㎡ 규모로 총사업비 138억원(국비 25%, 지방비 25%, 여수광양항만공사 50%)을 투입하여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고 2020년 12월 개장하였음.

그런데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유치 실적을 보면 개장 후 해양수산부 R&D를 수행하는 2개의 공공기관과 1개의 민간기업이 입주했고, 2024년 6월 기준 1개 공공기관과 1개 민간기업이 R&D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양산업의 집적화·융복합화라는 당초 클러스터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유치 현황(2024. 6. 현재)]

구분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개발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
예산	188억원	187억원
주관부처/기관	해양수산부 / 한국교통연구원(KOTI)	해양수산부 / SMH(민간기업)
주요내용	자율주행차량 등장 시 수출입을 위한 선박 하역작업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	자동화 및 안전모듈이 탑재된 국산 타이어형 자동화 항만크레인 기술 개발
임대면적	부지 10,070㎡, 건물 337㎡	부지 11,286㎡, 건물 324㎡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1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 유치실적 저조로 인하여 공실률도 86.6%(총 임대 가능 면적 164,486㎡ 중 22,017㎡만 임대)에 달하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였다는 설명이나, 제도개선 후에도 2024년 6월 기준 추가 입주가 1건(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으로 저조한 상황임.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1) 입주기관 임대율에 따라 Ramp-Down 방식으로 감면율 적용방식 개선(2022.7월)
   * 감면율 : 40%$^{\text{임대율50\%이하}}$ → 20%$^{\text{임대율50\%초과 70\%이하}}$ → 0%$^{\text{임대율70\%초과}}$
2) 업종이 연구개발업이 아니더라도 사업 내용에 연구·개발·실증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입주 가능토록 입주기관 자격 유연화(2022.12월)
3) R&D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언제나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모집으로 전환(2022.12월)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부처의 출연금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으로 통합수행·집행하여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소관 부처별 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각 위탁운영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되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용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등)과 자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장기계속계약 중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사업 20억 3,79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개요]

❍ 사업명 : 202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12. 31.(24개월)
  - 1차년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2차년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업예산 : 총 3,988,166,000원(부가세포함)
  - 1차년 사업예산 : 1,994,083천원, 2차년 사업예산 : 2,037,900,000원
  * 2차년도 계약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
❍ 사업 목적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위기관리 역량 강화
  - 효과적인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적정 성능을 상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본원 전산실 운영 전문성 강화
  - 지속적인 사업체계 개선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출연사업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보시스템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복수 부처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부처는 출연기관이 출연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출연금의 미집행분 또는 이자상당액의 반납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각 소관 부처별 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체 홈페이지 등의 운영·유지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회계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내역]

(단위: 원)

부처명	연번	사업명	지출액	지급건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지원	7,511,740	2023년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8,199,446	
	3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4,614,295	
	4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6,060,939	
	5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48,604,751	
	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13,290,001	
	7	개인정보 침해방지	75,028,339	
	8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	
	9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 지원	-	
	소계		**173,309,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고도화	342,330,815	
	2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45,707,687	
	3	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	110,034,287	
	4	전자서명인증	160,054,885	
	5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	5,404,130	

부처명	연번	사업명	지출액	지급건명
	6	핀테크산업활성화 기반조성	8,438757	
	7	암호이용활성화	25,469,023	
	8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 운영	8,314,046	
	9	인터넷이용환경 고도화	38,899,594	
	10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4,611,893	
	11	이용자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45,799,838	
	12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2,585,668	
	13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 강화	8,31,404	
	14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498,843	
	15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	75,248,865	
	16	글로벌 ICT혁신클러스터 조성	286,835	
	17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26,226,656	
	18	페이퍼리스 촉진지원	43,195,704	
	19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 확충	9,644,710	
	소계		**962,752,236**	
방송통신위원회	1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3,994,898	
	2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4,863,717	
	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139,024	
	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13,427,183	
	소계		**23,424,822**	
행정안전부	1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24,680,103	
	소계		**24,680,103**	
KISA 운영지원	1	KISA 자체사업, 경상비 등	853,733,328	
	소계		**853,733,328**	
합계			**2,037,900,00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상 정보자원 현황]

구분	본부	담당부서	시스템명	위치	수량	홈페이지	
1	경영기획본부	정보보안팀	경영정보시스템 (원내 기반시설)	나주	360	1	대표
			정보보안 (원내 보안장비)		432		-
2		재무관리팀	자산관리(업무용 PC)	나주	2	2	전자계약
3		운영지원팀	기록물관리시스템, 항온항습기	나주	5		-
4	사이버침해대응본부	탐지대응팀	[신규] 파밍사이트 차단안내	서울 가락동	-	3	파밍사이트
5		전자정부보호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나주	9		-
6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 침해조사팀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나주	3	4	침해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5	신고처리
7		118상담팀	118상담시스템	나주	14	6	118상담
8		스팸정책팀	스팸대응시스템	서울 논현 LG + KIDC	127		-
9		전화사기예방팀	발신번호변작대응시스템		33		-
10	디지털보안산업본부	보안수준인증팀	ISMS 인증관리시스템	나주	6		
11		디지털서명 인증팀	최상위인증기관인증시스템	서울 가락동, 일부 나주	81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		-	7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신규] 전자서명인증 인정기관 홈페이지		-	8	전자서명인증 인정기관
12		차세대암호 융합팀	암호이용활성화 홈페이지	나주	-	9	암호이용활성화
13		보안교육정책팀	KISA아카데미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나주	4	10	아카데미
14		글로벌진출 지원팀	글로벌사이버보안협의체	나주	-	11	CAMP
15	디지털기반본부	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 사무국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	나주	4	12	전자거래
			[신규] ICT분쟁조정 지원센터(온라인광고)	나주	-	13	온라인광고
16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 원회사무국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나주	-	14	인터넷분쟁
합 계(부서 16개팀)					1,080	14	

②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부 기업에 대한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수혜 편중 개선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업에 연속·반복하여 융자를 실시하였으므로, 동 사업의 수혜가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을 활용하여 콘텐츠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26]

동 사업은 1997년부터 실시되었고,[27] 최근 3년 동안은 연간 평균 20.7개 기업에 대하여 평균 1.9%의 기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였음. 1개 기업당 연평균 융자액은 6억 1,700만원임.[28] 2023년에는 총 18개 기업에 대하여 총 23건, 12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음.

[최근 3년간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사업 실시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건)

연도	융자가능금액	융자지원 기업수 (A)	기준금리	융자건수	융자금액 (B)	1개 기업당 연평균 융자액 (B/A)
2021	13,000	26	1.7%	30	11,304	435
2022	13,000	18	1.9%	20	13,000	722
2023	13,000	18	2.2%	23	12,500	694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최근 3년간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사업 대출 요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준 금리	1.7%	1.9%	2.2%
대출 기간	2년		
대출 대상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영상독립제작사		
자금용도	■ 프로그램제작자금: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구축자금: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 개선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지원자금: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코로나 19 사태 긴급 금융 조달을 위한 임시 상품)		

26)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신(前身)인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조성·운용한 방송진흥기금은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2019년 방송영상진흥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7) 1997년 최초로 융자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프로그램제작자금 융자만 실시하였으나, 2007년부터 시설구축, 2010년부터 인건비지원까지 자금용도가 확대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고려하여 경영지원자금도 지원하였음.

28) 1개 기업당 연평균 융자액의 3년 평균임.

<table>
<tr><th>구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기업별
연간대출건수</td><td colspan="3">- 총 10건(반기별 5건×2회)
* (프로그램) 반기별 2건×2회 (시설구축) 반기별 2건×2회
(경영지원자금) 반기별 1건×2회</td></tr>
<tr><td>기업별
연간대출한도</td><td colspan="3">- 최대 125억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신청 건별
대출한도</th><th>기업별 연간
신청 가능 건수</th><th>총액</th></tr>
<tr><td>1</td><td>프로그램제작자금</td><td>15억원</td><td>4건</td><td>60억원</td></tr>
<tr><td>2</td><td>시설구축자금</td><td>15억원</td><td>4건</td><td>60억원</td></tr>
<tr><td>3</td><td>경영지원자금</td><td>(연간) 5억원</td><td>2건</td><td>5억원</td></tr>
<tr><td colspan="3">합계</td><td>10건</td><td>125억원</td></tr>
</table></td></tr>
<tr><td>ESG 확산기여</td><td colspan="3">- 우대금리
· 표준계약서 적용 기업 △0.2%P 차감, 코로나 피해 기업 △0.2%P 차감</td></tr>
</table>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동 사업의 목적은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 및 케이블 TV업계 등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도나 보증이 탄탄하여 시중 은행을 통한 자금 유통이 원활한 중·대기업보다는 재정운영 및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이, 소수보다는 다수의 기업이 동 사업을 통한 저리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29]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수혜기업 목록을 살펴본 결과, 같은 기업이 계속하여 지원을 받고, 기업별 융자지원액도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특정 기업에 사업의 수혜가 편중되는 문제가 나타났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속하여 융자를 지원받은 기업은 모두 5개로, 이는 2023년 총 융자기업수 18개 중 27.8%에 해당함. 또한, 3년간 실시된 융자금 368억 400만원 중 50.0%의 대여금(184억 1,000만원)이 해당 5개 기업에 융자되었음.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융자를 지원받은 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명	2021~2023년 해당 기업의 융자 총액(A)	2021~2023년 전체 융자액(B)	비중(A/B)
A기업	7,200	36,804	19.6%
B기업	5,400		14.7%
C기업	2,200		6.0%
D기업	2,150		5.8%
E기업	1,460		4.0%
합계	18,410	36,804	50.0%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9) 2023년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사업 기준금리는 2.2%로 표준계약서 적용 기업과 재해피해 또는 매출감소가 발생한 기업에는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음.

동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통해 운용되는 특성상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손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30] 직접융자가 아닌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용·담보부 대출 형식의 융자를 실시하고 있음.[31] 즉, 사업의 특성상 신용도가 좋은 일부 콘텐츠기업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사업 추진 절차]

사전상담	■ 영업점 사전상담 (신청기업 → 취급은행) ※ 담보 가능 여부 확인
▼	
온라인신청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	
선정심사	■ 일괄 선정심사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 자금계획, 제작완성·성공요소(프로그램제작자금), 시설활용요소·구축규모의 적절성(시설구축자금), ESG 등 평가
▼	
지원결정	■ 결정통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업)
▼	
자금신청	■ 영업점 신청 (신청기업 → 취급은행)
▼	
담보심사 및 대출실행	■ 담보능력, 기업 재무·신용 상태 등 추가 심사 후 대출실행 (취급은행 → 신청기업)
▼	
사후관리	■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추진 점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업)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러나 일부기업이 연례적으로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은 저리 자금 공급을 통한 콘텐츠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사업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업별 연간대출한도를 줄여 최대한 다수의 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연간대출한도 차등을 두거나, 기업별 연간 융자신청 가능건수 책정 시 최근 3년간 기 대출건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수혜기업 집중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32]

30) 방송영상진흥재원은 1999년 이후로는 조성되지 않았고, 1997년 기준 총 구성자산은 274억 5,000만원임.

31) 대출보증 방법: 물적 담보, 신용 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은행).

32) 이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년부터는 기업별 연간신청 가능 건수를 총 3건으로 줄이고(경영지원자금 상품 폐지), 기업별 연간 대출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대출 요건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함.

(3) 제도개선 과제

(가) 기관 운영방향

① 한국마사회: 경마산업의 실적 감소 추세를 감안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마사회의 마권 총발매액이 2018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급락한 이후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실적이 2018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감소 추세 이후 적자를 기록하다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023년에도 2018년의 55% 수준에 불과하는 등 경마산업의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비용절감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마사회의 마권 발매총액이 2018년 7조 5,376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1조원 대로 급락한 이후 2022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2023년에도 6조 5,007억원에 머물러 2018년의 86% 수준에 불과함.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018년부터 감소하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368억원과 3,4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023년에도 1,006억원으로 2018년의 55% 수준에 불과하는 등 경마산업이 예전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사업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마권 발매 총액	실적	75,376	73,572	10,890	10,476	63,969	65,007
	증감률	△3.4	△2.4	△85.2	△3.8	510.6	1.6
당기순이익		1,828	1,449	△4,368	△3,480	973	1,006

자료: 한국마사회

이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서는 각종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스포츠토토 등 다른 분야와의 경쟁 등과 함께, 젊은 층의 e-게임에 대한 관심으로 경마의 인기가 감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경마산업의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한국마사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절감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예술의전당: 대관 위주에서 기획 위주로, 라이센스·인기 장르 위주에서 창작·순수예술 공연 위주로 개편 필요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이 중에서도 라이센스・인기장르 대비 창작 및 순수예술장르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득수준 향상과 민간 문화예술시설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국민들은 과거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갖게 되었음. 그럼에도「문화예술진흥법」제37조에서 예술의 전당을 공공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33]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순수예술, 비인기장르 등 다양한 공연・음악・전시에 대한 향유기회 제공과 문화예술의 부흥이라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예술의전당의 공연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보다 시설대관, 창작 및 순수예술장르보다 라이센스・인기장르 작품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먼저 2023년의 시설별 사용일수를 살펴보면, 총 사용일수 중 대관공연에 제공된 비율이 71.9%로 월등히 높았음. 반면, 예술의전당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에 사용된 비율은 15.6%에 불과하고, 외부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음악・전시 등을 포함하더라도 28.1%에 그쳤음.

[2023년 한 해동안 대관시설별 기획, 공동주최, 대관공연 실시 현황]

시설	전체 사용일수 (A)	기획		공동주최		대관	
		실시일자 (B)	비중 (B/A)	실시일자 (C)	비중 (C/A)	실시일자 (D)	비중 (D/A)
오페라극장	191일	4일	2.1%	91일	47.6%	96일	50.3%
콘서트홀	245일	72일	29.4%	4일	1.6%	169일	69.0%
서예박물관	321일	42일	13.1%	-	-	279일	86.9%
합계	757일	118일	15.6%	95일	12.5%	544일	71.9%

자료: 예술의전당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체 자체수입 예산(대관/기획 공연 일정에 따른 계획) 및 결산(실제 수입)을 살펴보아도, 대관료 수입의 평균 비중이 예산 23.7%, 결산 19.8%로 가장 크고, 예술사업의 평균 비중은 예산 14.2%, 결산 14.3%에 그침.

33)「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최근 3년간 예술의전당 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자체수입	31,673	27,815	31,958	13,799	32,897	22064	33,883	27,141	33,054	29,713
	- 사업수입	31,560	27,722	31,870	13,682	32,806	22,022	33,792	27,097	32,963	29,577
	(대관사업수입)	12,968	12,535	12,946	4,779	13,334	9,421	13,743	10,608	14,480	11,445
	※합계 대비 비중	31.6%	33.7%	31.3%	20.6%	28.2%	25.9%	28.4%	25.5%	23.7%	19.8%
	(예술사업수입)	9,644	6,857	9,190	2,944	9,466	5,347	9,757	7,368	8,701	8,294
	※합계 대비 비중	23.5%	18.4%	22.2%	12.7%	20.0%	14.7%	20.2%	17.7%	14.2%	14.3%
	(부대사업수입)	4,010	3,883	4,466	2,173	4,600	3,379	4,741	4,792	4,574	5,298
	(임대사업수입)	4,270	4,260	4,600	3,538	4,738	3,445	4,883	3,850	4,881	4,029
	(기타사업수입)	668	187	668	248	668	430	668	480	327	511
	- 사업외수입 (이자수입)	113	93	88	117	91	43	91	44	91	136
	보조금	9,371	9,371	9,412	9,412	14,364	14,364	14,490	14,490	28,164	28,164
[수입 합계(A)]		41,044	37,186	41,370	23,211	47,261	36,428	48,373	41,631	61,218	57,877
지출	인건비	10,390	9,970	18,734	17,594	20,609	18,978	20,957	19,857	21,354	20,333
	경상비	16,724	16,880	10,156	8,839	8,384	7,467	8,171	7,372	7,803	7,153
	사업비	11,094	10,032	12,097	6,685	18,225	13,106	19,202	15,073	32,017	29,193
	예비비	352	343	383	340	43	3	43	3	44	9
	보조금 반납	-	234	-	190	-	410	-	243	-	478
[지출 합계(B)]		41,044	37,459	41,370	33,648	47,261	39,964	48,373	42,548	61,218	57,166
[수지차(A-B)]		-	△273	-	△10,437	-	△3,536	-	△917	-	711

자료: 예술의전당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공연・음악・전시 작품을 살펴본 결과, 창작 및 순수예술장르 작품보다 해외 유명 라이센스작품 및 뮤지컬 등 인기장르의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대관공연에서 뿐만 아니라 기획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임.

[최근 5년간 기획 공연·음악·전시 건수 및 주요 사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연	24건 (336회)	10건 (106회)	15건 (162회)	25건 (374회)	9건 (247회)
	발레 〈호두까기 인형〉, 오페라 〈투란도트〉, 연극 〈맨 끝줄 소년〉 등	연극 〈레미제라블〉, 연극 〈신의 아그네스〉, 〈어린이 가족페스티벌〉 등	발레 〈호두까기 인형〉, 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연극 〈리어왕〉 등	발레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 〈라이온 킹〉, 〈SAC 오페라 갈라〉, 연극 〈레드〉 등	뮤지컬 〈베토벤〉, 오페라 〈노르마〉, 발레 〈호두까기 인형〉, 오페라 〈투란도트〉. 연극 〈추남,미녀〉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음악	71건 (71회)	51건 (51회)	88건 (88회)	118건 (118회)	114건 (114회)
	〈교향악축제〉, 〈대학오케스트라 축제〉, 콘서트오페라 〈토스카〉 등	〈교향악축제〉,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평화콘서트〉, 〈인춘아트홀 개관음악회〉 등	〈교향악축제〉, 〈봄을 여는 소리〉,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대학가곡축제〉, 콘서트오페라 〈가면무도회〉 등	〈교향악축제〉, 〈한국가곡대축제〉, 〈여름음악축제〉, 콘서트오페라 〈운명의 힘〉 등	〈교향악축제〉, 〈정경화&케빈 케너 듀오콘서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KBS교향악단〉, 〈여름음악축제〉, 〈최수열의 밤 9시 즈음에〉 등
전시	9건 (376일)	14건 (753일)	9건 (217일)	17건 (423일)	5건(182일)
	〈베르나르 뷔페전〉,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전〉, 〈치바이스와 대화〉 등	〈모네에서 세잔까지〉, 〈볼로냐 일러스트 원하전〉, 〈툴루즈 로트렉전〉, 〈추사 김정희와 청조 문인의 대화〉 등	〈달리에서 마그리트까지〉, 〈내맘쏙:모두의 그림책〉, 〈신비로운 블록버스터 판화의 세계〉 등	〈알버트 왓슨 사진전〉, 〈넥스테이지〉, 〈웰컴제너레이션〉, 〈쓰지 않는 글씨〉 등	〈백희나그림책전〉, 〈라울 뒤피전〉, 〈서로부르는노래〉, 〈내가 사는 너의 세계〉, 〈회화 유니버스〉 등

자료: 예술의전당

이러한 현상은 자체수입 재원이 한정적이고,[34] 국고보조금 중 예술 및 공익사업 예산 비중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35] 코로나19에 따른 적자가 심화되자 비용이 수반되는 기획사업보다 대관사업에, 그리고 대중에게 익숙한 라이센스 및 인기장르에 보다 비중을 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임.

34) 당초 식음료/매표사업 직영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으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2015년~2016년에 걸쳐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되었음. 현재 예술의전당의 주요 수입원은 대관사업・예술사업・부대사업 및 임대사업으로, 부대사업으로는 주차장과 회원제사업이 있음.

35)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구성〉

(단위 : 백만원)

연도	시설물유지 관리지원(A)	인건비(B)	예술사업(C)	공익사업(D)	합계	비율 ((C+D)/(A+B))
2021	6,878	2,527	2,430	2,529	14,364	52.7%
2022	6,878	2,662	1,937	3,013	14,490	51.9%
2023	21,209	2,662	2,720	1,573	28,164	18.0%

주) 공익 사업은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익목적 사업(영상화 사업 등)을 말함
자료: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서 적자 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을 안정화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예술의전당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다양한 장르예술 육성이라는 사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술의전당은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이 중에서도 라이센스・인기장르 대비 창작 및 순수예술 장르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한국에너지공단: 녹색프리미엄 수익의 사용과 관련된 관리·감독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법률상 근거 없이 2021년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입・세출외로 녹색프리미엄 수익을 이용하여 2024년부터 기업 재생에너지 펀드를 결성・운용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수익금 및 펀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탄소중립 지원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제22호[36]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의미하며,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추가 부담금(프리미엄)을 납부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 녹색프리미엄 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37]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38]에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근거를 마련

3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37)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회 결산 심사 시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임.

3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5조(녹색프리미엄의 납부)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7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 외에 녹색프리미엄의 구매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다.

하여 운영하고 있음.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연간 판매물량을 산정하면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실시해 가격이 책정되며,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후 RE100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전력공사가 녹색프리미엄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체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3차례에 걸쳐 녹색프리미엄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져 총 14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프리미엄 수익 818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1년~2022년 발생한 녹색프리미엄 수익과 합하면 누적 1,509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2021년~2023년 녹색프리미엄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간 판매물량 (TWh)	낙찰액	참여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금액	한전이 에너지공단으로 이체한 금액 (A+B+C)	이체액 중 에너지공단이 연도말까지 지출한 금액(A)
2021년	1.44	14,691	14,691	14,691	9,392
2022년	5.38	54,267	54,267	54,267	5,786
2023년	8.16	81,835	57,888	57,888	1,801
합계	14.98	150,793	126,846	126,846	16,979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11월에 2024년 기준 녹색프리미엄 누적 수익 추정치 2,000억원과 IBK기업은행의 출자액 등 민간자금 500억원을 합하여 총 2,500억원 규모 이상의 기업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이에 따라 실제로 펀드가 결성·운용되어, 2024년 6월 기준 하사미 육상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200억원의 녹색프리미엄 수익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

이처럼 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면서도 녹색프리미엄 제도 및 해당 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로

④ 운영기관은 프리미엄 납부 절차의 운영, 확인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 가능 물량은 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예상 의무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72조의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판매물량 및 구매방법, 절차 등 주요 사항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판매물량 및 잔여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 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와 녹색프리미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체결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⑧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프리미엄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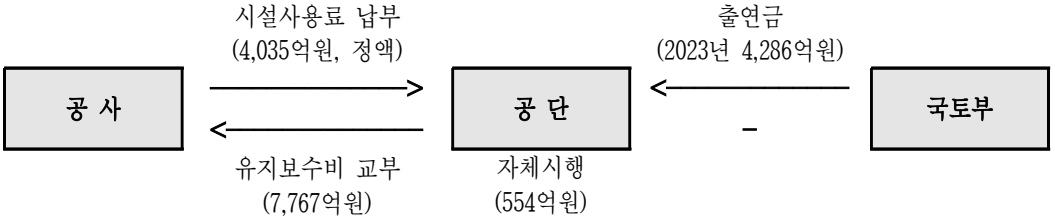
부터 파생된 일종의 부담금 수익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RE100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해당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④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적정 인건비 반영을 통한 인건비 부족 문제의 재발방지 필요

국토교통부의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39]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간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반철도 유지보수비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운용됨.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는 선로사용료(4,035억원, 정액)와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출연금은 유지보수비 전체 소요액 중 선로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음.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운용 구조]



자료: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는 세부적으로 인건비, 경비, 보수비로 구분되며, 2021년~2023년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수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 등의 부족액은 2021년 400억원에서 2022년 672억원, 2023년에는 7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3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2021년 집행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2024.7월 현재 정산이 진행 중에 있고, 2022년도 미정산액에 대해서는 2025년 정부예산에 요구 및 협의 중에 있음.[40]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A)	공사 집행액(B)	과부족 (A-B)	정산금액 (C)	정산잔액 (A-C)	비 고
2021	**소계**	**7,078**	**7,473**	**△395**	**7,073**	**5**	보수비 잔액(5억원) 제외 시 △400억원
	인건비	4,398	4,458	△60	4,398	-	
	경비	1,107	1,310	△203	1,107	-	
	보수비	1,133	1,128	5	1,128	5	
	부가세	440	577	△137	440	-	
2022	**소계**	**7,435**	**8,016**	**△581**	**7,344**	**91**	보수비 잔액(91억원) 제외 시 △672억원
	인건비	4,640	4,943	△303	4,640	-	
	경비	1,177	1,546	△369	1,177	-	
	보수비	1,618	1,527	91	1,527	91	
2023	**소계**	**7,767**	**8,286**	**△519**	-	-	보수비 잔액(233억원) 제외 시 △752억원 ※ 정산 중 (2024.12 완료예정)
	인건비	4,719	5,105	△386	-	-	
	경비	1,177	1,543	△366	-	-	
	보수비	1,871	1,638	233	-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강화 정책으로 2017~2022년 동안 1,258명의 증원이 있었고, 정부지원 인건비는 실제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인건비 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2023년까지 2,579억원, 2024년까지 3,419억원[41]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42]

[한국철도공사 인력운용 현황]

2016년	⇨	2017년~2022년	⇨	현 재
6,088명		총 1,258명 증원 (정규직전환 608, 신규개통 517, 안전강화 533, 효율화 △400)		7,346명

자료: 한국철도공사

40) 2023년 미정산액에 대해서는 2024.7월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예산 요구를 하지 못한 상황임.

41) 2021년 400억원, 2022년 672억원, 2023년 752억원, 2024년(예상) 840억원, 통상임금 소송금 755억원

42) (정부 인건비 심의결과) 2021년 5,870만원 → 2024년 6,585만원(평균 6,382만원)
(공사 평균임금) 2021년 6,911만원 → 2024년 7,170만원(평균 7,010만원)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정부 위탁사업임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관련 비용 및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논의하여 2025년 예산 협의 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43]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간 누적된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적정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민 수혜 증대 방안

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재 신청요건 명확화 및 홍보 강화 필요

하자차량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제출서류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하자차량 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신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44]로 2회, 일반하자[45]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4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 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 국가철도공단 · 철도공사 ·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44)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45) 중대한 하자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2019~2024.4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년도	사건 접수	진행중	사건 종료	중재사건 종료 유형							
				교환		환불		보상·수리	요건미충족 등 각하	기각	취하
				판정	합의 취하	판정	합의 취하				
2019	79	-	26	-	3	-	2	3	8	-	10
2020	668		424	1	14	-	17	48	245	27	72
2021	707		828	-	44	4	67	186	295	78	154
2022	444		550	5	49	1	37	120	169	57	112
2023	533		466	7	53	3	83	61	146	35	78
2024.4.	289		224	-	30	3	42	30	69	19	31
계	2,720	202	2,518	13	193	11	248	448	932	216	457
					206		259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2024년 4월말까지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접수 2,720건 중 2,518건이 종료되었으며, 사건종료 건수 중 932건(37.0%)이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되어 중재사건 종료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재 신청인이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서면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중재제도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의 대부분은 중재제도를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46] 본인 차량의 중재요건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신청하거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요건에 부합되는지 또는 서류상의 흠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하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음.[47]

그러나 2019.1.1.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2024년 전체 289건의 사건 중 요건미충족으로 인한 각하사건이 69건(2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46) 소비자 설문조사(2021.12.) 결과: 중재제도에 대해 정부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분쟁해결(49.9%) 또는 정부가 당사자 합의(34.3%)를 알선하는 것으로 인식

47) 2024.4월말 기준 각하 932건 중 보완요청 미이행 496건(53.2%), 차량소유자와 신청인 상이 282건(30.2%), 기타 신청 기간 도과, 중재미수락 등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하고, ②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여야 하며, ③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여야 하고, ④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또는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여야 하며, 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중재신청 요건 중에는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의 현저한 훼손, 사용 곤란 등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명확하지 않은 요건이 존재하며, 구조나 장치의 중대한 하자 및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일반 하자의 범위도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하자차량의 소유자가 해당 요건들을 이해하고 중재신청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임.[48]

4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중재신청 요건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과 비교하여 절대 강화된 요건이 아니며,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한 차량의 하자추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고, 하자차량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신청할 때에는 중재 신청서·차량 등록증 사본 및 정비명세서 등만 제출하면 중재부가 직접 증거·사실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소유자의 하자입증책임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49]

그러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

---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49)「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동차 소유자가 교환·환불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목적이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자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제출 서류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환·환불 중재신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동차 교환·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동 제도와 함께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수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홍보 강화 필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관리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부담금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부담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약사법」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 생산액 또는 수입액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는 용도로 지출되고 있음.

피해구제부담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피해구제부담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운용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부담금의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185억 3,900만원에서 2023년 말에는 321억 9,000만원으로 4년 만에 1.73배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남.

[연도별 의약품 피해구제부담금의 적립 현황]

(단위: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초 적립금 누적액	14,828,476	18,539,151	22,461,046	25,025,380	28,151,619
(결산상 잉여금)	-	-		-	-
연간 적립금 운용 수익	354,100	311,565	178,353	331,982	838,329
신규 적립	5,119,191	5,468,960	4,646,239	5,006,499	5,449,464
지출액	(1,762,617)	(1,858,631)	(2,259,039)	(2,215,053)	(2,253,123)
기말 적립금 누적액	18,539,151	22,461,046	25,026,599	28,151,619	32,190,01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담금 지출 측면에서는 동 부담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의 인정률이나 인정방식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③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환매 이자율 인하 검토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매차액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매 이자율 인하 등 조치가 필요함.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액은 2,907억원임.[50]

농지매입 당시 농업인의 환매권을 조건부로 계약 체결하고, 환매권 행사의 경우 연간 3%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매입원금 대비 환매차액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50) 농지관리기금-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융자)(1073-343)

[환매농가 및 환매차액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환매농가	매입원금(A)	환매금액(B)	환매차액(C)	환매차액 비율(C/A)
2016	509	111,813	127,148	15,335	13.71
2017	675	144,854	165,344	20,490	14.15
2018	787	193,336	221,109	27,773	14.37
2019	749	169,728	197,865	28,137	16.58
2020	1,001	223,429	262,986	39,557	17.70
2021	1,052	288,593	339,738	51,145	17.72
2022	780	207,820	248,810	40,990	19.72
2023	660	162,722	198,537	35,815	22.01
합계	6,213	1,502,295	1,761,537	259,242	17.2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23년 8월 31일부터 환매 분납기간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간 3회에서 10년간 10회 이내로 개정하였음.

그러나 기존 분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더구나 신규 분납자에게도 30% 선납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활용 가능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환매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 기타 제도개선 과제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사업 변별력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관 26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평가사업은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기관당 인센티브 지급액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방식·인센티브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한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26개 기관 중 최소 22개 기관(86.4% 비중)이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고 있고, 최고-최저 등급인 S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무하여 변별력이 크지 않음.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평가등급별 기관 수 현황]

(단위: 개, %)

평가등급	2020		2021		2022		2023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S	-	-	-	-	-	-	-	-
A	4	15.4	8	30.8	11	42.3	5	19.2
B	19	73.1	18	69.2	15	57.7	18	69.2
C	3	11.5	-	-	-	-	3	11.5
D	-	-	-	-	-	-	-	-
합계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 기간 중 1개 기관이 획득한 인센티브의 최대 금액은 1억 700만원에 불과하였음. 이는 ① 한정된 사업 예산(8억 8,200만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모든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1개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규모가 제한되고, ② 대부분의 기관이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고 있어 등급 차이를 근거로 인센티브 규모에 차등을 두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주]	지급대상 기관 수	인센티브	평가결과
2020	4	93	A
	12	43	B
	26개 기관 중 16개 기관 (전체기관 중 61.5%)		

연도[주]	지급대상 기관 수	인센티브	평가결과
2021	8	93	A
	4	43	B
	26개 기관 중 12개 기관 (전체기관 중 46.2% 비중)		
2022	2	88	A
	9	78	A
	11개 기관 (전체기관 중 42.3% 비중)		
2023	5	107	A
	6	57	B
	11개 기관 (전체기관 중 42.3% 비중)		

주) 연구기관 인센티브 사업 수행 연도 기준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평가결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유인구조 개선 필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 및 가입 촉진을 위해서 재정지원 중심의 유인구조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유인구조 개선이 필요함.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임.

2022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9.0%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대·중소기업간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 자산확보를 위해 동 사업이 2022년 도입되었음.[51]

51)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2019년~2022년 기업규모별(30인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

(단위: 개소, %)

구분	30인 미만			30인 이상		
	도입 대상 사업장 수	도입 사업장 수	도입률	도입 대상 사업장 수	도입 사업장 수	도입률
2019년	1,319,868	320,296	24.3	82,715	64,777	78.3
2020년	1,378,969	331,566	24.0	85,174	67,021	78.7
2021년	1,442,985	345,647	24.0	87,378	68,918	78.9
2022년	1,504,190	356,255	23.7	90,459	71,475	79.0

자료: 통계청 통계

2023년 가입자 확대를 위해 월 242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장 1개소 당 최대 30명을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수수료 면제 및 '근로자 지원금'을 신설하여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기간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월 평균 보수 한도를 높여 최저임금의 130%인 268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게 되었음.

[2022년~2023년 목표 대비 가입사입장, 가입자, 적립금 실적]

(단위: 개소, 명,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목표	실적 (12월말)	목표	실적
가입 사업장	85,236	2,443	10,263	13,685
가입자	282,208	9,861	73,894	65,123
적립금 (평잔)	1,509	324	5,575	4,734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2023년 당초 목표한 재정지원 근로자 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지원금 69억 3,700만원이 불용되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함.

[2022년~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지급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인원		예산	
	재정지원 목표 근로자 수	실제 재정지원 근로자 수	계획	집행
2022년	54,420	1,113	3,115	38
2023년	87,072	21,844	9,240	2,30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동 제도의 가입이 저조한 사유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상품과 달리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따라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원금손실 우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세제 혜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부산항만공사: 해외대표부 신설 시 사전 검토 강화 및 해외대표부 운영 관련 성과 점검 절차 마련 필요

부산항만공사는 해외대표부 신설 시 신설 필요성 및 소재지의 적합성 관련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해외대표부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해외대표부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네덜란드)·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 이상 5개소의 해외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총 15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부산항만공사 해외대표부 운영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운영비	체재비	주택 임차료	차량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합계
로테르담	73,781	183,085	130,430	34,308	13,073	434,677
중국	103,981	68,435	49,015	21,287	48,107	290,825
일본	313,926	64,300	37,942	0	43,312	459,480
미국	85,269	46,680	46,825	10,851	28,193	217,818
동남아	12,309	64,808	44,370	10,645	-	132,132
합 계	589,266	427,308	308,582	77,091	132,685	1,534,932

자료: 부산항만공사

이 중 동남아 대표부는 2019년 4월 신설된 것으로 신설 당시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하였으나 2022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합작법인으로 기능을 이전하였음. 동남아 대표부 이전 사유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는 베트남에 이미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여 사업확장이 고도화 단계에 이르렀기에 신규 파트너십 형성이 어렵고 신규 사업 발굴의 여지가 미미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동남아 대표부 신설 이후 3년 만에 소재지를 이전한 것을 보면, 사전에 동남아 대표부 신설 필요성 및 소재지의 적합성과 같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동남아 대표부를 포함한 모든 해외대표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해외대표부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 및 과정이 필요할 것이나, 부산항만공사에는 이러한 해외대표부 성과 점검 절차가 결여된 상황임.

이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는 해외대표부는 해외사업실 또는 국제물류지원부 소속으로, 매년 해당 부서에 대한 평가 시 해외대표부도 포함하여 함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부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개별 해외대표부에 대한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효율적인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는 해외대표부별로 별도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대표부의 이전 계획을 의결한 항만위원회(2022. 3. 17.)의 회의에서도 해외 조직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의 발언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부산항만공사는 해외대표부 신설 시 사전에 해외대표부 신설 필요성 및 소재지의 적합성 관련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해외대표부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해외대표부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집행기준 마련 필요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용도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경상경비 등 부적정 집행

국가녹색연구소 등 13개 출연연구기관은 청사이전사업, 주차장 환경개선,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연구개발적립금의 성격과 무관한 경상적 경비에 지출 또는 지출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기관발전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발생한 현상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적립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수행되는 기관발전사업은 적립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시설 구축 및 장비 도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재원임.

그러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13개 출연연구기관은 청사이전사업, 정보보안 시스템, 주차장 환경개선, 기숙사 증축,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동 적립금의 성격과 무관한 경상적 경비에 지출 또는 지출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있음.

[집행부진 기관발전사업 및 부적절한 계획(음영표시) 현황]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사업명	사용계획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Ⅳ (시설매칭)	1,860	1,442	총사업비 조정(증액) 협의(진행중)에 따른 설계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해 이월금 발생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청사이전사업	318	318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1동 증축사업 (2022~2025)	1,966	1,313	구청 인허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 지연(2023.4) 흙막이 공사 중 암석토질(경암)로 인해 공정 지연(2023.9) 터파기 시 건설 및 일반폐기물 다수 발견으로 공정 지연(2023.10)
	수도권통합센터 연구동 건설사업 (2023~2026)	910	510	2023.5~12 인천자유경제구역청과의 토지 임대/매입 관련 실무협약 지연으로 설계공모 중단
한국천문연구원	정보보안 시스템 강화	200	198	-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사업명	사용계획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원동 환경개선사업 (시설매칭)	701	-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을 활용하여 적립(2025년 사용 승인 요청 예정, 2022년 적립금 15억 2,000만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차세대 연구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304	1,238	1억원 이상 장비 도입을 위한 NFEC 심의 지연으로 집행 부진
	본관 노후 외벽 교체 및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1,715	-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을 활용하여 적립 중(2024년 사용 예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2,000	0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검토 및 건축공사계약의뢰 기간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지능형 정보서비스 EIP 3.0 구축 사업	1,974	756	EIP3.0 고도화 용역사업 유찰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
	청정연구소 노후 구 기숙사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	1,500	741	날씨(폭설, 혹한기 등)의 영향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업체의 공사 완료 후 잔급 지급 요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	-	2024년도 사용 계획 145백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사선동 저류조 개선	237	175	- 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입찰 진행으로 계약 시 낙찰율(87.757%)로 계약하여 비용 감소 - 기획단계에서 적용한 내부탱크 공사 방법을 개선된 공법으로 변경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지역 조직설립이자 (이자)(시설매칭)	74	-	(명시성-적립)
	경북본부지역 조직 설립사업 (시설매칭)	992	-	(명시성-사용)
	경북본부지역 조직설립이자 (이자)(시설매칭)	121	-	(명시성-적립)
세계김치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조직문화 개선 사업	38	38	-
	연구소 정보보호 인프라 고도화	180	179	-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명	사업명	사용계획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신규탐사선 (탐해3호)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1,330	-	2023년도 명시성 적립 사업(1,330백만원, 총사업비 3,420백만원)으로 2024년 2분기 전액 집행예정으로서 2024년 3월 선박 취득 시 집행(부대비용) 예정으로 선박 취득을 위한 법정 필수 소요 비용 적립
	지오키즈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	-	-	2024년도 사용 계획 230백만원
한국기계연구원	연구9동 옥외 전기실 건축공사	1,900	1,899	-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우주과학관 야외전시장 개선 사업	400	144	2024년도 정부 R&D 예산 신청 삭감으로 인해 설계/제작/설치 통합발주가 아닌 설계만 발주하여 집행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수소에너지 첨단연구동 건설사업	470	119	조달청 적정성검토 지연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간 소요
	기숙사 증축사업	680	184	신임기관장 취임 이후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적립금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로 사업중단
한국전기연구원	880kW급 ESS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1,625	900	ESS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 납품 수급 문제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2023.4.~2023.12. → 2023.4.~2024.3.)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2023년 : 1,625백만원 → 2023년 : 900백만원/2024년 : 725백만원) 승인 완료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소재·부품 상생 기술 협력 센터 구축(매칭)	2,215	1,669	불가피한 설계 변경 사유(지하수위 증가에 따른 흙막이 추가) 발생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주요 건축공사 이후 투입 가능한 후속공정 관급자재 비용 중 일부 미집행액 발생
	본원 전산망 교체 비용 지원	-	-	2024년 사용 계획 700백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건물 누수보수 및 내진보강	-	-	2024년 사용 계획 800백만원
한국재료연구원	정보전산 고도화	840	809	2024년 사용 계획 260백만원

주) 집행실적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용도를 ‘기관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해석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관고유연구 및 교육훈련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적립금의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09)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그러나 주차장 환경개선, 청사이전 사업, 기숙사 증축,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등 일부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도 지역조직 설립자금이나 정보보안시스템 설치 등은 연구개발적립금이라는 자금의 성격과 무관한 지출로 보임.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2024.2.)’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별표 1]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따르면, 건물 원상복구비용, 장기차입금 상환, 연구·행정공간 이전 등에 사용 가능하되, 기관홍보비, 비품 구매 및 임차비, 단순 편의시설 공사 등에는 동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52)]

이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기관발전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발전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적립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장비 및 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규정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법령의 모호함 및 노사 갈등으로 인한 장기간 지급 유보 문제

52)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2024.2.)」(p. 20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법령의 모호함 및 그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장기간 유보되었는데, 향후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란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에서 지급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항목	사용 용도
가. 인력지원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직과 연구지원직의 의견 차이로 인해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2024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유보되었고,[53] 당해 미지급분은 총 55억 900만원임.[54]

[2022년~2024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미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년 지급분	2023년 지급분	2024년 지급분	계
전기 말 잔액(A)	2,469	2,454	2,789	7,712
당기 지급액(B)	2,203	-	-	2,203
미지급분(A-B)	**266**	**2,454**	**2,789**	**5,509**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 별도의 하위규정 없이 개별 기관의 노사합의에 의존케 하고 있음에 따라 지급비율 등 배분기준이 모호한 현 법령체계로 인해 발생한 현상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는 장기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사례가 추후 발생할 우려가 있음.[55]

53) 연구자들은 지급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연구지원인력은 당해 성과급이 연구개발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연구지원인력에게 우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동일하게 배분하자는 입장이었음.

54) 2024년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사 교섭대표 간 지급방안 합의를 하고, 지급합의안에 따라 5월 배분되었음.

55)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제외한 23개 출연연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4) 인력 운영 관련

①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조직 안정화를 위한 정규인력 증원 필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출범한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주요사업비는 2021년 2,841억원에서 2024년 8,391억원으로 연평균 43.5%씩 정부재정 투자가 증대하고 있음.

[연도별 주요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출범)	2022년	2023년	2024년
주요사업비	2,841	6,335	9,715	8,391

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그러나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 출연금을 포함한 총 출연금을 담당하는 정규직 인력은 정체되어 있고, 기간제 인력은 2배 이상 증가되고 있음. 정규직 인력은 2021년 369명에서 2024년 367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은 2021년 125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력 구성 현황]



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근 연도인 2024년도 주요 경비별 인력구조를 보면, 주요사업은 정규인력 159명에 기간제 163명으로 총원 대비 기간제 비율이 50.6%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 사업의 경우 정규인력 208명에 기간제 114명으로 총원 대비 기간제 비율이 35.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총원 대비 기간제 비율이 43.0%에 달하고 있음.

[2024년 출연금 및 인력구조 현황]

구 분	출연금 예산		정규 인력 (정원)	기간제 (예산 반영)	총원대비 기간제 비율
	금액(억원)	비율			
총 계	9,316	100.0%	367명	277명	43.0%
주요사업 합계	8,391	90.1%	159명	163명	50.6%
국방핵심기술개발 사업	5,759	61.8%	99명	85명	46.2%
부품국산화 / 국방벤처 지원사업	1,344	14.4%	50명	43명	46.2%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752	8.1%	6명	19명	76.0%
방산혁신기업 100 지원사업	390	4.2%	3명	10명	76.9%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사업	146	1.6%	1명	6명	85.7%
그 외 사업 및 기관운영	926	9.9%	208명	114명	35.4%

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와 같이 총원 대비 기간제 비율이 높게 되면, 최소 3년 이상 R&D 과제가 수행되는 업무특성 상, 기간제의 잦은 중도퇴사[56]가 있을 경우 업무가 단절되고 Know-How 축적이 제한되어 업무발전이 제약될 수 있음.

따라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관광공사: 정·현원 차이 최소화 필요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30.2명의 정・현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정・현원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한국관광공사 정규직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정・현원 차이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 30.2명의 정・현원 차이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56) * 채용: 2021.~2024.3월 까지 총 554명 채용 공고 → 충원 362명(65.3%)
* 퇴직: 2021년 이후 기간제 인력 총 181명 퇴직 → 계약만료 만근자 49명(28.1%))

특히,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중 일반정규직의 정·현원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최근 3년간 일반정규직 정·현원차는 평균 21.7명으로, 주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것임.

[최근 3년간 한국관광공사 정규직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정규직 전체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일반정규직			
	정원 (A)	현원 (B)	차이 (A-B)	정원 (C)	현원(D)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차이 (C-D)
2021	754	720.75	33.25	672	647.75	15	24.25
2022	768	736.25	31.75	686	662.75	22	23.25
2023	761	735.50	25.50	681	665.50	30	15.50

주 1) 각 연도말 알리오 공시 기준 인원수임
2) 현원은 전일제와 단시간 근무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단시간 근무직원의 인원수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소수점)로 나타냄
3)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최저임금 150% 이하 및 본사 개방형 직위 공모임용자 제외 가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고(연차별 10~20% 임금조정), 임금조정에 따른 휴가 부여 및 (2024.7월 이후 진입자부터) 2·3년차 별도직무 수행 등을 적용하고 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알리오)

한국관광공사는 결원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임.[57] 2022년과 2023년의 분기별 정·현원차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신입사원 29명 채용 직후 2분기 및 3분기의 정·현원차는 20명 수준이나, 2023년 1분기와 2분기의 정·현원차는 다시 30명대로 확대되었음.

[한국관광공사 일반정규직 2022년과 2023년 분기별 정·현원차 추이]

(단위 : 명)

정원	현원					
	2022년 1/4분기	2022년 2/4분기	2022년 3/4분기	2022년 4/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2) 686 (2023) 681	652.25	668.5	662	662.75	648.25	644.63
정·현원차	33.75	17.5	24	23.25	32.75	36.37

자료: 한국관광공사

57) 한국관광공사 설명에 따르면, 공모, 서류심사, 면접 등으로 인하여 채용계획 수립으로부터 최소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기관의 입장에서는 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인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정·현원차를 두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직 편제를 통해 정원을 정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최소화하며, 정·현원 차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도, 공공기관 정·현원차의 최소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며,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정·현원차를 유지하는 경우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감축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58)]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휴직 및 복직에 대한 정기·수시 수요조사, 정년퇴직시기 예측 등을 통하여 결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를 근거로 신규채용 인력을 산정하여 신속히 충원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정·현원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③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현원 차이 과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속적인 채용부진으로 정·현원 차로 인한 인건비 불용 규모가 과다하며, 일부 연구사업에서는 계약직 연구인력의 미채용으로 연구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적극적 인력충원과 더불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수급 가능한 인력수준에 부합하는 사업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평가사업 이관 등 사업규모 증가에 따라 일반정규직 정원을 상향 조정(305명→332명)하였음. 그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평균 정·현원 차이는 4~5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현원 차이는 2021년 이래 최소 27명에서 최대 36명 수준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① 전문 연구인력의 대규모 충원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 직원 이직·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③ 재정사업평가·예비타당성조사 및 공공기관 평가 등 특수전문직(회계사 등)의 채용이 요구되는 연구사업의 경우 민간과의 급여 차이로 인한 이직·채용부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

58)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중 일부 발췌

> ②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 ○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

[최근 4년간(2020-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력유형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원(A)	305	332	337	336
	현원(B)	294	304	301	309
	정현원차(A-B)	11	28	36	27
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 평균	정원(A)	184	187	189	188
	현원(B)	180	182	184	184
	정현원차(A-B)	4	5	5	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러나 전문 연구인력의 충원이 어렵다는 점, 지원 이직·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은 타 연구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평가 외 재정사업평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2021년 정원 조정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과제이므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정·현원 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계약직 연구원 활용을 위해 사업인건비를 계상한 일부 연구사업에서도 채용부진으로 인하여 인건비 실집행 부진이 확인되고 있음. 특히 '민간투자정책 분석사업', '정부투자정책분석 사업' 및 '세정연구사업' 등 3개 사업에서는 계약직 연구인력의 채용이 부진하여 사업인건비 집행률이 각각 40.1%, 69.0%, 74.9%로 저조하였으며, 전체 사업인건비 실집행률도 71.9% 수준이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사업 중 사업인건비 계상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사업인건비		실집행률 (B/A)
		현액(A)	실집행(B)	
공공기관연구사업	1,012	207	207	100.0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	613	156	143	91.7
정부투자정책 분석사업	161	71	49	69.0
세정연구사업	985	347	260	74.9
민간투자정책 분석사업	468	307	123	40.1
사업인건비 계상 사업 전체	**3,239**	**1,088**	**782**	**71.9**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향후 조세재정연구원은 적극적 인력충원과 더불어 실제 수급가능한 인력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비효율적 재정운용구조 개선 필요

① 한국전력공사: 송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제약비발전정산금 연례적 발생 문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송전제약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발전사에 큰 규모의 제약비발전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력거래 정산금은 계획발전 전력량 정산금・제약발전정산금・제약비발전정산금・용량정산금 및 기타정산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제약비발전정산금은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급전지시로 감발 또는 정지하였을 때 기대이익을 보상해주는 정산금임.

이는 전력시장에 입찰한 발전사가 송전제약 등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인력대기 및 설비 예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함임.

[2021년~2023년 송전제약 발전소의 정산 현황]

(단위: Gwh, 억원)

연도	발전소	초기 입찰량	가격결정 계획 발전량	전력 거래량	제약비 발전량	제약비 발전 정산금 (COFF)
2021	A발전소	32,109	32,087	23,347	8,515	2,034
	B발전소	38,772	38,592	29,953	8,188	1,626
	C발전소	15,658	11,147	7,625	4,131	521
	D발전소	12,237	12,192	9,944	2,146	487
	E발전소	8,585	8,571	7,371	1,189	413
	F발전소	6,611	110	787	36	3
	합계	113,972	102,699	79,027	24,205	5,084
2022	A발전소	31,950	29,225	22,825	6,442	1,606
	B발전소	42,967	37,519	27,701	10,074	2,400
	C발전소	14,884	10,239	7,190	3,577	1,359
	G발전소	3,991	0	65	-	-
	D발전소	13,091	12,527	10,408	1,934	420
	E발전소	9,500	8,868	7,031	1,789	549
	H발전소	4,700	2,930	2,966	279	0
	합계	121,083	101,308	78,186	24,095	6,334

연도	발전소	초기 입찰량	가격결정 계획 발전량	전력 거래량	제약비 발전량	제약비 발전 정산금 (COFF)
2023	A발전소	34,326	26,093	21,808	5,083	812
	B발전소	40,890	33,157	26,724	7,260	1,069
	C발전소	18,306	9,461	7,937	1,564	466
	G발전소	4,139	0	34	-	-
	I발전소	2,447	2,275	1,954	80	46
	D발전소	12,753	9,712	8,294	1,566	426
	E발전소	9,118	6,805	5,693	1,442	361
	H발전소	13,857	11,720	9,985	1,640	443
	J발전소	332	332	110	-	-
	F발전소	7,023	8	493	0	0
	합계	143,191	99,563	83,032	18,635	3,623

주) 2022년 9월 이후 계통제약 정산금(SCON)은 실계통 기반 하루전 전력시장 도입에 따른 정산규칙 변경으로 산정 불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2023년 발전사들에 지급된 제약비발전정산금 총액은 3,623억원으로 2021년 5,084억원, 2022년 6,334억원보다는 감소한 수준이나, ① A발전소, B발전소, C발전소, D발전소, E발전소, F발전소의 경우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발전제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② 송전제약으로 인하여 낭비되는 정산금이 3,623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송전제약 발전소에 대한 송전시설 및 설비 보강 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전력정산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환입액 증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환입액 증가는 기관 내부에 과도한 여유자금을 유보하고, 이는 결국 건보재정 운용을 통한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지출예산의 적정 편성 및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건강보험 환입액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건보재정으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들어오는 건강보험부담금의 경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이외의 자체수입은 예산대비 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지 차액 등	수입(a)	460,378	434,522	442,659	446,217	458,624
	건강보험부담금	420,980	412,835	421,927	424,117	433,134
	전년도 이월금*	20,192	-	-	-	-
	수수료 등	19,206	21,687	20,732	22,100	25,490
	지출(b)	420,284	379,383	392,636	388,497	390,018
	수지차액(c=a-b)	40,094	55,139	50,023	57,719	68,606
	임의적립금 반납(d)	-	-	-	-	-
	합계(c+d)	40,094	55,139	50,023	57,719	68,606
정산	사고이월**(e)	10,055	17,467	23,086	21,086	24,180
	차년도 수입 이월액*(f)	-	-	-	-	-
	건강보험 환입액(g)	30,039	37,672	26,936	36,615	44,426
	국고 정산(h)	-	0.5	1	18	-
	합계(e+f+g+h)	40,094	55,139	50,023	57,719	68,60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지차액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환입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지원된 비용이 다시 건강보험으로 환입되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지출예산의 적정 편성 및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건강보험 환입액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자산운용 관련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한국우사회 투자에 따른 손실 정리 필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3년 수익창출 목적으로 24억 2,900만원 규모의 (주)한국우사회 주식 267만 6,000주를 매입하였고, 2004년 경영권 다툼으로 사업전망이 악화되었음에도 관련 주식을 20년 가까이 처분하지 않고 있음. 2023년 결산시점 기준 해당 주식의 가액은 9,400만원에 불과하므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청도소싸움 운영법인체인 (주)한국우사회의 주식인수 및 부대사업인 전화 및 인터넷 우권발매사업 등에 참여하여 공단의 수익 창출을 의도하였음. 이에 자본금 24억 2,900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매수(2003.4.2.), 유상증자(2003.5.19.) 등의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267만 6,000주를 매입하였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한국우사회 주식 매입 내역]

(단위: 천주, 원, 백만원)

구 분	취득일자	수량	취득단가	투자금액	비고(이사회)
매 수	2003.04.02.	2,000	995	1,990	2003년 1차
유상증자	2003.05.19.	676	650	439	2003년 5차
계/평균		2,676	908	2,429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러나 2004년 4월, 한국우사회 대주주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선에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결산시점까지 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3년 결산보고서상 (주)한국우사회 주식 관련 금융자산명세서]

(단위: 백만원)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취득가액	재무상태표 가액			취득가액	재무상태표 가액
2,429	144	-	50	2,373	94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은 투자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사업 전망이 회복되지 않아 매각 자체가 어려웠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해당 투자자산을 취득한 다음 연도인 2004년 4월에 이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약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당초 투자비를 거의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률이 저조하였으며, ③ 기관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미미한 사업이어서 이해득실 외 해당 투자자산을 유지할 별도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적정한 자산운용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주)한국우사회 투자에 따른 손실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공사 당시 투자한 해외자산의 매각 관련 세밀한 관리 필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기 이전에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하였던 해외자산들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 중인데, 일부 해외자산의 매각절차가

부진한 상황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舊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하였던 해외자산들에 대해서는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한국광해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이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22년 재심의를 통해 전체 해외자산 투자사업 매각 방침에서 2개 사업[암바토비(니켈), 꼬브레파나마(동)]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그 외 매각이 결정된 6건에 대해서는 캡스톤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사업들이 2023년 말 기준 매각대금을 회수할 예정이거나(로즈몬트, 산토도밍고) 매매절차가 진행중(나라브리, 볼레오, 와이옹)에 있음.

[2023년 말 기준 매각 추진 사업 진행 현황]

(2023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매각사업명	매각계획 수립	매각연도	취득금액 (A)	매각금액 (B)	매각손익 (B-A)	비고(사업현황)
1	로즈몬트	2018	2019	395	573	178	매각대금(1·2·3차) 회수 완료, 2024년 최종 잔여매각대금 회수 예정
2	산토도밍고	2019	2021	2,639	1,676	(963)	2021~2022년 1·2차 매각대금 회수완료, 매각대금 회수 진행중
3	캡스톤	2019	2021	1,961	1,973	12	2021년 공단 보유지분 전량 매각 완료 및 종료
4	나라브리	1차 : 2016 2차 : 2021	-	610	-	-	1차: 무응찰 입찰로 매각 순연 2차: 매매계약체결(2023) 후 거래종결절차 진행 중
5	볼레오	2022	-	18,722	-	-	2023.12월 예비입찰실시, 現 잠재매수자 실사 진행中, 본입찰(5.23)
6	와이옹	2022	-	704	-	-	2022년 잠재매수자(C社) 매각가격 등 주요조건 합의完, 세부 조건 협의中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각 방침이 결정된 6건의 투자사업에 대한 매각절차를 세밀히 관리하여 해외투자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처분 보류를 결정한 2건의 투자사업(암바토비, 꼬브레파나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산건전화를 위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수지차 보전기관 관련 검토

(가)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해제 기준 구체화 및 지정·해제 절차 마련 필요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해제 관련 기준이 모호하므로 명확성・적용상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 및 해제 관련 절차가 미비하므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 및 해제 관련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해당 기관과 주무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는데,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음.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

구 분	기 준
지정	①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② 출연・보조기관 ③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정
지정 해제	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은 기관 ②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③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④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①~③ 중 하나와 ④ 충족 시 지정 해제

자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때,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을 경우 지정 해제되므로 적정 수준의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수지차 보전기관의 자체수입 비중을 분류해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기관이 17개(2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80% 이상 90% 미만인 기관 1개(1.6%), 90% 이상인 기관 2개(3.2%)로 기관별 자체수입 비중의 편차가 크게 발생함.[59]

59) 자체수입 비중 최저 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이고, 최고 기관은 국가철도공단(100.0%)으로 두 기관의 자체수입 비중 차이는 98.5%p임. 참고로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2023년에는 수서역세권 분양수입으로 인하여 기관지출총액에서 기관자체수입을 제외한 수지차 보전액이 발생하지 않아 수지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2023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 자체수입 비중]

자체수입 비중	개수	기 관 명		
10% 미만	17개 (27.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임업진흥원
10%~20% 미만	15개 (23.8%)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공원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재외동포재단 전쟁기념사업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30% 미만	6개 (9.5%)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0%~40% 미만	9개 (14.3%)	광해광업공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잡월드	한구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0%~50% 미만	5개 (7.9%)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물기술인증원
50%~60% 미만	3개 (4.8%)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전당	중소기업중앙회
60%~70% 미만	4개 (6.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도로교통공단	중소기업정보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70%~80% 미만	1개 (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0%~90% 미만	1개 (1.6%)	항공안전기술원		
90% 이상	2개 (3.2%)	국가철도공단	국가유산진흥원	
합 계	63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기관 중 한국영상자료원(3.2%), 한국교육학술정보원(2.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 및 한국임업진흥원(2.2%) 이상 5개 기관의 자체수입 비중은 1~3%로 매우 낮아 기획재정부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기준인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해제되지 않았음.

이에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5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자체수입 요건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고 있음.

[최근 5년(2020년~2023년)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 수입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도 결산
자체수입(A)	합계	3,332.75	2,515.11	2,872.70	4,093.69
	■ 재보증료	1,311.56	1,730.94	1,872.29	1,762.77
	■ 금융기관출연금	1,604.35	543.88	598.92	645.25
	■ 운용수익	103.78	119.5	274.74	514.04
	■ 기타수익	113.06	120.79	126.75	1,171.63**
	■ 코로나19 출연금	200	-	-	-
정부출연금		2,122.84	2,368.86	1,643.80	1,408.84
수입 합계(B)		5,455.59	4,883.97	4,516.50	5,502.53
자체수입 비중(A/B)		57.4%*	51.5%	63.6%	74.4%

주 1) 2020년 자체수입 비중 산정 시 코로나19 출연금(지역신보지원(1235-301) 관련 정부출연금) 제외하여 비중 산정
2) 금리인상으로 인한 운용수익 증가, 새출발매각대금 회수금액('25.10월 종료예정) 반영으로 기타수입액 증가(매각대금(1,052.51억원) 제외 시 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렇듯 수지차 보전기관별 자체수입 비중의 편차가 크고 수지차 보전기관임에도 자체수입 비중이 매우 낮은 기관이 있는 반면,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출연기관임에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은 기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해제 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해제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과 기관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한다는 설명임.

수지차 보전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나 현재의 지정 및 해제 관련 현황을 보면 기준 적용상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지정 및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명확성·적용상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해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지차 보전기관을 지정·해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기획재정부는 매년 해당 기관과 주무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은 예산안 편성 시 내부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는 없다는 설명임.

그러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신규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후에야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또는 해제 여부가 향후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 및 해제 시기, 기관 의견수렴 절차,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60]

60)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 및 해제 관련 구체적인 절차 미비로 현재 수지차 보전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지차 보전기관의 최초 도입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나) 수지차 보전기관의 자체수입 과소계상과 지출 과다계상으로 인한 출연금 등 과다계상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지차 보전기관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어 일부 기관에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지출을 과다계상한 사례가 있음.

①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에너지공단·전략물자관리원·국가유산진흥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자체수입 과소계상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에너지공단·전략물자관리원·국가유산진흥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자체수입 수납실적이 예산을 초과하여, 자체수입이 과소계상되고 정부의 수지차 보전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규모의 자체수입 예산 편성이 필요함.

수지차 보전기관들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3회계연도 연속으로 자체수입 수납실적이 예산을 초과하는 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에너지공단·전략물자관리원·국가유산진흥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상 8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과 2022년의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 수납률이 108%를 초과하다가 2023년에는 200%를 상회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전략물자관리원도 2021년부터 예산 대비 결산 수납률이 120%를 초과하여 자체수입이 예산 편성 시 과소계상되었음.

[최근 3년간 수지차 보전기관 중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이 초과수납된 기관]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기관명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수납률	예산	결산	수납률	예산	결산	수납률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1,313	2,131	162.3	1,313	2,075	158.0	1,504	2,189	145.5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0,181	11,724	115.2	5,880	6,908	117.5	6,908	7,050	102.1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824	16,054	125.2	13,888	16,043	115.5	16,004	16,015	100.1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26,437	28,662	108.4	26,229	30,701	117.0	28,146	62,649	222.6
	한국에너지공단	31,340	31,939	101.9	30,932	32,432	104.8	30,263	33,119	109.4
	전략물자관리원	363	582	160.3	546	692	126.7	609	931	152.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97,141	97,557	100.4	98,881	114,276	115.6	107,062	126,539	118.2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6,936	38,756	104.9	23,102	25,327	109.6	25,613	29,767	116.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추계할 경우 정부의 수지차 보전 예산이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후 자체수입 예산안의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61]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건비와 경상비의 잔액을 지출처리하여 지출 과다계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까지 인건비와 경상비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지출처리 후 잡수입에 반영함으로써 지출을 과다계상하였음.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정확한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잔액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까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이와 달리 기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였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체수입 중 하나로 잡수입을 수납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22년 결산 기준 23억 2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3년에는 수납액이 감소하여 편성액 11억 2,900만원 중 2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음.

61) 이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음.

[2019년~2023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체수입 중 잡수입 예·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잡수입	272	138	448	1,750	485	1,499	793	2,302	1,129	224	1,851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런데 2022년 결산 기준 잡수입의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잔액 18억 2,900만원과 경상비 잔액 2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022년 결산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잡수입 세부 수납내역]

(단위: 원)

구 분		금액
기관 잡수익[1]		64,132,174
인건비 잔액[2]		**1,828,812,715**
경상비 잔액[3]		**286,011,027**
기타사업 수입[4]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105,131,227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16,704,861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수수료(이월)	1,585,431
합 계		2,302,377,435

주 1) 연구단지 입주기업 사용료 입금 연체료, 환경부 미반납 정산액(5만원 이하) 등
2) 출연사업, R&D사업, 정부위탁사업 등에서 계상된 인건비를 통합 운영한 후 분리하여 결산 및 정산하고 있으며 결산잉여금 처리하여 차년도 수입에 반영
3) 출연사업, R&D사업, 정부위탁사업 등에서 흡수된 경상비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잔액은 결산잉여금 처리하여 차년도 수입에 반영
4) 출연사업 외에 추진하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초과 수입 및 지출 잔액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까지 관례적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잔액을 잡수입에 포함하여 결산잉여금 처리함으로써 차년도 수입에 반영하였다는 설명임.[62]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잔액을 불용처리할 경우에도 결산잉여금으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수지차 지원액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출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와 경상비 전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관의 정확한 지출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함. 또한 필요 이상 계상된 지출 기준으로 다음연도 지출예산이 편성되므로 지출규모가 누적적으로 과다계상될 가능성도 있음.

6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결산에서는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음.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비의 잔액은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잡수입으로 반영될 경우 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서 작성요령」에서도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결산잉여금과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 처리방식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 인건비와 경상비의 잔액을 잡수입에 포함하여 결산잉여금 처리함으로써 지출을 과다계상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자체수입 확대 노력 및 예산 범위 내 경상경비 집행 필요

① 한국임업진흥원: 자체수입 확대 노력 필요

한국임업진흥원의 2023년 자체수입 수납액이 예산 55억 4,800만원 대비 50.9%인 28억 2,600만원에 불과하여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한국임업진흥원은 2017년부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 자체수입 수납액이 예산액 55억 4,800만원 대비 50.9%인 28억 2,600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보다 27억 2,200만원이 부족함.

[2023년 한국임업진흥원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A)	결산(B)	증감(B-A)	증감률((B-A)/A)
□시험분석 수수료	2,518	822	△1,696	△67.4
-특별관리임산물 및 토양분석 등	-	435	435	순증
-목재제품 시험분석 등	-	387	387	순증
□수탁사업 수수료	317	-	△317	순감
□교육수수료	210	449	239	113.8
□사업 외 수입	2,103	1,555	△548	△26.1
-산림비전센터 임대수입	2,009	1,217	△792	△39.4
-임의보유금	-	327	327	순증
-잡수입	94	11	△83	△88.3
□이월결산잉여금	400	-	△400	순감
-전기이월금	399	-	△399	순감
-전전기이월금	1	-	△1	순감
합 계	5,548	2,826	△2,722	△49.1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이와 같은 자체수입 부족은 2023년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자체수입 예산 32억 2,000만원 대비 16억 9,800만원이 부족한 15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자체수입 수납액이 예산 대비 부족하였음.

[한국임업진흥원 연도별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체수입	3,220	1,522	3,706	1,918	5,548	2,565	5,548	2,673	5,548	2,826
자체수입 부족액		△1,698		△1,788		△2,983		△2,875		△2,722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이처럼 자체수입 수납액이 예산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누적될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자체수입 예산 편성과 함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상경비 초과집행 문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지차 보전 지원 소요액 산정 당시 국회에 제출한 경상경비 예산을 초과하여 경상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매년 기관운영비 중 수지차보전지원 소요액을 산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수지차 보전 지원금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운영비 중 경상경비의 예산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경상경비 예산은 23억 3,800만원임에 비해 집행액은 81억 4,400만원으로 비율이 348.3%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 지출항목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지출 합계		567,980	543,100	591,704	546,603	581,840	540,953
사업비	일반사업비	285,014	262,144	296,132	273,636	286,655	269,302
	정부위탁사업비	35,717	27,490	35,805	29,338	39,139	35,183
	소계	320,731	289,634	331,937	302,974	325,794	304,485
기관 운영비	조직망운영비	67,964	67,964	67,964	67,964	67,964	67,964
	인건비	141,927	143,883	155,162	151,242	153,379	154,167
	경상경비	2,420	7,828	2,454	8,939	2,338	8,144
	예비비	3,696	3,696	3,875	3,068	3,951	3,951
	자본예산	31,242	30,096	30,312	12,416	28,414	2,242
	소계	247,249	253,467	259,767	243,628	256,046	236,469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상경비 예산은 「공공기관 혁신계획(2022.12)」에 따른 경상경비 감축기조 등으로 당초 필요한 예산보다 수지차보전 지원 소요액이 과소 편성되었고, 이에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감축 방향에 역행하는 예산 집행일 뿐만 아니라, 수지차 보전 지원소요액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심의 시 국회에 제공된 재정정보의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라) 수지차 보전기관의 전기이월금 과소편성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과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 요구서 작성요령」에서 수지차 보전기관은 결산잉여금을 차년도와 차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임의처분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3]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당해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기이월금(전년도이월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전전기이월금(전전년도이월액)은 전년도 확정 결산잉여금에서 당해연도 전기이월금을 충당 후 잔여재원을 편성함.

63) 「수지차 보전기관 2024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

□ 결산잉여금 임의처분 금지
  ㅇ 결산잉여금 임의처분 기관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금액만큼 수지차 보전액 감액 조정

※ 2023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까지는 해당 사항에 관한 설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음.

[전기이월금 및 전전기이월금 편성 방식]

- **전기이월금**: 당해연도('23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계하여 차년도('24년) 전기이월금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으로, 과거 3개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
  (예시) '24년 정부안 편성 중에 '20년~'22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을 '24년 예산에 반영
- **전전기이월금**: 전년도('23년) 확정 결산잉여금에서 당해연도 수입('23년 전기이월금) 충당 후 잔여재원으로서, 다음 해('24년)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
  (예시) '22년 최종 결산잉여금(35억 9,100만원)에서 '23년 전기이월금(25억 9,100만원) 충당 후 잔여재원(10억원)을 '24년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

자료:「수지차 보전기관 2024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

그러나 전기이월금 및 전전기기월금 편성 방식과 달리 전기이월금을 과소편성한 사례가 있음.

① 한국국제협력단: 전기이월금 과소편성

한국국제협력단의 전기이월금은 기획재정부의 편성 기준과 달리 과소계상되어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차차년도 수입으로 계상됨에 따라 그 기간동안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전기이월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발도상국 내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용액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부터 결산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0년에 발생한 결산잉여금부터 차년도 수입에 편성되는 일부 금액(차기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차년도 수입에 편입(차차기이월)하여 처리하고 있음.

[KOICA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연도말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합계	12,350	2,581	32,137	48,131	49,856	46,289
- 퇴직급여적립금	-	-	-	4,817	-	1,517
- 법정보험료부족분	-	-	-	-	-	-
- 사업외 비용	200	472	-	-	-	-
- 차기이월 (차년도 전기이월금)	12,150	2,109	11,878	7,276	8,380	7,088
- 차차기이월 (차차년도 전전기이월금)	-	-	20,259	36,038	41,476	37,684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의 결산잉여금 처리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편성 방식과 다르게 전기이월금이 과소계상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결산잉여금 498억 5,600만원 중 차기이월되는 금액은 276억 1,600만원,[64] 차차기이월되는 금액은 222억 4,400만원이어야 하나, 실제 차기이월은 83억 8,000만원 차차기이월은 414억 7,600만원이었음. 그리고 2023년 결산잉여금 462억 8,900만원 중 차기이월되는 금액은 433억 7,500만원,[65] 차차기이월되는 금액은 29억 1,400만원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각각 70억 8,800만원과 376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전기이월금이 과소계상되었음.

이처럼 결산잉여금에서 차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클 경우 결산잉여금 발생 시점부터 수입계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등 수지차 보전방식 예산편성의 취지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됨.

(마)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 결산잉여금 처리 관련 원칙과 규정 정립 필요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 결산잉여금 처리방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2024년부터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2개 기관 중 재외동포재단은 결산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할 예정이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 결산잉여금의 향후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하여 원칙과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024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사업방식이 기존 출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정 해제되었고, 재외동포재단은 기관 해산(재외동포청 신설)으로 지정 해제되었음.

그런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2020년~2023년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을 보면, 2023년에 391억 6,0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음.

64)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결산잉여금 평균 = (25억 8,100만원+321억 3,700만원+481억 3,100만원) / 3

65) 최근 3개년(2020년~2022년) 결산잉여금 평균 = (321억 3,700만원+481억 3,100만원+498억 5,600만원) / 3

[2020년~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정부 지원 수입(A)	출연금	120,028	120,028	155,399	155,399	95,161	95,161	103,422	103,422
		보조금	-	-	-	-	-	-	-	-
	자체 수입 (B)	사업수입	22,517	24,604	24,533	25,443	24,180	21,273	21,751	19,203
		사업외수입	82,979	71,959	823	2,138	889	8,268	904	30,099
		전년도 이월금	-	-	-	-	-	-	-	-
		전전년도 이월금	1,134	1,134	615	615	637	637	5,060	12,916
		기타	759	759	466	466	523	523	431	431
		계	107,389	98,456	26,437	28,662	26,229	30,701	28,146	62,649
	자체수입 수납률			91.7		108.4		117.0		222.6
	수입 합계(C=A+B)		227,417	218,484	181,836	184,061	121,390	125,862	131,568	166,071
	전체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B/C)		47.2	45.1	14.5	15.6	21.6	24.4	21.4	37.7
지출 합계(D)			227,417	217,847	181,836	179,001	121,390	118,006	131,568	126,911
결산잉여금(C-D)			-	637	-	5,060	-	7,856	-	**39,160**

주)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2022년 결산잉여금 78억 5,600만원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해당 결산잉여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속 운영되었더라면 차년도나 차차년도 자체수입에 전년도이월금 또는 전전년도이월금으로 반영되어 수지차 보전 지원액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나, 기획재정부의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 결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2023년 25억 1,2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22년 결산잉여금 중 2023년 수납된 14억 9,500만원을 제외한 28억 1,400만원이 기관 수입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은 수입에 반영되지 않고 보유 중인 결산잉여금 총 53억 2,600만원을 2024년 7월 중 국고로 반납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2020년~2023년 재외동포재단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정부 지원 수입(A)	출연금	62,923	56,120	62,480	62,480	62,020	62,020	56,108	32,337
		보조금	-	-	-	-	-	-	-	-
	자체 수입 (B)	사업수입	-	-	-	-	-	-	-	-
		사업외수입	1,084	730	1,084	3,041	1,084	2,398	1,281	956
		전년도 이월금	1,495	1,495	1,495	1,495	1,495	1,495	1,495	1,495
		전전년도 이월금	-	-	-	-	6,077	6,077	4,087	4,087
		기타	100	-	100	11	100	126	80	-
		계	2,679	2,225	2,679	4,547	8,756	10,096	6,943	6,538
	자체수입 수납률			83.1		169.7		115.3		94.2
	수입 합계(C=A+B)		65,602	58,345	65,159	67,027	70,776	72,116	63,051	38,875
	전체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B/C)		4.1	3.8	4.1	6.8	12.4	14.0	11.0	16.8
지출 합계(D)			65,602	50,197	65,159	59,959	70,776	67,807	63,051	36,363
결산잉여금(C-D)			-	8,148	-	7,068	-	**4,309**	-	**2,512**

자료: 재외동포청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 요건으로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또는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점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제 이후의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점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결산잉여금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66]

이를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수지차 지정 해제 사례를 참고하여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 결산잉여금의 향후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하여 원칙과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66)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외동포재단은 기관 해산으로 관련 업무가 정부조직인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기관의 잔존자산이 정부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공기관으로 계속 유지되는 기관으로, 두 기관의 결산잉여금 처리 문제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임.

7.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가. 개 요

「대한민국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고[1], 「국회법」 제84조는 예산안 및 결산의 회부와 심사를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명문화하고 있음.[2]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음.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 정책 우선순위 설정, 경제 안정 및 성장 도모,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결산심사는 정부의 예산 집행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에 개선점을 도출하여 지속 가능한 건전재정 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보면, 중요도가 낮거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조정되거나 감액되고,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과 같이 비용이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는 항목별 증·감을 통해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기여하고 있음.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

1)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 ⑦ 생략

국회의 결산심사를 보면, 국회는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송부하고, 정부는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송부하여 그 이행여부를 점검 받고 있음.

(1)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3]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라 국회는 2023년 12월 20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1,916건(중복 109건 포함)을 채택하였고, 이를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제도개선 1,198건, 주의 612건, 시정 213건, 징계 2건, 변상은 없었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및 조치현황]

(단위: 건, %)

구분	유형별 시정요구사항						합계 (A)	조치결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 완료(B)	조치중	조치율 (B/A)
결산	-	2	213	594	1,186	106	1,889	1,559	330	82.5
예비비	-	-	-	18	12	3	27	23	4	85.2
합계	-	2	213	612	1,198	109	1,916	1,582	334	82.6

주 1) 정보위원회 소관 제외
2) (중복)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중복 적용한 경우를 말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4.5.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2024년 5월 말)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총 1,916건 중 1,582건(82.6%)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334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3)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대의견 조치결과

예산안 및 결산의 부대의견은 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 없이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행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안에 첨부하여 의결하는 국회의 의견을 말함.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총 5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현황]

구 분	부대의견 수	해당 중앙관서·기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3건	정부 공통 10건, 법무부 및 교육부 1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1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1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1건, 국회사무처 1건, 법무부 1건, 법제처 1건, 감사원 1건, 국무조정실 1건, 국가보훈부 2건, 기획재정부 1건, 교육부 5건, 원자력안전위원회 1건, 외교부 1건, 국방부 1건, 방위사업청 1건, 행정안전부 1건, 경찰청 1건, 문화체육관광부 3건, 국가유산청 1건, 농림축산식품부 1건, 산업통상자원부 2건, 보건복지부 6건, 환경부 1건, 고용노동부 1건, 국토교통부 4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건

자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또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총 2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17건을 조치 완료하고, 9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현황]

구 분	부대의견 수	해당 중앙관서·기관
조치완료	17	정부공통 7건, 법무부 1건, 기획재정부 1건, 교육부 3건, 과기부 1건, 방사청 1건, 보건복지부 1건, 고용노동부 1건, 국토교통부 1건
조치중	9	정부공통 2건, 대법원 2건, 교육부 1건, 국방부 2건, 행안부 1건, 인혁처 1건
총 계	26	-

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4.5.

나. 검토의견

(1) 법령상 예산변경 내역의 국회 제출 의무 위반

2023년도 예산 변경 현황에 따르면, 60개 부처 중 59개 부처가 이·전용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나, 국가교육위원회는 내역 제출을 누락하였고,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는 내역 제출을 당초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출하였으므로, 각 부처는 예산 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2022년 12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음.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639조 419억 300만원에서 3,142억 4,800만원이 감액된 638조 7,276억 5,500만원으로 일반·지방행정을 포함한 16대 분야 예산이 확정되었음.

국회에서 심의를 마친 확정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될 수 없고,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정부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4] 다만 정부는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제46조제5항[5] 및 제47조제4항[6]은 예산 변경을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체를 명문화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 변경 현황을 보면, 총 60개 부처 중 59개 부처가 이·전용 등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부처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 · 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전용 내역 제출을 누락하였고,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는 지연 제출하였음.

따라서 정부 각 부처는 예산 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변경 내역을 적시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내역 제출을 누락한 부처와 해양경찰청 등 지연 제출한 부처들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의 분기별 이·전용 내역 현황]

순번	부처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	해당없음	○	○
2	대통령경호처	○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국회	○	○	○	○
4	국가인권위원회	해당없음	○	○	○
5	법무부	○	○	○	○
6	법제처	해당없음	지연제출(8/3)	○	○
7	감사원	해당없음	○	○	○
8	헌법재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9	대법원(법원행정처)	○	○	○	지연제출(24/4/19)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지연제출(8/18)	○	○
12	국가보훈부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지연제출(5/30)	○	○	○
14	금융위원회	○	○	○	○
15	국민권익위원회	○	○	○	○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17	교육부	○	○	○	○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19	방송통신위원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원자력안전위원회	○	해당없음	○	○
21	외교부	○	○	○	○
22	통일부	○	○	○	○
23	민주평통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순번	부처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4	재외동포청	해당없음	해당없음	○	○
25	행정안전부	○	○	○	○
26	경찰청	지연제출(6/2)	○	○	○
27	소방청	○	○	○	○
28	인사혁신처	해당없음	○	○	○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해당없음	해당없음	○
30	진실화해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31	문화체육관광부	○	○	○	○
32	국가유산청	○	○	○	○
33	농림축산식품부	지연제출(6/16)	○	○	○
34	농촌진흥청	○	○	○	○
35	산림청	○	○	○	○
36	해양수산부	○	○	○	○
37	해양경찰청	지연제출(7/3)	지연제출(8/3)	○	○
38	보건복지부	○	○	○	○
39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40	질병관리청	○	지연제출(8/19)	○	○
41	환경부	지연제출(7/13)	○	○	○
42	기상청	○	○	○	○
43	고용노동부	○	○	○	○
44	국토교통부	○	○	○	○
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당없음	해당없음	○	○
46	새만금개발청	○	○	해당없음	○
47	여성가족부	해당없음	○	○	○
48	국방부	○	○	○	○
49	병무청	해당없음	○	○	○
50	방위사업청	○	○	○	○
51	5·18 위원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2	산업통상자원부	지연제출(7/28)	○	○	○
53	특허청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4	중소벤처기업부	○	○	○	○
55	기획재정부	○	○	○	○
56	국세청	○	○	○	○
57	관세청	해당없음	○	○	○
58	조달청	○	○	○	지연제출(24/3/7)

순번	부처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9	통계청	해당없음	○	○	○
60	국가교육위원회	해당없음	**누락**	해당없음	**누락**

주) “해당없음“은 이전용을 하지 않아 미제출, “누락“은 이전용을 하였음에도 미제출, ○는 제출, “지연제출” 은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취합

(2) 예산안 심의 결과 환류

국회에서 감액 의결된 사업이 연도 중 증액 집행되거나,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거나,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이 과도하게 변경되어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대한민국헌법」및「국회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국가재정법」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7] 동 법률 제46조는 예산의 전용을 규정하면서[8]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민주적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가 ①국회에서 감액 확정된 사업을 부처가 연도 중 증액 집행하거

---

7)「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8)「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0. 6. 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2014. 12. 30.>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②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③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행위는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023년도 각 부처별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국회에서 감액 확정된 사업을 부처가 연도 중 증액 집행한 경우

외교부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세부사업 내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역사업은 정부안 대비 5,500만원이 국회에서 감액되었으나, 외교부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에서 5,650만원을 전용(증)하여 행사장 조성 및 방송연출 용역비로 증액 집행하였음.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세부사업 내 '예방접종 홍보' 내역사업과 '추진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정부안 대비 각각 7억원과 5억 1,500만원이 국회에서 감액되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연초에 각각 7억 9,200만원과 7,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증액 집행하였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기본경비' 사업은 정부안 대비 9,400만원이 국회에서 감액되었으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으로 간담회 실시를 위해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에서 3,5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증액 집행하였음.

[국회 감액사업의 증액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비고
		국회 제출	국회 확정			
외교부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184	129	180	167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에서 전용을 통해 증액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홍보	1,000	300	1,092	1,092	사업 내에서 세목조정하여 내역사업 증액
	추진단 운영지원	723	228	298	239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189	95	130	128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에서 내역변경하여 증액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취합

②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

국가유산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경복궁종합정비' 세부사업 내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 내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억 800만원을 전용 및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음.

국방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대개편 3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억 1,6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음.

국토부는 당초 계획되지 않은 ‘공공임대(융자)’ 세부사업 내 ‘공공리츠’ 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88억 8,0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방위사업청은 당초 예산에 없던 ‘신속획득’ 세부사업 내 ‘휴대용드론건’ 내역사업과 별도 세부사업인 ‘화생방정찰차-Ⅱ(장갑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5,600만원과 1억 2,700만원을 조정 및 내역변경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음.

통일부는 당초 예산에 없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세부사업 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내역사업과 ‘국내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 내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등에서 각각 2억 3,000만원과 1억원을 전용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음.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국가유산청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	-	608	608	전용 및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내내역사업 집행
국방부	부대개편 3차	-	716	716	내역변경하여 사업 집행
국토교통부	공공리츠사업	-	168,880	168,880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내역사업 집행
방위사업청	휴대용드론건	-	56	29	조정을 통해 내역사업 집행
	화생방정찰차-Ⅱ (장갑형)	-	127	127	내역변경을 통해 사업 추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	-	230	21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등에서 전용하여 내역사업 집행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	100	80	통일정책 추진 사업 등에서 내역변경하여 내역사업 집행

※ 청년인턴 관련 사업은 ‘일자리 사업’에서 별도로 분석 제공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취합

③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을 위해 53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의 78.5%인 420억 3,900만원을 과도하게 증액 집행하여 국회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음.

국토부는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을 위해 3조 2,37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 확정 예산의 50%가 넘는 1조 7,038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감액 집행하여 국회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음.

외교부는 ‘외교홍보 역량 강화’ 세부사업 내 ‘홈페이지 개편’ 내내역사업을 위해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홈페이지 개편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의 대부분인 5억 9,000만원을 재외공관 발령 직원의 이부임 항공료 및 이전비로 전용하여 국회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음.

[국회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53,520	95,559	78,953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국토부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3,237,000	1,533,120	1,461,701	기금운용계획 변경(감)을 통해 사업축소
외교부	홈페이지 개편	594	124	120	사업비 대부분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집행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 취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집행은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약화시키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향후 해당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취지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미조치 사항 보고 필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가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계속해서 조치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완료 여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는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조치중인 건이 조치완료 될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국회법」에 근거하여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송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정부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결산 의결일 다음 해인 5월 말에 제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율을 보면, 2020회계연도는 총 시정요구 1,881건 중 1,534건을 조치완료하여 81.6%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고, 2021회계연도는 총 시정요구 1,416건 중 1,175건을 조치완료하여 83.0%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는 총 시정요구 1,916건 중 1,582건을 조치완료하여 82.6%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최근 3년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합계				결산				예비비			
	계(1+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1)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2020	1,881	1,534	347	81.6	1,846	1,506	340	81.6	35	28	7	80.0
2021	1,416	1,175	241	83.0	1,394	1,159	235	83.1	22	16	6	72.7
2022	1,916	1,582	334	82.6	1,889	1,559	330	82.5	27	23	4	85.2

자료:「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다음으로 결산에 첨부되어 의결되는 부대의견의 연도별 후속조치 조치율을 보면, 2020회계연도는 총 부대의견 21건 중 12건을 조치완료하여 57.1%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고, 2021회계연도는 총 부대의견 21건 중 14건을 조치완료하여 66.7%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는 총 부대의견 26건 중 17건을 조치완료하여 65.4%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최근 3년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조치율
2020	21	12	9	57.1
2021	21	14	7	66.7
2022	26	17	9	65.4

자료: 「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그런데 정부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각 연도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후 조치 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2020회계연도 347건, 2021회계연도 241건, 2022회계연도 334건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으며, 부대의견의 경우 2020회계연도 9건, 2021회계연도 7건, 2022회계연도 9건 등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음. 이에 국회의 시정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9]'를 국회에 제출한 후 조치중인 건이 조치완료 될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9) 각 연도 5월 말에 제출

(4) 연례적으로 조치율이 낮은 부처의 조치율 제고 필요

기상청·국가보훈부 등 4개 중앙관서는 연례적으로 조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중앙관서들은 시정요구사항 조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전부처 평균 조치율은 82.6%로 2021회계연도 전부처 평균 조치율 83.0%보다 조금 하락하였음.

2022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율 하위 10개 중앙관서를 보면, 민주평통(50.0%)이 가장 낮은 조치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기상청(58.8%), 국가보훈부(59.1%), 여성가족부(6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기상청·국가보훈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4개 기관은 4년 기간 동안 세 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정요구사항 조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낮은 조치율을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요구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요구사항 조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10)]

[연도별 조치율 평균 및 하위 10개 중앙관서(결산의결 다음연도 4월 말 기준)]

2019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전부처 평균	83.6%	전부처 평균	81.6%	전부처 평균	83.0%	전부처 평균	82.6%
방통위	41.2%	**여성가족부**	43.5%	행복청	33.3%	민주평통	50.0%
법무부	54.1%	사회적참사특조위	50.0%	**국가보훈부**	50.0%	**기상청**	58.8%
방사청	58.3%	행복청	53.8%	진실화해위		**국가보훈부**	59.1%
국세청	63.2%	법무부	56.9%	질병청	53.8%	**여성가족부**	61.1%
기상청	64.3%	**국조실및총리비서실**	62.2%	공수처	54.5%	대법원	62.5%
경찰청	66.7%	개인정보위	62.5%	금융위	58.8%	국가인권위 해양경찰청	66.7%
여성가족부	70.0%	5.18위	66.7%	**기상청**	58.8%	**국무조정실 및**	68.0%
선관위	73.7%	관세청		병무청	62.5%	**국무총리비서실**	
해수부	74.4%	통일부		**국조실및총리비서실**	63.6%	농림축산식품부	72.5%
새만금청	75.0%	**국가보훈부**	67.6%	개인정보위	66.7%	소방청	72.7%

주) 결산 의결일: 2019회계연도 2020.11.19./ 2020회계연도 2021.12.2./ 2021회계연도 2022.11.10./ 2022회계연도 2023.12.2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10)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 조치율 및 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

(5) 시정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되었으나,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조치완료 여부를 신중히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1,916건 중 82.6%인 1,582건을 ‘조치완료’하였다고 2024년 5월 국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완료’로 보고된 내용 중 아직 개선이 미흡하거나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조치완료로 보고된 사례가 총 14개 중앙관서에 21건이 있었음.

유형별로 보면, 당해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미흡’이 경찰청 등 11개 부처에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되었음에도 조치가 미흡한 ‘연례적 조치미흡’이 국가유산청 등 3개 부처에 3건 있었음.

지금과 같이 ‘조치완료’로 국회에 보고된 사항이 검토결과 ‘조치미흡’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시정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신뢰성이 저해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시정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정요구사항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정 요구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2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미흡한 사례]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 보고	검토의견
조치미흡(1)	경찰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지속 필요성 검토 필요	주의	조치완료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분석을 완료하여 그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예산을 증액요구한다 하였으나, 실제 효과분석 연구 결과 내용 중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반납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한계 등이 지적되어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지원금만 증액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볼 수 없음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보고	검토의견
조치미흡(2)	국세청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24년에 개정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15일 미만 근무 직원에게는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하면서,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여전히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수와 비례하여 지급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의 당초 취지를 왜곡하여 국세청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였음
조치미흡(3)	국토부	예산 이·전용 및 예비비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시정주의	조치완료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의 이·전용 규모가 2022년 66억원에서 2023년 121억 5,5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조치미흡(4)	국토부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출연 필요	시정	조치완료	2023회계연도에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철도공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연례적인 출연금 이월이 발생함.
조치미흡(5)	국토부	연례적으로 과도한 세부사업간 전용·조정 및 신규사업의 추진 지연 시정 필요	시정	조치완료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은 2023회계연도에서 세부사업간 전용·조정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고, 신규사업의 추진 지연이 계속되고 있음.
조치미흡(6)	기획재정부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 재발 방지 필요 등	주의	조치완료	시정요구 및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없는 지출 이월액이 2022년 421억 3,900만원에서 2023년 440억 8,6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조치미흡(7)		국회의 대규모 불용 발생 우려 지적에도 불구한 지속적 불용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세수부족에 따른 이자상환유예 등으로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의 불용액이 8.6조원 발생하여 전년(2.1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하였음
조치미흡(8)		복권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2024년 5월 말 기준 2020~2022년 보조금 교부액 중 실집행잔액 미반납규모가 105억 2300만원으로 여전히 잔액 반납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조치미흡(9)	문화체육관광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의 투자실적 부진 주의 필요	주의	조치완료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했으나, 연내 투자실적 저조문제가 2023년에도 계속되었음.
취지일부반영(10)	복지부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지연에 따른 펀드 출자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에서 당초 펀드 결성 목표대로 출자금을 조속히 모집 결성하여 K-글로벌 백신 펀드 내 자금이 실제 임상 3상 단계의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범위를 바이오헬스로 확장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음.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보고	검토의견
조치미흡(11)	식약처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장기 체납되고 있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체납 및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3년 동안 수납실적이 크게(2023년도 수납률 15%) 늘어나지 못함.
조치미흡(12)	인혁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주의	조치완료	퇴직자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 등을 실시하였다 하였으나, 2023년에도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이 크게 발생하였음
조치미흡(13)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반출 절차 간소화 및 유형별 이용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조치미흡(14)	해경청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 추진 부적절	시정	조치완료	본청과 지방청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모전과 캠페인이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음
조치미흡(15)	행안부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지자체별 미납사유 및 납부계획 관릴 통해 지자체 반납을 독려 중이라고 하였으나, 2023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71.2%로 저조하고, 여전히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조치미흡(16)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을 투자계획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나,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집행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났음
조치미흡(17)	행안부	철저한 신규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수립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새로운 전환계획 추진 시 차질 없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실적 역시 목표 대비 저조하게 나타남
조치미흡(18)	행안부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촉진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특례보증제도 도입 등 실적 제고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하였으나, 2023년 집행실적도 57%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특례보증제도를 통한 신규 선정 척수도 1건에 불과하여 신규로 지원되는 선박 수가 많지 않음.
연례적 미조치(1)	국가유산청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선정, 기 교부 보조금의 적시 집행을 위한 집행점검 실시(연 4회), 사업포기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실시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했으나, 2023년에도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및 연례적 이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였음.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 보고	검토의견
연례적 미조치 (2)	통일부	통일+센터 설치사업 일정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히 할 필요	주의	조치완료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23년에도 집행부진과 이월이 지속되고 있음
연례적 미조치 (3)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와 추진실적 점검 강화 등의 조치완료를 보고하였으나, 2023년에도 집행부진과 이월 및 재이월이 지속되고 있음

자료: 각 부처별 자료 취합

8. 성과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개 요

(1) 의의

(가) 개념

성과관리제도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함으로써 정부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국가재정법」은 ① 성과목표관리, ②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 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를 의미하며, 성과평가 제도는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의미함.[1)]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 성과목표관리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	Monitoring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		
* 재정사업평가 (성과관리 대상)	-	Review & Feedback (재정사업 자율평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	Evaluation & Feedback (사업별 심층평가)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3.9.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81)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현황]

1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
→ 全주기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하여 5년간(2023~2027) 가시적 성과 창출
*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스타트업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일자리·자산형성 지원, 장애인 돌봄, 산불대응능력 강화 등

2 (사업성과평가) ①개별부처 주관 사업평가 + ②기재부 주관 사업평가
① 6개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7개 개별 성과평가* 제도 운영중
*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R&D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원회),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② 그 외 기재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금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 (보조사업 연장평가)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평가(2016~)
- (기금평가) 기금사업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 평가(2000~)
- (심층평가) 객관적 성과검증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평가 → 재정투입방향 및 사업구조 개선안 제시(2005~)

3 (성과목표관리) 프로그램별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도 측정·관리(2003~)
① (성과계획서) 차년도(n+1년도)의 사업별(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② (성과보고서) 전년도(n-1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 보고(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
③ (대표성과지표) 국정과제·핵심임무 등 부처가 중점 추진해야 할 대표적 재정사업 성과지표(105개, 부처별 2~3개)* 설정·공개(2023~)
* (예) 기재부(관리재정수지), 복지부(상대적 빈곤율), 문체부(국민여행 총량)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4.1.

성과목표관리 제도는 각 기관별 임무・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2)]

한편 성과평가 제도는 각 기관별로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특정 사업군을 중심으로 정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재정사업심층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3)]

(나) 성과관리제도의 도입배경

과거 재정지출에 대한 투입 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재정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남에도 예산의 편성·집행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이 폐지 또는 축소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지출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4)]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성과관리제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운용시스템이 구비되었음.[5)]

---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407호) 검토보고」, 2020.11.

5)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20.6., p1.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한 4대 재정개혁의 시스템화]



자료: (구)기획예산처,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 2007., p.18.

4대 재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6.9월 「국가재정법」이 제정[6]되었고,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 시각하에서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다고 밝히고 있음.[7]

즉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므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음.

(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2021.12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음.[8]

6) 2006.9.8. 「국가재정법안」 본회의 의결, 2007.1.1. 시행

7) (구)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보도참고자료」, 2006.10.2.

8)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추진방안·결과활용 및 성과정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 2022.8월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3.1월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이 수립·추진되었음.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기본방향[9]으로 하여 ① 성과목표관리, ② 사업성과평가, ③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④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의 4대 분야에 대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먼저 성과목표관리 분야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설정·공개, 성과계획서상 전체 성과지표 수 축소, 성과목표관리 결과 국무회의 보고를 추진과제로 하고, 성과평가 분야는 성과평가 중복 최소화, 성과평가 제도 표준화,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를 추진과제로 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분야는 2023년 신규로 추진되는 것으로 범부처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주기 5년간 관리,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 이행실적 등 공개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분야는 성과DB 구축 및 성과포털 개선, 개정사업 성과관리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과제로 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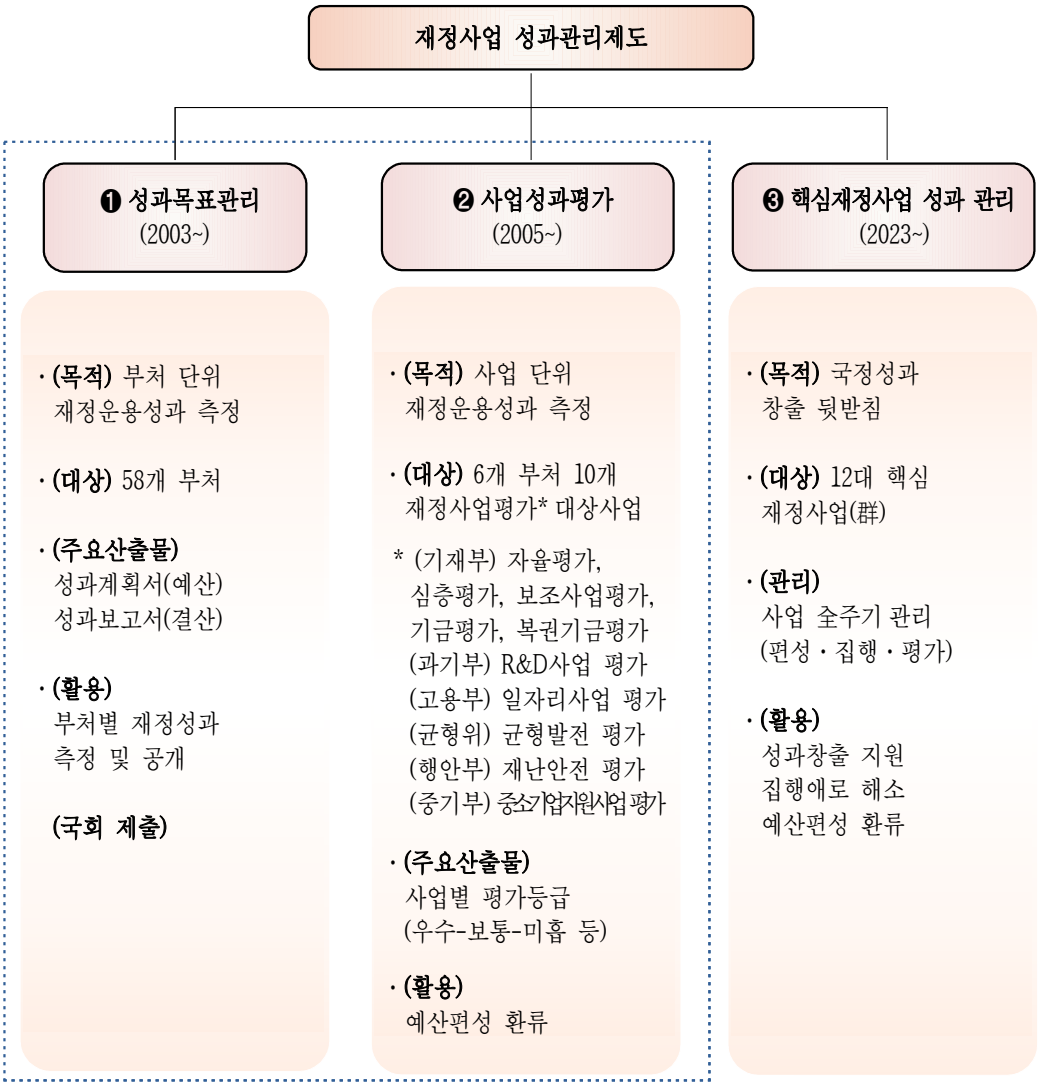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국가재정법」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매년 수립)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자료: 기획재정부,「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1.

(2) 2023년도 성과목표관리 현황

(가) 2023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10)]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서 2023년도 작성 대상기관은 58개[11)] 중앙관서이며,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등)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함.[12)]

① 프로그램목표 현황

2023년도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58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79개, 프로그램목표 473개로 구성됨.

[2023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현황]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3 (a)	58	179	473
2022 (b)	58	179	473
증감(a-b)	0	0	0

주)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10)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11) 60개 예산 소관 중 국가정보원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2022년 9월 최종보고 후 활동종료 예정(한정된 기간 운영되는 업무특성 및 인건비·기본경비 위주 예산 감안하여 제외)

12) 인건비·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②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또한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정량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울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되,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13)]

참고로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정성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14)]

2023년도 프로그램목표 473개의 성과지표는 총 1,065개로 프로그램목표당 평균 2.3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고, 2022년도 대비 18개 증가하였음.

---

13)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14) [지표 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 ·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반영
사례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결과지표는 2022년도 703개(67.1%)에서 2023년도 726개(68.2%)로 22개(1.1%p) 증가하였고, 정량지표는 2022년도 759개(72.5%)에서 2023년도 788개(74.0%)로 29개(1.5%p) 증가하였음.

[2023년도 성과지표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회계연도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2023	473	1,065	16	29	294	726	788	277
		(100.0)	(1.5)	(2.7)	(27.6)	(68.2)	(74.0)	(26.0)
2022	473	1,047	42	15	287	703	759	288
		(100.0)	(4.0)	(1.4)	(27.4)	(67.1)	(72.5)	(27.5)

주)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③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2023년도 성과관리대상 58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38조 1,867억원 중 성과관리대상은 347조 5,475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4.5% 수준임.[15)]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단위: 억원)

회계연도	총지출(A)	성과관리대상 사업 금액(B)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비율(B/A)
2023 (a)	6,381,867	3,475,475	54.5%
2022 (b)	6,812,131	3,976,179	58.4%
증감(a-b)	△430,264	△500,704	△3.9%p

주)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15)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나) 2023년도 성과보고서 주요내용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미리 설정한 각 중앙관서의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보고서로서 사업의 주요내용·성과지표별 달성현황·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프로그램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집행단계 및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정부는「국가재정법」및「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기금을 통합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함.[16)]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①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목표 현황

2023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총 58개 중앙관서(국회, 헌법 재판소, 감사원 등 포함)로서 전략목표 181개, 프로그램목표 475개, 성과지표 1,068개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관서당 평균 전략목표 3.1개, 프로그램목표 8.2개, 성과지표 18.4개를 설정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목표당 평균 2.2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목표인 전략목표가 1개인 중앙관서는 감사원 등 17개이며, 이들 중앙관서 중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13개 부처는 프로그램목표를 1개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는 2개 이상의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16)「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4. 성과보고서

중앙관서 평균 전략목표 개수인 3.1개를 초과한 중앙관서는 외교부(6개) 등 25개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가장 많은 34개, 문화체육관광부 33개 순으로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8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72개), 국토교통부(69개) 등 36개 기관이 10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평균 2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22개 기관은 기관당 평균 3.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17)]

② 2023년도 성과달성 현황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58개 기관의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총 1,068개 중 821개(76.9%, 달성+초과달성)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247개(23.1%)는 미달성 되었으며,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 중 95개(8.9%)는 목표를 130% 이상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로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헌법재판소 등 13개 기관이며, 미달성 기관은 총 45개 기관임.

프로그램목표 미달성 기관의 목표달성률은 75.5%로 전체 목표달성률 76.9%에 비해 1.4%p 낮은 수준이며, 목표 미달기관 중 달성률이 50% 미만인 기관은 대법원(0%) 1개 기관임.

대법원은 2개의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고 2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하였으나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고, 미달성된 주요 원인은 사건이 복잡해지고 각종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임.[18)]

[2023년도 중앙관서별 프로그램목표 달성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지표수 (A)	달성 (B)	초과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총 계	**181**	**475**	**1,068**	**726**	**95**	**76.9%**	**97.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3	3	0	100.0%	100.0%
대통령경호처	1	1	1	1	0	100.0%	100.0%
국회	2	5	14	6	1	50.0%	97.0%
대법원	2	2	2	0	0	0.0%	90.7%

17)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5.

18) 감사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2024.5.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지표수 (A)	달성 (B)	초과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헌법재판소	1	1	1	1	0	100.0%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4	2	0	50.0%	9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2	4	3	1	100.0%	100.0%
감사원	1	1	3	1	1	66.7%	9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1	3	2	0	66.7%	99.8%
기획재정부	4	15	29	22	3	86.2%	97.7%
교육부	4	20	46	33	4	80.4%	9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34	72	56	9	90.3%	98.8%
외교부	6	13	27	17	6	85.2%	99.0%
통일부	2	8	21	14	1	71.4%	94.3%
법무부	5	8	21	11	2	61.9%	97.1%
국방부	5	10	22	13	1	63.6%	99.5%
행정안전부	6	16	38	23	5	73.7%	98.6%
문화체육관광부	6	33	82	54	11	79.3%	96.6%
농림축산식품부	5	16	37	30	1	83.8%	98.2%
산업통상자원부	6	23	50	33	5	76.0%	96.7%
보건복지부	4	25	48	27	2	60.4%	95.9%
환경부	6	16	37	35	0	94.6%	99.2%
고용노동부	4	9	26	17	0	65.4%	96.5%
여성가족부	4	5	12	9	0	75.0%	99.6%
국토교통부	6	34	69	40	9	71.0%	94.7%
해양수산부	3	13	26	14	4	69.2%	96.7%
중소벤처기업부	5	11	26	12	7	73.1%	98.2%
국가보훈부	5	9	20	12	3	75.0%	98.4%
인사혁신처	5	7	19	14	0	73.7%	99.3%
법제처	1	1	3	3	0	100.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5	10	17	16	1	100.0%	100.0%
국가인권위원회	1	1	3	2	0	66.7%	98.7%
방송통신위원회	2	4	7	7	0	100.0%	100.0%
공정거래위원회	3	4	10	9	1	100.0%	100.0%
금융위원회	4	12	32	19	7	81.3%	96.2%
국민권익위원회	1	1	2	1	0	50.0%	99.2%
원자력안전위원회	2	3	7	6	0	85.7%	9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2	2	0	100.0%	100.0%
국세청	5	6	15	8	0	53.3%	92.8%
관세청	4	6	13	11	1	92.3%	100.0%
조달청	1	2	5	4	1	100.0%	100.0%
통계청	3	5	13	11	0	84.6%	99.1%
병무청	4	4	9	8	0	88.9%	99.9%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지표수 (A)	달성 (B)	초과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방위사업청	3	7	14	10	0	71.4%	99.4%
경찰청	3	10	25	15	0	60.0%	98.1%
소방청	1	1	2	2	0	100.0%	100.0%
국가유산청	3	8	15	8	1	60.0%	97.9%
농촌진흥청	2	7	16	14	0	87.5%	99.8%
산림청	3	7	16	11	1	75.0%	92.8%
특허청	2	5	11	8	0	72.7%	98.9%
질병관리청	3	9	22	15	1	72.7%	97.3%
기상청	4	7	17	13	0	76.5%	98.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	4	2	0	50.0%	78.9%
새만금개발청	3	3	5	0	3	60.0%	91.5%
해양경찰청	5	5	15	13	1	93.3%	99.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1	2	1	0	50.0%	99.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100.0%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2	2	0	100.0%	1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5.

나. 검토의견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운영방식 재검토

성과관리제도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처의 자율권은 보장되지 않고,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만 지고 있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부처 자율권 확대 등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총액배분자율편성(이하 'Top-down 예산제도'라 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재정당국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면 그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재정법」 제2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9)20)]

19) 「국가재정법」

그러나 최근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지출한도 설정여부가 불분명하고, 각 부처는 세부사업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몇 차례 심사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안이 결정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어 Top-down 예산제도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

또한 Top-down 예산제도 도입 이전과 같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재정통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폐지 및 예산액 변경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즉 Top-down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부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각 부처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없이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과관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거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예산심사 대상과 성과목표관리 대상의 불일치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의 심사대상은 세부사업 단위이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단위로서 성과지표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가 예산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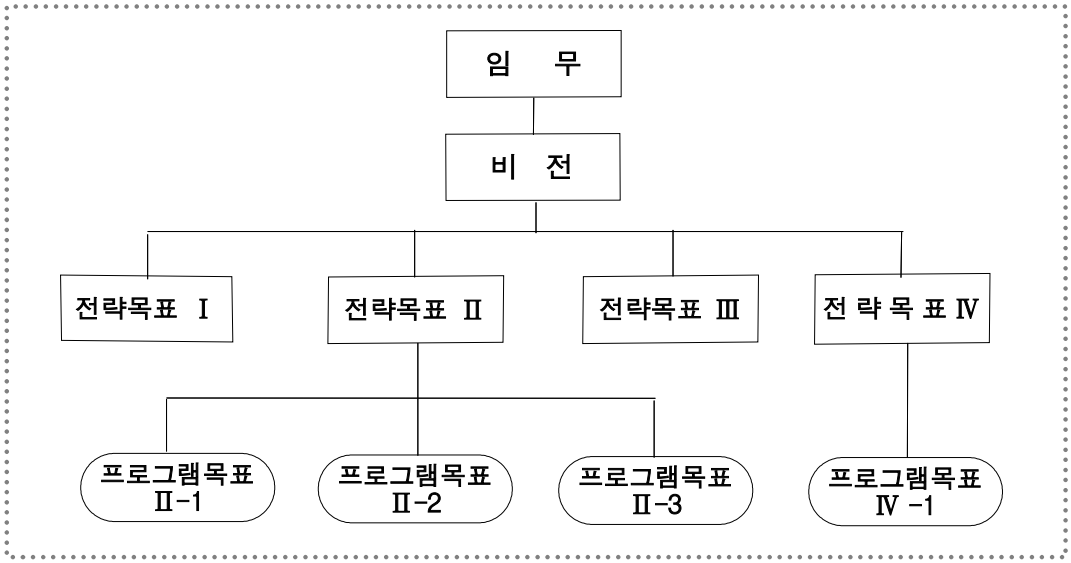
정부는 2021년까지는 성과목표관리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관리하였으나,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이유로 2022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개정(2021.4.)하여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사업의 대상을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하였음.[21]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20) 현재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6.)

21)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2.9.

이처럼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기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한 결과, 2021년 5,349개였던 성과지표의 수는 2022년 1,047개로 1/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부터는 '1 프로그램 1 지표' 설정 원칙에 따라 성과지표의 수가 507개로 대폭 감소하였음.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 변동 현황]

(단위: 개)

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성과지표(A)	단위사업 성과지표(B)	성과지표 합계(A+B)
2021	56	183	475	680	4,669	5,349
2022	58	179	473	1,047	-	1,047
2023	58[1)]	179	473	1,065	-	1,065
2024	60	187	475	507	-	507

주 1) 60개 예산 소관 중 국가정보원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외
2)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1~2024년 각 연도 「성과계획서」

이에 대하여 정부는 단위사업이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반면, 프로그램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로서 단위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이 성과계획서에 더 부합하는 사업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세부사업 단위의 심사가 기본이 되며, 더 세부적으로 내역사업 단위까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과관리의 대상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예·결산 심사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연계시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22)]

[2024년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6대	74개	652개	2,768개	8,400개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2024.7.3.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임에도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세부사업으로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대중교통 통행량(통행/일)'을 2024년 성과지표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교통 통행량(통행/일)'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성과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다음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3.31.), 예산요구서 제출(5.31.),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의 기준은 세부사업임.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2024.4.)의 예산안 요구양식을 보면,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양식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자료는 요구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까지,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 5개까지 빠짐없이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23)]

22) 2024년 예산 기준으로 16대 분야, 74개 부문, 652개 프로그램, 2,768개 단위사업, 8,400개 세부사업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2024.7.3.)

23)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예산안 요구양식은 약 280p 분량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은 약 160p 분량으로 지침 전체 분량 490p 중 89.8%가 예산 및 기금 요구양식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매우 자세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음.

[예산안 요구양식 -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페이지 (p)	2024예산 (A)	2025예산(안)		증 감	
			요구	검토(B)	(B-A)	%
1. 프로그램명		○○	△△△			
(일반회계) 1-1. 단위사업명		☆☆	○○			
■ 1-1-1. 세부사업명	1	◇◇	◇◇			
■ 1-1-2. 세부사업명	3	····	····			
■ ··············	9	····	····			
(○○회계) 1-2. 단위사업명		····	····			
■ 1-2-1. 세부사업명	13	····	····			
■ 1-2-2. 세부사업명	16	····	····			
■ ··············	22	····	····			
(○○회계) 1-3. 단위사업명		····	····			
■ 1-3-1. 세부사업명	23	····	····			
■ 1-3-2. 세부사업명	28	····	····			
■ ··············	···	····	····			
(○○기금) 1-4. 단위사업명		····	····			
■ 1-4-1. 세부사업명	-	····	····			
■ 1-4-2. 세부사업명	-	····	····			
■ ··············	-	····	····			

주 1)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기술
2) 기금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총괄표 내역에는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24.4.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매년 각 중앙관서에 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 등 사업유형별 지침과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및제세(210-02) 등 비목별 지침으로 예산편성의 가장 세부적인 단위까지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성과목표관리의 단위는 프로그램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재정사업의 성과가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환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환류를 하더라고 프로그램 중 어느 단위사업, 어느 세부사업에 환류를 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함.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서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도 인정되나 예산의 편성과 심사과정에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되고 있다는 것과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성과가 배제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를 정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측정이 필요한 사업단위를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정이 필요한 성과지표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각 사업의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일원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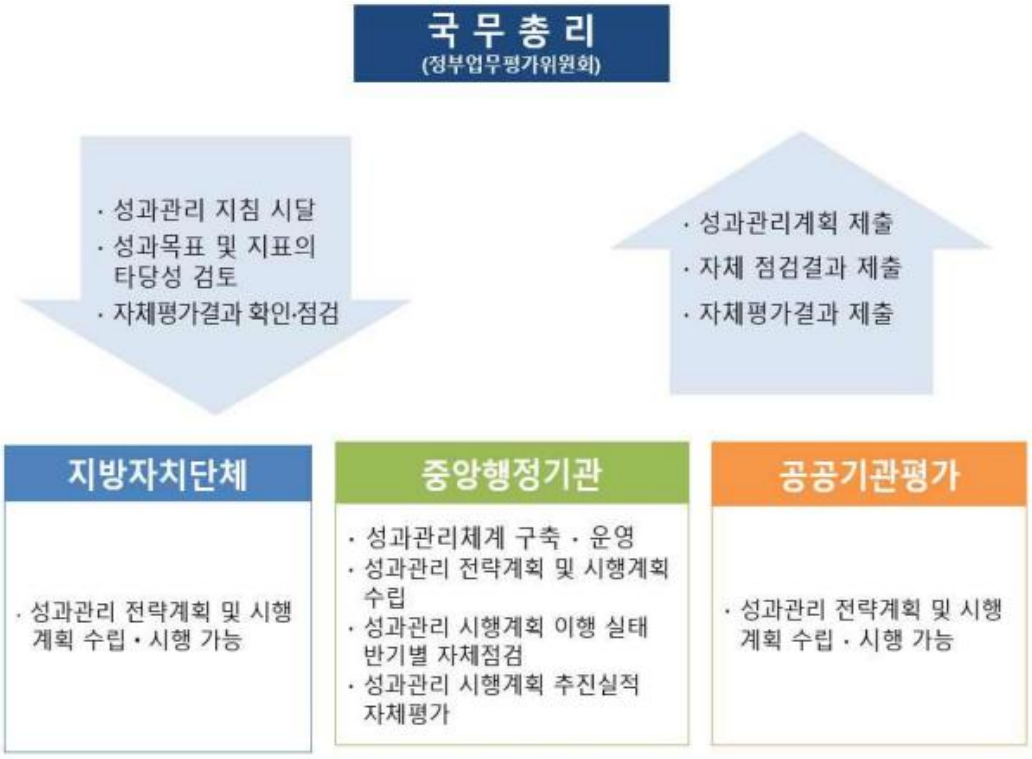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가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양 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는 2006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별도로 운용되고 있음.[24]

2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및 전략·성과목표 수립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3.3.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비교]

	정부업무 성과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재정법」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대상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행 가능)	중앙정부
성과관리 대상	정책사업[25]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자율성, 책임성,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 만족도 제고	효율성,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중장기 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1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1년)
성과관리 방식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 자체평가 등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에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예산으로 하는 주요 정책과제가 제외되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만 포함하고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로 한정되어 운용되기 시작하였음.[26]

2023년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은 58개[27] 기관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46개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이 제외되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기관명	계
장관급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25개
차관급 기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1개

주)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3.3.

2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26)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2007.3.16)을 거쳐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9.5.29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가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과계획서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리해 작성하도록 결정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20.6., p47.)

27) 60개 예산 소관 중 국가정보원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2022년 9월 최종보고 후 활동종료 예정(한정된 기간 운영되는 업무특성 및 인건비·기본경비 위주 예산 감안하여 제외)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으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제3항[28]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 법률은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로 볼 수 있음.[29]

또한,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근거법률과 주관부서가 다르지만 성과관리의 원칙,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체계가 유사하고, 성과관리의 방식도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 자체평가 등으로 유사함.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양 제도의 근거법률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으로 다르고, 성과관리의 대상이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과관리의 방식 또한 별도의 체계로 운용되는 등 양 제도는 별개의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관리대상[30]은 '정책사업'으로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재정사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정책사업의 대부분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양 제도의 성과관리 대상은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중되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 · 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 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 · 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 · 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29)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20.6., p52.

3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참고로 「정부업무평기 기본법」에 따른 20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국토교통부)은 5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성과목표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4년 성과계획서(국토교통부)」는 6개의 전략목표와 32개의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양 계획의 전략목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주거복지 향상, 교통망 확충, 안전강화 등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하위 성과목표들 역시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음.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비교]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계획서
근거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재정법」
전략 목표	Ⅰ.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Ⅰ.**균형국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통해 살기좋은 국토·도시를 조성한다.
	Ⅱ.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Ⅱ.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Ⅲ.**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Ⅳ.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Ⅳ.**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Ⅴ.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Ⅴ.**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기반을 구축한다.
		Ⅵ.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24년도 성과계획서」을 바탕으로 작성

(4) 감사원 검사결과와 국가결산보고서의 성과달성 현황 불일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국가결산검사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함에도 중앙관서별 성과달성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국가회계법」[31]에 따라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32]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의

31)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4. 성과보고서

32)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감사원이 실시한 국가결산검사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함에도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감사원의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총 1,068개 중 819개(76.7%)가 달성되고 249개(23.3%)가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성과달성 현황에는 총 1,068개 성과지표 중 821개(76.9%)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247개(23.1%)는 미달성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감사원 국가결산검사 결과 2023년도 프로그램목표 달성현황]

(단위: 개, %)

구 분	검사대상 중앙관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2022	58	179	473	1,047	815	232	77.8
2023	**58**	**181**	**475**	**1,068**	**819**	**249**	**76.7**
증 감	2	2	2	21	4	17	△1.1%p

자료: 감사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2024.5.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2023년도 중앙관서별 프로그램목표 달성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 목표	프로그램목표					
		목표수	지표수 (A)	달성 (B)	초과 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총 계	**181**	**475**	**1,068**	**726**	**95**	**76.9%**	**97.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3	3	0	100.0%	100.0%
대통령경호처	1	1	1	1	0	100.0%	100.0%
국회	2	5	14	6	1	50.0%	97.0%
대법원	2	2	2	0	0	0.0%	90.7%
헌법재판소	1	1	1	1	0	100.0%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4	2	0	50.0%	97.0%
국방부	5	10	22	13	1	63.6%	99.5%
행정안전부	6	16	38	23	5	73.7%	98.6%
이하 생략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5.

즉, 총 1,068개 프로그램 성과지표 중 달성한 지표 수를 감사원 결산검사에서는 819개로, 국가결산보고서에는 821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성과목표 달성 개수(821개)와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의 성과목표 달성 개수(819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차이 발생 원인은 감사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해양수산부의 목표 달성 개수를 사실과 다르게 1개씩 미달성된 것으로 잘못 표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33)]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보고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에서 헌법기관 제외 필요

국회의 ‘입법’,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등의 업무의 특성상 이를 성과관리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으며, 국회 및 대법원 등의 헌법기관은 삼권분립[34)]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성과관리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연도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이며, 2024년도 기준 60개[35)] 중앙관서가 이에 해당함.[36)]

---

33)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부처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임.

34)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권’과 ‘사법권’에는 인적행정의 독립뿐만 아니라 물적행정의 독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의 삼권분립 원칙에 보다 부합함.

35) 61개 예산 소관 중 국가정보원 제외, 국가교육위원회(2022. 9월 출범)와 재외동포청(2023. 6월 출범) 포함

36)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성과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37]

정부는 4대 재정개혁의 하나로 미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특히,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행정부의 관리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기관까지 포함하였음.

그러나 국회의 '입법',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등의 업무의 특성상 성과관리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으며, 국회 및 대법원 등의 헌법기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성과관리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제도에서는 정부가 아닌 국회·대법원 및 중앙선관위 등의 헌법기관은 성과관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기관명	계
장관급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25개
차관급 기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1개

주)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3.3.

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7)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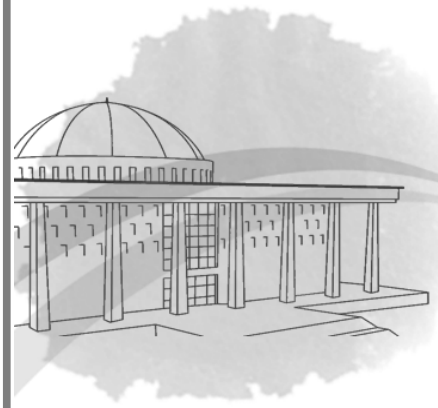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참고로 미국의 성과관리 대상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연방 행정부, 정부기업 및 독립시설로 한정하고, CIA・감사원・우편국 및 우편규제위원회는 제외되며, 입법부 및 사법부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성과관리에 따르지 않음. 예산서의 제출기한도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와 다르며, 대통령은 양 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연방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38]

38) 미국 연방법은 “연방의「중앙관서」에 입법부와 사법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U.S.Code 31. 제1101조)

Ⅲ. 유형별 결산 검토



1. 국가 R&D 사업

가. 개 요

(1) 현 황

2023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31조 739억원은 정부총지출(638조 7,276억원)의 4.9%에 해당함. 2018년 이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R&D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8.1%과 동일함.

[정부 총지출 대비 R&D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정부총지출	4,288,339	4,695,752	5,122,504	5,579,872	6,076,633	6,387,276	8.1
R&D 분야	197,483	208,532	242,558	275,072	295,132	310,739	8.1
비율	4.6	4.4	4.7	4.9	4.9	4.9	-

주) 추경이 편성된 해의 경우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 R&D 사업 결산 결과 예산현액 31조 1,799억원 중 30조 9,336억원이 집행(집행률 99.2%)되었음.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5%보다 0.7%p 높은 것임.

[2023년도 국가 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2022		2023			집행률 (C/B)	증감	
예산	결산(A)	본예산	예산현액(B)	집행액(C)		C-A	(C-A)/A
297,770	293,421	310,739	311,799	309,336	99.2	15,915	5.4

자료: 기획재정부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2023년 국가 R&D 사업이 편성된 총 40개의 부·처·청·위원회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 규모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9조 5,837억 1,6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5조 4,326억 5,300만원), 방위사업청(5조 1,055억 9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3년 정부 R&D 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과기부	일반회계	7,383,885	7,383,885	7,321,323	99.2	7,030,320
	에특회계	445,759	445,759	437,121	98.1	387,195
	소특회계	414,582	414,582	414,089	99.9	337,142
	균특회계	336,692	336,692	336,692	100.0	280,309
	우특회계	3,158	3,315	3,000	90.5	435
	과진기금	62,954	62,954	62,954	100.0	56,345
	원자력기금	207,752	207,752	207,752	100.0	171,040
	방발기금	411,770	411,770	411,770	100.0	318,784
	정진기금	389,249	389,249	389,015	99.9	319,433
	소계	9,655,801	9,655,958	9,583,716	99.0	8,901,003
산업부	일반회계	2,311,215	2,312,150	2,311,319	100.0	2,014,196
	소특회계	1,689,414	1,689,414	1,689,414	100.0	1,731,998
	에특회계	399,156	399,499	398,757	99.8	358,928
	균특회계	345,998	345,998	345,998	100.0	148,082
	전력기금	627,045	627,045	627,045	100.0	537,752
	방폐기금	26,598	26,598	26,598	100.0	34,567
	산촉기금	33,522	33,522	33,522	100.0	16,500
	소계	5,432,948	5,434,226	5,432,653	99.9	4,842,023
방사청	일반회계	5,082,262	5,134,411	5,105,509	99.4	4,634,221
	소계	5,082,262	5,134,411	5,105,509	99.4	4,634,221
교육부	일반회계	4,835	5,222	5,069	97.1	60
	고특회계	2,872,416	2,872,252	2,842,258	99.0	814,822
	소계	2,877,251	2,877,474	2,847,327	99.0	814,882
중기부	일반회계	1,308,504	1,308,504	1,308,504	100.0	1,204,316
	소특회계	188,298	188,298	188,298	100.0	69,077
	균특회계	258,954	258,954	258,954	100.0	118,628
	중진기금	10,155	10,155	10,129	99.7	-
	소진기금	4,145	4,145	4,145	100.0	1,199
	소계	1,770,056	1,770,056	1,770,030	99.9	1,393,220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농진청	일반회계	866,688	870,001	852,209	98.0	635,003
	농특회계	17,298	17,298	17,298	100.0	1,500
	균특회계	18,200	18,200	18,186	99.9	8,248
	소계	902,186	905,499	887,693	98.0	644,751
해수부	일반회계	717,413	723,740	710,389	98.2	598,113
	농특회계	59,217	59,827	59,591	99.6	36,541
	교특회계	103,634	103,634	103,634	100.0	95,819
	균특회계	2,135	2,135	2,135	100.0	227
	소계	882,399	889,336	875,749	98.5	730,700
복지부	일반회계	713,536	712,857	711,020	99.7	824,957
	책특회계	14,108	14,559	13,583	93.3	11,186
	건강기금	27,889	27,889	27,889	100.0	6,667
	소계	755,533	755,305	752,492	99.6	842,810
국토부	일반회계	343,646	344,097	343,487	99.8	250,813
	교특회계	200,617	202,101	197,191	97.6	176,587
	균특회계	12,800	12,800	12,800	100.0	5,000
	소계	557,063	558,998	553,478	99.0	432,400
국조실	일반회계	544,774	544,774	528,803	97.1	524,561
	에특회계	11,930	11,930	11,501	96.4	11,631
	소계	556,704	556,704	540,304	97.1	536,192
환경부	일반회계	3,211	3,211	3,211	100.0	-
	환특회계	388,207	392,966	387,790	98.7	280,468
	소계	391,418	396,177	391,001	98.7	280,468
농림부	일반회계	46,344	55,135	46,338	84.0	40,664
	농특회계	231,514	232,110	231,767	99.9	167,632
	소계	277,858	287,245	278,105	96.8	208,296
산림청	일반회계	144,718	152,380	144,642	94.9	120,986
	농특회계	12,669	12,669	12,669	100.0	4,749
	소계	157,387	165,049	157,311	95.3	125,735
식약처	일반회계	140,483	142,510	136,583	95.8	145,229
	소계	140,483	142,510	136,583	95.8	145,229
기상청	일반회계	122,371	122,532	119,190	97.3	101,736
	소계	122,371	122,532	119,190	97.3	101,736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원안위	일반회계	97,934	100,439	98,501	98.1	86,307
	소계	97,934	100,439	98,501	98.1	86,307
문체부	일반회계	109,785	110,204	109,517	99.4	95,951
	관광기금	6,650	6,650	6,650	100.0	1,160
	체육기금	18,922	18,922	18,922	100.0	2,940
	소계	135,357	135,776	135,089	99.5	100,051
행안부	일반회계	116,981	117,093	115,568	98.7	95,934
	균특회계	9,260	9,260	9,260	100.0	8,020
	소계	126,241	126,353	124,828	98.8	103,954
질병청	일반회계	200,651	203,904	195,763	96.0	141,222
	책특회계	159	159	137	86.2	157
	소계	200,810	204,063	195,900	96.0	141,379
국방부	일반회계	70,040	70,060	69,563	99.3	60,765
	소계	70,040	70,060	69,563	99.3	60,765
특허청	책특회계	64,806	64,806	64,705	99.8	62,193
	소계	64,806	64,806	64,705	99.8	62,193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31,512	31,512	30,593	97.1	28,852
	문보기금	36,252	36,252	35,279	97.3	35,315
	소계	67,764	67,764	65,872	97.2	64,167
경찰청	일반회계	67,418	67,418	67,418	100.0	56,691
	소계	67,418	67,418	67,418	100.0	56,691
해경청	일반회계	52,156	52,156	52,125	99.9	41,194
	소계	52,156	52,156	52,125	99.9	41,194
소방청	일반회계	26,280	26,280	26,120	99.4	22,182
	소계	26,280	26,280	26,120	99.4	22,182
관세청	일반회계	4,584	4,584	4,584	100.0	3,600
	소계	4,584	4,584	4,584	100.0	3,600
기재부	일반회계	2,424	2,612	2,107	80.7	2,417
	기후기금	579,328	579,328	579,029	99.9	430,641
	소계	581,752	581,940	581,136	99.9	433,058
법무부	일반회계	2,717	2,717	2,640	97.2	2,677
	소계	2,717	2,717	2,640	97.2	2,677
고용부	일반회계	813	819	799	97.6	415
	소계	813	819	799	97.6	415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새만금청	일반회계	836	836	796	95.2	568
	소계	836	836	796	95.2	568
인혁처	일반회계	596	596	561	94.1	-
	소계	596	596	561	94.1	-
행복청	특별회계	394	522	470	90.0	197
	소계	394	522	470	90.0	197
통일부	일반회계	371	371	292	78.7	-
	소계	371	371	292	78.7	-
공정위	일반회계	363	363	359	98.9	349
	소계	363	363	359	98.9	349
외교부	일반회계	445	476	401	84.2	356
	소계	445	476	401	84.2	356
여가부	일반회계	258	258	234	90.7	132
	소계	258	258	234	90.7	132
법제처	일반회계	74	74	74	100	68
	소계	74	74	74	100	68
개보위	일반회계	7,495	7,495	7,495	100.0	7,111
	소계	7,495	7,495	7,495	100.0	7,111
조달청	조특회계	1,716	1,716	1,532	89.3	1,816
	소계	1,716	1,716	1,532	89.3	1,816
대통령 경호처	일반회계	1,000	1,000	1,000	100.0	5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500
총계		31,073,941	31,179,858	30,933,637	99.2	26,266,159

주) 각 부처 제출자료 및 d-Brain 자료를 재구성

(2) 주요 특징

① 주요/일반 R&D 현황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됨. 주요 R&D 사업은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R&D,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③ 기초과학 분야 R&D, ④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 ⑤ 다부처 R&D 등으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됨.[1)]

주요 R&D에 속하는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일반 R&D 사업은 주요 R&D 사업이 아닌 R&D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안을 편성함.

[2020 ~ 2023년 주요 R&D 및 일반 R&D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감(B-A)	증감률
예산 (비중)	주요 R&D	197,314 (81.5)	224,894 (82.1)	242,363 (81.4)	249,392 (80.2)	7,029	2.9
	일반 R&D	44,881 (18.5)	49,112 (17.9)	55,407 (18.6)	61,386 (19.8)	5,979	10.8
	계	242,195	274,005	297,770	310,778	13,008	4.4

주 1) 본예산 기준
2) 2020년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경비가 일반 R&D에서 주요 R&D로 변경
3) 2022년도부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비목신설하여 기관·회계별로 통합편성 함에 따라 일반 R&D로 재원 이관됨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

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2023년 주요 R&D 예산은 24조 9,392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80.2%이며 이는 전년 대비 2.9% 증액된 규모임. 일반 R&D 예산은 6조 1,386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19.8%로, 이는 전년 대비 10.8% 증액된 규모임.

②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2023년 국가 R&D 예산을 9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비중이 높은 분야는 ICT・SW(13.6%), 생명・보건의료(12.3%), 기계・제조(9.5%), 에너지・자원(8.3%), 소재・나노(7.7%)의 순으로 나타났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소재・나노(35.7%), 환경・기상(19.7%), 에너지・자원(18.3%), ICT・SW(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농림수산・식품(△8.6%), 건설・교통(△2.4%)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2~2023년 기술분야별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증감 (C=B-A)	증가율 (C/A)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ICT・SW	36,678	13.0	42,166	13.6	3,488	9.0
생명・보건의료	36,880	12.4	38,117	12.3	1,236	3.4
기계・제조	29,317	9.8	29,515	9.5	197	0.7
에너지・자원	21,784	7.3	25.779	8.3	3,995	18.3
소재・나노	17,709	5.9	24,038	7.7	6,329	35.7
우주항공・해양	18,276	6.1	19,411	6.2	1,134	6.2
농림수산・식품	16,295	5.5	14,900	4.8	△1,395	△8.6
건설・교통	9,331	3.1	9,106	2.9	△225	△2.4
환경・기상	8,139	2.7	9,740	3.1	1,601	19.7
기타	101,359	34.0	98,007	31.5	△3,352	△3.3
합계	297,770	100.0	310,778	100.0	13,008	4.4

주 1) 본예산 기준
2) 기타에는 고급인력양성, 정보시험서비스, 연구장비 구축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③ 신규사업 및 신규과제 현황

2023년 국가 R&D 신규사업은 23개 부·처·청의 209개 세부사업에 7,755억 8,300만원으로, 2022년에 비해 세부 사업수는 82개, 총액은 1조 1,086억 1,400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2020~2022년 코로나19 등에 대응하여 신규 R&D사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계속사업에 대한 R&D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었고, 그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신규 주요 R&D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소관부처	세부사업	총액	비고 (주요 R&D)
2018년	16	73	221,958	과기정통부 415억원, 산업부 396억원
2019년	18	187	772,061	산업부 2,345억원, 과기정통부 1,630억원
2020년	18	211	1,510,247	산업부 4,179억원, 과기정통부 3,724억원
2021년	22	253	1,689,624	과기정통부 4,138억원, 산업부 3,570억원
2022년	22	291	1,884,197	과기정통부 6,078억원, 산업부 3,313억원
2023년	23	209	775,583	과기정통부 2,407억원, 산업부 1,954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단위로 살펴보면, 2023년 신규과제 수는 26,037건으로 전년 대비 4,540건(△14.8%) 감소하였음. 한편 신규과제의 연구비는 6조 4,9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459억원(△26.5%) 감소하였음.[2)]

[신규 R&D 과제 및 연구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	
							B-A	(B-A)/A
과제 수	신규	27,606	34,458	30,900	30,577	26,037	△4,540	△14.8
	계속	42,721	39,043	43,845	45,475	45,737	262	0.6
연구비	신규	43,958	69,169	70,637	88,385	64,926	△23,459	△26.5
	계속	162,295	169,634	195,153	198,396	234,096	35,700	18.0

주 1) 2020년은 제4회 추경 기준, 2021년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은 제2회 추경 기준
2) 2024년 9월 국과심 운영위 심의 시까지 일부 수치는 수정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 및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단위는 크게 사업·과제로 나눌 수 있음. 과제는 실제 연구 수행의 단위이며, 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과제들의 모임임.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2022년)[3]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양적 성과를 살펴보면, 총 47,101건의 SCIE급 논문,[4] 18,126건의 국내 특허 등록, 1,938건의 해외 특허 등록, 7,876건의 기술료, 32,068건의 사업화 성과가 창출되었음.

[2018~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

(단위: 건, %)

연도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2018년		41,143	19,200	2,151	9,029	26,171
2019년		41,919	20,210	2,347	8,858	28,800
2020년		44,563	21,330	2,612	9,974	32,910
2021년		48,381	21,566	1,990	8,482	25,403
2022년		47,101	18,126	1,938	7,876	32,068
증가율	전년대비	△2.6	△16.0	△2.6	1.6	26.2
	연평균	3.4	△1.4	△2.6	△2.0	5.2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연구개발 소관부처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SCIE 논문은 기초연구 비중이 높은 과기정통부(56.2%), 교육부(26.1%)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술료와 사업화 건수는 상대적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산업부(기술료 28.9%), 중기부(사업화 46.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처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부처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과기부	26,479	56.2	6,419	35.4	812	41.9	2,242	28.5	1,891	5.9
교육부	12,293	26.1	1,314	7.2	463	23.9	1,455	18.5	180	0.6
산업부	2,520	5.3	3,067	16.9	331	17.1	2,276	28.9	8,917	27.8
복지부	1,471	3.1	295	1.6	50	2.6	55	0.7	67	0.2
농진청	795	1.7	342	1.9	1	0.1	719	9.1	1,765	5.5
중기부	61	0.1	1,328	7.3	99	5.1	327	4.2	15,006	46.8
기타	3,482	7.4	5,361	29.6	182	9.4	802	10.2	4,242	13.2
합계	47,101	100.0	18,126	100.0	1,938	100.0	7,876	100.0	32,068	100.0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3)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확정은 2025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4)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란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 중 질적인 수준과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 저널을 의미함.

연구개발 단계별로 성과 창출 내역을 살펴보면, SCIE논문의 69.3%는 기초연구에서 창출되었고,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건수는 3개 단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술료 건수의 51.6%와 사업화 건수의 83.1%는 개발연구에서 발생하였음.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단계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단계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기초	30,395	69.3	5,172	31.4	521	30.3	1,311	19.4	727	2.5
응용	8,343	19.0	3,967	24.1	571	33.2	1,966	29.1	4,198	14.4
개발	5,134	11.7	7,317	44.5	626	36.4	3,488	51.6	24,219	83.1
합계	47,101	100.0	18,126	100.0	1,938	100.0	7,876	100.0	32,068	100.0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기관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대학은 SCIE논문의 78.1%, 국내 특허 등록의 36.9%, 해외 특허 등록의 40.7%를 창출하였음. 출연연구기관은 SCIE논문의 13.4%, 국내 특허 등록의 21.7%, 해외 특허 등록의 26.5%를 차지하였음.

또한 기술료 건수는 대학에서 32.3%, 중소기업에서 32.1%가 발생하였고, 사업화 건수는 국공립연과 기타가 26.5%로 가장 많고,[5] 출연연이 22.0%로 그 다음 많았음.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기관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유형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국공립연	806	1.7	468	2.6	24	1.2	710	9.0	8,489	26.5
출연연	6,311	13.4	3,935	21.7	514	26.5	1,470	18.7	7,061	22.0
대학	36,786	78.1	6,691	36.9	789	40.7	2,535	32.3	1,510	4.7
대기업	208	0.4	410	2.3	29	1.5	112	1.4	365	1.1
중견기업	246	0.5	687	3.8	119	6.1	288	3.7	5,083	15.9
중소기업	1,437	3.1	4,992	27.5	418	21.6	2,525	32.1	1,047	3.3
기타	1,306	2.8	943	5.2	45	2.3	219	2.8	8,513	26.5
합계	47,101	100.0	18,126	100.0	1,938	100.0	7,876	100.0	32,068	100.0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5) 기타에는 정부부처, 연구조합, 비영리법인,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이 포함됨.

나. 검토의견

(1) R&D 기획·관리 및 평가 관리체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공모·연구개발기관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과제의 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수행 시 연구과제의 발굴(기획), 과제수행기관 선정평가·연차평가·종료평가의 실시(평가), 기타 사업관리(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인 기획평가관리비를 교부받음.

2022년도 예산부터는 개별 사업 내에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별로 기획평가관리비(이하 '기평비')라는 세부사업을 두어 해당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2022년부터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 구조(한국연구재단의 사례)]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4">2021년</th><th></th><th colspan="4">2022년</th></tr>
<tr><th>회계명</th><th>부처</th><th>기평비명</th><th>예산</th><th></th><th>회계명</th><th>부처</th><th>세부사업명</th><th>예산</th></tr>
<tr><td>원자력기금</td><td>과기부</td><td>A사업 기평비</td><td rowspan="5">40,042</td><td rowspan="2">→</td><td>원자력기금</td><td rowspan="2">한국연구재단
(과기부)</td><td>기획평가관리비</td><td rowspan="2">54,817</td></tr>
<tr><td rowspan="4">일반회계</td><td rowspan="4">과기부</td><td>B사업 기평비</td><td rowspan="2">일반회계</td><td rowspan="2">기획평가관리비</td></tr>
<tr><td>C사업 기평비</td><td rowspan="3">→</td></tr>
<tr><td>D사업 기평비</td></tr>
<tr><td>⋮</td></tr>
<tr><td rowspan="3">교육부 등</td><td>E사업 기평비</td><td rowspan="3">14,071</td></tr>
<tr><td>F사업 기평비</td></tr>
<tr><td>⋮</td></tr>
<tr><td colspan="4">계</td><td>54,113</td></tr>
</table>

자료 : 한국연구재단

그러나 이러한 기평비 구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비용이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외에도 특정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과제 수가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면밀한 관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과제관리 업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 및 제재처분을 위한 과제평가단 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보다 철저한 과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①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주요업무인 과제평가 및 관리 업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한 사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 중 4,000만원을 과학사업화진흥원에 재교부하고 과제평가 및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였는데, 선정과제 관리 및 평가 등 핵심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조달청이 제출한 한국조달연구원의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 중 5,012만원을 경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중 4,000만원이 타 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평가관리, 선정과제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되었음.

[2023년 한국조달연구원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내역]

(단위: 만원)

구분			금액
인건비(A)	책임연구원 1인		252
	연구원 4인		1,158
경비(B)	**운영평가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4,000**
	평가위원 수당		**1,012**
출장비(C)			27
기타비용(D)			22
순원가(E=A+B+C+D)			6,534
간접비			66
합계			6,600

자료: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이 R&D 과제 전문기관으로 2023년 3월 지정된 이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체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의 60.6% 수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타 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한국조달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서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단 운영비와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의 중복지원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로 관리하는 3개의 출연사업 중 2개 사업은 사업단형 과제로 구성하여 사업단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기획평가관리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의 2023년 관리 사업은 총 3개 사업이나, 그 중 신변종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사업과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 사업은 하위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 사업단 형태로 과제가 구성되어 있음.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으로 관리하는 연구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도 집행액	진흥원 기평비	별도 사업단 운영비 집행액
합계		14,558	932	481
출연사업	신변종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사업 (신변종 mRNA 백신 사업단)	6,000		300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사업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재단	1,300		181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7,258		-

자료: 질병관리청

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단 뿐만 아니라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의 전체 기획·평가·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단으로 구성된 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는 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예산의 중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③ R&D 문제과제 판정 후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지연으로 제재처분이 지연된 사례

폐업중단, 자의중단된 연구과제는 시일이 도과할수록 연구자의 소재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부정사용액 및 제재부가금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중단일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비의 정산 및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R&D 과제 중 자의중단·보고서 미제출 또는 폐업으로 인한 중단 등 사유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과제(이하 ‘문제과제’)는 202건이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는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고 제재처분 및 환수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6)]

그러나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최초 제재처분평가단 개최일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① 최초 제재처분평가단 개최일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가 38건이고, ②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한 경우 중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가 12건으로 총 50건의 연구과제가 제재처분평가단 개최기한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의 제재처분평가단개최일까지의 소요기간]

(단위: 건)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	0일	1~91일	92~182일	183일~1년	1년 이상	소계
55	71	12	26	29	9	202

주 1)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최초 제재처분평가단개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2) 2024년 4월 말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의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 기간]

(단위: 건)

0~91일	92~182일	183일~1년	1년 이상	소계
0	43	10	2	55

주 1)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 중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 과제의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2) 2024년 4월 말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 평가단이 신속히 개최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처분이 지연되어 연구자 폐업 등으로 인한 제재부가금 환수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6)「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4) 제재처분평가단(p.11)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령 제29조・제29조의2의 제재처분 및 환수 등과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극히 불량 등)과제의 제재처분 및 환수 심의
㉯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인 경우,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처분 및 환수 심의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처분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수사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 또는 판결 확정일을 문제과제 판정일로 본다.)

④ 한국연구재단의 정원 1인당 기획·관리·평가 과제 수 과다

한국연구재단은 다른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비해 정원 1인당 관리과제 수가 많은 편이므로, 개별 과제에 대한 기획・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개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와 연구수행기관 사이에서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하고 평가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임.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정원 1인당 관리과제 수는 2022년 86.3개, 2023년 89개, 2024년 85.1개로, R&D 예산 상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기타 전문기관에 비해 약 2~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됨.

[연구관리 전문기관 정원 1인당 R&D 과제 관리 현황]

(단위: 명, 개)

전문기관명	구분	2022	2023	202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정원(A)	399	401	401
	관리과제 수(B)	34,446	35,675	34,118
	1인당 과제수(B/A)	**86.3**	**89.0**	**85.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원(A)	297	290	291
	관리과제 수(B)	10,595	10,242	10,561
	1인당 과제수(B/A)	**35.7**	**35.3**	**36.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원(A)	182	179	172
	관리과제 수(B)	3,628	3,710	4,466
	1인당 과제수(B/A)	**19.9**	**20.7**	**2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정원(A)	103	103	103
	관리과제 수(B)	2,023	2,198	1,852
	1인당 과제수(B/A)	**20**	**21**	**1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정원(A)	48	42	42
	관리과제 수(B)	360	353	281
	1인당 과제수(B/A)	**7.5**	**8.4**	**6.7**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처럼 1인당 관리하는 과제 수가 80개를 초과하여 과다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개별 과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과제에 대한 기획・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이 2023년 연구개발과제에 미친 영향 검토

(가) 개요

2024년 R&D 예산편성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 나눠먹기식 관행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를 제거하고 건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R&D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024년 국가 R&D 사업의 예산액은 26조 2,662억원으로 2023년 예산액 31조 1,000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7)]

[2023~2024년 국가 R&D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예산액	2024년 정부안	2024년 예산액
금액	31.1	25.9	26.3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d-Brain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다수의 R&D 사업이 계속과제로서 지속적인 연구수행에 따른 성과창출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R&D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어 2023년 초에 설정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에 배정되어야 하는 예산액보다 매우 적은 금액이 개별 R&D 사업에 배정되면서, ① 2024년에도 진행될 계속사업이 급하게 종료되고 수혜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되거나, ② 2023년 연구비 예산을 이월시켜 2024년 부족한 연구비 예산을 보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음.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신규과제로서 R&D 구조조정 시점에는 그 성과를 알 수 없었는데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다년도 계속과제 및 장비도입 등 지속적인 재정투입 이후에 성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R&D 연구비 구조조정으로 2024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 투입된 연구비가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향후 R&D 지출구조조정 및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개별 과제의 지속성과 연구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음.

7)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2조 1,000억원을 포함한 실질 R&D 예산액은 28조 6,000억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R&D)'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R&D)'** 사업은 타 분야의 선도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여 고질적인 난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405억원 및 2024년 38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 예산액이 전액 미반영되었음.

[2024년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R&D) 사업 예산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2023년 초 기준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예산계획	예산액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R&D)	시장창출형	450	450	2,250	미반영
	현장문제해결형	300	300	1,500	미반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2023년 신규 6개월 연구과제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24년 R&D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는 시점인 2023년 7~8월에는 연구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월에 선정된 기획과제의 창의성과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24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함.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사업은 2023년 초 기준 중기재정계획 상 2024년 예산은 46억원이나 실제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로 인하여 '신규수요 R&BD' 내역사업의 경우,[8] 2024년에도 신규 19개 과제가 중기재정계획상 계획되어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고, 2023년 추진된 12개 신규과제 및 4개 계속과제는 과제당 단가가 2023년에 비해 축소되고 이 중 4개 과제만 진행되며, 그 또한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임.

8) R&BD란 사업화연계기술개발((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의 약자로 비즈니스 전략에 초점을 맞춘 수익창출형 R&D를 의미함.

[2024년 예산의 계획 대비 축소로 인한 사업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계획액	2023년 초 기준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예산계획	실제 2024년 예산액
2,672	**4,600**	**336**
-	<내역 : 신규수요R&BD> - (신규, 1단계) **10개**×143백만원×6/12개월=715백만원 - (신규, 2단계) **5개**×420백만원×3/12개월=525백만원 <내역 : 기존성과R&BD> - (신규) **4개**×420백만원×12/12개월=1,680백만원	-
<내역 : 신규수요R&BD> ① (신규, 1단계) BM개발 및 검증 : 572백만원 (**8개**×**143백만원**×6/12개월) ② (신규, 2단계) 기술개발·사업화 : 420백만원 (**4개**×**420백만원**×3/12개월) ③ (계속) 1,680백만원 (**4개**×**420백만원**×12/12개월)	<내역 : 신규수요R&BD> ① (계속) 4개×420백만원×12/12개월=1,680백만원	<내역 : 신규수요R&BD> ① **(종료)** 4개 과제 × **84백만원** × 12/12개월 = 336백만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① 사업화 가능성 검증, ② 최적화 개발 및 제작, ③ 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 경쟁방식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과 그에 상응한 계획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하고 연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협약변경을 진행하였다는 입장임.

③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R&D)'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R&D)'** 사업 중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 내역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거점으로 산단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9] 동 내역사업에 포함된 이하 6개 과제는 2023~2024년까지 2년간

9)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이란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 산업지구로 지정해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임.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이 85.0% 삭감되어 계속 과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시작연도인 2023년에 종료되었음.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R&D) 사업 내 2024년 예산삭감으로 연구가 중단된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교부액 (A)	매칭 (B)	교부현액 (C=A+B)	최종집행액 (D)	최종집행률 (D/C)
IoT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주택 재난, 생활안전 감시와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 개발	성창주식회사	333	167	500	426	83.4
지능형 전기차 충전 시설 극초기 화재대응 안전관리기술 개발	한성인더스트리(주)	333	155	488	386	80.1
차량용 SoC 및 독립형 LED Driver IC 기반 디지털 감성조명 솔루션 개발	(주)엘라이트	299	447	746	308	64.7
전기자동차 공력제어용 3세대급 액티브에어플랩 경량화 기술 개발	(주)한중엔시에스	700	12	712	533	81.3
AIoT 기반 침수 위험지역 피해 저감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통보 시스템 기술개발	(주)레이다앤스페이스	215	152	367	361	97.9
반도체용 캐비티 글래스 패키징 기판개발	심텍	333	160	493	458	90.9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의 하위과제인 '반도체공동연구소 중점허브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고도화 및 기능확대' 과제는 2023~2028년간 총 연구개발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대학교 산하 반도체공동연구소의 8대 공정 CORE 장비를 신규 구축하는 것으로, 교부액 60억원을 포함한 2023년 교부현액 60억 8,700만원 중 1억 3,6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2023년 반도체공동연구소 중점허브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고도화 및 기능확대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수행기간	연구수행기관명	교부액 (국비)	교부현액 (A)	최종집행액 (B)	최종집행률 (B/A)
23.5.1~23.12.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6,000	6,087	136	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최초 동 과제 추진 당시에는 C사의 신규 KrF 스캐너 장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2024년도 R&D 연구비 조정으로 인하여 장비구축 금액이 부족해지자, 장비를 변경하여 재추진함에 따라 2023년 최종집행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둘째, R&D 예산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2024년 연구비가 부족할 것이 우려되어 2023년에 배정된 연구비를 이월시켜 최종집행률이 부진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2023년 연구 수행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중 2023년 9월 신규 협약 과제로 추진된 A 과제의 경우, 2차년도인 2024년도 정부 R&D 예산 감액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최초 계획 당시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음.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50% 감액됨에 따라 2차년도인 2024년도 인건비 예산을 당초 2억 1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음. 이로 인해 신규 연구 인력에 대한 연구비 지급 차질이 우려되자 동 과제 수행을 위한 2023년도 신규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 자체 부담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2023년 신규 추진된 과제의 집행부진 사례 중 차년도 과제비 부족으로 인한 과제 지연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과제 특성	2023년 관련 사항					집행부진 발생 사유
		2023년 연구비	국비 지원	국비 지원외	최종 집행 액	집행 률	
A과제	신규 (2023. 9월 협약)	306	300	6	40	13.1	2024년도 사업비 감액으로 계속비 이월 등 예산 집행 효율화 및 협약 변경(2024년도(2차년도)에 실질적인 개발에 집중하는 예산 집행 계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2023년도 국비 지원 과제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연구비 3억 600만원 중 4,000만원만 2023년 말 기준 최종집행되었음.[10]

② 국토교통부의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R&D)' 사업

국토교통부의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은 비전통오일 생산 및 이송 플랜트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총 6개 연구개발과제 중 '오일 생산플랜트의 패키지화 설계 및 통합실증 기술개발' 과제는 2024년 예산삭감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2023년 연구비 중 일부를 이월하여 최종집행률이 73.7%로 일부 연구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진함.

[2024년 예산삭감으로 연구비를 이월한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A)	매칭 (B)	교부현액 (C=A+B)	최종집행 (D)	최종집행률 (D/C)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100	-	1,100	1,081	98.3
비전통오일 장거리 수송용 부분개질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	3,566	229	3,795	3,088	81.4
비전통오일 친환경-고수율 회수 및 순환시스템 기술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3개 기관	4,968	573	5,541	4,910	88.6
생산수 계통의 오일제거 및 수처리 복합공정 설비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	2,016	215	2,231	2,004	89.8
오일 생산플랜트의 패키지화 설계 및 통합실증 기술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1개 기관**	**7,560**	**673**	**8,233**	**6,067**	**73.7**
오일 함유 다상 혼합물질 수집 및 분리설비 기술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기관	2,232	563	2,795	2,596	92.9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③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 사업(다부처 사업)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 사업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방역 전주기 단계별 방역 검증기반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부처 R&D 사업임.

동 사업은 협약체결이 2개월 지연되어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불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2024년 연구비 삭감으로 이를 보완하고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현액 74억 7,700만원 중 27억 3,5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11]

---

10)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년도 미집행 인건비(1억 6,500만원)와 함께 신규 인력 인건비로 연구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2024년도 정부 예산 확정 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하고, 2차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감액 및 이에 따른 연구개발 정량 목표 등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11) 이에 대하여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 사업단은 협약은 2개월 지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입장임.

[2023년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행기관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 사업단)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매칭 (C)	교부현액 (D=B+C)	최종집행액 (E)	이월액	최종집행률 (E/D)
복지부	1,600	1,600	1,600	1,600	1,600	62	1,662	1,054	608	63.4
질병청	1,300	1,300	1,300	1,300	1,300	50	1,350	856	494	63.4
산업부	700	700	700	700	700	27	727	461	266	63.4
환경부	700	700	700	700	700	27	727	461	266	63.4
과기부	1,000	1,000	1,000	1,000	1,000	38	1,038	659	379	63.4
농림부	500	500	500	500	500	19	519	329	190	63.4
행안부	700	700	700	700	700	27	727	461	266	63.4
식약처	700	700	700	700	700	27	727	461	266	63.4
계	7,200	7,200	7,200	7,200	7,200	277	7,477	4,742	2,735	63.4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부처 및 연구수행기관은 차년도 연구비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연구비를 차년도로 이월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연구개발출연금은 원활한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다년도 연구 단계 내에서 자유로운 이월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계획된 바와 달리 연구비가 연내 소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연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상술한 사례 외에도 2024년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3년 연구비가 차년도로 이월된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R&D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연구개발 종료과제의 연구비의 정산

(가) 연구비 정산제도의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함.[13]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14][15]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16]

---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2023년 말에 종료된 R&D 일부 과제들이 2024년 6월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정산이 완료된 과제들 중에서도 정산 회수금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음. 또한 정산완료 기한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정산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2020~2023년 각 연도 말(12월 31일) 종료된 R&D 과제 중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806개임.

[2020~2023년 종료된 R&D 과제 중 미정산 과제 수]

(단위: 개)

과제 종료연도	미정산 과제 수		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년	10	10	20
2021년	8	12	20
2022년	38	32	70
2023년	571	1,125	1,696
계	627	1,179	1,806

주) 2024년 5월 1일 기준임.
자료 :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재구성

또한 정산이 완료되어 국고반납액이 결정된 R&D 과제 중에서도 2020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600만원, 2021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3억 4,800만원, 2022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21억 5,300만원, 2023년 종료과제 정산금 중 17억 2,500만원이 아직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음.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정산금 미반납 과제의 미반납금액]

(단위: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미반납 금액		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년	-	6	6

16)「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미반납 금액		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1년	93	255	348
2022년	132	2,021	2,153
2023년	1,454	271	1,725
계	1,679	2,553	4,231

주) 2024년 5월 1일 기준임.
자료 :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산과 관련하여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R&D 종료과제의 정산기한에 대한 범부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구현장의 정산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기한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83조제3항에 따라 정산 완료 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 개발(R&D)' 등 일부 R&D 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 개발(R&D)'** 등 9개 R&D 세부사업에서 11개 과제는 정산이 2022년 또는 2023년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아직 국고에 회수금이 반납되지 못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3항에 따른 정산금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일부 R&D 사업 정산 및 국고반납 현황]

(단위: 원)

세부사업명	과제명	과제 종료연도	정산확정 일자	국고 미반납금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 개발(R&D)	해양수치모델링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해양예측 정확도 향상 연구	2023	2023.12.27.	45,925,489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2단계)	2022	2023.6.27.	184,713,972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2톤급 어선용 친환경 250HP급 LPG	2023	2023.12.18.	4,386,347

(단위: 원)

세부사업명	과제명	과제 종료연도	정산확정 일자	국고 미반납금
어선 개발 연구(R&D)	선내기 추진 시스템 개발			
해양 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R&D)	제주산 톳을 이용한 헤어제품용 화장품원료 개발	2023	2023.5.15.	2,945,716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남극 크릴의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효소처리 크릴오일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사업화	2023	2023.6.15.	297,515,695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R&D)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2022	2022.4.20.	187,277,103
S-100 기반 국가 해양 GIS 핵심기술의 국산화 개발(R&D)	S-100 기반 국가 해양 GIS 핵심기술의 국산화 개발연구	2022	2023.10.10.	179,348,050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촉진(R&D)	수중건설로봇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022	2023.6.29.	219,096,769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2022	2023.6.28.	60,953,561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사업(R&D)	해조류 건조를 위한 30HP급 수직 적층형 순환식 자동 건조 시스템 개발	2022	2022.4.18.	47,034,150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R&D)	수산물 언택트 수요반응형 초신선 스마트풀필먼트 관제시스템과 AI풀필로봇의 개발	2022	2023.5.8.	12,191,165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③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 R&D 사업의 정산금 미반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법정기한 도과 제출 사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 R&D 사업의 정산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4월 말 기준 2023년 종료과제 5,573건 중 1,472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정산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2018년도 종료과제 13억 9,700만원, 2019년도 종료과제 9억 8,200만원, 2020년도 종료과제 12억 3,500만원, 2021년도 종료과제 24억 6,300만원, 2022년도 종료과제 75억 6,300만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 완료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18년	5,408	-	5,408	13,416	12,019	1,397

(단위: 개,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 완료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19년	5,091	-	5,091	8,955	7,973	982
2020년	4,077	-	4,077	6,138	4,903	1,235
2021년	3,685	-	3,685	9,418	6,955	2,463
2022년	5,154	-	5,154	14,854	7,291	7,563
2023년	5,573	1,472	4,101	9,785	4,050	5,735

주) 2024년 4월 말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각 종료과제의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5,573개의 종료과제 중 933개 과제는 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도과하였고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도 78개의 과제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2023년 종료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내 준수 현황]

(단위: 건, %)

종료과제 수 (A)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제출기한 미준수 (B)	미제출 건수 (C)	기한 미준수율 ((B+C)/A)
5,573	4,562	933	78	18.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출연금 조기 교부 및 이월 사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여 비효율을 유발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개별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7)]

그러나 전년도 이월금조차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3년 배정된 예산액이 전액 사업수행기관에 교부되어 차년도 이월금이 더욱 증가하거나,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이 교부되어 최종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부 시설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등 이하 4개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액이 교부되어 차년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집행할 필요가 있음.

[25개 출연연 중 시설사업 집행률 60% 미만 기관의 미집행 사유]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기관명)	예 산			집행액 (B)	집행률 (B/A)	미집행액 (A-B)	예산교부 날짜 및 교부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출연연)
	전 기 이월액	2023년 예산액	계 (A)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생기연)	**2,956**	11,615	14,571	**2,185**	15.0	12,386	4월26일(1,096백만원), 6월26일(1,605백만원), 7월20일(1,478백만원), 9월26일(986백만원), 12월20일(6,450백만원)

1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09)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기관명)	예 산			집행액 (B)	집행률 (B/A)	미집행액 (A-B)	예산교부 날짜 및 교부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출연연)
	전 기 이월액	2023년 예산액	계 (A)				
민간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 (항우연)	**13,699**	4,200	17,899	**211**	1.2	17,688	1월31일(289백만원), 2월27일(69백만원), 3월28일(252백만원), 4월27일(488백만원), 6월28일(675백만원), 7월25일(87백만원), 9월27일(29백만원), 10월24일(188백만원), 11월29일(436백만원), 12월22일(1,687백만원)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구축사업 (원자력연)	**4,879**	1,000	5,879	-	0.0	5,879	11월28일(362백만원), 12월20일(638백만원)
원자력시설 폐기물 감용실험동 구축사업 (원자력연)	**12,133**	7,000	19,133	-	0.0	19,133	11월28일(2,534백만원), 12월20일(4,466백만원)

주 1) 집행액은 2023.12.31. 기준임.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민간발사체발사장구축사업은 2024.6. 기준 전년도 이월액이 전액 집행되었음.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를 재구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에서 이하 4개 과제는 최종집행률이 10.3~19.3%로 저조한데, 이들 과제는 모두 장비 도입형 R&D의 성격을 띠고 있음.

[자동차산업기술개발 내 2023년 기준 집행부진 과제]

(단위: 백만원, %)

연구과제명	2023년 결산						
	부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 연구수행 기관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A)	교부 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이월액	최종 집행률 (D/C)
와이드밴드갭소재기반차량용전력반도체제조공정기반구축	2,917	2,917	2,917	1,700	890	810	19.3
전기차충돌후배터리핵심부품안전성확보지원	1,000	1,000	1,000	900	282	618	14.9
수소상용차실차기반신뢰내구성검증기반구축	1,300	1,300	1,300	1,100	247	853	10.3

(단위: 백만원, %)

연구과제명	2023년 결산						
	부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 연구수행 기관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A)	교부 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이월액	최종 집행률 (D/C)
수소상용차부품성능 검증기반구축	1,200	1,200	1,200	1,200	393	807	16.4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장비도입 과제의 경우 입찰 및 조달, 실제 장비도입에 이르기까지의 집행절차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은 2023년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도입일정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소요를 반영하고, 또한 사업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적기에 배정·집행할 필요가 있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사업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사업의 내역사업 중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건설 및 시운전'** 은 사업착수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대행협약 체결이 지연(당초 2022년 상반기였으나 실제 2022년 12월 체결)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행 시점('23.2)을 기준으로 건설 착공은 2023년 하반기 예정이었으나, 건축 설계 변경('23.4~9)에 따라 착공 일정이 연기('24.7) 되어 2023년 교부액 8억 3,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다는 입장임.

[연구비 교부 현황 및 최종집행률]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2023년 결산										
	부처→전문기관 교부액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주관연구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공동연구기관)						
	교부날짜	금액	교부날짜	금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발생 이자	이월액	최종 집행률 (D/C)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관리	1.31 2.27 3.22 4.28 6.1	640 772.8 646.8 562.7 578.6	3.09	322	322	11	333	293	0.1	40	88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건설			**2.28**	**838**	**838**	**1,706**	**2,544**	**102**	**2**	**2,442**	**4.0**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2023년 결산										
	부처→전문기관 교부액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주관연구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공동연구기관)						
	교부날짜	금액	교부날짜	금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최종 집행액 (D)	발생 이자	이월액	최종 집행률 (D/C)
및 시운전											
초전도 자석 계통 설계 및 운영 설비 구축	6.29	799.1	3.16	252.8	2,840	2,268	5,108	3,726	117	1,382	72.9
			3.30	646.8							
			5.4	562.7							
			6.14	578.6							
			6.29	799.1							
계	-	4,000	-	4,000	4,000	3,985	7,985	4,121	119.1	3,864	51.6

주)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그러나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총 24억 3,100만원)는 기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23년 하반기 건설 착공 시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2023년 예산액 8억 3,800만원은 다소 조기에 교부된 측면이 있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동 경비는 집행되지 못하였음.

(5)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비 등록 지연 등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 필요

(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개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납부받는 업무와 연구수행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 Ezbaro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 RCMS로 나누어지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방식은 ① 연구개발기관에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일괄지급 방식과 ②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수시로 건별로 지급하는 건별지급 방식이 있음.[1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제70조 제2항제1호는 연구비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에, 연구비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9][20]

(나) 검토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통합 Ezbaro 또는 통합 RCMS에 등록하지 않고 이를 연말에 일괄하여 등록하는 과제는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어 연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내역을 규정에서 정한 법정기한 내에 적시에 등록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통합Ez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기관의 형태, ② 연구개발과제의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일괄지급・건별지급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 사업에서 RE100 전주기 공정 내역사업의 아래 6개 과제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을 집행하여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최종집행률은 80.0%를 초과하나, RCMS 시스템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2023.12.31. 기준 집행률이 실제 2024.6. 기준 최종 집행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RCMS에 연구비가 등록되지 않아 최종집행률이 저조한 과제]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교부액 (A)	교부현액 (B)	최종집행액 (C)	최종집행률 (C/B)	실제 최종집행률
광주 첨단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기술개발 및 실증	한국전기산업연구원	150	150	70	47.0	88.2
전남 여수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기술개발 및 실증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100	100	9	9.0	98.5
	㈜엘시스	300	308	162	53.0	100.0
RE100 이행을 위한 표준화 모델(기술) 개발 및 이행 수단 고도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00	300	37	12.0	99.8
	㈜에이투엠	520	533	241	45.0	97.6
	㈜데이데이	150	154	75	49.0	87.2

주 1)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2) 실제 최종집행률은 2024.6. 기준으로 재집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②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 사업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R&D)'** 사업에서 이하 12개 과제는 연구비는 집행하였으나 이를 연말에 등록함에 따라 통합 Ezbaro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집행률(B/A)과 실제 최종집행률이 많게는 60.0%p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통합Ezbaro에 연구비가 등록되지 않아 최종집행률이 저조한 과제]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교부현액 (A)	최종집행액 (B)	최종집행률 (B/A)	실제 최종집행률
응급의료 최적화 다중감염제어 기반 응급의료시설 방역강화기술 개발	국제백신연구소	125	89	71.2	100.0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교부현액 (A)	최종집행액 (B)	최종집행률 (B/A)	실제 최종집행률
감염성 바이오에어로졸 특성분석 및 센서 성능 평가	국립마산병원	102	30	29.7	97.8
Free-plan 기반형 One-day 모듈러 음압병동 개발 연구	동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325	223	68.6	94.8
원내감염확산의 다수준·다중 위험 요인 데이터와 단계별 방역 대응 표준 프로세스가 반영된 의료현장 감염병 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32	318	73.7	88.1
신종 감염병 환자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관 병상배정 시스템 개발	경북대학교병원	422	331	78.6	85.1
병실 방역을 위한 로봇장착용 살균기, 스크러버 및 살균확인 프로토콜 개발	(주)휴온스메디텍	153	61	39.7	64.2
의료환경에 적용 가능한 랜드마크 프리 주행로봇의 기술 고도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66	122	73.3	80.1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자외선(UV-C) 소독기 개발과 임상평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33	178	76.2	93.2
가변형 음압 터널 개발 검증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연구	한국광기술원	119	62	51.9	75.0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쾌적기류제어 기술기반 가변형 메디컬 음압챔버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530	404	76.2	80.0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반 감염재난 대응 의료종사자의 위험 시그널 탐색 알고리즘 개발	주식회사 인포마이닝	27	20	74.6	77.5
의료진 감염병 임상경험 확보를 위한 차세대 가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9	57	44.3	65.3

주 1)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2) 실제 최종집행률은 통합Ezbaro에 연구비 집행실적을 모두 등록한 후인 2024.6.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간 협력기반조성(R&D)'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간 협력기반조성(R&D)'** 사업에서 최종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89개인데, 그 중 27건의 과제는 통합 Ezbaro 시스템에 연구비 사용실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집행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음.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R&D) 사업의 내역사업별 최종집행률 50% 미만인 과제 사유 현황]

(단위: 개)

내역사업명	과제 수	집행부진사유		
		2024년에 연구활동 개시	상대측 연구자와 2024.2. 이후에 일정 합의	통합 Ezbaro 연구비 미등록
공동연구	54	27	-	27
인력교류	25	11	14	-
협력센터	2	2	-	-
협력활동	8	8	-	-
계	89	48	14	27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6) 기한 도과로 미납된 기술료의 철저한 징수 및 기술료 증대방안 모색 필요

(가) 개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21]

즉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연구수행기관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받아 이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당해 연구기관이 소유하고자 할 때 국가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통해 기술료 액수와 납기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

또한 기술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되고, 정액기술료는 연구과제 성공 판정 후 사업화매출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대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의 4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을 납부하는 것이고, 경상기술료는 사업화 실시로 사업화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그 산정방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름.[22]

[경상기술료 산정방식]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 × '기술기여도'(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협약 시 정함) × '요율'(대기업 0.2, 중견기업 0.1, 중소기업 0.0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21.1.1. 시행)으로 2021년 신규 R&D 과제부터는 경상기술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화 매출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기술료를 부과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변화한 기술료 제도]

구분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2021.1.1. 이후)
납부방식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정액기술료 폐지)
경상기술료	납부한도	부처별 상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납부기준	부처별 상이	상술한 경상기술료 산정방식 참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기술료는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등 주관기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당해 주관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납부받는 금액이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가 없는 기술이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료 미납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47건 기술이전계약 대상 31억 9,100만원 기술료 미수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2019~2023년 5년간 기술료 예상수입은 총 5,131억 8,500만원이나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실제 징수된 기술료 수입은 4,715억 5,200만원이고, 징수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납부되지 못한 기술료는 31억 9,100만원(47건의 기술이전 계약에서 미납액 발생)임.[23)]

[2019~2023년 5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관명	당해연도 총 기술계약건수	총 기술료 예상 수입 (A)	실제 징수된 기술료 수입 (B)	징수 기일이 미도래한 기술료수입(C)	미납액 (D=A-B-C)	기술료가 미납된 계약 건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9,557	513,185	471,552	38,442	**3,191**	47

주) 2024년 5월 중순 기준임.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2024년 5월 27일~)으로 편재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3개로 변경되었음. 그에 따라 2개 기관의 기술료 미납현황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못함.

기술료 미납의 주요 사유는 경영악화・실시기업의 경영상 이유・상용화 포기 및 기업파산 등이고, 이에 대해서는 보증 및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징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② 중소벤처기업부 : 474개 기업 대상 55억 6,600만원의 기술료 미수납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료 미납 사례를 살펴보면, 2019~2023년 5년간 474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악화 또는 유예의 사유로 총 55억 6,600만원의 기술료가 미납되었고, 12개 기업을 제외한 462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및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료가 수납될 가능성이 낮음.

[2019~2023년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료 미납 현황]

(단위: 백만원)

기업명	기술료 미납액	납부기한	미납사유	보증 및 담보여부
(주)**IND	63	2023-06-07	경영악화	X
더클**컴퍼니	60	2023-06-22	경영악화	X
메이**랩	60	2023-06-13	경영악화	X
스페**워크 주식회사	59	2022-12-30	경영악화	X
(주)**아이씨티	59	2022-12-29	경영악화	X
기타	5,265	-	경영악화, 유예	-
합계	**5,566**	-	-	-

주) 기술료 미납액이 높은 상위 5개 기업을 표시하였고, 2024년 6월 기준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③ 산업통상자원부 : 174개 기업 대상 19억 7,232만원의 기술료 미수납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료 미납 사례를 살펴보면, 2019~2023년 5년간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악화・회생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총 19억 7,232만원의 기술료가 미납되었고, 42개 기업을 제외한 132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및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료가 수납될 가능성이 낮음.

[2019~2023년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료 미납 현황]

(단위: 백만원)

기업명	기술료 미납액	납부기한	미납사유	보증 및 담보여부
㈜ ***	153	2022-06-30	경영악화	X
㈜ 한울로***	111	2019-06-27	단순 미납	X
㈜ **	77	2019-03-11	경영악화	O

(단위: 백만원)

기업명	기술료 미납액	납부기한	미납사유	보증 및 담보여부
㈜ 성***	75	2023-10-02	경영악화	X
이에***	66	2019-01-25	단순 미납	X
기타	1,490	-	경영악화, 회생, 파산 등	-
합계	**1,972**	**-**	**-**	**-**

주) 기술료 미납액이 높은 상위 5개 기업을 표시하였고, 2024년 6월 기준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둘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들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경상기술료는 기업들의 '과제 관련 사업화매출액'과 '기술기여도'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제출한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 등이 기재된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기술료를 부과함.[24]

그러나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료 관련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19년 64개, 2020년 56개, 2021년 15개, 2022년 79개의 기업이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69개, 2020년 76개, 2021년 253개, 2022년 90개 기업이 매출실적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25]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도 기한을 경과하여 매출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사례가 2021년 41건, 2022년 113건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27개사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675건, 2020년 816건, 2021년 1,056건, 2022년 1,4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5) 2023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 664개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019~2023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의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사)

부처	연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수 (A=B+C)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기업수(B=a+b)			미제출 기업수(C)
			계(B)	기한 내 제출 (a)	기한 경과 제출 (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437	368	304	64	69
	2020	473	397	341	56	76
	2021	660	407	392	15	253
	2022	660	570	491	79	90
	2023	664	232	232	-	432
중소벤처기업부	2020	2	2	2	-	-
	2021	1,006	1,005	964	41	1
	2022	1,485	1,459	1,346	113	26
	2023	2,496	1,990	1,952	38	506
산업통상자원부	2019	1,683	1,620	945	675	63
	2020	2,513	2,419	1,603	816	94
	2021	3,392	3,270	2,214	1,056	122
	2022	4,231	4,020	2,530	1,490	211
	2023	4,870	4,474	3,268	1,206	396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경상기술료 책정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늦게 부과하여 수납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들이 매출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6) 또한 기업이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을 철저하게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7) 사업화 매출액 실적 등 사업화 목적의 R&D 과제의 보다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가)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 · 논문 · 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 · 무형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성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27] 이를 제외한 사업화 성과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28]

그 중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29] R&D 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술로부터 사업화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은 당해 사업의 성과지표로 관리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R&D 사업이지만 이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여러 개별사업들을 포괄하여 프로그램 단위로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화 R&D의 목적에 맞게 개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조달청의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국민이 제출한 혁신제품 수요 중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민간시장에 진출하도록 연계 지원하는 것이나, 사업화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2025년부터 설정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당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R&D)’, ‘공정·품질 기술개발(R&D)’, ‘창업성장기술개발(R&D)’, ‘중소기업**

---

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 · 논문 · 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 · 무형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등) ② 연구성과의 관리 · 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다.

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R&D 역량제고(R&D)’ 이상 5개 R&D 사업은 창업 단계 또는 그 이후 중소기업이 신속히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R&D 사업임.

그러나 상술한 5개 세부사업의 ‘정부출연금 1억원 당 누적 매출액’ 실적은 개별 사업별로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실적치가 모두 이하 표와 같이 동일한데, 이는 프로그램 단위로만 성과를 관리하고 있을 뿐 개별 사업별로 면밀한 성과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의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등록특허 SMART 평가등급 (단위: 점)	목표	4.2	4.2	4.2	4.2	2022년 목표치(4.2점)와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값(4.0점) 중 높은 4.2점을 목표치로 설정	Σ등록특허별 SMART 등급 점수 /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한 등록 특허수
	실적	4.0	3.9	4.0	3.9		
	달성도	95.2	92.9	95.2	92.9		
정부출연금 1억원당 누적 매출액 (단위: 억원)	목표	2.26	2.42	2.44	2.46	2022년 목표치(2.44)에서 1% 상향 설정	(최근 5년간 종료과제가 5년간 창출한 사업화 매출) x (기여율) / 성과분석 조사기업에 총 지원한 출연금액
	실적	2.27	2.40	2.40	1.69		
	달성도	100.4	99.2	98.4	68.7		
R&D 지원 효과지수 (단위: 점)	목표	-	-	-	신규	-	등록특허 SMART 평가점수, 정부출연금 1억당 누적 매출액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 후 합산
	실적	-	-	-	-		
	달성도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를 통해 매출액 성과를 관리하고 있고, 원가절감효과 및 노동생산성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는 별도로 측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국회에 제출되는 사업의 성과는 프로그램 단위로 구성된 성과지표만으로 평가됨에 따라,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측정되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R&D 사업은 개별 세부사업별로 그 특성이 다양하므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매출액·원가절감효과·노동생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화 매출액 실적이 목표 대비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사업들은 사업화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2024년도 목표치를 이미 2023년에 달성한 수치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목표치가 매년 동일한 사업들은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서 보다 면밀한 R&D 성과관리가 필요함.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사업화지원(R&D)’ 사업,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 단기고도화(R&D)’ 사업은 2021년 또는 2022년부터 사업화 매출액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하므로, 사업화 목표 대비 실적인 미진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화 매출액 성과가 부진한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술사업화지원(R&D)	목표	-	886	921	958	996
	실적	-	703	673	719	-
	달성도	-	79.3	73.1	75.1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목표	-	58.8	176	353	617
	실적	-	36.98	133.3	275.0	-
	달성도	-	62.9	75.7	77.9	-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 단기고도화(R&D)	목표	-	-	180	185	191
	실적	-	-	-	11.35	-
	달성도	-	-	-	6.1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사업,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성과목표 수치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정하고,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5G 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개발’ 사업,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차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성과지표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화 매출액 성과가 부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R&D)	목표	9	9	9	9	-
	실적	55	9	39	(집계중)	-
	달성도	100.0	100.0	100.0	-	-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R&D)	목표	-	(신규)	72	72	72
	실적	-	-	72	72	-
	달성도	-	-	100	100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R&D)	목표	(신규)	72	72	72	72
	실적	0.08	12	17	-	-
	달성도	-	16.7	23.6	-	-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목표	-	(신규)	128	166	215
	실적	-	-	175	242	-
	달성도	-	-	136.7	145.8	-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목표	(신규)	180	189	198	-
	실적	-	180	217	(집계중)	-
	달성도	-	100	114	-	-
ICT미래시장 최적화협업 기술개발(R&D)	목표	-	(신규)	230	300	300
	실적	-	-	290	340	-
	달성도	-	-	126	113	-
민관협력기반 ICT스타트업 육성(R&D)	목표	(신규)	278	306	337	370
	실적	4.86	2,312	3,379	(집계중)	-
	달성도	-	831%	1,104%	-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R&D)	목표	-	(신규)	405	446	491
	실적	-	-	597	2,130	-
	달성도	-	-	147.4	477.4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사업은 사업화 매출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이래로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함.

동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사업화 목표 대비 실적이 미진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연구를 통해 생산한 기술이 사업화 매출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업화 매출액 성과가 부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단위: 백만원)	목표	-	-	4,455	3,722	628
	실적	-	-	623	396	-
	달성도	-	-	14	11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국고보조사업

가. 개 요

(1) 현 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 또는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부담금·교부금 및 급부금을 말함.

국고보조금은 교부대상에 따라 자치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원내용에 따라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할 수 있음.

교부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임.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경상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행하는 경상적 경비(기관운영비나 인건비, 여비 등)에 대한 보조이고, 자본보조금은 자본의 축적과 관련되는 토지매입, 시설건축, 자산취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의미함.[2]

예산과목 상 지방자치단체보조금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가 있고, 민간보조금에는 민간 경상보조(320-01목)·민간 자본보조(320-07목)가 있음.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p234~235, 국회예산정책처, 2023.9.

(2) 자치단체보조사업

(가) 총괄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82조 9,42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83조 5,320억원 중 80조 6,616억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3,04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조 5,661억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본예산	제2회 추경	결산	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자치단체 보조사업	794,669	837,194	829,902	829,424	835,320	806,616	3,043	25,661	96.6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결산 기준 자치단체보조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3조원 감소하였으나,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는 13.2%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고,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은 81.4%로 전년 대비 24.5%p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후 소폭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9%)보다 높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자치단체보조사업(A)	61.7	86.7	85.7	83.0	80.7	6.9
정부 총지출(B)	485.1	549.9	601.0	682.4	610.7	5.9
전체 보조사업(C)	80.4	116.5	128.0	145.8	99.1	5.4
총지출 대비(A/B)	12.7	15.8	14.3	12.2	13.2	-
전체 보조사업 대비(A/C)	76.7	74.4	67.0	56.9	81.4	-

자료: 기획재정부

(나) 과목별·성질별 현황

예산과목별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예산현액 66.0조원 중 64.5조원이 집행(집행률 97.7%)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예산현액 17.6조원 중 16.2조원이 집행(집행률 92.2%)되었음. 집행률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1.6%p 감소하였음.

성질별로 보면 의무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48.5조원 중 47.2조원이 집행(집행률 97.3%)되었고, 재량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35조원 중 33.4조원이 집행(집행률 95.5%)되었음.

과목별・성질별 집행률은 재량지출 보조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의무지출 보조의 집행률 감소(△2.5%p)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과목·성질별 결산]

(단위: 조원,%,%p)

구 분		2022년			2023년			집행률 증감 (F-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자치단체보조사업		85.3	83.0	97.3	83.5	80.7	96.6	△0.7
과목	경상보조	65.2	64.2	98.4	66.0	64.5	97.7	△0.7
	자본보조	20.1	18.8	93.8	17.6	16.2	92.2	△1.6
성질	의무지출 보조	43.5	43.4	99.8	48.5	47.2	97.3	△2.5
	재량지출 보조	41.8	39.6	94.7	35.0	33.4	95.5	0.8

자료: 기획재정부

(다) 분야별 현황

16대 분야별로 살펴보면,[3]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은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에 편성되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69.8%)이며, 이어서 농림수산(9.1%), 환경(8.3%) 순임.

전년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로는 3조 7,680억원이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 2,319억원이 증가한 농림수산 분야 등이 있음. 집행액이 감소한 분야로는 3조 1,968억원이 감소한 보건 분야, 1조 1,017억원이 감소한 교통및물류 분야 등이 있음.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96.6%)보다 높았던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99.9%), 일반・지방행정(99.7%) 등이 있고, 평균보다 낮았던 분야로는 통일・외교(38.2%), 교통및물류(87.1%) 등이 있음.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분류체계 기준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억원, %)

분 야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D/A
공공질서및안전	15,853	10,585	10,754	10,738	1.3	99.9	△5,116	△32.3
과학기술	174	135	135	125	0.0	92.4	△49	△28.4
교육	4,459	4,397	4,397	3,939	0.5	89.6	△520	△11.7
교통및물류	29,694	21,489	21,438	18,677	2.3	87.1	△11,017	△37.1
국방	0	1	1	1	0.0	100	0	11.1
국토및지역개발	19,715	14,358	14,378	13,954	1.7	97.1	△5,761	△29.2
농림수산	71,218	75,355	78,356	73,537	9.1	93.8	2,319	3.3
문화및관광	21,614	18,036	17,655	17,077	2.1	96.7	△4,537	△21.0
보건	49,055	16,775	17,421	17,087	2.1	98.1	△31,968	△65.2
사회복지	525,443	575,120	576,913	563,122	69.8	97.6	37,680	7.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776	8,648	8,647	8,524	1.1	98.6	△252	△2.9
일반·지방행정	15,395	12,294	12,288	12,253	1.5	99.7	△3,142	△20.4
통신	-	632	632	632	0.1	100	632	-
통일·외교	258	490	503	192	0.0	38.2	△66	△25.6
환경	68,247	71,110	71,801	66,759	8.3	93.0	△1,488	△2.2
합 계	829,902	829,424	835,320	806,616	100	96.6	△23,286	△2.8

주)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없어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라) 회계별·기금별 현황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29개 기금 등 총 40개의 회계·기금에 편성되었고, 비중별로는 일반회계(67.8%), 특별회계(21.4%), 기금(10.8%) 순이었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는 집행액이 3조 5,682억원이 감소(△6.1%)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집행액은 증가하였음.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2조 7,400억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1조 1,151억원이 감소하였음. 기금의 경우,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2,047억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양호(98.0%)한 편이며, 특별회계(93.8%)는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33.3%)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기금 전체의 집행률

은 93.2%로, 남북협력기금(0%)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78.5%)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일반회계		**588,951**	**562,202**	**564,686**	**553,269**	**100**	**98.0**	**△35,682**	**△6.1**
특별회계 (10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20	120	40	0.0	33.3	40	순증
	교통시설특별회계	12,228	12,518	12,518	10,152	6.0	81.1	△2,076	△17.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340	23,415	25,016	23,964	14.1	95.8	△2,376	△ 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87	514	514	494	0.3	96.1	7	1.5
	양곡관리특별회계	463	483	531	531	0.3	100	68	14.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506	22,765	22,779	18,488	10.9	81.2	△18	△ 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5,765	94,953	95,992	93,165	54.7	97.1	27,400	4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1	26	26	26	0.0	100	△25	△ 49.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7	153	153	143	0.1	93.2	△64	△ 30.9
	환경개선특별회계	34,319	23,095	23,770	23,168	13.6	97.5	△11,151	△ 32.5
	소 계	**158,365**	**178,042**	**181,418**	**170,170**	**100**	**93.8**	**11,805**	**7.5**
기금 (29개)	고용보험기금	30	1	1	1	0.0	100	△29	△95.7
	관광진흥개발기금	1,383	393	393	351	0.4	89.3	△1,032	△74.6
	국민건강증진기금	10,290	9,873	9,873	9,841	11.8	99.7	△449	△4.4
	국민체육진흥기금	4,500	4,684	4,684	4,467	5.4	95.4	△33	△0.7
	군인복지기금	0	1	1	1	0.0	100	0	11.1
	금강수계관리기금	925	1,063	1,063	1,058	1.3	99.6	133	14.4
	기후대응기금	3,518	3,118	3,135	3,089	3.7	98.5	△429	△12.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06	1,851	1,851	1,850	2.2	99.9	△56	△2.9
	남북협력기금	76	311	311	-	0.0	0.0	△76	△1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25	565	565	530	0.6	93.8	5	1.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3,137	27,366	27,366	25,184	30.3	92.0	2,047	8.8
	농지관리기금	136	173	173	173	0.2	100	37	27.2
	문화예술진흥기금	2,033	2,072	2,072	2,072	2.5	100	39	1.9
	국가유산보호기금	470	506	506	506	0.6	100	36	7.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47	374	374	366	0.4	97.9	19	5.4
	복권기금	3,496	3,808	3,808	3,800	4.6	99.8	303	8.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97	37	37	37	0.0	100	△260	△87.6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수산발전기금	255	227	231	213	0.3	92.2	△42	△16.4
	양성평등기금	5,838	6,681	6,681	6,162	7.4	92.2	324	5.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62	460	460	459	0.6	99.8	△3	△0.6
	영화발전기금	10	13	13	13	0.0	100	3	30.0
	응급의료기금	2,074	1,741	1,756	1,754	2.1	99.9	△319	△15.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390	1,544	1,544	1,329	1.6	86.1	△61	△ 4.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	23	23	18	0.0	78.5	2	15.8
	전력산업기반기금	2,312	2,796	2,796	2,763	3.3	98.9	452	19.5
	주택도시기금	9,469	11,325	11,325	9,037	10.9	79.8	△431	△4.6
	청소년육성기금	1,203	1,333	1,333	1,327	1.6	99.6	125	10.4
	축산발전기금	2,348	2,415	2,415	2,377	2.9	98.4	29	1.2
	한강수계관리기금	4,140	4,427	4,427	4,397	5.3	99.3	257	6.2
	소 계	**82,586**	**89,180**	**89,215**	**83,176**	**100**	**93.2**	**591**	**0.7**
합 계		**829,902**	**829,424**	**835,320**	**806,616**	**100**	**96.6**	**△23,286**	**△2.8**

주)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자료: 기획재정부

(마) 부처별 현황

2023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총 31개로, 보건복지부(64.7%)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환경부(8.1%), 국토교통부(7.9%) 순임.

이 중 경찰청·대법원 등 9개 부처는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통일부(27.9%), 새만금개발청(73.2%)은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현액이 1,0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집행률이 평균(96.6%)에 미달한 부처는 국토교통부(92.1%) 및 농림축산식품부(92.3%) 등 8개 부처임.

전년 대비 집행액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부(3조 4,900억원)·농림축산식품부(3,279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질병관리청(△2조 9,181억원)·행정안전부(△1조 84억원) 등 16개 부처에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부처별 결산]

(단위: 억원, %)

부 처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보건복지부	486,729	530,748	532,474	521,629	64.7	98.0	34,900	7.2
환경부	70,190	69,967	70,674	65,690	8.1	92.9	△4,500	△6.4
국토교통부	73,814	69,425	69,426	63,970	7.9	92.1	△9,843	△13.3
농림축산식품부	47,819	53,171	55,357	51,098	6.3	92.3	3,279	6.9
행정안전부	30,663	20,451	20,614	20,579	2.6	99.8	△10,084	△32.9
여성가족부	11,473	12,791	12,887	12,341	1.5	95.8	867	7.6
해양수산부	11,333	11,368	11,670	11,053	1.4	94.7	△280	△2.5
문화체육관광부	15,598	11,351	11,389	10,827	1.3	95.1	△4,771	△30.6
산림청	9,947	9,822	10,260	10,260	1.3	100	313	3.1
기획재정부	7,014	6,927	6,943	6,889	0.9	99.2	△125	△1.8
산업통상자원부	8,025	6,890	6,925	6,805	0.8	98.3	△1,220	△15.2
국가유산청	6,016	6,685	6,266	6,250	0.8	99.8	234	3.9
교육부	5,677	5,942	5,942	5,484	0.7	92.3	△193	△3.4
고용노동부	6,398	3,561	3,561	3,480	0.4	97.7	△2,917	△45.6
질병관리청	32,186	2,674	3,292	3,005	0.4	91.3	△29,181	△90.7
농촌진흥청	2,326	2,289	2,310	2,309	0.3	100	△16	△0.7
중소벤처기업부	1,033	2,052	2,007	2,006	0.2	100	973	9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4	839	839	828	0.1	98.8	584	238.9
식품의약품안전처	698	714	714	714	0.1	100	16	2.3
통일부	187	418	431	120	0	27.9	△66	△35.5
소방청	415	375	375	375	0	100	△40	△9.7
법무부	347	374	374	366	0	97.9	19	5.4
새만금개발청	72	177	177	130	0	73.2	58	81.4
대법원	149	142	142	142	0	100	△7	△5
국가보훈부	52	87	87	84	0	95.9	32	61.4
외교부	72	72	72	72	0	100	-	0
경찰청	1,364	66	66	66	0	100	△1,298	△9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1	26	26	26	0	100	△25	△4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15	15	14	0	96.0	9	165.4
공정거래위원회	4	4	4	4	0	100	-	0
국방부	0	1	1	1	0	100	0	11.1
합 계	**829,902**	**829,424**	**835,320**	**806,616**	**100**	**96.6**	**△23,286**	**△2.8**

주) 부처 순서는 2023년 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중앙관서 집행률(교부율)은 예산현액 83조 5,320억원 중 80조 6,616억원이 자치단체에 교부되어 96.6%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더한 교부현액 85조 5,454억원 중 77조 2,997억원이 집행되어 90.4%에 그쳤음.

부처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부처 전체의 실집행률(90.4%)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한 부처는 총 21개임. 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실집행률이 33.7%로 가장 낮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36.8%), 교육부(44.3%) 순임.

[2023년 부처별 자치단체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보건복지부	134	530,748	3,961	532,474	521,629	98.0	522,834	513,113	98.1
환경부	118	69,967	593	70,674	65,690	92.9	78,627	59,372	75.5
국토교통부	176	69,425	394	69,426	63,970	92.1	79,702	62,717	78.7
농림축산식품부	111	53,171	479	55,357	51,098	92.3	56,242	47,595	84.6
행정안전부	55	20,451	372	20,614	20,579	99.8	20,940	19,871	94.9
여성가족부	27	12,791	474	12,887	12,341	95.8	12,844	11,627	90.5
해양수산부	90	11,368	126	11,670	11,053	94.7	14,492	9,637	66.5
문화체육관광부	73	11,351	155	11,389	10,827	95.1	12,059	7,409	61.4
산림청	35	9,822	281	10,260	10,260	100	10,907	9,251	84.8
기획재정부	25	6,927	227	6,943	6,889	99.2	8,036	6,264	77.9
산업통상자원부	39	6,890	177	6,925	6,805	98.3	8,198	6,624	80.8
국가유산청	27	6,685	248	6,266	6,250	99.8	6,898	5,217	75.6
교육부	5	5,942	1,188	5,942	5,484	92.3	7,980	3,532	44.3
고용노동부	23	3,561	155	3,561	3,480	97.7	3,480	2,967	85.3
질병관리청	7	2,674	382	3,292	3,005	91.3	4,362	2,358	54.1
농촌진흥청	18	2,289	127	2,310	2,309	100	2,700	2,094	77.6
중소벤처기업부	11	2,052	187	2,007	2,006	100	2,050	755	3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839	105	839	828	98.8	875	620	70.9
식품의약품안전처	11	714	65	714	714	100	723	687	95.0
통일부	4	418	105	431	120	27.9	120	113	94.1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소방청	7	375	54	375	375	100	407	347	85.3
법무부	1	374	374	374	366	97.9	368	347	94.5
새만금개발청	2	177	89	177	130	73.2	138	106	76.8
대법원	1	142	142	142	142	100	142	137	96.3
국가보훈부	3	87	29	87	84	95.9	105	67	63.8
외교부	3	72	24	72	72	100	72	69	96.5
경찰청	2	66	33	66	66	100	66	65	98.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26	13	26	26	100	68	23	33.7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	15	15	15	14	96.0	14	8	54.9
공정거래위원회	1	4	4	4	4	100	4	4	96.7
국방부	1	1	1	1	1	100	1	1	98.0
합 계	**1,021**	**829,424**	**812**	**835,320**	**806,616**	**96.6**	**855,454**	**772,997**	**90.4**

주) 부처 순서는 2023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자료: 각 부처 제출

(3) 민간보조사업

(가) 총괄

2023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19조 3,351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9조 9,908억원 중 18조 4,268억원이 집행(집행률 92.2%)되고, 3,46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1조 2,177억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민간보조사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본예산	제2회 추경	결산	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민간 보조사업	228,795	629,092	628,538	193,351	199,908	184,268	3,463	12,177	92.2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보조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4.4조원 감소하였음.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는 3.0%로 전년 대비 6.2%p 감소하였고,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은 18.6%로 전년 대비 24.5%p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간보조사업 결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2019년 수준으로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5%임.

[최근 5년간 민간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민간보조사업(A)	18.8	29.8	42.3	62.9	18.4	△0.5
정부 총지출(B)	485.1	549.9	601.0	682.4	610.7	5.9
전체 보조사업(C)	80.4	116.5	128.0	145.8	99.1	5.4
총지출 대비(A/B)	3.9	5.4	7.0	9.2	3.0	-
전체 보조사업 대비(A/C)	23.4	25.6	33.0	43.1	18.6	-

자료: 기획재정부

(나) 과목별·성질별 현황

예산과목별로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서 예산현액 16.3조원 중 15.0조원이 집행(집행률 92.2%)되었고, 민간 자본보조에서 예산현액 3.7조원 중 3.4조원이 집행(집행률 91.9%)되었음. 집행률은 민간 경상보조에서 전년 대비 5.1%p 감소하였고, 민간 자본보조에서 1.1%p 증가하였음.

성질별로 보면 의무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0.8조원 중 0.7조원이 집행(집행률 96.9%)되었고, 재량지출 보조에서 19.2조원 중 17.7조원이 집행(집행률 92.0%)되었음.

과목별・성질별 집행률은 자본보조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경상보조의 집행률 감소(△5.1%p)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2023년 민간보조사업 과목·성질별 결산]

(단위: 조원,%,%p)

구 분		2022년			2023년			집행률 증감 (F-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민간보조사업		64.8	62.9	97.0	20.0	18.4	92.2	△4.8
과목	경상보조	61.7	60.1	97.3	16.3	15.0	92.2	△5.1
	자본보조	3.0	2.8	90.8	3.7	3.4	91.9	1.1
성질	의무지출 보조	8.2	8.1	98.9	0.8	0.7	96.9	△2.0
	재량지출 보조	56.5	54.7	96.8	19.2	17.7	92.0	△4.8

자료: 기획재정부

(다) 분야별 현황

16대 분야별로 살펴보면,[4] 2023년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에 편성되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4.3%)이며, 이어서 농림수산(20.9%), 문화및관광(19.4%) 순임.

전년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로는 5,232억원이 증가한 환경 분야, 2,873억원이 증가한 교통및물류 분야 등이 있음. 집행액이 감소한 분야로는 41조 6,227억원이 감소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조 4,840억원이 감소한 사회복지 분야 등이 있음.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92.2%)보다 높았던 분야는 국토및지역개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분류체계 기준

발(100%), 문화및관광(99.7%) 등이 있고, 평균보다 낮았던 분야로는 통일・외교(29.5%), 환경(77.3%) 등이 있음.

[2023년 민간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억원, %)

분 야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D/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공공질서및안전	2,247	1,879	1,879	1,878	1.0	99.9	△369	△16.4
과학기술	819	746	746	746	0.4	100	△74	△9.0
교육	4,153	4,661	4,661	4,399	2.4	94.4	246	5.9
교통및물류	13,907	16,746	17,686	16,780	9.1	94.9	2,873	20.7
국방	471	462	462	459	0.2	99.3	△12	△2.5
국토및지역개발	2,407	2,360	2,360	2,360	1.3	100	△47	△1.9
농림수산	36,224	38,395	41,666	38,570	20.9	92.6	2,346	6.5
문화및관광	34,493	35,344	35,765	35,666	19.4	99.7	1,173	3.4
보건	9,568	7,925	7,853	7,745	4.2	98.6	△1,822	△19.0
사회복지	50,501	15,867	15,867	15,661	8.5	98.7	△34,840	△69.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61,045	43,460	45,441	44,817	24.3	98.6	△416,227	△90.3
일반・지방행정	3,458	1,307	1,307	1,300	0.7	99.5	△2,158	△62.4
통신	1,792	1,353	1,353	1,352	0.7	100	△440	△24.6
통일・외교	3,325	10,716	10,745	3,174	1.7	29.5	△150	△4.5
환경	4,129	12,130	12,116	9,361	5.1	77.3	5,232	126.7
합 계	**628,538**	**193,351**	**199,908**	**184,268**	**100**	**92.2**	**△444,270**	**△70.7**

주)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민간보조사업이 없어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라) 회계별·기금별 현황

2023년 민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40개 기금 등 총 50개의 회계・기금에 편성되었고, 비중별로는 기금(35.3%), 일반회계(33.5%), 특별회계(31.2%) 순이었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특별회계의 집행액은 1조 4,571억원이 증가(32.2%)한 반면, 일반회계와 기금은 집행액이 각각 5조 3,677억원(△45.4%), 40조 5,164억원(△87.1%) 감소하였음. 특별회계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481억원이 집행되었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6,473억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

장 크게 나타남. 기금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1,499억원 증가하였음.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 전년 대비 40조 733억원이 감소하였음.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양호(99.2%)한 편이며, 특별회계(90.3%)는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82.1%)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기금 전체의 집행률은 87.3%로, 남북협력기금(1.2%)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81.0%)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 민간보조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일반회계		118,326	64,715	65,138	64,649	100	99.2	△ 53,677	△45.4
특별회계 (9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737	2,741	2,481	4.1	90.5	2,481	순증
	교통시설특별회계	4,021	10,312	11,165	10,494	17.5	94.0	6,473	16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951	28,228	31,457	28,742	48.0	91.4	3,791	1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63	171	171	171	0.3	100	8	4.9
	양곡관리특별회계	93	127	169	169	0.3	100	77	8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589	13,645	15,464	12,703	21.2	82.1	5,115	67.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311	2,963	3,016	3,016	5.0	100	△4,295	△58.7
	특허청	867	830	830	830	1.4	100	△37	△4.3
	환경개선특별회계	279	1,300	1,286	1,237	2.1	96.2	958	343.9
	소 계	45,272	60,313	66,300	59,843	100	90.3	14,571	32.2
기금 (40개)	고용보험기금	6,083	2,644	2,644	2,627	4.4	99.4	△3,455	△56.8
	과학기술진흥기금	237	260	260	260	0.4	100	23	9.6
	관광진흥개발기금	5,014	5,196	5,196	5,187	8.7	99.8	173	3.4
	국민건강증진기금	1,546	1,186	1,186	1,184	2.0	99.8	△362	△23.4
	국민체육진흥기금	9,410	10,569	10,569	10,541	17.6	99.7	1,130	12.0
	군인복지기금	147	156	156	156	0.3	100	9	6.1
	근로복지진흥기금	159	-	-	-	-	-	△159	△100.0
	금강수계관리기금	5	4	4	4	0.0	100	△1	△17.9
	기후대응기금	4,432	6,187	6,333	5,931	9.9	93.6	1,499	33.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	4	4	4	0.0	99.9	△0	△10.0
	남북협력기금	136	7,628	7,628	90	0.2	1.2	△46	△33.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443	1,802	1,802	1,459	2.4	81.0	△1,984	△57.6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26	31	31	26	0.0	82.4	0	0.3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농지관리기금	1,065	1,240	1,240	1,240	2.1	100	175	16.4
	문화예술진흥기금	1,171	1,139	1,139	1,133	1.9	99.5	△39	△3.3
	국가유산보호기금	155	219	219	219	0.4	100	64	41.5
	방송통신발전기금	3,747	3,513	3,513	3,473	5.8	98.9	△275	△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73	181	181	180	0.3	99.4	7	3.9
	보훈기금	94	83	83	59	0.1	70.4	△36	△37.8
	복권기금	2,081	2,424	2,424	2,424	4.1	100	343	16.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4	35	35	35	0.1	100	1	2.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	9	9	9	0.0	100	4	60.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3	128	128	128	0.2	100	25	24.1
	석면피해구제기금	4	4	4	4	0.0	100	△	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09,705	8,972	8,972	8,972	15.0	100	△400,733	△97.8
	수산발전기금	47	35	35	35	0.1	100	△11	△24.0
	양성평등기금	101	100	100	100	0.2	100	△1	△1.1
	언론진흥기금	81	63	63	63	0.1	99.9	△18	△21.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	2	2	2	0.0	100	△0	△1.7
	영화발전기금	288	323	324	323	0.5	99.6	35	12.0
	응급의료기금	274	272	272	268	0.4	98.5	△7	△2.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78	186	186	167	0.3	89.9	△10	△5.8
	전력산업기반기금	11,078	9,630	9,630	9,396	15.7	97.6	△1,682	△15.2
	정보통신진흥기금	76	66	66	66	0.1	100	△10	△12.8
	주택도시기금	1,235	1,183	1,183	1,183	2.0	100	△52	△4.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81	266	266	266	0.4	100	185	227.8
	지역신문발전기금	53	46	46	46	0.1	99.8	△8	△14.1
	청소년육성기금	253	160	160	160	0.3	100	△92	△36.6
	축산발전기금	2,205	2,364	2,364	2,350	3.9	99.4	144	6.5
	한강수계관리기금	6	11	11	6	0.0	55.6	0	2.7
	소 계	**464,940**	**68,323**	**68,471**	**59,776**	**100**	**87.3**	**△405,164**	**△87.1**
합 계		**628,538**	**193,351**	**199,908**	**184,268**	**100**	**92.2**	**△444,270**	**△70.7**

주)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자료: 기획재정부

(마) 부처별 현황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총 41개[5]로, 농림축산식품부(17.9%)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17.5%), 산업통상자원부(12.5%) 순임.

이 중 경찰청·대법원 등 14개 부처는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통일부(2.7%)와 환경부(73.9%)는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이 1,0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집행률이 평균(92.2%)에 미달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91.4%)·환경부(73.9%) 및 통일부(2.7%) 3개 부처임.

전년 대비 집행액 증감을 보면, 환경부(4,124억원)·국토교통부(2,185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41조 6,619억원)·고용노동부(△4,133억원) 등 23개 부처에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2023년 민간보조사업 부처별 결산]

(단위: 억원, %)

부 처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농림축산식품부	31,023	33,686	35,985	32,892	17.9	91.4	1,869	6
문화체육관광부	31,667	32,343	32,345	32,287	17.5	99.8	619	2
산업통상자원부	22,888	21,510	23,350	22,957	12.5	98.3	69	0.3
중소벤처기업부	435,973	19,395	19,389	19,353	10.5	99.8	△416,619	△95.6
국토교통부	13,051	15,086	15,950	15,236	8.3	95.5	2,185	16.7
보건복지부	12,867	12,542	12,474	12,362	6.7	99.1	△505	△3.9
환경부	3,147	9,851	9,837	7,270	3.9	73.9	4,124	131
기획재정부	7,584	8,663	8,809	8,405	4.6	95.4	821	10.8
통일부	235	7,751	7,751	208	0.1	2.7	△28	△11.7
해양수산부	5,562	5,669	6,718	6,523	3.5	97.1	961	17.3
고용노동부	38,974	4,911	4,916	4,841	2.6	98.5	△34,133	△87.6
교육부	4,153	4,661	4,661	4,399	2.4	94.4	246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09	4,469	4,469	4,429	2.4	99.1	△380	△7.9
외교부	3,007	2,881	2,881	2,881	1.6	100	△126	△4.2
산림청	1,735	1,785	1,784	1,784	1	100	49	2.9
법무부	1,447	1,418	1,418	1,417	0.8	99.9	△30	△2.1
국가보훈부	1,457	1,390	1,390	1,287	0.7	92.6	△170	△11.7

5) 예산 편성액 없이 예산현액만 있는 재외동포청 제외

(단위: 억원, %)

부 처	2022년 결산 (A)	2023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특허청	867	830	830	830	0.5	100	△37	△4.3
행정안전부	917	830	831	830	0.5	99.9	△87	△9.5
여성가족부	987	810	884	882	0.5	99.7	△105	△10.6
국가유산청	489	498	917	917	0.5	100	428	8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33	485	485	484	0.3	99.8	△949	△66.2
식품의약품안전처	738	446	451	447	0.2	99.3	△290	△39.3
국방부	439	432	432	432	0.2	100	△7	△1.6
질병관리청	1,971	314	227	227	0.1	100	△1,744	△88.5
금융위원회	191	172	172	172	0.1	100	△19	△10
방송통신위원회	140	131	131	131	0.1	99.6	△9	△6.3
국회	89	97	97	94	0.1	97.2	5	5.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3	84	84	83	0	99.8	1	1
농촌진흥청	30	48	48	48	0	100	19	64.2
국세청	15	37	37	37	0	98.8	22	151.8
대법원	108	35	35	35	0	100	△73	△67.9
방위사업청	32	31	31	27	0	88.8	△5	△15
해양경찰청	36	21	21	21	0	100	△14	△40.1
경찰청	376	19	19	19	0	100	△357	△94.9
공정거래위원회	8	7	7	7	0	100	△1	△1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4	4	4	0	100	△1	△18.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3	3	3	0	100	0	△6.3
국가인권위원회	2	2	2	2	0	97.4	0	△2.6
국민권익위원회	2	2	2	2	0	79.4	0	△20.6
소방청	1	1	1	1	0	100	-	0
재외동포청		-	30	2	0	6.7	2	-
헌법재판소	0	-	-	-	-	-	-	-
합 계	**628,538**	**193,351**	**199,908**	**184,268**	**100**	**92.2**	**△444,270**	**△70.7**

주1) 부처 순서는 2023년 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2)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의 중앙관서 집행률(교부율)은 예산현액 19조 9,908억원 중 18조 4,268억원이 민간에 교부되어 92.2%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의 실집행률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더한 교부현액 18조 8,531억원 중 17조 13억원이 집행되어 90.2%에 그쳤음.

부처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부처 전체의 실집행률(90.2%)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한 부처는 총 9개임. 이 중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66.1%로 가장 낮고,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69.1%), 보건복지부(73.4%) 순임.

[2023년 부처별 민간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민간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농림축산식품부	143	33,686	236	35,985	32,892	91.4	33,435	32,107	96.0
문화체육관광부	158	32,343	205	32,345	32,287	99.8	32,876	29,427	89.5
산업통상자원부	86	21,510	250	23,350	22,957	98.3	23,020	21,444	93.2
중소벤처기업부	49	19,395	396	19,389	19,353	99.8	19,373	17,467	90.2
국토교통부	31	15,086	487	15,950	15,236	95.5	15,631	15,275	97.7
보건복지부	147	12,542	85	12,474	12,362	99.1	12,609	9,259	73.4
환경부	31	9,851	318	9,837	7,270	73.9	8,365	6,358	76.0
기획재정부	31	8,663	279	8,809	8,405	95.4	9,070	8,214	90.6
통일부	15	7,751	517	7,751	208	2.7	208	198	95.1
해양수산부	74	5,669	77	6,718	6,523	97.1	6,890	5,720	83.0
고용노동부	27	4,911	182	4,916	4,841	98.5	4,668	4,342	93.0
교육부	30	4,661	155	4,661	4,399	94.4	4,379	2,895	6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4,469	74	4,469	4,429	99.1	4,429	4,307	97.2
외교부	5	2,881	576	2,881	2,881	100	2,969	2,969	99.9
산림청	25	1,785	71	1,784	1,784	100	1,817	1,774	97.6
법무부	14	1,418	101	1,418	1,417	99.9	1,417	1,407	99.3
국가보훈부	71	1,390	20	1,390	1,287	92.6	1,335	1,284	96.2
특허청	9	830	92	830	830	100	830	819	98.7
행정안전부	19	830	44	831	830	99.9	835	811	97.1
여성가족부	26	810	31	884	882	99.7	882	788	89.3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민간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국가유산청	27	498	18	917	917	100	921	870	9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485	243	485	484	99.8	776	536	69.1
식품의약품안전처	10	446	45	451	447	99.3	448	440	98.2
국방부	50	432	9	432	432	100	432	422	97.6
질병관리청	12	314	26	227	227	100	227	211	93.0
금융위원회	5	172	34	172	172	100	172	168	97.3
방송통신위원회	7	131	19	131	131	99.6	131	126	96.2
국회	4	97	24	97	94	97.2	94	88	9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84	28	84	83	99.8	83	83	99.8
농촌진흥청	3	48	16	48	48	100	48	47	97.7
국세청	2	37	19	37	37	98.8	37	37	98.8
대법원	4	35	9	35	35	100	35	35	100
방위사업청	2	31	16	31	27	88.8	28	27	98.5
해양경찰청	3	21	7	21	21	100	21	21	99.8
경찰청	1	19	19	19	19	100	19	16	83.8
공정거래위원회	1	7	7	7	7	100	7	7	9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4	4	4	4	100	4	4	99.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3	2	3	3	100	3	3	94.5
국가인권위원회	1	2	2	2	2	97.4	2	2	97.2
국민권익위원회	1	2	2	2	2	79.4	2	2	99.9
소방청	1	1	1	1	1	100	1	1	100
재외동포청	1	-	-	30	2	6.7	2	2	85.6
합 계	1,194	193,351	162	199,908	184,268	92.2	188,531	170,013	90.2

주1) 부처 순서는 2023년 민간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2)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나. 검토의견

(1) 개요

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등과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단체, 개인 등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실적을 충실히 보고·정산할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도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23년 보조사업을 추진한 전 부처의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편성 측면에서 보조금 비목의 적합성이나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편성되거나, 교부 측면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어 연례적 이·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음.

또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차원에서도 구분계리 및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히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정산 단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장기간에 걸쳐 반납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편성 측면: 비목·지방비 매칭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보조금 비목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일부 부처의 보조사업 중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편성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①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6]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임.

이에 근거하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7]에서도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비로,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나 정책상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보조사업비로 편성하고,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단순 "대행사업"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부처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5.0억원)[8]' 사업의 경우,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을 통한 민간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및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사라는 점에서 직접수행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오·만찬, 행사장 마련 등 사업추진에 효율

---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 - 14. 민간보조사업 p.100~101 / 15. 자치단체보조사업 p.106

8) 2023년 결산 기준(이하 동일)

성・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비목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 6개 부처 8개 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세 차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9] 중에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사업으로의 전환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 평가의 판정은 참고자료로서 예산편성의 재량은 인정될 수 있으나,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비목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방식변경 판정 미반영 주요 사례]

소관	평가연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평가사유
농림축산식품부	2023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데이터 수집・활용)	데이터수집 및 활용 내역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제11조의2에 의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같은 법 52조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 필요
해양수산부	2023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선원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수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 현재 선원법 제158조1항 및 제118조1항에 근거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비목으로 전환할 필요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사업지원단 운영비 내역사업은 아동복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비목으로 변경 필요
	2023	어린이집확충	종사자 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와 제23조의2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존속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즉시폐지・단계적폐지・통폐합・감축・사업방식변경・정상추진’ 의 최종판정을 도출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소관	평가연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평가사유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 현재 같은 법 51조2항에 근거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비목으로 전환 필요
	2021	한의약의 세계화추진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사업 총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한방병원 등이 위탁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2	공공기관 갈등관리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보급은 국무조정실이 법적 주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방송통신위원회	2022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강화	본 사업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위치정보법」제3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의 사무이므로 민간의 사무를 보조하는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민간위탁비목으로 전환 필요
질병관리청	2021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 (역학조사관 교육)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의 교육은 국가사무로 민간위탁사업으로의 전환이 적정

자료: 각 부처 제출

② 보조사업에서 직접수행으로 변경 필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10]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 155억 7,000만원 중 152억원은 민간보조금(국비 100%), 나머지 3억 7,000만원은 자치단체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민간보조금은 보조금 비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직접수행되고 있음.[11][12]

이로 인해,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련 규정과 「2023

10)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등

11) 2023년에는 자치단체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 모두 예산 전액이 교부(교부율 100%)되었고, 실집행률은 각각 100%, 99.8%임.

12) 자치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조사업자로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고용노동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①「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비목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행방식에 맞추어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13)]

(나) 지방비 매칭 필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업목적 등 고려시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7.3억원)' 사업은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 감염병동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사업 초기 지자체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국비 100% 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에도 병원의 자부담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없음.

그러나 지방비 매칭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집행잔액 반납 지연 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 동 사업이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추후 추가 권역별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다) 연부액 편성을 통한 이월 개선 필요

일부 보조사업에서 사업기간과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따라 연부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기간과 사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만약 한 회계연도 내에 완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연부액으로 편성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일부 부처의 보조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전액 교부함에 따라,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

13) 고용노동부 사업 중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직접수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과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장려금(1345-350)) 등의 경우, 기타보전금(310-04목)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났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42.2억원)’ 사업은 지역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는 민간보조(국비 100%) 사업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조성 방식과 건립 규모, 추진 경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시작연도부터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된 센터의 경우, 개관까지 통상 15.3개월(최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5.9억원)’과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10.0억원)’ 사업은 민간보조(정액보조) 사업으로, 신진작가와 우수스토리 발굴부터 기획·제작 및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사업추진 절차 및 광범위한 사업범위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해왔으면서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시작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동 보조사업들은 실질적인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연부액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라) 사업 효과성 재검토를 통한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 필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18.0억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선불교통카드 등의 인센티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30%) 사업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일회적인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반납자 중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반납비율이 15% 내외로 저조하여 사업 효과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56.2억원)’ 사업은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 중 일부를 선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국비 50%) 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복합청년몰 활성화,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하나, 2023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몰 6개소 중 4개소의 연말 공실률이 20% 이상이고, 2023년 성과평가 결과 일부 지원대상은 매출액과 유동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사업의 제반여건 및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일부 보조사업에서 사업의 제반여건이나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은 국가정책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신규 편성 시 사전에 사업 제반여건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실제 수요를 추계하여 적정한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계속사업 편성 시에는 최근의 집행실적과 수요 추이를 분석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조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자치단체보조(국비 20%) 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시설의 불법 입지[14]와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2023년 예산현액 18억원 중 2억 4,800만원만이 교부(교부율 13.8%)되었음에도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은 68.7%에 그쳤음.[15]

해양수산부의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어

14)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동물 100두 이상의 시설 46개소 중 40개소가 가설건축물(21개소), 농지 위치(15개소), 개발제한구역 위치(2개소), 산지 위치(2개소) 등에 따른 불법시설물로 확인되었음.

15) 예산현액 3억 650만원 중 2억 1,050만원 실집행

선원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은 기존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대한 직불에 더하여, 개정 법 시행(2023.4.1.)에 따른 소규모 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까지 포함한 51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신규 지원대상 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교부된 470억 6,000만원(교부율 91.2%) 중 145억 9,800만원이 불용(불용률 31.0%)되었고, 같은 기준으로 편성된 2024년 예산도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교육부의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국비 100%)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학진학률 증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 위축 등으로 인하여 최근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2023년의 경우 이용에 따른 감액(△34억 7,200만원)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205억 2,800만원 중 161억 1,9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78.5%에 그쳤음.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5.3억원)'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10%) 사업으로, 당초 포항 등 지진위험지역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다가 사업신청 저조로 지원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음에도 실집행이 저조하였음. 2022년 예산은 전액 타 사업으로 전용되어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2023년에도 30개소 지원 목표와 달리 2개소 지원에 그쳐 집행이 연이어 부진하였음.

(바) 사업계획 수립 여부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준비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2023년에 신규 편성된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사업으로 지방비 50% 매칭이 필수 전제조건이나, 지방비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2023년 5개 내역사업 모두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23년 예산 현액 55억원 전액이 미교부 불용(집행률 0%)되었음.

(3) 교부 측면: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교부하여 대부분 이월되거나, 분할교부 규정을 위반 또는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6] 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지방비 부담능력・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집행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별 집행여력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최소 연 두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 사전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월금 규모가 상당한 등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예산을 전액 교부하여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음.

---

1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민간보조사업/12. 자치단체보조사업-세부지침-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을 연말에 교부하여 절대적인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거나, 두 차례로 나누어 교부하였으나 2회 교부 당시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또는 1회차와 2회차 교부 사이의 시일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등 지침의 당초 취지에 반하여 형식적으로만 지침을 준수한 사례도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말 교부 및 이월 지양 필요

보건복지부의 **'긴급치료병상 추가 확충'** 사업은 감염병 재난 위기 시 사망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중증환자 및 응급·분만·투석·소아 환자 등 특수환자치료 목적을 위한 상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민간보조(국비 50%) 사업으로, 최종사업계획이 승인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예산액 2,573억원 중 2,572억 1,000만원을 교부(교부율 99.9%)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건축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교부를 실시하였고, 특히 2023년 11월 이후에야 의료기관 대상 교부가 이루어져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액은 360억 3,900만원(실집행률 14.0%)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전액 이월되었음.

보건복지부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은 만성 적자로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지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국비 50%) 사업으로, 교부 자체가 2023년 10월에야 이루어져 사실상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었음에도 2023년 예산현액 10억원 중 9억 9,900만원을 교부(교부율 99.9%)함에 따라, 결국 전액 미집행(실집행률 0%) 및 이월되었음.

(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교부하도록 한 규정 위반 또는 형식적 준수 지양 필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은 교통·건물·환경 등 도시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구축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사업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산현액 30억원 중 26억 2,500만원이 교부(교부율 87.5%)되었고, 교부 자체도 12월에 이루어져 실집행률은 28.6%에 그치고 나머지 18억 7,500만원은 이월되었음.

특히 국토교통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12월에 예산을 교부하면서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분할 교부를 위하여 굳이 두 차례로 나누어 교부

하였고, 일부 자치단체(경상남도)에는 12월 28일에 1차 교부, 12월 29일에 2차 교부를 실시하는 등 두 차례 교부 사이에 하루 차이를 두고 무의미한 분할 교부를 실시하였음.

행정안전부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도심지 내 저지대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시설[17] 설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사업으로,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1차례에 전액 교부하거나, 짧은 간격으로 2차례에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이로 인해, 2023년 예산액 784억 9,700만원이 전액 교부(교부율 100%)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900억 800만원 중 실집행은 646억 2,500만원(실집행률 71.8%)에 그쳐 250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3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통일부의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중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은 통일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사업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된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2023년에도 예산현액 41억 1,200만원 전액이 1회 또는 2회에 걸쳐 교부(교부율 100%)되었으나, 실집행률은 26.4%로 저조하였음.

국가유산청의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지정지구 육성 및 고도주민활동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보조(경상보조 국비 50%, 자본보조 국비 70%)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고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고려 없이 2023년 예산현액 62억 7,600만원 전액이 교부(교부율 100%)되어 실집행률이 36.5%에 그치고 43억 9,2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특히 2차 교부 당시 일부 사업은 실집행이 전혀 없음에도 예산의 각 50%씩이 2회로 나누어 기계적으로 교부되었음.

17) 최대강수량을 일시 저장하는 장치

(다)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 교부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식산업센터(자율)(제주)(세종)’** 사업은 비수도권지역(자율), 제주, 세종지역에 중소기업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70%) 사업으로,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2023년 보조사업자 단계의 전년도 이월액이 약 504억원 규모로 상당함에도 예산현액 1,394억 400만원 전액이 교부(교부율 100%)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50.2%로 저조하였음. 2023년 총 31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중 21개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이고, 이 중 15개는 2023년 교부액의 80% 이상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개는 실집행액이 전무하였음.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건립(지역자율계정)’** 사업은 가족교육·상담·자녀돌봄 등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정액보조)[18] 사업으로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고,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전년도 이월액이 많음에도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2023년 예산현액 146억 6,000만원이 전액 교부(교부율 100%)되어 실집행률이 60.5%로 저조하였음.

18) 기본형 10억 이하, 확장형 15억 이하

(4) 실집행 측면: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 집행 시정 필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동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다수 나타났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지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19]에서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주요 의무]

조항	조제목	조문 주요 내용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26조의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9)「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조항	조제목	조문 주요 내용
제26조의10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27조의2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34조	별도계정(計定)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제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부기등기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 구분계리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전용 등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증액한 후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음.

따라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임.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보조금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 교부취소,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가) 기한 내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미준수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0]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1]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에 보조사업을 추진한 45개 부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정산 대상 보조사업 수 총 10,731개[22] 중 1,056개 사업이 법령에 따른 기한 내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기한 내 제출률 90.2%), 이 중 18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삭감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음.

특히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기한 내 제출률은 85.5%로 민간보조사업(93.5%)보다 더 저조하였고, 전체 보조사업 수 대비 제재조치 사업 수도 더 적었음.

[2023년 부처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 %)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농림축산식품부	1,763	1,733	98.3	-	530	504	95.1	6
해양수산부	472	404	85.6	-	1,142	1,110	97.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35	1,035	100	-
문화체육관광부	118	76	64.4	-	645	497	77.1	3
국가보훈부	12	9	75.0	-	712	676	94.9	2
보건복지부	329	204	62.0	2	370	300	81.1	3
기획재정부	223	161	72.2	-	234	229	97.9	-
국토교통부	264	198	75.0	-	58	51	87.9	-
산업통상자원부	43	30	69.8	1	240	234	97.5	-
환경부	192	4	2.1	-	70	23	32.9	-
외교부	243	243	100	-	7	7	100	-
대법원	229	229	100	-	4	4	1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15	93.8	-	154	154	100	-
질병관리청	110	110	100	-	45	45	100	-
중소벤처기업부	9	6	66.7	-	134	128	95.5	-
특허청					143	143	100	-
산림청	87	84	96.6	-	55	55	100	-
국가유산청	80	61	76.3	-	56	54	96.4	-
여성가족부	70	57	81.4	1	51	50	98.0	-
금융위원회					99	99	100	-

22) 내역사업 단위 기준으로 자치단체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수를 더한 수임(다만, 한 내역사업에 자치단체보조 예산과 민간보조 예산이 모두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

(단위: 개, %)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방위사업청					91	84	92.3	-
법무부	3	3	100	-	77	77	100	-
교육부	4	2	50.0	-	71	66	93.0	-
고용노동부	33	26	78.8	-	41	37	90.2	-
농촌진흥청	61	61	100	-	4	4	100	-
국방부	1	1	100	-	50	50	100	-
국세청					34	33	97.1	-
식품의약품안전처	16	16	100	-	15	15	100	-
경찰청	26	26	100	-	1	1	100	-
공정거래위원회	14	14	100	-	12	12	100	-
행정안전부	22	20	90.9	-	3	3	100	-
통일부	2	2	100	-	15	15	100	-
국회					16	10	62.5	-
재외동포청					16	16	100	-
방송통신위원회					14	14	100	-
국가인권위원회					12	12	100	-
소방청	8	8	100	-	1	1	100	-
국민권익위원회					8	8	100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	6	100	-
해양경찰청					3	3	100	-
새만금개발청	3	3	1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10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1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100	-
합 계	**4,455**	**3,808**	**85.5**	**4**	**6,276**	**5,867**	**93.5**	**14**

주) 부처 순서는 2023년 정산대상 보조사업 수 합계 순임
자료: 각 부처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이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 중앙관서의 장은 차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교부 취소, 보조금 반환 등 조치를 취하며,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을 집행 잔액을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서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용 증액 및 이월

보조사업의 이·전용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필요범위 내에서만 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에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용을 통해 증액한 후 이월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함.

「국가재정법」 제46조에서는 전용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무지출, 기관운영 필수경비, 불가피한 사정이나 재해대책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4]에서도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

2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 ·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 · 관 · 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 · 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예산의 이·전용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경비배분 변경과 이월 등을 제한하는 것은 되도록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안에서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용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25]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조사(2023. 10월)를 통해 확인된 치료비 부족분 등 필요 예산 333억원을 2023년 12월 27일에 이·전용을 통해 확보한 후 대부분 차년도로 이월하였는데, 재정소요 추계 시 지자체의 실집행 가능성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과다한 금액을 이·전용 증액하였음.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재정소요 추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미지급액 (10월말 기준 조사) (a)	의료기관 미청구액 (b)	중증환자 추가소요액 (c)	실부족액 합계 (a+b+c)
예상 소요액	215	93	25	333

주 1) 215억원 =330억원(지자체 미지급액, 10월말 기준 조사) - 115억원(지자체 간 조정을 통한 추가 집행)
2) 93억원: 의료기관 미청구액(치료비 발생은 했으나 지자체에 청구하지 않은 건) 조사 결과
3) 25억원 = 22,700명(1日 확진환자) x 0.1%(중증입원율) x 1,874천원(단가) x 120일(4개월) x 50%(국비보조율)
- 단가 1,874천원 = 2,840천원(중증 환자 평균 치료비 본인부담금) x 66%(평균 지원율)

자료: 질병관리청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C)	실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10,320	33,300	43,620	16,308	27,313	-	16,308	63,372	79,679	43,107	26,364	10,208	54.1%

자료: 질병관리청

이·전용 증액에 따른 2023년 예산현액은 43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163억 800만원은 당해연도에 교부(교부율 37.4%)되고, 273억 1,300만원은 이월되어 2024년에 교부되었는데, 지자체는 2024년 4월말 현재 2022년 교부액(재이월분) 조차 모두 집행하지

25)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감염병 2차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지자체로 신청하면, 지자체(내국인인 경우, 국비 50%) 또는 질병관리청(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에서 심사 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함.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실집행률은 2023년에도 54.1%로 저조한데 이어, 2024년에도 이·전용을 통해 확보된 이월 예산이 모두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는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용과 전용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집행 가능성을 과다하게 예측함으로써 결국 국가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 사례로, 향후 구체적이고 면밀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범위 내에서만 이·전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 구분계리 의무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26]는 보조사업자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구분계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는 보조사업별로 기관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121.6억원)'[27]의 보조사업자인 군산시와 부안군의 경우, 다수의 보조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한 후, 보조금 예치금액와 예치기간, 금리를 통해 이자발생액을 사후추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28]

---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7)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은 새만금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국비 100%)임. 2023년 사업은 옥구배수지 건설(군산시)과 계화배수지 건설(부안군)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8) 군산시는 0.1%(수자원공사와 위수탁계약 시 금리 결정, 국민은행 일반입출금 계좌 금리), 부안군은 0.6%(직접수행, 농협은행 금리 적용) 연이율 적용

(라)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고 편성명목과 달리 집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29]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또는 불용예상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당초 편성명목과 다른 내역에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 시정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거점 운영**(101.7억원)'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등을 현지에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조(정액보조) 사업으로, 신규 센터 5개 신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개소 지연에 따라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불용예상액 29억 1,500만원을 기존 10개 센터에 사전배정하여 집행하였음.

농촌진흥청의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20억원)' 사업은 고위험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정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행잔액을 불용하지 않고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집행하였음.

(마) 자부담 부과방식 개선 필요

보조사업 자부담 여부 및 자부담률은 사업목적 및 수혜자 현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단순히 지원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산업 육성**(368.4억원)' 사업은 음악산업 종사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음악 제작지원·유통 및 홍보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보조(정액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부 내내역사업의 자부담 여부를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 지원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민간보조사업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직접지급하는 유형과 위탁운영사를 통하여 간접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직접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10% 이

2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상 자부담을 부과하고,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수혜자에게 자부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임.

따라서 향후 자부담을 부과할 때에는 단순히 사업추진 방식이 아니라 수혜자의 영세유무, 정책적 지원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자부담 여부 및 자부담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바)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미반납 또는 반납 지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30]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등에는 차년도 2월까지(자치단체보조사업은 3월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와 제31조제2항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31]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사업완료 다음 연도 내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해당 보조사업의 추진방식 특성에 따라 집행잔액 등이 반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30)「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 · 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의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2,162.8억원)’ 사업은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서울 40~60%, 지방 70~90%) 사업으로, 국비와 지자체의 매칭액을 예탁금으로 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절차로 인해 사업의 집행잔액이나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이 지연되고 있음.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매칭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금을 위탁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예탁금 관리와 개별 가입자에 대한 계좌 적립 또는 해지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함.

예탁금 수입 중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 시에는 보조금 예산이 교부되는 경로의 역순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반납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비로소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징수됨.

이에 따라, 2024년 5월말 현재까지 2023년 총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4.0%인 103개의 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2016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보건복지부에 반납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함.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률 제고를 위하여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독려를 실시하는 동시에, 집행잔액 반납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제도개선: 자치단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미반납 개선 필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 완료되어야 함에도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자치단체보조금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지자체의 주된 미반납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지자체 추경 미편성인데, 연말까지 추경편성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낮으며, 미반납된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세출 재원으로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각 부처는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의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향후 보조금 반납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32]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 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와 제31조제2항[33]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및 교부내용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교부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당초 교부된 금액과의 차액(집행잔액 및 이자, 교부취소액 등)을 반납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34]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3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잔액 등의 반납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2023년 부처별 자치단체보조사업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보조금 반납액이 통지된 자치단체보조금(징수결정액) 4조 739억원 중 2023년 내 반납이 완료된 금액(수납액)은 3조 124억원(수납률 73.9%)으로, 반납대상액이 있는 총 30개 부처 중 23개 부처의 자치단체보조사업에서 1조 616억원이 연내 반납되지 않았음.

이 중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반납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476억원을 제외하면, 반납 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자치단체보조금은 2023년 말 기준 총 1조 140억원 수준임.

2023년 말 기준 반납 기한이 경과한 미반납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다음으로 질병관리청, 환경부 순임.

[2023년 부처별 자치단체보조사업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가)	과거연도 미반납에 대한 재징수 결정액(나)	당해연도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액 (다)	과거연도 미수납에 대한 수납액 (라)	당해연도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률 (다/가)	전체 수납률 (B/A)	전체 (A-B)	과거 연도 (나-라)	지자체 예산 미편성 (C)	납기 미도래 (D)	기타 (E)
보건복지부	1,070,453	418,584	574,080	356,329	53.6	62.5	558,628	62,255	555,207	3,421	-
환경부	409,093	29,485	350,763	12,351	85.7	82.8	75,464	17,134	60,884	8,998	5,582
국토교통부	660,375	5,236	656,062	2,070	99.4	98.9	7,479	3,166	2,902	1,875	2,702
농림축산식품부	126,364	25,970	95,939	22,862	75.9	78.0	33,533	3,108	28,559	4,974	-
행정안전부	61,086	75,658	48,767	44,210	79.8	68.0	43,767	31,448	42,053	-	1,714
여성가족부	62,464	19,754	30,294	12,331	48.5	51.8	39,593	7,423	37,971	-	1,622
해양수산부	34,520	15,425	22,335	6,295	64.7	57.3	21,315	9,130	20,912	403	-
문화체육관광부	56,209	18,524	34,836	11,331	62.0	61.8	28,566	7,193	7,193	21,373	-

3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단위: 백만원, %)

소관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가)	과거연도 미반납에 대한 재징수 결정액(나)	당해연도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액 (다)	과거연도 미수납에 대한 수납액 (라)	당해연도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률 (다/가)	전체 수납률 (B/A)	전체 (A-B)	과거 연도 (나-라)	지자체 예산 미편성 (C)	납기 미도래 (D)	기타 (E)
산림청	44,574	4,933	26,897	2,889	60.3	60.2	19,721	2,044	15,993	1,552	2,176
기획재정부	30,534	4,181	27,183	1,589	89.0	83.0	5,943	2,592	3,022	2,921	
산업통상자원부	28,561	30,386	26,459	24,767	92.6	86.9	7,721	5,619	5,621	2,100	-
국가유산청	32,685	11,298	19,386	9,514	59.3	65.7	15,083	1,784	15,083	-	-
교육부	6,401	-	6,401	-	100.0	100.0	-	-	-	-	-
고용노동부	29,752	72	19,142	72	64.3	64.4	10,610	-	10,600	-	10
질병관리청	687,863	59,804	498,975	58,027	72.5	74.5	190,665	1,777	190,665	-	-
농촌진흥청	1,988	-	798	-	40.1	40.1	1,190	-	1,190	-	-
중소벤처기업부	58	-	58	-	100.0	100.0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87	1,208	3,473	383	96.8	80.4	939	825	939	-	-
식품의약품안전처	791	226	646	226	81.7	85.7	145	-	145	-	-
통일부	698	1	632	1	90.5	90.5	66	-	66	-	-
소방청	2,383	-	2,131	-	89.4	89.4	252	-	252	-	-
법무부	1,485	413	769	280	51.8	55.3	849	133	849	-	-
새만금개발청	52	8	52	8	100.0	100.0	-	-	-	-	-
대법원	280	1	280	1	100.0	100.0	-	-	-	-	-
국가보훈부	177	-	177	-	100.0	100.0	-	-	-	-	-
외교부	254	-	243	-	95.7	95.7	11	-	-	-	11
경찰청	18	3	-	-	-	-	21	3	21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	-	-	-	-	6	-	-	6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9	-	29	-	100.0	100.0	-	-	-	-	-
국방부	16	-	16	-	100.0	100.0	-	-	-	-	-
합 계	**3,352,756**	**721,170**	**2,446,823**	**565,536**	**73.0**	**73.9**	**1,061,567**	**155,634**	**1,000,127**	**47,623**	**13,817**

주1) 부처 순서는 2023년 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2) 미수납 사유 중 기타는 불납결손 등임
자료: 각 부처 제출

또한 전체 징수결정액 중 2023년에 반납의무가 최초로 발생하여 반납액이 통지된 자치단체보조금(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을 제외한 7,212억원은 이전년도까지 반납이 완료되지 않아서 반납통지가 재차 이루어진 금액(과거연도 미반납에 대한 재징수 결정액)으로, 2023년 총 징수결정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556억원은 2023년 말까지도 반납이 완료되지 못하였음.

과거연도 미반납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순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가장 많은 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순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부처별 미반납 사례 중 최초 반납통지일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에 해당하고 1천만원 이상의 미반납액이 있는 자치단체보조사업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보조사업 예산이 2023년 말까지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장기간에 걸친 미반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9개 부처 341억원 규모에 달하였음.

[자치단체보조사업 장기 미반납 주요 사례]

(단위: 백만원, 건)

소관	최초반납 통지연도	대상 사업수	반납사유	반납통지액	미반납액
환경부	2015	1	'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97	97
	2016	2	'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31	331
	2017	1	'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51	151
	2018	5	'16~'1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51	251
	2019	9	'17~'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241	4,241
	2020	12	'17~'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520	2,520
	2021	10	'19~'2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273	4,273
	소계			**11,864**	**11,864**
문화체육 관광부	2014	1	'1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8	18
	2015	3	'12~'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87	87
	2018	2	'11~'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635	635
	2019	1	'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660	660
	2020	4	'17~'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43	143
	2021	5	'14~'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891	4,891
	소계			**6,434**	**6,434**
보건복지부	2018	1	'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3	13
	2019	1	'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367	4,367
	2020	1	'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0	20
	2021	14	'18~'2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607	1,607

(단위: 백만원, 건)

소관	최초반납 통지연도	대상 사업수	반납사유	반납통지액	미반납액
	소계			6,007	6,007
해양수산부	2016	5	'13~'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46	246
	2017	5	'12~'14,'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09	409
	2018	3	'13,'16~'1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09	109
	2019	10	'16~'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027	1,027
	2020	6	'14~'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50	250
	2021	5	'19~'2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865	1,865
	소계			3,906	3,906
국토교통부	2021	2	'17년도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환수	2,702	2,702
	소계			2,702	2,702
여성가족부	2019	1	'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9	19
	2020	3	'18~'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87	87
	2021	18	'12~'2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532	1,532
	소계			1,638	1,638
행정안전부	2017	4	'11~'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52	352
	2018	2	'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60	60
	2019	1	'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99	99
	2021	7	'18~'2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43	443
	소계			954	954
국가유산청	2020	5	'18~'1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22	122
	2021	6	'18,'2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43	443
	소계			565	565
질병관리청	2021	1	'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4	24
	소계			24	24
합 계				34,094	34,094

주1) 최초결의일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1천만원 이상의 자치단체보조금 미반납액
2) 부처 순서는 미반납 금액 순임
자료: 각 부처 제출

한편 지자체의 주된 미반납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지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94.2%가 이에 해당함.

지자체는 보조사업 완료 다음 해 3월까지 정산을 완료한 후,[35] 확정된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지자체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36] 추후 지자체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과

35) 사업이 당해연도 12월까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36) 세입과목(2023년 기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대칭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데, 지자체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반납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통상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추경 편성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반납기한이 2회계연도 이상 도과한 장기 미반납 사례가 많다는 것은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추경 편성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원인보다는 지자체의 반납 의지 부족에 일차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당해연도 내에 대칭되는 세출예산을 추경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지자체 결산 시 잉여금으로 처리되는데, 몇 년간 반납이 지연되는 것은 잉여금에 포함된 국고반환금이 지자체의 세출 재원으로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반납 의무와 구분계리 의무에 위반되는 것임.

그러나 자치단체보조금 미반납이 발생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는 지자체 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반납에 대하여 향후 조기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있을 뿐 이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고, 대규모 장기 미반납 사례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이나 구분계리 의무 위반 여부 등 법령 위반 유무를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정산 및 실적보고 자체도 기한 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절차도 지연된다면 국고로 환수되어 다른 중요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국가 예산이 장기간 배분되지 못함에 따른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초래됨.[37]

따라서 각 부처는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의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장기 미반납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보조금 반납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음.

37) 앞서 살펴본 것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기한 내 반납되지 못한 자치단체보조금의 규모는 1조 140억원 규모임.

3.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가. 개 요

(1) ODA 개념 및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라 함)란 한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수원국)의 경제개발·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임. 다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ODA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수원국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는 다자원조로 나뉘고, 양자원조는 다시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 ODA와 유상 ODA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1]가 ODA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유상 ODA를, 외교부는 무상 ODA를 주관함.

ODA 시행기관은 주관기관 감독 하에 ODA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기관들인데, 유상 ODA는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시행하고, 무상 ODA는 외교부 감독 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44개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

[ODA 형태별 담당기관 현황]

ODA 형태		법적 근거	주관기관(시행기관)	총괄기관
양자원조	유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EDCF)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KOICA), 45개 개별기관 (지자체 12개 포함)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개별 법률 등	외교부, 17개 개별기관	

자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

(2) 2023회계연도 ODA 사업 결산

2023년 ODA 사업은 33개 부처의 17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2023년도 예산현액 4조 5,496억 3,400만원 중 4조 3,279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1%)되고 245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71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부처별 ODA 사업수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감사원	일반회계	1	297	297	294	-	3
경찰청	일반회계	1	2,456	2,771	2,719	-	52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	23,005	23,005	23,005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1	72	72	63	-	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1	7,002	7,002	7,002	-	-
	우편사업특별회계	1	1,826	1,826	1,788	-	38
	일반회계	7	14,353	14,353	13,853	-	500
관세청	일반회계	2	11,046	11,046	10,757	-	289
교육부	일반회계	3	123,666	123,666	121,214	11	2,44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회계	8	11,138	11,159	10,981	-	178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1	160	160	151	-	9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4	31,363	37,197	28,563	5,995	2,639
기상청	일반회계	2	7,285	7,285	7,278	-	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12	1,558,472	1,575,986	1,449,911	14,398	111,678
	일반회계	8	254,166	254,210	229,108	1,202	23,90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130	130	120	-	10
	일반회계	3	112,418	112,772	112,303	333	136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1	33,417	33,417	32,275	-	1,142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1	4,791	4,815	4,814	-	1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	1,600	1,600	1,571	-	29
	일반회계	10	12,340	12,340	12,205	-	135
법무부	일반회계	2	2,665	2,667	2,613	3	5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9	70,954	70,954	70,954	-	-
산림청	일반회계	2	19,561	19,561	19,549	-	1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	2,498	2,498	2,498	-	-
	일반회계	4	46,993	46,993	46,993	-	-
	전력산업기반기금	1	21,149	21,149	21,149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3	5,962	5,962	5,794	111	57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2	9,142	9,142	9,026	-	116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6	37,589	37,589	36,650	-	939
	일반회계	45	1,969,205	1,969,227	1,917,421	-	51,806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1	27,032	27,032	27,022	-	10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1	184	184	184	-	-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	5,548	5,548	5,548	-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일반회계	1	412	412	262	-	150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3	14,253	14,422	13,762	609	51
통계청	일반회계	1	4,227	4,227	4,151	-	76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3,390	3,390	3,164	-	226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28,730	29,818	27,722	1,926	170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7	16,339	16,339	16,069	-	270
환경부	일반회계	1	7,121	7,121	7,116	-	5
	환경개선특별회계	4	20,290	20,290	20,290	-	-
합 계		170	4,524,247	4,549,634	4,327,912	24,588	197,134

주) 세부사업명 뒤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연례적인 예산현액 변경 과다 개선 필요

2023년 ODA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95.1%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으나, 이는 집행과정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예산을 변경한 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므로, 정부는 보다 충실한 예산편성을 통해 국회 심의 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ODA 예산의 대표 사업은 유상 ODA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 단위사업'과 무상 ODA인 외교부 일반회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있음. 이들 두 사업의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총 2조 8,008억원(1조 5,030억원 및 1조 2,979억원)으로 ODA 예산 전체의 61.9%(33.2% 및 28.7%)를 차지함.

두 사업은 최근 총량적인 집행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세부사업 이하에서 집행 부진 사업의 예산현액을 집행 원활 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체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음.

우선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2018회계연도까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019회계연도부터는 집행률 90% 이상으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임.

[2017~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대개도국차관(ODA) 단위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당초계획액	954,468	1,058,101	1,141,231	1,184,879	1,258,196	1,333,423	1,502,976
계획현액(A)	954,468	1,058,101	1,141,231	984,879	1,258,196	1,230,556	1,502,976
집행액(B)	748,672	857,923	1,051,778	902,423	1,226,658	1,217,604	1,396,071
집행률(B/A)	78.4	81.1	92.2	91.6	97.5	98.9	92.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는 세부사업 이하 단위에서 집행부진 사업의 계획액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자체변경)하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아시아차관·아프리카차관·중동-CIS차관 및 중남미차관 등 4개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감액한 후 해당 재원으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의 계획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음.

최근 2회계연도 간 세부사업별 당초 계획액 대비 수정 계획액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아시아차관 72.6%, 아프리카차관 96.3%, 중동-CIS차관 26.8%, 중남미차관

78.5%,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61.7%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아시아차관 70.9%, 아프리카차관 77.0%, 중동-CIS차관 8.3%, 중남미차관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29.1%로, 2022년 대비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은 당초 계획액의 2배 이상이 증액 변경되었음.

[최근 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내 세부사업별 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계획액			2023계획액		
	당초(A)	수정(B)	B/A	당초(C)	수정(D)	D/C
아시아차관	639,379	464,159	72.6	705,400	500,307	70.9
아프리카차관	319,980	308,175	96.3	304,852	234,680	77.0
중동-CIS차관	79,531	21,348	26.8	131,972	10,946	8.3
중남미차관	47,171	37,006	78.5	36,396	13,918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47,362	399,868	161.7	324,356	743,125	229.1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2023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수원국 인도네시아) 등 5개 프로그램차관[2] 사업으로 총 4,793억 2,200만원의 계획액 중 4,70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액에 '미정'으로 반영된 1,029억원 대비 3,675억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임.

[최근 2회계연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중 계획변경을 통한 프로그램차관 신설내역]

(단위: 백만원)

국가	내역사업명	2022계획			2023계획		
		당초	수정	증감	당초	수정	증감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분야 효율성 개선프로그램 Ⅲ	-	66,020	66,020	-	-	-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	-	52,816	52,816	-	78,474	78,474
	산업현대화 및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	-	-	77,508	77,508
방글라데시	기후탄력적 통합개발 프로그램차관	-	-	-	-	121,500	121,500
에콰도르	에너지전환·투자촉진 지원 프로그램(EDCF-IDB협조융자퍼실리티기금지원)	-	-	-	-	66,840	66,840
인도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 Ⅰ	-	-	-	-	135,000	135,000
미정	프로그램차관	60,000	-	△60,000	102,900	-	△102,900
계획변경 통한 프로그램차관 소계		60,000	118,836	58,836	102,900	479,322	376,4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프로그램차관은 개별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부문별 또는 종합적 경제개발 및 자본투자를 포괄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패키지 형태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프로그램차관은 도로·건물 등 인프라건설이 아니라 수원국의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지원 성격의 차관으로서 약정액 전액이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구속성 차관’에 해당하며, 공정률에 따라 집행하는 인프라건설 등 일반 ODA 사업과 달리 공정률에 제한받지 않고 일시에 전액 집행가능하여 집행실적 제고에 용이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 일시적으로 집행이 지연된 사업의 미집행 예산을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프로그램차관 사업으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나, 프로그램차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은 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차관을 당초 계획에 비해 대규모로 초과 집행한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3)]

다음으로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동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의 2018~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 이상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8~2022회계연도 외교부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국가별 협력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사업 건수	예산액 (A)	예산현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액 (C)	집행률	
							예산액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2018	267건	3,278	3,378	228	30	3,120	95.2	92.4
2019	264건	3,466	3,412	85	68	3,259	94.0	95.5
2020	290건	3,746	2,866	39	166	2,661	71.0	92.8
2021	361건	4,052	3,651	47	239	3,365	83.0	92.2
2022	377건	4,330	3,923	14	194	3,715	85.8	94.7
2023	394건	5,190	4,769	26	188	4,555	87.8	95.5
2024	424건	6,021						

주 1)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 및 실집행액 기준
2) 소규모 무상원조·분쟁 및 취약국지원·사업효과성·사업행정비 제외, 국별협력사업 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그러나 대표적으로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베트남(ODA)’[4)] 사업을 살펴보면, 2023년 수행된 사업 26건 중에서 본예산과 집행액

3) 연례적으로 계획변경을 통해 주로 구속성 차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차관 등 4개 세부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비구속성인 프로그램차관 사업을 신설·확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이 다음과 같이 9건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현액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체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도 외교부 베트남(ODA) 사업 내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큰 사업 현황(KOICA 단계)]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전용 조정액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 (C-A)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① 베트남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18-'25/550만불)	1,500	**△1,490**	10	-	-	△1,500	-
②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19-'23/1,500만불)	3,600	**2,830**	6,430	6,014	**93.5**	2,414	**167.1**
③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20-'25/900만불)	1,600	**2,542**	4,142	3,823	**92.3**	2,223	**238.9**
④ 베트남 탱화성 Mã강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20-'25/900만불)	2,600	**△1,640**	960	722	**75.2**	△1,878	**27.8**
⑤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 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20-'25/1,050만불)	1,835	**△1,125**	710	645	**90.8**	△1,190	**35.2**
⑥ 베트남 중부지역 꽝빈성 평화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21-'26/1,000만불)	1,450	**2,020**	3,470	3,067	**88.4**	1,617	**211.5**
⑦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UNDP)('22-'26/2,500만불)	3,750	**△2,259**	1,491	1,462	**98.1**	△2,288	**39.0**
⑧ 베트남 정부업무 평가제도 개선 및 집행 모니터링평가(M&E) 시스템 구축 사업('22-'25/300만불)	1,063	**△1,063**	-	-	-	△1,063	-
⑨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22-'25/810만불)	1,700	**△1,700**	-	-	-	△1,700	-

주) KOICA 단계에서 집행액(B)이 본예산(A) 대비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내역사업에 대해 작성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총 394건의 국가별 협력사업 중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인 사업이 123건(31.2%)으로, 매년 30% 이상의 사업이 실제 집행단계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은 90% 이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집행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초과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4) 세부사업: 베트남(ODA)(2431-401)

[외교부 국가별 협력사업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KOICA 단계) 현황]

(단위: 건)

구분	KOICA 단계 총사업수	60% 미만 집행사업(KOICA 집행단계)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	예산 미배정
2021	361	122 (33.8%)	44 (12.2%)	20 (5.5%)
2022	377	126 (33.4%)	40 (10.6%)	6 (1.6%)
2023	394	123 (31.2%)	40 (10.2%)	17 (4.3%)

주 1)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는 0원 사업 제외
2) 예산 미배정은 본예산 및 전년도이월액이 없는 0원 사업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에서 총량적인 집행률과 함께 세부사업 이하 단위의 집행률도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ODA 사업의 총 지출 규모뿐 아니라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등 세부적인 지출 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집행실적뿐 아니라 세부사업 이하 실질적인 사업 단위 각각의 집행이 계획(예산)대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부터 세부사업 이하 단위로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액을 산정함으로써 국회가 보다 정확한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ODA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이용・전용 등 예산현액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다자협력 분야 ODA 사업 개선과제

다자협력은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으로, 크게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출자와 UN 및 기타 기구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고,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순수 다자와 국가/분야 등 지원 용처를 특정하는 다자성 양자로도 분류됨.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사업 총 규모 산출 시 다자성 양자 예산은 양자협력 규모에 포함되며, 순수 다자 예산은 매년 변동이 있으나 전체 ODA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5)]

5)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가 회원이 되며, 개도국의 개발 사업지원을 주요 목적 또는 일부 목적으로 하고, 출자・출연된 재원은 공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재원을 국제기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라도 공여국이 지원대상 국가나 목적에 제한을 두었다면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 ODA로 분류함.

[연도별 ODA 사업 총 규모(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 자	23,877 (78.3)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유상	10,581 (44.3)	11,412 (45.8)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6)
무상	13,296 (55.7)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다 자	6,605 (21.7)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합 계 (총 ODA)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전년대비 증감액(증감률)	4,123 (15.6)	1,521 (5.0)	2,267 (7.1)	3,273 (9.6)	1,840 (4.9)	8,388 (21.3)	14,858 (31.1)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런데 다자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지만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 등이 발견되고 있어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펀드 출자 시 성과 및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0만 달러를 아시아개발은행(ADB) 미래탄소펀드에 출자하였으나, 이 중 614만 달러를 투자하여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전액 감액손실 처리되었고, 169만 달러는 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1,216만 달러는 2023년 기금으로 회수되긴 하였으나 장기간 투자되지 못한 채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으므로, 향후 펀드 출자 시 출자에 따른 성과 및 회수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출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의무감축국 전환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선진금융기법 습득 및 경험축적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이 주관하는 미래탄소펀드의 운용에 참여하고자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미래탄소펀드 출자계획을 수립하였음.[6)]

이에 2009년 9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에 2,0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의결하였고,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자약정액

6)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는 한국,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 포스코, 에네코(네덜란드 민간에너지기업)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되었고, 총 출자규모는 1억 1500만 달러이며, 아시아개발은행은 펀드 수탁관리·운용기관으로서 CDM 사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6개 출자자에게 투자비율대로 배정하였음.

총 2,000만 달러를 미래탄소펀드에 순차적으로 납입하였음.

이후 우리나라는 2010년~2014년 펀드 출자액 2,000만 달러 중 614만 달러로 15건의 사업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총 682,029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확보하였으며, 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 약 169만 달러를 제외한 약 1,216만 달러는 투자되지 못하였고, 2022년 10월 미래탄소펀드가 청산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23년 투자잔액 157억 6,000만원이 회수되어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반납되었음.[7)]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 투자실적]

구 분	사업건수	투자금액(달러)	탄소배출권(CER) 수취
미래탄소펀드	36건	50,573,608	8,088,258
한 국	15건	6,142,859	682,0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2010년 전후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위축되었으며,[8)] 2021년에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2013년 이후 취득한 탄소배출권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2021년도 결산 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보유한 탄소배출권은 전액 감액손실 처리되었음.[9)]

결과적으로 출자액 2,000만 달러 중 614만 달러는 전액 손실 처리되었고, 169만 달러는 수수료 및 펀드운용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1,216만 달러는 기금으로 회수되긴 하였으나 장기간 투자되지 못한 채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유사한 펀드 출자 시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에 따른 성과 및 회수가능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출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다자성 양자 사업 추진 시 국제기구 실집행을 고려한 사업관리방안 모색 필요

외교부 다자성 양자 사업의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속도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에 사업비가 과다배정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의 실집행상황을 고려

7) 대외경제협력기금-정부출자주식매각대(78-781)(개발금융국)

8) 탄소배출권 시세는 CER당 2009년 11.14유로에서 2012년 0.7유로로 크게 하락하였음.

9) 감사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펀드 출자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대부분 2013년 전에 취득하여 탄소배출권의 실질적 효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다자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 양자협력이 어려운 지역, 국제기구의 전문성 활용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다자성 양자 사업(이하 “멀티바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멀티바이 사업은 국제기구별로 회계주기가 상이하고 사업약정시점에 따라 약정액 지급 및 연차보고서 제출시점도 분산되어 국제기구의 실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로 인해 국제기구로의 약정액 지급 시 기존 집행상황과 향후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내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은 국제적인 취약국 지원 파트너십 강화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분쟁 및 취약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43억 6,800만원 중 328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어 표면적으로는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10)]

[2023년도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D)	증감 (D-A)	
	본예산(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B)			(D-A)/A
분쟁 및 취약국 지원(내역사업)	33,676	34,368	32,831	95.5	123,352	89,676	266.3
아시아태평양	7,480	7,704	7,454	96.8	16,810	9,330	124.7
아프리카	16,380	16,756	16,358	97.6	73,048	56,668	346.0
중남미	4,431	4,429	4,410	99.6	1,819	△2,612	△58.9
17 중동・CIS	5,385	5,479	4,609	84.1	31,675	26,290	488.2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그러나 국제기구 단계의 누적 실집행액 확인이 가능한 일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① ‘아이티 UNDP 담므마리군 라헤면 태풍 매튜 피해 이재민 지원사업(’17-’24/255만불)’의 경우 ’17년 12월 약정 체결 이후 정세 불안 및 치안 악화의 역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음.

10) 일반회계-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1-411),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2-403),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3-405),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4-402)(개발협력국・한국국제협력단)

[아이티 UNDP 담므마리군 라헤면 태풍 매튜 피해 이재민 지원사업('17-'24/255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17	12월	430,000	430,000	'19.1월	'17~'18년	232,058
2차	2018	12월	1,017,000	1,447,000	'20.1월	'19년	372,920
3차	2019	12월	1,033,578.82	2,480,578.82	'21.1월	'20년	697,256
					'22.1월	'21년	1,991,496
					'23.1월	'22년	2,154,252
					'24.1월	'23년	2,241,115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18년 및 '19년 12월 각각 2~3차 약정액을 지급한 결과, 국제기구 단계에서는 '17년 12월 지급한 1차년도 약정액이 '19년까지도 집행되지 못하였고, '24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19년에 지급한 약정액의 경우 5년에 걸쳐 집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② 또 다른 예로 '동티모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복원력 강화 사업(Mercy Corps)('19-'24/300만불)' 의 경우, '19년 9월 약정 체결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을 거쳐 계속 추진하는 중으로 '24년 연내 종료할 예정임.

[동티모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복원력 강화 사업(Mercy Corps)('19-'24/300만불)]

(단위: USD, %)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률
	연도	날짜					
1차	2019	10월	1,000,000	1,000,000	'20.1월말	'19.9.12. ~ '19.12.31.	0.91
2차	2020	8월	1,400,000	2,400,000	'21.1월말	'20.1.1. ~ '20.12.31.	16.0
3차	2021	5월	600,000	3,000,000	'22.1월말	'21.1.1. ~ '21.12.31.	36.0
					'23.1월말	'22.1.1. ~ '22.12.31.	65.64
					'24.1월말	'23.1.1. ~ '23.12.31.	90.16
					'24.1월	'23년	2,241,115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 또한 사업 초년도인 '19년 10월에 100만불을 지급한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20년 8월에 140만불, '21년 5월에 60만불을 추가로 지급하여 약정액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음. 그러나 '22년 1월말 국제기구가 제출한 연례보고서상 '21년까지의 누적집행률이 36%에 불과하여, 국제기구의 사업 추진속도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례로 보임.

③ 다음 '동티모르 진실화해센터 디지털화를 통한 평화인식증진사업(UNESCO)('21-'24/500만불)' 또한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 약

정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로, ’21년 지급한 약정액 120만불이 ’23년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22년 및 ’23년에 국제기구에 추가 약정액이 지급되고 있음.

[동티모르 진실화해센터 디지털화를 통한 평화인식증진사업(UNESCO)('21-'24/500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21	11.29.	1,200,000	1,200,000	’22.2.9.	’21.11.29. ~ ’21.12.31.	-
2차	2022	11.1.	1,500,000	2,700,000	’23.2.26.	’22.1.1. ~ ’22.12.31.	469,423.27
3차	2023	5.8.	1,150,000	3,850,000			
		9.18.	200,000	4,050,000	’24.2.29.	’23.1.1. ~ ’23.12.31.	772,534.28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다음 2개 사업 ‘솔로몬제도 재난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사업(IOM)(’22-’25/500만불)’ 및 ‘파푸아뉴기니 젠더기반폭력 및 주술관련폭력 피해 방지 사업(UNFPA)(’22-’26/500만불)’의 경우, 국제기구의 연례보고서가 10월에 제출됨에 따라 매년 연도말에 약정액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임.

이처럼 4분기에 연례보고서가 제출되는 사업은 집행점검이 완료된 이후 연도말에 국제기구로 약정액이 지급되고 있으나, 결산상 집행률은 100%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사업성과 체감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게 됨.[11]

[솔로몬제도 재난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사업(IOM)('22-'25/500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22	12.1.	772,762	772,762	’23.10.31.	’22.10.31. ~ ’23.7.31.	332,000
2차	2023	12.5.	540,000	1,312,762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파푸아뉴기니 젠더기반폭력 및 주술관련폭력 피해 방지 사업(UNFPA)('22-'26/500만불)]

(단위: USD)

약정액 차수	약정액 지급일		지급액	누적지급액	연례보고서 제출날짜	대상기간	누적집행액
	연도	날짜					
1차	2022	12월	570,000	570,000	’23.10.10.	’22.11.28. ~ ’23.8.31.	288,197
2차	2023	12월	760,000	1,330,000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국제기구로부터 연례보고서가 제출되면 KOICA는 약 2~3주간 사업평가와 협의를 거친 후 차년도 약정액을 지급하는데, 연례보고서 보완필요사항이 발생하여 약정액 지급시기가 더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함.

이와 같이 멀티바이 사업의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률은 저조한데도 사업 초기에 약정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거나, 매년 연도말에 약정액이 지급되어 예산이 조기집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멀티바이 사업의 추진속도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에 사업비가 과다배정되지 않도록 집행점검 시기 및 약정액 지급 일정 등에 대한 사업방안을 협의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2)]

(3) 산업통상자원부 ODA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전 보조금 전액 교부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보조금 교부시 협의의사록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ODA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기자재 구입비 등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은 전액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 두 사업의 진흥원에 대한 보조금 예산(계획)현액은 전액 교부되었음.[13)14)]

[2023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ODA)	43,331	43,331	-	-	43,331	43,331	-	-	69,58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2) 외교부는 2023년 국제기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표준약정서를 개정하여 사업 중간점검시 실집행률이 4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로부터 보완 실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수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향후 사업 추진전망을 고려하여 약정액 지급 일정이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두 ODA 사업의 보조사업자이자 전담기관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따라 자동차연구원 등 90여개 ODA 수행기관에 간접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정산 및 집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14) 일반회계-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1931-302), 전력산업기반기금-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5807-302)

[2023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에너지산업협력 개발지원(ODA)	21,149	21,149	-	21,149	21,149	-	-	21,14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의 ODA 사업은 수원국과 협의의사록[15]을 체결한 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을 미리 선정한 후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용되고 있음.[16]

그런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6개 과제의 경우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도 전에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한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기관에 2023년 예산에 반영된 총 25억 4,900만원을 진흥원에 전액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경우 2022년 신규사업 2개, 2023년 신규사업 3개에 대해 2023년 총 79억 1,50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이들 5개 과제에 대해서는 2024년 5월까지도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5)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s) : 수원국과 ODA 사업의 목적 및 기간, 대상분야, 공여국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측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

16)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3조(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과 양국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협의의사록의 체결) ① 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2023년 수행 과제 중 협의의사록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된 과제 내역(2024.6.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예산	2023년 예산	협의의사록 체결일자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 (ODA)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23~'27	9,780	900	2024-01-08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23~'27	9,600	800	2024-01-10
	라오스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446	186	2024-04-01
	투르크메니스탄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616	213	2024-04-02
	방글라데시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504	196	2024-04-23
	엘살바도르 디지털전환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942	254	2024-04-25
	합 계		25,888	2,549	
에너지 산업협력 개발지원 (ODA)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구축	'22~'25	16,912	3,001	미체결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22~'25	11,900	2,293	미체결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23~'26	14,992	409	미체결
	도미니카 배전자동화시스템(DAS)활용 효율향상	'23~'26	17,840	1,069	미체결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23~'26	16,156	1,143	미체결
	합 계		77,800	7,9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 이전의 ODA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시 협의의사록 체결 및 ODA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감사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에 의하면,[17] 이와 같이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보조금을 ODA 수행기관에 전액 교부한 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착수 이전에 기자재를 미리 구매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18]

17) 감사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2024.5.)

18) '콜롬비아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구축지원' 사업('20년~'24년/140.81억원)은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일정이 불확실함에도 사업비가 계속 교부되었고, 수행기관이 2020년 11월 체결한 61.4억 원 규모의 발전설비(총 4.5㎿) 구매계약의 납품 시기를 연기하게 하는 등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 위 발전설비가 국내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었음.

이에 앞에서 검토한 2023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6개 과제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5개 과제의 세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수 과제의 보조금에 기자재 구입비와 설계시공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진흥원에 교부하였음.

[2023년 협의의사록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된 과제 중 기자재 구입비 등이 포함된 과제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2023년 예산	기자재 구입비	설계 시공	협의의사록 체결일자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 (ODA)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23~'27	900	-	100	2024-01-08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23~'27	800	120	-	2024-01-10
	합 계		1,700	120	100	
에너지 산업협력 개발지원 (ODA)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구축	'22~'25	3,001	1,360	310	미체결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22~'25	2,293	851	628	미체결
	도미니카 배전자동화시스템(DAS)활용 효율향상	'23~'26	1,069	261	345	미체결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23~'26	1,143	484	462	미체결
	합 계		7,506	2,956	1,74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 구축' 과제와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과제는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 6월까지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는 등 사업지연 문제가 심각함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고, 진흥원은 이 중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과제의 보조금을 사업수행기관에 전액 재교부하였음.[19]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향후 ODA사업 추진 시 자본적 경비 등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20]

19)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보조금 예산현액 211억 4,900만원 중 148억원을 2023년 5월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차 교부하고, 남은 잔여 보조금 63억 4,900만원을 다음 달인 2023년 6월 28일에 전액 교부하였음.

20) 참고로, 기획재정부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4) 외교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개선과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불특정 소규모 원조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부내역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되며, 일반협력국에 대한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수원국별 지원한도가 크게 상향조정되고 예외에 해당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및 현금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 도입취지에 충실하도록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불특정 원조수요에 대응하여 소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외교부 예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사업 전년도에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본부로 후보사업을 신청한 후 본부에서 이를 심의하여 당해 연도 초 확정사업을 통보하면, 재외공관은 통보받은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코이카는 사업 예산을 협력단 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송금하는 등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소규모 무상원조 집행절차]

□ (절차) 수요조사 ⇒ 검토 · 예산반영 ⇒ 집행 ⇒ 결과보고의 4단계
○ 외교부
- (본부) 사업 1년 전 수요조사 · 예산반영, 당해 연도 초 확정사업 통보
- (공관) 당해연도 1분기 내 집행계획서 제출, 늦어도 11월내 집행 완료 및 연내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 KOICA: 승인사업 대상 사업비 송금 및 연말 잔액 행정처리 등 실질적 예산 관리 담당

○ 24년도 사업절차

사업 확정·통보	➡	집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중간점검 보고	➡	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외교부 본부 (24년 2월)		재외공관 → 본부 (24년 2~3월)		재외공관 → 본부 (24년 6, 10월)		재외공관 (24년 연내)

자료: 외교부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교부원칙은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동 지침에서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 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원국별 지원한도는 기존에 미화 20만불(특별히 필요한 경우 40만불)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도 예산 급증에 따라 2022년 12월 동 지침을 개정하여 미화 50만불(특별히 필요한 경우 100만불)로 상향 조정하였음.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 원칙 및 한도]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외교부예규, 2022.12.13. 일부개정)

제3조(지원 원칙) ①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 ① 사업 지원은 수원국별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50만불 이내**로 한다. 다만, 환율 변동, 추가 송금 수수료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불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년에 비해 사업 건수 및 집행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예산 현액	집행	사업 건수	
아시아 태평양	2,008	1,978	11	1,709	1,461	11	2,404	2,241	12	2,000	1,824	10	14,720	7,411	36	4,006
아프리카	1,245	1,193	9	3,721	3,679	18	4,705	4,419	23	5,000	4,760	25	28,543	22,353	65	10,000
중남미	650	620	5	1,540	1,496	6	1,531	1,500	9	1,500	1,478	8	18,500	15,175	33	3,000
중동CIS	750	625	7	869	809	8	1,630	1,629	9	2,776	2,401	12	15,596	12,489	38	6,000
합 계	4,653	4,417	32	7,839	7,445	42	10,270	9,790	53	11,276	10,463	55	77,359	57,428	172	23,006

자료: 외교부

(가)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구체적으로 2023년 수원국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개국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지침 개정 전 지원한도였던 미화 20만불 이하로 지원된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고, 개정 후 지원한도인 50만불 이상 지원된 국가가 53개국으로, 그 중 16개국은 예외적 지원한도인 100만불까지 예산 배정이 승인되었음.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배정(승인) 현황]

20만불 이하	50만불 미만	50만불	50만불 초과~100만불 미만	100만불	합계
20개국	27개국	11개국	26개국	16개국	100개국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는 2022년 연말 “소규모”의 의미를 미화 50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100만불을 상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이 배정된 국가 중에서 50만불 이상 배정된 국가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원국별 지원한도를 100만불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국회에서 세부 내역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예외적으로 재량을 부여받은 제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소규모”의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 명확화 필요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일반협력국뿐만 아니라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점협력국에도 상당히 배정되었음.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66.7%에 해당하는 18개국에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금액 측면에서 보면 50만불 이상 배정된 국가가 12개국으로, 예외적 지원한도인 100만불이 배정된 국가도 6개국에 달하고 있음.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배정(승인) 현황]

구분	20만불 이하	50만불 미만	50만불	50만불 초과 ~ 100만불 미만	100만불	합계
비중점협력국	19개국	22개국	8개국	23개국	10개국	82개국
중점협력국	1개국	5개국	3개국	3개국	6개국	18개국
계	20개국	27개국	11개국	26개국	16개국	100개국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우리 정부 ODA 예산의 70% 이상이 중점협력국에 지원되고 있어[21] 원조 소외 완화를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는 일반협력국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으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물자지원 원칙 준수 노력 필요

다른 한편으로,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의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수원국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집행 결과 현금지원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집행액은 23억 2,0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남.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현물/현금 집행 현황]

구분	물자지원		현금지원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2019년	35.8억원	81.0%	8.4억원	19.0%
2020년	61.32억원	82.4%	13.13억원	17.6%
2021년	89.93억원	91.9%	7.96억원	8.1%
2022년	104.4억원	99.8%	0.2억원	0.2%
2023년	**551.1억원**	**96.0%**	**23.2억원**	**4.0%**

자료: 외교부

현금 집행 또한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되고 있으나 수원국의 회계행정체계 여건상 집행 투명성이 낮아지고 사업효과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집행 시 가급적 현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중점협력국은 정부가 제한된 ODA 예산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ODA 예산을 집중투자할 일부 국가를 선정한 것으로,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중점협력국에 재원의 70%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5)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ODA 예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지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는 오히려 일부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니터링 의무 비율 도입, 모니터링 조기 수행을 통한 차년도 사업 심의 시 환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은 재외공관에서 수원국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무상 ODA 사업의 사업 현황, 수원국과의 협의 상황,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 심의 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201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년도 기준 5년 내외 경과 사업,[22] 계속사업의 경우 후보사업 선정 당시 사업기간 기준 약 30% 이상 진행된 사업임.

그런데 무상 ODA 사업의 확대에도 모니터링 실시 사업의 수는 정체됨에 따라,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2023년까지 매년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대비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2018~2023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현황]

(단위: 건, %)

구 분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수(A)	재외공관 모니터링 희망사업 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B)	모니터링 실시 비율 (B/A)
2018년	1,230	611	311	**25.3**
2019년	1,230	325	201	**16.3**
2020년	1,145	335	193	**16.9**
2021년	1,426	338	195	**13.7**
2022년	1,583	289	187	**11.8**
2023년	2,334	422	211	**9.0**
2024년	2,484	576	322	**13.0**

주) 2024년은 4월 기준
자료: 외교부

2024년에는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희망사업 및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건수를 확대함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비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23] 지역에 따라서는

22) 2024년부터는 연간 권장 모니터링 건수 확대에 따라 7년 내외 경과 사업으로 확대함.

23) 2024년 외교부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희망사업 및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확대 현황

여전히 후보사업 대비 모니터링 대상 사업 비율이 10% 이하인 곳도 있으므로, 외교부는 중장기적으로 ‘일정 건수’가 아닌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2024년 지역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현황]

(단위: 건, %)

구 분		모니터링 대상 후보 사업 수(A)	재외공관 모니터링 희망사업 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B)	모니터링 실시 비율 (B/A)
2023년	아시아·태평양	1,126	127	67	6.0
	아프리카	564	134	65	11.5
	중동·CIS	284	75	37	13.0
	중남미	360	86	42	11.7
	합계	**2,334**	**422**	**211**	**9.0**
2024년	아시아·태평양	1,188	191	102	8.6
	아프리카	592	185	100	16.9
	중동·CIS	323	91	56	17.3
	중남미	381	109	64	16.8
	합계	**2,484**	**576**	**322**	**13.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4년 외교부는 모니터링 단계별 수행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

구분	모니터링 대상 희망사업(2배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중점 협력국	기타 협력국	중점 협력국	기타 협력국
2023년	10개 내외	6개 내외	5개 이상	3개 이상
2024년	10~14개 내외	6~10개 내외	5~7개 내외	3~5개 내외

주)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단계별 수행시기 변동사항]

모니터링 단계		기존 수행시기	2024년 변동사항
① 본부, 재외공관에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목록(long list) 전달		n-1년 11월	n년 1-2월
② 재외공관, 후보사업 목록 검토 및 모니터링 대상 2배수 사업 목록(short list) 보고 ※ 중점협력국은 10~14개, 기타 협력국은 6~10개 내외의 사업 제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다수 기관 사업 포괄하도록 작성)		n-1년 11월	n년 1-2월
③ 본부, 관계부처에 short list에 대한 사업 정보 제공 요청		n-1년 11~12월	n년 2-3월
④ 본부, 관계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사업 정보를 재외공관에 전달		n-1년 12월	n년 2-3월
⑤ 재외공관,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final list) 및 차년도 모니터링 계획 보고 ※ 중점협력국은 5~7개, 기타 협력국은 3~5개 내외의 사업 제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모니터링 선순위 사업 : ① 일정 규모(약 100만불) 이상의 프로젝트성 사업, ② 예산 집행률 저조, 공관과의 미협의, 수원국측 문제제기 사업,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공관에서 판단하는 사업, ③ 과거 점검 결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n-1년 12월	n년 2-3월
⑥ 본부, 당해연도 모니터링 실시 계획 승인 / 재외공관, 모니터링 시행		n년 최소 2회 이상	n년 3-12월
⑦ 본부,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년도 사업 심의에 환류	⑦ 모니터링 결과 종합	n+1년 1~2월	n+1년 1~2월
	⑧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n+1년 6-7월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에는 '① 외교부 본부에서 재외공관으로의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 목록 전달'부터 '⑤ 재외공관의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 및 차년도 모니터링 계획 보고'까지를 전년도(n-1년) 11~12월에 수행하고, 당해연도(n년) '⑥ 모니터링 시행' 후 '⑦ 본부의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는 차년도(n+1년) 1~2월에 수행하여, 그 다음연도의 사업 심의에 모니터링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음.

그런데 2024년 변경된 단계별 수행시기를 살펴보면, ①부터 ⑤까지를 당해연도(n년) 3월까지 수행하도록 늦추었고, 모니터링 결과 종합은 기존과 같이 차년도(n+1년) 1~2월에 수행하나,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시기를 차년도(n+1년) 6~7월로 미루었음.

그리고 기존에는 재외공관이 당해연도 모니터링을 시행할 때 최소 2회 이상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보다 충실한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재외공관이 전년도에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당해연도에 시간을 두고 최소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부는 2024년 변경한 단계별 수행시기 등을 다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 대상 후보사업이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년도 기준 7년 내외 경과 사업, 계속사업의 경우 후보사업 선정 당시 사업기간 기준 약 30% 이상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은 전년도 연말에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부처에서 다음연도의 ODA 사업계획을 매년 3월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5~6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국무조정실의 심사·조정 등을 거쳐 ODA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보고 시기 또한 차년도(n+1년) 6~7월로 늦추기보다 기존과 같이 차년도(n+1년) 1~2월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최근 ODA 예산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ODA의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질적 내실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원국 입장에서 사업 추진과정이 효율적인지,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등을 분석하고 현지 상황을 적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 중심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지정보 파악,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지 관심사업 발굴·점검,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지속적 개선 조치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보고 시기 단축 필요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가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과를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24] 동 규정에 따라 ‘구호물품·장비

2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정부의 최종 평가는 이 결과보고서에 반영됨.

그러나 법에서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결산 심사에 동 결과보고가 반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부가 정기국회 말에 보고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도 해외긴급구호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실제로 2022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또한 2023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25)]

[2019년~2022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국회 보고일]

구 분	2019년도 결과보고	2020년도 결과보고	2021년도 결과보고	2022년도 결과보고
일 자	2020. 12. 4.	2021. 11. 12.	2022. 8. 31.	2023. 11. 30.

자료: 외교부

2024년도 해외긴급구호 예산은 전년 대비 4,395억 6,300만원(149.0%)이 증액된 7,346억 2,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회 예결산 심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5)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예비심사 의결일 : 2023. 11.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일 : 2023. 11. 13. ~ 2023. 11. 24.

4. 정보화사업

가. 개 요

(1) 개념 및 유형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 ·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의미함.[1)]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①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②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③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정보화사업 적용대상 분류]

구 분	내 용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용 재구성

또한 동 세부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재정유형별로 구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외에 일반재정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 성격의 사업도 모두 정보화사업에 포함하여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유형별 분류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시]

재정유형		부처별 정보화사업 예시	
		부처	사업명
정보화	D-brain 상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일반재정	일반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의 내역사업인 '알리오 등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	'등록관리'의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기록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
R&D	R&D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데이터경제를위한블록체인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인 '블록체인기반기술'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R&D)'의 내역사업인 '한국학 학술정보화사업', '정보기반구축사업'

자료: 각 부처, 「2023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023.1.)」을 바탕으로 재구성

(2) 관련 법령

현재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추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전신(前身)임. 「정보화촉진기본법」은 2009년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환되었고, 2020년 다시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우리나라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외에도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왔으며, 이를 시대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2)]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한 시기로, 이때 제정된 대표적 법률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 「전기통신기본법」(1983), 「전기통신사업법」(1991) 등임.

이후 인터넷 혁명을 바탕으로 국가정보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하여 「전자정부법」(2001) 등 정보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사이버 범죄·불법정보 유통·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1) 등이 제정되었음.

2) 대한민국정부, 「2023 지능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

2000년대에서 2010년대는 광대역통합망과 모바일기기 및 융·복합 기술의 확산을 바탕으로 신규 정보화 서비스가 확장된 시기임. 이 시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00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2010), 「개인정보 보호법」(20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2013) 등이 제정되었음.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1) 등이 제정되었음.

한편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준수해야 하는 여러 기준과 절차들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 시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부는 1978년부터 지능정보화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3~2025)'에 근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 중에 있음.

[역대 지능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현황]

단계	구분	수립연도	계획명	기간	비전 또는 목표
행정전산화	1차	1978.2.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78 ~1982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차	198.12.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83 ~1986	
국가기간전산망	1차	1988.12.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87 ~1991	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 완성 2000년대까지 선진국 정보사회 실현
	2차	1992.2.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92 ~1996	

단계		구분	수립연도	계획명	기간	비전 또는 목표
국가사회정보화 추진	기반 마련	1차	1996.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 ~2000	2010년까지 세계 최고 정보화 실현
		2차	1999.3.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1999 ~2002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
	분야별 고도화	3차	2002.4.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e-Korea Vison 2006	2002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3차 (수정)	2003.12.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003 ~2007	Broadband IT Korea 건설
		3차 (연동)	2006.5.	u-Korea 기본계획	2008 ~2010	세계 최고의 u-인프라 위 세계 최초 u-사회 실현
	연계·통합	4차	200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 ~2012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
		4차 (수정)	2012.3.			
	융합·확산	5차	2013.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 ~2017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지능정보화 발전	초연결 지능화	6차	201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 ~2022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전면화	7차	2022.11.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023 ~2025	국민과 함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년 지능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

2023~2025년 적용될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5대 핵심 전략, 19개 추진 과제, 251개 세부 추진과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분야에 대한 후속계획으로서 디지털플랫폼위원회에서 “2023년 4월 디지털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였음.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나. 디지털플랫폼정부

(1) 디지털플랫폼정부 현황

(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개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음.[3)]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국민중심	공공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나의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행정 프로세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하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공공데이터는 사람과 인공지능 모두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과학화한다.
민관 협력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22년 9월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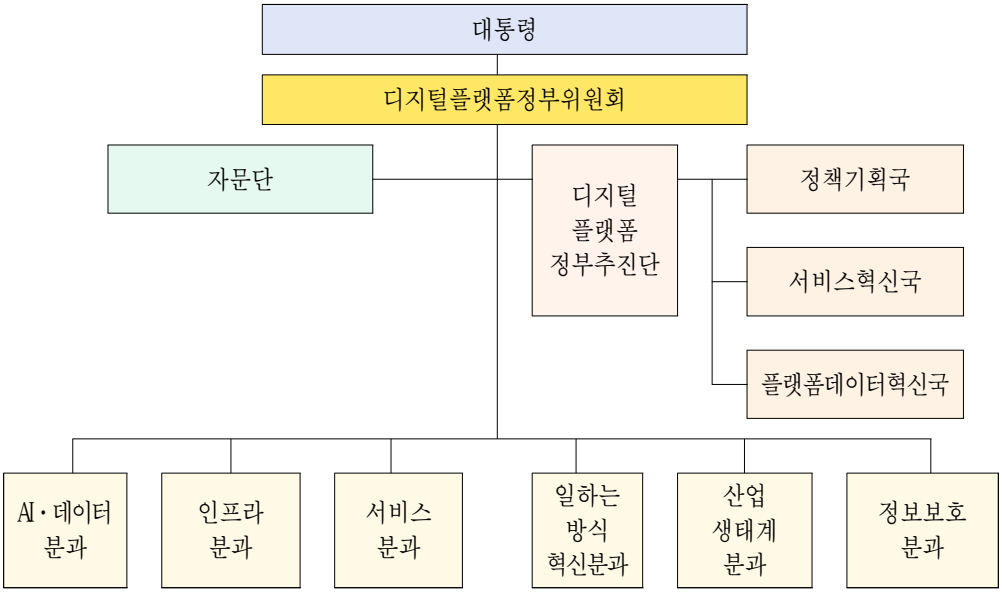
---

3) 국정과제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연계 및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으로 기재부·과기부·행안부장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 아래 6개 분과위원회(AI·데이터, 일하는방식혁신, 산업생태계, 인프라, 서비스, 정보보호)를 운영하고 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직도]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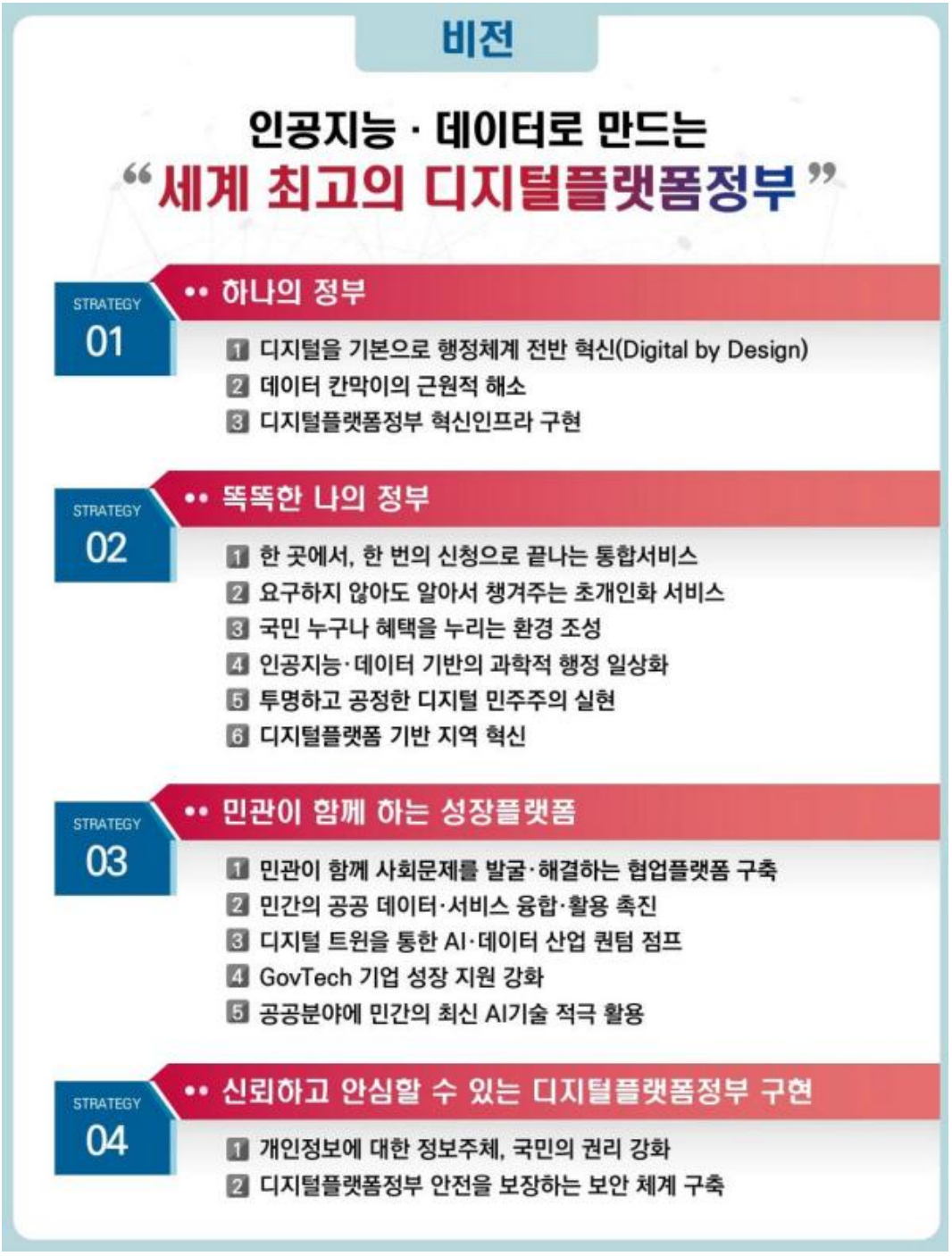
(나) (디플정)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및 (과기부)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음. 동 실현계획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하여, ① 하나의 정부, ② 똑똑한 나의 정부, ③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④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전략과제로 하여 2023~2026년 연도별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으로 구성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실현계획은 정부 부처 간, 공공과 민간,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제도의 칸막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등 법령 정비, 아날로그 업무의 디지털 기반 재설계 등 행정·제도적 개선, UI·UX 등 정보서비스 표준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다양한 내용의 과제 중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하고, 전 부처의 정보화사업의 예산 편성·집행의 방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는, “1-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3-2. 민간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융합·활용 촉진” 등이 있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4.14.)]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구현’은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활용 인프라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① 인공지능·데이터·서비스 융합 플랫폼을 마련하고, ②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③ 민간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 전환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며,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1-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구현' 관련 이행계획]

세부과제		2023	2024	2025	2026 이후
인공지능·데이터·서비스 융합 플랫폼 마련					
	통합플랫폼(DPG허브) 구축	DPG허브 ISP 수립	DPG허브 구현	DPG허브 운영·개선	DPG허브 운영·개선
	데이터 융합 인프라 마련	데이터레이크 구현·운영 (3개 시스템)	10개 시스템	15개 시스템	20개 시스템
	초거대 AI 인프라 마련	초거대AI API기반 개발환경 지원	초거대AI 플랫폼간 공통기능별 API표준 마련	통합개발환경 지원	-
	범부처 공용서비스 빌딩블록 구축	범부처 공용서비스 설계	범부처 공용서비스 구축	범부처 공용서비스 운영·개선	범부처 공용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마켓플레이스 마련	마켓플레이스 설계	구현 및 시범운영 (100건)	150건	200건
누구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80건	160건	160건	120건
	혁신서비스 검증 및 구현 지원	-	리빙랩 구현·검증 (8건)	리빙랩 구현·검증 (신규8건, 계속4건)	리빙랩 구현·검증 (신규12건, 계속6건)
민간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 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대상시스템의 10% 달성	30% 달성	70% 달성
	표준화·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가이드라인 운영·개선	표준·가이드라인 고도화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위해 각종 국가공유데이터 등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API[5] 및 개발도구 등 ‘초거대 AI 활용인프라’를 마련하고, 신규 정

5)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ace)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의미함.

보시스템 구축 및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전환을 지원할 예정임.[6] 특히 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하드웨어 비용 산정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둘째, ‘민간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융합·활용 촉진’은 지금까지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의 수요·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데이터가 일부만 개방되거나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어려운 형태도 개방되어 온전히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고, 미개방 데이터를 확대 제공하며, 공공서비스를 개방하려는 것으로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3-2. ‘민간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융합·활용 촉진’ 관련 이행계획]

세부과제		2023	2024	2025	2026 이후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					
	데이터 발굴단 운영	수요조사·개방	개방 확대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데이터 수요·활용지수체계 운영	계획 수립	체계 마련 및 시범적용	적용 및 공개	적용 및 공개
	원천데이터 개방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조사 및 원칙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제공	-
	민·관 데이터 플랫폼 명세 개방	BPR/ISP	DPG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구축	DPG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구축	-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축	ISMP	1단계 구축	2단계 구축	3단계 구축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미개방데이터 제공 확대					
	지역거점 안심구역 확대	-	지역 1개소 구축	지역 1개소 구축	지역 1개소 구축
	안심구역 연계	협력체계 구성	연계 인프라 구축	데이터 연계·활용	데이터 연계·활용
	온라인 안심구역	원격제공 가능한 데이터대상 선정방안 수립	온라인안심구역 서비스 구축	서비스 제공 확대	서비스 제공 확대
공공서비스 개방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 창출					
	공공서비스 개방 확대	20개(누적)	50개(누적)	120개(누적)	220개(누적)
	관광 정보 종합플랫폼 구현	관광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관광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관광 정보 종합플랫폼 구현 및 개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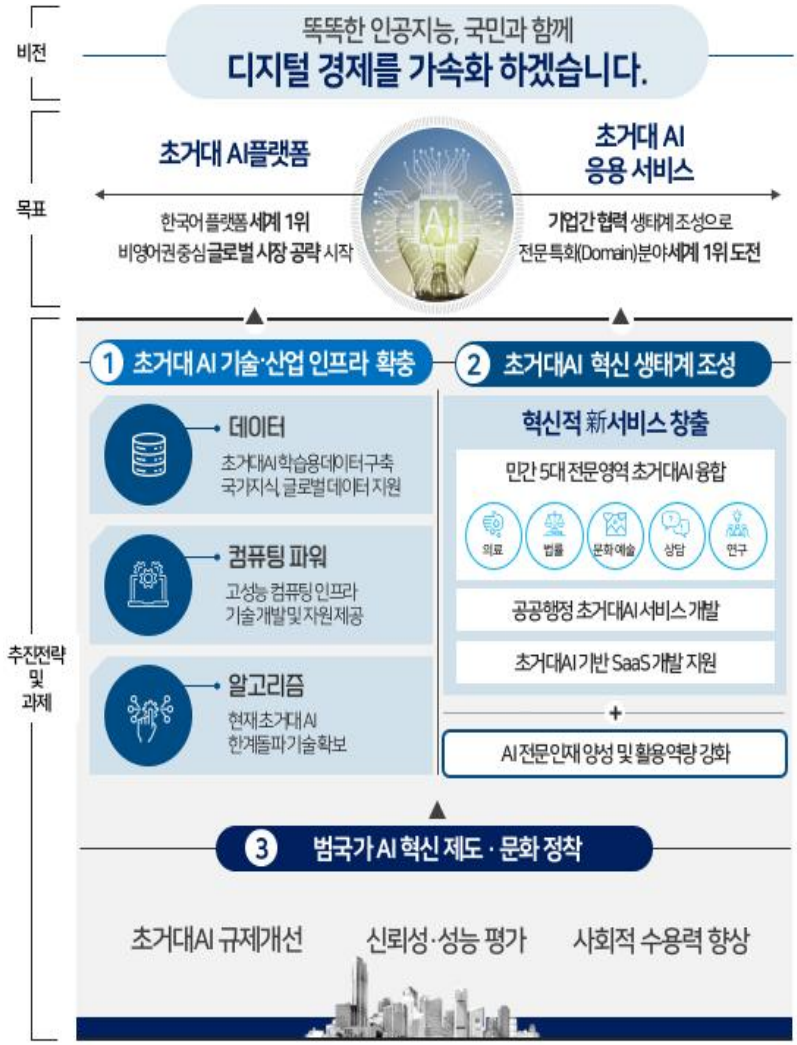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6)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 특화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방식으로, 작고 빠른 서비스의 개발·배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원활용, 민간 혁신기술 활용 가능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음.

해당 내용은 대국민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의 상호연계·호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존 데이터의 면밀한 DB 구축이 전제되는 것으로 향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현계획 발표와 동시에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는 "똑똑한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를 비전으로, ① 초거대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② 민간·공공 초거대 AI 융합 등 초거대 AI 혁신생태계 조성, ③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등을 추진전략으로 발표하였음.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2023.4.1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AI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을 지원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보강하는 것을 세부과제로 선정하여,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 200종(200억개 토큰, 100억개 旣구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초거대AI 지원을 위한 학습용데이터 사업 추진방향]

□ **초거대 AI 학습 방식 및 학습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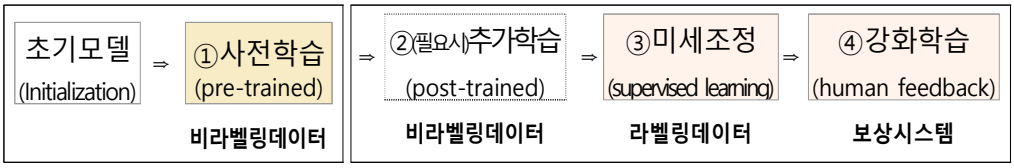
○ 초거대 AI는 다량의 텍스트(비라벨링)를 사전학습시켜 베이스모델을 만들고, 원하는 서비스에 적합하게 라벨링된 데이터로 미세조정한 형태

- 베이스모델 기반의 특화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영역 '텍스트(추가학습*)+라벨링(미세조정)'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필요

  * 전문영역 특화 학습을 위한 비라벨링 데이터는 사전학습 단계에서도 적용 가능

-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수록 적은 양의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학습으로도 높은 성능 달성 가능

[초거대 AI 모델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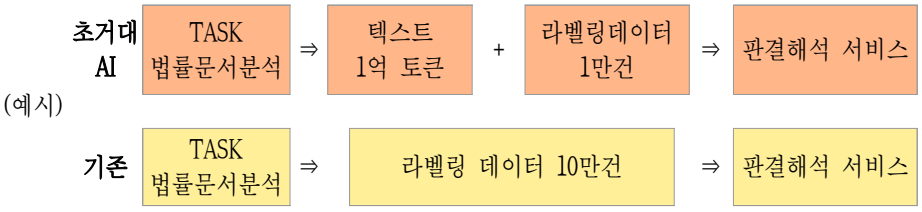
□ **초거대 AI 지원을 위한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추진방향**

○ 현재 학습용 언어 데이터는 라벨링 데이터 중심으로 구축해서 텍스트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상황

⇒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는 다량의 텍스트(비라벨링) 중심으로 구축하되, 미세조정에 필요한 라벨링 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추진

※ [예시] 법률 전문도서를 활용한 초거대 AI 학습데이터 1종 구성

- 전문가들은 초거대AI 특화서비스 개발에는 텍스트 1억 토큰과 라벨링데이터 1만건 필요 의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검토의견

(1)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이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면서,[7] 해당 데이터를 AI 허브 플랫폼(www.aihub.or.kr)에 개방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획현액 2,628억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으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계획현액 2,628억원 중 2,521억 9,200만원을 실집행(집행률 95.9%), 연구수행기관은 교부액 2,175억 1,200만원 중 2,102억 7,900만원을 최종집행(집행률 96.7%)하고 집행잔액 72억 3,300만원은 이월한 후 2024년 8월 반납예정임. 참고로 동 사업은 2020년 7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크게 확대된 바 있으나, 2024년에는 전년의 19.9% 수준으로 축소되었음.[8]

[최근 5년간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39,000	331,500	-	331,500	331,500 [316,362]	100.0	100.0	-	-
2021	292,500	370,500	-	370,500	370,500 [366,595]	100.0	100.0	-	-
2022	579,700	579,700	-	579,700	579,700 [559,473]	100.0	100.0	-	-
2023	280,500	262,800	-	262,800	262,800 [252,192]	100.0	100.0	-	-
2024	55,800	-	-	-	-	-	-	-	-

7)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란, 인간이 생성하는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각종 지식과 정보를 라벨링하여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machine readable)로 가공한 데이터를 의미함.

8)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3개 축(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중 하나로 디지털 뉴딜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SOC디지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그중 DNA 생태계 강화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활용 등에 2025년까지 38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정제 및 라벨링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허브 플랫폼을 통해 AI 데이터를 개방해오고 있음.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종)

구 분		2019년 이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예산액	325	3,315	3,705	5,797	2,805	558
	데이터 종류	21	170	190	310	150	70
집행	집행액	325	3,315	3,705	5,797	2,628	558
	데이터 종류	21	170	190	310	142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데이터 구축·개방 및 품질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AI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9]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근간이 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미등록·미공개 데이터를 조속히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 및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수행업체가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원천데이터, 라벨링데이터, AI 응용모델(소스코드), 저작도구 등)의 공개산출물을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

감사원은 2020~2021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공개산출물 부실 개방현황을 조사하였을 때, 360종(사업비 7,020억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 122종(34%)의 산출물이 부실 구축·개방된 것으로 파악하였음.

구체적으로는 ①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기관이 일부 AI 학습용데이터를 당초 사업수행계획서보다 부족·미흡하게 구축하거나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② 수행기관이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한 AI 데이터의 일부만을 개방하거나, ③ AI 학습용 데이터에 부가되는 AI 응용모델·저작도구 등을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개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9) 감사원,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2024. 5.

[2020~2021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개산출물의 부실 개방 현황]

(단위: 종, 억원)

구축연도	구분[1]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부실 구축·개방 산출물 현황							
				소계[2]		AI 학습용 데이터		AI 응용모델 (소스코드 포함)		저작도구[3]	
2020년	건수	170	100%	68	40%	40	24%	25	15%	23	14%
	금액	3,315	100%	679	20%	608	18%	70	2%	-	-
2021년	건수	190	100%	54	28%	29	15%	16	8%	19	10%
	금액	3,705	100%	469	13%	422	11%	46	1%	-	-
합계	건수	360	100%	122	34%	69	19%	41	11%	42	12%
	금액	7,020	100%	1,148	16%	1,031	15%	116	2%	-	-

주 1). 금액의 경우 해당 공개산출물이 포함된 AI 데이터 사업비 중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금 전액을 기재
2) 데이터 종별로 부실 산출물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제거한 수
3) 저작도구는 사업비 내 개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금액 미산정
자료: 감사원,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2024.5. p.88.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2021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개산출물 부실 개방 122종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현재 보완조치를 진행중이고, 2022~2023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산출물 현황은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230종 중 부실 구축·개방은 없다고 설명함.

[2022~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공개산출물 조사 현황('24.8월 완료 예정)]

(단위: 종, 억원)

구축연도	구분[1]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산출물 조사 현황							
				소계		AI 학습용 데이터		AI 응용모델 (소스코드 포함)		저작도구	
2022년	건수	310	100%	310	진행 중	310	230종 완료 (24.7월 초)	310	진행 예정 (24.7월 중순)	310	진행 예정 (24.7 월중순)
	금액	5,797	100%								
2023년	건수	142	100%	142	진행 중	142	진행 예정 (24.8월 중순)	142	진행 예정 (24.7월 말)	142	진행 예정 (24.7월 말)
	금액	2,628	100%								

주) 괄호안 기간은 조사 완료 예정 시점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등록·미개방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후 부실 구축·개방 산출물을 점검하여 AI 학습용 데이터가 조속히 AI 허브에 등록 및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향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 시 구축·개방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민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유형의 데이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6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691종의 평균 이용건수는 725건으로, 한국어(1,436건)·법률(1,023건) 분야의 평균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로보틱스(49건)·스포츠(94건)·제조(128건)·지식재산(157건)·헬스케어(159건) 분야의 평균 이용건수는 낮은 것으로 보임.

한국어·법률 분야의 평균 이용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비교적 데이터 가공·적용이 용이한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러나, 로보틱스·스포츠 등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는 저조한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시 해당 분야의 시장 수요에 부응하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음.

[AI 학습용 데이터 분야별 이용 현황]

(2024년 6월 말 기준, 단위: 건, 종)

분야	총 이용건수	평균 이용건수	데이터 종류	이용 횟수별 데이터 종류		
				1~100건	101~1,000건	1,001건 이상
교육	2,367	237	10	3	7	-
교통물류	41,399	476	87	17	60	10
금융	696	696	1	-	1	-
농축수산	34,572	487	71	14	50	7
로보틱스	295	49	6	6	-	-
문화관광	4,252	250	17	2	15	-
법률	2,046	1,023	2	-	-	2
스포츠	1,125	94	12	7	5	-
영상이미지	107,177	782	137	22	90	25
재난안전환경	72,687	855	85	6	61	18
제조	766	128	6	4	2	-
지식재산	627	157	4	1	3	-
한국어	216,858	1,436	151	2	79	70
헬스케어	16,229	159	102	93	3	6
합계	501,096	725	691	177	376	138

주) 이용건수 100건 미만 177종 중 94종은 IRB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안심존을 통해 제공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학습용 데이터의 데이터 유형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언어 관련 데이터인 텍스트는 1,019건, 오디오는 1,137건이나, 비언어적 데이터인 센서 335건, 이미지 553건, 비디오는 776건, 3D는 262건 이용하였음.

언어 관련 데이터는 현재까지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접목하기 쉽고, 특히 현재 영어 중심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한국어 DB를 학습하여 보충할 목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멀티 모달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만큼,[10]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AI 학습용 데이터의 데이터 유형별 이용 현황]

(2024년 6월 말 기준, 단위: 건, 종)

데이터 유형	총 이용건수	평균 이용건수	이용횟수별 데이터 종류			
			소계	1~100건	101~1,000건	1,001건 이상
텍스트	222,144	1,019	218	37	110	71
센서	5,700	335	17	9	6	2
오디오	107,979	1,137	95	15	47	33
이미지	241,368	533	453	138	257	58
비디오	62,816	776	81	30	36	15
3D	11,536	262	44	18	24	2

주) AI 데이터의 데이터 유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데이터 유형에 모두 활용될 것으로 보아 중복 계상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개방된 데이터 중 활용도가 저조한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하여 생명윤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등 당해 데이터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4년 3월 기준 AI 허브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총 691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건수 하위 100종 중 84종의 데이터가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이고 71종의 헬스케어 데이터의 이용건수는 10건 이내로 나타나, 헬스케어 데이터의 이용빈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헬스케어 데이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여, 실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10) 경향신문, “ “K팝 춤추는 아저씨 만들어줘” AI가 5초짜리 영상을 뚝딱[김상범의 실리콘리포트] “, 2024.6.25.

그러나 동 사업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활용하는 것까지를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등 당해 데이터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11]

11)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계획수립 필요

2023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11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정부24(온라인 민원 서비스)’, ‘주민등록발급시스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부의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민원·행정서비스의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12)]

[2023년 정부 주요 행정 전산망 장애 현황]

일자	행정 전산망 장애 내역	장애 원인
6.21.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장애	프로그램 오류
11.17.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새올’, 온라인민원서비스 ‘정부24’ 마비	네트워크 연결장치 불량
11.22.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발급 오류	접속 과부하
11.2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접속 오류	해외 IP 다량 접속에 따른 과부화
11.24.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오류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
12.1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접속 오류	접속 과부하
12.30.	우체국 금융 접속 오류	접속 과부하

특히, 2023년 11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불량으로 인해,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서비스가 마비되었고, ‘정부24’를 통한 각종 민원행정서비스가 중단되어 큰 불편이 초래되었음.[13)]

12) 한국경제,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2023. 11.24.
한국경제, “조달청 '나라장터'도 전산망도 1시간 가량 '불통'”, 2023.11.23.
연합뉴스, “전산망 복구 발표 후에도 '줄 장애'…“사상누각, 근본대책 시급“”, 2023.11.24.

13) 행정안전부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정전자서명(GPKI) 활용이 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는 시도·새올 시스템 로그인이 불가해 행정업무가 중단되었고,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부24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사태 개요]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 (기간) 2023.11.17.(금), 08:46 ~ 11.18.(토), 09:00
‣ (원인)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인해,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정전자서명(GPKI, 공무원의 업무시스템 로그인 수단)을 활용하는 시도·새올 시스템 로그인 불가
‣ (현상) 시도·새올 접속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 등 행정업무가 중단되었고,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부24 등 대민서비스 장애로 확산

정부는 2023년 일련의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전산장비 점검 및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전산망 개선대책(“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음.[14]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내용
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 1·2등급 정보시스템 대상 24시간 상시관제 수행 및 모니터링 관리 강화 ○ 다수 시스템 연계 장애의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시행
	위험분산형 구조 개선	○ 他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장애 격벽 등을 통해 위험 분산 구조로 개선하고, 인증시스템 장애 대비 인증수단 다양화 ○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장애 전이 방지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신속 추진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에 대한 표준 예방점검체계 도입 ○ 장애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간 연계 현황의 상시 분석·활용
	등급제 기반의 효율 관리	○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등급제 마련·적용 및 장애 경중에 따른 차등적 대응을 위한 장애 등급 신설을 통해 효율적 자원 활용
신속한 대응 복구	통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 민관합동 서면·현장점검, 사이버장애지원단을 통한 주요 시스템 안정성 진단 지원 등으로 장애 사전 예방 ○ 체계적 장애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 중심의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 및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	○ 디지털안전상황실(’23.12월 신설) 중심의 장애 상황 통합관리·전파 및 상황실과 대내외 기관 간 상황공유체계 마련 ○ 장애 유형별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장애 발생 시 민관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2023.11.) 이후 주요 추진경과]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구성(2023.11.17.)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 혁신 TF*」, 민·관 협력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등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 학계(3명), 소프트웨어 기업(5명), 시스템구축 기업(2명), 공공기관(3명), 정부(2명)
** (팀장) 행안부 차관, 민간 전문가 / (실무반) 원인분석반, 대책수립반
○ 행정·공공기관 전산장비 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 긴급점검(2023.11.27.~12.11.), 1차점검(2023.12.11. ~ 12.19.), 2차점검(2023.12.20. ~ 12.27.)
○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구성·운영(2023.11.29.~)
* 국무조정실장(단장), 행안·기재·교육·과기·복지부, 인사처, 국세·조달청, DPG추진단 등

14)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내용
		대응반 구성 및 복구 작업 즉시 투입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전산 장애에도 대민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이행 ○ 장애 상황 관련 대국민 안내기준 마련 및 안내 채널 다양화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 국민 이용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강화	○ 민간 IT 전문인력을 연봉 상한 없는 공무원으로 채용 추진 ○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전문성·연속성 강화로 장애대응 역량 제고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	○ 경쟁 활성화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등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 개발 대가기준 상향, 신기술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 대가 개선*
	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발주前-입찰·계약-이행' 단계별 지원강화로 사업 이행기반 개선
	인프라 복원력 제고	○ 잠재 위험 제거를 위해 노후장비 순차적 교체 및 1·2등급 시스템 대상 모든 장비(네트워크·방화벽 등) 이중화 단계적 이행 ○ 재해·재난 및 장애 상황에서 작동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장애 원인 및 그간 누적된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재발 방지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대책의 내용 중 일부는 기존 정책과의 높은 유사성·낮은 실현 가능성 및 낮은 효과성 등이 우려되므로, 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클라우드 네이티브[15] 전환 및 행정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이행은 이미 발표한 대책 또는 이미 시행 중인 사항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신속 추진'의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연장으로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새로운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목표 대비 전환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당초 '2021년~2025년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로드맵'에 따라 공공

15)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 특화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방식으로, 작고 빠른 서비스의 개발·배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원활용, 민간 혁신기술 활용 가능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음.

부문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전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실제 전환실적 및 집행이 부진하였음.[16] 이에, 최근 클라우드 기술변화(네이티브 및 SaaS)를 반영하여 2023년 4월 전환추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변경계획 대비 전환실적은 미흡한 상황임.

[2021년~2025년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로드맵 및 2023년까지의 사업실적]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당초 계획	시스템 수	430	2,149	3,169	1,892	2,369	-	-
	예산	570	2,402	2,351	1,239	2,179		
⇩								
변경 계획	시스템 수	302	1,590	2,311	2,295	2,127	1,384	
	예산	570	1,787	1,626	2,591	2,799	2,406	800
실제 전환	시스템 수	302	1,590	290	-	-	-	-
	예산	570	1,787	342	-	-	-	-

주) 2023년에는 290개 시스템의 전환이 추진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었다는 의견이나, 2021~2023년 연례적으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이 미진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전환 목표만 높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각 부처가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의 실수요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기능 연속성 계획', 「전자정부법」에 따른 '장애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므로,[17][18] 행정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

16) 동 사업은 2021년~2022년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클라우드 전환 실수요 고려 없이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해 2022년 및 2023년 예산이 대규모 감액되었던 바 있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역시 그 성격 상 기존 매뉴얼과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행정부의 전산망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민원업무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매뉴얼 이행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정보시스템 통·폐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면밀하게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이용도 등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분류하고, 핵심적인 국가 기반 정보시스템은 1등급으로, 나머지는 2·3·4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국민 이용이 낮고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여 관리효율을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함.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8)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 수립
2. 장애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시행
4. 장애관리 교육·훈련 실시
5.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추진방안]

■(기본원칙)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3~4등급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식) 3~4등급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해 2가지 방식 중 택일
‣① 1~2등급 정보시스템으로의 통폐합
‣② 기관 내 3~4등급 시스템들과의 통폐합을 통해 1~2등급으로 구축
■(대상관리) 통폐합 검토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한 통폐합 계획을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통폐합 추진
■(예산확보 방안)
‣(기존 3·4등급) 통폐합 검토기준에 따라 통폐합 추진 예산 신청
‣(신규 구축) 1~2등급 예상되는 시스템 대상 구축 예산 신청
※ 통·폐합되어 절감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은 기능·활용도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고 유지보수·관리의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음.

3·4등급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1·2등급 정보시스템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각 정보시스템의 서버 구성 및 프레임워크가 상이한 상황에서 사실상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수반될 것이므로, 시스템 통합을 위한 개발비용 예산 편성 없이 유지보수비용만 삭감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부실만 초래될 우려가 있음.

예컨대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중 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정책연구시스템(PRISM) 등을 폐지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정책연구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초래될 것임.[19]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나 기관 대표 내부업무용 시스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예외 신청 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아니라는 입장임.[20]

---

19)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중 '1365자원봉사포털'(3등급), '국민비서상담'(3등급), '디지털원패스'(3등급),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4등급), 스마트워크센터운영시스템(4등급), '정책연구시스템(PRISM)'(4등급) 등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홈페이지들 역시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2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조(통합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장소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정보시스템
2. 원자력, 상수도, 가스 등 시설제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3. 센서, 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정보시스템

그러나 2025년도 예산요구안 편성 전까지 통·폐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실제 통·폐합 가능한 정보시스템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해 정보시스템 운영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행정기관등의 내부운영을 위한 보안·통신, 보안관제 등 현장설치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5. 출입통제, 현장장비 제어 등 통신 성능 및 안정성의 사유로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6. 슈퍼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

(2) 주요 사업별 검토

2023년도 각 부처 정보화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향후 각 부처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화마스터플랜(ISMP)**와 관련하여, ISP 사업이 예산요구안 편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ISP 산출물과 달리 추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ISP·ISMP가 본 구축사업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와 관련하여, 다년도 연차별 구축사업·장기계속계약 등 수행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1차년도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해 2·3차년도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1차년도 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점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되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경우, 당초 감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이후에야 감리사업을 추진하여 감리사업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야기되었으므로, 예산안 편성 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정보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회계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에 명확히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미흡**과 관련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오히려 사용자 만족도가 하락하거나 이용건수가 부진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ISP·ISMP 단계부터 사용자 만족도 및 예상 사용건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비목을 부적절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집행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회계질서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정보화사업의 유형별 주요 문제점]

구분	부처	주요 내용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관련	보건복지부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의 ISP 수립을 위한 전용 부적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쇄적 ISP, ISMP 추진
	금융위원회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발주 유의
	방송통신위원회	실질적인 정보화사업인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사업의 ISP 수립 없는 사업추진 부적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연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일부 과제 사업부진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연
	외교부	홈페이지 개편사업 관련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전용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3단계 감리사업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요구정의 단계 감리의 실효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감리사업의 선금 미지급 통지절차 미이행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감리용역비 미편성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사업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
	금융위원회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유상유지보수 부적정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관리용역비 불용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미흡	교육부	차세대 나이스(NEIS) 개편 이후 사용자 만족도 하락
	기획재정부	재정데이터분석센터 및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이용실적 저조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낙찰차액 사용 부적정, 예산 비목 부적정 집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공사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관리 강화 필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관리 강화 필요

(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관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재구축사업 예산요구의 사전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를 거치도록 하고,[21] 기획재정부는 ISP·ISMP 최종산출물을 기초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및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편성 지침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절차]

연도	Y-3	Y-2	Y-1
추진절차	ISP 수립사업 실행계획 반영 및 예산요구	ISP 수립	본 사업 실행계획 반영 및 예산 요구
예외조건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에 한해, ISP 중간산출물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반영 가능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

ISP·ISMP 수립 시에는 환경분석·현황분석·목표시스템 설계 및 통합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산출물이 도출되고, 해당 산출물을 기초로 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참고로 시스템 재구축 및 신규시스템 구축 시에는 사전준비도에 따라 ISP 및 ISMP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구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ISP보다는 ISMP가 적합함.

21) ISP(정보화전략계획) :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 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 방법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관련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성능, 품질, 보안)·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하는 활동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 및복잡도를 정확하게 산출 가능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ISP 수립 시 주요 활동 및 산출물 개요]

단계	활동	산출물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서
	법령·제도 분석	법·제도 분석서
	정보기술 환경 분석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현황분석 (As-Is 분석)	업무 현황분석	업무현황 분석서 (인터뷰 결과 포함)
	정보기술 현황분석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벤처마킹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차이(gap) 분석	차이 분석서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전략 정의서
목표시스템 설계	To-Be 개선과제 상세화	To-Be 과제 상세정의서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To-Be 데이터 구조 설계	To-Be 데이터 구조 설계서
	To-Be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To-Be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서
통합 이행계획	통합 이행계획 수립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총구축비 산출	
	효과분석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

①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의 ISP 수립을 위한 전용 부적정(보건복지부)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에서는 심리상담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연도중 전용을 통하여 ISP 추진을 실시하였으나,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24. 5월에서야 ISP수립 계획이 체결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신규 정보시스템인 심리상담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ISP 수립을 실시하고자 연도 중인 2023년 11월 1일 전용(증)된 예산 2억 9,300만원과 기존의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위한 예산 3,600만원을 합한 3억 2,900만원으로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재원을 마련하였음.

[심리상담시스템 구축 ISP 수립 비용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3.11.1.)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3345-302)	210-01	133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3345-302)	320-01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비용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330-03	160		320-01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절차 및 복지부의 사전검토, 행안부의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동 사업은 이월되어 2024년에야 조달청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결국 2024년 5월 8일 계약이 체결되어 ISP 수립이 진행 중인 상황임.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예외적인 규정으로 사업 간의 유사성과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22]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ISP, ISMP 연쇄적 추진 등(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87억 7,700만원)을 위한 사전계획으로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보화마스터플랜(ISMP)을 다시 수행하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거듭 수행하였고, 사전계획 수립과정에서 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연말에서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차년도에 수행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3~7월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1억 4,700만원 집행)을 수립하고 2023년 3~7월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2억 4,360만원)을 수립하였는데, ISP를 포괄하는 내용

2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 상세한 계획인 ISMP를 2022년에 편성·집행하였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위한 시간·인력·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2022년 ISP 및 2023년 ISMP 비교]

구분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사업명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마스터 플랜(ISMP) 수립
사업기간	2022.3.14.~7.12.	2023.3.23.~7.21.
예산액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집행액	1억 4,700만원	2억 4,360만원
수행사	A 사	A 사
사업내용	· 중소물류 내외부 환경 및 업무현황 분석 · 중소물류 세부과제별 중점분석 ·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방향 수립 ·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 이행계획 수립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도출	· 차세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현황 파악 및 개선 · 차세대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 · 개발계획 수립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도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 종료된 이후 해당 마스터플랜의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실제 정보시스템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계약의뢰 및 경쟁입찰 등의 시일이 소요되어 연말에서야 비로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이는 대부분의 사업을 차년도에 수행하고 계획액을 이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ISP·ISMP 중 필요한 컨설팅사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ISP·ISMP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동일연도에 편성되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발주(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내용의 정보화전략계획과 함께 통합발주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 및 이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내 ‘금융위 업무포털 고도화 ISP’ 8,300만원과 ‘e-금융민원센터 고도화 사업’ 9억 5,800만원은 서로 다른 목적의 예산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및 구축 사업’으로 통합하여 발주 후 8억 500만원의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연내 완료되지 못하고 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 사업예산 8억 500만원 중 선급금(50%) 4억 250만원은 집행하고 잔금(50%) 4억 250만원은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완료하였음.

한편 금융위 업무포털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2023년도 예산으로 금융위 내부 업무포탈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3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실제 통합수행하여 수행한 ‘금융위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에서는 금융위 내부 업무포털 고도화 사업뿐만 아니라, 인허가등록신고, 업무연락, 회의체운영, 제재정보 관리 등 금융위원회의 전체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의 ISP 사업계획 대비 과제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당초 예산편성 시 ISP 사업계획보다 통합발주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확대되었고, 통합발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차년도 1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4억 9,300만원을 차년도 이월하였음.

④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사업의 ISP 수립 없는 실질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부적정(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자막 변환시스템’과 ‘자막-수어 변환시스템’이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없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ISP 수립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절차를 생략한 것임.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및 ‘자막-수어 변환시스템’의 초기 시스템 구축단계부터 고도화 이후 유지 및 관리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정보화사업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없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어 절차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4월 국민 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따라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ISP 수

립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ISP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는 단순시스템 도입 및 단순 기능개발, 기존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하는 사업 등 7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반드시 ISP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ISP 수립 제외사유가 아닌 사유를 근거로 ISP를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및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H/W, S/W 초기 구축	지원기기 확대(IOS앱)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브라우저 앱 개발 음성인식 엔진 고도화	브라우저 앱 고도화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화자구분 등 추가)	브라우저 앱 고도화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화자구분 고도화)	서비스 품질 확보 음성-자막 앱 고도화 음성인식 성능 고도화	서비스 제공 음성-자막 앱 유지보수 음성인식 성능 최신화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	-	-	H/W S/W 초기 구축앱 개발(서버연동)	고도화(일상언어) 앱고도화 (남/여 선택) AI 수어번역 고도화	고도화 (뉴스/정보장르) 앱고도화 및 대화면앱 (신규) AI 수어번역 고도화	공개 시범서비스 가능한 수어 어휘 및 번역 품질 확보 앱/AI 고도화 학습데이터/수어단어 추가제작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나)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 수행 과정은 ①구축계획 수립-②사업자선정-③사업진행-④검사・종료 단계로 구성됨.

① 구축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상호운영성 등 기술 평가,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적정 사업기간 산정, SW사업 영향평가, 과업내용 심의 확정(부처 과업심의위원회),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 사전협의(행정안전부), 사업계획서 작성을 거치고, ②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며, ③ 사업 진행 단계에서는 사업착수, 보안관리, 하도급 관리가 수반되며 필요 시 과업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④ 검사종료 단계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종료에 대한 검사・검수 등의 절차가 있음.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단계부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연(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유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시스템 개통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단계에서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50.0%,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33.4%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2023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시스템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실집행 저조 사유
2023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4,412	11,456	15,868	7,932	7,936	50.0	2단계(16개 시도통합) 사업착수 후 SW개발 일정 지연 등으로 개통일을 2차례 연기(2023.1월→2023.10월→2024.2월)하여 2024. 2. 13. 시스템 개통(준공지연)으로 미집행 (2024. 5월 준공검사 완료 후 잔금 지급)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예산 3억원은 개통연기에 따라 미집행하고 정산 반납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300	697	997	333	364	33.4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0년 2단계(1차) 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이 2021년 1월에야 체결되면서 2021년 2단계(2차) 사업 자체가 순연되었고, 결함 보완 및 테스트를 거치면서 개통이 지연되어 2단계 외주용역비 잔금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2021년 중 뒤늦게 추가된 서울특별시 통합 부분에 대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찰되어 3단계 사업 관련 외주용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사업단계	사업 내용	당초 계획 일정 (ISP 기준)	실제 추진 일정
1단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인프라 분석・설계	2019.1.~2019.12.	2019.8.~2020.5.
2단계(1차)	세무행정 시스템 및 대국민 시스템 관련 인프라 개발・도입(서울시 제외)	2020.1.~2020.12.	2021.1.~2022.1.
2단계(2차)	세무행정 시스템 및 대국민 시스템 테스트 및 데이터 이관 수행 등(서울시 제외)	2021.1.~2021.12.	2021.12.~2024.2.13.
3단계	서울시의 세무행정 시스템 및 대국민 시스템과의 통합	미포함	2021. 8.~진행중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이 기존 개별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착수 전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서울시를 포함하여 통합・연계가 전제되어야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 연기로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이 일부 불용되었는데 이는 2023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3단계 사업이 추가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진행에 맞는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②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일부 과제 사업부진(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은 사업선정 단계의 문제로 인해 일부 과제의 실집행이 부진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 과제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23.12월)	계약기간	부진사유
합 계			47,091	45,091	25,755		
1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국민권익위원회**	**11,428**	**11,428**	**-**	**2024.4.3. ~10.30.**	**계약지연**
2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3차	행정안전부	8,433	8,433	6,660	2023.9.12. ~2024.5.9.	-
3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2차	중소벤처기업부	9,522	9,522	8,725	2023.6.16. ~12.23.	-
4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구축 2차	외교부	8,210	8,210	8,037	2023.6.12. ~12.24.	-
5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753	3,753	2,332	2023.12.6. ~2024.6.3.	-
6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국가기록원**	**3,745**	**3,745**	**-**	**2024.2.13. ~9.10.**	**계약지연**
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실**	**2,000**	**-**	**-**	**-**	**주관기관 요청에 따른 사업취소**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사업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금의 실집행률은 54.7%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이는 동 사업으로 추진된 과제들 중 일부 과제의 계약 지연 또는 사업 취소로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임.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선정한 후 결국 사업취소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종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미흡함에도 차년도 사업(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을 지원하여 실집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사업 추진 여건 마련 여부와

추진 일정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연사업에 대해 사업지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대법원)

대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집행률 36.2%)하고, 1차 과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과업기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스템 구축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예산액 38억 2,900만원 중 23억 8,900만원이 이월(이월률 62.4%)되고 13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36.2%)되는 등 사업집행이 저조함.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률 저조의 사유로 대법원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연(계약일: 2023. 7.)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의 오픈일정 연기(2024.9. → 2025.1.)로 인해[23]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 개발이 필수적인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일정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일정이 연장 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대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법무부 등 형사사법 업무처리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수행 일정이 연속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과업기간 변경내역]

구분		1차	2차	3차
개발	기존	2023. 7. 31. ~ 2024. 5. 1. (9개월, 275일)	2024. 5. 2. ~ 2025. 5. 1. (12개월, 365일)	2025. 5. 2. ~ 2026. 3. 31. (11개월, 334일)
	변경	2023. 7. 31. ~ 2024. 6. 30. (11개월, 335일)	2024. 7. 1. ~ 2025. 8. 31. (14개월, 427일)	2025. 9. 1. ~ 2026. 7. 31. (14개월, 427일)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존	2023. 12. 5. ~ 2024. 5. 31.	2024. 6. 1. ~ 2025. 5. 31.	2025. 6. 1. ~ 2026. 4. 30.
	변경	2023. 12. 5. ~ 2024. 7. 31.	2024. 8. 1. ~ 2025. 9. 30.	2025. 10. 1. ~ 2026. 8. 31.

자료: 대법원

23)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국민 전자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등 형사사법 업무기관과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임.

④ 소상공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계약체결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실집행률 72.9%)이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내실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이 필요함.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1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ISP’를 수행한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 91억 8,900만원이 확정되는 등 사전준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에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계약요청(소진공→조달청) 후 8월 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동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을 8개월(240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데이터 가공·연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할 계획이고, 실제 시스템 오픈은 2024년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91억 8,900만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실집행 단계에서 이 중 66억 9,900만원만 집행하고(실집행률 72.9%) 24억 9,0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연되어 기금의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내 각종 가명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⑤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지연(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지연과 예산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예산에 ‘홈페이지 고도화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을 위해 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1,800만원이 전용 감액된 예산현액 3억 8,1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2023년 11월에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7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참고로, 국

가교육위원회는 이처럼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사업은 상반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을 2024년에 집행하거나, 2024년도 예산으로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현황]

일 자	사업추진 내용
2023.11.27.	홈페이지 구축 사업 용역 계약 체결
2024.1.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업무 분석
2024.2.~2024.3.	홈페이지 구축 사업 설계 감리
2024.3.	화면디자인 컨셉 협의 및 시안 제작
2024.4.	화면디자인 및 콘텐츠 확정
2024.5.	시스템 개발
2024.6.	통합테스트·관리자교육 및 종료감리
2024.7.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및 안정화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⑥ 홈페이지 개편사업 관련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전용(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예산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분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 예산을 재외공관 직원 이부임을 위한 교체여비로 전용하였음.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기능 전반을 개선하여 주요 외교정책 홍보 기능 및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동 사업 예산에 홈페이지 개편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연구비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3년 일반연구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만 집행되고, 당초 계획한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음.

[2023년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 내 일반연구비(260-01)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일반연구비(260-01)	594	120	△590	-	124	120	4	-	-	4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계획한 일부 기능을 개선함에 따라 일반연구비 예산 5억 9,400만원을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당분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설명함. 그리고 동 예산의 대부분(5억 9,000만원)은 재외공관 발령 직원의 이부임 항공료 및 이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감)하였음.

그러나 이는 당초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예산을 홈페이지 개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재외공관 직원의 이부임을 위한 교체여비로 융통했다는 점에서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의 문제가 있음.

(다)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임.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서는 사업비(단순 SW·HW구입비용 제외) 5억원 이상의 사업과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사업 중 대국민·다부처 연계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 사업비 규모와 사업기간에 따라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3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감리를 수행하고, 20억원 미만인 사업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사업은 2단계 감리(설계-종료)를 수행하도록 함.[24)]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단계별 감리점검내용]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감리 점검 내용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반영여부	설계산출물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검사기준서 구체화 여부	검사항목별 과업이행 여부
제출 서류	요구사항정의서 과업대비표	설계산출물 대비표	최종산출물 대비표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련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을 바탕으로 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감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의 부족·낙찰차액 사용절차를 거치면서 감리 발주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25)]

---

24)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25) 3단계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요구정의 단계 종료시점 이전, 2단계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설계단계 종료시점 이전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① 3단계 감리사업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요구정의 단계 감리의 실효성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사업은 감리사업의 계약의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에서 3단계 감리를 실시하게 되어, 본 시사업의 초반부에 시행되어야 할 요구정의 단계 감리를 뒤늦게 수행하였음.

‘중소유통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은 3단계 감리 대상 사업(사업비 20억 초과, 사업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요구정의 단계’가 수행되어야 함.

이는 본 사업을 착수한 단계 직후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감리업체가 점검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사업은 차년도 5월 중순에야 계약을 체결하여 본 구축사업기간의 40%가 도과하였음. 이는 사실상 ‘설계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요구정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요구정의 단계 감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 시 본사업 추진단계에 알맞은 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감리사업의 선금 미지급 통지절차 미이행(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포털 구축 감리’ 사업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여 사업 종료 후 집행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요청이 없더라도 선금지급 불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포털구축사업 2차 감리’ 사업(2022.9.~2023.3.)의 계약액 1억 1,750만원을 전액 차년도로 이월하고 감리사업이 종료된 2023년 전액 집행하였고, ‘데이터포털구축사업 3차 감리’ 사업(2023.8.~2024.3.)의 계약액 7,440만원을 전액 차년도로 이월하고 감리사업이 종료된 2024년 전액 집행하였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수행업체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통상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업체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어 사업종료 후 대금을

집행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업체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요청이 없어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이는 선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를 공문서를 통해 주고받음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향후 계약상대방의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이를 통지할 필요가 있음.

③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감리용역비 미편성(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1차 구축’ 사업(사업비 32억원)을 추진하면서 감리용역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용역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감리용역을 추진하였음.

2023년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 시 감리용역 관련 일반연구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로부터 1억 7,600만원 전용하여 동 사업의 감리비를 마련하고 집행하였음.

[2023년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명	코드		세부사업명	코드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회) (1631-301)	자산취득비 (430-01)	176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회) (1631-301)	일반연구비 (260-01)	「전자정부법」 제57조 상 의무사항인 감리용역 진행을 위해 전용

자료: 인사혁신처

동 사업은 3단계 감리대상 사업으로서 감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용역 사업 관련 비용을 별도를 계상하지 않아 전용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여 집행한 것은 사업계획 및 준비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감리사업이 중요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라)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사업 관련

개발을 완료한 정보시스템 또는 도입이 완료된 장비에 대해서는 정보화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하는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을 기초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되 예산 및 계약현황에 따라 다르게 집행될 수 있음.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시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하드웨어 장비의 경우 도입 후 1년 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함, 상용·개발 소프트웨어 장비의 경우 도입 후 1년 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는 무상 보수에 해당하나, 대폭적인 기능변경, 성능향상 등의 경우 유상 유지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됨.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부처의 출연금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사업'(19억 9,400만원)을 통합수행·집행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각각 편성하고, 각 위탁운영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용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등)과 자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사업을 단일 수행하고 있음.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내역]

(단위: 원)

부처명	연번	사업명	지출액	지급건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지원	7,511,740	2023년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8,199,446	
	3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4,614,295	
	4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6,060,939	
	5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48,604,751	
	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13,290,001	
	7	개인정보 침해방지	75,028,339	
	8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	

(단위: 원)

부처명	연번	사업명	지출액	지급건명
	9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 지원	-	
	소계		173,309,51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고도화	342,330,815	
	2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45,707,687	
	3	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	110,034,287	
	4	전자서명인증	160,054,885	
	5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	5,404,130	
	6	핀테크산업활성화 기반조성	8,438757	
	7	암호이용활성화	25,469,023	
	8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 운영	8,314,046	
	9	인터넷이용환경 고도화	38,899,594	
	10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4,611,893	
	11	이용자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45,799,838	
	12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2,585,668	
	13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 강화	8,31,404	
	14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498,843	
	15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	75,248,865	
	16	글로벌 ICT혁신클러스터 조성	286,835	
	17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26,226,656	
	18	페이퍼리스 촉진지원	43,195,704	
	19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 확충	9,644,710	
	소계		962,752,236	
방송통신위원회	1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3,994,898	
	2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4,863,717	
	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139,024	
	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13,427,183	
	소계		23,424,822	
행정안전부	1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24,680,103	
	소계		24,680,103	
KISA 운영지원	1	KISA 자체사업, 경상비 등	853,733,328	
	소계		853,733,328	
합계			2,037,900,00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복수 부처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부처는 출연기관이 출연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출연금의 미집행분 또는 이자 상당액의 반납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체 홈페이지 등의 운영・유지사업은 KISA 자체예산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쪼개기 집행 지양 및 단일 세부사업 내 편성·집행 필요 등(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관리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각 세부사업에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편성·집행 등에 대한 회계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에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12월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17억 8,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후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의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 내에 동 사업 관련 예산을 6억 9,900만원만 편성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획 편성 시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은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이 대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경영혁신지원 등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7개 세부사업의 보조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이를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단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음.[26)]

[2023년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	시장경영 혁신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합계
계획액	699	-	-	-	-	-	-	-	699
발주 금액	139	121	100	455	605	60	206	94	1,780
집행액	119	121	100	455	605	60	206	94	1,760

주 1) 계획액은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주금액은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보조사업 계획 상 예산 산출금액을 기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6)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 발주금액 17억 8,000만원과 계약액 17억 6,042만원의 차이인 낙찰차액 1,958만원은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 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에서는 각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발주금액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정산하였음.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그 성격상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에 일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당 사업의 수행 후 낙찰차액 및 발생이자를 정확히 정산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③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유상유지보수 부적정(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기간 산정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예산 산정 시 2022년 도입하여 무상유지보수 대상(구입 후 1년)에 해당하는 장비도 유상 유지보수 사업대상에 6개월분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2년 도입 장비(2022.8.22. 도입)의 무상 하자보수 1년 기간을 고려하면, ① 2023년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고, ② 유상유지보수 기간은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임.

그런데, 유상 유지보수 계약상 기간(6개월)을 고려할 때 중복 계상 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52일간에 해당하는 101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상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보아 계약을 체결한 것임.[27)]

④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관리용역비 불용(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HW, SW 도입 일정도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인 관리용역비가 불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개발일정 지연으로 인한 관리용역비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시작

27) 2022년 도입 장비는 크게 ①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와 ②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용 콘솔로 나뉘며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에 유지보수 사업비로 산출된 내역은 총 1,014,356원임
1)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 도입 금액(41,800,000원) × 유지보수 요율(약 14.2%) × (52일 / 365일) = 843,397원
2) 콘솔 도입 금액(22,848,000원) × 유지보수 요율(약 5.3%) × (52일 / 365일) = 170,959원

되어 2023년은 4차연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93억 5,400만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구축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해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인 관리용역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예산 배정금액 7억 6,500만원 중 시스템 구축 지연을 고려하여 재산정된 5억 5,025만원에 대해 집행액은 5억 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100만원임(불용률 40.6%).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리용역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재산정액	집행액	불용액
관리용역비	765	550	544	221(낙찰차액 4.3 포함)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발 일정의 준수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비인 관리용역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마)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미흡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사업[28]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성과점검을 받아야 함.[29] 이때, 정보화사업의 성과측정의 근거로는 이용자만족도, 정보 활용(다운로드) 건수, 이용자수, 서비스 배포율, 서비스 신청·제공 건수, 정보공개 건수 등이 있음.

그러나 정보시스템 구축 후에 사용자 만족도가 하락하거나, 당초 예상 대비 이용건수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 계획한 운영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4세대 나이스(NEIS) 개편 이후 사용자 만족도 하락(교육부)

4세대 나이스 개편 이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가 급감한 바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서비스 개편 사업 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전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줄이고, 서비스 신규 개통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나이스(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임.[30]

2002년 11월 최초 개통 이후, 2006년과 2011년 2차례 개편에 이어 2020년 제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음.

[4세대 나이스 구축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4세대 나이스 응용SW 및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2020.9. ~ 2023.12.(안정화 기간 포함)
개통시기	2023.6.21.
사업예산	2,824억원(출연금 37억원, 특별교부금 850억원, 지방비 1,937억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2023.6.19.

28) 중앙부처, 공공기관은 10억원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은 1억원 이상은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ISP에 따른 구축사업 역시 포함됨

2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전협의·성과관리 업무메뉴얼"

30) 초·중등학교(11,600여개), 교육행정기관(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대학·전문대학(400여개) 등에서 사용되고, 학생 545만 명, 교직원 55만 명, 학부모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교무·학사·인사·급여 등 44개 단위업무 처리에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제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2023년 11월에 이루어진 교직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교직원의 만족도는 전년도 90.81점에서 33.66점으로 급감하고, 학생의 만족도(87.33점→72.11점)와 학부모 만족도(84.72점→67.42점)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나이스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자 수	977	3,259	8,628	640	1,466	2,725	11,389	875	979
만족도 점수	90.56	86.64	83.01	90.81	87.33	84.72	33.66	72.11	67.42

주 1) 만족도 점수는 약간만족, 대체로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한 비율 합계
2) 교직원은 제4세대 나이스, 학생은 나이스플러스, 학부모는 학부모서비스 시스템 대상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직원의 경우 학기말 업무집중시기 접속지연, 사용법 변경에 따른 초기 업무 혼선(재처리, 처리 오류 조치 등) 등으로 불만족 요인이 발생하였고, 학생/학부모는 기존 '학생-학부모 서비스'를 '나이스 플러스'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등록 및 재가입으로 초기 불편이 발생하여 불만족 요인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향후 서비스 신규 개통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4세대 나이스 구축 이후 최근까지도 학생 온라인 출결 시스템과 관련된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31],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재정데이터분석센터 및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이용실적 저조(기획재정부)

첫째,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2022년 구축되었으나 아직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와 목적·제공 데이터 및 시설 구조 등이 유사하므로 재정 절감 및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이를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정데이터분석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32]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2,638명이 이용하였으며, 유형별로 '데이터분석·가공'이 89명,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31) 인천일보, 「교육행정시스템 '4세대 나이스' 불편 가득」, 2024.4.25.
중도일보, 「학생 온라인 출결 시스템 '유명무실' 교원들 "출결 민원 끊이지 않아"」, 2024.5.2.

32)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보안체계 속에서 분석·가공·반출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구축되었으며,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음.

교육’ 639명,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 1,910명으로, 재정정보시스템 및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이 전체 이용실적의 96.6%이고 센터 설치·운영의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는 데이터분석·가공은 전체 이용실적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보안체계 속에서 국민이 분석·가공·반출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공무원 대상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은 센터가 운영되기 전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의 인프라 등으로 실시하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둘째,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시스템 이용실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국세 외의 벌금및과료, 과징금, 과태료 등 다양한 국세외수입을 통합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2022년 2월 개통되었음. 2024년 5월까지 28개월간 이용실적을 보면, 회원가입건수도 누적 432건이고 접속건수가 월평균 63.9건, 납부건수는 월평균 1.9회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임.

③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통계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개소의 경우 2022년에 비하여 2023년 이용실적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통계청은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계데이터센터는 전국 12개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2023년 기준 12개소의 연간 이용자 수가 4,528명(비대면 이용자수 제외)에 불과하고 좌석당 월평균 3.6명(비대면 이용자수 제외)만 이용하고 있음. 참고로,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2023년 32억 4,500만원이 투입되어 개소당 평균 2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개소당 연간 평균 이용자수는 377명에 불과한 수준임.

이와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국회는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자료 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활용 제한을 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과 ‘통계청은 정부부처, 연구자 등 이용자 특성 및 연구, 교육,

창업 등 이용 유형별 데이터센터 이용방식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한바 있으나, 시정요구사항 조치완료(2024년 1월 31일) 이후에도 이용실적에 있어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바) 낙찰차액 사용 부적정, 예산 비목 부적정 집행 등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발생 시 낙찰차액 활용범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낙찰차액 사용 후 기획재정부 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의 활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무역보험공사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관리 강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공사는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무역 플랫폼 개발’ 사업의 낙찰차액을 바탕으로 신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거나 단순경비성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무역 플랫폼 개발’ 12억 3,000만원의 예산액 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해 7억 6,400만원, 감리용역을 위해 7,200만원, PMO 용역을 위해 1억 500만원을 합한 총 9억 4,100만원이 최종낙찰금액으로 결정되어 낙찰차액 2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년 빅데이터기반 디지털무역플랫폼 고도화 사업 내 일반연구비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지출건명	지출결의 금액	자금이체일자
단기수출보험 자동한도 모형 검증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 지급	19,900	2023-11-09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자동한도 모형검증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 지급	19,900	2023-11-15
K-SURE 사이버영업점 이용현황 설문조사 용역계약 관련 경비 지급조	1,230	2023-04-05
빅데이터AI포럼 연회비 경비 지급조	440	2023-05-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공사는 낙찰차액을 바탕으로 단기수출보험 자동한도 모형 검증 용역,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자동한도 모형 검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고, 다른 내역사업인 ‘수출중소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과업인 K-SURE 사이버영업점 관련 경비로 지출하였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신규 빅데이터 무역금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대고객 보험한도 추천 서비스에 지난 2021년 旣구축된 보험·보증 자동한도 모형의 데이터가 활용되므로 데이터 정확성 재확인 등을 목적으로 자동한도 모형 검증 용역을 일종의 감리용역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당초 발주한 감리용역비 7,200만원에 해당 2건의 용역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후에야 추가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2건의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동일업체(당초 2021년 자동한도 모형 구축 업체)에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빅데이터AI포럼 연회비 경비를 일반연구비로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경비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지출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비로 집행가능한 비목에도 해당하지 않음.

②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관리 강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R&D 사업 기획평가관리비로 추진한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통상의 기획평가관리비의 용도인 기관운영비 성격으로 지출하였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다수의 R&D 사업 내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총액 1억 1,2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기관운영예산으로 사용하였음. 특히,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이 아닌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사업의 R&D 과제비를 사용하여 총 2억 1,600만원 상당의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정보화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800만원을 불용·반납처리하지 않고 통상의 기획평가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기관운영경비로 모두 지출하였음.

[2023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R&D 사업 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약명	발주 금액	낙찰액	낙찰 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 (R&D) (5804-316)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560	2,510	50	기관 운영 예산 사용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620	1,595	25	
	에너지인력양성 성과인증시스템 개선	45	44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 (R&D) (5806-304)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데이터 이관 용역	400	382.9	17.06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정보연계 사업	303	302	1.28	
에너지국제공동연구 (R&D) (5801-301)	2023년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120	106	14	
	2022년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120	116	4	
합 계		5,168	5,056	112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수시배정사업

가. 개 요

(1) 예산배정 제도 개관

(가)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예산의 배정이란 집행기관이 재정사업 수행이나 지출원인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함. 예산배정의 목적은 회계연도 초부터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후반기의 자금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세수 부족으로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금지출을 조정하며,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집행 가능한 수준만큼의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을 독려하는 데 있음.[1)]

예산배정의 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2)]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3)]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예산의 재배정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사업부서에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4)] 예산의 재배정이 이루어지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지출원인행위는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데,

문의 : 노성준 입법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2)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이루어짐.

(나) 수시배정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함.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5][6]

중앙관서가 수시배정사업의 예산 배정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의 보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등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예산을 배정함.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수시배정사업을 선정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별도로 운용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4개의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신설하였고, 일부 기준은 삭제하여 2014년까지 3개의 기준에 따라 수시배정사업을 선정하였음.[7]

2015년부터 수시배정사업의 선정기준이 3개에서 11개로 세분화되었고, 그 기준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은 크게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기준마다 2~4개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5)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6) 참고로, 기금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 지출항목'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선정기준은 수시배정 선정기준과 거의 동일함.

7) 2014년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① 2014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사업
② 법령 제·개정, 규정 마련 등 선결조건 충족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③ 예산 편성 당시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수시배정사업 선정 기준]

기준	세부기준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 의무 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 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수행주체, 지원조건, 추진방식 및 계약내용 변경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2) 수시배정사업 현황

(가) 최근 5년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최근 5년간 매년 22~28개 부처의 70~118개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왔음.[8]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시배정사업수와 예산 규모(대상액)가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22년에는 수시배정사업이 전년도 104개에서 70개로 크게 줄었지만, 예산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2023년은 수시배정사업수가 전년 대비 7개 늘어난 데 비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10조 9,545억 8,5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남.[9]

8) 내역사업 기준

9)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10조 9,702억 4,700만원)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주원인임.

[최근 5년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수	사업수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C/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2019	28	118	3,718,446	3,695,867	3,607,639	99.4	97.0	97.6
2020	23	110	3,634,098	3,598,575	3,540,041	99.0	97.4	98.4
2021	25	104	2,648,630	2,519,755	2,365,505	95.1	89.3	93.9
2022	23	70	3,168,276	3,134,303	3,101,495	98.9	97.9	99.0
2023	22	77	15,900,340	15,762,359	15,749,025	99.1	99.0	99.9

주 1) 대상액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예산액, 배정액은 대상액 중 실제 부처에 배정된 금액
2) 2023년 대상액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예산(10조 9,702억 4,7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수시배정으로 선정된 사업예산 중 배정된 예산의 비율인 배정률은 95.1~99.4%, 수시배정사업 예산 대비 집행액 비율(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89.3~99.0%, 실제 배정된 예산액 대비 집행률(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93.9~99.9%로 나타남.

(나) 2023년 부처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2023년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등 22개 부처에서 77개(내역사업 기준)의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되었음.

대상액 15조 9,003억 4,000만원 중 15조 7,623억 5,900만원이 배정되어 99.1%의 배정률을 나타냈고, 15조 7,490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99.0%, 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나타남.

[2023년 부처별 수시배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	-	-	-	-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	3,000	3,000	3,000	100.0	100.0	100.0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2,700	2,700	-	100.0	-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칠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700	-	-	-	-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노원 어린이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2,700	200	200	7.4	7.4	100.0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송파 책박물관 부지문화체육시설 건립)	2,100	-	-	-	-	-
	관광자원 기반조성 (충북 문화의 바다공간 조성)	1,800	50	50	2.8	2.8	100.0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강북구민운동장 시설개선)	1,230	540	540	43.9	100.0	100.0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1,000	1,000	500	100.0	50.0	50.0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800	-	-	100.0	-	-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대구 풍동실험실 지원)	620	620	620	100.0	100.0	100.0
	관광자원 기반조성(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500	500	500	100.0	100.0	100.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	300	300	-	100.0	-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서천 론볼경기장 시설개선 지원)	300	300	300	100.0	100.0	100.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200	200	200	100.0	100.0	100.0
	우수선수 양성지원 (남원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200	-	-	-	-	-
	관광자원 기반조성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	200	-	-	-	-	-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336,333	1,336,333	1,336,333	100.0	100.0	100.0
	대학혁신지원(R&D)	1,100,984	1,100,984	1,100,984	100.0	100.0	100.0
	전문대학 혁신지원(R&D)	622,000	622,000	622,000	100.0	100.0	100.0
	국립대학 육성사업	458,000	458,000	458,000	100.0	100.0	100.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22,722	152,719	152,719	68.6	68.6	68.6
	인문사회 기초연구(R&D)	15,000	15,000	15,000	100.0	100.0	100.0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12,000	4,000	4,000	33.3	33.3	100.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0,000	10,000	10,000	100.0	100.0	100.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10,000	-	-	-	-	-
과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9,000	7,887	7,887	87.6	87.6	100.0
	방송콘텐츠진흥(1인미디어산업기반조성)	2,000	1,800	1,800	90.0	90.0	10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R&D)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	1,932	1,932	1,932	100.0	100.0	100.0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R&D) (차세대AI반도체첨단공정Fab구축)	1,400	1,400	1,400	100.0	100.0	100.0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R&D) (혁신디지털의과학원구축)	893	893	893	100.0	100.0	100.0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AI중심산업융합인프라구축)	700	700	466	100.0	66.6	66.6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R&D) (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	644	644	644	100.0	100.0	100.0
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9,149,408	9,149,408	9,149,408	100.0	100.0	100.0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건강증진기금)	1,820,839	1,820,839	1,820,839	100.0	100.0	100.0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800	800	800	100.0	100.0	100.0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700	700	497	100.0	71.0	71.0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508	508	508	100.0	100.0	100.0
	제약산업 육성·지원	500	500	500	100.0	100.0	100.0
국가 유산청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41,900	41,900	41,900	100.0	100.0	100.0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900	100	100	11.1	11.1	100.0
	천연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300	90	90	30.0	30.0	100.0
	고도 보존 및 육성	200	200	200	100.0	100.0	100.0
	무형유산원운영	200	200	192	100.0	96.0	96.0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15,293	515,293	515,293	100.0	100.0	10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2,500	352,500	352,473	100.0	100.0	1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24,600	23,600	23,600	95.9	95.9	100
	접경권발전지원(광덕터널 도로개설사업)	700	-	-	-	-	-
산자부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00	50,000	50,000	100.0	100.0	100.0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00	50,000	50,000	100.0	100.0	100.0
	폐광대책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폼구축	400	400	400	100.0	100.0	100.0
국토부	철도기본계획수립	7,030	2,800	767	39.8	10.9	27.4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건설	1,744	-	-	-	-	-
	첨단도로교통체계	1,481	-	-	-	-	-
	고속도로조사	200	-	-	-	-	-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환경부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용	11,900	10,866	10,866	91.3	91.3	100.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용	1,000	1,000	-	100.0	-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500	500	500	100.0	100.0	100.0
해수부	해양정원 조성사업	2,150	-	-	-	-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750	-	-	-	-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500	500	-	100.0	-	-
고용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2,230	2,230	2,230	100.0	100.0	100.0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403	1,403	1,403	100.0	100.0	100.0
질병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2,500	-	-	-	-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행복청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964	-	-	-	-	-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200	-	-	-	-	-
외교부	전략적 협력 강화(ODA)	6,000	2,124	2,124	35.4	35.4	100.0
방통위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50	2,346	2,346	41.5	41.5	100.0
산림청	정원조성관리(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4,850	4,850	12	100.0	0.2	0.2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3,351	-	-	-	-	-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연구인프라보강(R&D)	1,486	-	-	-	-	-
여가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000	1,000	9	100.0	0.9	0.9
기재부	중랑구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재산관리기금)	900	-	-	-	-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45	-	-	-	-	-
보훈부	현충시설건립(이중린 의병대장 체험학습 건립지원)	600	-	-	-	-	-
합 계	77개	15,900,340	15,762,359	15,749,025	99.1	99.0	99.9

주 1) 수시배정사업수가 많은 부처 순, 사업수가 동일할 경우 대상액이 높은 부처 순으로 정리
2) 내역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수시배정사업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개로 가장 많고, 교육부 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수시배정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실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배정률 0%)은 질병관리청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등 20개로 수시배정사업 77개 중

26.0%이고, 당초 예산액만큼 전액 배정된 사업(배정률 100%)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사업 등 43개로 전체 수시배정사업 중 55.8%를 차지하고 있음.

(다) 2023년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별 현황

2023년 지정된 73개의 수시배정사업의 사유를「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10)]

[2023년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별 현황]

(단위: 개, %)

선정기준		사업수	비중
1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15	19.5
2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	-
3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8	10.4
4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14	18.2
5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 의무 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 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4	5.2
6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8	10.4
7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8	10.4
8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2	2.6
9	수행주체, 지원조건, 추진방식 및 계약내용 변경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1	1.3
10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	-
11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9	11.7
	기타*	8	10.4
합 계		77	100.0

주 1) 기타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11개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유
2) 내역사업 기준
자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0)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인 경우가 15개(19.5%)로 가장 많고,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 14개(18.2%),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 9개(9.1%)로 나타남.

또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이 각각 8개(10.4%)로 나타나고 있음.

그 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선정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유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8개임.

예를 들어, 외교부의「전략적 협력 강화(ODA)」사업의 경우 ‘정상 간 외교공약 사항 이행 등 전략사업 긴급수요’라는 수시배정 사유가 집행지침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사업의 ‘신규가입 추이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사업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 확정 후 사업 추진’ 등의 사유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시배정 선정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11]

[집행지침 상 선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로 수시배정된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배정액	집행액	수시배정 사유
복지부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긴급돌봄 한시사업(2023-2025))	700	700	497	공모를 통한 사업 진행 등 사업진행 조건 확인 후 집행 필요
외교부	전략적 협력 강화(ODA)	6,000	2,124	2,124	정상 간 외교공약 사항 이행 등 전략사업 긴급수요
해수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500	500	-	사업대상 부지 미확보
산자부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00	50,000	50,000	특화단지 지정(7.20)이후, 예산배정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00	50,000	50,000	특화단지 지정(7.20)이후, 예산배정
	폐광대책비	1,000	1,000	1,000	경제진흥사업 추진계획 마련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3,351	-	-	신규가입 추이에 따른 예산 규모 조

11)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될 여지는 있음.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배정액	집행액	수시배정 사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정을 위한 수시배정
과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9,000	7,887	7,887	디지털플랫폼정부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 확정 후 사업 추진 필요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검토의견

(1) 수시배정 요건 부합 여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같은 지방이전재원은 법률에 교부비율이 정해져 있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할 실익이 적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소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유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였음.

[2023년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수시배정사업 지정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배정액	집행액	수시배정 사유	수시배정 해제 사유	배정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15,293	257,647	257,647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각종 재난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비 부담분 보전	’23.09.15.
			257,646	257,646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하반기 정기교부	’23.11.30.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22,722	152,719	152,719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23년 5~12월 지원사업 구체화 등으로 해소	’23.10.27. ’23.12.14.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336,333	1,336,333	1,336,333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23년 1~3월 지원사업 구체화 등으로 해소	’23.3.9. ’23.12.1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이들 사업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 금액을 지방에 교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12]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에 대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점검을 통해 어떠한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수시배정사업 선정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19.24%의 100분의 3 중 5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 중 10%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 중 60%

특히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2024년에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특별교부세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전액 배정·집행되어 수시배정사업 지정의 실익이 적어 보이므로, 기획재정부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같은 지방이전재원 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13)]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수시배정사업 지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2019	지역현안특별교부세	588,899	588,899	588,899	100.0	100.0	10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47,225	147,225	147,225	100.0	100.0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736,123	736,123	736,123	100.0	100.0	100.0
2020	지역현안특별교부세	555,792	555,792	555,792	100.0	100.0	10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38,947	138,947	138,947	100.0	100.0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683,745	683,745	683,745	100.0	100.0	100.0
2021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37,746	137,746	137,746	100.0	100.0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339,300	339,300	339,300	100.0	100.0	100.0
2022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70,426	170,426	170,426	100.0	100.0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06,064	506,064	506,064	100.0	100.0	100.0
2023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15,293	515,293	515,293	100.0	100.0	100.0

자료: 행정안전부

13) 교육부 소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4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음.

(2) 예산 배정 후 집행률 저조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사업의 4분기 예산 배정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이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수시배정사업 중 수시배정을 해제하고 실제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사업은 수시배정 지정을 해제한 후 3억원 전액 배정되었으나, 2023년에 집행되지 못하였고, 여성가족부의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도 10억원 전액 배정되었으나, 집행액은 900만원에 그치는 등 수시배정사업 중 실제 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집행이 부진한 사례들이 있음.

[2023년 수시배정사업 배정액 대비 집행률 부진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배정일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	300	300	-	100.0	-	**’23.10.1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2,700	2,700	-	100.0	-	**’23.12.21.**
국토부	철도기본계획수립	7,030	2,800	767	39.8	27.4	’23.6.19.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용(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1,000	1,000	-	100.0	-	**’23.10.12.**
해수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어선건조지원센터(고흥) 구축)	500	500	-	100.0	-	**’23.12.22.**
산림청	정원조성관리(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4,850	4,850	12	100.0	0.2	’23.5.4.
여가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000	1,000	9	100.0	0.9	’23.6.14.

주 1) 배정액 대비 집행률 30% 미만
2) 밑줄 굵은 표시는 4분기 배정
3) 2023년 말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배정액 대비 저조한 집행률은 ① 4분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할 시간적 여유 없이 이월되었거나, ② 집행부진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은 사업예산을 연말인 2023년 12월에 배정함으로써 전액 이월되었고,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건조시원센터(고흥) 구축’ 사업예산 5억원도 2023년 12월에 배정하여 실집행 없이 전액 이월되었음. 환경부 소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사업은 4분기인 10월에 배정함으로써 설계공모 입찰공고 실시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10억원의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음.

다음 산림청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비 확보를 이유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2023년 5월 수시배정사업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토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건설보상비 예산 48억 5,000만원 중 48억 3,1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집행부진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전액 배정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사업의 4분기 예산 배정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이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국회의 심의와 정부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각 부처는 국회 증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예산이 미배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수시배정사업 77개 중 80.5%인 62개 사업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인데, 대상액 규모는 2조 8,675억 7,000만원으로 전체 수시배정사업 대비 18.0%이며, 배정된 금액은 2조 8,202억 9,700만원으로 배정률은 98.4%로 나타남.

[2023년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증액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수시배정사업수			수시배정사업 대상액			국회 증액 사업 배정액	
전체	국회 증액사업	비중	전체	국회 증액사업	비중	배정액	배정률
77	62	80.5	15,900,340	2,867,570	18.0	2,820,297	98.4

주) 내역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수시배정사업 중 예산의 배정이 저조(배정률 30% 이하)하거나 대상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30% 이하)한 사업은 27개이고, 대상액 규모로는 406억 3,500만원, 배정액은 107억 9,000만원(배정률 26.6%), 집행액은 4억 6,100만원(대상액 대비 1.1%, 배정액 대비 4.3%)으로 나타남.

[2023년 부처별 국회에서 증액된 수시배정사업 중 배정률·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	300	300	-	100.0	-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	-	-	-	-	-
	관광자원 기반조성(횡성 루지체험장 조성)	200	-	-	-	-	-
	관광자원 기반조성(충북 문화의 바다공간 조성)	1,800	50	50	2.8	2.8	100.0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800	-	-	-	-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2,700	2,700	-	100.0	-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칠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700	-	-	-	-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노원 어린이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2,700	200	200	7.4	7.4	100.0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송파 책박물관 부지문화체육시설 건립)	2,100	-	-	-	-	-
	우수선수 양성지원 (남원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200	-	-	-	-	-
국가 유산청	천연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300	90	90	30.0	30.0	100.0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900	100	100	11.1	11.1	100.0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	1,481	-	-	-	-	-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건설	1,744	-	-	-	-	-
	고속도로조사	200	-	-	-	-	-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용	1,000	1,000	-	100.0	-	-
해수부	해양정원 조성사업	2,150	-	-	-	-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750	-	-	-	-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500	500	-	100.0	-	-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대상액 대비 집행률 (C/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행복청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964	-	-	-	-	-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200	-	-	-	-	-
산림청	정원조성관리(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4,850	4,850	12	100.0	0.2	0.2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3,351	-	-	-	-	-
여가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000	1,000	9	100.0	0.9	0.9
기재부	중랑구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재산관리기금)	900	-	-	-	-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45	-	-	-	-	-
보훈부	현충시설건립(이중린 의병대장 체험학습 건립지원)	600	-	-	-	-	-
합계	27개	40,635	10,790	461	26.6	1.1	4.3

주) 배정률 30% 이하 또는 대상액 대비 집행률 30% 이하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수시배정사업의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토교통부의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건설’,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원 조성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등 7개 부처의 16개 사업은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부처별 국회 증액사업 중 수시미배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배정액	미배정 사유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	-	지방비 미확보
	관광자원 기반조성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	200	-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800	-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칠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700	-	지자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미배정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송파 책박물관 부지문화체육시설 건립)	2,100	-	지자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미배정
	우수선수 양성지원 (남원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200	-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미배정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배정액	미배정 사유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	1,481	-	자율협력주행인증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미완료에 따라 미배정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건설	1,744	-	타당성재조사 추진중('23.1~)으로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고속도로조사	200	-	(인천-서울)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어 전액 미배정
해수부	해양정원 조성사업	2,150	-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22.5~)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750	-	부산시의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중단 의사표시('23.8.2.)
행복청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964	-	공동캠퍼스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에 따른 수시배정 미해소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200	-	타당성재조사 시행 중으로 사업계획 미정에 따라 배정 순연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3,351	-	신규가입 저조에 따른 예산 미배정
기재부	중랑구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재산관리기금)	900	-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45	-	사업주체 등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산업연구원으로 이관됨
보훈부	현충시설건립(이중린 의병대장 체험학습 건립지원)	600	-	연말까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부분 등 재원확보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 미제출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회 증액사업 중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주로 지방비 미확보, 타당성재조사 등 관련 절차 미완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다만 국회의 심의와 정부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각 부처는 국회 증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예산이 미배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은 2023년 11월 설립된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공동캠퍼스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공동캠퍼스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운영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규가입 저조로 인해 수시배정 대상액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신규가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우대저축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참여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의 ‘이중린 의병대장 체험학습 건립지원’ 사업도 사업계획 미제출로 전액 미배정되어 불용되었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4) 수시배정사업 지정이 가능함에도 미지정

2년 연속 집행부진·근거법령 미비 또는 사전절차 미완료 등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수시배정 제도가 객관적·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중 2022~2023년 연속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저조한 사업·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이 있음에도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근거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2년 연속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에도 이들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 역시 입찰공고 유찰 등으로 2년 연속 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해양수산부의 ‘여수 웅천마리나’ 및 국토교통부 ‘의정부역 환승센터’ 사업 등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2022~2023년 부처별 집행률 부진 사업 현황 예시]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집행부진 사유
복지부	일반회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390	-	-	390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근거법률 제정 지연에 따른 불용
산자부	일반회계	킨텍스 3단계 건립	킨텍스 3단계 건립	7,400	-	-	14,500	-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 및 재공고 유찰
	지특회계	기타 기반시설 지원	명지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	1200	-	-	500	-	-	연약지반처리 절대공기 소요로 인한 지방비 미매칭
해수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수면 자원조성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보상	11,563	83	0.7	17,372	11	0.1	피해 증빙자료, 잔존시설이 없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보상금 산정·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손실보상금 전액(59억원) 이월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수리조선단지 정부지원	-	-	-	2,520	-	-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중지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발주 지연
	교통시설특별회계	마리나항만	여수 웅천 마리나	8,310	-	-	12,450	-	-	행정절차(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기간 소요로 착공 지연
고용부	일반회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1,675	127	7.6	5,411	528	9.8	기업은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사용자책임 부담, 일부 가사관리사는 프리랜서 선호 등으로 정부인증이 더딘 상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집행부진 사유
국토부	지특회계	환승센터 구축지원	의정부역 환승센터	800	-	-	800	-	-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에 따른 사업계획 재검토

자료: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2년 연속 집행부진, 근거법령 미비, 사전절차 미완료 등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수시배정 제도가 객관적·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 법적근거 마련 필요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수시배정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예산의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으나, 동시에 정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도 발생함.

수시배정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시배정사업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선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법」 상 수시배정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시배정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위임 규정을 두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확히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14]

또한 현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판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수시배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선정기준을 명시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6) 수시배정사업 현황 국회 제출 의무 도입 필요

수시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배정사업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수시배정사업의 내역은 전년도 결산 심사 준비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당해연도 수시배정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수시배정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15]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음.

---

14)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위법령에 수시배정 선정기준을 상세히 정할 경우 예산 집행과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15) 윤영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5447),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5962)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제출 의무 법안에 대해 과거 기획재정부는 “집행단계에서는 정부의 집행권을 보장하고 집행내용은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16]

그러나 예산의 전용과 같은 집행 과정의 내역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에 대한 일부 사항을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 집행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되거나 미배정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수시배정의 현황 또는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46조제5항 및 제47조제4항에서는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체가 있을 경우 그 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주요항목 지출금액 20% 초과 등) 시에도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7] 수시배정사업 내역도 이에 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16)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2.9.

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 · 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정책금융 사업

가. 개 요

정책금융 사업은 정부가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 사업으로, 정부가 융자·이차보전·보증 및 투자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정의함.[1)]

정책금융 사업을 자금지원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융자지원·이차보전(利差補塡) 지원·보증지원 및 투자지원(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① 융자지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융자수행기관(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대출의 실행과 관리, 대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직접융자'와 금융기관이 대출의 실행과 관리, 대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국가는 사전에 정해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간접융자'로 나눌 수 있음. ② 이차보전지원은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 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차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지원임. ③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후 대출 부실화 시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수행됨. ④ 투자지원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는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짐.

2023회계연도 부처별 정책금융 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총 22개 부처의 예산현액 44조 8,938억 3,900만원 중 43조 2,225억 4,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었음. 결산액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54.0%(23조 3,278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9.1%(8조 2,421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8.6%(3조 7,343억원)으로 상위 3개 부처가 전체 정책금융 사업의 81.7%를 차지하고 있음.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보고서(2013.8.)에서의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의 상업적 기능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자금의 접근성·가용성·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해주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으로 정의함.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2022.6.)에서의 '정책금융'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 및 금융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정책금융을 주요 기능별로 중소금융·수출금융·개발금융·주택금융 및 서민금융으로 분류함.

[2023회계연도 부처별 정책금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2023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1,910,929	1,864,959	1,900,959	1,714,620	2,446,382
교육부	930,740	930,740	930,740	905,863	777,6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957	23,957	23,957	23,956	6,502
통일부	22,557	22,557	22,557	2,027	19,473
국방부	69,594	100,151	100,151	99,701	70,142
행정안전부	150	150	150	85	150
국가보훈부	31,963	38,671	38,671	38,257	35,249
문화체육관광부	826,500	831,500	834,608	817,578	1,099,230
농림축산식품부	3,730,616	3,752,669	3,801,438	3,734,345	4,114,682
산업통상자원부	1,194,982	1,194,982	1,194,982	1,174,643	1,011,454
보건복지부	64,753	64,753	64,786	64,781	47,298
환경부	293,373	293,373	283,873	281,973	352,188
고용노동부	661,297	758,040	758,040	725,915	677,909
국토교통부	25,279,030	24,485,588	24,485,588	23,327,755	29,509,181
해양수산부	559,790	559,790	557,096	497,714	666,538
중소벤처기업부	7,849,539	8,299,548	8,299,548	8,242,123	8,859,041
인사혁신처	1,066,491	1,145,210	1,145,210	1,126,780	934,065
금융위원회	419,502	430,502	430,502	423,380	352,433
방위사업청	10,985	10,985	10,985	10,985	18,148
산림청	9,715	9,715	9,715	9,667	12,652
해양경찰청	283	283	283	402	648
특허청	-	-	-	-	11,400
계	44,956,746	44,818,123	44,893,839	43,222,549	51,022,422

자료: 전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정책금융 사업의 자금지원 유형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이차보전지원 유형임.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2023년 기준 1조 7,331억 9,7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연평균 2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유형인 투자지원은 2023년 지출액이 1조 3,136억 9,6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연평균 12.7%의 증가율을 보였음.

[최근 5년간 정책금융 사업 주요 비목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융자지원	37,199,598	43,061,607	45,675,233	45,413,541	39,554,756	1.6
이차보전지원	833,989	787,530	829,178	1,127,123	1,733,197	20.1
보증지원	655,133	453,9675	2,256,440	2,540,456	620,901	△1.3
투자지원	814,688	1,637,713	2,211,719	1,822,261	1,313,696	12.7
합계	39,503,408	50,026,525	50,972,570	50,903,381	43,222,550	2.3

주) 융자지원은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 및 일부 통화금융기관융자금(450-02목), 이차보전지원은 이차보전금(320-05목)을 기준으로 추출한 값이며, 보증 및 투자 지원은 사업별로 편성 비목을 달리하므로 사업별 지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자금지원 유형별 현황

(1) 융자지원 사업 결산

2023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융자지원 사업은 16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41조 222억 2,200만원 중 39조 5,547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4%)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1조 3,124억원), '전세임대(융자)'(4조 8,67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융자)'(2조 9,459억원) 등이 있음.

[2023년 부처별 융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융자(융자)	560	560	560	560	560
		민간보육시설지원(융자)	560	560	560	560	560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아차관	705,400	500,307	500,307	456,839	849,890
		아프리카차관	304,852	234,680	234,680	188,685	416,981
		중동-CIS차관	131,972	10,946	10,946	9,631	112,383
		중남미차관	36,396	13,918	13,918	13,264	43,86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324,356	743,125	743,125	727,652	608,861
	기후대응기금	친환경설비투자	100,000	93,000	93,000	70,000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145,000	113,230	149,230	98,115	221,600
교육부	사학연금기금	국고대여학자금융자	41,481	57,370	57,370	54,162	37,125
		생활안정자금대여	711,847	695,958	695,958	695,701	630,959
		직원복지대부(융자)	7	7	7	7	-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융자)	88,522	88,522	88,522	77,307	69,000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융자)	70,733	70,733	70,733	70,733	28,623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융자)	10,650	10,650	10,650	453	4,4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융용기술개발지원(융자)	12,455	12,455	12,455	12,455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0,000	10,000	10,000	-	9,000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8,282	8,282	8,282	2,027	6,626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학자금 대부	21,984	21,984	21,984	21,534	18,035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국가유공자대부(융자)	24,875	24,875	24,875	24,653	22,388
		5.18민주유공자대부(융자)	198	198	198	196	178
		특수임무유공자대부(융자)	125	125	125	123	113
		제대군인대부(융자)	1,950	1,950	1,950	1,762	1,755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8,000	21,000	21,000	21,000	18,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46,500	446,500	446,500	446,336	536,50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76,100	76,100	76,100	76,100	157,88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 지원)	1,080	1,080	1,080	104	1,080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8,460	8,460	8,460	7,443	7,6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28,000	28,000	28,000	27,948	22,800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409,320	409,320	409,320	409,278	356,082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109,000	109,000	109,000	102,403	116,00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융자)	25,630	25,630	25,630	25,630	25,630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융자)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36,907	36,907	36,907	36,907	36,907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58,446	458,446	458,446	458,446	458,24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44,633	144,633	144,633	139,348	144,633
	농지관리기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290,700	290,700	290,700	290,700	233,700
		맞춤형농지지원(융자)	853,196	840,385	840,385	840,385	1,236,700
		농지연금(융자)	228,237	263,060	263,060	263,060	242,309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8,000	8,000	8,000	3,966	6,700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관리(융자)	23,190	23,190	23,190	15,000	10,000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64,749	64,749	64,749	64,709	89,600
		말산업육성지원(융자)	120	120	120	80	1,099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355,000	355,000	355,000	355,000	300,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	2,079	2,120	2,120	2,057	1,040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39,130	39,130	39,130	39,130	32,86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융자)	30,070	30,070	30,070	30,070	26,960
		원유소비활성화(융자)	9,000	9,000	9,000	9,000	7,000
		축사시설현대화(융자)	98,727	98,727	98,727	95,762	99,99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스안전관리(융자)	5,908	5,908	5,908	5,908	4,726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2,462	2,462	2,462	2,462	2,216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국내외유전개발)	172,716	172,716	172,716	175,408	38,163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해외광물자원개발)	2,692	2,692	2,692	-	1,654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계획현액)		(계획액)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24,300	24,300	24,300	24,300	19,440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256,834	256,834	256,834	256,834	287,000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장기수송열수송관개체)	5,000	5,000	5,000	5,000	5,00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시설대체자금융자(융자)	1,000	1,000	1,000	1,000	-
	전력산업기반자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생산 및 시설자금)	457,170	457,170	457,170	457,170	361,28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운전자금)	2,000	2,000	2,000	2,000	2,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산업융자)	5,000	5,000	5,000	4,000	5,000
		녹색혁신금융(융자)	36,614	36,614	36,614	36,614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44,727	44,727	44,727	44,727	42,183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70,000	270,000	260,400	260,400	320,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53,520	95,559	95,559	78,953	45,49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5,644	15,644	15,644	15,617	14,299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사업)	100	100	100	-	-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356,328	356,328	356,328	356,328	458,640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청산지원융자(융자)	48,333	83,037	83,037	72,785	40,190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150,000	170,000	170,000	165,030	88,46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6,000	6,000	6,000	5,994	7,000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15,000	15,000	15,000	110	2,700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	4,000	4,000	4,000	-	1,200
		분양주택(융자)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2,015,332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0,380,027	11,360,527	11,360,527	11,312,360	12,364,500
		국민임대(융자)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57,653
		공공임대(융자)	117,958	251,527	251,527	246,578	818,896
		집주인임대주택사업	70,000	70,000	70,000	50,177	65,000
		민간임대(융자)	1,708,844	1,708,844	1,708,844	1,660,582	1,477,009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행복주택(융자)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838,319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3,612,000
		전세임대(융자)	4,174,950	5,087,730	5,087,730	4,867,011	4,546,931
		통합공공임대(융자)	1,190,038	522,404	522,404	516,442	1,401,288
		도시재생지원(융자)	144,490	230,090	230,090	230,090	131,0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449,600	475,444	475,444	474,546	402,1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14,000	13,256	13,256	13,255	4,700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75,000	95,184	95,184	95,184	45,000
		도시재생씨앗융자	59,928	41,094	41,094	39,218	40,000
해양 수산부	수산발전 기금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500	10,500	10,500	10,473	10,500
		양식어업지원	2,240	2,240	2,240	2,120	2,240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수산장비구입지원	2,850	2,850	2,850	1,773	1,600
		우수수산물지원	132,401	132,401	132,401	131,510	132,401
		수산물수매지원	115,370	115,370	115,370	83,329	115,370
		산지및소비지 유통자금	118,616	118,616	118,686	117,624	118,686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1,125	1,125	1,125	1,121	-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진흥기 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230,000	2,330,000	2,330,000	2,330,000	1,995,8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00,000	250,000	250,000	250,000	189,37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403,000	423,000	423,000	423,000	531,800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185,000	1,285,000	1,285,000	1,285,000	1,458,75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8,900	258,900	258,900	258,900	150,000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융자)	37,500	67,500	67,500	67,500	37,500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000,000	3,000,000	3,000,000	2,945,876	3,710,000
인사 혁신처	공무원 연금기금	대여학자금(융자)	316,491	395,210	395,210	376,801	284,065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50,000	750,000	750,000	749,979	650,000
계			41,472,399	40,995,752	41,022,222	39,554,756	46,421,74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2023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18개 부처 예산현액 1조 9,053억 400만원 중 1조 7,331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0%)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이차보전 지원(주택계정)'(9,297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4,629억원)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833억원), 금융위원회의 '이차보전지원'(568억원) 등이 있음.

[2023년 부처별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583	583	583	64	525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	24,250	17,050	17,050	12,250	31,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금예금특별회계	예금사업운영(예금사업기본경비)	2	2	2	1	2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47,610	78,167	78,167	78,167	52,107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150	150	150	85	150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국가유공자대부관리(이차보전금)	4,659	10,688	10,688	10,688	10,368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이차보전금)	39	87	87	87	87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이차보전금)	29	60	60	60	72
		제대군인대부관리(이차보전금)	88	688	688	688	288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4,000	4,000	4,000	2,452	5,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3,900	3,900	3,900	818	5,85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2,500	2,500	5,608	2,372	5,00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 이차보전사업	2,490	2,490	2,490	2,490	2,490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1,500	1,500	1,500	-	2,575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생산 및 시설자금)	3,130	3,130	3,130	-	-
		녹색혁신금융(융자) (주민참여자금)	188	188	188	-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2	2	16	11	7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24	24	43	43	108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8,893	8,893	8,893	8,893	9,928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	12,180	12,180	12,180	12,180	19,860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2,400	2,400	2,400	500	2,4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장려금(융자) (고용환경개선지원)	18	18	18	10	1
	장애인기금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304	304	304	142	630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	10,980	10,980	10,980	9,611	9,8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8,076	8,076	8,076	6,778	6,360
	주택도시 기금	이차보전 지원(주택계정)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395,141
		소규모주택정비(이차보전지원)	4,000	400	400	272	6,800
		이차보전지원(도시계정)	2,000	650	650	648	2,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451,942	451,942	500,711	462,919	557,722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친환경설비개량 이차보전	5,684	5,684	5,684	5,508	4,004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14,349	14,349	14,349	11,089	13,050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25	25	25	25	25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1,830	1,830	1,830	818	1,830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105,800	105,800	103,036	83,324	123,33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8,100	8,100	8,100	7,028	20,194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3,855	3,855	3,855	3,574	11,130
산림청	일반회계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정책자금상환연기, 정책자금 대체자금, 부채상환인센티브)	152	152	152	104	112
	농어촌 구조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기·신규대출 이차보전)	9,487	9,487	9,487	9,487	12,431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특별회계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76	76	76	76	109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방위산업육성 융자지원,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10,985	10,985	10,985	10,985	18,148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유도선안전관리강화 (노후유도선현대화이차보전)	283	283	283	402	648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지원	63,002	63,002	63,002	56,802	44,893
계			1,587,143	1,856,158	1,905,304	1,733,197	2,379,15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보증지원 사업 결산

2023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보증지원 사업은 8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6,352억 2,600만원 중 6,209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409억원), 국토교통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1,268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500억원) 등이 있음.

[2023년 부처별 보증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40,000	40,000	40,000	40,000	34,000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40,000	40,000	40,000	40,000	50,000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경제교류협력보험	4,275	4,275	4,275	-	3,847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완성보증계정 출연)	20,000	20,000	20,000	20,000	25,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0	10,000	10,000	1,000	1,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	-	-	-	30,00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00	50,000	50,000	50,000	45,000
	전력산업기반자금	녹색혁신금융(출연)(녹색보증)	40,000	40,000	40,000	40,0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3,550	33,550	33,550	33,550	30,19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3,380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 출연	-	-	-	-	20,000
		신용보증기금 출연	83,700	83,700	83,700	83,700	80,00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35,000	35,000	35,000	35,000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40,884	140,884	140,884	140,884	125,354
계			629,226	635,226	635,226	620,901	577,77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투자지원(펀드) 사업 결산

2023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13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1조 3,310억 8,700만원 중 1조 3,136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2,835억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3,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9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환경조성'(958억원) 등이 있음.

[2023년 부처별 투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45,000	45,000	45,000	45,000	63,250
교육부	일반회계	대학창업활성화(대학창업펀드)	7,500	7,500	7,500	7,500	7,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7,000	7,000	7,000	7,000	6,500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4,500	4,500	4,500	4,500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위풍당당코리아콘텐츠펀드출자	190,000	190,000	190,000	190,000	270,000
	영화발전기금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사업)	8,000	10,000	10,000	10,000	- *일반회계 이관
	일반회계	(24년 사업명)K-콘텐츠 펀드 출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 *향후산업금융추진	- *향후산업금융추진	- *향후산업금융추진	- *향후산업금융추진	25,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조성및운영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7,500	7,500	7,500	7,500	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기업 육성펀드)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40,000	40,000	40,000	40,000	55,00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유전개발사업출자	30,130	30,130	30,130	15,609	48,140
	일반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95,848	95,848	95,848	95,848	186,77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제약산업 육성·지원 (K-글로벌 백신펀드)	10,000	10,000	10,000	10,000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적기업 육성	3,500	3,500	3,500	3,500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국토교통 혁신펀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조성)	5,000	5,000	5,000	5,000	20,000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해양모태펀드	13,000	13,000	13,000	13,000	17,000
	수산발전기금	수산모태펀드 출자	7,000	7,000	7,000	7,000	19,000
		원양어선 안전관리 (원양어선 안전펀드)	9,000	9,000	9,000	9,000	7,5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283,500	283,500	283,500	283,500	450,0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00	30,000	30,000	30,000	4,000
	기술보증기금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50,100	100,109	100,109	98,161	75,143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40,000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56,500	67,500	67,500	66,578	67,540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모태조합 출자	-	-	-	-	11,400
계			1,268,078	1,331,087	1,331,087	1,313,696	1,643,74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의견

이하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검토는 자금지원 4가지 유형별을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보증지원 사업, 투자지원(펀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서술됨.

먼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 부문에 대한 검토, 관리운용체계 정비 필요에 대한 검토,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됨.

다음으로 보증지원 사업의 경우 건전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검토, 주택보증에 대한 검토, 무역 보증 및 보험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이루어짐.

마지막으로 투자지원(펀드) 사업의 경우 벤처펀드 출자 시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검토, 정책 목적에 맞는 펀드 설계 필요에 대한 검토,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지연에 대한 검토, 정책 펀드 운용 성과 및 청산 시 회수재원 처리 규정 등에 대한 검토 등으로 편재됨.

(1)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집행 부문에 대한 검토

① 국회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관리 및 집행 필요

첫째, 일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비 중 상당액이 계획변경 및 전용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 및 내용과 달리 집행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국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①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조 5,331억 2,000만원 중 1조 4,617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3%)되고 714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3조 2,370억원이었으나 회계연도 말(2023.12.28.) 1조 7,038억 8,000만원(52.6%)을 자체변경(감)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현액이 1조 5,331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국토교통부는 연말 집행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간 변경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확정 예산의 50% 이상을 변경하고, 그 규모도 1조 7,038억원으로 매우 큰 규모의 예산을 변경하고 있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인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을 대상으로 설비도입, 원부자재 매입비용 등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직접융자 방식으로 수행되던 동 내역사업[3]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38억 5,500만원의 이차보전금이 국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7월 1일, 기타민간융자금 1,500억원을 자체변경(증)하여 직접융자금 계획현액 1,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도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수출기업글로벌화	103,855	253,855	-	253,855	253,574	-	281	200,500
기타민간융자금	-	150,000	-	150,000	150,000	-	-	89,370
이차보전금	3,855	3,855	-	3,855	3,574	-	281	11,130

2) 「국가재정법」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3) <2019~2022년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사업의 예산 현황(당초 계획 기준)>

(단위: 백만원)

편성 비목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민간융자금	130,000	150,000	350,000	250,000	-
이차보전금	-	-	-	-	3,855

이는 2023년부터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을 이차보전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변경을 통해 사실상 신규 융자사업을 신설한 것으로, 국회의 심의 취지에 위배되는 집행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③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등 4개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감액한 후 해당 재원으로 다른 세부사업인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계획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음.

최근 2회계연도 간 세부사업별 당초 계획액 대비 수정 계획액 비율을 보면, 2022년에는 아시아차관 72.6%, 아프리카차관 96.3%, 중동-CIS차관 26.8%, 중남미차관 78.5%,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61.7%로 나타났음에 비해, 2023년에는 아시아차관 70.9%, 아프리카차관 77.0%, 중동-CIS차관 8.3%, 중남미차관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29.1%로 2022년 대비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은 당초 계획액의 2배 이상이 증액 변경되었음.

[최근 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내 세부사업별 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계획액			2023계획액		
	당초(A)	수정(B)	B/A	당초(C)	수정(D)	D/C
아시아차관	639,379	464,159	72.6	705,400	500,307	70.9
아프리카차관	319,980	308,175	96.3	304,852	234,680	77.0
중동-CIS차관	79,531	21,348	26.8	131,972	10,946	8.3
중남미차관	47,171	37,006	78.5	36,396	13,918	3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47,362	399,868	161.7	324,356	743,125	229.1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수원국 인도네시아) 등 5개 프로그램차관 사업으로 총 4,793억 2,200만원의 계획액 중 4,70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액(‘미정’) 1,029억원 대비 3,675억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중 계획변경을 통한 프로그램차관 신설내역]

(단위: 백만원)

국가	내역사업명	2022계획			2023계획		
		당초	수정	증감	당초	수정	증감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분야 효율성 개선프로그램 Ⅲ	-	66,020	66,020	-	-	-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Ⅲ	-	52,816	52,816	-	78,474	78,474
	산업현대화 및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	-	-	77,508	77,508
방글라데시	기후탄력적 통합개발 프로그램차관	-	-	-	-	121,500	121,500
에콰도르	에너지전환·투자촉진 지원 프로그램(EDCF-IDB협조융자펀드리티기금지원)	-	-	-	-	66,840	66,840
인도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 Ⅰ	-	-	-	-	135,000	135,000
미정	프로그램차관	60,000	-	△60,000	102,900	-	△102,900
계획변경 통한 프로그램차관 소계		60,000	118,836	58,836	102,900	479,322	376,422

주) 2023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차관 5개 사업을 음영 표시하였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프로그램차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은 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차관을 대규모로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4)]

이와 같이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연례적으로 세부사업 간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잔액이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프로그램차관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계획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④ 교육부의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융자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573억 7,000만원 중 541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 32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3년 7월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사업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사업으로 158억 8,900만원을 자체변경(증)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액 414억 8,100만원이 573억 7,000만원으로 수정·증액되었음.

4) 연례적으로 계획변경을 통해 주로 구속성 차관 성격의 아시아차관 등 4개 세부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비구속성인 프로그램차관 사업을 신설·확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23년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고대여학자금융자	41,481	57,370		57,370	54,162	-	3,208	37,125

자료: 교육부

그런데 자체변경(증)이 이루어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교육부의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2.5.)」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2년 계획액(531억 8,200만원) 대비 11% 감축한 472억 9,2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고, 최종 정부안에는 414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바 있음.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계획액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평가제도[5]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일부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목적과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수행기관 단계에서 융자금이 통합운용됨에 따라 국회 심의 취지가 존중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3조원 중 2조 9,458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541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그런데 2023년 동 융자사업의 내역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경영안정자금 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내 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 및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 내 스마트자금은 당초 계획액 대비 3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하였고,

특별경영안정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도전특별자금과 성장기반자금 내 소공인특화자금 및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는 집행률이 26.4~72.7%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5)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식	계획		실적			
			당초 계획액(A)	변경 계획액(B)	집행액 (C)	건수 (D)	집행률 (C/A)	집행률 (C/B)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	498,000	515,051	515,051	16,850	103.4	100.0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	직접	2,000	2,826	2,826	80	141.3	100.0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	50,000	68,502	68,502	1,327	137.0	100.0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	50,000	65,190	65,190	1,417	130.4	100.0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	100,000	100,000	64,328	1,074	65.2	65.2
		직접			852	20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	100,000	177,781	177,781	4,947	177.8	100.0
	재도전특별자금	직접	200,000	60,776	52,894	1,505	26.4	87.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직접	800,000	814,924	814,924	29,474	101.9	100.0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직접	600,000	436,018	436,018	7,702	72.7	100.0
	성장촉진자금	대리	420,000	477,237	477,237	11,491	113.6	100.0
		직접	30,000	34,660	34,660	597	115.5	100.0
	스마트자금	직접	110,000	207,035	207,035	4,336	188.2	100.0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	40,000	40,000	28,578	131	71.4	71.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사업은 각 내역사업마다 지원목적, 대상, 지원액 등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융자사업의 실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안을 편성하고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의 자금 융통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음.

내역사업인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은 해외 석유·가스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국내외 유전개발 소요 336억 1,600만원, 투자위험보증사업 1,391억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은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2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내역사업별 편성 현황]

세사업 명	편성 근거
국내외유전개발	○ 국내외 유전개발 : 33,616백만원 * 10개 사업 융자 수요(305,599백만원) × 조정률 11% ○ 투자위험보증사업 : 139,100백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	○ 광물자원개발 : 2,692백만원 * 1개 사업 융자 수요(22,432백만원) × 조정률 1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2021년까지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자, 2022년부터 두 내역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융자프로그램('에너지공급체계 구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내역사업이 지원대상 및 목적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 사업의 예산을 전액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집행하고 있음.

[2020~2023년도 융자프로그램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내역사업명	융자프로그램명	연도	융자사업집행부문				
			융자사업 예산	계획		최종실적	
				금액	건	금액	건
국내외 유전개발	국내외유전개발	2020년	35,169	35,169		31,082	6
		2021년	33,113	33,113	6	33,113	8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2022년	89,278	89,278	7	90,158	9
		2023년	172,716	172,716	11	175	7
해외 광물자원개발	해외광물 자원개발	2020년	1,750	1,750		-	-
		2021년	1,816	1,816	5	-	-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2022년	880	880	3	-	-
		2023년	2,692	2,692	1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2023년 편성된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금 26억 9,200만원의 편성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③ 환경부의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은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 발행한 녹색채권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기술로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4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동 내내역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76억 8,000만원이었으나, 환경부는 2023년

9월 18억 2,000만원을 내역변경(감)하여 다른 이차보전지원 사업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증액한 이후, 2023년 12월 연말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에서 동 내내역사업으로 다시 5억 4,000만원을 내역변경(증)하였음.

[2023년 두 사업간 내역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정부안	국회확정 예산	증감(내역변경)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증감률
			2023. 9.5.	2023.12. 6.	소계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9,680	7,680	△1,820	540	△1,280	6,400	5,448	952	△16.7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이차보전 지원	4,000	4,500	1,820	△540	1,280	5,780	5,780	-	28.4
총 계	13,680	12,180	-	-	-	12,180	11,228	952	-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수요 급증을 예측하여 9월 5일 내역변경(감)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연말 2개사의 연말 녹색채권 발행 계획을 확인하고, 내역변경하였던 18억 2,000만원의 29.7%인 5억 4,000만원을 다시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내역변경(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2월에 1개사만 녹색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9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고 설명함.

국내 채권 발행 환경 악화라는 시장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내역변경은 결국 당초 사업계획부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수립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향후 환경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수요 예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효과성 점검 필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4대 재정혁신 방안 중 하나로서 정책금융에 대해 직접금융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지출구조조정**과 **수혜자 접근성**을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정책 설계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6)]

먼저,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융자지원 방식은 융자원금을 당해연도 재정지출로 지원하여야 하는 반면, 이차보전지원 방식은 융자 건별 정책대상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중 이차보전지원분에 대해서만 재정지출로 지원하게 되므로 당해연도 재정지출 총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음.

수혜자 접근성의 관점에서 융자지원은 담보능력·신용 등이 부족하거나 융자실행조건을 미충족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미수금 또는 대손)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정책대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차보전지원 방식은 원금 손실에 대해 별도의 국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저신용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등 원금 손실가능성이 큰 정책계층에 대해 이차보전지원 상품을 공급할 유인이 제공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추가로, 최근의 고금리 여건 하에서 대출 정책금리가 정해진 경우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격이 더 커지게 되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자 차액만을 보전하는 경우 최종적인 정책금리가 여전히 해당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감당가능한 금리 수준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이차보전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일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이와 같은 각 유형별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만 사업을 설계하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채 추진하여 성과가 미진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6)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4대 재정혁신(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정책금융)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규모는 확대 (예,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 전환)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검토

첫째, 지출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旣수행 중이던 융자지원 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지원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금융기관의 직접융자 방식 선호 및 이차보전지원 수요 저조,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2023년도 이차보전금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차보전지원 사업 설계 시 금융기관 및 실제 신청자의 사전수요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수행하는 정책 융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 대해서 제2회 추경을 통해 이차보전금 비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및 **‘녹색혁신금융(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이차보전금 비목을 각각 신설하였음.

이후 2023년도 예산에도 2022년 제2회 추경부터 신설된 이차보전금을 계속하여 편성하였음.[7)]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코드번호)	내역사업명	자금명	대출기관	2023년도 예산	집행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	한국에너지공단	1,500	-
전력산업기반자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5202-304)	생산및시설자금	이차보전	-	3,130	-
	녹색혁신금융(융자)(5202-306)	주민참여자금	이차보전	-	188	-
총 계					4,81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제2회 추경부터 기존 융자사업의 884억원의 융자금을 대신하여 2분기 동안 이차보전 예산액 1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전무하여 2023년도에도 이차보전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동 보고서는 녹색혁신금융(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5월 사업추진 도중에 민간융자금 52억 9,400만원을 감액하고 이차보전 예산 9,400만원을 신설하였으나, 2022년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전무하여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이차보전 지원금 1억 8,800만원의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였음.

그런데 실제로 2023년 예산에 편성된 3개 이차보전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차보전금 48억 1,8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지원 후 체감금리가 최근의 고금리 여건으로 인하여 높게 유지됨에 따라 융자신청자의 수요가 저조하였고, 금융기관 또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특성상 기존의 정책융자 방식을 선호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를 유지·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중 융자지원의 예산 일부를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당초 계획에 반영된 신규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소요액 4,490억원 중 4,465억원은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나머지 25억원은 이차보전금으로 반영하였음.[8)]

[2023년도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사업 내 당초 계획상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446,500	446,500	-	446,500	446,336	-	164	536,500
이차보전금	2,500	2,500	-	2,500	37	-	2,463	5,000
합계	449,000	449,000	-	449,000	446,373	-	2,627	541,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융자지원은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전년 대비 융자 신청이 증가하여 2023년 계획현액 4,465억원이 조기에 소진되었고(상반기 집행률 66.4%[9)]), 최종적으로는 4,463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이에 비해 2023년 당초 계획에 반영된 이차보전금 25억원은 최종적으로 3,7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1.5%)되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신규로 추진한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기업은행

8)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축소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향후 융자지원을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라고 함.

9) <연도별 상반기 융자 집행률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집행률	40.5%	78.0%	48.9%	41.8%	66.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은행을 통해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중소기업 3%, 중견·대기업 2.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시스템 구축, 취급은행 선정 등 사업 준비기간 소요로 인해 실제 사업 시행은 2023년 7월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또 다른 사업인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10]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비 조달을 지원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융자와 이차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융자지원은 19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계획액이 전액 집행되었음.

[최근 5개년 융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융자 건수
2019	56,000	55,999	100.0	129건
2020	126,100	126,100	100.0	822건
2021	136,100	136,100	100.0	549건
2022	228,900	228,900	100.0	488건
2023	76,100	76,100	100.0	143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반면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동일 지원대상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은 계획현액 39억원 중 집행액 8억 1,800만원(집행률 21.0%)을 제외한 30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차보전의 실집행 부진은 사업시행 첫 해로서 준비기간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2023.6월)[11]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체의 대출 목적이 주로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 등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대규모·장기 지원이 가능한 융자지원 대비 거치기간이 짧고 한도가 적은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임.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융자지원 사업과 달리 대출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따라 금융기관의 참여유인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만 섣불리 기존 융자지원 사업을 이차보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보다는 금융기관 참여 확보를 위한 사

10) 지원대상: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

11) 이차보전 시스템 구축·운영, 취급은행 선정 등에 따라 사업 공고는 2023년 5월부터, 실제 이차보전 실시는 2023년 6월부터 시작되었음.

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이차보전금 예산을 반영하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④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은 최신 방지시설 설치 촉진 및 효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를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시멘트 제조업, 석유정제업)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임.[12)]

동 사업은 2021~2022년까지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 이차보전지원 사업(금리차 2%p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전면 전환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동 사업에 반영된 2023년 본예산은 이차보전금 24억원이나 이 중 5억원만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교부되었으며, 실집행액은 2억 4,000만원으로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8.0%에 불과하였음.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안	국회 감액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300,000	-	300,000	200,000	200,000	0	200,000	85,658	28,388	85,954	42.8
2022	210,000	△20,000	190,000	110,000	110,000	28,388	138,388	54,875	46,618	36,895	39.7
2023	3,600	△1,200	2,400	500	500	46,618	47,118	46,676	-	442	99.1
(기타 민간융자금)	-	-	-	-	-	46,618	46,618	46,436	-	182	99.6
(이차보전금)	**3,600**	**△1,200**	**2,400**	**500**	**500**	**-**	**500**	**240**	**-**	**260**	**48.0**

자료: 환경부

뿐만 아니라 2023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기술원이 2023년 2월 융자사업 공고를 한 이후 기존 사업 수혜자인 ‘한00’가 4월 융자를 신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6건의 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신청 수요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음.

12)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2020년 9월 감사원의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관리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2023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승인일자	업체	업체 유형	시설전환 관련 사업내역	융자승인 금액	23년말까지 실제 융자액
1	2023-05-02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개조)	36,965	133
2	2023-07-04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재활용 원료투입 설비 설치)	5,600	47
3	2023-07-1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후처리 설비 구매)	4,974	50
4	2023-07-1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예열탑 내화물, 덕트 등 설치)	10,256	10
5	2023-12-0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B/H, R/M BY-PASS DUCT 등 설치)	6,416	-
6	2023-12-01	한ㅇㅇ	시멘트제조업 (중견기업)	기타 미세먼지 설비 (#2K/L Calciner 후처리 설비 설치)	4,974	-
계					69,185	240

자료: 환경부

종합하면, 정부는 기존의 융자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차보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때에는 실제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각각의 정책수단별 특성을 고려하고, 실제 신청자 및 금융기관의 선호도, 수요를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일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자금의 집행단계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①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관리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SCR 설비[13]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3)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택적촉매환원법): 요소수라고 부르는 암모니아(NH3) 수용액 또는 우레아(NH2(2CO)) 수용액을 배출가스에 분사시켜 촉매 반응을 통해 물(H2O)과 질소(N2)로 변환시키는 장치임. 이는 질소산화물(NOx)은 물론 엔진에서 다량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수치로 약 65~85%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21년부터 신규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2021년은 856억 5,800만원의 융자금이, 2022년에는 548억 7,500만원의 융자금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464억 3,600만원의 융자금과 이차보전금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안	국회 감액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300,000	-	300,000	200,000	200,000	0	200,000	85,658	28,388	85,954	42.8
2022	210,000	△20,000	190,000	110,000	110,000	28,388	138,388	54,875	46,618	36,895	39.7
2023	3,600	△1,200	2,400	500	500	46,618	47,118	46,676	-	442	99.1
(기타 미세먼지 융자금)	-	-	-	-	-	46,618	46,618	46,436	-	182	99.6
(이차보전금)	**3,600**	**△1,200**	**2,400**	**500**	**500**	**-**	**500**	**240**	**-**	**260**	**48.0**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인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설비로는 ① 연소가스의 환원 반응 시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을 촉진하는 SCR 설비, ② 연소방식을 개선한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③ 환원제를 고온부에 직접 주입하여 환원시키는 SNCR 설비 등이 있음.[14]

그런데 사업 추진 이후 실제 도입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는 2021년 SNCR 설치 2건, 2022년 저녹스 버너 설치 1건이 전부이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SCR 설비의 도입 실적은 0건임.

나머지 자금은 모두 일반적인 노후장비 교체 등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정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집행되었고, 2023년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집행을 통해 도입된 6개 설비도 모두 일반적인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공정 효율 개선 건임.

따라서 환경부는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금의 자금 집행단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사업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

14) 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무촉매환원법): 촉매없는 환원반응으로 고온 배출가스에 암모니아(NH3) 수용액 또는 우레아(NH2(2CO)) 수용액을 분사하여 물(H2O)과 질소(N2)로 변환시키는 장치임.

대하려는 것임.

그런데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의 사업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2023년 달성률은 30.4%, 2024년은 4월 기준 4.4%에 불과함.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매입임대는 건설 경기의 영향을 받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로 추진되고 있어 최근 토지와 원자재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비용이 상승[15]하여 민간건설사의 사업참여가 감소하였고, 특히 2023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매입제도 개선(2023년 4월)으로 사업자 모집공고 등 사업착수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2023~2024년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매입 현황]

연도	구분(호)	목표	실적	달성률
2023	**합 계**	**35,000**	**10,673**	**30.4%**
	기존매입(준공형)	-	2,340	-
	매입약정(약정형)	-	8,333	-
2024.4	**합 계**	**35,000**	**1,546**	**4.4%**
	기존매입(준공형)	-	504	-
	매입약정(약정형)	-	1,042	-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은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부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8일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 3조 2,370억원 중 1조 7,038억 8,000만원(52.6%)을 자체변경(감)하였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전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융자금 예산을 반영하고, 최종적인 사업 성과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③ 예산범위를 초과한 이차보전지원 집행 지양 필요

농업 및 산림사업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4,519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 충당을 위해 4억 8,100만원을 전용하고 남은 4,514억

15) 주거지역 지가상승률(2021.1월~2023.7월) : 전국 +6.9%, 수도권 +7.5%, 지방 +5.3%, 서울 +7.9%
원자재가 변동률(2021.1월~2023.7월) : 철근 +54.8%, 형강 +33.1%, 동판 +20.4%, 레미콘 +38.7%

6,100만원 중 4,166억 9,300만원만을 사업 수행기관(농협은행)에 실제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 347억 6,800만원이 세입재원 없이 이월되었기 때문임.

[2023년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의 예산 대비 초과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집행 부문(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농협은행)	
2023년도 본예산	이전용액	2023년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금융기관 실지급액 (A)	지급 소요 (B)	미지급액 (A-B)
451,942	△481	451,461	416,693	578,739	△162,04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관련 농협은행과의 사업약정에 따라 2023년 지급하여야 할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소요는 5,787억 3,900만원으로, 2023년 실제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인 4,166억 9,300만원 대비 1,620억 4,6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이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업수행기관(농협은행)의 부담으로 이차보전지원 규모를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에 위배되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함.

또한 이와 같은 초과집행에 따라 2024년에 지급하여야 할 2023년도 이차보전 지원 미지급분이 1,620억 4,6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24년도 본예산 5,577억 2,200만원 중 2022년도 미지급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액 551억 4,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5,025억 8,200만원의 32.2%에 달하는 수준임.

이차보전 지원은 통상 금융기관과의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와 이차보전 목표금리간 차이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에 일종의 의무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차보전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지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16]

16)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의 경우 예산편성 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편성금리와 실제 정산금리 간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 대비 초과 이차액이 발생한 것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경우 농업인 등에 대한 신규 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임.

②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신규대출이차보전’**은 단기산림소득지원 등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저리 지원함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임.

단기산림경영자금은 임업인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에 융자사업으로 신설되었고, 2021년부터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변경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통합하였음.

동 내역사업은 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73억 9,900만원을, 2023년 신규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2억 4,700만원을, 기존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을 위해 18억 4,100만원을 합한 94억 8,700만원을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음.

[2023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사업의 미지급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본예산 (A)	실제 이차보전지원 소요액 (B)	미지급분 (A-B)
기대출	7,399	9,105	△1,706
신규	247	1,909	179
이차보전 전환	1,841		
합계	9,487	11,014	△1,527

자료: 산림청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차보전 지원소요액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금 총액은 110억 1,4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5억 2,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규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하며, 이러한 관행이 보편화될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④ 이차보전지원 방식별 금융기관 지원금 청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필요

정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실제 지원한 이차보전 지원 소요에 대한 실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사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평균 대출잔액에 이차보전율을 곱하여 개산급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또한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목표 최종금리를 고정하고 개별 대출건별로 이차보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차보전금리 연동형)과 이차보전율을 고정하고 개별 대출건별로 최종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방식(이차보전금리 고정형)으로 나눌 수 있음.

[이차보전 지원 방식별 분류 방식별 예시]

구분		금융기관	
		실비 정산	개산급 지급
수급자	이차보전금리 연동형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융위원회)	희망플러스 이차보전(금융위원회)
	이차보전금리 고정형	농업자금이차보전(농림축산식품부), 이차보전 지원(국토교통부)	

주) 이차보전금리가 고정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잔액에 고정 이차보전율을 곱한 값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산급 형태의 지급이 이론적으로 불가

이에 각각의 방식을 ‘실비 정산’과 ‘개산급 지급’, ‘이차보전금리 연동형’과 ‘이차보전금리 고정형’으로 정의하고, 이 중에서도 ‘이차보전금리 연동형’ 방식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음.

첫째, 목표금리를 고정하고 각 금융기관별 실제 평균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실비로 보전하는 방식의 이차보전금리 연동형 중 실비 정산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 및 수급자가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630억 200만원 중 568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2%)되고 62억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예산 270억 300만원,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예산 359억 9,900만원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218억 8,800만원, 350억 1,400만원이 연내 집행되었음.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 개요]

구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2차 개편 기준)
	최초	1차 연장	2차 연장	
지원대상	코로나19 작간접피해를 입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 활용중인 소상공인 전체**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대상 대출자금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용 및 대환대출
기업당 대출한도	3,000만원	-	-	3,000만원
지원내용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1.5%)의 8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1.5%)의 7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2.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2.5%)의 70%를 보전	평균 산출금리(6.3%)와 대출 적용금리(3.3%) 간 차액의 70%를 보전 ※모든 금융기관 2.1% 적용
은행부담률	20%	30%	30%	30%
지원기간	1년	1년	1년	2년
운용기간	'20.4.1. ~'21.12.31.	'21.4.1. ~ '22.12.31.	'22.4.1. ~ '23.12.31.	'22.1.24. ~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도	3.5조원	-	-	2.4조원
이차보전 재원	603.75억원	484.18억원	341.52억원	1,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금리를 2.5%로 고정하고, 각 대출건별로 실제 대출금리와 목표금리 간 차이를 이차보전 지원분으로 계상하는 방식임.

[금융위원회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일)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내역사업명	프로그램명	2023년 본예산	금융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 구분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은행명	대상자금 (A)	지원금리 (B)	지원기간(C)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지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7,003	이차보전금	SC	6,222	0.91	283.64	44
					경남	60,671	1.27	282.80	597
					광주	6,894	3.20	282.92	171
					국민	138,489	2.61	282.44	2,797
					농협	145,659	2.27	282.49	2,559
					대구	61,582	1.49	282.03	709
					부산	116,091	1.38	282.28	1,239
					수협	3,607	3.04	282.94	85
					신한	264,519	2.38	282.41	4,871
					씨티	3,275	2.15	279.92	54
					우리	193,967	2.40	282.42	3,602
					전북	7,319	1.90	280.85	107
					제주	3,308	2.52	284.60	65
					하나	282,209	2.24	282.23	4,888
					합계				21,788

자료: 금융위원회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과 같이 이차보전율을 목표금리에 맞추어 개별 대출 건별로 연동하는 지원 방식은 이차보전율을 사전에 고정하여 모든 대출 건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①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전 대출금리 수준에 관계없이 목표금리에 해당하는 2.5%를 적용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지원 전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는 유인이 없음.

②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차보전 후 최종 대출금리가 2.5%로 고정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경쟁을 통해 수급자를 유치하려는 유인이 제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차보전지원이 이루어지기 전 대출금리를 높일수록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 혜택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

[2023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평균 산출금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정 방식				
은행명	최종대출금리 (A)	은행이 산정한 평균 산출금리 (B)	정부 지원금리 (B-A)×70%	평균 대출잔액
SC	2.5	3.80	0.91	6,222
경남		4.31	1.27	60,671
광주		7.07	3.20	6,894
국민		6.23	2.61	138,489
농협		5.74	2.27	145,659
대구		4.63	1.49	61,582
부산		4.47	1.38	116,091
수협		6.84	3.04	3,607
신한		5.90	2.38	264,519
씨티		5.57	2.15	3,275
우리		5.93	2.40	193,967
전북		5.21	1.90	7,319
제주		6.10	2.52	3,308
하나		5.70	2.24	282,209
대상자금 가중평균		5.61	2.18	

주) 평균산출금리가 가중평균 5.61%보다 높은 은행들에 대하여 음영표시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2023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평균 산출금리를 현황을 살펴보면, SC제일은행, 경남은행의 경우 대출평잔에 대한 평균 산출금리가 3.80%, 4.31% 수준임에 비해, 광주은행, 국민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평균 산출금리가 7.07%, 6.23%, 6.10%로 6%대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차보전율을 목표금리에 맞추어 개별 대출 건별로 연동하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타 금융기관 대비 평균 산출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의 지원금 청구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산급 형태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 개산급 산정의 근거가 되었던 산출금리와 실제 대출 실행에 따른 산출금리 실적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은 2023년 계획액 산출 근거로 평균 산출금리 6.3%와 목표금리 3.3% 간 차이인 3.0%p 중

은행부담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 하에 2.1%의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도출하고, 이를 2023년 예상 평균대출잔액에 곱하여 이차보전 지원소요액 예산 35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상 여건에 따라 2022년 계획액 편성 당시에는 평균산출금리를 4.5%로 적용하였던 것을 2023년에는 6.3%로 인상한 바 있음.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 개요]

구 분	최 초(2022.1.24)	1차 개편(2022.8.8.)	2차 개편(2023.1.25.)
지원대상	▸(최초)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1 차)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2 차)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대출한도	▸1,000만원	▸3,000만원	
지원내용	▸(최초)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4.5%)-1.5%]의 70%(2.1%) 보전 ▸(1 차)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4.5%)-1.5%]의 70%(2.1%) 보전 ▸(2 차)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6.3%)-3.3%]의 70%(2.1%) 보전		
지원기간	▸1년		▸2년
운용기간	▸ ‘22.1.24. ~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도	▸4.8조원		▸2.4조원*
이차보전 재원	▸1,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14개 시중은행 평균 대출잔액에 사전에 약정된 이차보전 지원금리 2.1%를 곱한 값에 상응하는 이차보전 지원금을 일종의 개산급의 형태로 지원하였음.

[금융위원회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일)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내역사업명	프로그램명	2023년 본예산	금융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 구분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은행명	대상자금 (A)	지원금리 (B)	지원기간(C)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지원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35,999	이차보전금	SC	9,526	2.10	237.20	130
					경남	102,889	2.10	268.94	1,592
					광주	17,396	2.10	269.77	270
					국민	271,180	2.10	245.61	3,832
					기업	435,566	2.10	311.37	7,803
					농협	134,828	2.10	289.15	2,243
					대구	53,799	2.10	329.53	1,020
					부산	77,202	2.10	320.14	1,422
					수협	2,602	2.10	120.24	18
					신한	217,207	2.10	286.31	3,578
					우리	362,140	2.10	236.71	4,932
					전북	13,456	2.10	284.17	220
					제주	27,991	2.10	257.69	415
					하나	456,664	2.10	286.94	7,539
					합계				35,014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2023년 각 금융기관 계획액 편성 당시 반영하였던 산출금리 6.3%가 적정 수준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 실적치와 대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7월까지 2023년 14개 은행의 실제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

특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2023년도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가 5.61%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의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가 6.3%를 하회하였을 개연성도 존재하는 상황임.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프로그램 현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수급자* 중 고신용** 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에 대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용대출

*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 관련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협의 결과에 따름(2021.12월, 2022.7월)
** 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프로그램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정한 고·중·저신용자 기준을 따름)
***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1~3등급) 영세 소상공인(2020.4월 시행)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은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이차보전지원금의 실제 정산을 수행하고, 이차보전지원 사업 수행에 소요된 재정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나)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관리운용체계 정비 필요에 대한 검토

① 사업 수행기관 관리비용에 대한 적정 지급 체계 마련 필요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통상 각 부처의 소관 공공기관이 사업 수행에 따른 금융기관 및 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존 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에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포함시켜 지원(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공단 등)하거나,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사업관리비용을 충당(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통일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있음.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관리기관에 대한 별도 사업비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사업내용	편성비목	2023년	
					예산현액(계획현액)	집행액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위탁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융자 등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에 따른 법정 수수료 등 지급	일반수용비	3,511	2,740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위탁수수료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수수료(위탁사업비) 지급	일반용역비	2,182	2,18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한 평가 및 정산시스템 등 조성 및 운영지원	일반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1,000	99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일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 융자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일종의 수수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나, 명확한 실비 정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관리비용으로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음.

첫째, 일부 융자지원 사업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비용을 매년 융자원리금 상환액에서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임에도 통일된 기준 없이 각 부처의 자체 지침에 의거하여 충당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관행을 지양하고 별도 사업비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융자지원 사업은 개별 부처의 사업관리지침 및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융자잔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등의 일정 비율을 융자취급수수료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위탁기관인 공공기관이 수취하게 됨.

그런데 일부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인 공공기관이 다시 융자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로 수취하고, 남은 잔액을 융자원리금으로 국고로 수납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이 세입을 자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융자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관리비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2023년 본예산	위탁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명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2023년 기준)	위탁기관명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278,893	융자취급 수수료	Σ (일단위 융자잔액 × 0.1%)	597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산업통상 자원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98,115	융자취급 수수료 (0.1%)	융자잔액의 0.1%	90	한국산업단지 공단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국내외유전개발)	172,716	융자취급 수수료 (이자 차액분)	융자잔액의 1.0%	1,214	한국에너지 공단
			융자취급 수수료 (감면)	감면원금의 1.0%	170	
	해외자원개발특별 융자 (해외광물자원개발)	2,624	융자취급 수수료 (이자 차액분)	융자잔액의 1.0%	28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존 실시한 융자잔액의 0.1%를 융자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기관운영비에 충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각각 5억 9,700만원, 9,000만원을 융자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하고 국고로 반납하였음.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금의 대출 및 자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융자취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융자잔액의 1.0%를 직접 기관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6억 6,500만원을 융자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하고 국고로 반납하였음.

따라서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융자사업 업무를 위탁 시 위탁비용을 정식 사업비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공공기관이 자체 사용하는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사업관리기관 비용을 이차보전금 비목으로 편성·지출하고 있는데,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차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운영비로 이차보전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무한 상황임.

그런데 일부 부처는 이차보전금의 일부로 사업관리기관의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3년 이차보전금으로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한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내역사업명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 프로그램명	2023년 해당 프로그램 본예산	위탁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 구분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2023년 기준)	관련 비용을 조달하는 재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2,490	기획평가관리비	사업비의 3.5.%내외	88	정부 이차 보전금에서 **직접** 차감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이차보전	8,893	융자취급수수료 (이차보전)	Σ (일단위 융자잔액 × 0.1%)	373	이차 보전금에서 **간접** 차감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융자)	대기환경 보전	2,400	융자취급수수료	Σ (일단위 융자잔액 × 0.1%)	9	

주) 환경부는 이차보전 지원이 이루어진 융자잔액의 0.1%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직접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차보전지원 효과를 0.1%p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차보전금에서 간접 차감하는 효과를 낳게 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국내외 미래차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의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방식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24억 9,000만

원이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이차보전금 24억 9,000만원 중 8,800만원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해당 이차보전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차보전금 중 8,800만원을 사업운영비 성격의 기획평가관리비로 전액 집행하였다고 보고하였음.

한편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와 **'청정대기시설전환'** 사업은 이차보전 지원이 이루어진 융자잔액의 0.1%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직접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차보전지원 효과를 0.1%p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차보전금에서 간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석됨.

이차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기에 적절치 않고, 통상의 보조금이나 용역비와 달리 건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통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차보전금으로 사업관리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별도 사업 편성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수익의 직접 사용 관리체계 마련 필요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융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의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자금관리업무를 기업은행에 법률상 근거 없이 재위탁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성격의 관리위탁수수료를 기업은행이 융자원리금으로 직접 충당하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융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은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ICT 및 ICT 기반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계획현액 124억 5,500만원이 전액 융자금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교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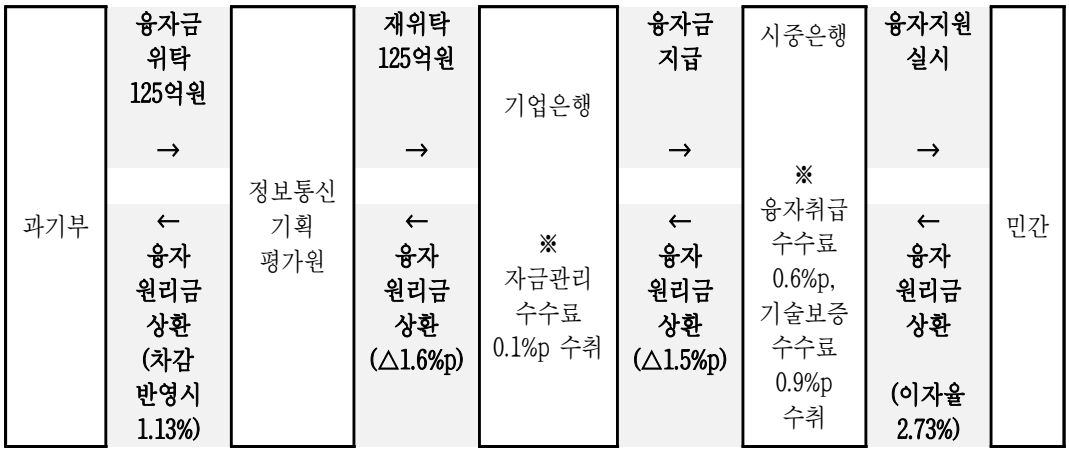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舊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운영 중이던 2004년 당시, 기업은행(舊중소기업은행)과 「정보화촉진기금(기술개발융자사업) 자금관리업무 재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융자지원대상사업자 선정 관련 융자신청서 접수관리 관련 업무, 기금취급은행에 대한 대여 관련 업무, 융자원리금의 회수 관련 업무 등을 재위탁하였음.

재위탁 수수료율에 대하여 동 협약서는 제11조에서 융자잔액(대출금)의 0.05%를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관리위탁수수료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은행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3년 12월 말부터 관리위탁수수료율을 0.10%로 조정하였다고 밝혔음.[17)]

이와 같은 재위탁에 따라 2023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 수행에 따른 융자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납되고 있음.

[2023년 융자사업 수행 및 융자원리금 상환 단계별 세부 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① 매분기(또는 기한전 상환의 경우 매월) 각 시중은행은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융자원리금에서 융자취급수수료(이자율의 0.6%p)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수수료(이자율의 0.9%p)를 제외한 금액을 자금관리기관인 기업은행에 송금함.

다음으로 ② 기업은행은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원리금 상환액을 자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위탁수수료(이자율의 0.1%p)를 제외한 차액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수납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8)19)]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융자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일반 시중은행에 재

17) 「정보화촉진기금(기술개발융자사업) 자금관리업무 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위탁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대출금에 대한 연 0.0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을"은 대여원리금 상환시 위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금계좌에 납입한다.

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 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미비함.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진흥원은 법률상 근거 없는 재위탁수수료를 정식 세출예산 편성이 아닌 융자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로 시중은행이 자체 사용하도록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협약서 갱신 없이 2023년 12월 말 위탁수수료율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4년 7월까지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위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일종의 민간위탁사업비 성격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원리금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융자취급수수료율은 개별 융자지원 사업의 수행 난이도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마다 자체 규정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데, 적정 수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대다수 융자지원 사업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융자지원 사업을 수행·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융자잔액의 일정 비율을 융자취급수수료율로 정하고, 해당 융자취급수수료를 융자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한 남은 금액을 국고로 반납조치하고 있음.

국가재정으로 지원한 융자금로부터 비롯된 원리금 수익은 국고반납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융자지원 사업의 특수성과 개별 금융기관의 사업수행 및 관리비용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원리금 수익의 일정 비율을 융자취급수수료로 금융기관이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통상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취급수수료율을 1.0%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 부처의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취급수수료를 금융기관에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하

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부처별(부 단위) 융자취급수수료 현황]

부처명	융자취급수수료 현황(사업명(수수료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1.0)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0.6), 체불청산 지원 융자(0.6~1.2), 산재예방시설융자(1.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융자(0.6~0.7, 보증수수료 제외)
기획재정부	**장애인자립자금융자(1.5),** 민간보육시설지원(1.0),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0.1),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1.0), 친환경설비투자(1.0)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등 융자사업(0.0~1.2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1.0), 스포츠산업금융지원(1.0)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1.5), 녹색혁신금융(융자)(1.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1.5),** 그 외 융자사업(1.0)
해양수산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융자) 등 융자사업(1.25), 수산물수매지원(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수산장비 구입지원(1.37)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1.0),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0.1~0.9)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컨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융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의 융자취급수수료율이 설정되어 있음.

[2023년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본예산	집행액	융자잔액 (A)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B)	B/A(%)	대출조건		융자취급 수수료율
					금리	만기	
560	560	5,990	365	6.1	1.83~2.51	5년 거치 5년 상환	1.5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중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녹색혁신금융(융자)'** 사업에 대하여 1.5% 수준의 융자취급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융자취급수수료 1.50%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 내역사업명	대출 취급 기관별	당해연도 융자예산	집행액	융자잔액 (A)	대출조건		수수 료율
					금리	만기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위탁	1,088	1,088	3,139	1.5	1거치 2상환 2거치 3상환	1.50
전력산업기반 기금- 신재생융자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위탁	459,170	459,170	2,321,235	국고채 3년평균 수익률 -1.25%	1거치 2상환 3거치 5상환 5거치 10상환	1.50
전력산업기반 기금- 녹색혁신금융 (융자)	위탁	36,614	36,614	113,403	국고채 3년평균 수익률 -1.25%	20년거치 일시상환	1.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업무 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대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확인이 필요한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시설’** 사업의 경우 1.0%, 해양수산부의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융자)’** 사업의 경우 1.25%의 융자취급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 외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융자취급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수매지원(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수산장비 구입지원’** 사업에 대하여 1.37%의 융자취급수수료율을 설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부처별로 융자사업별 융자취급수수료율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취급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처 간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고, 개별 부처의 자체 규정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서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규정이 부재한 탓으로 이차보전금의 집행 시점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

부는 이자수익을 국고로 반납조치하고 이차보전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에 대한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국내외 미래차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의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방식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이차보전금(320-05목) 예산현액 24억 9,000만원이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관리비용 성격의 기획평가관리비를 제외한 24억 200만원 중 8억 5,300만원만을 2023년 신규 이차보전 신청 건에 대해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사업비 15억 4,900만원은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미집행된 채로 별도 이월 승인 절차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보유하고 있음.

[2023년 이차보전금(320-05목)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사업비	2,402	2,402	2,402	2,402	853	1,549	-	35.5
기획평가 관리비	88	88	88	88	88	-	-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이차보전금의 집행부진에 따라 이차보전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획재정부나 사업 부처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이차보전금 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이 1,561만원 가까이에 이르고, 2023년의 경우에도 이차보전금 전액 교부 이후 실집행부진에 따라 이자수익이 6,825만원 가량 발생하였으나, 2024년 6월 말까지 해당 이자수익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음.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발생 현황]

사업연도	이자수익발생 기준일	이자발생현황(원)
2022년	2022.06.19	3,664,656
	2022.09.18	4,942,893
	2022.12.18	7,005,407
	소계	15,612,956
2023년	2023.03.19	11,952,662
	2023.06.18	20,226,123
	2023.09.17	19,322,141
	2023.12.17	16,748,484
	소계	68,249,410
합 계		83,862,3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이차보전금 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조속히 국고로 반납조치하는 한편,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도 통상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에 대한 검토

① 융자지원 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노력 필요

첫째, 다수의 융자지원 사업에서 연체에 따른 부실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개별 부처는 소관 융자지원 사업의 원리금 회수 및 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정책자금별 원리금 상환 부실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융자의 부실률은 2023년 10.0%로 2021년 1.6%, 2022년 2.8%에 비해 급증하였음.

[2018~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형별 정책자금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경영 안정자금	대출잔액	43,575	54,760	403,747	1,293,510	1,276,679	1,006,361
	부실건수	71	86	28	871	2,288	7,283
	부실금액	2,903	3,050	536	10,996	29,632	111,986
	부실률	6.7%	5.6%	0.1%	0.9%	2.3%	11.1%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잔액	40,733	130,664	944,658	2,722,968	3,993,065	4,459,097
	부실건수	0	63	1084	3133	13513	38327
	부실금액	0	1,553	15,391	38,040	155,144	600,245
	부실률	0.0%	1.2%	1.6%	1.4%	3.9%	13.5%
성장기반 자금	대출잔액	1,258,498	1,538,622	1,474,370	1,360,675	1,361,652	1,458,911
	부실건수	831	1252	1219	696	386	△1,568
	부실금액	47,431	59,036	51,932	36,630	25,137	63,603
	부실률	3.8%	3.8%	3.5%	2.7%	1.8%	4.4%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대출잔액	0	0	8,444	37,017	83,665	278,937
	부실건수	0	0	0	2	24	147
	부실금액	0	0	0	51	1078	6063
	부실률	-	-	0.0%	0.1%	1.3%	2.2%
기타	대출잔액	0	0	0	0	1,154,865	1,053,279
	부실건수	0	0	0	0	3,542	14,585
	부실금액	0	0	0	0	8,506	42,100
	부실률	-	-	-	-	0.7%	4.0%
합계	대출잔액	1,342,806	1,724,046	2,831,219	5,414,170	7,869,926	8,256,585
	부실건수	902	1,401	2,331	4,702	19,753	58,774
	부실금액	50,334	63,639	67,859	85,717	219,497	823,997
	부실률	3.8%	3.7%	2.4%	1.6%	2.8%	10.0%

주) 부실건수 산식: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발생계좌건 -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해제계좌건 - 회수된 원금상환건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시행되었던 각종 대출의 거치기간(2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3년부터 원리금균등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90일 이상 연체 등으로 인해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조속히 시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여야 하는 부실 대출의 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새출발기금 분기별 채무조정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2년 4/4분기	2023년 1/4분기	2023년 2/4분기	2023년 3/4분기	2023년 4/4분기	2024년 1/4분기
부실 차주	신청자수	1,882	3,040	2,438	1,963	2,858	2,810
	채무조정 대상부채액	257	542	438	359	729	722
	매각자수	1,522	3,030	2,236	1,644	2,925	3,423
	채권매각액	81	179	147	119	237	235
부실 우려 차주	신청자수	2,179	1,271	1,078	1,362	1,350	1,900
	채무조정 대상부채액	484	239	266	357	263	437
	채무조정자수	106	1,352	1,648	1,392	1,227	1,274
	채무조정 확정액	23	304	341	324	234	317
전체	신청자수	4,061	4,311	3,516	3,325	4,208	4,710
	채무조정 대상부채액	741	781	704	716	992	1,159
	채무조정자수	1,628	4,382	3,884	3,036	4,152	4,697
	채권매각·채무조정확정액	104	483	488	443	471	552

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고,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교육부 사학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모두 융자연체이자로서,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A+B)			수납(A)			미수납(B)
	소계	융자연체이자	기타	소계	융자연체이자	기타	융자연체이자
2019	9,864	9,166	698	2,430	1,732	698	7,434
2020	11,412	10,636	776	2,137	1,361	776	9,275
2021	13,544	12,005	1,539	2,162	623	1,539	11,382
2022	14,410	13,960	450	477	27	450	13,933
2023	16,953	16,505	448	1,141	693	448	15,812

주) 기타는 예수금, 법인세 환급 등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연체이자를 사업별로 보면 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행복기숙사 지원 융자금의 연체이자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사업별 징수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구분	징수결정액(A+B)	수납(A)	미수납(B)
2019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9,166	1,732	7,434
2020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0,635	1,360	9,275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1	1	-
	소계	10,636	1,361	9,275
2021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2,005	623	11,382
2022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3,960	27	13,933
2023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5,954	693	15,261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551	-	551
	소계	16,505	693	15,812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편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2023년 미수납액은 304억 6,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한국국제대학교 행복기숙사 융자원금 92억 5,400만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임.

[최근 5년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미수납 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	명지대학교	대학	12,398	9,048	9,048	9,048	9,048
2	예원예술대학교	대학	233	3,784	-	-	161
3	명신대학교	대학	166	-	-	-	-
4	동양대학교	대학	-	-	-	650	-
5	성화대학	전문대학	383	383	383	-	-
6	고구려대학	전문대학	68	41	-	-	-
7	동두천여자중학교	중등이하	3,406	3,406	3,406	3,406	3,406
8	동두천고등학교	중등이하	3,251	3,251	3,251	3,251	3,251
9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중등이하	2,603	2,603	2,603	2,603	2,603
10	동두천중학교	중등이하	2,026	2,026	2,026	2,026	2,026
11	경성유치원	중등이하	1,397	572	412	413	413
12	명현학교	중등이하	146	146	146	146	146
13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중등이하	73	-	-	-	-
14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	-	-	-	153
15	한국국제대학교 행복기숙사	SPC	-	-	-	-	9,254
소계			26,150	25,260	21,275	21,543	30,461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따라서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조속히 융자원금과 연체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미수납액의 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보훈부 일반회계의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대부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430억 2,700만원 중 269억 7,500만원이 수납(수납률 62.7%)되고 153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7억 5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

최근 4년간(2020~2023) 동 사업에 의한 수납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특히 2023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62.7% 수준이어서 최근 4년간 가장 저조한 반면, 미수납액은 153억 4,7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음.

국가보훈부는 2023년의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여서 미수납액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3년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4년간 수납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 수납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2020	45,697	31,238	68.4	13,963
2021	45,156	30,186	66.8	14,547
2022	42,623	27,417	64.3	15,032
2023	43,027	26,975	62.7	15,347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융자사업의 원리금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2023년 대손액 △912만 4,000달러가 발생하였고 2023년 말 기준 누적 감면액이 7,645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융자지원 사업 수행 및 원리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정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융자금 감면비율에 대하여 근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국내외유전개발'**과 **'해외광물자원개발'**로 구성되며, 국내외유전개발은 다시 **'해외유전개발 융자'**와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나뉨.

해외유전개발 융자사업은 석유·가스개발 사업비의 30% 이내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생산사업 등에 융자 후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융자'**와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에 융자 후 성공 시 융자원리금 외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 시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특별융자'** 사업으로 구분됨.

그런데 ① 2023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개발(미화) 부문의 2023년도 대손액 912만 4,000달러가 확정 발생하였음.

[2023년 대손액 발생 세부 현황]

(단위: 천달러)

기업명	A사				B사			융자금 합계	감면액
연도	가 사업	나 사업	다 사업	A사 소계	라 사업	마 사업	B사 소계		
1992년	141	-	-	141	-	-	-	141	-
1993년	435	-	-	435	-	-	-	435	-
1994년	879	-	-	879	-	-	-	879	-
1995년	1,678	-	-	1,678	-	-	-	1,678	-
1996년	1,497	-	-	1,497	-	-	-	1,497	-
1997년	414	-	-	414	-	-	-	414	-
1998년	50	-	-	50	-	-	-	50	-
1999년	26	-	-	26	-	-	-	26	-
2000년	32	-	-	32	-	-	-	32	-
2001년	55	-	-	55	-	-	-	55	-
2002년	263	-	-	263	-	-	-	263	-
2003년	93	-	-	93	-	-	-	93	-
2005년	-	2,345	-	2,345	-	-	-	2,345	-
2006년	-	-	-	-	921	2,152	3,072	3,072	-
2007년	-	-	3,235	3,235	-	1,433	1,433	4,668	-
합계	5,565	2,345	3,235	11,145	921	3,585	4,505	15,650	-
상환액	3,008	1,845	1,672	6,526			-	6,526	
대손액	2,557	500	1,562	4,619	921	3,585	4,505	9,1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손액이 발생한 투자는 기업 기준 총 2개사로, 2개사 모두 투자기간이 2007년 이전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융자금 미상환이 지속되다가 2023년 모두 대손처리되었음.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3항[20]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200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집행액은 총 3,328억 2,000만원이고 이중 원리금 회수액은 4,817억 1,100만원임에 비해, 자원개발 탐사사업 실패에 따른 융자금 감면액은 이보다 많은 총 7,644억 8,300만원임.

2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융자)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누적 융자원리금 회수 및 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융자액	원리금 회수(A)	특별부담금(B)	회수 합계(A+B)	감면액
국내외 유전개발 (일반, 특별융자)	330,505	226,916	94,736	321,652	734,716
해외광물자원개발 (일반, 특별융자)	2,315	254,795	315	255,110	29,767
합 계	332,820	481,711	95,051	576,762	764,483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현재 특별융자금은 사업 실패 시 최대 70%가 면제될 수 있으며, 융자금 감면비율은 법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3조제1항 및 부칙<제2017-9호,2017.1.17.> 2호에 근거하고 있음.[21]

그런데 현행「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1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법의 위임을 받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22]에서 융자금 감면의 본질적인 사항인 감면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1조제3항이 원리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특별융자금 감면은 추후 재정수입의 감소로 직결되어 감면비율 설정에 따라

21) 이 부칙을 제정 전에는 특별융자금 전액이 면제될 수 있었으나 이 부칙이 제정된 2017년 1월 17일 이후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여부와 관계없이 융자금의 30% 상환의무가 부과되었음.

22)「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 · 석탄 · 우라늄광 · 동광 · 철광 · 아연광 · 연광 · 알루미늄광 · 안티몬광 · 망간광 · 니켈광 · 크롬광 · 텅스텐광 · 코발트광 · 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제5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정수입 귀속규모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안과정에서 사전 영향평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재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통령령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3][24]

셋째,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보증이 제공되는 타 기금 소관 융자지원 사업들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소관 융자지원 사업인 고용보험기금 소관 직업훈련생계비, 근로복지진흥기금 소관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 생계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소관 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생계비 등 총 5개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음.

[2019~2023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의 융자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85,071	182,959	136,764	220,676	165,030
	임금체불생계비	13,980	23,688	7,182	-	-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생계비	37,956	101,808	173,005	53,847	78,953
산재보험	생활안정자금	13,251	13,635	15,481	15,636	15,617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생계비	-	-	19,724	18,918	47,207
신용보증 합계		150,258	322,090	352,156	309,077	306,807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신용보증에 따른 2023년도 총 대위변제금 규모는 330억 3,500만원으로

23) 또한 행정규칙과 달리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는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융자금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특별융자금 감면비율이 법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명시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 투자촉진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행대로 고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소관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위변제가 166억 9,400만원, 고용보험기금 소관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한 대위변제가 125억 900만원 발생하였음.

[2023년 융자사업별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총 신용보증 대위변제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직업 훈련 생계비	근로자 대학 학자금	산재 생활 안정 자금	산재 학자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16,694 (50.5)	976 (3.0)	677 (2.0)	12,509 (37.9)	2 (0)	1,737 (5.3)	2 (0)	439 (1.3)	33,035 (100.0)

자료: 고용노동부

더구나, 각 연도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소관 임금체불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소관 생활안정자금의 회수율이 5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20~2023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율 저조 사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체불생계비	회수대상 구상채권액	31,877	33,208	34,320	34,996
		회수금액	14,561	15,371	16,123	16,730
		회수율	45.68	46.29	46.98	47.81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회수대상 구상채권액	537	1,410	3,612	4,588
		회수금액	64	99	208	402
		회수율	11.92	7.02	5.76	8.76
산재기금	산재 생활 안정 자금	회수대상 구상채권액	29,520	30,888	32,287	34,024
		회수금액	7,944	8,795	9,691	10,417
		회수율	26.91	28.47	30.02	30.62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소관 융자지원 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② 공공기관의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 미흡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석탄광물(석회석 등)의 갱도굴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부의 별도 자금인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사용하여 융자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만 관리·감독되고 있고, 국가결산상 자산에서도 누락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규정인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한·미 정부 간 1960년에 체결한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협정"에 의해 설치된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정부를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음.

동 자금은 1960년 6월 29일 "한미정부간 사업협정(협정 490-0062호)"에 의하여 상공부 광무국에 KOMEP(Korea Office of Mineral Exploration Project)[25]이 설치되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탐광갱도굴진 지원을 위해 미화 85만 8,000달러를 출연(무상원조)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음. 당시 합의사항에는 출연 결정 및 출연금 규모만 포함되었을 뿐, 운영관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었음.

이후 해당 업무가 1962년 상공부 소속기관인 국립지질조사소에게 이관되었다가 1967년 "수정 한미정부간 사업협정(협정 629.2-7013호)"에 의거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시작하였음.[26]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규정인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하에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일반광)의 굴진비용에 대한 융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27]

---

25) 6.25 전쟁중에 폐허가 된 광산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갱도굴진사업 지원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합동회의체

26) 갱도굴진사업은 1960~2009년 성공불융자(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상환의무 면제)로 운영했으나, 결손 우려로 2010년부터 일반융자로 전환되었음. 성공불융자의 상환의무면제에 따라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굴진융자금 상환 면제 발생 등으로 자산 감소*(△33억원)

<1969년 이후 2023년까지의 갱도굴진사업자금 내 재무상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969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885	2,268	9,442	6,142	11,206	14,503	14,319	14,446	14,513
부채	25	42	27	38	2	70	3	2	1
자본	860	2,226	9,415	6,104	11,204	14,433	14,316	14,444	14,512

27)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0조(자금운용계획)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금운용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해당 자금의 계좌의 소유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28]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운용실적 및 결산안」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총 26개 광산에 대하여 58억 1,2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였고, 2023년 말 기준 굴진지원금 융자잔액은 148억 7,300만원이고, 현금예금 21억 1,800만원의 여유재원이 사업자금 안에 유보되어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시의무가 있는 「국가회계법」상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갱도굴진사업자금은 해당 법률에 열거되지 않아 국가 자산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음. 광해광업공단 역시 「국가재정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기업회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해광업공단은 갱도굴진사업자금을 통한 융자사업 수행 및 자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자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학자금 대출을 위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신용위험(credit risk)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장학재단은 채권발행 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29]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30]

재단채 발행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은 연간 채권 발행계획을 수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요한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가 정한다.

28)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2조(운용보고) ①매 회계년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보고서에는 예산실적대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30)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고, 채권 발행조건(금액, 만기 등)을 채권투자자에게 사전공고한 후 입찰[31], 발행[32]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금을 조달하게 됨.

2023년에는 5년물 8,900억원, 3년물 4,500억원 등 총 1조 6,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최근 3년간 재단채 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최근 3년간 재단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발행금액	2년물	3,700	31.4	500	4.2	1,200	7.5
	3년물	2,800	23.7	7,000	58.3	4,500	28.1
	5년물	4,200	35.6	3,600	30.0	8,900	55.6
	10년물	800	6.8	500	4.2	-	-
	20년물	300	2.5	400	3.3	1,400	8.8
	소계	11,800	100.0	12,000	100.0	16,000	100.0
평균만기		4.3년		4.4년		5.5년	
발행금리(가중평균)		1.82		4.05		3.85	

자료: 교육부

그런데 재단채는 정부보증 채권으로서 국고채와 마찬가지로 신용위험(credit risk)[33]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채 조달금리가 모든 연물별로 국고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개년 연물별 재단채(정부보증채), 국고채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평균
재단채	3년물	1.65	1.16	1.53	3.62	3.81	2.35
	5년물	1.70	1.40	1.90	3.74	3.88	2.52
	10년물	1.77	1.63	2.15	3.67	3.94	2.63
국고채	3년물	1.53	0.99	1.39	3.20	3.57	2.13
	5년물	1.59	1.23	1.72	3.32	3.59	2.29
	10년물	1.70	1.50	2.07	3.36	3.64	2.45

자료: 한국장학재단

31)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낮은 입찰금리순으로 고지된 발행예정액에 해당하는 금리로 낙찰

32) 채권 계약서 작성,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발급, 예탁결제원 등록발행 및 한국거래소 사회적가치채권 등록, 상장 등

33) 채권발행기관 부도시, 채권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고채는 유동성[34]이 높아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선호하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단채는 유동성이 다소 낮아 국고채보다 금리가 소폭 높게 형성된다고 설명함.

그러나 내역사업인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군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등 사업예산이 모두 재단채 조달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국가가 대납하고 있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은 채권 조달비용 상승을 유동성 등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로 재단채 발행에만 의존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수지차보전 출연금에 융자지원 사업 소요를 반영하여 2023년까지 융자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2024년부터 수지차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융자금을 자체 잉여재원으로 보유한 채 운용할 예정이므로 세입·세출에 준하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까지 수지차보전 지원기관으로 운영되었던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에 대체산업융자 수행을 위한 신규 융자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왔음.

대체산업융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사업임.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기준 127억 4,300만원의 출연금을 집행하였고, 기실시한 융자금 중 원금 114억 4,700만원, 이자 6억 8,1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수납하였음.

34) 투자자가 필요한 시기에 채권매매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2021~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 내 대체산업융자 신규 융자액 및 원리금 상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신규 융자 실시액(출연금)	융자 원금 상환건수	원금 상환액	이자 수익액
2021년	13,322	182	18,133	203
2022년	13,245	210	14,118	361
2023년	12,743	160	11,447	68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대체산업융자의 융자잔액은 원금 기준 793억원 규모임.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지차보전 지원기관에서 해제되었음에도 기실시한 융자금을 반납받지 않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당 융자금을 지속 보유하도록 하여 대체산업융자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융자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융자원금 및 이자수익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체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해당 원리금 수익은 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므로, 향후 세입·세출에 준하는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관리 및 정산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융자금을 사업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③ 융자자산 회계공시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인 「융자 회계처리지침」은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됨.

동 지침에 따른 융자금은 공공기관·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기타 민간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함.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란 대여 당시의 시장(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융자사업에 대하여 융자금(대여금) 원금에서 추정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35)36)]

35) 융자금의 원금과 융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때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

즉 융자보조원가충당금에는 시장(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실시함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에 해당하는 보조비용과 융자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회수위험에 대한 평가가 혼재되어 있음.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조달금리보다 낮은 융자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매년 결산 시 추산·제시하여 실제 회수가능한 채권액 등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첫째,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매입 비축 사업의 경우 융자금으로 편성·집행되어 국가재무결산상 융자자산으로 공시되고 있으나, 만기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융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미설정하여 자산가치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융자사업의 실질에 맞게 융자조건에 만기를 명시하고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재무결산」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맞춤형농지지원사업·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농지연금사업 및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 중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입자금을 융자금의 형태로 별도의 만기 설정 없이 대여해 주고, 농어촌공사는 해당 대여금을 이용하여 은퇴·이농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이 경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내 융자금의 이자는 청년농 등이 납부하는 임대료 수입으로 구성되고, 융자원금은 공익사업에 매입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각 후 상환 방식으로 수납되고 있음.

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되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6) 「융자 회계처리지침」
(1) "융자금"이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한다.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란 융자금의 원금과 융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말한다.

[2023년 농지관리기금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및 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기말 융자잔액 (A)	원금 상환	이익금					손실금			평균 수익률 (B/A)
			소계	매도차익	예치이자	임대료 (B)	일시경작료	소계	매도차손	임대료 감면	
2020	2,352,611	1,638	8,789	889	124	7,239	538	225	2	223	0.31
2021	3,045,413	1,598	22,695	928	213	21,059	495	276	-	276	0.69
2022	3,786,599	1,901	10,565	872	433	8,638	621	182	-	182	0.23
2023	4,545,931	4,138	13,511	2,756	117	10,070	569	58	2	55	0.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연간 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 이익을 기말 융자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 수익률이 2023년 기준 0.22%에 불과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융자금은 만기 일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동 융자자산에 대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따로 계상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이후 집행된 융자금 전체를 국가 재무결산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음.

뿐만 아니라 비록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지출 비목상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으로 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조건의 핵심사항인 만기 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융자금 편성 및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위한 융자금 집행 시 융자사업의 실질에 맞게 융자조건에 만기를 명시하고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미설정에 따른 국가 재무결산상 자산가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학진흥기금 내 융자지원 사업인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융자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적정 비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시중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사학진흥기금 내 교육부 소관 사업인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융자금 707억 3,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그런데 ① 동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교육부는 융자예산 상 소액의 출자금을 SPC 설립당 500만원씩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융자금 예산 중 2022년 기준 1,500만원, 2023년 기준 1,000만원을 출자 목적으로 사용하였음.

출자금과 융자금은 서로 비목과 사업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융자금 안에서 SPC 법인 개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신규 출자 대상 SPC 법인 개수에 대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융자금 예산으로 출자금을 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출자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② 교육부 및 사학진흥기금은 1.70%의 저리로 행복기숙사 사업수행 SPC 법인들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2021~2023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의 융자자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융자잔액	융자집행액	대손충당금	융자원금 상환액	미수금 증감액	기말융자잔액
2021년	868,956	35,669	7,490	23,503	-	873,633
2022년	881,123	83,713	7,712	57,587	-	899,537
2023년	907,248	70,723	7,944	34,118	△9,254	926,655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의 금리로 대여금을 빌려와 조달하고 있는데, 「융자회계처리지침」상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한 유사한 국채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37]이 있으므로, 예외규정에 따라 유효이자율이 1.5%로 융자사업 이자율 1.7%보다 낮아 충당금을 따로 계상하지 않았다

37) 「융자회계처리지침」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고 설명하였음.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의 입장에서는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1.5%의 대여금은 융자금이 아닌 예탁금으로 「융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융자회계처리지침」상 유효이자율에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아닌 특정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주택도시기금-사학진흥기금의 사례와 같이 정부 내 예수·예탁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기금 간 내부거래를 통해 융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단일 기금 내에서 재원을 조달하였을 때에 비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미설정하고 융자자산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이는 국가 전체의 재무결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산가치의 공정한 인식을 저해하고 회계정보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지침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증지원 사업

(가) 보증성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검토

첫째,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종료, 고금리의 지속 등으로 인해 잠재된 보증부실이 현실화되어 보증성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증성 기금의 대위변제가 증가하면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는 증가함. 보증성 기금은 개별법에서 규정한 법정 운용배수의 한도 외에도 기관별로 적정 운용배수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될 요인이 될 수 있음.

보증성 기금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보증성 기금의 최근 5년간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액	490,878	646,493	652,866	646,493	669,483
		보증잔액(A)	522,161	833,689	785,888	833,689	816,227
		기본재산(B)	53,377	81,922	88,791	105,482	117,227
		운용배수 (A/B)	9.8	8.2	8.9	7.9	7.0
매출채권보험계정 (신용보증기금)		인수잔액(A)	50,229	51,112	51,913	53,819	57,015
		기본재산(B)	3,895	3,847	4,211	4,645	4,794
		운용배수 (A/B)*	12.9	13.3	12.3	11.6	11.9
기술보증기금		보증공급액	220,020	254,398	254,903	260,355	287,234
		보증잔액	221,122	257,045	264,929	266,989	282,803
		기본재산(B)	16,751	21,504	29,625	34,215	35,341
		운용배수 (A/B)	13.2	12.0	8.9	7.8	8.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액	86,112	81,871	80,147	96,402	89,599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기본재산(B)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운용배수 (A/B)	15.42	16.70	15.16	14.64	16.84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신용 보증계정	보증공급액	545,779	646,593	650,943	729,907	755,260
		보증잔액(A)	898,511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단위: 억원, 배)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금		기본재산(B)	81,695	79,176	86,654	88,993	100,176
		운용배수 (A/B)*	11.0	13.3	13.4	13.7	12.6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정	연금지급 잔액(A)	43,407	52,484	62,811	78,860	98,466
		기본재산(B)	2,889	4,524	6,495	7,844	10,205
		운용배수 (A/B)	15.0	11.6	9.7	10.1	9.6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액	136,474	282,705	244,538	269,611	243,011
		보증잔액	221,865	387,263	425,239	461,547	442,658
		기본재산(B)	33,897	40,213	46,580	52,952	55,372
		운용배수 (A/B)	6.5	9.6	9.1	8.7	8.0

자료: 전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보증성 기금의 운용배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5차례에 걸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으로 인해 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한 부실이 이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운용배수의 증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내역]

	최초	1차연장	2차연장	3차연장	4차연장	5차연장
발표시기	2020. 3. 13.	2020. 9. 23.	2021. 3. 11.	2021. 9. 28.	2022. 3. 24.	2022. 10. 1.
지원대상	지원기간 내 보증기일이 도래하는 기업 (휴·폐업 등 부실사유 발생기업 및 책임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특별약정 대상기업 제외)					
적용대출	지원기간 내 보증기일이 도래하는 보증 전액					
지원내용	기존보증의 전액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방식의 보증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기간	2020.4.1. ~2020.9.30.	2020.10.1. ~2021.3.31.	2021.4.1. ~2021.9.30.	2021.10.1. ~2022.3.31.	2022.4.1. ~2022.9.30.	•분할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유예 : 2022.10.1.~ 2023.9.30. •만기연장에 대하여는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중인 기업과 미이용 기업으로 구분하여 운용 - 이용 중인 기업 : 2022.10.1.~2025.9.30. - 미이용 기업 : 2022.10.1.~2023.9.30.

자료: 신용보증기금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어 원리금 상환의무가 도래하고,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대출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보증성 기금의 대위변제 지출이 증가하고 운용배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적용되는 일반보증 사업의 보증공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1~2023년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증액 (A)	만기연장 상환유예 (B)	비중 (B/A)	보증액 (C)	만기연장 상환유예 (D)	비중 (D/C)	보증액 (C)	만기연장 상환유예 (D)	비중 (D/C)
일반 보증	보증 공급액	560,506	360,296	64.3	592,107	388,529	65.6	611,030	365,077	59.7
	보증 잔액	591,461	368,201	62.3	613,961	406,970	66.3	618,214	406,667	65.8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위기 시 정책금융으로서 기능하였던 ‘소상공인 위탁보증’[1]이나 ‘저금리 대환보증’[2]은 만기연장·상환유예 기한 또는 거치기간이 종료된 2023년부터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음.

1)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수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응하여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이행하는 사업임.

2) 저금리 대환보증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은행권 등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수탁기관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향후 수탁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응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이행하는 사업임.

[2020~2023년 일반보증,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환보증의 부실률]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2월말
일반보증[1)]	2.4	2.0	2.0	3.3	3.5
소상공인 위탁보증[2)]	0.2	1.8	5.2	13.1	14.3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	-	-	0.1	5.2	6.5

주 1) (잔액)부실률: 연초부터 해당기말까지 발생한 부실금액을 연환산하여 기말 보증잔액으로 나눈 값
2) (누적)공급부실률: 한시적으로 취급한 상품으로 공급초기부터 기말까지 발생한 누적부실금액을 누적공급금액으로 나눈 값
자료: 신용보증기금

특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에서 자체변경(증)을 통해 2,20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음. 그러나 보증부실이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됨에 따라 해당 계정의 순자산은 2023년 말 △1,100억원, 2024년 5월 말 △1,132억원으로, 순자산이 (-)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2023. 10.5.	자체 변경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2431-316)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220,600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2431-301)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100,000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환보증 대위변제 (2431-317)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120,600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보증성 기금 역시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종료 및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 증가·기본재산 감소 및 운용배수 증가 등 보증성 기금의 건전성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보증성 기금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적정 운용배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증성 기금의 대위변제 증가추이에 비해 구상채권 회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므로, 정부는 보증성 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의 경우 2023년도 구상권 관리 사업의 집행률은 48.7%으로 연례적으로 구상권 관리 사업이 부진하였는데, 2023년 구상권 발생액 대비 구상권 회수율이 19.0%에 불과하여 구상권 관리 및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및 구상권발생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회수액은 2,114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은 19.0%, 구상권잔액 대비 회수율은 3.2%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하였음.

내수부진 및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19~2024년 현재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구상권 발생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3월
대위변제순증(B-C)		7,561	6,028	4,385	4,493	8,991	2,630
누계(A)		30,086	36,114	40,499	44,992	53,983	56,613
구상권발생액(B)		9,882	8,380	6,734	6,701	11,105	3,154
회수	연도중(C)	2,321	2,352	2,349	2,208	2,114	524
	누계(D)	9,907	12,259	14,608	16,816	18,930	19,454
구상권잔액(E)		65,567	62,430	57,090	55,773	58,881	60,838
대위변제 대비 누계 회수율(D/A)		32.9	33.9	36.1	37.4	35.1	34.4
구상권발생액 대비 연도중 회수율(C/B)		23.5	28.1	34.9	33.0	19.0	16.6
구상권잔액 대비 연도중 회수율(C/E)		3.0	3.2	3.4	3.5	3.2	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의 경우 전세 관련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대상인 구상권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상권 회수율은 감소하고 수납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불납결손 처리를 하였음.

2023년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구상권관리 사업은 당초 계획액으로 11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구상권 관리수요에 대응하여 3차례 증액을 통해 당초 계획액의 84.9% 수준인 100억원을 증액하였음.

그러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집행액 대비 구상권의 회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임. 2023년 구상권 회수액은 1,259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203억원보다 많으나, 구상권 발생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은 2023년 21.4%로 최근 5년 평균인 54.1%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주택신용보증계정 구상권 발생액 및 회수액]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
구상권 발생액(A)		2,989	2,150	1,870	1,784	2,488	2,286	3,168	5,891	15,588
회수	연도중(B)	1,846	1,355	1,145	1,182	1,447	1,145	1,098	1,259	1,823
	누계(C)	18,392	19,747	20,892	22,074	23,521	24,666	25,764	27,023	28,846
구상권 잔액		31,628	30,616	27,418	24,259	21,829	21,051	21,769	24,671	34,819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		61.8	63.0	61.2	66.2	58.2	50.1	34.7	21.4	11.7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구상권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구상권 회수금이 대부분인 기타경상이전수입을 살펴보면, 2023년 1,433억 4,800만원을 수납하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1%) 1,740억 3,5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여 수납액보다 불납결손액이 더 많았음.

불납결손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각각 649억 1,400만원, 237억 9,200만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51.0%를 차지하고, 시효완성과 기타 회수불가능이 404억 7,900만원, 448억 5,000만원으로 나머지를 차지함.

2023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액은 수납액(1,433억원)보다 불납결손액(1,740억원)이 큰 상황으로, 구상권 관리를 통해 회수한 재원보다 상각한 재원이 많음.

또한 불납결손액의 유형별로 보더라도, 회수노력과 관계 없는 개인회생(649억원)·파산면책(238억원) 대비 회수노력과 관련 있는 시효완성(405억원)·기타회생불능(449억원)이 비등한 수준인데, 적극적인 관리노력을 통해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23년 대위변제액은 1조 8,961억원으로 2022년 6,997억원 대비 171% 증가하였음. 이에 비해 2023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1,835억원으로 2022년 1,921억원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위변제로 인한 지출액의 9.7%만 구상권을 회수하였으며, 대위변제액 대비 구상채권 회수액은 9.7% 수준으로 부실 우려가 다수 제기되었음.[3)]

지역신용보증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지원책이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 자기자본 확충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자생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각종 금융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고, 그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실로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대위변제 및 구상권회수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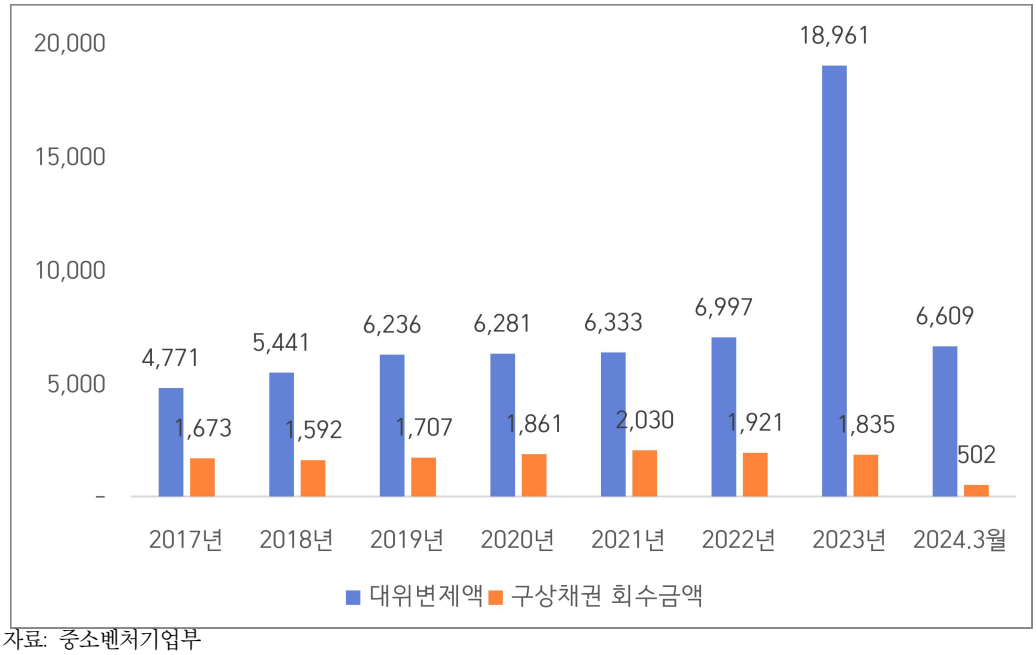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대위변제액(A)	4,771	5,441	6,236	6,281	6,333	6,997	18,961	6,609
구상채권 회수금액(B)	1,673	1,592	1,707	1,861	2,030	1,921	1,835	502
대위변제액 대비 구상채권회수금액 (B/A)	35.1%	29.3%	27.4%	29.6%	32.1%	27.5%	9.7%	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내일신문, "부실채권 증가, 지역신보 '비상'", 2024.2.7.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대위변제액 및 구상권행사 규모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④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의 경우 2023년 불건전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전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2023년 불건전보증잔액은 1,053억원, 대위변제액은 4,074억원으로, 전체 보증잔액 대비 각각 0.60%,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2019~2023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및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불건전보증잔액	457	807	526	789	1,053
불건전보증비율	0.28	0.49	0.32	0.46	0.60
대위변제금액	3,265	3,073	3,022	2,902	4,074
대위변제비율	2.03	1.87	1.85	1.69	2.31

자료: 금융위원회

(나) 주택 보증에 대한 검토

주택가격 변동 및 반환보증제도 가입요건 완화 등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임차인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전체대출에 대한 보증서가 필요한데,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은 다양한 전세자금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임차보증금 보호를 지원하고 있음.[4)]

[국내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상품 비교]

구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명칭	전세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출시연도	2020.7.	2013.9.	1995.10.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결과 전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액 공제 금액)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10억원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02~0.04% 차등적용	①아파트: 개인 임차인 0.115~0.128% (사회적 배려대상자 50~60% 할인) 법인 임차인: 0.205% ②그외: 0.139~0.154% (사회적 배려대상자 50~60% 할인)	아파트 : 연 0.183% 기타주택 : 연 0.208%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2024.6.24.

그러나 주택가격의 하락 및 높은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2023년 5월까지 100%, 이후 90%) 등으로 인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고 전세대출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가 크게 증가하며 주택금

4)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2024.6.24.

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이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이 두 보증기금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및 주거복지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기금의 지출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문제되고 있음.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총 사고액은 7조 6,542억원이고, 그 중 개인보증 사고액은 4조 8,583억원, 기업보증 사고액은 2조 7,959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마찬가지로 대위변제액은 4조 9,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구상권 회수액은 6,286억원에 그쳤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고발생액, 대위변제액, 구상권 회수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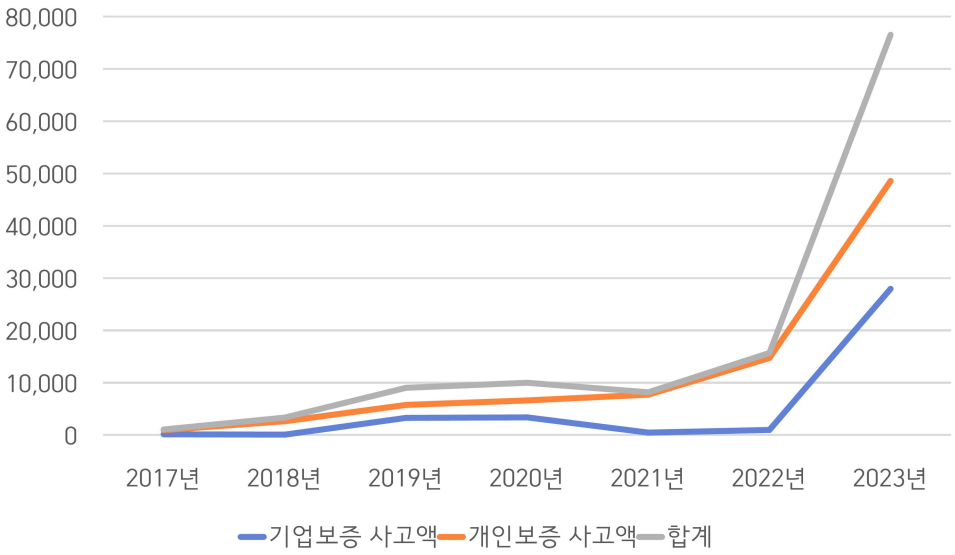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액	기업보증 사고액	133	69	3,274	3,373	458	965	27,959
	개인보증 사고액	927	2,630	5,753	6,614	7,713	14,728	48,583
합계		1,060	3,329	9,027	9,987	8,171	15,693	76,542
대위변제액		500	973	4,647	6,422	6,035	10,581	49,228
구상권 회수액		1,042	2,002	2,232	3,255	4,170	2,804	6,286

자료: 2023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통계연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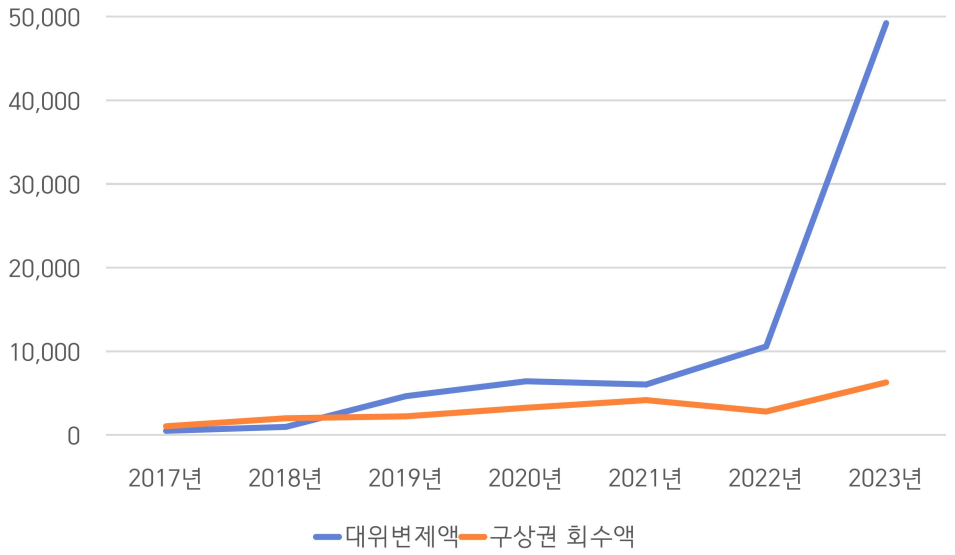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

(단위: 억원)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사고액의 대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차지하는데,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1만 9,350건에 대해 4조 3,34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위변제액은 4조 3,347억원임. 참고로 개인보증 사고액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비중은 건수 기준 85.7%, 금액 기준 89.2%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잔액기준		사고건수	대위변제금액	사고비율	
	가입건수	가입금액	가입건수	가입금액			건수기준	금액기준
2019	156,095	306,444	243,721	493,930	1,630	3,442	0.67%	0.70%
2020	179,374	372,595	315,602	637,904	2,408	4,682	0.76%	0.73%
2021	232,150	515,508	393,162	850,481	2,779	5,790	0.71%	0.68%
2022	237,797	554,510	456,999	1,047,641	5,443	11,726	1.19%	1.12%
2023	314,456	712,676	537,775	1,237,635	19,350	43,347	3.60%	3.50%

자료: 2023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통계연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는 57.5배까지 상승하였으나, 2023년 12월 3,839억원 현금출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54.3배 수준을 유지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보증잔액 및 보증운용배수]

(단위: 조원, 배,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증잔액(A)	410.8	459.8	536.6	596.2	618.3
담보부보증금액(B)	160.2	188.3	225.8	236.8	248.3
차감후보증잔액(C)	250.6	271.5	310.9	359.4	370.0
자기자본(D)	5.5	5.7	6.3	6.6	6.8
보증배수(C/D)	45.6	47.4	49.2	54.4	54.3

자료: 2023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통계연보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PF대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7,000억원을 주택도시기금에 현금출자 하였으며, 3월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 5,964만 7,546주를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4조원을 추가로 확충하였음.

② 주택금융금융공사(HF)(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의 경우, 2023년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은 2023년에는 당초 계획액으로 3,06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증가한 대위변제 집행소요에 대응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당초 계획액의 92.5% 수준인 2,88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음.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8년	290,000	290,000	-	290,000	186,997	64.5	-	103,003
2019년	248,000	248,000	-	248,000	178,398	71.9	-	69,602
2020년	240,000	253,130	-	253,130	248,767	98.3	-	4,363
2021년	281,000	281,000	-	281,000	228,622	81.4	-	52,378
2022년	291,200	320,000	-	320,000	316,767	99.0	-	3,233
2023년	306,100	594,445	-	594,445	589,067	99.1	-	5,378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목-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3.7.5.	710-03	대위변제	91,830	주택경기 위축,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집행소요 증가
기획재정부협의 변경	2023.9.7.	710-03	대위변제	137,606	
기획재정부협의 변경	2023.11.30.	710-03	대위변제	58,909	
합 계				288,345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2023년의 대위변제액이 확대된 것은 주로 전세보증자금의 보증잔액 및 사고발생액 증가에서 기인함.

주택금융신용보증의 보증상품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보증잔액 130조 8,230억원 중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잔액은 87조 9,913억원(6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잔액은 9조 6,557억원(7.4%)을 차지함.

주택금융신용보증의 총 대위변제액은 5,891억원인데, 대부분(98.9%)의 대위변제가 전세보증금 관련 보증사고로 발생하였음.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은 4,983억원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은 840억원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증유형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월
총계	보증공급액	454,692	545,778	646,593	650,943	729,907	755,260	208,927
	보증잔액	775,180	898,511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1,312,132
	대위변제액	1,870	1,784	2,488	2,286	3,168	5,891	1,854
	대위변제율	0.24	0.20	0.24	0.20	0.26	0.45	0.14
	보증사고액	3,564	4,001	3,829	3,631	5,450	10,594	3,600
	보증사고율	0.46	0.45	0.36	0.31	0.44	0.81	0.27
	운용배수	10.9	11.0	13.3	13.4	13.7	12.6	12.6
	기말기본재산	71,125	81,695	79,175	86,654	88,993	100,176	100,176
	기본재산증감	9,985	10,570	△2,519	7,478	2,339	11,183	-
전세자금보증	보증공급액	336,025	403,196	506,948	493,353	546,800	529,299	145,189
	보증잔액	503,622	641,749	784,650	857,191	888,598	879,913	869,188
	대위변제액	1,813	1,689	2,386	2,166	3,053	4,983	1,420
	대위변제율	0.36	0.26	0.30	0.25	0.34	0.57	0.16
	보증사고액	2,621	2,936	3,061	3,244	4,909	7,100	1,881
	보증사고율	0.52	0.46	0.39	0.38	0.55	0.81	0.2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공급액	-	-	2,941	10,700	30,650	68,298	22,058
	보증잔액	-	-	2,928	13,384	41,849	96,557	113,164
	대위변제액	-	-	-	-	61	840	424
	대위변제율	0.00	0.00	0.00	0.00	0.15	0.87	0.38
	보증사고액	-	-	-	-	109	1,013	497
	보증사고율	0.00	0.00	0.00	0.00	0.26	1.05	0.44

자료: 금융위원회

개인보증 사고발생액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전세시장 불안 확대에 따라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은 감소하였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상환부담이 증가하여 사고발생률이 상승하고 보증사고율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율이 상승하였음.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2020년 7월 상품도입 이후 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보증기한 만료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함과 동시에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보증금 미환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상승하였음.

주택가격의 변동,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 주택관련 대출이 부실화되고 전세금 미반환이 증가하여 주택 관련 보증기금인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기금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무역 보증 및 보험에 대한 검토

첫째,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사고 후 구상채권의 수납실적을 보면, 채권잔액 대비 회수액이 2% 미만으로 부진하므로 향후 구상채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무역보험기금의 구상채권의 연도별 신규 발생 및 회수·상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기준 구상채권의 회수액은 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하였고, 이를 연초 구상채권액에 신규 구상채권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회수율의 경우 2023년 1.4%로 2019년 이후 매년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2023년 구상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무역보험기금	연초 구상채권액(A)	11,902	11,582	11,568	11,349	8,733
	신규 구상채권액(B)	728	628	422	408	680
	회수액(C)	127	117	163	148	134
	상각액 등*(D)	921	525	478	2,876**	462
	연도말 구상채권액(=A+B-C-D)	11,582	11,568	11,349	8,733	8,817
	회수율(=C/(A+B))(%)	1.0	1.0	1.4	1.3	1.4
	회수액 대비 상각액 등(D/C)(배)	7.3	4.5	2.9	4.3***	3.4

주 1)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및 회수불능 소각 건은 해당사항 없음
2) 출자전환된 채권금액(2022년 7월 기준 누적 2,240억원 일괄 반영) 포함
3) 상각액 등(D)-출자전환된 채권금액(2,240억원))/회수액(C)

자료: 무역보험공사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정관리(회생·파산),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등), 임의상환(변제독촉,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실제 환수노력을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 회수액보다 출자전환, 추심의 실익이 없어 상각한 채권 등으로 인한 상각액이 회수액 대비 3.4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무역보험공사는 구상채권 환수노력을 통해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을 제고하는 한편, 구상채권이 상각되기 전에 회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무역보험공사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잔액(미회수잔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적극적인 수납관리가 필요함.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등 보증사고의 발생 시에는 구상채권의 미회수잔액, 종결금액(불납결손액), 실제수납액 전체에 대해서 징수결정하나, 수출보증보험 등 보

험사고의 발생 시에는 실제수납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하고 있음.[5] 또한, 보험 사고의 보상금액을 국내채권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 재무결산에서도 동기말 채권잔액을 미수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2020~2023년 무역보험공사 보유 국내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기초채권잔액(A)	34,273	33,955	34,964	24,992
신규채권액(B)	1,002	2,241	467	701
회수액(C)	237	337	160	136
상각액 등(D)	1,083	895	10,279	592
기말채권잔액 (A+B-C-D)	33,955	34,964	24,992	24,965

자료: 무역보험공사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제공한「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이 구상채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자사 상품 중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한 채권만이 구상채권으로 분류되어 기타경상이전수입 상 징수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음.

5)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보증수익자인 수입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임. 이는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보증수익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건설 또는 선박 수주시장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선수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AP-Bond, RG)가 대표적이며, 수출자의 건설 또는 선박건조계약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자는 언제든 금융기관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음(Unconditional Guarantee)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상 징수결정에 대한 규정]

☞ (유의사항) 수입징수관 등(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회계처리 담당자 포함)은 해당 회계연도에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액 전체(확정금액의 채권 발생액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함

※ <예시> 구상채권, 융자금, 연금부담금 징수결정액 산정 기준

구상채권 관련 수입	융자금 관련 수입	연금 부담금 등 관련 수입
확정금액의 채권 발생액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융자금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한 금액	부과금 등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금액 등
회수가능성 낮은 구상채권도 징수결정대상에 포함	융자금 연체금 등도 징수결정대상에 포함	전출입·퇴직자 등에 대한 부과금도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에서 발췌

그러나 해당 결산작성지침을 보면, 동 규정은 징수결정에서 누락하지 말아야 할 구상채권의 예시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임. 오히려 동 지침은 확정금액의 채권 발생액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가회계실체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전체를 징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아닌 국내채권(수출보증보험 등)에 대해서도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채권잔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 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지원(펀드) 사업

(가) 벤처펀드 출자 시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검토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펀드에 대한 출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정부・금융공기업 등)에서의 재정출자와 민간부문의 출자를 바탕으로 정책펀드를 구성하고, 운용사를 선정한 후 운용사가 2차 운용사 또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초기자본을 지원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을, 금융위원회는 한국성장금융 등 민간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모펀드(Funds of Funds)를 운용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별도의 벤처펀드를 구성하여 운용중에 있음.

2023년 벤처펀드의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조 1,284억원(16.7%), 민간부문은 10조 6,343억원(83.3%) 출자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비중은 2020년 26.0%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구체적으로 2023년 모태펀드는 9,805억원(7.7%), 한국성장금융은 3,403억원(2.7%),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8,077억원(6.3%)을 벤처펀드에 출자하였음. 모태펀드와 성장금융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벤처투자에 대한 재정투입이 확대되었던 2020~202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민간 부문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산은 등 제외) 4조 1,391억원(32.4%), 일반 법인 2조 7,077억원(21.2%), 벤처캐피탈(VC)・어셀러레이터(AC) 1조 3,589억원(10.6%), 일반 개인 1조 4,239억원(11.2%), 연기금 및 공제회 6,659억원(5.2%), 기타단체 및 외국인 3,387억원(2.7%) 순임.

[연도별 벤처 펀드 결성의 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부문		금액	17,078	25,947	34,045	31,851	21,284
		비중	21.7	26.0	19.1	18.0	16.7
	모태펀드	금액	9,325	13,252	17,457	14,963	9,805
		비중	11.8	13.3	9.8	8.5	7.7
	한국 성장금융	금액	3,720	5,463	8,856	9,849	3,403
		비중	4.7	5.5	5.0	5.6	2.7
	산업은행 및 기타	금액	4,033	7,232	7,732	7,039	8,077
		비중	5.1	7.2	4.3	4.0	6.3
민간부문		금액	61,620	73,906	143,995	144,752	106,343
		비중	78.3	74.0	80.9	82.0	83.3
	개인	금액	9,895	8,321	28,856	23,172	14,239
		비중	12.6	8.3	16.2	13.1	11.2
	일반법인	금액	17,506	18,323	39,637	36,703	27,077
		비중	22.2	18.3	22.3	20.8	21.2
	금융기관 (산은 제외)	금액	18,652	23,242	44,751	49,099	41,391
		비중	23.7	23.3	25.1	27.8	32.4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3,710	11,224	6,867	13,268	6,659
		비중	4.7	11.2	3.9	7.5	5.2
	VC · AC	금액	8,595	9,782	20,583	18,757	13,589
		비중	10.9	9.8	11.6	10.6	10.6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263	3,015	3,302	3,753	3,387
		비중	4.1	3.0	1.9	2.1	2.7
합계			78,698	99,853	178,040	176,603	127,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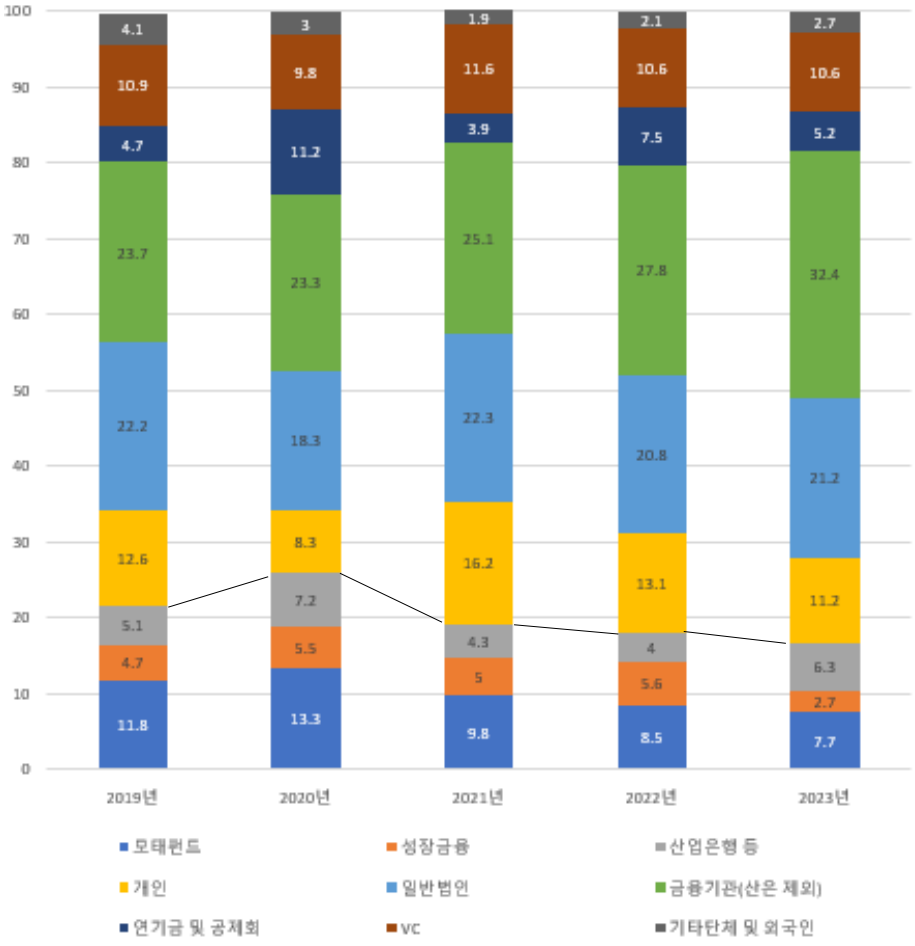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고 있는데, 정책 펀드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적정 비중 및 재정투입분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의 증가 이후 민간부문 중심의 벤처 펀드 투자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023년 벤처펀드 결성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비중은 83.3%이고, 이 중 개인은 11.2% 일반법인은 21.2%, 금융기관은 32.4%, 연기금 및 공제회는 5.2%, VC・AC는 10.6% 기타는 2.7%를 차지함.

[연도별 벤처 펀드 결성의 출자자 구성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민간금융기관의 비중은 2019년 23.7%에서 2023년 32.4%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금액 역시 1조 8,652억원에서 4조 1,39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벤처투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에 민간금융기관 중심으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10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6] 민간재간접벤처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조합(이하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4년 3월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음.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사를 설립하고 민간 벤처모펀드를 구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7] 국내 금융지주사가 운용사(GP) 역할을 수행하는 자체 벤처캐피탈사를 설립하고 이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지주회사의 대체투자가 확대되는 와중에 운용사(GP) 역할의 자금은 증가하는 대신 종전의 유한책임투자자(LP) 역할의 자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공 벤처펀드의 자펀드 결성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고, 민간부문 벤처투자 증가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음. 이에,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활성화가 민간부문 벤처투자 총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부문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기금·공제회가 대체투자의 일환으로서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벤처투자 결성금액 중 연기금·공제회 부분은 6,659억원으로 전체 중 5.2%에 불과하고 금액 역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기금·공제회가 국내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벤처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8][9]

둘째, 공공부문 내 출자에 대해서는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성장사다리펀드2(한국성장금융)와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등의 자체재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정부재정 투입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벤처통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설립·인수한 벤처캐피탈사로, KB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하나벤처스, NH벤처투자, 우리벤처파트너스, 하이투자파트너스, JB인베스트먼트, IBK 벤처투자 등이 있음.

8) 참고로, 2024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기금(민간기금)의 기금 사용용도에 벤처펀드 출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9) 뉴스1, “돈 줄 마른 벤처에 연 4000억 상생협력기금 단비 내린다”, 2024.6.19.
머니투데이, “‘퇴직연금도 벤처투자 허용’ 목소리 키우는 업계... 정부는 ‘글쎄’”, 2024.6.12.

공공부문의 벤처투자는 크게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2,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자체재원을 통한 벤처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모태펀드는 각 부처의 계정별 출자를 통한 정부재정 투입과 계정별 회수재원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② 성장사다리펀드2는 기존 성장사다리 펀드 회수재원을 바탕으로 투자되며,[10] ③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대부분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벤처투자를 운용하고 혁신성장펀드 등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펀드 조성 시 정부재정 투입분, (비재정) 정책금융펀드, 금융공공기관의 자체재원이 혼재된 경우가 많은데,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재정) 정책금융펀드 및 금융공공기관의 자체재원을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출자분 중 각 출자자의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2024년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민간자금 2조 500억원과 정책자금 9,500억원을 매칭하여 3조원의 펀드가 조성될 계획인데, 정책자금 9,500억원은 정부 재정투입 2,400억원, 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600억원, 산업은행 자체재원 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 500억원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벤처펀드에 다양한 공공부문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10) 성장사다리펀드2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딥테크·기후테크·세컨더리 및 매칭 등 4개 섹터에 집중하여 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으로, 기존 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2,000억원씩(산은 1,460억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378억원, 기업은행 162억원) 재투자하여 총 1조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될 계획임.

[2024년 혁신성장펀드(2차년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단위: 억원, 개)

구분	주관기관 (선정 차수)	펀드 규모 (분야)	자펀드 운용사수	조성 규모	정책출자금			
					재정*	산은	사다리2	합계 (비율)
혁신 산업 펀드	신한(1차)	1,000 (소형)	3	3,000	510	240	300	1,050 (35%)
	산은(1차)	2,000 (중형)	2	4,000	560	750	-	1,310 (33%)
	산은(1차)	3,000 (대형)	2	6,000	700	1,100	-	1,800 (30%)
	산은(2차)	1,000 (소형)	2	2,000	230	310	200	740 (37%)
소 계			7	13,000	2,000	2,400	500	4,900 (33%)
성장 지원 펀드	산은(1차)	5,000 (대형)	2	10,000	200	2,800	-	3,000 (30%)
	성장(2차)	2,500 (중형)	2	5,000	800	800	-	1,600 (32%)
소 계			4	15,000	1,000	3,600	-	4,600 (31%)
합 계			13	30,000	3,000	6,000	500	9,500 (32%)

주: 재정 3,000억원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예산 2,400억원과 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의 회수재원 600억원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벤처펀드의 출자자 구성 중 공공부문의 출자자가 다양화되는 것은 각 출자자의 출자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다양한 공공부문 출자로 인해 민간부문 출자가 구축(crowding-out)되지 않도록 민간부문 최소출자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전체 벤처투자의 다양한 출자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통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벤처투자회사·조합(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및 신기술금융사·조합(금융위원회 소관)의 투자주체별 벤처투자 통계자료를 통합발표하고,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을 연간 단위로 공개할 수 있는 벤처투자 통계기반을 마련할 계획인데,[11] 장기적으로 각 펀드별 출자자 통계 및 출자자별 출자현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기반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부처 합동,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2024. 5. 13.

(나) 정책목적에 맞는 펀드 설계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정책 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주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산운용사의 수익보전,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을 위해 투자의무비율을 100%로 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목적 상 적어도 공공부문의 출자분(정부재정·회수재원)은 해당 펀드의 투자목적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일부 정책펀드의 경우 투자의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는 ① 정책펀드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 중 일부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정투입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②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펀드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민간자금이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될 수 있다는 문제가 각각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투자의무비율 설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벤처투자모태조합(중소벤처기업부 등)

한국벤처투자는 연초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편성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비율보다 낮게 설정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모태펀드 자금의 일부가 해당 목적과 관계없는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설계한 바 있으므로, 향후 모태펀드 운용계획 편성 시 모태펀드의 운용목적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비율보다는 주목적투자의무비율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벤처투자는 「2023년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에서 각 투자계정 및 분야별 자펀드출자비율과 투자의무비율(주목적투자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스포츠·해양· 계정의 모태펀드 자펀드출자비율이 투자의무비율보다 높아 사실상 자펀드 출자금 중 일부가 의무투자대상이 아닌 분야에 출자될 수 있었음.

[2023년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 상 자펀드 출자대상 및 투자의무비율]

계정	분야	출자대상	주요 투자대상	자펀드 출자비율	투자 의무 비율
중진	중점 지원	여성기업	여성기업에 투자	60%이내	60%
		M&A	중소·벤처기업의 M&A 등에 투자	50%이내	60%
		재도약	재도약기업 등에 투자	60%이내	60%
		글로벌펀드	해외투자 유치, 해외진출 지원 등	40%이내	출자액 이상
		스케일업중견도약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투자	50%이내	60%
		LP지분유동화	벤처펀드 유한책임조합원 지분 인수	50%이내	60%
		일반세컨더리	중소·벤처기업의 기발행 주식 등 인수	30%이내	60%
		지역혁신 벤처펀드	지역 혁신기업 등에 투자	99%이내	일정 비율 이상 (60%)
혁신 모험	중점 지원	창업초기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벤처투자조합)	60%이내	60%
		초격차(민간제안)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	50%이내	60%
소부장	중점 지원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 등 전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60%이내	60%
청년	중점 지원	청년창업	청년창업기업에 투자	60%이내	60%
엔젤	중점 지원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	지역기업 투자목적의 개인투자조합(자펀드) 출자**	99%이내	일정 비율이상 (60%)
중진 (고용)	중점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72%이내	60%
중진 (복지)	중점 지원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에 투자	72%이내	60%
문화	중점 지원	K-콘텐츠IP	문화콘텐츠 P 관련 중소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 등에 투자	60%이내	60%
		K-문화M&A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M&A 등에 투자	60%이내	60%
		K-유니콘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	60%이내	60%
		K-밸류	콘텐츠가치평가센터의 콘텐츠 가치평가분석을 받은 프로젝트 등에 투자	60%이내	60%
		K-문화상생	소외장르 또는 투자소외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에 투자	60%이내	60%

계정	분야	출자대상	주요 투자대상	자펀드 출자비율	투자 의무 비율
		K-문화일반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 등에 투자	50%이내	4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육성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 등에 투자	37.5%이내	60%
관광	중점 지원	관광기업육성	관광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70%이내	65%
영화	중점 지원	중저예산 한국영화	중예산, 중저예산, 저예산 한국영화 등에 투자	50%이내	55%
스포츠	중점 지원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산업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	70%이내	60%
		스포츠출발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산업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 (창업기획자만 신청가능)	70%이내	60%
국토	중점 지원	국토교통혁신	국토교통 산업 및 연관 산업에서 국토교통 분야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사업화 하는 중소벤처기업	60%이내	70%
교육	중점 지원	대학창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	75%이내	80%
과기	중점 지원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 기업 등에 투자	60%이내	60%
		공공기술 사업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에 투자	70%이내	일정 비율이상 (70%)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관련 기업 등에 투자	50%이내	일정 비율이상 (60%)
환경	중점 지원	미래환경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탄소중립·녹색전환 기여하는 미래환경산업 기업에 투자	70%이내	70%
해양	중점 지원	해양 신산업	해양 신산업 및 첨단 기술 융합 분야 중소·벤처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70%이내	60%

자료: 한국벤처투자

② K-글로벌 백신 펀드(보건복지부)

K-글로벌 백신 펀드는 펀드 조성 재공고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당초 제약·백신에서 바이오헬스 전반으로 확대하였는데,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목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K-글로벌 백신 펀드는 당초 5,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2개 운용사를 선정하였으나, 1개사가 선정 철회한 후 재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분야를 당초 사업의 목적이었던 제약·백신 분야가 아니라 바이오 헬스로 확대하였음.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현황]

구분	A사	B사	C사
결성목표액	2,500억원	1,500억원	1,000억원
운용사 선정 시	1,300억 원 (운용사 300 + 공공출자 1,000)	-	-
2023년 말 기준 시점	1,500억원 (보건복지부 예산: 300억원)	1,146.3억원 (보건복지부 예산: 350억원)	-
전 망	■ 2023.12월 결성(60%), 2024년 투자 개시 예정 ■ 60% 결성에 따른 보건복지부 불용예산(20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출자사업 공고 중	■ 2023.8월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선정 후, 2023.12월 결성(70%) 및 투자 개시	■ 2024. 4월 운용사로 선정된 후 펀드 조성 중 ■ 2024.7-8월 70%이상 펀드 조성되면 우선 결성 후 투자 개시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분야는 제약백신 이외에 의료기기나 로봇, 헬스케어, 바이오 인공장기 등을 포함하는데, 이 분야의 경우 국고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타 모태펀드(중진 계정의 초격차 분야 등)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우려도 존재함.[12)]

특히 공고문 상 내용을 보면, 주목적 투자대상의 범위가 제약 등 바이오 헬스 전 분야에 60% 이상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목표인 제약과 백신 등의 분야에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12) 품목별로 보면,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생산시스템, 바이오 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혁신형화장품,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장내미생물치료, 경피약물전달, 치료용항체, 개량신약, 혁신신약, 핵산기반 백신 및 치료제, 나노 약물전달체, 동반진단. 액체 생체검사, 의료 진단, 유전자 진단예측,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모바일헬스, 안과용레이저, 수술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함.

[K-글로벌 백신 펀드 재공고 시 출자 분야 및 주목적 투자 대상]

○ 아래 ①, ② 모두 충족 ① 제약(백신) 등 바이오 헬스 全 분야 - 주1)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② 백신 관련 혁신 기술 및 공정 기술개발 - 주2) 등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10% 이상투자 ※ ①, ② 모두 부합할 경우, 주목적 투자실적 중복 인정 주 1)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치료제, ICT 기반서비스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의미 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발간) 중 건강·진단(E) 분야(식품류는 제외), '新성장 4.0 전략' 미래의료 핵심기술 분야 및 바이오혁신 분야 2. 관세율표(관세청) 제30류 및 제90류 등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식품류는 제외) 3. 기타 바이오헬스 분야 ※ 운용사 투자 대상이 1~3호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출자자들(모태펀드 및 'Ⅰ. 개요-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의 공동출자자)이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세부 절차는 규약 협의 시 결정 주 2) 운용사 투자 대상이 백신 관련 혁신 기술 및 공정 기술개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출자자들(모태펀드 및 'Ⅰ. 개요-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의 공동출자자)이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세부 절차는 규약 협의 시 결정

자료: 한국벤처투자 공고문(2023.8.) 중 발췌

또한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운용 목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백신과 신약 분야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된 사업이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세부사업 아래의 내역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업이 아닌 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 범위에서 백신의 비중을 축소됨에 따라 펀드의 운용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펀드의 투자가 임상 3상 단계의 백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③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사업의 투자를 위한 적정 대상 선정이 필요하며, 정책펀드의 출자율보다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이 낮아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투자대상 선정시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의 조성이 완료된 후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4년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인데, 2023년 말 기준으로 4개 기업에 23억원이 투자되었음.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혁신적으로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업과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기술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임.

[공고문 상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 기간 내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단,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한다.(이하 같음)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자료: 한국벤처투자 공고문(2023.6.) 중 발췌

동 사업의 경우 정책펀드의 출자율 69%에 비해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은 약정총액의 60%로 낮은 상황으로, 해당 구조 하에서는 정부 재정이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되지 않을 수 있고 민간투자 유인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음.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는 펀드의 조성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펀드의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 주목적 투자 대상의 기업에 대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펀드 조성에 있어 정책 펀드의 출자율보다 주목적 투자비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④ 농식품모태펀드(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자펀드 결성 시 민간부문 비중이 감소하여 민간투자 유치라는 정책목표와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농식품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펀드 결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민간과의 매칭펀딩으로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여 이로 하여금 성장 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하는 농식품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펀드 결성을 위한 모태펀드와 민간의 출자액을 살펴보면, 모태펀드와 민간의 출자액은 모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후 202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농식품 자펀드 결성 및 민간 출자액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350	400	400	400
자펀드 결성	정부(농식품모태펀드)	740	867	1,526	1,235
	민간	767	811	1,005	773
	계(자펀드 수)	1,507(8)	1,678(10)	2,531(15)	2,008(13)
	민간비중	50.9	48.3	39.7	38.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보다 민간의 출자액이 낮은 비율로 증가하고 높은 비율로 감소함으로써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의 비중이 2020년의 50.9%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3년에는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에 대한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펀드 결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펀드 사업의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지연에 대한 검토

정책펀드 사업은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 재정투입과 실제 투자와의 시차가 발생하고, 적기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확대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서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이 중요함.

특히 자펀드 결성과 관련하여서는, 운용사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매년 11~12월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book closing) 시기에 자펀드 운용사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자펀드 결성 역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자펀드 운용사의 LP(Limited Partner) 유치가 용이하도록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운용사 선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자펀드의 조기 투자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기간(3~4년) 동안 적정한 투자대상을 탐색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위한 시일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펀드 투자 지연으로 인해 정부재정의 민간투자 유인효과(마중물 역할)가 감소하고, 모펀드에 유보된 미투자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자펀드의 조기 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부처별 개별 사업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산업은행 재정모펀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는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일정으로 인해 연말에서야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고, 조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보수 방식의 선택률이 낮은 문제가 있음.

2023년 3월 재정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후, 6월에 1차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10~11월에 2차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여 연말에서야 비로소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였음.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book closing) 시기에 자펀드 운용사가 유한책임투자자(LP) 유치를 시도해야 하므로 민간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어 자펀드 결성 지연이 연쇄적으로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운용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은행 및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2023년 혁신성장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시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를 ① 조기투자를 위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②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 중에 위탁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부분

(75%)의 자펀드 운용사가 ② 방식을 선택하였음. 투자잔액과 유보액에 대한 관리보수율 격차를 조정하는 등 조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유인구조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혁신성장펀드 1차(혁신산업, 성장지원), 2차(혁신산업)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상 운용보수]

○ 관리보수 : ① 또는 ② 중 택일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아래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이내에서 협의 가능

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 이후 투자잔액 기준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투자잔액	연1.6% 이내	연1.1%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약정총액-투자잔액)	연1.4% 이내	연0.9% 이내		

* 성립일~2년 :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투자잔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② 2년간 약정총액, 이후 투자잔액 기준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성립일~2년	연1.5% 이내	연1.0%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2년~만기				

* 성립일~2년 : 약정총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자료: 금융위원회

② 수산모태펀드(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는 자펀드 중 일부가 아직 투자가 집행되지 않고 투자재원이 자펀드 단계에서 잔존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까지 조성되어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수산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은 2024년 6월말 기준 399억 4,400만원으로 투자여력이 크고, 특히 2020년 조성되어 투자잔여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17억 3,200만원에 달하는 등 자펀드 결성 후 실제 투자로 집행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결성되어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자펀드 투자 현황(2024년 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조성된 펀드 규모(A)	15,000	20,000	15,000	15,000	35,000	30,000	25,500	19,600	13,340	-	188,440
투자된 금액(B)	12,100	17,350	13,250	13,536	29,987	26,029	14,163	2,199	3,900	-	132,514
잔존 금액(C=A-B)	2,900	2,650	1,750	1,464	5,013	3,971	11,337	17,401	9,440		55,926
운용비용(D)[1]	2,031	2,609	2,133	1,750	3,023	2,239	1,445	709	43	-	15,982
투자잔여기간(년)[2]	-	-	-	-	-	0.1	1.2	2.1	3.2		6.6
투자여력(C-D)	869	41	-383	-286	1,990	1,732	9,892	16,692	9,397		39,944

주 1) 2024년 6월말 기준 관리보수, 수탁보수, 기타 지급수수료 등
2) 평균투자 잔여기간으로 계산함
자료: 해양수산부

미투자된 재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펀드 조성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자펀드 결성 이후 실제 민간투자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국토교통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투자실적은 당초 투자목표에 비해 투자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며,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하위펀드의 경우 매입약정 기한이 2024년 9월까지이므로 1단계 PIS 펀드 조성자금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PIS(Plant・Infrastructure・Smart-city) 펀드 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2019년 250억원, 2020년 500억원 등 2023년까지 총 1,5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정부 출자금과 공공기관 투자로 총 6,000억원, 민간자금으로 9,000억원, 총 1조 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2024년 7월 현재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6,000억원을 조성하였고, 블라인드펀드 1조 1,000억원,[13] 프로젝트펀드 2,823억원,[14] 총 1조 3,823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한 상태임.[15]

13) 투자대상을 정해 놓고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기존 펀드 방식과 달리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

14)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확정된 후 펀드를 조성하는 펀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분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P	I	S	제안형	신한 PIS	EIP PIS	신한 PIS 2
모태펀드(A)		900	2,226	1,198	600	228	325	200
민간(B)		1,200	2,274	1,202	1,400	533	736	801
투자약정(A+B)		2,100	4,500	2,400	2,000	761	1,061	1,001
투자승인 금액	9,974 (2023.12.31.)	1,688	3,009	589	1,893	759	1,066	970
	10,857 (2024.7.31.)	1,688	3,559	894	1,893	761	1,061	1,001

자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PIS 펀드의 투자실적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9,974억원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1조 857억원이 투자승인되었으나, 투자약정액 1조 3,823억원 대비 투자실적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하위펀드의 경우 매입약정 기한이 2024년 9월이므로, 동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펀드자금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1단계 펀드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펀드명	사업명	펀드 투자
블라인드 펀드	플랜트	미국 텍사스 Frio태양광발전사업	451
		사우디가스파이프라인운송사업	606
		말레이시아 에너지산업단지	400
		미국조지아 LNG 액화 플랜트 사업	231
		소계	1,688
	인프라	스웨덴 육상풍력 발전사업	352
		멕시코 해저 파이프라인 사업	377
		호주항암치료센터	580
		말레이시아 에너지 산업단지	900
		프랑스 광통신 인프라 구축	800
		프랑스 에너지 전환 인프라	550
		소계	3,559
	스마트시티	미국아마존 물류센터 포트폴리오	204
		말레이시아 에너지산업단지	300
		베트남 하이퐁 물류센터 개발사업	90
		베트남 하이퐁 물류센터 개발사업(PF투자)	300

15) PIS 1단계 펀드 조성목표 1조 5,000억원 중 블라인드펀드로 1조 1,000억원 조성을 2020년 9월 완료하였고, 프로젝트 펀드 4,000억원은 조성을 추진 중임

(단위: 억원)

구분	펀드명	사업명	펀드 투자
		소계	894
	제안형	핀란드 배전망 지분인수	540
		미국 버지니아 유료도로 지분인수	441
		사우디원유 파이프라인 지분인수	571
		호주 송배전 포트폴리오	341
		소계	1,893
프로젝트 펀드	신한PIS	영국 Botley ESS 투자	761
	EIPPIS	미국 Concho 태양광 발전	1,061
	신한PIS2	영국 Widow Hill BESS 투자	1,001
소계		**21건**	10,857

자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라) 재정 투입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및 청산 시 회수재원의 처리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재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다수의 정책펀드와 관련하여 펀드의 출자 및 청산 등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 에서는 '출자금(460-01목)'에 대한 지침 및 '기금을 통한 펀드출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출자금 비목 관련 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다양한 펀드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한정하여 펀드운용지침과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회수재원 국고 회수 원칙, 회수 전 청산금의 재투자 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 출자금 비목 세부지침]

○ 정책목적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펀드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연간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펀드운용주체는 「펀드운용지침」에 따른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및 펀드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간 펀드운용계획은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당해연도 출자한도, 출자분야, 투자의무비율, 기준수익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사항은 기금을 통한 펀드출자사업의 예에 따른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 집행지침에서는 정책 목적을 위해 펀드·조합을 출자·운용할 경우, 펀드운용지침과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회수재원의 국고 회수 원칙, 회수 전 청산금의 재투자 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펀드출자사업 세부지침]

○ 기금관리주체 등이 정책 목적을 위해 펀드(또는 조합) 출자·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펀드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연간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관리주체는 「펀드운용지침」에 따른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및 펀드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소관부처, 기금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예산·기금을 통해 정책 펀드출자자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등(이하 '펀드출자 주체')

- 펀드운용지침에는 자금조성, 자금배분 및 운영기준 등 펀드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자펀드에 대한 출자기준 등 포함

- 연간 펀드운용계획은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당해년도 출자한도, 출자분야, 투자의무비율, 기준수익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펀드출자주체는 자금조성에 있어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계획된 매칭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자금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펀드출자주체는 펀드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분야에 대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설정하고 펀드운용과정에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투자의무비율 :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펀드결성총액에서 의무적으로 특정분야에 투자해야할 금액의 비중

○ 펀드출자주체는 펀드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용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펀드운용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모태펀드의 경우 자펀드의 선정 및 출자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당해 연도에 출자하지 않은 자산은 각 펀드별 운용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출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정부가 출자한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현행 집행지침 상의 출자금 및 펀드출자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펀드출자사업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출자금 관련 예산 집행지침은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해 출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아닌 정책펀드(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농식품모태펀드 등)에 대해서도 규정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출자금' 비목의 예산이 정부재정이 집합투자기구·특수목적회사에 출자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당 세부지침은 '기획재정부'와 정책 펀드에 출자하는 '부처·기금관리주체·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펀드 운용지침·연간운용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출자금이 편성되는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결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당 세부지침은 펀드 출자금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투자액과 투자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재정투입분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매년 펀드 출자금의 투자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청산 시 내부수익률, 일자리 창출규모 등) 등을 포함한 '(가칭) 연간펀드운용성과'를 결산 심사 시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해당 세부지침은 자펀드 청산 시 국고 회수를 협약서 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회수 전 청산금 재투자 시 기획재정부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① 자펀드 청산 시 청산금의 원칙적 국고회수에도 불구하고 청산금을 재투자해야 하는 경우 재투자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16] ② 국회에서 재정투입분과 회수재원분을 모두 고려하여 펀드 출자사업을 내실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회수재원의 규모 및 재투자 계획을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 개별 사업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산업은행 재정모펀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으로 배분되는 모펀드의 회수재원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2023년 「재정모펀드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규모 및 재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등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예산 집행지침 및 결산 시정요구사항 등에 따라[17] 재정모펀드의 회수재원에 대한 처리 규정 등을 포함한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운영지침」을 2023년 제정하였음.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재정모펀드의 회수재원에 대해 국고귀속 원칙을 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16)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회수액의 재출자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또한 현행 법령상 재출자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17) 2020회계연도 결산: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으로 배분되는 모펀드 청산 분배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 모펀드의 재투자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 모펀드 운용사의 보수규정 등을 포함하는 펀드출자관리규정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운영 지침]

제8조(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처리) ① 은행이 재정모펀드로부터 회수한 재원(이하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이라 한다)은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주관부서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이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 출자사업의 재원 등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며,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재투자 분야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성과평가) ① 주관부서는 연1회 재정모펀드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동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재정출자사업 위탁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관리보수를 조정하는 등 재정모펀드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성과평가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예 : 정부 등 유관기관 주도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관부서장의 재량으로 동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받지 않은 재정모펀드의 운용사는 연1회 해당 재정모펀드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첫째, 재정모펀드로부터 회수된 재원이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반환이 어려워 출자사업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회수재원의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음.[18]

둘째, 회수재원의 예상 규모·재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결정 내용(회수재원의 양과 활용방식 등)에 대해서도 예산안 제출 시 국회에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보고받는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 역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거 재정을 투입한 재정모펀드의 성과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향후 예산안 심의 때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②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출자금 관리(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운용기간(10년)이 도래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중 일부 펀드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기출자된 자금의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 운용기간의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금융위원회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회수재원을 국고로 반환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자본금 유상감자를 거쳐야 하는데, 자본금의 감자는 통상 결손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해외투자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채권자가 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펀드 운용기간이 도래한 2011~2014년 펀드 중 2012년도 펀드(반월시화에코클러스터피에프브이)·2013년도 펀드(창원드림타운)는 청산을 완료하여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조치하였으나, 2011년도 펀드(반월랜드마크에스피씨)는 운용기한을 연장하였고, 2014년도 펀드(구미드림타운)는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용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이 발생(반월랜드마크에스피씨(반월))하였거나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펀드(구미드림타운(구미))의 설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펀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2014년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구미드림타운 조성 사업(국비 130억원, 산업단지공단 10억원)은 토지 매입 후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해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 중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함께 집행하기 위하여 운용기한이 도래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운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내 신규 출자금의 투자계획을 검토하던 중, 2014년 구미드림타운 대상 사업부지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기획재정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펀드운용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14년도 사업으로 기투입한 출자금을 SPC 출자단계에서 2024년도 신규 출자사업 내 자금과 함께 집행하는 것은 당초 2014년도 출자사업에 대하여 10년의 펀드 운용설정기간 계획을 토대로 출자금 집행을 승인한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출자사업별 목적 및 내용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③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회수액을 추후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나, 회수액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원양어선 안전펀드에 출자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건조완료되었고, 이후에도 매년 1~2척씩 선박의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총 930억원을 출자하고, 2027년부터는 신규 출자 없이 지원 회수액을 신규 선박대여회사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지원 회수액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5,800만원의 자금이 회수되었고 2024년에는 4억 2,500만원이, 2025년부터 2036년까지는 매년 30억원 가량의 자금이, 이후에는 매년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회수될 예정으로, 2023년 회수된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보유하고 있음.

[원양어선 안전펀드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년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합계
2023	-	57.66	-	-	-	-	-	57.66
2024	194.30	230.63	-	-	-	-	-	424.93
2025	419.09	488.07	500.00	500.00	500.00	-	-	2,407.16
2026	432.34	488.07	500.00	500.00	500.00	-	-	2,420.41
2027	446.0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42	3,824.38
2028	460.1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38.48
2029	474.7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53.08
2030	489.84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68.16
2031	505.4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83.75
2032	521.5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99.84
2033	538.15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16.47
2034	555.3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33.65
2035	573.07	366.05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29.37
2036	-	-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2,890.25
2037	-	-	-	-	-	693.87	696.38	1,390.25
2038	-	-	-	-	-	693.87	696.38	1,390.25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신규 출자 없이 지원 회수액을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행상 소관 부처의 자율성이 큰 사업구조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19] 회수액의 재투자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고, 회수액의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은 향후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고시 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는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상 투명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24. 10. 25.]

7. 기관운영 및 사업출연금 사업

가. 현 황

(1) 개념 및 유형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 지원의 목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연금 지원의 요건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과 비교 시, 출연금은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1] 출연금은 지원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재정통제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운용상 차이가 있음.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2] 근거 법령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분 방식을 다르게 적용받는 등 일관된 원칙이 부재한 상황임. 반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발생에 따른 잉여금에 대해서도 국고반납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의 지원 목적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이라고 함)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후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출연금 현황 및 과제」(국회예산정책처, 2022.5.18.),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감사원, 2023. 9.) 등

2) 연구개발출연금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그러나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자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일반출연금(350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음.

예산집행지침은 일반출연금(350목)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사업출연금(350-02목)·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 및 민간기금 출연금(350-04목)으로 세분하고 있음. 또한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을 연구개발인건비(360-01목), 연구개발경상비(360-02목), 연구개발건축비(360-03목),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360-04목)·연구개발활동비(360-05목) 및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목) 등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음.

[일반출연금(350목)·연구개발출연금(360목) 관련 비목·세목 구분]

비목	일반출연금(350목)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세목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연구개발인건비(360-01목)
	사업출연금(350-02목)	연구개발경상비(360-02목)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목)	연구개발건축비(360-03목)
	민간기금출연금(350-04목)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360-04목)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360-06목)

자료: 기획재정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출연금(350목) 세목 중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경상비 및 사업비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출연금(360목)과 성격이 유사함. 이에 반해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 및 민간기금 출연금(350-04목)은 기금의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출연금과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하 검토에서 제외함.

[일반출연금(350목) 상세내역]

목명 (목번호)	세목명 (세목번호)	상세내역
일반출연금 (350목)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사업출연금 (350-02목)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금융성기금 출연금 (350-03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주)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으로의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 (350-04목)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금으로의 출연금

주)「국가재정법」 제4장(기금)의 제62조~제85조를 뜻함.
자료: 기획재정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 규정 체계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출연금의 지원·사용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또한 대상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에 의해 대부분이 특정되고 있음.[3)]

이에 반해 非국가연구개발(非R&D)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지원의 법적 근거나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대상기관 역시 개별 법령에 의해 선정되고 있음. 다만 집행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4)]

[기관운영 및 사업출연금(350-01목·350-02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 규정 체계 비교]

구분	기관운영 및 사업출연금 (350-01목, 350-02목)	연구개발출연금 (360목)
지원 목적	**非국가연구개발사업(非R&D사업)의 추진**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추진**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
대상기관	**기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대상기관 및 상기 기관을 제외한 R&D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근거	개별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연구개발사업이 규정된 개별 법률
사용 근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 우선 적용 **공기업·준정부기관 外 기타 정부출연기관** 개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침을 준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공통 근거로 출연금을 사용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外 기타 정부출연기관이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해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음.

4)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개별 규정이 우선 적용됨.

구분	기관운영 및 사업출연금 (350-01목, 350-02목)	연구개발출연금 (360목)
정산 등 사후관리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정산 및 반납 없이 차기 연도 세입으로 계상 **사업출연금(350-02목)** 관계 법령 및 주무부처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처분에 있어 출연금의 투명성·효율성 고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공통 근거로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정산 및 반납 처리

자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재정리

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의 지원의 법적 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라고 함)·「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기술연구기관법'이라고 함)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특정연구기관법'이라고 함) 등에서 규정되고 있음.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지원의 법적 근거]

근거 법률	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재원)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반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에 대해서는 공통의 출연 근거가 부재하며, 개별 법령에서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목적·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집행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출연금(360금)의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13조에서 연구개발비 전반에 대해 지급방법(제2항),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제3항), 계상·사용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무적 활용(제4항 및 제5항), 사용내역 보고 의무(제6항), 정산실시 및 반납의무(제7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서는 집

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의 사용 및 정산 등 사후관리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 ·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 · 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 · 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 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집행에 관한 근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이 우선 적용되나, 그 외 다른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이 우선 적용됨.

이에 반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일반 법령이 부재함. 다만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예산집행지침은 인건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기관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5)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주무부처의 별도 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지침이 부재함.

그 결과,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된 사례와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모두 확인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4-2. 기타 출연금(350-01목, 350-02목, 360목)
나. 세부지침
ㅇ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종합하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사업출연금(350-02목) 및 연구개발출연금(360목) 등은 명목상 「국가재정법」 제12조를 공통의 근거로 하나, 출연금 지원·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은 연구개발출연금(360목)에 비해 대상기관·대상사업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출연금의 지원·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3) 현황

2023년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합계는 24.4조원으로, 이 중 23.5조원이 집행되어 본예산 대비 9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3년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본예산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A/C	B/C		
합계		24.4	24.4	23.5	96.7	96.7	0.0	0.8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2.3	2.3	2.3	100.5	99.9	-	0.0
	사업출연금(350-02목)	22.0	22.0	21.2	96.2	96.3	0.0	0.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재정리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 합계는 2019년 16.1조원에서 2023년 24.4조원으로 최근 5년간 8.3조원(51.6%)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3.4%에서 2023년 3.8%로 0.4%p(11.8%) 증가하였음.

세목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2019년 2.2조원에서 2023년 2.3조원으로 0.1조원(4.5%) 증가하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0.5%에서 2023년 0.4%로 0.1%p(△20.0%)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사업출연금(350-02목)은 2019년 13.9조원에서 2023년 22.0조원으로 8.1조원(58.3%) 증가하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0%에서 2023년 3.4%로 0.4%p(13.3%)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2019-2023)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금액(A)	16.1	18.5	21.5	24.4	24.4
	비중(A/D)	3.4	3.6	3.9	4.0	3.8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금액(B)	2.2	2.3	2.2	2.3	2.3
	비중(B/D)	0.5	0.5	0.4	0.4	0.4
사업출연금 (350-02목)	금액(C)	13.9	16.2	19.3	22.2	22.0
	비중(C/D)	3.0	3.2	3.5	3.7	3.4
총지출	금액(D)	469.6	512.2	557.9	607.6	638.7
	비중(D/D)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재정리

2023년 결산 기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예산현액 합계 대비 집행률은 96.7% 수준으로 2022년 대비 2.8%p 감소하였음.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2022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나, 사업출연금(350-02목)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3%로 2022년 대비 3.2%p 감소하였음.

[2022년/2023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1목)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집행률 증감 (F-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합계	**24.4**	**24.3**	**99.5**	**24.4**	**23.5**	**96.7**	**△2.8%p**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2.3	2.3	99.8	2.3	2.3	99.9	0.1%p
사업출연금 (350-02목)	22.1	22.0	99.5	22.0	21.2	96.3	△3.2%p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재정리

부처별 현황을 보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지출액 합계 기준 교육부(6조 5,901억원)·국토교통부(4조 4,817억원)·고용노동부(3조 1,402억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2조 1,442억원)·산업통상자원부(1조 2,923억원)·행정안전부(1조 2,175억원) 등 6개 중앙관서에서 1조원 이상을 지출하였음.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지출액이 가장 큰 3개 부처는 고용노동부(6,493억원)·교육부(5,202억원) 및 환경부(3,258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출연금(350-02목) 지출액이 가장 큰 3개 부처는 교육부(6조 699억원)·국토교통부(4조 4,461억원) 및 고용노동부(2조 4,909억원) 등으로 확인되었음.

[2023년도 부처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계	기관	사업	합계	기관	사업	합계	기관	사업
교육부	66,977	5,202	61,775	65,901	5,202	60,699	98.4	100.0	98.3
국토교통부	50,426	356	50,070	44,817	356	44,461	88.9	100.0	88.8
고용노동부	32,094	6,493	25,601	31,402	6,493	24,909	97.8	100.0	9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458	1,822	19,637	21,442	1,822	19,620	99.9	100.0	99.9
산업통상자원부	12,967	1,501	11,465	12,923	1,501	11,422	99.7	100.0	99.6
행정안전부	12,195	96	12,099	12,175	96	12,078	99.8	100.0	99.8
외교부	10,392	29	10,363	9,891	28	9,863	95.2	95.2	95.2
금융위원회	8,100	541	7,558	8,100	541	7,558	100.0	100.0	100.0
중소벤처기업부	7,788	66	7,722	7,788	66	7,722	100.0	100.0	100.0

(단위: 억원, %)

부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계	기관	사업	합계	기관	사업	합계	기관	사업
환경부	6,468	3,258	3,210	6,468	3,258	3,210	100.0	100.0	100.0
기획재정부	5,937	366	5,571	5,887	366	5,521	99.2	100.0	99.1
보건복지부	2,845	1,523	1,322	2,845	1,523	1,322	100.0	100.0	100.0
경찰청	1,351	0	1,351	1,351	0	1,351	100.0	100.0	100.0
여성가족부	629	336	293	629	336	293	100.0	100.0	100.0
공정거래위원회	625	487	138	625	487	138	100.0	100.0	100.0
해양수산부	548	271	277	548	271	277	100.0	100.0	100.0
농림축산식품부	519	364	155	519	364	155	100.0	100.0	100.0
통일부	375	111	264	371	106	264	98.7	95.7	100.0
농촌진흥청	371	26	345	371	26	345	100.0	100.0	100.0
문화체육관광부	269	122	147	179	122	57	66.6	100.0	38.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7	-	257	257	-	257	100.0	-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222	-	222	222	-	222	100.0	-	100.0
기상청	153	106	47	153	106	47	100.0	100.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34	85	49	134	85	49	100.0	100.0	100.0
재외동포청	132	48	83	132	48	83	100.0	100.0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7	85	2	78	78	0	89.0	91.1	0.0
특허청	48	23	25	48	23	25	100.0	100.0	100.0
국회	42	25	16	40	25	16	96.6	97.6	95.1
새만금개발청	40	25	15	40	25	15	100.0	100.0	100.0
방송통신위원회	40	-	40	40	-	40	100.0	-	100.0
국무조정실	38	-	38	25	-	25	66.9	-	66.9
산림청	9	-	9	9	-	9	100.0	-	100.0
소방청	2	-	2	2	-	2	100.0	-	100.0
해양경찰청	2	-	2	2	-	2	100.0	-	100.0
총합계	**243,537**	**23,367**	**220,170**	**235,411**	**23,353**	**212,059**	**96.7**	**99.9**	**96.3**

주) 예산현액 합계 기준 오름차순 정렬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재정리

나. 검토의견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지출규모(2023년 23.5조원) 및 총지출 대비 비중(2023년 3.8%)은 최근 5년간(2019-2023)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지원·사용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 법령이 부재하며, 운용상 적정성이 문제되는 사례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2023년 결산 기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운용의 적정성을 ①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례, ② 출연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출연금 예산편성 사례, ③ 출연금 정산 등 사후관리 미흡 사례 및 ④ 출연금 집행부진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음.

(1)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례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의 지원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출연금이 지원되는 일부 사업에서 근거 법률에 출연금의 지원가능 여부가 명시되지 않거나, 법적 근거에 지원대상 기관 및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 지원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에 출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출연금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비교적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① 근거 법률인 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특정연구기관법 등에 열거된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어 지원대상이 기관 유형별로 명확하게 특정되고 있으며, ② 연구회 등 전문성을 갖춘 관리기구를 통해 출연사업의 계획, 집행 및 정산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지원 당시로부터 과도하게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그런데 일반출연금(350목)은 포괄적 근거 법률 없이 개별법상 근거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적 근거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음. 특히 ① 재원이 출연금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단순히

조직의 설치 근거에 의해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례 및 ②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대상기관이 특정되지 않거나 사업출연금(350-02목) 대상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가) 사업의 재원이 '출연금'으로 특정되지 않은 출연 사례

첫째, 소방청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5조를 근거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 사업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근거 조항은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출연금 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재정법」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소방청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교부현액 2억원 중 1억 7,9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89.5%)되고, 2,100만원은 불용 후 국고에 반납되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출연금(350-02목)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본예산 (A)	전기 이월	예산현액 (B)	집행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차기 이월	불용액
					C/A	C/B		
200	-	200	200	179	89.5	89.5	-	21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런데 소방청에서 출연의 법률상 근거로 제시한 「재난안전통신망법」에는 동법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업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음.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 사업의 사업출연금(350-02목) 지원 근거]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청은 동 사업의 경우 출연사업 협약서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종료시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을 거쳐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출연사업에 비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출연금을 지

원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연구원에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운영주체인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에 불과하므로, 출연금 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재정법」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토연구원 산하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수립하고 3억원의 기관운영출연금을 지원하였음.

[2023년 지역발전투자사업 시범 사업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본예산 (A)	전기 이월	예산현액 (B)	집행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차기 이월	불용액
					C/A	C/B		
300	-	300	300	300	100.0	100.0	-	-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9조를 법률상 근거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① 해당 법률에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없고, ② 동법 시행령에서도 조직 설치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 법률상 근거를 요구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12조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 시범’ 사업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지원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 · 도지사가 시 · 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임에도 대상기관·선정절차가 미특정된 사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아셈중소기업환경혁신센터에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 출연기관·선정절차 등이 특정되고 있지 않아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2항을 근거로 'AESIC 운영' 사업을 위해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에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AESIC 운영' 사업의 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	비목	본예산 (A)	전기 이월	교부현액 (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C/B
아셈중소기업환경 혁신센터	기관출연금 (350-01목)	510	-	510	510	100.0	100.0
	사업출연금 (350-02목)	1,065	-	1,065	1,065	100.0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지침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하지 않고 기관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지원 경우의 근거 법령에 대상기관 및 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에서는 단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대상기관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기관의 선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아셈중소기업환경혁신센터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등 지원 근거]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법적 근거
기술혁신기반조성 -ASEIC 운영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사업출연금(350-02목)임에도 대상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미특정된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계 조문에서 대상사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의 구체성이 미흡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고 있음.

사업출연금(350-02목)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달리 법률상 근거에 대상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관계 법령에 의해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동 조항 제22호에서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중앙관서의 모든 위탁사업에 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의 구체성이 미흡함.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 지급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출연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출연금 예산편성 사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은 집행상 재량의 반대급부로 출연기관에 전문적인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재원인데,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출연기관의 전문적인 역할이 과도하게 타 기관으로 이전되거나, 출연기관이 非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출연금(350-02목) 일부를 간접비 등으로 계상하여 사업비가 아닌 기관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났음.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 지원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취지는, 출연기관에 집행상 재량을 부여하는 반대급부로 전문적인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음. 특히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경우 출연기관 및 출연사업의 수행방식이 개별적으로 달라지므로,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도 사안에 따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출연기관이 출연금을 다른 기관에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출연기관의 전문적인 역할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거나, ② 특정한 非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출연금(350-02목)에 둘 이상의 사업을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 성격의 간접비가 계상되는 등 출연금 예산편성이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음.

(가) 출연금 재교부로 출연기관의 역할이 다른 기관으로 과도하게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여 집행된 금액이 2023년 기준 332억 2,200만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 집행액 중 77.8% 비중에 해당하여 과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금을 재위탁하여 그 역할이 위탁업체 관리 등으로 제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등을 근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 지원 근거]

세부사업명	세목	법적 근거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사업출연금 (350-02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개인정보 침해방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금은 통상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편성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역할수행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경비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의 77.8%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고 있어 중앙관서 차원에서 출연사업의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업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위탁업체로 과도하게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제작' 사업의 경우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은 제작업체인 A사·B사 등에 이전되고, 출연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은 위탁업체의 관리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였음.

[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제작 관련 사업수행내역]

(단위: 백만원, 건)

연도	교재 유형	제작비용	제작업체
2021	보호교육	250	A사
	인식 제고	205	A사
	전문관리자	100	B사
2022	정보주체	290	A사
	개인정보 처리자	275	A사
	전문관리자	80	B사
2023	정보주체	245	A사
	개인정보 처리자	230	A사
	전문관리자	63	B사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사업출연금(350-02목)을 간접비로 계상하여 집행한 사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출연금(350-02목)의 일부를 간접비 등으로 계상하여 공통운영경비를 충당하였는데, 특정 사업을 위한 사업출연금을 다수 사업의 공통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예산을 별도 사업에 반영하거나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계상하는 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는 기관출연금 및 R&D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조달되어야 하나, 2023년 기준 기관운영비 지출 예산 522억 3,000만원의 54.0%에만 해당하는 281억 7,900만원만이 기관출연금 및 R&D 통합기평비(인건비 및 간접비)에 편성되어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 기관운영비 지출 예산 및 수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지출예산		기관운영비(A)	48,947	52,230	53,662
		인건비(경평성과금 등 예비비 포함)	37,261	38,480	39,787
		경상운영비	11,686	13,750	13,875
수입예산		기관출연금 및 R&D 기평비(B)	26,604	28,179	28,098
		기관출연금	4,940	6,826	6,826
		R&D통합기평비	21,664	21,353	21,272
기관운영비 조달 비중(B/A)			54.4	54.0	52.4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산집행지침상 非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기관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업출연금(350-02목)은 특정 사업을 위한 사업비 목적으로 각각 지원되도록 구분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출연기관으로 하는 출연사업 일부에서 사업출연금(350-02목)이 기관의 공통운영경비에 충당되고 있어, 출연금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4항 등에서 간접비 등의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6] 출연사업의 운영을 위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7]·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8] 및 국제산업기술협력사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업[9] 등을 근거로 간접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사업출연금(350-02목)을 재원으로 하는 非연구개발사업에서 간접비가 계상된 사례(예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총사업비 (A)	위탁사업비 (B)	사업관리비		비중 C/(A-B)
				사업운영비	간접비(C)	
지속성장형기술 인증	사업출연금 (350-02목)	773	-	659	114	14.7
중소조선스마트생산 혁신 지원	사업출연금 (350-02목)	12,000	11,550	365	85	18.9
차량용반도체성능평가 인증지원사업	사업출연금 (350-02목)	10,300	9,980	258	62	19.4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출연금 (350-02목)	9.000	8,610	314	76	19.5
산학연협력고도화 지원	사업출연금 (350-02목)	90,100	87,650	2,090	360	14.7

주) 사업출연금(350-02목)의 간접비 계상 사례는 사업비 규모 상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러나 대상사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출연금(350-02목)을 다수 사업을 위한 공통경비인 간접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하위법규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서는 사업별 연구개발비에서 간접비 등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0]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관련 예산을 별도 사업에 반영하거나,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계상하는 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1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연구개발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출연금 정산 등 사후관리 미흡 사례

사업출연금(350-02목) 등 일반출연금은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상당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되거나 유보 후 세입에 계상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각 중앙관서는 「국가재정법」에 예산의 원칙으로 규정된 예산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반 법령의 마련 등을 통해 출연금 집행잔액 등을 원칙적으로 정산·반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출연금의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일반 법령이 부재하나, 출연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활동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11]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예산집행지침 역시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非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계 법령 또는 주무부처의 처리지침에 의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의 해석상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정산 후 반납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지침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기관세입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의 예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4-2. 기타 출연금(350-01목, 350-02목, 360목)
나. 세부지침
○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자료: 기획재정부

그럼에도, ①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중 인건비 집행잔액을 결산잉여금에 합산하여 차기 연도 세입에 계상한 사례, ② '잉여금'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출연금의 집행잔액 등을 정산 없이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 및 ③ 연례

11)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적 실집행부진에도 집행잔액 등이 정산 후 반납되지 않아 매년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음.

(가) 인건비 집행잔액을 결산잉여금에 합산하여 기관 세입으로 계상한 사례

한국섬진흥원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집행잔액 중 인건비 집행잔액을 결산잉여금에 포함하고 있어 인건비를 결산잉여금에서 제외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섬 발전 촉진법」을 근거로 한국섬진흥원의 기관운영비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인건비에 해당하는 36억 7,900만원 중에서는 31억 3,700만원이 실집행되어 5억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3년 한국섬진흥원의 일반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교부현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한국섬진흥원 지원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6,911	5,229	1,682
	인건비	3,679	3,137	542
	경상경비	923	775	148
	연구사업비	2,309	1,317	992

자료: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지침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기관 세입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인건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①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②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과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섬진흥원은 2023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중 인건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억 4,200만원을 별도 구분 없이 다른 결산잉여금과 합산하여 기관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어 예산집행지침에 반하여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인건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결산잉여금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정산 후 반납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잉여금' 처리 근거를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임의로 적용한 사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지원하고 있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집행잔액이 정산 없이 이월되고 있는데, 정산 및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최근 4년간(2020-2023) 이월된 금액의 사용실적이 전무하여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20-2023) 현황을 보면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없이 이월되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423	444	378	506
	사업출연금 (350-02목)	-	357	398	490
	잉여금 이자	-	1	1	12
	합계	**423**	**801**	**776**	**996**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있으나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중 인건비 및 사업출연금(350-02목)에 대해서는 정산 및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여성가족부는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정산 후 반납하지 않은 근거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관」을 제시하였으나, 동 규정은 '잉여금'에 관한 것으로서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정산하지 않고 유보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보된 금액은 최근 4년간(2020-2023) 사용실적이 전무하여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마저 저해되고 있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잉여금 처리 관련 내부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관」

제33조(잉여금의 처리) ① 진흥원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리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료: 여성가족부

(다) 출연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출연금(350-02목)은 실집행이 매년 저조함에도 개별법령상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4년간(2020-2023) 매년 최소 140억원 규모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음.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근거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출연 기관으로 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및 '개도국 개발협력(ODA)' 등의 출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

세부사업명	법적 근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개도국개발협력(ODA) 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2개 사업 교부현액 합계 643억 6,600만원 중 519억 8,900만원이 실집행(실 집행률 80.8%)되고, 123억 7,700만원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2023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교부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이월액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지원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8,887	8,758	98.5	129
	사업출연금 (350-02목)	7,357	4,600	62.5	2,757
	합계	16,244	13,358	82.2	2,886
개도국개발협력 사업(ODA)	사업출연금 (350-02목)	48,122	38,631	80.3	9,491
전체		**64,366**	**51,989**	**80.8**	**12,377**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 등을 근거로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해당 법령은 '잉여금' 처리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출연

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정산 없이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며, 결과적으로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상당한 규모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잉여금 처리 관련 법적 근거]

기관명	법적 근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실제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최근 4년간(2020-2023) 결산잉여금 규모가 매년 최소 140억원 이상으로, 동 기관에 대한 출연금 대비 비중이 30.2~55.4% 수준에 달하는 등 결산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2020-202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출연금·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출연금(A)	38,391	50,066	47,411	50,217
결산잉여금(B)	14,110	20,783	26,255	15,163
비중(B/A)	36.8	41.5	55.4	30.2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 출연금 집행부진 사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이 지원되는 출연 사업에서는 사업구조의 복잡성 및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유인 부족으로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중앙관서 및 출연기관은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출연사업은 중앙관서가 재원을 부담하고, 출연기관이 사업수행을 대행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집행관리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그 결과,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거나 사업실적이 계획 대비 현저하게 미흡한데도 예산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또한 중앙관서 입장에서도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집행률이 100%로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음.

실제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또는 사업출연금(350-02목)이 지원되는 사업에서 ① 출연사업의 사전준비가 부족함에도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지원하였다가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경우, ② 출연사업의 실적부진이 실집행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 및 ③ 출연 기관의 구조적 문제로 인건비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출연금의 집행이 부진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음.

(가)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집행부진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여 '전자정부지원 추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과제에 교부된 출연금 전액이 미집행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전액 불용되었음.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여 '전자정부지원 추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23년 교부현액 450억 9,100만원 중 257억 5,5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57.1%)되고 있어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2023년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 추진' 사업의 사업출연금(350-02목)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전자정부지원 추진	사업출연금 (350-02목)	45,091	25,755	57.1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2023년 ‘전자정부지원 추진’ 사업을 통해 추진된 7개 과제 중, ①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과제 및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과제는 출연금을 교부하였다가 계약체결이 지연되면서 전액 이월되었고, ②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는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었음.

[2023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추진과제 중 실집행 부진 사례]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예산현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부진사유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국민권익위원회	11,428	11,428	-	계약지연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국가기록원	3,745	3,745	-	계약지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실	2,000	-	-	주관기관 요청에 따른 사업취소

자료: 행정안전부

이상의 사례에서는 ① 사업지연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출연금을 교부하였거나, ② 근거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출연금을 지원하였다가 해당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출연금 집행부진이 발생한 원인으로 보임.

(나) 실적부진으로 인한 집행부진

특허청은 2020년부터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한국발명진흥회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여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담보IP 매입 등 사업실적이 매년 계획 대비 미흡하여 전체 사업기간 실집행률이 최대 20.4% 수준으로 저조하고, 2021년 이래 최소 100억원 규모의 이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한국발명진흥회에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원하여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사업출연금(350-02목)을 재원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기업의 담보IP를 매입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허청의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

「발명진흥법」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발명진흥회에 교부된 사업출연금(350-02목)은 담보IP 매입 용도이나, 매입실적이 부실하여 같은 기간 교부된 출연금의 연간 실집행률이 최대 20.4% 수준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신규 편성된 출연금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이 작아 이월액 규모가 2020년 31억 1,700만원, 2021년 106억 8,600만원, 2022년 120억 2,1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23년에도 실집행잔액 100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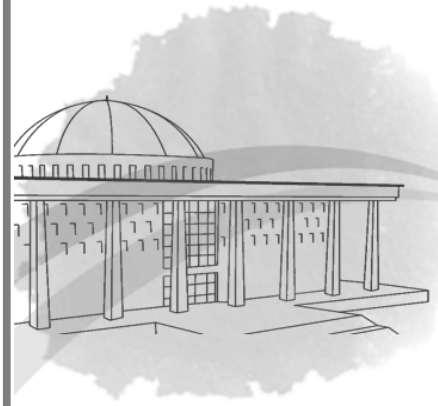
[최근 4년간(2020~2023)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본예산	추경								
2020	3,750	3,750	3,750	3,750	-	3,750	633	3,117	-	16.9
2021	9,040	9,040	9,040	9,040	3,117	12,157	1,471	10,686	-	12.1
2022	3,525	3,525	3,525	3,525	10,686	14,211	2,190	12,021	-	15.4
2023	550	550	550	550	12,021	12,571	2,559	10,012	-	20.4

자료: 특허청

Ⅳ. 주제별 결산 검토



1. 지방소멸 대응 사업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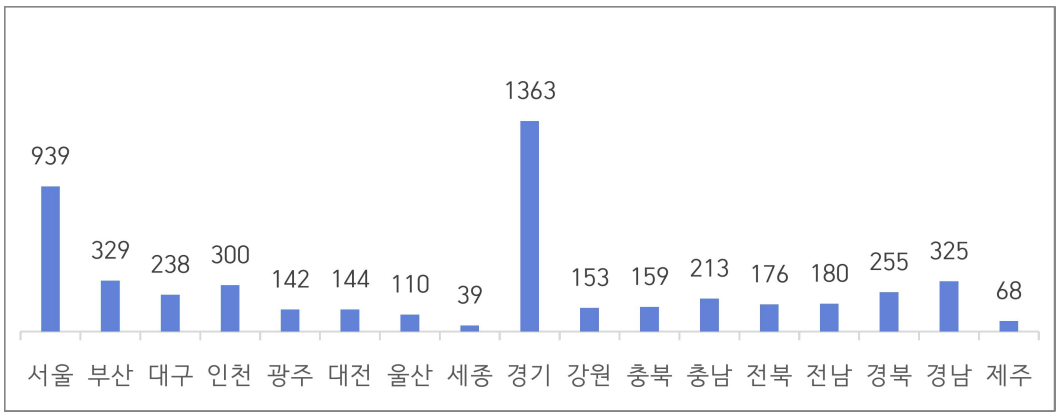
(1) 지방소멸 현황

‘지방소멸’에 대한 국내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이 과소지역화·무거주화되는 현상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서비스 부족, 일상생활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함.[1)]

지방소멸 정의에 근거한 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2015년 80개(35.1%)에서 2023년 121개(53.1%)까지 증가하였음.[2)]

2023년 시·도별 인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51,325,329명 중 수도권에 26,014,265명(서울 9,386,034명, 인천 2,997,410명, 경기 13,630,821명)이 거주하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0.7%)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한 이후 계속되고 있음.

[2023년 시·도별 인구 분포 현황]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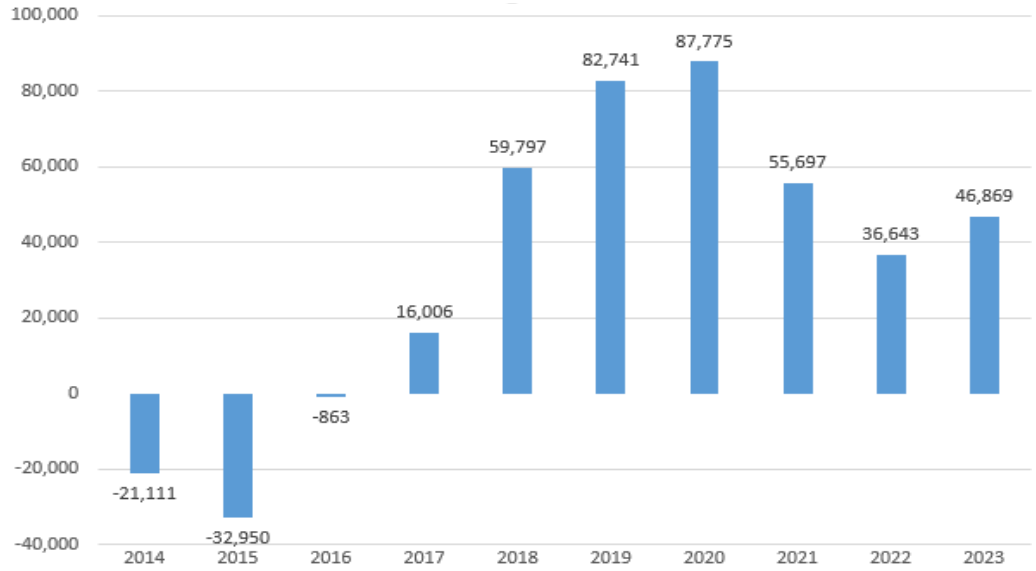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이는 일본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의 「지방소멸」이란 저서에서 2014년 처음 도입된 개념임.

2)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 추이로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10년(2014~2023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10년(2014~2023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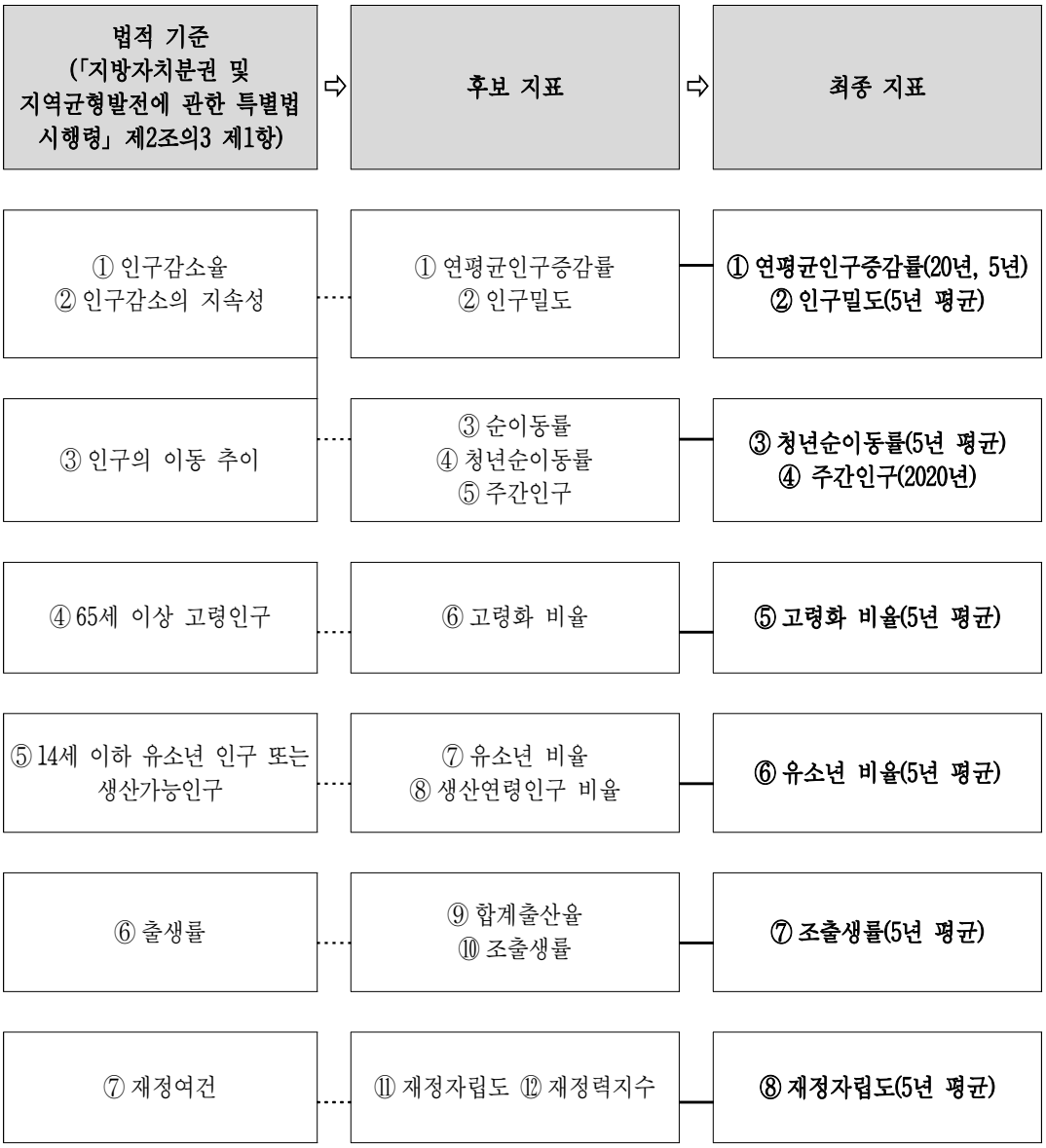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고 있음.[3]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8개 지표(인구밀도·연평균 인구변화율·고령화 비율·14세 이하 유소년 비율·주간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함.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8개 지표]



자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은 2020년의 8개 지표값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10월에 지정되었음. 지정 당시 2020년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년간・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보면, 20년간・5년간 인구증감률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이나 그 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남. 또한 시・군・구별로도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국이나 그 외 지역은 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20년간·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 비교]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2.14 (△2.33)	△0.16 (△0.61)	△0.23 (△0.66)
시	△1.11 (△1.02)	1.28 (0.99)	1.10 (0.87)
군	△1.27 (△1.09)	1.44 (1.63)	△0.51 (△0.21)
계	△1.34 (△1.23)	0.58 (0.27)	0.36 (0.12)

주) 괄호 밖 숫자는 20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에 해당하고, 괄호 안 숫자는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에 해당함
자료: 행정안전부

인구밀도(명/㎢)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밀도는 83.64명/㎢로, 전국(516.16명/㎢)이나 그 외 지역(1,148.87명/㎢) 대비 낮게 나타남.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5년 평균 인구밀도 비교]

(단위: 명 /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8,625.72	6,266.69	6,316.60
시	118.21	819.04	611.73
군	61.31	189.11	79.40
계	83.64	1,148.87	516.16

자료: 행정안전부

청년 순이동률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6.42%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이나 그 외 지역의 경우 청년 순이동률이 양(+)의 값을 보인 것과 상반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시・군・구 모든 지방자치단체 유형에서 청년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인구감소가 주된 문제인 것으로 여겨짐.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청년 순이동률 비교]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1.57	0.20	0.15
시	△6.70	0.80	0.48
군	△7.78	0.03	△4.67
계	△6.42	0.49	0.03

자료: 행정안전부

주간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주간인구 수는 5,161,905명으로, 전국 주간인구(51,829,023명)의 10% 미만으로 나타남.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주간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631,826(12.24)	21,557,436(46.19)	22,189,263(42.81)
시	1,497,423(29.01)	23,625,911(50.63)	25,123,335(48.47)
군	3,032,655(58.75)	1,483,770(3.18)	4,516,426(8.71)
계	5,161,905(9.96)	46,667,118(90.04)	51,829,023(100.00)

자료: 행정안전부

고령화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9.78%로, 전국(16.39%)이나 그 외 지역(14.97%) 대비 2배 가량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청년 순이동률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음(-)의 값을 보인 것과 함께 청장년 인구 유출이 많은 것으로 보여짐.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고령화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24.69	15.71	15.97
시	27.11	14.12	14.86
군	32.24	18.32	27.55
계	29.78	14.97	16.39

자료: 행정안전부

반대로, 14세 이하 유소년 비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17.19%로 전국(24.34%)이나 그 외 지역(25.10%) 대비 과소하게 나타났음.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14세 이하 유소년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14.99	22.63	22.41
시	19.54	27.12	26.69
군	16.47	27.27	20.11
계	17.19	25.10	24.34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조출생률[4]의 경우 전국·그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나,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조출생률이 4.4%로 전국(5.9%)이나 그 외 지역(6.1%) 대비 낮게 나타남. 이를 통해 자연적 인구감소 요인을 알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추세가 계속될 우려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조출생률 비교]

(단위: 명 / 천 명)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3.4	5.7	5.6
시	4.8	6.4	6.3
군	4.5	6.9	5.3
계	4.4	6.1	5.9

자료: 행정안전부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71% 수준으로, 그 외 지역(29.41%)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고, 전국(24.53%)과 비교하여도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 간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그 외 지역(140개)	전국(229개)
구	12.26	24.32	23.81
시	11.82	32.51	29.92
군	10.21	22.28	12.50
계	10.71	29.41	24.53

자료: 행정안전부

4)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 1,000

(2) 지방소멸 대응 사업 현황

(가) 개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12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하여 농산어촌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지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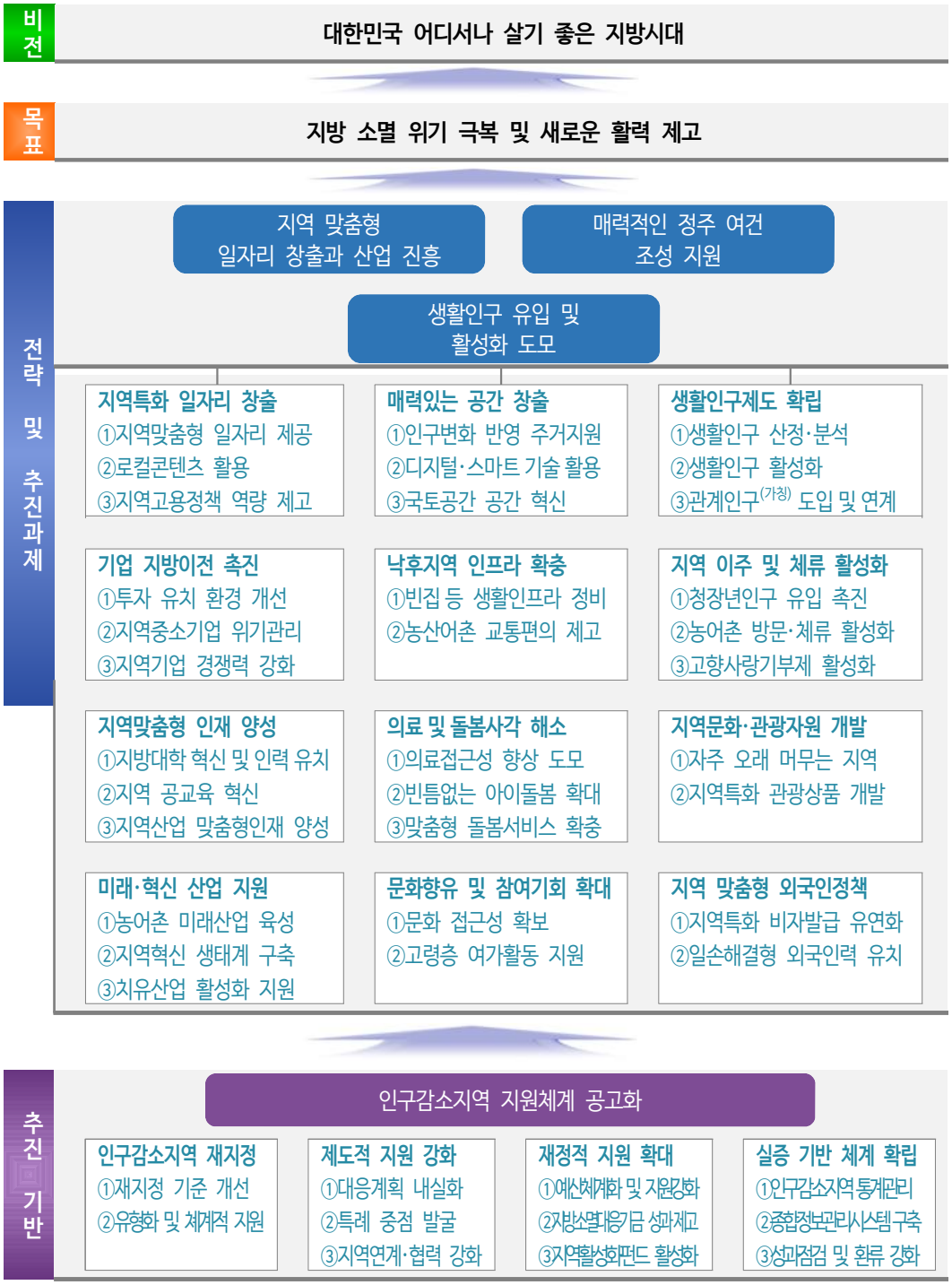
또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23년 12월에 수립하였음.[5] 다만 동 계획의 경우 2024년 편성된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에 수립된 계획으로, 동 계획 대상 사업들을 2023년 결산 분석 기준에서는 제외하였음. 한편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 사업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포괄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기준으로 이하 검토하였음.

---

5)「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상 목표 및 전략]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도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크게 ①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분야와 ②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분야로 구분됨.

①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분야는 ‘농어가 소득안정’ 분야·‘정주여건 개선’ 분야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②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분야는 ‘지방재정 보강’ 분야와 ‘지역 성장거점’ 분야 등 2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2023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5,469,662	5,469,208	5,208,312	95.2
농어가 소득안정	2,820,212	2,820,318	2,594,891	92.0
정주여건 개선	127,469	127,602	123,880	97.1
농어업 경쟁력 강화	2,521,981	2,521,288	2,489,541	98.7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1,700,726	1,690,197	1,664,475	98.5
지방재정 보강	1,000,000	1,000,000	1,000,000	100.0
지역 성장거점	700,726	690,197	664,475	96.3
합계	7,988,984	7,965,191	7,677,684	96.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야별 현황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분야별 결산 편성 내역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농어가 소득안정 분야의 2023년 결산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예산현액 2조 7,268억 8,400만원 중 2조 5,081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0%)되었고, 해양수산부의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이 예산현액 934억 3,400만원 중 867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었음.

[2023년 농어가 소득안정 분야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농림부	농특회계	공익기능증진직불	2,726,884	2,726,884	2,508,129	92.0
해수부	농특회계	수산공익직불제	93,328	93,434	86,762	92.9
합계			2,820,212	2,820,318	2,594,891	92.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2023년 결산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이 예산현액 832억 1,200만원 중 813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었고,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예산현액 443억 9,000만원 중 425억원이 집행(집행률 95.7%)되었음.

[2023년 정주여건 개선 분야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농림부	농특회계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83,079	83,212	81,379	97.8
해수부	균특회계	어촌신활력증진	44,390	44,390	42,500	95.7
합계			127,469	127,602	123,880	97.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전체 사업의 예산현액 2조 5,212억 8,800만원 중 2조 4,895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었음. 동 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보조 등의 집행 방식으로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으나, 그 중 해양수산부의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 사업(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19.2%),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27.1%),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44.7%) 등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2023년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농림부	농특회계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1,927	1,927	1,927	100.0
	농특회계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34,518	34,518	34,518	100.0
	농특회계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5,935	5,935	5,935	100.0
	농특회계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5,700	5,700	5,700	100.0
	농특회계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	4,820	4,820	4,820	100.0
	농특회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8,000	8,000	8,000	100.0
	농특회계	임대형 스마트팜	64,500	64,500	64,500	100.0
	농특회계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3,806	3,806	3,806	100.0
	농특회계	스마트팜 실증단지	8,426	7,396	7,394	100.0
	농특회계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2,733	3,933	3,933	100.0
	농특회계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6,235	6,235	6,235	100.0
	농특회계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8,514	8,514	8,514	100.0
	농특회계	농기자재수출활성화	1,808	1,808	1,808	100.0
	농특회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11,300	11,300	11,300	100.0
	농특회계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44,973	44,973	44,973	100.0
	농특회계	농식품 시장 개척	6,434	6,434	6,434	100.0
	농특회계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8,282	8,282	8,282	100.0
	농특회계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7,461	89,101	89,095	100.0
	농특회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06	55,106	55,106	100.0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농특회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50,674	50,683	50,672	100.0
	농특회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4,800	4,800	4,800	100.0
	농특회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4,168	4,168	4,097	98.3
	농지기금	맞춤형농지지원(융자)	857,726	844,915	844,915	100.0
	축발기금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39,130	39,130	39,130	100.0
	축발기금	가축분뇨처리지원	37,718	37,718	37,718	100.0
	FTA기금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0,000	40,000	40,000	100.0
	FTA기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20,559	20,559	20,559	100.0
	농안기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자금(융자)	458,446	458,446	458,446	100.0
해수부	농특회계	청년어촌정착지원	1,926	1,926	1,926	100.0
	일반회계	어선안전조업지원	19,721	19,721	19,721	100.0
	일반회계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5,525	5,525	5,525	100.0
	농특회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1,100	14,000	14,000	100.0
	농특회계	수산식품산업육성	8,343	8,343	8,326	99.8
	농특회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42,862	42,862	42,861	100.0
	농특회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1,407	9,903	9,903	100.0
	농특회계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	147	453	87	19.2
	농특회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333	333	333	100.0
	농특회계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5,048	5,048	4,721	93.5
	농특회계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2,187	2,187	2,049	93.7
	농특회계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7,924	7,924	7,353	92.8
	농특회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54,845	59,711	59,544	99.7
	농특회계	수산종자산업육성	1,573	1,573	1,462	92.9
	농특회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4,179	4,179	4,179	100.0
	농특회계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11,419	12,065	3,273	27.1
	농특회계	관상어산업육성	7,015	7,029	6,961	99.0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농특회계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2,245	2,245	2,236	99.6
	농특회계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6,513	66,513	66,513	100.0
	농특회계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11,137	14,040	11,526	82.1
	농특회계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 구축	3,982	3,992	3,373	84.5
	농특회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2,275	12,275	12,231	99.6
	농특회계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2,795	2,875	2,870	99.8
	농특회계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134,078	134,156	118,410	88.3
	농특회계	안전복지형연근해어선 기반구축	1,830	1,830	818	44.7
	에특회계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22,229	22,229	22,209	99.9
	수발기금	우수수산물지원(융자)	132,401	132,401	132,401	100.0
	수발기금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15,479	15,479	15,479	100.0
	수발기금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2,140	2,140	2,116	98.9
	수발기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 자금(융자)	10,500	10,500	10,473	99.7
	수발기금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2,850	2,850	1,773	62.2
	수발기금	수산모태펀드출자	7,000	7,000	7,000	100.0
	수발기금	원양어선안전관리	9,000	9,000	9,000	100.0
농진청	일반회계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6,274	6,274	6,272	100.0
합계			2,521,981	2,521,288	2,489,541	98.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넷째, 지방재정 보강 분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양여금 형태로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조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23년 지방재정 보강 분야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행안부	일반회계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
합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섯째, 지역 성장거점 분야는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육성, 지역대학 교육허브사업 등이 포함됨. 동 분야는 전체 사업의 예산현액 6,901억 9,700만원 중 6,644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었음.

[2023년도 지역 성장거점 분야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3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교육부	고특회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D)	354,000	354,000	346,000	97.7
과기부	균특회계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4,400	4,400	4,400	100.0
	일반회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R&D)	5,083	5,083	5,083	100.0
	균특회계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R&D)	4,800	4,800	4,800	100.0
	균특회계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R&D)	7,656	7,656	7,656	100.0
	균특회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38,708	38,708	38,708	100.0
문체부	균특회계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4,301	44,301	43,991	99.3
	균특회계	관광자원 기반조성	56,658	56,658	48,849	86.2
	균특회계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34,900	34,900	34,900	100.0
국토부	일반회계	스마트시티(세종스마트시티)	115,505	104,758	99,530	95.0
	혁특회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10,462	10,462	9,643	92.2
	혁특회계	혁신도시 건설지원	4,908	5,126	4,914	95.9
	균특회계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13,600	13,600	13,600	100.0
	균특회계	충청권자율주행모빌리티 상용화지구조성	2,401	2,401	2,401	100.0
기상청	혁특회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3,044	3,044	-	0.0
행복청	행특회계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300	300	-	0.0
합계			700,726	690,197	664,475	96.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검토사항

(1)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사업 추진 사례가 존재하는데, 기금 취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10년간 연 1조원씩 사업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및 2023년 선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음. 해당 사업 중에는 청년마을 사업·청년 일자리 사업·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청년 행복주택 조성 등 이미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거나 지자체별로도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행정안전부의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내역사업은 청년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충남 예산군과 전라남도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청년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이나 ‘청년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였음.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청년일자리·청년창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남 해남군, 전북 순창군 등의 동 사업 관련 보조사업계획서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적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음.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 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이 이미 조성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국비 사업과 유사·중복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3년 집행액	자치단체명	투자사업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7,512	충남 예산군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청년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전라남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9,167	전북 순창군	맞춤형 청년일자리 확대, 맞춤형 청년창업 활성화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남 해남군	청년농업가공 창업 활성화 사업
			인천광역시	인천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경상북도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융자)	536,346	충남 논산시	논산 산단 청년행복주택 조성

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이미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거나 지자체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경우, 동일한 사업에 중복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어 국가재정투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동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시 단순히 기존 사업을 모방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실집행 부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효과가 부진한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은 당초 3개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해 국비 40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1개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져 80억원이 불용(실집행률 33.3%)되고 성과가 저조한 문제가 있음.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4,000,000	4,000,000	1,847,245	1,847,245
합 계		8,000,000		3,694,490

자료: 교육부

②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임차임대’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자경 선호 증가로 임차임대 물량이 감소해 2023년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39.6%에 불과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임차임대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 계획액(A)	변경 계획액(B)	집행액(C)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C/A)	계획액 변경(B-A)
2019	40,000	24,992	24,157	60.4	△15,008
2020	29,544	29,544	24,426	82.7	-
2021	22,413	22,413	10,547	**47.1**	-
2022	22,413	7,291	7,239	**32.3**	△15,122
2023	21,293	8,482	8,435	**39.6**	△12,8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③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의 내역사업인 ‘실증기업 지원’ 사업은 사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혁신밸리 내 실증온실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예

산이 집행·교부되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남. 또한 사업 성과 측면에서도 '계획변경 또는 스마트팜 부적합' 등의 중도포기 기업(2022년 2개, 2023년 8개) 존재로 실제 실증기업 지원 실적은 2022년에는 5억 300만원, 2023년에는 13억 9,200만원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실증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최종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2,000	600	600	-	600	-	-	600	0.0
2022	4,000	2,000	2,000	-	2,000	662	-	1,338	33.1
2023	4,000	3,000	3,000	-	3,000	1,662	-	1,338	5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④ 해양수산부 '수산 공익직불제'의 내역사업인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은 지급대상이 실제 계획 대비 과소하게 나타나, 실집행률이 63.4%로 부진하고 총 187억 6,200만원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23년~'24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지급대상 인원 비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A)	결산(B)	차이(A-B)	예산
소규모 어가	22,665호	16,531호	6,134호	22,665호
어선원	15,000명	7,458명	7,542명	15,000명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9,417호	5,739호	3,678호	6,027호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역사업 '혁신어촌조성' 사업 및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율 등 사업 추진 관련 설계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으로 교부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혁신어촌조성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30%대 이하로 부진하게 나타나 매년 최저 1,229억 8,500만원, 최고 5,927억 9,8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19년~'23년 혁신어촌조성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19	171,500	171,500	171,500	171,500	-	171,500	48,513	171,500	48,513	**122,985**	2	**28.3**
2020	430,500	430,500	430,500	430,500	122,985	553,485	166,867	430,500	99,460	**386,577**	41	**23.1**
2021	518,000	518,000	510,331	510,331	386,577	896,908	333,448	510,331	80,078	**561,026**	2,434	**15.5**
2022	514,500	514,500	474,492	474,492	561,026	1,035,518	434,648	474,492	80,078	**592,798**	8,071	**15.6**
2023	278,216	278,216	255,420	255,420	592,798	848,218	295,840	255,420	98,238	**549,089**	3,289	**35.3**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역시 유형별 실집행률이 각각 18.5%, 21.6%, 31.0%로 부진하여 예산액의 73.4%인 305억 4,4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예산 현액	집행액 (C)			
유형1	6,953	6,953	6,518	6,518	-	6,518	1,285	6,518	1,285	**5,233**	-	**18.5**
유형2	20,972	20,972	20,384	20,384	-	20,384	4,536	20,384	4,536	**15,848**	-	**21.6**
유형3	13,716	13,716	13,716	13,716	-	13,716	4,253	13,716	4,253	**9,463**	-	**31.0**
합계	41,641	41,641	40,618	40,618	-	40,618	10,074	40,618	10,074	**30,544**	-	**24.2**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하여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가 적기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정된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관련 분석

첫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2023년 12월에서야 수립되어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확정이 지연되고 정책 수행이 늦어지는 한편, 성과계획 수립 없이 사후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지원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 89개 지역이 최초 지정되었음.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동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즉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근거법 제정 이후 뒤늦게 이뤄진 경향이 있음.[6)]

이러한 시차 발생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사업목록이 2023년 12월에 뒤늦게 확정되고,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도 2023년 12월 이후 수립되게 됨. 그 결과 동 계획과 무관히 집행되던 정책사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평가·관리되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에 발표된 동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 2024년 중 성과분석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연초 시행계획에 기반하여 차년도에 당초 시행계획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사업구조에 역행하는 것임.

6)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향식 계획수립 절차(시·군·구→시·도→국가)에 따라 시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성과관리체계]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2023.12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상 성과지표 예시에도 '정책목표와의 적합성'이나 '정부 내부의 연계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후적으로 수립된 계획을 통해 기존 정책사업을 평가할 경우 이들 지표에 대한 적절한 성과 관리 및 환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 추진 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성과지표 예시]

방향	성과지표	방향	성과지표
적합성	1. 정책목표와 특별법 목표의 적합성	타당성	3. 지원 방식의 타당성
연계성	2-1. 정부 내부의 연계성	안정성	4. 지원의 안정성
	2-2. 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연계성	효과성	5. 특례제도 이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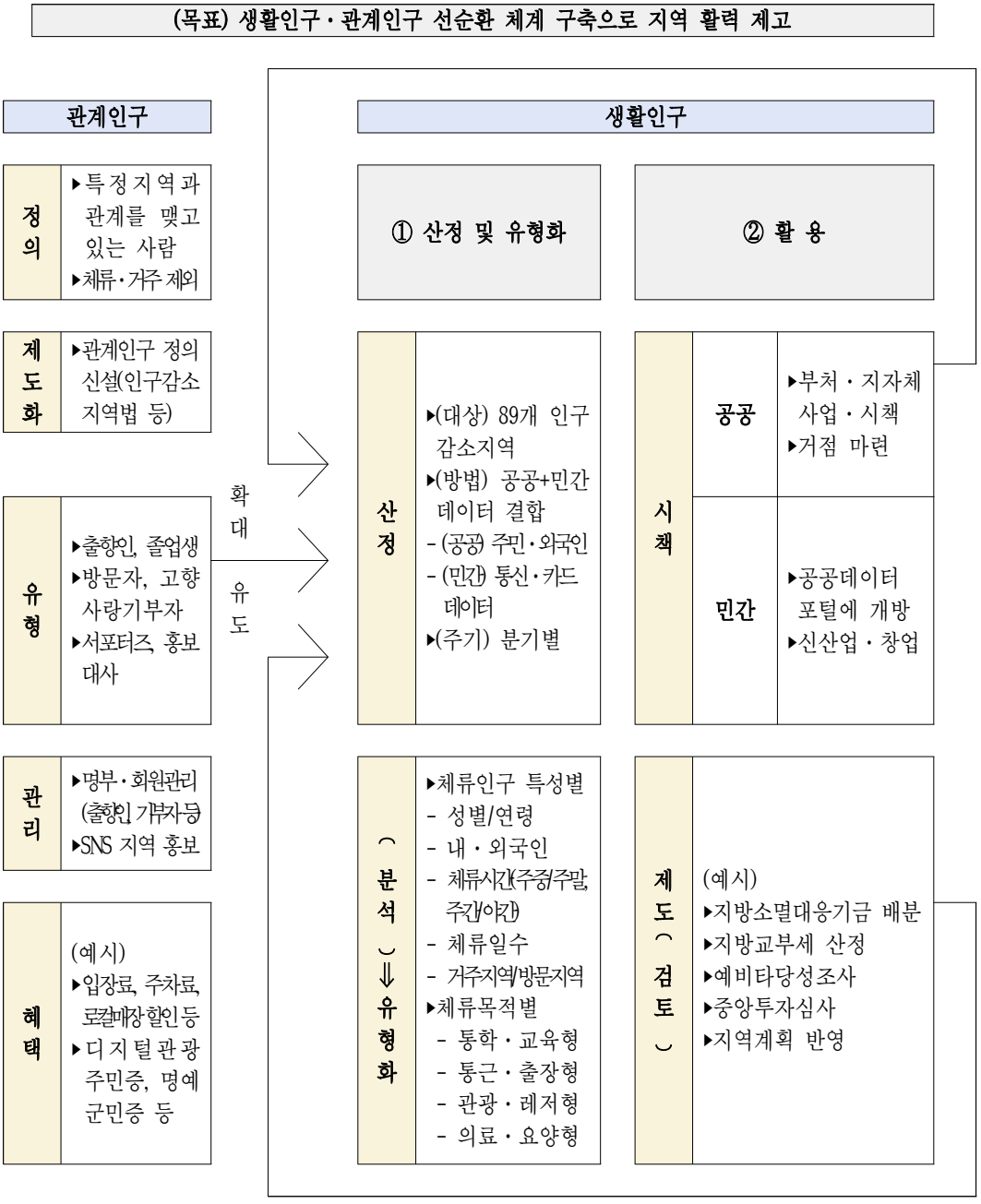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2023.12

따라서 정부는 향후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러한 사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정책 시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가칭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므로 동 개념의 도입이 단순히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내용 중 ‘가칭 ‘관계인구’ 도입 및 생활인구와의 연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생활인구·관계인구 활성화 추진체계]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2023.12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상 정의에 따르면,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이에 포함되는 유형으로는 해당 지역 출향인이나 졸업생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해당 지역 기부자, 해당 지역 방문자, 해당 지역 홍보대사 등 다양하게 해당됨.

이에 대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관계인구 정의를 신설하고, 관계인구에 대해 해당 지역 주차료나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줘 활성화하며,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연계하여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써 연계하겠다는 입장임.

관계인구 개념 도입은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방안을 단순 정주인구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확대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관계인구 개념 도입 및 목표 재설정을 통해 기존 정책의 성과평가를 제고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적 의견도 존재함. 실제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 분석 결과 중 관계인구 정책의 우수사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음.[7] 실제 관계인구 유형 중 지역 방문자나 고향사랑 기부자 및 서포터즈 등은 일회성 관계에 그쳐 정주인구나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이처럼 관계인구 개념 도입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을 고려하여, 정부는 관계인구 개념 도입 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여 관계인구 개념이 단순히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7) 임화진,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 45., 건축공간연구원, 2022, p.38.

2. 일자리 사업

가. 개 요

(1) 2023년 고용시장 동향

2023년 고용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들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임.

2023년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전년 대비 0.7%p 상승한 69.2%이며,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7,000명(1.2%) 증가하였음.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p 하락한 2.7%이며, 실업자의 경우 20대, 40대 등에서 실업자 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4만 6,000명이 감소한 78만 7,000명임.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920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1,000명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였음.

[2019~2023년 주요 고용지표 현황]

(단위: %, 천명)

지표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용률	60.9	60.1	60.5	62.1	62.6
15~64세 고용률	66.8	65.9	66.5	68.5	69.2
15세 이상 취업자 수	27,123	26,904	27,273	28,089	28,416
실업률	3.8	4.0	3.7	2.9	2.7
실업자 수	1,063	1,108	1,037	833	787
경제활동 참가율	63.3	62.5	62.8	63.9	64.3
경제활동인구	28,186	28,012	28,310	28,922	29,203

자료: 통계청「2023년 연간고용 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청년・여성 등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고용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2023년 한국의 15~29세 고용률은 46.5%로 OECD 평균인 55.3%에 비해 낮으며, 높은 대학진학률 대비 구직단념자·니트(NEET)[1] 등 취업지연 청년의 규모가 큰 상황으로 체감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

[2023년 한국 및 OECD 주요 국가 15~29세 고용률 비교]

(단위: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46.5	64.6	61.6	62.5	61.8	55.3

자료: OECD

2023년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OECD 평균보다 낮고,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curve[2] 현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2023년 한국 및 OECD 주요 국가 여성 고용률 비교]

(단위: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61.4	72.2	67.5	73.7	73.3	63.2

자료: OECD

2023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로 노후 소득을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은 편임, 2023년 55~64세 고용률은 독일·일본에 비해 낮은 상황이나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2023년 한국 및 OECD 주요 국가 65세 이상 고용률 비교]

(단위: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37.3	11.3	18.7	8.9	25.3	15.9

자료: OECD

[2023년 한국 및 OECD 주요 국가 55~64세 고용률 비교]

(단위: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69.9	65.0	64.2	74.7	78.7	64.0

자료: OECD

1)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무직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의미함.

2) M-curve: 여성이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녀 양육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입성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함.

장애인의 경우 2023년 고용률은 49.8%(15~64세)로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2023년 기준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3.5%, 60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28.7%로 여성과 고령 장애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국 및 주요 선진국 장애인 고용률 비교]

(단위: %)

한국 (2023)	핀란드 (2019)	영국 (2023)	미국 (2022)	프랑스 (2019)
49.8	56.9	53.6	34.8	56.9

주 1) 각 국가별 장애 정의, 판정 기준, 조사 방식, 조사 대상 연령, 조사 기준시점, 생산 및 발표주기 등이 다르므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2) 대상연령: 한국(15~64세), 핀란드(20~64세), 영국(16~64세), 프랑스(20~64세)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 눈에 보는 2023 장애인 통계」

(2) 2023년 정부 일자리 정책 현황

2023년 정부 일자리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발표된「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3]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었음.

2022년 연말 정부는「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을 계획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1월 발표된「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가 긴요해짐에 따라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 관리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대상별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되었음. 청년 일자리의 경우 2023년 3월「2023년 청

3)「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노인 일자리의 경우 2023년 2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2023년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2023-2027)」 등이 발표되었음.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의 경우 2023년 4월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2023년도 시행계획 」이 발표되었으며,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 5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등이 발표되었음.

[2023년 주요 일자리 정책 발표 현황]

발표일	제목	주요 내용	대상
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	일반
23.1.30.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일반
23.2.7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2027)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 -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고령자
23.3.2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 및 이행 독려 - 장여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지급 규모 확대, 공공부문 고용의무 미이행기관 명단공표 기준 강화 -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지원 확대·출퇴근 시 비용지원 확대	장애인
23.3.29.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및 노동권익 보장	청년
23.4.24.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경력 단절

발표일	제목	주요 내용	대상
	기본계획(2020~2024) - 2023년도 시행계획	-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여성
23.5.15.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조성	장애인
23.7.27.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2023-2027)	-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수준으로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노인일자리를 배치하여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 형성	고령자
23.7.4.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일반
23.11.15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 유형별 특성을 고려,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강화 - 발굴·전달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등 인프라 개선 병행	청년

자료: 각 부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은 OECD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4)]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

구분	사업내용
직접 일자리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 경과적 · 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

4)「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분	사업내용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 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 · 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 · 시설 · 컨설팅을 제공
실업소득 유지·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고용 · 재활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

자료: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30조 3,481억원으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약 13조 4,404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2,327억원 감소하였으며, 주로 고용장려금 유형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8억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6,696억원), 실업소득 및 유지지원 유형의 구직급여(△3,499억원)에서 예산이 축소되었음.

반면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유형 예산은 증가하였는데, 창업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협력창업자 육성(661억원 증), 직업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예산(1,777억원 증)이 증가하였음.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사업 유형	2022년(A)	2023년(B)	증감 (B-A)		전체 대비 비중
	예산	예산	금액	증가율 (B-A)/(A)	
직접일자리	32,079	32,244	165	0.5	10.6
직업훈련	24,789	27,301	2,512	10.1	9.0
고용서비스	18,922	17,745	△1,177	△6.2	5.8
고용장려금	65,246	50,634	△14,612	△22.4	16.7
창업지원	28,371	31,484	3,113	11.0	10.4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7,732	134,404	△3,328	△2.4	44.3
지원고용 및 재활	8,668	9,669	1,001	11.5	3.2
합계	315,808	303,481	△12,327	△3.9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집행액은 전년 대비 약 7,797억원 증가한 29조 7,312억원으로, 이 중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이 13조 6,037억원 집행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용장려금’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에서 집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2021~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및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직접일자리	3,159,901	3,296,776	3,207,940	3,199,027	3,224,399	3,222,404	3,556,914
직업훈련	2,264,796	2,417,065	2,478,897	2,319,316	2,730,051	2,525,725	2,611,234
고용서비스	1,733,043	1,601,720	1,892,151	1,328,349	1,774,515	1,456,648	1,638,931
고용장려금	7,600,214	9,000,051	6,524,632	5,512,278	5,063,417	4,688,093	4,312,284
창업지원	2,407,114	2,738,537	2,837,115	2,836,855	3,148,405	3,247,304	3,114,72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348,060	14,149,411	13,773,185	12,882,740	13,440,441	13,603,708	12,917,203
지원고용 및 재활	2022년부터 별도 유형으로 관리		866,845	872,907	966,901	987,373	1,040,103
합계	30,513,128	33,203,560	31,580,765	28,951,472	30,348,129	29,731,255	29,191,391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었으나 청년・여성・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대상별로 문제가 있었음.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고용률의 총량적인 관리가 아닌 핵심 타깃(청년・여성・노인・장애인) 집중관리로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이하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라 고용 총량이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배분 비율이 아닌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1) 청년 일자리 사업

(가) 개 요

① 청년 고용 지표 현황

2023년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이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전체의 고용지표와 비교할 경우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편임.

2023년 15~29세 청년인구는 839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9.4%, 실업률은 5.9%, 고용률은 46.5%임.

실업률의 경우 2020년 9.0%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부터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2023년 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4.3% 대비 14.9%p 낮고, 고용률의 경우 전체 고용률인 62.6%에 비해 16.1%p 낮은 반면,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2.7%에 비해 3.2%p 높아 경제 전체의 고용지표에 비하면 청년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편임.

[2019~2023년 청년(15~29세) 고용지표 현황]

(단위: 천명, %, %p)

항목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전체(A)	44,504	44,785	45,080	45,260	45,407
	청년(B)	9,060	8,911	8,770	8,567	8,390
	비율(B/A)	20.4	19.9	19.5	18.9	18.5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A)	63.3	62.5	62.8	63.9	64.3
	청년(B)	47.8	46.4	47.9	49.8	49.4
	차이(B-A)	△15.5	△16.1	△14.9	△14.1	△14.9
실업률	전체(A)	3.8	4.0	3.7	2.9	2.7
	청년(B)	8.9	9.0	7.8	6.4	5.9
	차이(B-A)	5.1	5.0	4.1	3.5	3.2
고용률	전체(A)	60.9	60.1	60.5	62.1	62.6
	청년(B)	43.5	42.2	44.2	46.6	46.5
	차이(B-A)	△17.4	△17.9	△16.3	△15.5	△16.1

주 1) 전체는 15세 이상 인구 집단임
2)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취업자)의 비율임
3)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임
4) 고용률은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2023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2023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개선, 일터안전망 강화 및 NEET 청년 지원 강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2023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2023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5)]

위 계획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정책은 146개의 과제로 추진되어 전체 청년정책 과제 수 390개 중 약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 25조 4,178억원 대비 23.0%인 5조 8,34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됨.

---

5)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3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및 예산 규모]

(단위: 건, 억원)

구분 \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합계
과제 수	146 (37.4%)	30 (7.7%)	122 (31.3%)	47 (12.1%)	45 (11.5%)	390 (100.0%)
예산	58,344 (23.0)	104,201 (41.0)	70,960 (27.9)	19,786 (7.8)	888 (0.3)	254,178 (100.0%)

자료: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①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③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④ 일터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NEET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음.

[2023년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분야	과제	주요 사업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해외 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민관협업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 지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공공부문 인턴제도 활성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재직자 지속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등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창업 전주기 지원 강화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등
	농어업·식품·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청년 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공정채용 문화 확산 공정채용 컨설팅 실시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및 노동권익 보장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노동권익 보장	노동환경 열악업종 근로감독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장병 및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자료: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 일자리 정책 중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분야에 과제 수와 예산 모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되었음.

[2019~2023년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

(단위: 건, 억원,%)

세부분야	과제 수		예산		
		비중	2022년	2023년	비중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66	45.2	56,580	34,245	58.7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61	41.8	12,428	15,047	25.8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10	6.8	8,312	8,960	15.3
일터안전망 강화	9	6.1	176	93	0.2
합계	146	100	77,496	58,344	100

자료: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2023년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결산

2023년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 2023년 청년정책시행계획」에서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일경험지원·청년도전지원·K-디지털트레이닝 및 K-move 스쿨 등이 있음.

2023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7,194억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큼.

연도 중 전 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실시되어 각 부처별로 인원이 배정되고 청년인턴이 채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225억원이 집행되었음.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종료예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종료)'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잔여 지급분 수요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2023년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년			2024년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889,078	719,429	80.9	607,78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	429,586	330,919	77.0	162,808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일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414,260	369,114	89.1	473,188
고용노동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229,358	70,389	30.6	17,071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	210,693	172,781	82.0	76,653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	142,470	142,470	100.0	62,709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	55,330	52,426	94.7	171,820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	40,780	34,858	85.4	70,933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K-move 스쿨	20,075	20,075	100.0	32,405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	7,503	7,503	100.0	11,823
전 부처	중앙부처 청년인턴	-	-	22,553	-	62,585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

일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도권에 참여기업이나 훈련기관이 집중되어 있거나 지방 지역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하반기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청년(15~29세) 경제활동인구는 전국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57.7%인 235만명으로,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사업 또한 청년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5년(2019~2023년)간 15~29세 청년의 시・도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일부 지방(경북・경남・광주・세종・전남・전북 등)의 경우 고용률 개선 정도가 저조하거나 전국 15~29세 고용률과 큰 차이를 보여 지방의 청년 고용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2019~2023년 시·도별 15~29세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 및 고용률 현황]

(단위: 천명, %)

시・도	경제활동인구 (2023년 하반기)		실업자 수 (2023년 12월)		고용률				
		비율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특별시	949	23.3	153	16.2	47.5	46.6	50.5	51.5	51.8
부산광역시	259	6.4	64	6.8	42.9	40.5	41.2	42.0	43.9
대구광역시	171	4.2	45	4.8	39.8	37.8	42.6	41.3	42.3
인천광역시	235	5.8	52	5.5	48.8	46.8	46.9	50.6	49.2
광주광역시	109	2.7	35	3.7	39.6	39.6	37.3	38.8	38.9
대전광역시	125	3.1	28	3.0	40.6	44.7	45.0	48.0	44.4
울산광역시	65	1.6	32	3.4	39.1	37.6	36.5	40.5	40.3
세종특별자치시	24	0.6	3	0.3	35.1	36.6	35.1	33.9	33.1
경기도	1,166	28.6	223	23.6	45.4	43.1	45.5	50.0	49.9
강원특별자치도	100	2.5	43	4.6	42.4	40.8	40.2	40.0	43.6
충청북도	128	3.1	23	2.4	43.5	43.4	46.2	49.4	47.9
충청남도	164	4.0	39	4.1	45.1	42.0	42.4	45.2	44.7
전북특별자치도	116	2.8	40	4.2	32.7	31.5	36.5	38.6	38.8
전라남도	98	2.4	32	3.4	37.4	37.9	37.2	40.1	39.4
경상북도	151	3.7	64	6.8	38.7	38.0	38.7	42.1	39.2
경상남도	168	4.1	60	6.4	39.3	37.7	39.4	39.9	39.0
제주특별자치도	48	1.2	9	1.0	43.7	41.6	42.6	47.5	46.4
전국	4,075	100.0	944	100.0	43.5	42.2	44.2	46.6	4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관련된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일부 지방 청년들과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4년부터 신설된 권역별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관리로 지방의 청년들에게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15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행・인턴・기업탐방 등의 일경험을 지원하고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 운영비와 참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524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시·도별 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기업 1,857개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077개(58%)이며 전체 참여 청년 20,836명 중 수도권 지역에서 참여한 인원이 12,245명(58.7%)으로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충남 지역 참여 청년은 41명, 전남은 186명, 경남은 247명으로 전체 참여자 수 대비 각각 0.2%, 0.9%, 1.18% 수준에 불과하여 청년들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참여 기업 또한 충남은 9개, 전남은 6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들의 참여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2024년부터 지방 거주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 기업 발굴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설명하였음. 고용노동부는 향후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사업관리로 지방의 청년들에게도 일경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시·도별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참여 현황]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참여기업(개)	640	109	328	144	154	48	27	22	5
참여청년(명)	7,546	1,393	3,306	2,065	1,064	546	389	407	101
지자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참여기업(개)	47	59	9	71	6	39	27	12	110
참여청년(명)	371	661	41	874	186	662	247	184	793

주) 기타는 비대면(온라인, 메타버스 등), 해외 일경험 등 국내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참여기업 또는 참여청년임.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고용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은 수도권에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제주나 전남에는 훈련기관이 없거나 과정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경북·경남·강원 등의 지역에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이 1~2개에 불과하므로 지방의 청년들에게도 균형 있는 훈련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은 디지털·신기술분야 훈련으로, 참여 청년과 훈련기관에 참여수당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3,691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195개의 훈련기관 중 105개(53.8%)가 서울에 위치하였고, 514개의 훈련과정 중 337개(65.5%)의 훈련과정이 서울에 개설되었음.

반면 2023년에 전남이나 제주에는 훈련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경북에는 훈련기관이 1곳에 불과하는 등 시·도별로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2023년 시·도별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훈련기관	105	11	7	7	8	5	3	2	30
훈련과정	337	27	19	17	18	12	4	3	5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훈련기관	2	3	6	3	0	1	2	0	195
훈련과정	2	3	10	5	0	1	2	0	514

주 1) 훈련기관 및 과정 수는 중복이 없는 순 개수로, 훈련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2) 2024년 제주에 훈련기관 1곳이 신설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제공하는 훈련기관이나 기업이 수도권에 주로 위치해있고, 온라인 교육으로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스마트제조·무인이동체·사물인터넷 등의 응용기술 훈련 분야는 현장 실습 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의 훈련기관 등을 발굴하고 균형 있는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고용노동부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참여지역 및 학과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울산·세종·강원 및 제주 소재 직업계고에서는 사업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직업계고와 민간 전문훈련기관이 협업하여 신산업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학교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학생 훈련프로그램과 교원 신기술 연수 등을 지원하고 2023년에는 75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음.[6)]

2020년부터 학과를 선정하고 신입생 모집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점차 지원 대상 학과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동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참여 학교가 없는 지역(울산·세종·강원·제주)이 있음.

6) 2023년과 2024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학과 요건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 지역은 2020년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훈련인원은 780명으로 전체 참여자 1,738명의 약 44.9%를 차지하였음.

[2020~2023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참여 학과 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 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 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 수	훈련 인원	참여 학과 수
서울특별시	5	109	5	109	7	158	8	204	14
부산광역시	-	-	-	-	-	-	3	64	4
대구광역시	-	-	-	-	1	40	3	104	5
인천광역시	-	-	-	-	1	22	1	44	1
광주광역시	-	-	-	-	3	76	3	132	4
대전광역시	-	-	-	-	3	57	3	111	5
울산광역시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경기도	2	65	3	65	16	292	16	532	21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충청북도	-	-	-	-	3	63	5	167	6
충청남도	-	-	-	-	3	73	5	161	5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1
전라남도	-	-	-	-	1	20	5	122	5
경상북도	-	-	-	-	1	18	2	57	3
경상남도	-	-	-	-	1	20	1	40	1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합계	7	174	8	174	40	839	55	1,738	75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ㅇ 4차 산업혁명 또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로서 교육부 직업계고 비중확대(학과구조개편)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과 중 2023년 1학년 학생 20명 이상 신기술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학과 ※ 다만, 정규교육과정의 연관성, 훈련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개 이상 학과의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 취업맞춤반, 산학맞춤반 등 유사사업 참여학생의 경우 중복 참여 불가
2024년	ㅇ 4차 산업혁명 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SW, 3D프린터, 드론,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바이오, AI, 로봇, AR·VR. 스마트 제조, 스마트 건설,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스마트팜, 차세대반도체 등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 규모가 유사한 지역(대전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울산에 드론공간정보과・컴퓨터게임개발과・그린스마트팜과, 강원도에 드론전자과・융합소프트웨어 학과 등 지원 대상이 되는 학과들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사업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전국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황]

(단위: 개, 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서울	70	1,555	21,759	4	92	1,262
부산	32	738	12,634	4	111	1,128
대구	16	482	7,939	4	89	1,190
인천	28	670	8,403	2	42	665
광주	10	262	3,533	2	24	414
대전	10	302	2,811	2	42	639
울산	8	200	3,866	3	54	949
세종	2	35	618	0	0	0
경기	70	1,675	32,456	3	60	951
강원	20	279	2,879	3	42	338
충북	23	431	6,173	3	48	608
충남	28	440	7,877	5	66	833
전북	24	326	4,824	4	78	964
전남	39	556	7,622	4	57	825
경북	49	604	9,182	6	135	1,220
경남	30	552	8,123	4	72	1,172
제주	6	126	2,264	0	0	0

자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2024.7.16. 기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직업계고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였으나, 지역 내 추진 사례 없이 개별 학교 차원에서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일부 지역 직업계고에서 동 사업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의 직업계고 재학생들에게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② 당초 예산의 취지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당초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구직 지원이 목적인 사업들이 점차 사업대상을 확대하면서 취업의 어려움과는 무관히 일반 청년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자립준비청년의 참여가 미진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함.

2023년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40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명 증가하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7)]

[2021~2023년 '쉬었음' 청년 현황]

(단위: 천명, %, 전년 대비)

연도 /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구성비	증감인원		구성비	증감인원		구성비	증감인원	증감률
전체 '쉬었음' 인구	2,398	100.0	24	2,277	100.0	121	2,351	100.0	74	3.3
15~29세	418	17.4	△30	390	17.1	△29	401	17.0	11	2.8
15~19세	25	1.0	△8	28	1.2	3	29	1.3	2	5.8
20~29세	393	16.4	△22	362	15.9	△31	371	15.8	9	2.6

주) 증감인원 및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인원 및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23년 연간고용 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쉬었음' 청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단념청년이나 취업애로청년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청년 중에서도 취업애로청년과 구직단념청년 등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여 지급하였음.[8)]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유도하였음.

---

7) '쉬었음' 이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나 가사를 맡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함. 취업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쉬었음'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의 고용가능성이나 고용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도 우려됨.

8) 2022년부터 청년 고용장려금 수혜 요건을 취업애로청년으로 축소하였음.

구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간	'17~'21 한시	'21 한시	'22~
청년 요건	청년이면 별도 제한 없음 (15~34세)		취업애로청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2024년부터 4개월로 완화), 고졸 이하 학력, 자립지원 필요청년 등)

그러나 구직단념청년이나 취업애로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점차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취업의 어려움과는 무관히 일반 청년들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내에서 구직단념청년과 취업애로청년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확대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된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4년의 경우 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7,194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의 목적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나, 2022~2024년 동 사업의 지원 대상자 변화 경과를 보면,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2022~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대상자(취업애로청년) 변화 경과]

2022년	2023년	2024년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2022년	2023년	2024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삭제)**~~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예컨대 2023년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 참여 가능하였으나 2024년의 경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청년일경험지원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음.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설명이나,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 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 사업 지역특화 유형의 경우 구직단념 청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2022년 6명, 2023년 40명이 참여하여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구직단년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9]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348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 참여 유형 중 하나인 지역특화 유형 청년은 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 청년 등과 같은 요건의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으로, 지자체별로 도전과 도전+프로그램 각 목표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가 가능함.

2023년 지역특화유형의 경우 1,076명이 참여하여 전체 참여자의 약 15%를 차지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 전체 참여자의 약 20%가 지역특화유형 청년임.

9) 도전 프로그램은 1~2개월 단기 프로그램이며 도전+ 프로그램은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임.

[2022~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유형 / 연도	전체 참여자 (A)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보호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 청년	지역특화 (B)	
							비율 (B/A)
2022	5,795	4,670	6	3	-	1,116	19.2%
2023	7,147	6,019	40	9	3	1,076	15.0%
2024.5.	4,839	3,821	29	10	2	977	20.2%

주) 2024년은 5월 기준이며 하반기로 갈수록 참여자 수가 증가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지역특화 유형의 경우, 구직단념 청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사업 지침에서 지역특화유형의 예시로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경력단절여성·취업 등의 문제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장기 휴학 중인 대학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직단념이나 취업의 어려움과 무관히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 청년 또는 39세 청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2023년 주요 지자체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특화 유형 지원 대상 현황]

지자체	지역특화 기준 예시
서울 은평구	**지역 조례의 청년,** 위기 청년 관리기관(시설), **졸업예정청년(고등학교, 대학교)**, 장기 휴학생, 자립준비청년, 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청년, **기혼청년**, 북한이탈청년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적용 (만18 ~ 39세)**,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2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지역특화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 39세),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근로기간이 한달 이내(주말, 공휴일 포함)이고, 취득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자
충남 천안시	**천안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정의) 1항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022년 6명, 2023년 40명이 참여하여 동 사업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음. 2019~2023년간 17개 시·도의 자립준비청년은 9,970명임을 고려할 때 사업 대상자 가운데 동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9~2023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단위: 명)

구분 / 지역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2019~2023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서울특별시	410	276	243	193	112	1,234
부산광역시	213	178	142	135	119	787
대구광역시	89	89	75	50	37	340
인천광역시	116	73	104	72	47	412
광주광역시	83	75	65	74	59	356
대전광역시	62	63	63	54	33	275
울산광역시	32	28	28	20	14	122
세종특별자치시	3	3	3	1	2	12
경기도	405	388	314	300	187	1,594
강원특별자치도	178	150	152	122	78	680
충청북도	101	98	89	72	56	416
충청남도	115	127	107	54	61	464
전북특별자치도	132	152	140	134	58	616
전라남도	226	273	196	170	125	990
경상북도	180	158	162	113	70	683
경상남도	193	194	166	148	88	789
제주특별자치도	49	43	53	28	27	200
합계	2,587	2,368	2,102	1,740	1,173	9,970

주) 보호종료 당시 소재지 기준, 해당 연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인원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10]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지원은 진로탐색 기회·취업정보·구직의욕 및 자신감 고취 등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3년 자립준비청년의 필요한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일 경험 기회	사업주·청년 고용지원금	진로 탐색 기회	취업상담·취업정보	직업 훈련	구직의욕·자신감고취	해외 취업지원	기타	합계
24.2	18.5	17.1	15.5	11.8	5.7	6.5	0.7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의 확대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등에게도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함.

10)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34세 청년임.

③ 중앙부처 청년인턴 사업

2023년 연도 중 추진된 중앙부처 청년인턴사업은 전용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연중에 추진하여 「국가재정법」 및 회계질서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청년인턴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연도 중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청년인턴은 청년들의 일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청년들이 중앙부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사업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하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2023년 중앙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연중에 추진됨.

2023년 청년인턴 사업은 46개의 부처에서 총 1,950여명의 청년인턴이 채용되어 약 225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에는 목표인원이 더욱 확대되어 4,770명 채용 및 625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11]

[2023년 및 2024년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번	기관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채용 인원	집행액	목표 인원	예산액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37	5	66
2	경찰청	140	1,629	300	3,991
3	고용노동부	100	899	270	3,570
4	공정거래위원회	14	115	20	26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352	210	1,578
6	관세청	74	870	193	2,387
7	교육부	47	582	282	3,730
8	국가보훈부	22	251	75	992
9	국가유산청	20	376	30	396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16	211	68	838
11	국방부	20	205	71	881
12	국세청	190	2,202	300	3,991
13	국토교통부	82	372	233	3,077
14	국민권익위원회	6	72	17	206
15	금융위원회	6	72	50	662
16	기상청	29	264	42	558

(단위: 명, 백만원)

연번	기관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채용 인원	집행액	목표 인원	예산액
17	기획재정부	28	313	100	1,240
18	농림축산식품부	78	865	190	2,512
19	농촌진흥청	22	376	57	627
20	문화체육관광부	57	906	176	2,328
21	방송통신위원회	-	-	9	111
22	방사청	25	100	33	406
23	법무부 (검찰청 포함)	220	2,695	300	3,967
24	법제처	4	49	6	81
25	병무청	28	291	32	399
26	보건복지부	45	281	155	2,049
27	산림청	38	497	54	595
28	산업통상자원부	28	471	92	1,212
29	새만금청	2	30	3	44
30	소방청	13	136	21	22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41	467	105	1,388
32	여성가족부	5	101	9	110
33	외교부	20	261	170	1,451
34	원자력안전위원회	4	49	6	85
35	인사혁신처	11	118	18	236
36	조달청	24	296	33	433
37	중소벤처기업부	28	316	118	1,558
38	질병관리청	34	331	48	689
39	통계청	36	430	95	1,256
40	통일부	12	110	50	662
41	특허청	40	228	45	595
42	해양경찰청	100	1,141	218	2,879
43	해수부	86	1,698	244	3,224
44	행복청	2	71	3	44
45	행안부	71	819	223	2,953
46	환경부	54	603	160	2,047
총 계		1,964	22,558	4,939	62,585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514명을 대상으로 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제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인턴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89.5%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1) 국무조정실의 당초 계획은 2023년 2,000명에서 2024년 3,000명으로 청년인턴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 10월 2,000명의 추가 청년인턴 배치를 추진하여 2024년 청년인턴 규모가 5,0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활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12)]

그러나 청년인턴 사업은 연도 중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2023년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사례]

구분	기관명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6.13.)	경찰청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등 16개 사업	구호 및 교정비 외	1,780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외	일용임금 (110-04)
자체 전용 (6.14 외)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등 6개 사업	보수 (110-01)	715	기관 기본경비 외	일용임금 (110-04) 외
전용 (5.21.)	중소벤처 기업부	국립 마이스터고 (7209-130)	보수 (110-01)	353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 (7211-201)	일용임금 (110-04)
				37		고용부담금 (320-09)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청년인턴의 필요성을 긍정하더라도, 연도 중 전용을 통해 전 부처 차원에서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급성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첫해 시범사업 목적으로 소규모 인턴 사업을 개시하고 성과평가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회 심의를 받아 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연도 중 전용을 통해 청년인턴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타직 보수나 상용임금 등 부적정한 비목으로 청년인턴 임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체계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청년인턴의 보수는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 일용임금(110-04)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일부 부처의 경우 적정하지 않은 비목으로 청년인턴 임금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병무청은 2023년 청년인턴의 보수를 기타직 보수(110-02목)로 집행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기타직 보수 비목은 「공무원임용령」 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수습 직원 등에 지급하는 비목이므로 부적정함.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은 2023년 청년인턴의 보수를 별도의 이·전용 없이 상용임금(110-03목)으로 집행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상용임금은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비목이므로 부적정함.[13]

13) 환경부는 2024년에도 청년인턴 관련 예산을 상용임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5월 다시 일용임금으로 세목 조정을 하여, 반복적으로 부적정한 비목에 청년인턴 예산이 편성된 문제가 있음.

[2023년 부적정한 비목으로 청년인턴 임금을 지급한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비목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병무청	인건비(100)	기타직보수 (110-02)	-	262	262	-	-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200)	고용부담금 (320-09)	-	-	29	-	-
환경부	기본경비 (자원순환국) 외 40건	상용임금 (110-03)	-	262	262	-	-
	화학물질취급안전관리 지원 외 1건	고용부담금 (320-09)	-	-	29	-	-
질병 관리청	질병관리청 시험연구인력지원	상용임금 (110-03)	-	476	300	-	-
		고용부담금 (320-09)	-	53	31	-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으로 위와 같은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적정한 비목으로 청년인턴 임금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존 해외 인턴 사업을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 실적으로 보고하거나, 2024년에는 중앙부처 청년인턴을 소관 공공기관으로 파견하여 인턴을 운영하는 등 청년인턴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함.

2023년 농촌진흥청은 목표 청년인턴 30명 중 22명을 채용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하였으나, 이 중 15명이 2009년부터 추진된 KOPIA 연구원·연수생 해외파견 인원임.

[2023년 농촌진흥청 해외 중앙부처 청년인턴 현황]

채용시점 (합격발표일)	소속	직무	계약기간	근무 소재지 (광역단위)
23.5.15. (23.5.8.)	국립농업과학원	신상품 마케팅 및 비즈니스 모델 조사 분석 업무 지원	'23.5.15.~11.14.	전라북도
	국립농업과학원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환류 업무 지원	'23.5.15.~11.14.	전라북도
	국립농업과학원	신기술시범업무지원, 현장 영상 촬영 및 편집	'23.5.15.~11.14.	전라북도
	국립식량과학원	작물, 토양 영상자료 정리 및 데이터 분석	'23.5.15.~11.14	전라북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성과 전시 및 홍보 지원	'23.5.15.~11.14	전라북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성과 전시 및 홍보 지원	'23.5.15.~11.14	전라북도

채용시점 (합격발표일)	소속	직무	계약기간	근무 소재지 (광역단위)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성과 전시 및 홍보 지원	'23.5.15.~11.14	전라북도
23.4.14 (23.3.22)	KOPIA 센터별 협력사업 관련과제 수행 및 학술활동, KOPIA 센터 사업 관리 지원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23.4.14.~'24.3.13.	캄보디아
			'23.4.14.~'24.3.13.	캄보디아
			'23.4.14.~'24.3.13.	라오스
			'23.4.14.~'24.3.13.	파키스탄
			'23.4.14.~'24.3.13.	파키스탄
			'23.4.14.~'24.3.13.	볼리비아
			'23.4.14.~'24.3.13.	니카라과
			'23.4.15.~'24.3.13.	우즈베키스탄
			'23.4.15.~'24.3.13.	케냐
			'23.4.15.~'24.3.13.	세네갈
			'23.4.16.~'24.3.13.	필리핀
			'23.4.24.~'24.3.13.	도미니카(공)
			'23.4.24.~'24.3.13.	도미니카(공)
			'23.4.26.~'24.3.13.	스리랑카
			'23.5.15.~'24.4.14.	짐바브웨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농업계열 학과 졸업생을 채용하여 해외 KOPIA센터에 파견 후 국제학술지 논문 1건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1회 이상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월급여·사회보험·항공료·주택보조비·어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청년인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에도 2023년 청년인턴 채용 실적으로 기록됨.[14)]

한편 2024년에도 부적절한 청년인턴 운영이 발생하였음. 2024년 금융위원회는 총 50명의 청년인턴 인원을 배정받았으나 이 중 일부 인원을 중앙부처 청년인턴 예산으로 채용해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목표 인원 달성을 시도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 인원이 확대되었으나, 확대된 인원 전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기 어렵고 청년인턴에게 보다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는 설명임.

금융위원회의 정원이 333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정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인턴으로 연도 중 채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 인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인턴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음.

14) 농촌진흥청은 「청년인턴활성화계획」에 의거하여 KOPIA 해외인턴사업의 일부 인원을 농촌진흥청 청년인턴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국무조정실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설명임.

[2024년 금융위원회 청년인턴 현황]

채용시점 (합격발표일)	부처명 또는 소속기관	근무부서 (실·국)	인원	직무	근무 기간	근무 소재지
1차 ('24.2.2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외 6개 실·국	8	ㅇ부서 행정업무 지원 - 회의 및 행사 준비 등 - 자료조사, 각종 문서 관리 등	'24.3.25. ~ 근무중	서울시
1차 ('24.2.29.)	소속기관 금융정보 분석원	기획행정실	2	ㅇ부서 행정업무 지원 - 회의 및 행사 준비 등 - 자료조사, 각종 문서 관리 등	'24.3.25. ~ 근무중	서울시
1차 ('24.2.29.)	산하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 외 9개국	10	ㅇ국제금융 관련 업무 지원 ㅇ부서 전산 업무 지원 ㅇ부서 행정업무 지원	'24.3.25. ~ 근무중 (1명 조기 퇴사)	서울시
1차 ('24.2.29.)	산하기관 예금보험공사	보험리스크 관리부 외 4개부	5	ㅇ부서 행정업무 지원 ㅇ국제금융 관련 업무 지원 - 회의 및 행사 준비 등 - 자료조사, 각종 문서 관리 등	'24.3.25. ~ 근무중	서울시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4년 계획서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15]으로만 근무 예정 부서를 안내하여 청년인턴은 합격 이후에서야 정확한 근무지를 알게 되었음.[16]

[2024년 금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어학	8명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서울)
인턴02	전산	3명	
인턴03	행정	14명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는 규정이나 채용계획에 근거하여 기관에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인턴 합격 결정 이후 개별 기관의 인사 담당 조직 간 협의를 통해 인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러한 인턴 채용과 운영은 체계적이고 엄밀한 사업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청년인턴 사업 성과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존 사업과 분리하여 채용 실적을 관리하고, 기관별 인력 수요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년인턴 채용 규모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음.

16)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근무예정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공고상 근무지를 특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모집단위를 포함한 채용계획 및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였음.

④ 청년 일자리 사업의 부적절한 재정 집행

일부 청년 일자리 사업 재정집행의 경우 별도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차년도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이월을 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거나,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인 이월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부적절한 재정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4년 감소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중 370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이월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2023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310억 8,900만원 중 1,518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7%)되고 370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6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198,558	198,558	198,558	198,558	32,531	231,089	151,870	37,047	9,674	65.7

자료: 행정안전부

실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신규채용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체채용 수요로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이월된 370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예상 소요액 대비 적게 편성(2024년 예산액 752억 1,100만원)되면서 일시적으로 대체채용을 중단한 뒤 그에 따른 2023년 예산 집행잔액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등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17)]

동 사업에서 차년도로 이월된 370억 4,700만원의 경우 별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단순히 차년도 예산소요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월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반하는 집행행위로 여겨짐.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부터 대체채용절차가 재개되어 채용공고 등이 이뤄졌고, 채용자의 실제 근무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되는 정착 인센티브 등이 있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3호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실제 근무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되는 인센티브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체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채용 계약행위 등의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했을 것임.[18]

이와 같이 차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여 이월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행위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액편성된 것을 보전하는 행위로 부적절하고,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집행행위로 여겨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여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하여 우회적으로 사업비를 증액 집행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의 ‘K-move 스쿨’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인 이월을 통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K-move 스쿨 사업은 해외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과정 제공 후 청년의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91억

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8)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계약 등’으로 보고 있음.

1,9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부받은 출연금으로 연수운영기관에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급함.

그런데 K-move 스쿨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75억 3,600만원, 2020년 63억 8,900만원, 2021년 71억 6,400만원, 2022년 87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3년에도 54억 4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019~2023년 K-move 스쿨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9	28,330	-	8,097	-	-	36,427	26,117	7,536	2,774
2020	23,648	-	7,536	-	-	31,184	21,777	6,389	3,018
2021	25,290	-	6,389	-	-	31,679	20,491	7,164	4,024
2022	27,830	-	7,164	-	-	34,994	22,130	8,736	4,128
2023	20,075	-	8,736	-	-	28,811	19,119	5,404	4,288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수운영기관과 총액 계약 후 총액의 70%를 선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연수과정 수료율 및 취업률을 산정하여 다음 연도에 총액의 30%를 후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선지급금을 당해연도에 편성하고 차년도에 후지급급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약 70억원 내외의 금액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이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를 면밀히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실집행단계에서 이월액이 유보되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인 이월을 통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사업

(가) 개 요

① 노인 고용지표 현황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근로의욕은 높은 편임.

2025년 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여, 2023년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25만 8,000명이 증가한 362만 3,000명이며, 고용률은 37.3%, 실업률은 2.7%임.

[2018~2022년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2021	8,582	3,112	2,992	119	34.9	3.8
2022	9,027	3,365	3,265	100	36.2	3.0
2023	9,451	3,623	3,525	98	37.3	2.7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고용률의 경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55~79세 인구 중 장래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2024년 5월 기준 69.4%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였고, 평균 근로희망 연령 또한 2024년 5월 기준 73.3세로 전년대비 0.3세 증가하여 고령인구의 근로의욕이 높은 것으로 보임.[19)]

19) 2024년 5월 기준 55~64세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10.2개월이며,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4세로 고령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의욕에 비해 일찍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임.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29.1%), 건강이 좋지 않아서(19.1%), 가족을 돌보기 위해(15.8%) 순으로 높음.

[2020~2024년 55~79세 인구의 장래근로 희망여부]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32.6	31.9	31.5	31.5	30.6
장래근로 원함	67.4	68.1	68.5	68.5	69.4
남자	77.5	77.4	77.3	77.3	77.6
여자	58.2	59.6	60.4	60.3	61.8

주) 당해연도 5월 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0~2024년 연령별 평균근로 희망 연령]

(단위: 세)

연령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55~79세	72.7	72.9	72.9	73.0	73.3
55~59세	69.5	69.5	69.4	69.5	69.6
60~64세	71.6	71.6	71.5	71.7	71.9
65~69세	74.6	74.7	74.7	74.7	75.0
70~74세	78.3	78.6	78.7	78.4	78.7
75~79세	81.9	82.0	82.1	82.0	82.3

주) 당해연도 5월 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②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

2023년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신노년세대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형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재직·전직·사회공헌 단계별로 고령자의 계속고용 유도 및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고령자 직업역량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여 직접 일자리 지원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으며,[20]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근거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여 고령자 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음.[21]

---

2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고, 2024년 11월 1일 시행예정이며, 위 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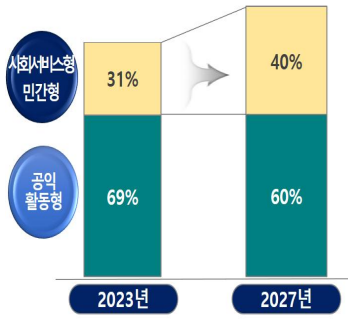
부처	추진 정책	관련 계획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직접 일자리 제공)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고용노동부	계속 고용 지원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등		→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자료: 각 부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건복지부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면서도 참여자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보건복지부는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며, 경험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하였음.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수요 대응 방향(안)]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 (2023년) 31% →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

▷ **공익활동형 일자리**

-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

  * 전체에서의 비중은 낮아지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

자료: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다음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은 고령층이 노동시장 내에서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직·전직·사회공헌" 등의 전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음.

① 재직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도입을 추진하고, ② 전직 및 실직 단계에서는 연령(50·60대, 노령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창업 서비스를 통한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며, ③ 사회공헌 단계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전문인력의 기술과 경험 전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원활하게 직무전환과 이·전직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고용상 연령차별을 유발하는 제도·사회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또한 구축한다는 입장임.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주요 내용]

영역		중점과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	→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	일자리 기회 확대
		사회기여 활동 지원 활성화
		기술창업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안전한 일터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	연령차별없는 노동시장 구현
		고령자 통계 등 개선
		「고령자고용법」 개정

자료 :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재직자의 고용기간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2021년 50.2%였던 55세 이상 고용률은 2027년 54.3%로 상승시키고, 2021년 66.3%였던 55~65세 고용률은 2027년 71.0%까지 상승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함.

③ 2023년 주요 노인 일자리 사업 결산

2023년 주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이 있음.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2023년 1조 5,103억 집행되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큼.

[2023년 주요 노인 일자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년			2024년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510,308	1,510,308	100.0	1,995,74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501,981	498,029	99.2	546,105

자료 :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용보험기금에서 2023년 716억 5,900만원 지원되어 당초 계획한 558억 4,800만원 대비 158억 1,100만원 더 집행되었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은 2022년 고령자 비율 30% 초과 사업장을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요건이 강화되어 신청·집행이 감소하였으며, 종료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임금피크제지원금의 경우 예측 잔여 사업비가 과소 집행되었음.

[2023년 주요 노인 일자리 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집행액	본예산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 안정지원금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	55,848	75,798	71,659	26,975
	고령자고용 안정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1,020	410	374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6,795	19,295	19,101	34,98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1,608	248	237	90
		임금피크제지원금	1,671	11	2	55

자료 :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① 도·농 환경 차이를 고려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2023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수요처가 될 민간기관이나 기업이 부족한 환경과 고령화와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높은 농촌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공익형 일자리 비중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으로 분류되며, 유형별로 참여 요건과 보수 등을 달리 정하고 있음.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개요]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 지원내역 (활동개월)
공익 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30 (3시간, 10일)	월 27만 원 (11개월)
사회 서비스형		경력·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만65세 이상 (일부60세)	80	60 (3시간, 20일)	월 71.2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만60세 이상	5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실버카페 등)	만60세 이상	45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청소·경비 등)		88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산업안전·전기·조선업 등)		55	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참여형 자원봉사		자원봉사 참여노인으로 구성된 노인 자원봉사단에 봉사활동 지원비 지급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유도	만60세 이상	48	봉사활동 지원비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은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비중을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 병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임.

다만 농촌의 경우 인프라와 고령 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비중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고용정보원의 「농촌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농촌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유형이 매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2)]

[2018~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농촌지역 사업유형별 추진 현황]

(단위: 건,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공익활동형		104,661	92.0	134,849	89.4	148,608	83.9	163,468	84.0	168,085	82.2
사회서비스형		-	-	3,376	2.2	6,216	3.5	9,525	4.9	11,170	5.5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6,728	5.9	8,679	5.8	9,279	5.2	6,621	3.4	754	3.5
	취업 알선형	2,145	1.9	3,396	2.3	12,259	6.9	13,627	7.0	16,215	7.9
	시니어 인턴십	241	0.2	459	0.3	570	0.3	999	0.5	1,438	0.7
	고령자 친화기업	41	0.0	151	0.1	249	0.1	301	0.2	358	0.2
농촌 전체		113,816	100.0	150,910	100.0	177,182	100.0	194,541	100.0	204,420	100.0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농촌 지역의 공익활동형 수요가 높은 이유는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일자리의 수요처가 될만한 민간 기관이나 사업체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어 소규모 판매장과 같은 시장형 사업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장년과 고령으로 나누어 볼 때,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활동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높아 수요처(개인(법인)・사업체・민간회사・공공기관)에서 연령이 낮은 노령 인력을 선호하여 55~64세 장년인구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2) 김문정(2023),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겨울호」, 한국고용정보원, 2023, p.57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건, %)

연도	종류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장년 (60~64세)	고령 (65세이상)
2022	공익활동형	696,832	203,783	493,049	602	696,230
		(100.0)	(29.2)	(70.8)	(0.1)	(99.9)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등	227,766	96,102	131,664	66,804	160,962
		(100.0)	(42.2)	(57.8)	(29.3)	(70.7)
2023	공익활동형	687,809	201,423	486,386	24	687,785
		(100.0)	(29.3)	(70.7)	(0.0)	(100.0)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등	272,155	116,661	155,494	78,555	193,600
		(100.0)	(42.9)	(57.1)	(28.9)	(71.1)

자료: 보건복지부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운영이 어려운 사정과 도시에 비해 고령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기초연금 수급 비율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23] 공공형 일자리의 축소와 사회서비스형의 확대는 농촌 지역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24]

새롭게 노년층으로 유입되는 세대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서비스형 물량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농어촌 노인들의 빈곤이 악화되고 사회참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25]

23) 농어촌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률이 70%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었음.

<2022년 지역별 기초연금 수급률 분포 현황>

(단위: 개소)

수급률 / 지역	계	30% 미만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 이상
대도시	78	2	1	4	10	32	26	3	0
중소도시	74	1	0	0	6	26	35	6	0
농어촌	77	0	0	0	1	2	33	41	0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24)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후기 고령층・근로취약계층의 소득보장임.

25) 보건복지부는 추진방안으로 ① 도시 지역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확대량을 감안하여 공익활동형을 배분 조정, ② 농어촌 지역은 활동처 부족 등 지역 인프라를 고려하여 적정유지를 제시하였으나, 지역적 수요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 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최근 3개년(2020년~2022년) 실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비중이 60%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1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자 고용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추진을 계획하였음.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고용안전망 강화 관련 내용]

분야	내용
고용 안전망 강화	□ [기업지원 강화]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정년 등)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 * 진로·생애경력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재취업·창업 등) 등 제공 ㅇ 직종별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2023년 400개소), 기업 인사담당자 특화 교육(700명) 등 지원 ㅇ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도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신설(23년~) □ [실효성 제고]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운영기준을 조정 ㅇ 매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이행 지도(2023년~) - 제도 성과(참여율, 이행율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지속 반영 ㅇ 서비스 운영 기준시간, 취업알선 횟수 조정 등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운영기준 상향 추진(2024년) * (예) ▲진로설계: 16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재취업알선: 2회 이상 → 3회 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체계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총 418개사가 컨설팅에 참여하였고, 이를 위해 44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음.[26)]

2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4,405	-	-	-	4,405	4,405 (4,339)	4,405	4,405 (4,339)	-	-	4,235

자료 : 고용노동부

[2023년 의무기업 및 비의무기업 컨설팅 현황]

구분	참여기업	의무기업 (1,000인↑)	비의무기업 (1,000인↓)
컨설팅(A)	418개사	189개사	229개사
제도이행(B)	366개사	175개사	191개사
이행률(B/A)	87.6%	92.6%	83.4%
투입 예산(백만원)	3,534	1,600	1,934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0~2022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의무 기업 수 중 의무 이행기업의 비율은 높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은 60%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실정임.

[2020~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률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의무 기업 수	959개사	1,028개사	1,041개사
서비스 제공 기업	337개사 (35.2%)	531개사 (51.7%)	623개사 (59.8%)
의무 이행 기업	725개사 (75.7%)	909개사 (88.4%)	826개사 (79.3%)

자료 : 고용노동부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받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2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예외 규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취업알선이나 진로설계 등 부수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와 일반직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도 이직예정자들의 재취업을 근무시간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업주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고, 기업 내에서 담당 부서 없이 추진되어 일반사원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들이 있음을 제시하였음.[28)]

현실의 제도운영이 위와 같음에도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기준시간, 취업 알선 횟수 조정 등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운영 기준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음.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기준 상향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가 실질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산업재해로부터 노인 보호 필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2019년 31,661건에서 2022년 45,332건으로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2019~2023년 60세 이상 산업재해자 수를 보면, 2023년 60세이상 산업재해자 수는 49,569명으로, 2019년의 31,661명에 비해 56.5% 이상 증가함.

---

2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8) 지은정 외 5인(2024),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p.46, p.50

[2019~2022 연령대별 산업재해자 수]

(단위: 명)

연령 / 연도	계	18세 미만	18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2019	109,242	33	4,191	6,942	6,415	7,433	8,585	11,292	14,813	17,876	31,661
2020	108,379	21	3,994	7,094	6,493	7,222	8,675	10,620	14,215	16,842	33,203
2021	122,713	26	4,077	7,695	7,823	7,869	10,113	11,306	15,619	17,898	40,287
2022	130,348	38	4,261	7,608	8,378	7,805	10,782	11,369	16,111	18,664	45,332
2023	136,796	45	4,137	7,986	8,978	8,269	10,919	11,633	15,922	19,338	49,569

자료 : 고용노동부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사망사고 통계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60세 이상의 사망 비율이 40% 이상임.

[2022~2023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사망사고 현황]

(단위: 건, %)

연령 / 연도	계	30세~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2년	874	35	4.0	66	7.6	134	15.3	259	29.6	380	43.5
2023년	812	35	4.3	53	6.5	109	13.4	243	29.9	372	45.8

자료 : 고용노동부

2023년 취업자 수 대비 산업재해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15세~29세의 경우 0.31%, 30~39세의 경우 0.32%, 40~49세의 경우 0.36%, 50~59세의 경우 0.53%이나, 60세 이상은 약 0.8% 정도에 해당하여 60세 이상에서 산업재해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29)]

[2022~2023년 연령대별 취업자 수 및 산업재해자 수]

(단위: 천명, 명, %)

연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취업자(천명) (A)	산업재해자(명) (B)	비율 (B/A)	취업자(천명) (C)	산업재해자(명) (D)	비율 (D/C)	취업자(천명) (E)	산업재해자(명) (F)	비율 (F/E)	취업자(천명) (G)	산업재해자(명) (H)	비율 (H/G)	취업자(천명) (I)	산업재해자(명) (J)	비율 (J/I)
2022	3,996	11,907	0.29	5,303	16,183	0.30	6,314	22,151	0.35	6,618	34,775	0.52	5,858	45,332	0.77
2023	3,899	12,168	0.31	5,357	17,247	0.32	6,260	22,552	0.36	6,678	35,260	0.53	6,223	49,569	0.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29)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관리하고 있어, 연령대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따라 연령대별 노동자의 산업재해발생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정확한 모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원인은 노동자의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유해위험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실제 2019~2022년 60세 이상의 산업재해 건수를 업종별로 비교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음.

[2019~2022년 60세 이상 고령자의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건)

업종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광업	2,048	2,372	2,988	3,516
제조업	6,111	6,559	8,332	9,175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3,348	4,200	4,589
선박건조 및 수리업	827	836	1,228	1,402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275	273	340	35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	20	22	14
건설업	9,903	10,357	12,884	14,547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07	1,100	1,492	1,754
육상 및 수상운수업	668	748	1,001	1,279
임업	496	546	553	609
어업	18	13	27	23
농업	247	266	295	307
금융 및 보험업	46	53	71	115
기타의 사업	11,769	11,917	13,623	15,27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4,039	4,642	5,023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	2,102	2,902	3,170
도소매・음식・숙박업	-	3,282	3,630	4,491
총계	31,661	33,203	40,287	45,332

자료 :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일용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 이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30]

30)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함.

[2023년도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 목표 및 대상]

ㅇ **(사업목표)** 130,000명(건설업 125,000명, 배달 플랫폼 종사자 5,000명)에게 교육비 1인당 4만원 지원 ㅇ **(사업대상)** - 취약계층 일용근로자 : ①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②장애인, ③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이상), **④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⑤만 20세 이하 노동자 ⑥ 플랫폼 종사자 등 ※ 지원제외: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시·도별 취약계층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지원 인원	4,590	27,999	6,140	6,650	5,850	8,850	6,300	10,235	29,151	-	3,200	9,170	2,350	2,600	-	2,900	4,01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고령자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직종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가) 개 요

① 여성 고용지표 현황

2023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6%, 15~64세 고용률은 61.4%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여성 고용률이 30세 이후 하락하여 40대 후반에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이며, 15~64세 고용률은 61.4%, 실업률은 2.8%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15~64세 고용률은 경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15~64세 고용률에 비해 낮음.

2021년부터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실업률과 실업자 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21~2023 여성 대상 주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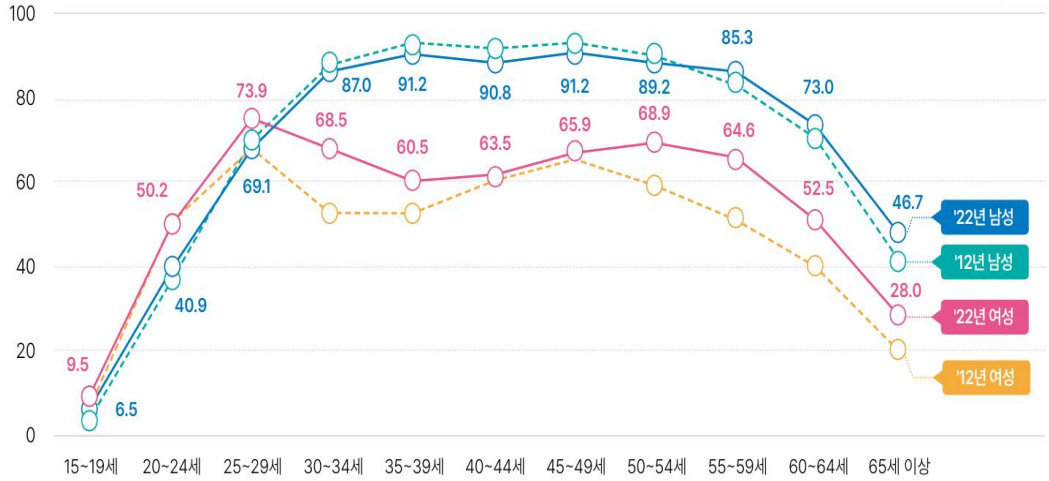
(단위: 천명, %, %p, 전년 대비)

연도	2021년	증감	2022년	증감	2023년	증감
경제활동 참가율	53.3	0.5	54.6	1.3	55.6	1.0
취업자 수	11,725	202	12,161	436	12,464	303
15~64세 고용률	57.7	1.0	60.0	2.3	61.4	1.4
실업자 수	461	△23	385	△76	353	△32
실업률	3.8	△0.2	3.1	△0.7	2.8	△0.3

자료 : 통계청 「2023년 연간고용통계 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여성 전체의 고용지표는 점차 개선되었을지라도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여성 고용률은 30세 이후 하락하여 40대 중반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3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고용률이 급속히 상승하여 50세 이전까지 90%를 상회하는 남성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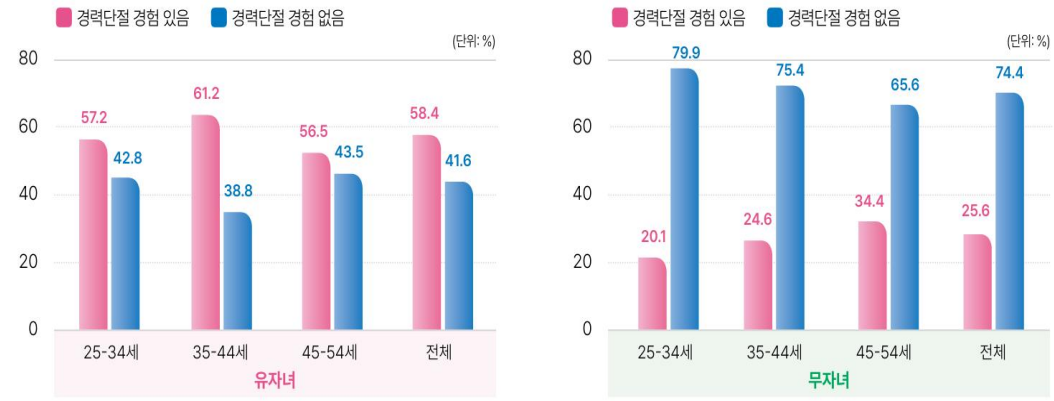
[2012년 및 2022년 연령대별 남성·여성 고용률]



자료 : 국회도서관,「데이터로 보는 저출생사회」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5~54세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경력단절 비율이 높았고, 25~34세의 경우 약 2.8배, 35~44세의 경우 약 2.5배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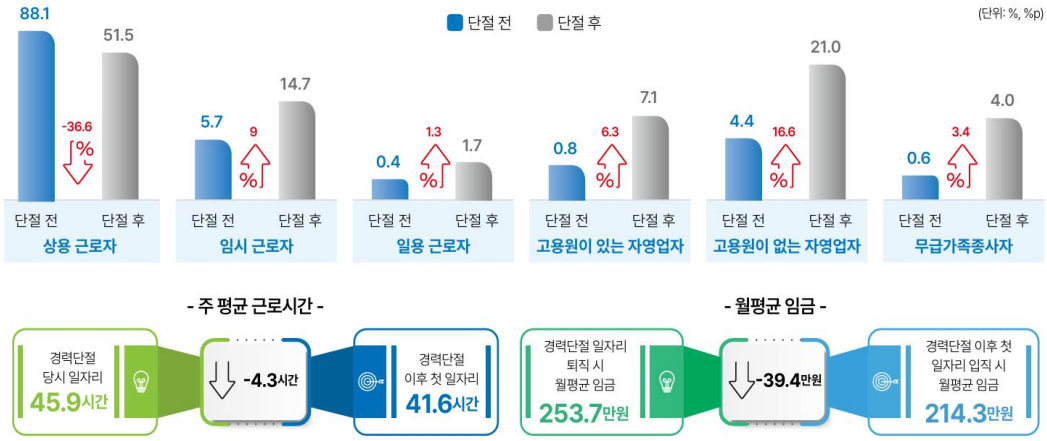
[2022년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현황]



자료 : 국회도서관,「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25~54세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현황을 보면 '상용직' 일자리 비율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비율은 증가하였음.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하거나 무급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주당 평균 근로시간 수와 월평균 임금도 감소하였음. 이는 경력단절 이후 여성의 일자리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시사함.

[2022년 경력단절 전후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 변화]



자료 :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②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

2023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2023년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경력단절여성 재취업강화·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2023년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31]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2023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동 계획은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 등을 위해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를 기반으로 추진됨.

3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년) 주요 내용]

영역		중점과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법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자료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2023년도 시행계획」

③ 주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결산

2023년 주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에는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센터운영지원, 새일인턴, 직업교육훈련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 여성재취업훈련 사업 등이 있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으로 2023년 센터운영지원·새일인턴운영·직업교육훈련을 합하여 724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음.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의 경우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사업(폴리텍)의 내역사업인 여성재취업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동 사업은 2023년 47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주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년			2024년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센터운영지원)	27,524	27,480	100.0	28,095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인턴운영)	23,642	23,642	100.0	23,642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21,425	21,343	99.6	21,731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	12,030	11,578	96.2	11,668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 확충(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100.0	4,756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임신・출산・육아 중인 여성의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에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있음.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1조 7,969억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큼.

[2023년 모성보호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집행액	본예산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301,713	326,346	326,290	347,012
		유산사산휴가급여	1,841	1,674	1,647	1,858
		육아휴직급여	1,696,352	1,806,332	1,796,995	1,986,864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93,685	128,138	130,324	149,048
		배우자출산휴가급여	7,050	6,192	6,240	8,375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①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여성재취업훈련 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후 취업자의 180일 이상 고용유지율이 각각 57.7%, 48.8%에 불과하므로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훈련의 취업 후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가족부는 2023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라함)[32]를 통해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을 활용한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예산 214억 2,500만원 중 213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었음.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2020년부터 교육과정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인원과 수료인원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9~2023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 현황]

(단위: 개, %, 명)

연도	교육과정	교육인원(A)	수료인원(B)	수료율 (B/A)	취·창업인원
2019	745	14,544	13,924	95.7	10,008
2020	658	11,023	10,532	95.5	7,770
2021	738	12,573	11,998	95.4	8,800
2022	718	12,586	11,919	94.7	8,892
2023	715	13,381	12,805	95.7	-

주) 2023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실적은 2024년 7월 이후에 집계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

다만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후 18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이 취업자 중 57.7%에 불과하는 등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이 다소 낮아 직업훈련의 성과 제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33]

32)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4년 1월 기준 전국에 159개의 새일센터가 있음.

33)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구직자훈련 유형 참여자의 취업 후 평균 180일 이상 고용유지율은 63.8%임.

[2021~2023년 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훈련) 사업 성과 정량 지표]

(단위: %, 일)

연도	직업훈련 중도탈락률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취업 후 고용유지율 (180일 이상)	직업훈련 종료 후 취업까지 소요 기간
2021	3.9	54.9	48.9	103.7
2022	4.9	55.9	54.8	105.6
2023	4.0	54.3	57.7	110.9

주) 취업률의 경우 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창업 인원 등이 제외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2021년 48.9%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나,[34] 직업훈련 후 취업한 인원의 10명 중 4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상 일반 취업자 대비 육아·돌봄 등의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율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여성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 및 제도의 확산,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동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2024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평가보고서」에서도 동 사업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직업훈련 과정의 내실화와 훈련 후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의 '여성재취업훈련'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 또는 창업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기술 교육과정으로 한국폴리텍 대학을 통해 진행되며 2023년에는 47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의 참여자는 2021년 1,322명에서 2023년 1,75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35~54세 중년여성들이 전체 참여자 중 65% 이상이었음.

34)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9~2023년 여성재취업훈련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획인원	교육인원(A)	수료인원(B)	수료율 (B/A)
2019	1,500	1,665	1,518	91.1
2020	1,200	1,328	1,194	89.9
2021	1,200	1,322	1,195	90.4
2022	1,700	1,740	1,545	88.8
2023	1,700	1,759	1,611	91.6

주) 2023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실적은 2024년 7월 이후에 집계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

[2021~2023년 여성재취업훈련 사업 참여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연령별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2021년	1,293 (100.0)	242 (18.7)	866 (67.0)	176 (13.6)	9 (0.7)
2022년	1,687 (100.0)	265 (15.7)	1,130 (67.0)	271 (16.1)	21 (1.2)
2023년	1,719 (100.0)	193 (11.2)	1,196 (69.6)	298 (17.3)	32 (1.9)

주) 매년 11월말(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자료 작성 시점) 기준 참여자 현황이므로, 1년 전체 교육 인원과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여성재취업훈련 참여 후 18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이 취업자 중 48.8%에 불과하는 등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이 다소 낮아 직업훈련의 성과 제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직업훈련종료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도 2021년 118일에서 2023년 132일로 증가하였음.

[2019~2023년 여성재취업훈련 사업 성과 정량 지표]

(단위: %, 일)

연도	중도 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180일이상)	취업 소요기간
2021년	9.2	41.1 (64.4)	43.3	118.5
2022년	8.9	42.2 (65.9)	43.3	121.9
2023년	6.6	36.7 (-)	48.8	132.6

주) 취업률의 경우 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괄호 안의 취업률은 창직인원을 포함한 취업률이며 2023년 창직인원을 포함한 취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동 사업의 경우, 폴리텍 대학의 각 캠퍼스에서 추진되었으나, 경력단절여성으로 보기 어려운 여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예컨대 2023년 서울정수캠퍼스는 경력단절 여부와는 무관히 취·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취업훈련을 제공하였으며, 진주캠퍼스의 경우 가죽공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였음.

[2023년 한국폴리텍 대학 여성재취업훈련 지원 내용]

대학명	직종명	교육일정	신청자격		교육혜택
서울정수 캠퍼스	SNS 스토어 창업	23.5.15~7.12. (월~금) 09:20~15:50	취·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상공인)		교육비, 재료비 전액 무료 (중식제공)
진주 캠퍼스	가죽공예& 인터넷창업	23.5.15~7.21 (1일 5시간) 주간	가죽공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구직자		- 교육비 및 실습재료비 전액 무료 - 교육수당 및 교통비 지급 (80% 이상 출석시) (단, 실업급여 수급자 및 소득이 있는 경우 미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학 기간 내 구직활동 면제
창원 캠퍼스	DIY가구 소품 디자인	23.4.10~7.7 09:00~12:50 (1일 4시간)	일반	- 만 15세 이상의 실업여성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 난민, 결혼이민자, 비정규직 근로자	- 훈련비 전액무료 - 실업급여수급자는 재학기간 내 구직활동 면제 - 수료후 취업 알선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80%출석시)
			우선	- 고졸미만 학력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5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 기초생활 수급권자	
강릉 캠퍼스	음료조리 실무자	23.10.4~12.28 18:20~22:10 (주5일, 1일 야간 4시간)	-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구직여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졸업까지 남은 연한이 2년인 여성 (대학교 3~4학년 가능)		- 교육비, 교재, 실습재료 무료지원 - 매월 교육훈련수당 최대 6만 6천원 - 교통비(5만원) 지급

자료: 한국폴리텍대학 각 캠퍼스의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35] 각 캠퍼스의 참여자들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이름이 여성재취업훈련이며 실제 내용은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나 한국폴리텍대학의 누리집에서는 동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소개하고 있었음.

[여성재취업훈련 사업 설명 사례]

1)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

여성재취업과정 과정안내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 또는 창업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기술 교육과정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폴리텍대학, 중장년·여성 재취업훈련 현장 소통 (24.3.21)

폴리텍대학은 중장년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훈련**으로 '신중년 특화과정'과 **'여성재취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 규모는 올해 기준 각각 2,550명, 1,700명 수준이다.

3) 2024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

(참여 대상)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자료 : 한국폴리텍대학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용유지율과 같은 직업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대별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방안 마련 필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 서비스 수요 집중으로 인해 수요-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대기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5)「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2020~2024)-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되었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①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②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유형을 가~라형까지 구분하여 지원 단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2023년 시간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

(단위: 원/시간)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080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080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	-	11,080원	-	11,080원

주) 2016.1.1. 이후 출생아동은 A형, 2015.12.31. 이전 출생아동은 B형임
자료 : 여성가족부

[2023년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

(단위: 원/시간)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1,080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23년 돌봄수당 예산은 2022년 대비 시간당 기준단가 인상(10,550원→11,080원), 지원시간 확대(연 840시간→960시간, 일 3.5시간→4시간) 등으로 인해 798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82.3%에 그쳐 전년 대비 13.3%p 하락하였음.

[2019~2023년 돌봄수당 사업 실집행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169,133	169,133	169,133	169,133	-	169,133	135,521	-	33,612	80.1
2020	173,342	173,342	177,685	177,685	-	177,685	173,852	-	3,833	97.8
2021	180,158	180,158	184,338	184,338	-	184,338	182,451	-	1,887	99.0
2022	202,031	202,031	204,912	204,912	-	204,912	195,935	-	8,977	95.6
2023	281,874	281,874	281,874	281,874	-	281,874	231,883	-	49,991	82.3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돌봄수당 예산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인 가·나·다 유형 85,0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된 가구 수는 72,457가구에 불과하였음.[36)]

[2018~2023년 돌봄수당 사업 정부 지원 이용 가구(가·나·다) 수]

(단위 : 가구)

연도	총계	시간제				영아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소계	가형	나형	다형	소계
2019	49,582	29,907	13,351	3,381	46,639	1,953	870	120	2,943
2020	46,153	28,650	12,000	2,781	43,431	1,843	812	67	2,722
2021	55,543	34,584	15,179	3,434	53,197	1,630	666	50	2,346
2022	64,595	40,315	17,933	3,804	62,052	1,779	708	56	2,543
2023	72,457	45,394	21,134	4,222	70,750	1,231	440	36	1,707

주) 시간제에 시간제기본형, 시간제종합형, 질병감염서비스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수당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특정시간대 돌보미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2022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 가구의 평일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은 '오전 7~9시' 사이, '오후 4~7시' 사이로 부모의 출퇴근과 자녀의 등하원(등하교) 시간 사이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36) 시간제 이용 가구 수가 확대된 것과 달리 영아종일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안전사고 부담 등으로 아이돌보미가 영아종일제 활동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간대(평일)]

(단위: %)

오전						오후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시	1-2시	2-3시	3-4시	4-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6.8	31.3	36.5	15.6	10.5	10.3	10.4	12.2	14.9	23.0	48.0	59.0	58.0	37.9	18.3	9.2

주) 중복응답
자료: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위와 같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수요는 출퇴근 시간대와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는 반면, 동 시간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수요와 공급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 가구 수까지 증가하여 2023년에는 13,031개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

[2020~2023년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대기 가구 수]

(단위: 가구)

연도	합계	시간제, 영아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20	2,623	539	554	141	1,389
2021	6,842	1,357	1,421	481	3,583
2022	14,807	3,333	3,268	1,112	7,094
2023	13,031	2,881	3,068	996	6,086

주)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과 돌봄수당 인상, 영아돌봄 추가수당 지원, 정부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활동 아이돌보미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2018~2023년 연평균 7.3%의 서비스요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8~2023년 아이돌보미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5%로, 서비스 요금 인상과 정부지원의 확대를 통한 급여 수준 개선만으로는 돌보미 수 증가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37]

37) 특정시간대 아이돌보미 미스매치와 대기가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은 2020년 227개에서 2024년 7월 229개로 2개 증가하였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서비스제공기관을 2024년말 233개소, 2025년 243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명하였음.

[2018~2023년 아이돌보미 수,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최저임금 현황]

(단위: 명,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아이돌보미 수	23,675	24,677	24,469	25,917	26,527	28,071	-
전년 대비 증가율	-	4.2	△0.84	5.9	2.3	5.8 (3.5)	-
서비스요금	7,800	9,650	9,890	10,040	10,550	11,080	11,630
전년 대비 증가율	20.0	23.7	2.5	1.5	5.1	5.0 (7.3)	5.0
최저임금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전년 대비 증가율	16.4	10.9	2.9	1.5	5.0	5.0 (5.0)	2.5

주) 2023년 서비스요금, 최저임금 전년 대비 증가율 하단의 괄호 안 수치는 2018~202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체계 및 아이돌보미 양성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8)]

③ 모성보호지원 급여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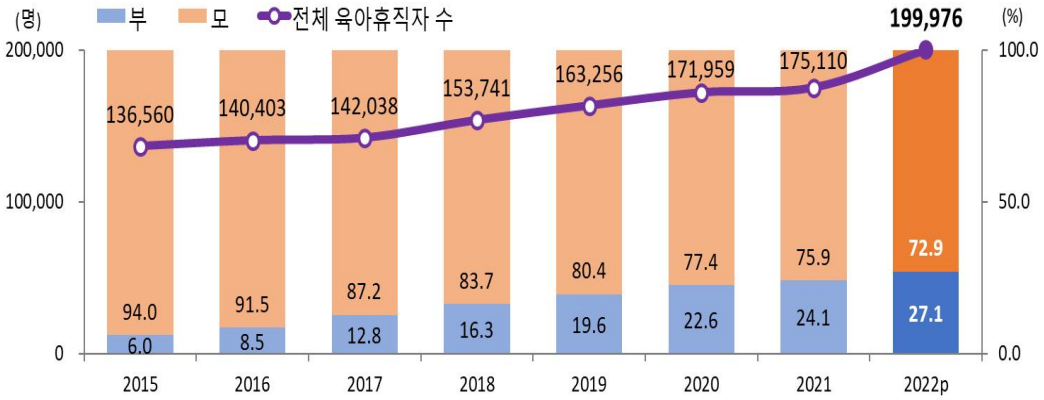
2024년 정부는 모성보호지원 급여의 소득대체율 제고 및 상한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업급여 계정이 2023년에도 법정 적립배율을 연례적으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과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업은 저출생 뿐만 아니라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계속고용을 유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임.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8)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대상을 추가 확대하였고, 내일배움카드 교육기관이 2024년 2월 47개소에서 6월 5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요양보호사 등 대상 40시간 단축교육과정(종전 120시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15~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성별 비중]



자료: 통계청「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

정부도 2024년 주요 대책에서 모성보호지원 급여의 인상과 상한 확대 등을 강조하였음.「사회이동성 개선방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 ②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급여상한 및 지원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24년 정부 주요 정책 중 모성보호지원 급여 지원 관련 내용]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24.5.1.)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촉진 기반 조성 **-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소득대체율 제고** * 현재 통상임금 80%, 月 상한 1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 확대** **-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촉진 위해 사업주 지원금 재설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4.6.19)	**○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하고, 특히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더 많이 인상 ‣ 휴직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의 최대 상한액 인상(現 150 → 250만원) ‣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유인 제공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하여 소득대체율을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상한 및 지원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月기준급여상한액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 인상 검토 ‣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고용부)

자료: 정부 발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 인상과 소득대체율 제고 등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같은 모성보호 육아지원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2023년에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연도말 적립금이 연례적으로 법정 최저한도에 미치지 못하였음.[39]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뿐만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등도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보고있음.

[2023년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 계정별 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배)

계정(근로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수 입(A)	6,188,433	5,169,062	5,169,550	4,123,762
	사업비(B)	6,570,643	6,632,479	3,918,207	2,710,074
	수지차(A-B)	△382,211	△1,463,417	1,251,344	1,413,688
	연말적립금(C)	2,780,008	1,316,337	2,565,764	3,979,414
	적립금배율(C/B)	0.4	0.2	0.7	1.5
실업급여	수 입(A)	13,628,678	14,814,055	13,567,529	14,387,917
	사업비(B)	13,885,952	14,413,779	14,132,507	14,330,660
	수지차(A-B)	△257,275	400,277	△564,978	57,258
	연말적립금(C)	3,866,572	4,266,495	3,695,306	3,752,509
	적립금배율(C/B)	0.3	0.3	0.3	0.3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모성보호급여는 2조 2,614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는 전체 실업급여 계정지출의 15.8%임. 모성보호급여예산이 실업급여계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11.2%)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 예산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17.6%를 차지함.

39)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2019~2024년 실업급여 계정 지출 및 모성보호급여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급여(B)				비율 (B/A)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19	9,855,770	1,350,031	268,479	1,058,853	21,095	13.7
2020	13,881,241	1,561,358	285,736	1,212,143	54,995	11.2
2021	14,413,779	1,684,959	289,430	1,297,525	89,669	11.7
2022	14,132,507	2,077,151	304,849	1,657,231	107,330	14.7
2023	14,330,660	2,261,495	326,290	1,796,996	130,324	15.8
2024 (예산)	14,171,151	2,496,830	347,012	1,986,864	149,048	17.6

주) 모성보호급여에는 유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도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급여 상한액과 지원기간이 확대될 경우 급여 수요 증가 및 급여 지출액 증가가 예상됨.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확대되어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40]

모성보호급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0)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 발생과 고용상태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고용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적립배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가) 개 요

① 장애인 고용지표 현황

2023년 장애인 실업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3.4%였으나 고용률(36.1%)과 경제활동참가율(37.4%)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에 비해 낮음.

2023년 5월 기준 전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4%이며, 실업률은 3.4%, 고용률은 36.1%임.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각각 22.9%p, 21.9%p 높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2023년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2023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589,047	968,348	935,261	33,087	1,620,699	37.4	3.4	36.1
남성	1,491,392	702,266	677,241	25,025	789,126	47.1	3.6	45.4
여성	1,097,655	266,082	285,020	8,062	831,573	24.2	3.0	23.5
15~29세	126,779	52,449	50,253	2,195	74,330	41.4	4.2	39.6
30~39세	112,321	59,182	55,611	3,571	53,139	52.7	6.0	49.5
40~49세	220,897	121,684	118,503	3,181	99,213	55.1	2.6	53.6
50~59세	410,764	226,179	217,965	8,213	184,585	55.1	3.6	53.1
60세 이상	1,718,286	508,855	492,929	15,926	1,209,431	29.6	3.1	28.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1~2023년 15세 이상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실업률은 1.1%p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각각 0.7%p, 0.3%p 감소하였음. 이는 실업자 중 상당 수가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함. 실제 2023년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337명 감소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22,168명 증가하였음.

[2021~2023년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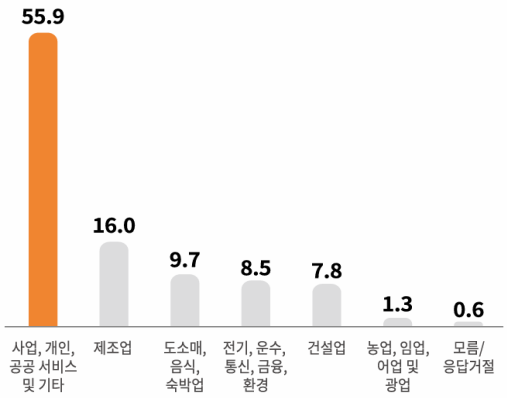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21	2,574,907	959,950	891,804	68,146	1,614,957	37.3	7.1	34.6
2022	2,583,530	984,999	940,575	44,424	1,598,531	38.1	4.5	36.4
2023	2,589,047	968,348	935,261	33,087	1,620,699	37.4	3.4	36.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한눈에 보는 장애인고용통계」(각 년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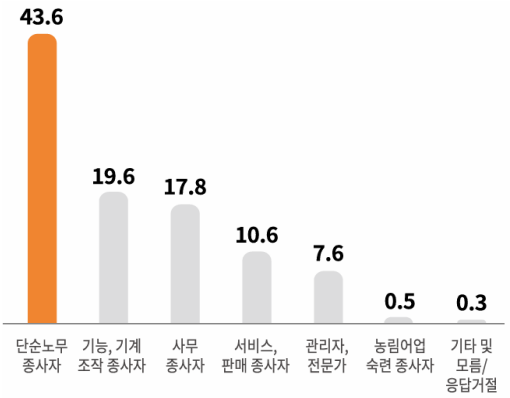
종사 분야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3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직장]



[2023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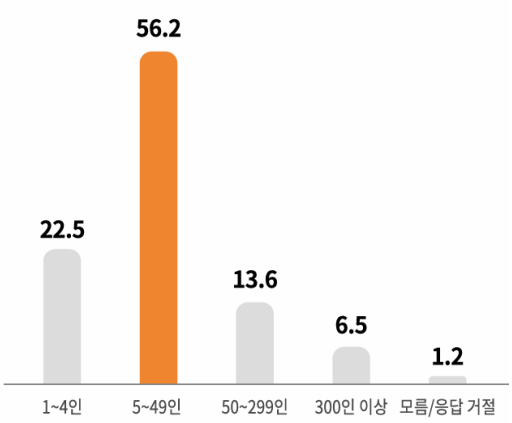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한눈에 보는 장애인고용통계」(각 년도 5월 기준)

사업체 규모 및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장애인임금근로자는 5~49인 사업체 규모에서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음. 임금근로자의 각 년도 5월 기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19년 197.1만원에서 2023년 199.5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체 인구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64.3만원에서 300.7만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와의 임금 격차는 확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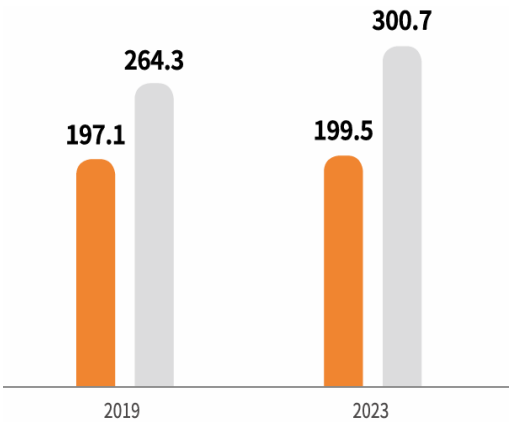
[2023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장 사업체 규모별 비율]

(단위: %)



[2019~2023년 장애인 임금근로자 및 전체 인구 근로자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만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한눈에 보는 장애인고용통계」(각 년도 5월 기준)

②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①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②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③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④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조성을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2023년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에 따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41]

동 계획에는 ①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②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③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④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 주요 내용]

추진과제1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추진과제2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 표준사업장 신규설립, 규모화 지원 - 장애인 고용기여 시 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 집중관리 -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강화 및 정보공시 추진 -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과제3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강화**	**추진과제4**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 이력관리 기반의 개인별 고용지원 체계 구축 - 대상별 특화서비스 제공 - 미래사회 대비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물적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 여건 조성 - 장애인 공무원 지원 확대, 인사제도 개선 추진	

자료:「제 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23~2027)」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주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결산

2023년 주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등이 있음.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이 2023년 3,086억 3,500만원이 집행되어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지원금 수요 증가로 당초 계획대비 270억이 더 집행되었음.

장애인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2,072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음.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806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주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년			2024년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281,635	308,635	109.5	311,87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232,998	232,998	100.0	248,006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	207,299	207,299	100.0	222,695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81,906	80,686	98.5	88,585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44,883	41,583	92.6	52,88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①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격차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지표를 보면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1%인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24.2%이며, 실업률의 경우 남성이 3.6%, 여성이 3.0%, 고용률의 경우 남성이 45.4%, 여성이 23.5%로 여성 장애인의 저조한 경제활동과 낮은 고용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2021~2023년 15세 이상 남성 및 여성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성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21년	남성	1,482,416	697,101	649,036	48,065	785,315	47.0	6.9	43.8
	여성	1,092,491	262,849	242,768	20,081	829,642	24.1	7.6	22.2
2022년 상반기	남성	1,487,147	718,974	686,954	32,020	768,173	48.3	4.5	46.2
	여성	1,096,383	266,025	253,622	12,404	830,358	24.3	4.7	23.1
2023년 상반기	남성	1,491,392	702,266	677,241	25,025	789,126	47.1	3.6	45.4
	여성	1,097,655	266,082	258,020	8,062	831,573	24.2	3.0	23.5

자료: 2021~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남성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19.1%가 임시직 근로자이지만, 여성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39.3%로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년 평균임금의 경우 117만원으로, 남성 장애인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저임금의 다소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보임.

[2023년 남성 및 여성 장애인 근로형태 및 최근 3개월 평균임금]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37.0	40.2	28.7
	임시근로자	24.6	19.1	39.3
	일용근로자	9.6	9.5	9.7
	합계	71.2	68.8	77.7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4	6.4	2.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3	24.4	13.4
	무급가족종사자	2.1	0.5	6.2
	합계	28.8	31.2	22.3
최근 3개월 평균임금		199.5	234.8	117.1

자료: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와 같은 고용률 격차는 부분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고령자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15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보아도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과 경제활동률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함.[42]

[2021~2023년 15세~64세 남성 및 여성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성별	15세~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21년	남성	837,685	504,667	469,166	35,501	333,018	60.2	7.0	56.0
	여성	406,858	153,662	140,072	13,589	253,196	37.8	8.8	34.4
2022년 상반기	남성	829,657	508,668	484,456	24,212	320,989	61.3	4.8	58.4
	여성	406,563	145,633	137,273	8,360	260,930	35.8	5.7	33.8
2023년 상반기	남성	802,417	469,791	451,441	18,350	332,626	58.5	3.9	56.3
	여성	388,456	147,410	141,302	6,109	241,045	37.9	4.1	36.4

자료: 2021~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경력단절,[43] 가사부담 및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44]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42) 2023년 전체 여성의 15~64세 고용률은 61.4%로 전체 여성 고용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43)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여성과 같이 40대 고용률이 감소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남.
<2023년 전체 여성 및 여성 장애인 연령대별 고용률 >

2023년 15~64세 전체 장애인 중에서 여성 장애인의 비율은 32.6%로 여성 장애인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영향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의 여성장애인 고용과 여성 장애인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은 다소 저조한 상황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하나,[45]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은 2019~2023년 동안 매년 30% 미만임.

[2019~2023년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성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애인고용인원		192,772	203,347	207,795	213,653	221,522
	남성	145,843	151,151	152,738	155,468	159,794
	여성	46,929 (24.3)	52,196 (25.7)	55,057 (26.5)	58,185 (27.2)	61,728 (27.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2023년 동안 매년 남성의 지급연인원[46]이 여성의 지급연인원의 2배 이상이었음.[47]

구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50.4	68.0	66.3	68.9	38.6
장애인	36.7	39.1	34.3	34.6	19.7

자료: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44) 2023년 여성 비경제활동장애인 활동상태: 심신장애 32.3%, 가사 30.3%, 쉬었음 20.3%

4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46)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고용된 월에 대하여 매월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장려금 지급 개월 수를 반영하여 수혜 인원을 산정하는 '지급연인원'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지원규모를 나타내기에 적정함. 예를 들어 1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12개월간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되어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연인원 12명으로 계산됨.

47) 2023년의 경우 여성장애인 지급연인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고용장려금 단가 변화의 영

[2019~2023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남성 및 여성 지급연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남성 지급연인원			여성 지급연인원		
	경증 남성	중증 남성	남성 합계	경증 여성	중증 여성	여성 합계
2019	195,518	189,832	385,350	68,378	98,996	167,374
2020	196,765	198,190	394,955	66,760	104,986	171,746
2021	191,709	220,181	411,890	68,324	116,924	185,248
2022	182,086	233,184	415,270	66,704	126,328	193,032
2023	195,225	255,194	450,419	75,850	139,547	215,397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총량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

법률명	조항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제30조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발생분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인상되었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변화>

구분	남성 장애인 지급 단가		여성 장애인 지급 단가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50만원	40만원	60만원
2020~2022년 발생분	30만원	60만원	45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70만원	50만원	9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및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같은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2023년 의무 이행이 다소 미진한 부문이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48)]

2023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대비 민간기업은 3.1%,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3.6%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2024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고용비율이 3.8%로 높아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변화 경과]

(단위: 명, %)

<table>
<tr><th colspan="2">연도
적용대상</th><th>1991~2008</th><th>2009</th><th>2010~2011</th><th>2012~2013</th><th>2014~2016</th><th>2017~2018</th><th>2019~2021</th><th>2022~2023</th><th>2024</th></tr>
<tr><td rowspan="2">국가·
지자체</td><td>공무원</td><td>2.0%</td><td colspan="4">3.0%</td><td>3.2%</td><td>3.4%</td><td>3.6%</td><td>3.8%</td></tr>
<tr><td>근로자</td><td colspan="2">미적용</td><td>2.3%</td><td>2.5%</td><td>2.7%</td><td>2.9%</td><td>3.4%</td><td>3.6%</td><td>3.8%</td></tr>
<tr><td rowspan="3">공공
기관</td><td>공기업,
준정부기관</td><td rowspan="3" colspan="2">2.0%</td><td>3.0%</td><td>3.0%</td><td rowspan="2">3.0%</td><td rowspan="2">3.2%</td><td rowspan="2">3.4%</td><td rowspan="2">3.6%</td><td rowspan="2">3.8%</td></tr>
<tr><td>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td><td rowspan="2">2.3%</td><td rowspan="2">2.5%</td></tr>
<tr><td colspan="2">민간기업</td><td>2.7%</td><td>2.9%</td><td>3.1%</td><td>3.1%</td><td>3.1%</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4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국방부·교육부 및 교육청 등에서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국방부 및 지방교육청에서 주로 납부하였는데 ① 2021년부터 군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이 되었으나 격오지 배치, 탄약·총포 관리 등 특수업무 비중이 높은 점, ② 지방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교사 확보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49] 2024년부터는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규정이 종료되어 부담금 액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50]

[전체 장애인 부담금 납부 총액 상위 5개 기관]

(단위: 명, %, 백만원)

기관명	공무원					비공무원					부담금 총액
	정원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공무원수	고용률	부담금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경기도 교육청	105,264	3,790	1,763	1.67	32,394	35,636	1,282	1,426	4.00	-	32,394
국방부	40,309	1,452	884	2.19	8,714	11,751	423	237	2.02	2,698	11,412
경상남도 교육청	31,102	1,120	590	1.90	7,272	16,199	583	560	3.46	705	7,977
경상북도 교육청	24,231	873	378	1.56	7,750	11,426	411	435	3.81	60	7,809
인천광역시 교육청	23,946	863	381	1.59	7,709	10,752	387	384	3.57	-	7,709

주) 2023년 12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전체 장애인 부담금(공무원 기준) 납부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

(단위: 명, %, 백만원)

기관명	정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공무원 수	고용률	부담금
국방부	40,309	1,452	884	2.19	8,714
교육부	27,465	989	645	2.35	4,923
외교부	2,283	83	75	3.29	172
환경부	2,734	99	94	3.44	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258	1,270	1,288	3.65	70

주) 2023년 12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4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2024.5.23.

5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2021.7.20.)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전체 장애인 부담금(비공무원 기준) 납부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

(단위: 명, %, 백만원)

기관명	상시근로자 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부담금
국방부	11,751	423	237	2.02	2,698
교육부	9,742	350	285	2.93	774
외교부	1,732	62	16	0.92	711
행정안전부	3,556	128	92	2.59	462
법무부	2,257	81	57	2.53	407

주) 2023년 12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국방부는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공무원 275명, 근로자 60명이 미달되었고, 2021년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공무원 307명, 근로자 104명이 미달되었으며, 2023년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공무원 568명, 근로자 186명이 미달되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2019~2023년 국방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액]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942	942	1,048	1,290	1,452
	고용인원(ⓑ)	667	731	741	867	884
	의무고용 미달인원 (ⓐ-ⓑ)	275	211	307	423	568
	부담금액	-	3,060	4,358	6,458	8,714
근로자	의무고용 인원(ⓐ)	275	296	333	381	423
	고용인원(ⓑ)	215	239	229	256	237
	의무고용 미달인원 (ⓐ-ⓑ)	60	57	104	125	186
	부담금액	870	738	1,206	1,661	2,698
의무고용률		3.4	3.4	3.4	3.6	3.6

주 1)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가 적용된 수치임
2)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공제 후 (일시납공제 등) 금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함.

[전체 장애인 부담금 납부액 상위 5개 공공기관]

(단위: 명, %, 백만원)

기관명	정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부담금
서울대학교병원	15,791	568	424	2.69	2,364
국방과학연구소	3,595	129	55	1.53	1,280
전남대학교병원	5,692	204	125	2.20	1,06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119	112	60	1.92	923
한국원자력의학원	2,115	76	16	0.76	889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계획(2023~2027)」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사 수요 발생 시 장애인 고용 의무를 고려한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직접고용이 어려운 부처나 기관의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연계고용 등의 대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음.[51]

③ 정신장애 직업훈련 지원 정책의 내실화 필요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정신장애 유형의 훈련 중도 탈락률이 높고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장애 유형의 직업훈련 성과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신 장애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며,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나 지속적인 치료에서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감정조절 · 행동 ·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52]

---

5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5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023년을 기준으로 정신장애유형 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가장 고용률이 낮아 고용에 취약한 장애유형으로 보임.

[15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단위: 명, %)

장애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지체장애	1,174,598	563,523	594,599	48.0
뇌병변장애	237,717	32,359	204,481	13.6
시각장애	249,443	104,128	138,584	41.7
청각장애	422,382	109,713	309,489	26.0
언어장애	18,369	5,705	12,437	31.1
지적장애	198,975	54,211	142,887	27.2
자폐성장애	20,025	5,617	14,151	28.0
정신장애	104,424	11,015	92,749	10.5
신장장애	105,736	29,097	74,483	27.5
심장장애	4,897	1,842	3,003	37.6
호흡기장애	11,431	2,290	9,055	20.0
간장애	14,787	7,362	7,315	49.8
안면장애	2,711	1,369	1,237	50.5
장루·요루 장애	16,663	5,818	10,689	34.9
뇌전증 장애	6,889	1,211	5,540	17.6
전체	2,589,047	935,261	1,620,699	36.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 훈련**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3년의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실적을 보면, 2023년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정신장애 유형 참여자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고용유지율이 낮음.

2019~2023년 동안 전체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자의 중도탈락률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이었으나, 정신장애의 경우 매년 10% 이상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1〉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2019~2023년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 훈련 사업 장애 유형별 훈련 중도탈락률]

(단위: %)

유형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체장애	11.6	8.6	9.0	8.2	4.4
뇌병변장애	12.5	10.9	4.8	8.6	6.1
시각장애	8.6	5.4	7.3	9.8	6.1
청각장애	10.2	7.6	7.5	6.8	5.9
발달장애	8.4	7.5	7.3	7.1	7.3
정신장애	25.7	12.2	14.8	10.0	10.7
기타장애	10.7	34.0	12.8	12.6	2.7
전체	10.7	8.6	7.9	7.8	6.6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 후 고용유지율의 경우도 정신장애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데, 정신장애 장애인이 일반인과 신체적인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율이 낮은 것은 업무시간 증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임.

[2019~2023년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 훈련 사업 장애 유형별 고용유지율]

(단위: %)

유형	고용유지기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잠정)
지체장애	6개월이상	69.0	76.4	70.1	78.9	73.3
	1년이상	54.0	60.5	59.8	53.8	17.8
뇌병변장애	6개월이상	69.2	66.1	69.4	78.4	73.8
	1년이상	51.0	51.3	59.0	52.7	21.5
시각장애	6개월이상	65.0	66.2	72.9	77.8	76.2
	1년이상	53.0	53.2	64.5	62.9	20.5
청각장애	6개월이상	69.2	69.5	71.5	76.4	71.7
	1년이상	51.5	58.3	59.8	61.8	22.8
발달장애	6개월이상	72.0	70.7	69.0	74.1	76.3
	1년이상	63.0	55.5	49.8	51.3	25.3
정신장애	6개월이상	64.4	55.2	57.5	54.3	55.6
	1년이상	46.6	44.8	42.5	32.8	14.5
기타장애	6개월이상	75.0	79.5	74.8	78.0	75.4
	1년이상	56.3	69.9	60.2	45.9	18.0
전체	6개월 이상	70.4	71.0	69.5	74.8	74.4
	1년 이상	57.6	56.4	53.8	52.2	22.8

주) 고용유지율은 2024년 5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한 인원으로 2023년의 경우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유지율 증가 예정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개발 훈련 지원 사업의 전체 규모와 실적도 중요하지만, 장애 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성과가 저조하고 고용이 어려운 장애 유형의 관리 또한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는 정신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53]

53)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소득보장 다음으로 의료보장을 바라고 있었으며, 의료비 문제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격 탈피를 주저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망설이고 있었음. 이는 입원과 퇴원, 약물복용을 해야 하는 정신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이며, 정신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약물복용 등 정신장애 의료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3. 건강보험 재정 사업

가. 개 요

(1) 건강보험 재정 현황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사업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확보된 건강보험 수입을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3-2023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입	451,733	485,024	524,009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949,113
(증가율)	(8.02)	(7.37)	(8.04)	(6.33)	(4.09)	(7.10)	(9.58)	(7.87)	(9.63)	(10.29)	(6.91)
·보험료수입	386,117	412,404	440,476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815,180
·정부지원금(일반회계)	48,086	53,030	55,789	52,060	48,828	52,001	59,721	73,482	76,554	86,843	91,494
·정부지원금(증진기금)	9,986	10,191	15,185	18,914	19,011	18,801	18,082	18,801	19,167	18,149	18,208
·기타수입	7,544	9,399	12,559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24,231
지 출	415,287	439,155	482,281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907,837
(증가율)	(7.02)	(5.75)	(9.82)	(9.14)	(8.85)	(8.73)	(13.80)	(4.07)	(5.28)	(9.63)	(6.62)
·보험급여비1)	402,723	424,939	465,009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18,291	757,265	831,660	887,961
관리운영비 등	12,564	14,216	17,272	15,798	17,539	17,041	18,457	19,425	19,427	19,822	19,876
당기수지	36,446	45,869	41,728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41,276
누적수지	82,203	128,072	169,800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보험료율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6.86	6.99	7.09
(인상률)	(1.60)	(1.70)	(1.35)	(0.90)	(0.00)	(2.04)	(3.49)	(3.20)	(2.89)	(1.89)	(1.49)
수가인상률2)	2.36	2.36	2.20	1.99	2.37	2.28	2.37	2.29	1.99	2.09	1.98

주 1) 보험급여비에는 코로나19 선지급 포함(2020년 8,767억 원, 2021년 △8,756억 원, 2022년 △2억 원)
2) 수가인상률 및 환산지수는 요양기관 종별로 상이하여, 평균 수가인상률을 의미함.
3) 현금흐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3~2023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2023년 현재 94조 9,113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90조 7,837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2013년 약 45조원에서 10년만에 약 94조원으로, 지출은 2013년 약 42조원에서 2023년 90조원 이상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당기 수지 측면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당기 수지 적자를 제외하면,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당기 수지 흑자가 나타났고, 당기 수지 흑자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2조 8,229억원에서 2023년 4조 1,276억원으로 1.5배 가량 확대됨.

지속된 당기 수지 흑자에 따라 누적 수지는 2013년 8조 2,203억원에서 2023년 27조 9,97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중 당해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까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당기 수지 흑자에 따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으로 2023년 현재 27조 9,977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임.

평균 보험료율은 2013년 5.89%에서 2023년 7.09%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2023년의 인상률은 전년 대비 1.49% 수준이며, 평균 수가인상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98% 인상되었음.

(2)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장기요양보험 재정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사업 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수입 예산은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수입・정부지원금・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지출 예산은 보험급여비・관리운영비 및 기타지출 등으로 구성됨.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수입액은 2013년 3조 7,472억원에서 2023년에는 15조 721억원으로 4배 이상이 늘어났으며, 지출 또한 2013년 3조 2,915억원에서 2023년 13조 6,966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당기 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도 4,557억원에서 2023년 1조 3,75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누적 수지는 2013년 1조 9,575억원에서 2023년 4조 7,82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음.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장기요양보험 재정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준비금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를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누적 수지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 2023년도 말 기준 4조 7,827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임.

[2013~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37,472	40,439	43,253	46,635	50,846	60,657	74,977	94,001	115,414	136,605	150,721
(증감률)	(8.0)	(7.9)	(7.0)	(7.8)	(9.0)	(19.3)	(23.6)	(25.4)	(22.8)	(18.4)	(10.3)
· 보험료수입	24,969	26,612	28,479	30,506	32,328	38,474	48,506	61,605	77,314	91,688	102,266
· 정부 지원금	4,591	5,033	5,166	5,525	5,822	7,107	8,912	12,414	15,186	18,014	19,916
· 국가·지자체 부담금	7,450	8,068	8,812	9,773	12,069	14,385	16,986	19,552	22,473	26,179	27,215
· 기타수입	462	726	796	831	627	691	573	430	441	724	1,324
지출	32,915	37,399	42,344	47,067	54,139	66,758	81,579	93,436	105,668	119,941	136,966
(증감률)	(13.1)	(13.6)	(13.2)	(11.2)	(15.0)	(23.3)	(22.2)	(14.5)	(13.1)	(13.5)	(14.2)
· 보험급여비	30,898	35,012	39,738	44,120	51,127	63,521	78,127	89,706	101,840	115,971	132,778
· 관리운영비	1,899	2,269	2,444	2,774	2802	3,058	3,256	3,539	3,629	3,743	3,942
· 기타지출	118	118	162	173	210	179	196	191	199	227	246
당기수지	4,557	3,040	909	△432	△3,293	△6,101	△6,602	565	9,746	16,664	13,755
누적수지	19,575	22,615	23,524	23,092	19,799	13,698	7,097	7,662	17,408	34,072	47,827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 (인상율)	6.55 (-)	6.55 (-)	6.55 (-)	6.55 (-)	6.55 (-)	7.38 (12.7)	8.51 (15.3)	10.25 (20.45)	11.52 (12.39)	12.27 (6.51)	12.81 (4.40)
수가인상율	4.67	4.30	-	0.97	4.08	11.34	5.36	2.74	1.37	4.32	4.70

주 1) 수가인상률 및 환산지수는 요양기관종별로 상이하여, 평균 수가인상률을 기재하였음
2) 현금 흐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은 2013년 6.55%에서 2023년 12.81%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으며, 수가 인상률 또한 2018년 크게 증가한 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3) 건강보험 재정 2023년도 결산 현황

(가) 건강보험 재정 2023년도 항목별 수입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 중인 건강보험사업 회계의 2023년도 항목별 수입 현황을 보면, 예산액 92조 6,781억 7,800만원 대비 3조 693억 6,000만원이 늘어난 95조 7,475억 3,800만원이 수납(수입률 103.3%)되었음.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여 정부지원금인 차상위지원금과 농어촌경감지원금이 감소하였으며, 일산병원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또한 예산액 3,901억 9,800만원 대비 948억 2,600만원 줄어든 2,953억 7,200만원의 수입(수입률 77.7%)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사업 회계의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수입액 (B)	예산 대비 (B-A))	수입률 (B/A*100)
합 계	92,678,178	95,747,538	3,069,360	103.3
□ 일반회계	92,259,302	95,421,895	3,162,593	103.4
○ 사업수입	78,982,519	82,013,087	3,030,568	103.8
- 보험료수입	78,982,519	82,013,087	3,030,568	103.8
○ 임대사업수입	574	517	△57	90.1
○ 정부지원금	11,598,928	11,565,637	△33,291	99.7
- 건강보험국고지원금	9,149,408	9,149,408	-	100.0
- 담배부담금	1,820,839	1,820,839	-	100.0
- 차상위지원금	390,121	359,363	△30,758	92.1
- 농어촌경감지원금	238,560	236,027	△2,533	98.9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수입	65,359	65,209	△150	99.8
○ 사업외수입	1,412,975	1,777,445	364,470	125.8
- 자산운영수입	372,700	568,909	196,209	152.6
- 징수금 등 수입	589,279	627,010	37,731	106.4
- 기타수입	450,996	581,526	130,530	128.9
○ 이월잉여금	198,947	0	△198,947	-
□ 특별회계(일산병원)	418,876	325,643	△93,233	77.7
○ 사업수입	390,198	295,372	△94,826	75.7
○ 사업외수입	14,816	17,852	3,036	120.5
○ 일반회계전입	13,862	12,419	△1,443	89.6

주) 발생주의 수입 실현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나) 건강보험 재정 2023년도 항목별 지출현황

건강보험 재정의 2023년도 항목별 지출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액 92조 6,733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65억 1,100만원 및 추경 증액 48억 1,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2조 7,746억 8,900만원 중 91조 9,129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636억 9,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980억 2,300만원이 불용됨.

보험급여비에서 예산액 90조 564억 900만원 중 89조 4,737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5,826억 2,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업비에서 예산현액 4,119억 3,500만원 중 3,364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7%)되었음.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 항목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 결정 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추경				
합 계	92,673,364	96,511	15,319 △15,319	5,206 △5,206	4,814	92,774,689	91,912,970	63,696	798,023
□ 일반회계	92,254,488	92,062	15,319 △15,319	2,888 △2,888	4,814	92,351,364	91,543,643	61,966	745,755
○ 사업비용	90,960,709	4,202	-	△2,888	4,814	90,966,837	90,308,616	5,150	653,071
- 보험급여비	90,056,409	-	-	-	-	90,056,409	89,473,780	-	582,629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비	60,545	-	-	-	4,814	65,359	65,209	-	150
- 주요사업비	410,621	4,202	-	△2,888	-	411,935	336,493	5,150	70,292
- 심평원부담금	433,134	-	-	-	-	433,134	433,134	-	-
○ 행정운영경비	825,392	-	15,302	-	-	840,694	821,086	-	19,608
- 인건비	777,767	-	15,302	-	-	793,069	778,947	-	14,122
- 기본경비	47,625	-	-	-	-	47,625	42,139	-	5,486
○ 통합징수분담금	217,118	-	-	-	-	217,118	213,187	-	3,931
○ 사업외비용	94,935	70	17	2,888	-	97,910	81,909	74	15,927
- 잡손실	18,863	-	17	-	-	18,880	19,185	-	△305
- 분담금	39,869	-	-	2,888	-	42,757	42,248	-	509
- 타기관수탁사업	36,203	70	-	-	-	36,273	20,476	74	15,723
○ 비유동자산	105,157	87,790	-	-	-	192,947	118,845	56,742	17,360
○ 예비비	51,177	-	△15,319	-	-	35,858	-	-	35,858
□ 특별회계(일산병원)	418,876	4,449	-	2,318 △2,318	-	423,325	369,327	1,730	52,268
○ 사업비용	383,774	1,404	-	458 △458	-	385,178	344,425	-	40,753
○ 사업외비용	605	-	-		-	605	998	-	△393
○ 비유동자산	26,552	3,045	-	1,860 △1,860	-	29,597	23,904	1,730	3,963
○ 예비비	7,945	-	-		-	7,945	-	-	7,945

주) 발생주의 지출 실현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4) 장기요양보험 재정 2023년도 결산 현황

(가) 장기요양보험 재정 2023년도 항목별 수입현황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수입 현황을 보면, 예산액 14조 4,738억 3,400만원 대비 5.5%인 7,994억 4,700만원이 증가한 15조 2,732억 8,100만원의 수입액을 나타내어 수입률은 105.5% 수준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항목에서 예산액 10조 281억 4,900만원 대비 2,926억 9,400만원 증가한 10조 3,208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자산 운영 수입은 991억 9,400만원, 징수금 등 수입이 1,231억 7,100만원의 수입액을 각각 나타냈으며, 잉여금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음.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수입액 (B)	예산 대비 (B-A)	수입률 (B/A*100)
합 계	14,473,834	15,273,281	799,447	105.5
□ 일반회계	14,465,672	15,265,972	800,300	105.5
○ 사업수입	10,028,149	10,320,843	292,694	102.9
- 장기요양보험료수입	10,028,149	10,320,843	292,694	102.9
○ 정부지원금	4,747,255	4,713,128	△34,127	99.3
- 국고지원금	1,995,328	1,991,555	△3,773	99.8
- 국가및지자체부담금	2,751,927	2,721,573	△30,354	98.9
○ 사업외수입	79,192	232,001	152,809	293.0
- 자산운영수입	38,267	99,194	60,927	259.2
- 징수금 등 수입	27,759	123,171	95,412	443.7
- 기타수입	13,166	9,636	△3,530	73.2
○ 잉여금	△388,924	-	388,924	-
□ 특별회계(서울요양원)	8,162	7,309	△853	89.5
○ 사업수입	6,959	6,010	△949	86.4
○ 사업외수입	175	316	141	180.6
○ 일반회계전입	1,028	983	△45	95.6

주) 발생주의 수입 실현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나) 장기요양보험 재정 2023년도 항목별 지출현황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액 14조 4,738억 3,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4조 4,755억 3,500만원 중 13조

7,865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4,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878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 결정 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추경				
합 계	14,473,834	1,701	5,968 △5,968	457 △457	-	14,475,535	13,786,526	1,147	687,862
□ 일반회계	14,465,672	1,701	5,968 △5,968	390 △390	-	14,467,373	13,778,916	1,147	687,310
○ 사업비용	14,130,997	1,553	-	390 △390	-	14,132,550	13,458,452	1,147	672,951
- 요양급여비	14,033,315	-	-	-	-	14,033,315	13,375,997	-	657,318
- 주요사업비	97,682	1,553	-	390 △390	-	99,235	82,455	1,147	15,633
○ 행정운영경비	312,934	-	5,968	-	-	318,902	315,601	-	3,301
- 인건비	300,403	-	5,968	-	-	306,371	304,978	-	1,393
- 기본경비	12,531	-	-	-	-	12,531	10,623	-	1,908
○ 사업외비용	1,453	-	-	-	-	1,453	1,547	-	△94
- 잡손실	1,387	-	-	-	-	1,387	1,518	-	△131
- 수탁사업비	66	-	-	-	-	66	29	-	37
○ 비유동자산	4,021	148	-	-	-	4,169	3,316	-	853
○ 예비비	16,267	-	△5,968	-	-	10,299	-	-	10,299
□ 특별회계(서울요양원)	8,162	-	-	67 △67	-	8,162	7,610	-	552
○ 사업비용	843	-	-	21 △21	-	843	789	-	54
○ 사무비	6,000	-	-	-	-	6,000	5,699	-	301
○ 재산조성비	1,302	-	-	46 △46	-	1,302	1,111	-	191
○ 잡지출	11	-	-	-	-	11	11	-	-
○ 적립금・준비금	6	-	-	-	-	6	-	-	6

주) 발생주의 지출 실현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항목별로 보면, 요양급여비가 예산현액 14조 333억 1,500만원 중 13조 3,759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6,573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액 3,129억 3,400만원에 예비비 59억 6,800만원을 합한 3,189억 200만원 중 3,156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33억 100만원이 불용됨.

나. 검토의견

이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 보험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체계에 대한 검토, 보험의 국가 재정으로의 편입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됨.

(1)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집행상 문제점[1)]

(가) 초과집행 관행의 지양 필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례적으로 예산의 변경(이·전용 및 조정 등) 조치 없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집행의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회계별 초과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여러 사업에서 초과집행이 나타나고 있음.

'초과집행'이란 '건강보험 예산총칙' 제5조 및 공단 자체의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예산의 이용·전용 및 내역변경 등의 예산 변경 절차 없이 당해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예산 운용의 특례로, 관련 규정에는 '초과계리'라는 명칭으로 규정되고 있음.[2)]

---

1)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여러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2) 「건강보험 2023년도 예산총칙 제5조」
① 다음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예산의 총액범위 내에서 초과계리 할 수 있다.
1. 보험급여비 2. 보험료 등 환급에 따른 지급이자, 소송이자, 소송비용 3. 포상금(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4. 기부금 수입범위내 사회사업후원금, 임상시험 수입범위내 임상시험비, 재료비(약품비, 진료재료비), 의료검사비, 의료분쟁비용, 기타의 잡손실(병원 특별회계) 5. 환급계약 약품비지원금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집행지침」
5. 예산의 초과계리: 건강보험사업 등 예산총칙에 따라 다음의 해당 과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변경(전용·조정) 절차 없이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초과계리할 수 있다.
- (건강보험사업회계) 보험급여비, 보험료 등 환급에 따른 지급이자, 소송이자, 소송비용, 포상금(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기부금 수입범위내 사회사업후원금, 임상시험 수입범위 내 임상시험비, 재료비(약품비, 진료재료비), 의료검사비, 의료분쟁비용, 기타의 잡손실(병원 특별회계), 환급계약 약품비지원금
- (장기요양사업회계) 장기요양급여비, 보험료 등 환급에 따른 지급이자, 소송이자, 소송비용, 포상금(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급여내역 신고, 부정인정자 신고 포상금), 기타의 잡손실(직영장기요양기관 특별회계)(이하 생략)

[2021~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별 초과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단위사업명(세부사업)	예산액	결산액	초과집행액
건강보험(일반회계)	2022	보험급여비지급(임신출산진료비지급)	314,520	334,864	20,344
		보험급여관리(사무장병원관리지원)	1,568	1,657	89
		수가및약가와원가관리(약가관리)	3150	365	230
		건강검진비지급(건강검진비지급)	21,093	207,970	186,877
	2023	자격및부과관리(보험료 환급관리)	4,364	6,327	1,963
		보험급여비지급(임신출산진료비지급)	283,600	287,294	3,964
건강보험(특별회계)	2021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후원금관리)	330	538	208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물품관리)	71,077	73,341	2,264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의학연구지원)	1,599	1,697	98
		환자최우선 경영체계 확립(환자진료)	1,959	2,143	184
	2022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후원금관리)	428	476	48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물품관리)	72,649	73,329*	2,125
		환자최우선 경영체계 확립(환자진료)	2,126	2,240	78
	2023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후원금관리)	364	712	348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물품관리)	71,579	81,822	10,243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의학연구지원)	1,331	2,063	732
		환자최우선 경영체계 확립(환자진료)	2,084	2,673	589
장기요양보험	2021	요양법규관리(법규관리)	89	196	107
	2023	장기요양급여관리(보험료 환급관리)	343	501	158
		장기요양급여관리(현지조사지원)	3,316	3,541	225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는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변경을 실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3)]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 심의·조정 등 검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액을 확정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안 확정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4)]

3)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

두 조문의 취지는 예산의 편성 시 여러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실시하여 확정하고, 예산의 변경 또한 확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예산의 집행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해석됨.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에 수립된 예산보다 많은 집행이 예상될 때에는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변경(이·전용 및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 절차의 번거로움을 우회하기 위하여 초과집행이라는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회계별로 보면, 건강보험 일반회계에서 2022년 보험급여비 지급을 위하여 203억 4,400만원을 초과집행하였고, 건강검진비 지급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 210억 9,300만원 대비 9배 수준인 1,868억 7,700만원을 초과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전년대비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보험급여비 지급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이자를 위하여 여전히 초과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의 특별회계인 일산병원에서는 3년 내내 초과집행이 발생하였는데,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물품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특히 2023년도에는 예산액 715억 7,900만원을 102억 4,300만원 초과한 818억 2,200만원이 예산 변경 절차 없이 집행되었음.

장기요양보험에서도 2021년과 2023년에 1억 700만원 및 3억 8,300만원 등 소규모의 초과집행이 확인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초과집행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과오납환급금 지급 등의 사업에서 집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초과집행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현재 초과집행의 법률의 근거는 부족하지만,「회계·예산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을 통해 초과계리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근거를 명시하여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예산집행지침」개정을 통해, 초과집행에 대한 구체

·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기관장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적 절차를 명시하는 등 예산의 조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정이나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의 개정으로 법률에 규정된 예산 집행의 일반원칙을 우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향후에도 초과집행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에 집행의 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초과집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연례적으로 초과집행을 실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초과집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에서 집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초과집행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초과집행을 통해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처럼 예산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시급하거나 필수적인 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어 초과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예를 들어, 건강보험 일반회계의 ‘약가관리’ 사업이나 ‘사무장병원 관리지원’ 사업은 2022년도 사업 대상 등을 확대함에 따라 초과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집행 상황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3년에 초과집행이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 지급 이자’ 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사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이 증가하였고, 제도개선에 따른 임신·출산 등의 진료비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집행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칙의 개정이 2023. 4. 1.에 이루어져 4월 연말정산 시 보험료 환급금 지급 이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졌고, 제도 개선 조치 또한 2021. 6월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를 연도중 예산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5)]

---

5)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2023. 3. 20. 개정되어 2023. 4. 1. 시행되었음.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한 초과계리의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현지조사지원 초과집행(2억 2,500만원)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3.2.28.)에 따른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 증가 등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지급이자 부족액 초과집행(1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또한 사업 내용 상 선제적인 예산 변경 조치 후 집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일부 초과집행 사례를 보면,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할 사유도 없고 초과집행의 필요성도 부족한데도 초과집행을 실시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일산병원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초과집행을 실시한 '물품관리' 사업의 경우 약품비와 진료재료비를 당초에 비하여 과다 집행한 것인데, 일산병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약품비와 진료재료비의 초과집행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2023년도 일산병원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4,233억원 대비 87.2%인 3,693억원이 집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병원의 물품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재비와 진료비를 추가로 구매하였다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2023년도 일산병원(건강보험 특별회계)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423,325	395,003	369,327	53,998	87.2
연구사업	11,283	11,283	10,551	732	93.5
병원사업	412,042	383,720	358,776	53,266	87.1

자료: 보건복지부

이상의 경우를 종합하면, 법률에 규정된 예산집행 상의 원칙과 배치되는 초과집행이라는 특례를 지침에 규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지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이므로, 예산운용의 목적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의 보험료로 구성되는 보험 재정을 법률 규정과 다르게 운용하는 초과집행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나) 재정의 집행률 저조 사업 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2023년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검토 및 이사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있고, 사업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 및 보건복지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업의 집행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미흡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큰 측면이 있음.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70개 세부사업 중 60%인 42개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집행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봄.

세부사업별로는 부당수급 징수금 관리, 급여제도 개선 및 지원, 사무장병원관리지원, 비급여관리 및 보장성 평가 사업, 원가관리 사업 등에서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이 0.1%에 그쳤음.

[2023년도 세부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예산잔액 (A-C-D)	집행률 (C/A)
부과관리	11,430	8,114	-	3,316	71
부과체계 개선	416	274	-	142	65.9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648	511	-	137	78.9
급여사후관리	57	37	-	20	64.9
부당수급 및 징수금관리	4,958	3,385	-	1,573	68.3
급여제도개선및지원	496	366	-	130	73.8
사무장병원관리지원	2,175	1,592	-	583	73.2
보건의료자원관리	133	41	-	92	30.8
요양병원퇴원환자지원	159	108	-	51	67.9
재택의료시범사업	212	83	-	129	39.2
비급여관리및보장성평가	10,906	7,700	-	3,206	70.6
수가관리	118	70	-	48	59.3
원가관리	2,007	727	-	1,280	36.2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예산잔액 (A-C-D)	집행률 (C/A)
건강증진관리	13,099	10,322	-	2,777	78.8
건강지원서비스	5,418	4,290	-	1,128	79.2
만성질환관리	6,612	4,665	-	1,947	70.6
빅데이터운영	2,600	1,550	-	1,050	59.6
빅데이터활용지원	236	186	-	50	78.8
정보보호및정보시스템개발	2,534	3	-	2,531	0.1
비대면서비스부운영	1,863	1,471	-	392	79
연구지원	570	334	-	236	58.6
제도연구	259	156	-	103	60.2
기획예산및경영전략	1,105	617	-	488	55.8
제도및정책조사등해외출장	1,136	704	-	431	62
법무및개인정보보호	2,807	1,701	-	1,106	60.6
노사임금관리	302	210	-	92	69.5
자산및사무환경	50,401	40,066	779	9,556	79.5
인재양성	8,882	6,858	-	2,024	77.2
역량강화	900	703	-	197	78.1
안전경영및안전관리	1,699	1,152	-	547	67.8
사옥관리	112,326	68,598	34,963	8,765	61.1
인재개발원운영	31,698	11,138	20,367	193	35.1
예비비	35,858	-	-	35,858	0
금연치료지원사업	38,165	26,135	-	12,030	68.5
국제협력수탁사업	707	471	-	236	66.6
상병수당수탁사업	19,744	5,932	-	13,812	30
의료급여사례관리	1,358	978	-	380	7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인재개발원 운영’ 사업에서는 예산액 316억 9,800만원 중 35.1%인 111억 3,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데, 동 사업 내의 제2교육동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33억원으로 2021년 10월 착공이 진행되어 24년 8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암반발견, 도급 주관사의 경영난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사유) 등으로 제2교육동 개원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 일정에 차질이 우려됨.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운영 사업의 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연도별 집행액	이월액	집행액 (누계)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	43,301	2021. 10.~ 2024. 8.	2019	625	-	18	613	18
			2020	1,000	613	684	929	702
			2021	5,000	929	1,382	4,546	2,084
			2022	14,144	4,546	9,079	9,610	11,163
			2023	20,545	9,610	9,789	20,367	20,952
			2024	1,987	20,367	-	-	-

자료: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단위사업 기준 10%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한 사업의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 내 전체 단위사업 27개 중 40.7%를 차지하는 단위사업에서 10%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위 사업에서는 38% 이상의 과도한 불용이 나타나는 사업도 존재함.

[2020~2023년도 단위사업 기준 10% 이상의 불용률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자격및부과관리	20,885	922 (4.4)	23,107	6,333 (27.4)	31,517	7,945 (25.2)	23,932	2,264 (9.5)
보험급여관리	33,441	11,726 (35.1)	33,001	11,815 (35.8)	44,627	19,207 (43.0)	40,142	8,880 (22.1)
수가및약가와 원가관리	7,645	1,224 (16.0)	9,358	1,881 (20.1)	5,902	1,278 (21.7)	6,483	1,763 (27.2)
건강검진비지급	-	-	-	-	21,093	△186,877 (△886.0)	352,734	65,971 (18.7)
질병예방	39	12,528 (32.1)	43,274	11,213 (25.9)	48,742	11,080 (22.7)	41,807	6,389 (15.3)
건강관리	21,156	7,045 (33.3)	19,596	6,641 (33.9)	20,583	7,458 (36.2)	15,637	3,713 (23.7)
빅데이터운영 및 활용	-	-	2,628	1,013 (38.5	4,538	2,935 (64.7)	2,837	1,101 (38.8)
고객관리	63,474	2,710 (4.3)	65,300	9,494 (14.5)	67,972	6,012 (8.8)	73,954	9,973 (13.5)
정책연구	9,491	1,774 (18.7)	8,180	1,944 (23.8)	5,291	1,401 (26.5)	5,452	975 (17.9)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행정지원	102,786	21,924 (21.3)	107,974	22,170 (20.5)	109,719	31,364 (28.6)	100,816	18,858 (18.7)
건강보험기본경비	47,295	5,502 (11.6)	48,305	6,184 (12.8)	49,098	6,265 (12.8)	47,625	5,486 (11.5)

자료: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보험급여 관리’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401억 4,200만원 대비 22.1%인 88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건강검진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3,527억 3,400만원 대비 18.7%인 659억 7,100만원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액 1,008억 1,600만원 중 188억 5,8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18.7%가 불용되었으며, ‘빅데이터 운영 및 활용’ 사업에서는 예산액 28억 3,700만원 중 38.8%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급여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집행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보험급여비에서는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보험급여’ 사업에서도 전체 예산액 대비 비율은 크지 않지만, 5,287억원 수준의 불용이 나타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도 건강보험의 불용액보다 많은 6,573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또한 보험급여 사업 내 ‘보험급여 관리’ 단위사업 및 ‘수가 및 약가와 원가관리’ 단위사업의 집행 또한 저조하므로, 보험급여나 수가 및 약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재정의 보험급여 관련 단위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명	예산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단위사업)보험급여비 지급	78,968,396	78,439,708	-	528,688	99.3
요양급여비 지급	78,684,796	78,152,414	-	532,382	99.3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283,600	287,294	-	△3,694	101.3
(단위사업)보험급여 관리	40,141	31,263	-	8,878	77.9
요양급여비지급 지원	2,584	2,353	-	231	91.1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648	511	-	137	78.9
급여사후관리	57	37	-	20	64.9
부당수급 및 징수금관리	4,958	3,385	-	1,573	68.3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명	예산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보장성정책지원 강화	4,843	3,895	-	948	8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1,994	1,751	-	243	87.8
호스피스연명의료지원	1,393	1,213	-	180	87.1
급여제도개선및지원	496	366	-	130	73.8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32	27	-	5	84.4
사무장병원관리지원	2,175	1,592	-	583	73.2
급여조사	4,994	4,319	-	675	86.5
아동치과주치의사업	57	47	-	10	82.5
보건의료자원관리	133	41	-	92	30.8
요양병원퇴원환자지원	159	108	-	51	67.9
기타징수금징수관리	2,676	2,319	-	357	86.7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	1,824	1,516	-	308	83.1
재택의료시범사업	212	83	-	129	39.2
비급여관리및보장성평가	10,906	7,700	-	3,206	70.6
(단위사업)수가 및 약가와 원가관리	6,483	4,719	-	1,764	72.8
수가관리	118	70	-	48	59.3
약가관리	4,358	3,922	-	436	90.0
원가관리	2,007	727	-	1,280	36.2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전체적인 집행률은 높은 편이나 일부 세부사업별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사업별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 자체 수입액의 과소계상

건강보험 재정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자체수입이 실제 수납액보다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납 추이를 감안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춰 지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잉여금의 과다 적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먼저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2021년 이후 예산액 대비 3~4조원 이상의 과다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료율과 지급 수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정을 적절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자체수입으로 2023년 예산액 90조 5,034억 900만원 대비 104.2% 늘어난 94조 3,438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부과체계 개편 등

으로 보험료 수입의 상승에 기인함.

[2021~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수입의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체수입	75,073,252	78,649,282	83,097,715	87,612,327	90,503,409	94,343,893
ㅇ사업수입	73,883,415	77,516,156	81,767,302	86,268,199	89,010,668	92,333,930
- 보험료수입	73,883,415	77,516,156	81,767,302	86,268,199	89,010,668	92,333,930
ㅇ임대사업수입	560	475	521	468	574	517
- 임대사업수입	560	475	521	468	574	517
ㅇ사업외수입	1,189,277	1,132,651	1,329,892	1,343,660	1,492,167	2,009,446
- 자산운영수입	200,919	175,605	198,707	366,595	410,967	668,103
- 징수금 등 수입	621,981	608,369	713,375	587,320	617,038	750,181
- 기타수입	366,377	348,677	417,810	389,745	464,162	591,162

자료: 보건복지부

연례적으로도 2021년의 경우 3조 6,327억원, 2022년에는 4조 5,208억원, 2023년에는 3조 3,233억원 규모의 수납액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보험료 수입은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여야 하는 국고지원금의 비율과도 연계되고 있어 보험료 수입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국고지원금 비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6)]

이러한 점에서 예상보험료 수입의 적절한 추계를 통해 법정되어 있는 국고지원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종사자 교육 사업에서는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하여 각각 4만원과 4만 9,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 수입은 2023년 31억 838만원에 달함.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입 예산 및 실제 수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2021년 수납실적	2022년 예산	2022년 수납실적	2023년 예산	2023년 수납실적	예산 산출 내역
수수료	-	2,729,089	-	3,637,078	-	3,108,383	수강료(1인당) - 요양보호사 40,000원 - 프로그램관리자 49,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6)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수입 추계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하는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보수월액 증가율을 추정하나, 특히 최근 2년간 보험료 수입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던 것은 명목임금 실적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외 수입에서도 예산액 대비 큰 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적립금액 규모의 확대와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수입이 늘어났고, 부당이득금 등 징수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종합하면, 이러한 자체 수입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보험료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결국 초과집행과 같은 관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집행방식이 아니므로, 실제 수입에 맞는 수납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라) 수입의 징수 노력 강화 필요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의 징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다는 점에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재정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경우 수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보험료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보험료의 과오지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입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건강보험 재정의 연도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의 고지 및 징수 현황을 보면, 2021년 이후 9% 이상의 미징수율이 나타났고, 특히 2023년에는 24.2%의 미징수율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구상금에 있어서는 미징수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음.

[연도별(2020~2023)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고지 및 징수 현황]

2023.12.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고지		징수		해당연도 미징수액 (C=A-B)	해당연도 미징수율 (C/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2020	전체	466,359	347,799	451,461	326,602	21,197	6.1
	부당이득금	328,106	280,384	321,068	270,435	9,948	3.5
	구상금	13,246	24,795	11,864	19,193	5,602	22.6
	상한액환입	32,308	11,181	30,851	10,092	1,089	9.7
	기타	92,699	31,439	87,678	26,882	4,557	14.5

2023.12.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고지		징수		해당연도 미징수액 (C=A-B)	해당연도 미징수율 (C/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2021	전체	367,784	309,766	349,824	281,381	28,385	9.2
	부당이득금	255,416	238,099	245,412	225,504	12,595	5.3
	구상금	14,234	24,334	12,280	16,822	7,512	30.9
	상한액환입	43,284	13,750	41,054	12,200	1,550	11.3
	기타	54,850	33,584	51,078	26,856	6,728	20.0
2022	전체	443,123	377,430	419,479	342,603	34,827	9.2
	부당이득금	322,390	288,011	312,862	273,329	14,682	5.1
	구상금	15,565	31,536	11,202	17,654	13,882	44.0
	상한액환입	49,508	16,087	45,530	13,623	2,464	15.3
	기타	55,660	41,796	49,885	37,997	3,800	9.1
2023	전체	491,106	453,076	359,750	343,630	109,446	24.2
	부당이득금	333,433	316,894	234,111	257,691	59,203	18.7
	구상금	18,236	38,780	9,545	12,002	26,778	69.1
	상한액환입	81,039	15,292	69,288	10,071	5,221	34.1
	기타	58,398	82,109	46,806	63,865	18,245	22.2
합계	전체	5,925,642	4,273,598	5,674,505	3,927,528	346,070	8.1
	부당이득금	3,961,486	3,000,829	3,799,841	2,836,190	164,639	5.5
	구상금	347,552	490,113	323,439	409,023	81,089	16.5
	상한액환입	370,705	105,560	347,637	91,876	13,685	13.0
	기타	1,245,899	677,096	1,203,588	590,439	86,657	12.8

주 1) 기타: 본인부담금 환급금 환입, 장애인보조기기 환입·환수 등
2) 각 연도별 당해연도 고지(건수 및 금액)에 대한 징수(건수 및 금액)으로 산출하여, 각 연도에 발생한 총 징수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3)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고지 및 징수 현황 수정 발생함

자료: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기요양보험의 부당이득금의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20% 이상의 미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당해연도 고지액에 대한 미징수율이 높은 상황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연도별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등의 고지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고지		징수		미징수액	미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전체	26,043	16,505	24,953	6,757	9,748	59.06
	부당이득금	24,894	14,478	23,898	6,675	7,803	53.90
	구상금	24	23	17	11	12	52.17
	기타	1,125	2,004	1,038	71	1,933	96.46
2021	전체	30,896	13,867	29,571	11,192	2,675	19.29
	부당이득금	30,659	13,326	29,390	10,701	2,625	19.70
	구상금	76	125	55	84	41	32.80
	기타	161	416	126	407	9	2.16
2022	전체	39,101	21,372	37,655	14,107	7,265	33.99
	부당이득금	38,796	20,984	37,509	13,845	7,139	34.02
	구상금	132	135	53	41	94	69.63
	기타	173	253	93	221	32	12.65
2023	전체	41,816	20,123	39,827	12,098	8,025	39.88
	부당이득금	41,455	18,547	39,649	11,291	7,256	39.12
	구상금	110	172	33	13	159	92.44
	기타	251	1,404	145	794	610	43.45
합계	전체	137,856	71,867	132,006	44,154	27,713	38.56
	부당이득금	135,804	67,335	130,446	42,512	24,823	36.86
	구상금	342	455	158	149	306	67.25
	기타	1,710	4,077	1,402	1,493	2,584	63.38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2023년도의 미징수율은 39.88%로서 2022년도 미징수율 33.99% 대비 5,89%p가 늘어났는데, 공단은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용구 공급업체 폐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2018년~2023년도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징수실적을 보면, 연도별 체납액은 2018년 8조 1,046억원에서 8조 3,167억원 정도로 징수액이 나타나고 있는데[7], 체납 징수액은 체납액 대비 5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7) 연도별 체납액은 2021년부터 매년 감소('21년 83,990억원→'23년 83,167억원)하고 있으며 징수율도 함께 증가('21년 47.9% → '23년 53.0%)하고 있음.

[2018~2023년도 체납 건강보험료의 징수실적(각 연도 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체납액	81,046	81,725	82,143	83,990	83,323	83,167
	체납징수액	33,774	35,370	35,999	40,259	43,412	44,048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및 체납 건강보험료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원래 받지 않아야 할 금액을 수납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실한 납부자 및 이용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가 요구됨.

따라서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등은 미징수율이 높고 매년 지속적으로 미징수율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수납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사무장병원의 적발 후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높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의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의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금액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징수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연도	환수결정		징수		미징수	
	기관수	금액(A)	금액(B)	징수율(B/A)	금액(C)	미징수율(C/A)
2019	96	504,950	18,629	3.69	486,321	96.31
2020	43	253,336	12,122	4.78	241,214	95.22
2021	18	37,561	10,648	28.35	26,913	71.65
2022	19	91,772	9,811	10.69	81,961	89.31
2023	45	103,585	16,412	15.84	87,173	84.16
합계	221	991,204	67,622	6.82	923,582	93.18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환수결정 대비 미징수율이 2021년의 71%를 제외하고는 8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로 환수결정은 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사무장병원은 의료인프라 수준이 낮고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관련 비용의 환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징수율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발굴과 노력이 요구됨.

한편 사무장병원의 적발 후 소송에서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최근 7년간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 자체도 40%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결국 사무장병원의 적발 후 면밀한 점검과 증거의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의 적발 후 소송까지의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소송에서의 승소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봄.

[최근 7년간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

연도	합계		승소		패소		각하		소취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7	22	100.00	6	27.27	3	13.64	6	27.27	7	31.82
2018	31	100.00	7	22.58	3	9.68	6	19.35	15	48.39
2019	60	100.00	16	26.67	17	28.33	1	1.67	26	43.33
2020	49	100.00	8	16.33	22	44.90	5	10.20	14	28.57
2021	30	100.00	8	26.67	7	23.33	4	13.33	11	36.67
2022	20	100.00	6	30.00	5	25.00	5	25.00	4	20.00
2023	25	100.00	5	20.00	10	40.00	1	4.00	9	36.00
합계	237	100.00	56	23.63	67	28.27	28	11.81	86	36.29

주 1)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결정(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
2) 연도구분: 행정소송 최종선고년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바) 사업계획서에 존재하지 않은 사업 추진 및 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범사업 재정으로의 사용 지양 필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으므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국가 예산 사업 추진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① 당초 사업계획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연도중 사업을 변경 추진 사례

당초 계획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위해 연도 중 세부사업간 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마음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 9,800만원의 재정을 활용하여 2023.12.5. 동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당초 계획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것임.

[2023년도 마음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추진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집행액	추진 사유	비고
마음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98,000 (일반용역비)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2023.8.1., 국무회의)에 따른 전 국민의 '건강한 마음, 행복한 사회' 비전 선포 행사 지원	세부사업간조정 (만성질환관리실 → 건강검진실)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부서연구용역' 사업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서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등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체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요청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기관 평가방안 연구' 및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8)]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던 '재가환경개선 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

8)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기관 평가방안연구(2023.6.20~2023. 12.08, 5,800만원),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2023. 5.22.~2023. 08.22., 4,995만원) 등

부의 요청으로 사업내용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9)]

이와 같이 2023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변경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봄.

② 향후의 국고 사업 집행을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거나 국고와 중복적인 사업에 집행한 예

2024년 및 그 이후 국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3년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예산으로 추진될 사업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신규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3년 건강보험재정으로 사업의 추진방안과 임시조직 논의 등을 지원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T/F’를 결성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됨.

또한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11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예산의 확대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동 재원이 활용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옴.

한편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부서연구용역 사업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 가이드라인 연구’를 추진하여 5,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동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조사업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집행행태로 보임.

9)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시범사업 모형이 변경됨에 따라 시범사업 일시가 지연되어 예산액 5억 1,500만원 중 4,6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900만원이 불용됨.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명	연구기관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낙찰액	불용액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3.16	2023.3.16~12.8	600	555	45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내용을 집행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집행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보험급여비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보험료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집행은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등과 국고지원과의 구분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봄.

(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 폭의 확대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누적적립금이 2028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지원금 규모는 법정기준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입 및 지출 부분에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가) 누적적립금 고갈 방지 우려 존재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 말 기준 기초 적립금 누적액 23조 8,700억 6,200만원에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액 4조 1,276억 4,600만원과 적립금 운용 수익 1조 3,755억 9,500만원을 합한 27조 9,977억 8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4조 1,699억 6,400만원이 기말 잔액으로 누적되어 있음.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적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강보험	기초 적립금 누적액	17,418,125	20,241,042	23,870,062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이입)액	2,822,917	3,629,019	4,127,646
	연간 적립금 운용 수익	265,484	516,897	1,375,595
	기말 적립금 누적액	20,241,042	23,870,062	27,997,708
장기요양	기초 적립금 누적액	447,552	1,356,360	2,806,288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이입)액	908,807	1,449,927	1,363,676
	연간 적립금 운용 수익	21,574	76,998	234,601
	기말 적립금 누적액	1,356,360	2,806,288	4,169,964

주 1) 연간 적립금 운용 수익은 결산서상 운용 수익임
2) 지출액은 현금수지 적자로 법정준비금을 이입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과 관련하여 현재의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2028년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며, 2032년에는 누적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추계에는 여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양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의 고령화 추세와 국민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기조 속에 건강보험의 적립금 고갈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 전망: 2023~2032년]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수입	93.3	98.8	106.5	114.9	123.9	133.7	144.3	155.6	165.0	175.2	7.2
지출	92.0	100.2	109.7	121.6	132.7	144.4	154.8	166.1	180.1	195.1	8.7
재정수지	1.3	△1.4	△3.2	△6.7	△8.8	△10.7	△10.5	△10.5	△15.2	△20.0	
누적준비금	25.2	23.8	20.6	13.9	5.2	△5.5	△16.0	△26.5	△41.6	△61.6	

주 1) 누적 준비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뜻하며, 음수로 표기된 준비금은 준비금 소진 후 발생한 누적적자액을 뜻함
2) 2023,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기결정된 7.09%, 2025~2032년은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30년부터 8% 상한 유지를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수익률과 준비금의 적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신노년층의 진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의 운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도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399만명에서 2027년에는 473만명으로, 2030년에는 5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요양 수급자는 2008년에는 21.4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01.9만명, 2027년에는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가시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적립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와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임.

(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정기준 미준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일반회계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10)]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2.5%p에서 2023년도 2.0%p의 미달률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실제 보험료 수입액 81조 5,180억원 대비 11.2%의 지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는 결국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스스로가 법률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2023년 일반회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의 국고지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국고지원액 (E)	예상 수입 대비 지원비율 (D=E/A)	실제 수입 대비 지원비율 (C=E/B)	수입액의 14% 대비 미달률	
	예상(A)	실제(B)				(14%-D)	(14%-C)
2020	639,260	624,849	73,482	11.5%	11.8%	2.5%p	2.2%p
2021	664,901	692,270	76,554	11.5%	11.1%	2.5%p	2.9%p
2022	727,540	765,538	86,843	11.9%	11.3%	2.1%p	2.7%p
2023	761,822	815,180	91,494	12.0%	11.2%	2.0%p	2.8%p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국고지원액의 비율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수입액을 과소하게 예측하고 있어 실제 수입액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의 지원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수입액을 과소하게 예측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보험료의 예상 수입 대비 지원 비율을 보면, 2020년 이후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법정 기준인 14% 대비 미달률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입 대비 지원 비율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낮아져서 2023년도 지원비율은 11.2%에 불과하고, 실제 수입액 14% 대비 미달률 또한 계속 확대되어 2023년도에는 2.8%p까지 늘어난 상황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서도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법정 비율에 정해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액은 예산액 대비 많다는 점에서 예상 수입액의 예측이 좀더 면밀할 필요가 있음.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구가 분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고지원금(A)	7,107	8,912	12,414	15,186	18,014	19,916
보험료 예상수입(B)	39,483	48,433	65,338	75,932	90,069	99,580
예상수입대비 국고지원율(A/B)	18.0	18.4	19.0	20.0	20.0	20.0
보험료 실제수입(C)	38,474	48,506	61,605	77,314	91,688	102,266
실제수입대비 국고지원율(A/C)	18.5	18.4	20.2	19.6	19.6	19.5

주 1) 2018~2023년 보험료 예상수입은 복지부 국고지원금 예산 편성 기준임
2) 2018~2023년 보험료 실제수입은 현금흐름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국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보험 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 실제 보험료 수입액과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추계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체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재정전망과 추계에 근거하고 있고,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의사결정이 집중되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의결없이 결정되는 사항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체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봄.

(가)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체계 현황

건강보험의 수가, 즉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 등 요양급여의 '보상'을 위한 가격으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와 종별 가산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는 5년에서 7년 단위로 조정되고 환산지수는 매년 조정됨.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체계]

구분	내 용
요양급여비용=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점) × 환산지수(1점당 원) × 종별 가산	
상대가치 점수	각 의료행위의 의사 업무량, 자원 투입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한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화' 한 것(5~7년 단위로 조정)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점수당 단가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간 계약을 통해 결정(1년 단위로 조정)
종별 가산	종합병원 등이 중증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강화 측면에서 기관 단위 차등 가산 적용 (수술・검사 등) * 종별가산율 :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

자료: 보건복지부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보건기관)이 매년 5월 말까지 협상 및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약단체의 환산지수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됨.[12)]

12)「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2. ~ 7. (이하 생략)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전체 환산지수가 1.98% 상승하였으며, 한방 및 조산원, 치과의 환산지수가 높게 상승하였음.

[2020~202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 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2024	환산지수인상률	1.98	1.9	1.6	3.2	3.6	1.7	2.7	4.5
	환산지수	-	81.2	93.6	96.0	98.8	99.3	93.5	158.7
2023	환산지수인상률	1.98	1.6	2.1	2.5	3.0	3.6	2.8	4.0
	환산지수	-	79.7	92.1	93.0	95.4	97.6	91.0	151.9
2022	환산지수인상률	2.09	1.4	3.0	2.2	3.1	3.6	2.8	4.1
	환산지수	-	78.4	90.2	90.7	92.6	94.2	88.5	146.1
2021	환산지수인상률	1.99	1.6	2.4	1.5	2.9	3.3	2.8	3.8
	환산지수	-	77.3	87.6	88.7	89.8	90.9	86.1	140.3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의 결정체계는「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라 함)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통상 예산안의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6~8월 중 건정심 소위 및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13)]

이에 따라 2024년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8.4원으로 결정됨.

[2021~2024년 보험료율 결정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직 장	6.86	6.99%	7.09%	7.09%
(인상률)	(2.89%)	(1.89%)	(1.49%)	(동결)
지 역	201.5원	205.3원	208.4원	208.4원
(인상률)	(2.89%)	(1.89%)	(1.49%)	(동결)

자료: 보건복지부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3)「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체계 현황

장기요양보험 또한 유사한 체계로 수가 및 보험료율이 결정되는데, 수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따라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됨.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통해 차년도 수가 결정안을 의결하여, 수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게 되며,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률은 2.92% 수준임.[14)]

[2020~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률 현황]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가 인상률	2.74	1.37	4.32	4.70	2.92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수급자 증가율 및 수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통해 차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을 의결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함으로써 보험료율을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됨.[15)]

---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 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2020-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대비)	10.25	11.52	12.27	12.81	12.95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대비)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자료: 보건복지부

(다) 수가 및 보험료율 결과 공개 필요 등 감사원 지적 사항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지표의 과소 추계가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의 가정과 방법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있어 일부 실적을 과다 차감하여 실적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1인당 급여비가 과소 추계되었고, 수입 감소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지는 추계를 실시하면서도 추계 방식과 가정 등을 공개하지 않아 추계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또한 건강보험 수가 및 재정 운용 등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외부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건정심이라 할 수 있는데, 건정심의 의사결정 역할에 일부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고 있음.

감사원의 동 보고서에서는 재정 운용의 결정 및 고시 개정 등에 있어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건정심 위원에게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검토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부적절 운용 사례를 발표하였음.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312건의 안건 중 270건(86.5%)을 건정심 의결 없이 별도의 비법정 자문회의 등만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함으로써 연간 6,407억 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 안건들과 중요한 고시 개정 사항들이 건정심의 심의·의결없이 개정되는 사례가 나타남.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현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심사 등 지출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묶음 방식 확대 등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급여 확대항목에 대해 전문심사를 하지 않는 등 1,606억원 상당의 급여기준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조정 없이 급여비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동 보고서에서는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어도 현재 사업중단 상태면 법적근거 없이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연 1조 7,610억원의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미부과하는 등의 부과체계 문제와 공적연금소득과 달리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연 380억원이 미부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제시됨.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2028년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하고, 건정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방안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수가 및 보험료의 결정체계를 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4)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국가재정 내로의 편입 등 재정 통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용과 관련한 결산상 부적절한 집행문제, 재정운용과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상의 외부 통제 미흡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므로, 국가재정 내의 편입 등의 재정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규모 확대에 대한 다각적인 재정관리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형태 변화 등으로 인한 의료 보장 확대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두 보험의 지출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2013년 45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불과 10년 사이에 2023년에는 94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또한 2013년 3조 7,0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15조원 규모로 약 4배 이상이 증가하였음.

[2013~2023년(격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건강보험	수입	45,173,311	52,400,886	57,998,998	68,064,295	80,492,070	94,911,324
	지출	41,528,698	48,228,044	57,291,270	70,888,548	77,669,152	90,783,678
장기요양보험	수입	3,747,139	4,325,301	5,084,590	7,497,733	11,541,349	15,072,110
	지출	3,291,509	4,234,380	5,413,892	8,157,926	10,566,774	13,696,579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재구성

기존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규모에 비해 대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재정 운용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부합하는 재정 관리 체계의 모색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것임.

(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집행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 결정 체계는「국민건강보험법」제36조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 심의·조정 등 검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하는 체계로 이루어짐.[16)]

16)「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생 략)
② 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타 공기업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검토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함으로써 예산이 결정되는 체계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편성 절차]

6월	7월	8~10월	11월	12월 초	12월 말
예산편성 방향 사전 논의	예산안 제출	주요사업비 수탁사업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쟁점 심의 (주요 쟁점사업)	예산안 확정	이사회 의결·복지부 승인 (내부결재)
(복지부-공단·심평원)	(공단·심평원 → 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 심의·조정	(복지부)	(기재부 지침 반영)	(공단·심평원, 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재정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과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그에 맞는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노력이 필요한데, 부처·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타 예산과 달리 보건복지부에서만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승인하는 체계는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과집행, 집행부진, 수입 징수 부족 그리고 사업의 변경 추진 문제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을 통한 현재의 보험재정에 대한 운용방식만으로는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임.

(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외부 통제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국회 등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시한다면, 기존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

⑤ (생 략)

⑥ 기관장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 ⑧ (생 략)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재정의 외부 통제는 필요함.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하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가 모든 재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총괄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생각됨.[17)]

국가재정 외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보건복지분야 총지출 규모에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누락하는 것과 같고, 결국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둘째,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외의 6개의 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국가재정에 포함되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할 필요성 또한 높지 않다고 보임.

셋째, 감사원 또한 동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재원의 준조세적 성격과 정부지원금의 적자보전적 성격, 국가재정으로의 편입을 위한 장애요건(2003년 이전 개별조합으로 운용되던 상황)이 사라진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국가재정으로 편입된다면,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수지 균형보다는 지출 위주로 재정이 운영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적 의사결정과 건강보험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국가재정 외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18)]

그러나 다양한 기관의 감시와 관리로 인하여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재난상황에서 동 재정을 활용하기보다는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보험

17)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8)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재정 운영·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재정지표 공개 확대 및 국회보고 절차 강화,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감사원 결산 회계검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외부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함.

이라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것이나 국민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반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따라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의 고갈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두 보험 재정의 운용상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확대되는 재정의 규모와 재정의 고갈 우려 속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 등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통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임.

4. 교육분야 재정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개요

(가)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시・도교육청 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음.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1]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되며, 교육・학예 등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의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됨.

시・도교육청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2]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 재원은 대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달됨.

문의 : 노성준 입법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2)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 · 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 · "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① 교육비특별회계 현황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지방채 및 기타, 내부거래로 구분됨.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교육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음. 자체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자산수입 등을 포함함.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1.0~7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1.2~94.9%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전수입			786,475	740,329	813,886	1,037,484	864,454
	중앙정부 이전수입		645,716	594,421	655,688	866,461	703,1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05,305	541,887	612,811	822,070	653,637
		- 보통교부금	588,010	520,433	586,221	789,444	634,165
		- 특별교부금	17,295	14,994	17,159	23,532	19,472
		- 증액교부금	-	6,460	9,431	9,094	9,028
		국고보조금	2,258	12,634	3,709	6,100	5,840
		특별회계전입금	38,153	39,900	39,168	38,290	34,700
	지자체 이전수입		139,247	141,527	155,414	169,341	158,400
	기타 이전수입		1,512	4,381	2,784	1,682	2,878
자체수입			16,043	12,120	15,379	11,587	10,981
지방채 및 기타			71,354	69,639	44,709	43,452	77,529
내부거래			-	179	6,787	6,108	36,779
합계			873,873	822,266	880,760	1,098,632	989,773

주) 2019~2022년은 결산 기준이며, 2023년은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99조 5,987억 5,300만원 중 99조 204억 1,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8조 9,773억 1,700만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9.9%)되고 50억 6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380억 9,4000만원은 수납되었음.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중앙정부이전수입	78,442,372	70,837,951	-	70,836,482	70,317,533	70,317,533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524,221	65,859,373	-	65,859,373	65,363,666	65,363,666	-	-
- 증액교부금	904,637	902,807	-	902,807	902,807	902,807	-	-
- 국고보조금	543,649	585,651	-	585,651	584,025	584,025	-	-
- 특별회계전입금	3,470,037	3,490,121	-	3,490,121	3,470,037	3,470,037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437,613	16,160,574	-	16,160,574	15,839,975	15,839,975	-	-
- 지방교육세전입금	7,841,986	7,781,819	-	7,781,819	7,642,825	7,642,825	-	-
- 담배소비세전입금	614,581	641,469	-	641,469	642,192	642,192	-	-
- 시도세전입금	3,986,139	4,248,551	-	4,248,551	4,161,835	4,161,835	-	-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58,223	221,727	-	221,727	210,949	210,949	-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365,909	1,340,707	-	1,340,707	1,263,642	1,263,642	-	-
- 교육급여보조금	29,046	29,214	-	29,214	29,224	29,224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94,607	94,687	-	94,687	94,687	94,687	-	-
- 비법정이전수입	1,347,122	1,802,400	-	1,802,400	1,794,622	1,794,622	-	-
기타이전수입	236,549	281,909	-	281,909	287,843	287,843	-	-
자체수입	489,923	888,435	-	888,435	1,141,208	1,098,108	5,006	38,094
- 입학금 및 수업료	38	555	-	555	783	691	75	17
- 사용료 및 수수료	23,925	23,224	-	23,224	22,088	22,081	-	7
- 자산수입	70,900	132,635	-	132,635	147,470	147,269	-	201
- 이자수입	104,257	123,163	-	123,163	220,799	220,799	-	-
- 기타수입 등	297,847	608,859	-	608,859	750,067	707,267	4,931	37,869
지방채 및 기타	2,605,521	3,161,627	4,590,348	7,751,976	7,752,947	7,752,947	-	-
-지방채	-	-	-	-	-	-	-	-
- 기타(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	2,605,521	3,161,627	4,590,348	7,751,976	7,752,947	7,752,947	-	-
내부거래	199,992	3,677,909	-	3,677,909	3,677,909	3,677,909	-	-
- 기금전입금 등	199,992	3,677,909	-	3,677,909	3,677,909	3,677,909	-	-
합 계	97,419,185	95,008,405	4,590,348	99,598,753	99,020,416	98,977,317	5,006	38,094

주 1) 2024.3. 가결산 기준이며, 2024. 10. 결산 완료 예정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액(73.5조원)은 전년도 예정교부 기준이므로 교육부 본예산(75.8조원)과 차이

자료: 교육부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은 크게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본지출・상환지출 및 전출금 등으로 구분되며, 교원 인건비 등 경직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현황을 보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정규직・비정규직 보수 등을 포함하는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47.8~5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립학교회계 전출금(인건비 및 시설사업비 제외) 등을 포함하는 전출금 비중은 17.7~20.2% 수준임.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건비*	427,793	443,354	462,608	488,617	510,528
물건비	26,296	30,369	24,909	32,939	33,602
이전지출	31,919	32,251	36,202	36,556	32,796
자본지출	111,644	98,875	101,956	117,389	140,739
상환지출	59,966	3,011	12,039	3,583	
전출금 등	145,066	155,775	163,623	174,492	183,727
예비비 및 기타	1,327	1,491	4,649	1,707	2,414
내부거래	-	11,928	32,115	166,620	5,846
합 계	804,011	777,054	838,102	1,021,902	909,652

주 1) 2019~2022년은 결산 기준이며, 2023년은 가결산 기준
2)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포함
자료: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99조 5,987억 5,300만원 중 90조 9,652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5조 3,220억 5,600만원이 이월되어 3조 3,11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정책사업별로 보면, 집행액 90조 9,652억 8,100만원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에 42조 8,920억 9,700만원(47.2%) 집행되고, 인건비[4]에 44조 430억 800만원(48.4%) 집행되었음.

예산의 이월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문에서 4조 3,153억 8,300만원이 이월되어 전체 이월액의 8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4) 교원・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등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정책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유아및초중등교육	44,915,851	4,316,845	49,258,344	42,892,097	5,013,798	1,352,449
- 인적자원운용	570,298	434	572,401	534,365	2,478	35,559
-교수학습활동지원	7,724,833	753,979	8,482,956	7,816,862	440,803	225,292
- 교육복지	5,892,520	8,332	5,901,925	5,819,887	5,320	76,717
- 보건급식	5,246,269	162,223	5,413,234	5,001,756	247,738	163,740
-학교재정지원관리	13,315,032	-	13,315,032	13,167,872	2,075	145,085
-학교시설여건개선	12,166,900	3,391,876	15,572,796	10,551,355	4,315,383	706,057
평생교육	206,846	12,584	219,430	208,095	6,468	4,867
교육일반	5,004,394	260,920	5,290,418	3,706,183	301,790	1,282,444
- 교육행정일반	1,608,898	41,374	1,673,703	1,552,993	41,178	79,531
- 기관운영	980,730	219,545	1,201,948	897,829	260,612	43,507
- 재무활동	2,414,766	-	2,414,766	1,255,361	-	1,159,406
예비비 및 기타	345,231	-	293,664	115,498	-	178,167
인건비	44,536,081	-	44,536,897	44,043,408	-	493,489
합 계	95,008,405	4,590,348	99,598,753	90,965,281	5,322,056	3,311,417

주) 2019~2022년은 결산 기준이며, 2023년은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② 시·도교육청 기금 현황[5)]

시·도교육청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자금임.

2023년말 기준 시·도교육청 기금의 수는 총 54개로 전년 대비 1개가 감소하였고, 2023년도말 기준 현재액은 총 18조 7,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719억원 감소하였음.

5)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연도별 시·도교육청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억원)

연도	기금 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7	9	3,566	359	3,207
2018	10	4,669	331	4,338
2019	20	17,981	823	17,157
2020	31	29,761	813	28,948
2021	44	61,677	7,636	54,041
2022	55	221,811	7,860	213,811
2023	54	226,166	39,074	187,092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금 중 규모가 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6]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 제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7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말 현재액은 9조 5,923억원임.

[연도별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억원)

연도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9	6	6	11,828	0	11,828
2020	17	13	23,056	0	23,056
2021	17	14	36,894	6,774	30,121
2022	17	17	120,564	4,719	115,845
2023	17	17	122,498	26,575	95,923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12.3. 제정) 제3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음.

2021년부터 동 기금이 조성되어 2023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3년도말 현재액은 8조 1,471억원임.

[시·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억원)

연도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21	14	13	18,721	207	18,514
2022	17	16	90,409	2,335	88,074
2023	17	17	92,918	11,447	81,471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최초 법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와 당해연도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봉급 전액, 당해연도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 반액에 해당하는 봉급교부금이였음.

2001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내국세의 연동 비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음.

이후 봉급전입금 통합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 등을 사유로 2005년 19.4%로 상향되었고,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법정교부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왔음.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고, 특별교부금은 다시 지역현안·재난안전관리 및 국가시책 특별교

부금으로 구분됨.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를 합산한 금액임.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30%, 10%, 60%의 비율로 교부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

종류 및 재원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7% +교육세 일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 교부금 (내국세 20.79%의 3%)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 (10%)	보통교부금 산정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 감소 또는 재해예방 특별수요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으로 교육부 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주 1) 교육세에서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됨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교부받음

자료: 교육부

다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도입하였는데, 보통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97%에서 20.79%×96.2%로 줄이는 대신, 내국세의 20.79%×3.8%×(80/380)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5조 3,636억 6,600만원 교부되었고, 보통교부금 63조 4,164억 5,600만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581억 5,800만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27억 1,900만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조 3,363억 3,300만원이 교부되었음.

최근 5년간 보통교부금과 각 특별교부금의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보통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합계
2019	53,682,280	469,963	156,654	939,926	55,248,823
2020	52,011,443	449,919	149,974	899,836	53,511,172
2021	57,916,398	503,819	167,940	1,007,639	59,595,796
2022	73,855,414	656,863	218,954	1,313,725	76,044,956
2023	63,416,456	458,158	152,719	1,336,333	65,363,666

자료: 교육부

(2) 검토의견

학령인구의 감소, 새로운 교육수요에의 대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도래,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육계, 재정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는 현재의 방식은 최근 심화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교원 정원 감소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교부·운용되어 문제라는 의견과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유지(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음.

(가)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방식에 대한 반대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시키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내국세 규모의 장기적 증가와 반대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공교육비 투자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논거가 되고 있음.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초·중등 학령인구(6~17세)는 2025년 511만여명에서 2040년 293만여명, 2050년에는 268만여명 등으로 줄어들어, 2072년에는 2025년 대비 △62.0% 감소한 194만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초·중등 학령인구 예측]

(단위: 만명)

구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2년
초등(6~11세)	234	161	156	153	123	94
중등(12~14세)	140	115	68	83	71	48
고등(15~17세)	137	133	69	82	74	52
합계	511	409	293	318	268	194

주) 중위추계 기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12.

학령인구의 감소와 반대로 내국세 및 교육세 규모는 경제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일 수 있으나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급증하게 되는 구조임.[7)]

OECD 국가들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2020년 기준 초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728로 OECD 평균 $10,658달러 대비 24.6% 높은 수준미여, 중등교육의 경우도 OECD 평균 대비 42.7% 높은 수준임.

반면,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2,225로서 OECD 평균 $18,105보다 32.5%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하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공교육비 투자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PPP))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2020년	한국	13,278	17,038	12,225	14,113
	OECD 평균	10,658	11,942	18,105	12,647

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2020년) 837.67원/$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3」, 2023.9.

둘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는 확정된 보통교부금 금액에 맞추어 조정되므로, 재정수요에 대한 적정 규모의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7)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분석에 의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세수전망)을 비관적으로 가정하더라도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0년에 2020년 대비 7.5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음.[8)]

그러나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보통교부금의 총액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가 결국 보통교부금 총액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에서 세수 상황에 따른 교부금 예상 재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였음.[9)]

셋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 교부되어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을 위해 특별교부금의 취지와 다소 다른 시설사업에 대부분 쓰이게 되는 문제가 있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교 신·증축 및 개보수에 거의 대부분을 교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액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교부연도	교부액							집행액
	신·증축(A)	개보수(B)	기관시설	지역특색	기타	소계(C)	(A+B)/C	
2019	325,778	198,971	15,713	1,750	3,025	545,237	96.2	82,701
2020	239,953	203,086	21,734	4,065	1,440	470,278	94.2	298,628
2021	229,947	292,420	17,275	3,934	0	543,576	96.1	118,114
2022	243,976	465,586	29,331	3,933	1,992	744,818	95.3	86,978
2023	168,150	275,659	26,307	12,104	367	482,587	92.0	48,397
합계	1,207,804	1,435,722	110,360	25,786	6,824	2,786,496	94.9	634,818

주 1) 집행액은 각 연도말 기준
2) 교부액은 당해연도 교부액과 전년도 집행잔액(감교부)를 합친 금액
자료: 교육부

또한 개보수와 같은 시설사업에 주로 교부되다 보니 각종 행정절차에의 시간 소요,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9) 감사원, 「감사보고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2023.7.

한정된 공사 기간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2년에는 교부액 7,448억 1,800만원 중 869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1.7%)되었고, 2023년에는 교부액 4,825억 8,700만원 중 집행액이 483억 9,700만원(집행률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넷째, 내국세 수입의 추계 오차로 인해, 2021~2022년과 같이 세수가 초과되면 추경 편성을 통해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고, 2023년과 같이 세수가 부족하면 교부단계에서 불용처리를 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추경 및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B)	집행률 (A/B)	불용액
	본예산(A)	추경(B)	증액분(B-A)			
2021	51,741,578	57,916,398	6,174,820	57,916,398	100.0	-
2022	63,217,987	73,855,414	10,637,427	73,855,414	100.0	-
2023	73,533,444	73,533,444	-	63,416,456	86.2	10,116,988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세수 오차의 발생이 큰 내국세에 연동하기보다 안정적이고 교육수요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10)]

(나)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방식에 대한 찬성의견

교육청 등 교육계는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임. 2022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신설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던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개편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11)]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및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수 뿐만 아니라 학교수·학급수·교직원수·교육복지 및 교육환경개선 등

10) 대표적인 안으로는 소득 증가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 있음.

교부금t = (1+경상GDP증가율t)×교부금t-1×(학령인구비율t/학령인구비율t-1)

1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성명서 발표」, 2022.10.6.; 제400회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2022.11.24.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늘봄학교[12]를 통한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유보통합 추진, AI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지자체 연계 교육 발전(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학교밖 통학로 등)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생성·확대 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지 또는 확대를 전제로 산정방식을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유지해야 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 사업은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2024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늘봄학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늘봄학교 관련 연차별 재정 소요추계(2023~2026)]

(단위: 억원)

추진내용	2023	2024	2025	2026	재원(안)
1.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1,616	2,014	2,524	2,947	
①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820	1,140	1,575	2,108	보통교부금
② 자유수강권 지원	739	789	830	839	보통교부금
③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60)	(120)	(300)	(600)	2023~2025 특별교부금 2026~보통교부금
④ 프로그램 확대 지원	57	85	119	-	특별교부금
2.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확대	6,661	7,161	7,502	8,432	
① 운영비	2,640	2,981	3,322	4,252	보통교부금
② 시설비	324	324	324	324	보통교부금
③ 인건비	3,597	3,756	3,756	3,756	총액인건비
④ 거점형 돌봄모델 지원	100	100	100	100	특별교부금, 2025~보통교부금
3. 초등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141	270	390	75	
① 센터 구축·운영비	36	60	75	75	특별교부금, 2026~보통+특교
② 인건비(지방공무원)	105	210	315	-	총액인건비
4. 시범교육청 지원*	600	840	1,320	-	특별교부금
총 계	9,018	10,285	11,736	11,454	

주) 시범교육청 선정 및 교육청별 시범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자료: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2023.1.

12)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할 예정인데,[13] 교육세 일부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없애고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도입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를 단기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학령인구의 감소, 새로운 교육수요에의 대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도래,[14]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교육계 및 재정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13) 교육부,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6.

14) 2025.12.31. 일몰기한 도래 예정

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1) 개요

(가) RISE 개념 및 도입배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란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함.

최근 학령기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가 공동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한 대학의 기능 변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산업계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이러한 지자체·대학·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RISE 체제로, 교육부는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 이후, 7개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 전담부서 및 RISE 센터 구축 등 사업모델을 마련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RISE 체제 이전에도 지역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위해 대학을 매개로 하는 정책사업들은 꾸준히 추진되어왔음.

[시기별 대학-지역 연계 대학지원 사업 현황]

시기	'03.2.~'08.2.	'08.2.~'13.2.	'13.2.~'17.3.	'17.5.~'22.5
정책 기조	국가 균형 발전 지방대학 육성	시장과 기업 역할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추진	정책 사각지대 회복 지역사회 발전 초점	국가 균형 발전 강화 지자체-대학 협업 강화
주요 정책 사업	①1단계 BK21 육성사업 ②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③산학협력대학 육성사업	①2단계 BK21 육성사업 ②수도권 지방대학 교육 역량강화 사업 ③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①BK21+ ②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③CK(대학특성화) ④PoINT(국립대학 혁신지원)	①국립대학 육성사업 ②대학혁신지원사업 ③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정책 성과	지방대학 예산 증액 지역 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 대학 자율성 확대	재정지원사업 통합·확대 지방대 육성방안 발표	지역-대학 혁신 플랫폼 지역대학 국가책임 강화

자료: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 2023.2.

BK21(두뇌한국 21),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PoINT(국립대학 혁신지원), 대학혁신지원,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다양한 대학지원사업이 설계되었고, 각 시기의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형태도 변모해왔음.

다만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학지원사업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 점,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하향식으로 추진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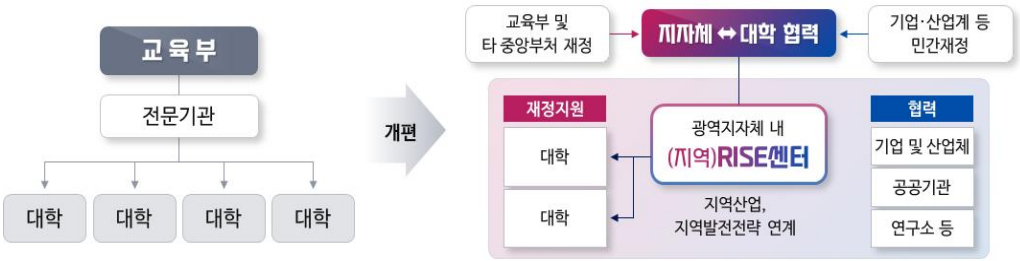
예를 들어, ①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집행 자율성이 낮은 중앙정부 사업에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②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학지원 예산 비중은 10년간 3~4% 이내에 불과해,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을 위한 의지를 갖고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하려는 유인은 부족한 구조였다는 것임.

따라서 대학·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을 주어 '상향식·지역별 맞춤형 통합재정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추진방식으로 고안된 것이 RISE 체제임.

(나) RISE 추진 체계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목적사업을 설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각 대학에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RISE 체제는 지역 대학·산업계 및 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 및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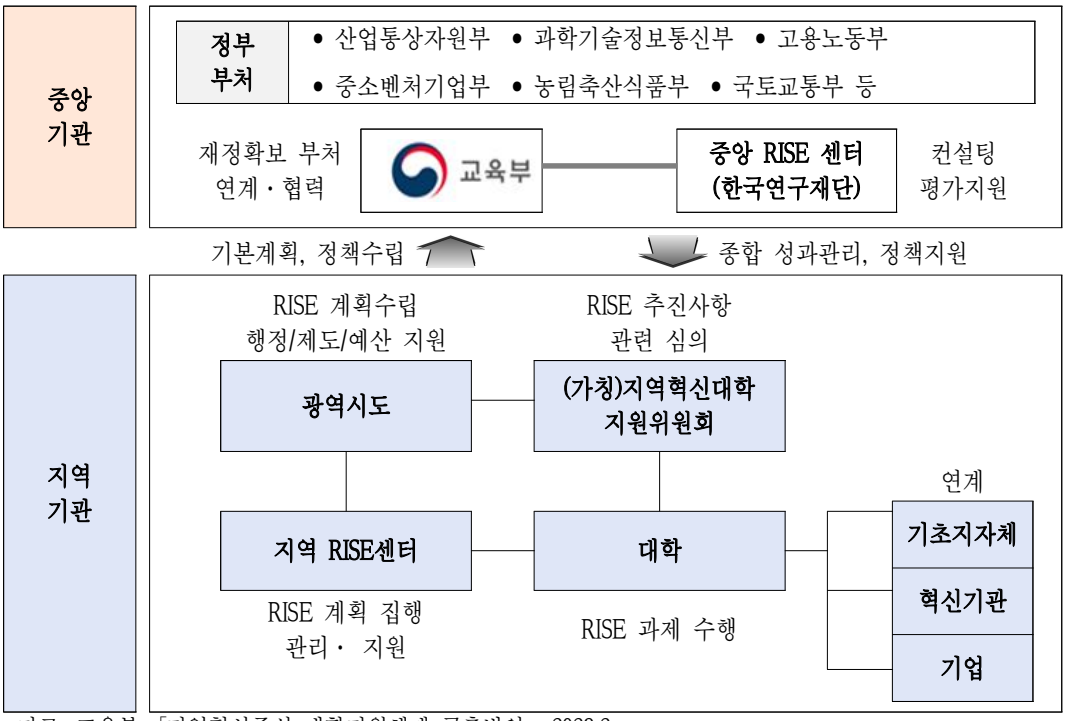
[RISE 체제 도입에 따른 지원 체계 변화]



자료: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 2023.2.

RISE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관련 중앙행정기관·중앙 RISE센터(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RISE 추진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수요,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반영한 5개년('25.~'29.)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RISE센터가 공모·선정·성과관리 등 사업 과정 전반을 수행·관리하게 될 예정임.

[RISE 추진체계]



자료: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 2023.2.

(다) RISE 사업예산 구조 개편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역 수요의 반영 필요성이 크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지원 사업예산을 RISE 사업예산으로 통합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2조원 가량으로 계획하고 있음.

사업예산 구조 개편의 전 단계로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내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였음.

[RISE 통합 확정 대학재정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54,000	346,000	-	8,000	342,00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302,500	302,500	-	-	302,50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3.0)	104,500	104,500	-	-	104,500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90,000	90,000	-	-	90,00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51,000	51,000	-	-	51,000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190,000	190,000	-	-	237,500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60,000	60,000	-	-	75,000
합계	1,152,000	1,144,000	-	8,000	1,202,500

자료: 교육부

현재까지 통합이 확정된 예산은 약 1조 2,000억원 규모이나, 교육부는 여러 대학지원 사업의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8,000억원을 마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RISE 사업 예산을 2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또한 지금까지 대학지원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던 것과 달리, RISE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과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율(지방비 매칭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임.

(라) RISE 성과관리

교육부는 지역 주도의 자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 RISE센터) 중심의 자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연차평가와 중간평가(3년차), 종합평가(5년차)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 설계와 예산 지원에 활용할 계획임.

성과지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핵심성과지표[15]와 지역 주도로 선택하여 수립하는 자율성과지표[16]를 활용할 예정임.

15) 필수관리지표로서 시도가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지표

16) 시도에서 단위과제별로 제시한 성과지표로서 사업의 운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목적

(2) 검토의견

첫째, 시행 초기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RISE센터의 역량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대학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 초기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주로 한국연구재단이 오랜 기간 수행해 왔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들과 사업을 추진한 경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RISE 사업 초기에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대학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 업무 관련 국(局) 단위의 전담조직이 구성된 지자체는 2024년 7월말 기준 광주·대구·대전 및 전남 4개 지자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자체는 과 또는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

[지자체 RISE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전담조직명(RISE 총괄팀)	구성현황
강원	인재육성과(산학협력팀)	4팀 15명(5명)
경남	교육인재과(대학지원담당)	5팀 23명(5명)
경북	대학정책과(대학정책팀)	3팀 12명(5명)
광주	교육청년국(RISE지원팀)	3과 9팀 36명(3명)
대구	대학정책국(대학정책팀)	2과 5팀 40명(7명)
대전	교육정책전략국(대학협력팀)	4과 14팀 61명(4명)
부산	지산학협력과(대학정책지원팀)	4팀 22명(6명)
세종	청년정책담당관(산학협력팀)	4팀 14명(3명)
울산	대학청년과(대학정책팀)	3팀 14명(5명)
전남	인재육성교육국(대학지원팀)	2과 1단 10팀 42명(3명)
전북	교육협력추진단(대학협력팀)	4팀 25명(9명)
제주	미래성장과(RISE추진팀)	6팀 29명(3명)
충남	고등교육정책담당관(대학정책팀)	4팀 17명(6명)
충북	미래인재육성과(지산학협력팀)	3팀 12명(4명)
서울	대학협력과(대학협력정책팀, 대학협력사업팀)	4팀 19명(2팀 11명)
인천	교육협력담당관(대학협력담당)	3팀 15명(5명)
경기	디지털혁신과(산학연협력팀)	4팀 23명(5명)

주) 2024.7.말 기준
자료: 교육부

RISE 체제의 성공 여부가 지자체 조직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투입인력과 조직의 위상이 지자체의 역량 집중도와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으므로, RISE 체제 출범 전까지 지자체 단위의 조직과 인력의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RISE 체제는 지역의 현안 해결과 혁신을 대학과 함께 이루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산업 및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기획·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역할을 지역 RISE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지정된 각 지자체의 RISE 센터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원·테크노파크 또는 연구원 등 대학재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적거나 없는 곳들이 대부분으로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음.

지역 RISE 센터의 조직·인력도 현재 1팀당 2~6명 가량으로 센터당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규모에 비해 인력과 조직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임.

[지역 RISE센터 조직 현황]

구분	전담기관 (센터명)	조직현황		비고
		현재	예정	
강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 RISE 센터)	1부 2팀 10명	2부 4팀 20명	
경남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	2팀 8명	2팀 10명	
경북	경북연구원 (경상북도RISE센터)	1팀 6명	2팀 10명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	3팀 6명	3팀 10명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대구RISE센터)	1팀 5명	3팀 11명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1팀 6명	3팀 20명	
부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라이즈센터)	1팀 7명	2본부 23명	現)부산테크노파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변경지정예정('24.8.)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1팀 2명	3팀 12명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추진본부)	2실 3명	2실 5팀 20명	
전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RISE 추진단)	1팀 7명	2부 5팀 21명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	4팀 17명	5팀 30명	RISE 담당 (1팀 5명)

구분	전담기관 (센터명)	조직현황		비고
		현재	예정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혁신플랫폼)	3사업단 54명	4팀 20명	RISE TF (1팀 7명)
충남	충남연구원 (충남 라이즈 센터)	1팀 6명	4팀 24명	
충북	충북연구원 (충북지역대학 혁신지원센터)	3팀 13명	3팀 13명	
서울	서울연구원 (서울라이즈센터)	2팀 5명	2팀 9명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RISE 전담기관)	1팀 3명	2팀 7명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ISE추진 TF팀)	1팀 3명	4팀 20명	

주) 2024.7.말 기준
자료: 교육부

조직의 규모와 인력은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나, 지역 RISE 센터의 고등교육 관련 업무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RISE 센터들이 주로 평생교육·연구용역 또는 산학협력 업무 등을 수행한 기관이며, 고등교육과 관련된 업무 경험도 대부분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보임.

[지역 RISE센터 고등교육 관련 업무, 사업 경험]

구분	전담기관 (센터명)	고등교육 관련 업무, 사업 경험
강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 RISE 센터)	- 인재육성사업(장학금, 미래인재 육성 등) - 대학인프라 활용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강원형 특별자치 도민대학 운영기반 조성
경남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	- 방송대 협업 온라인 학습지원 - 시군 평생학습기반 및 고도화 지원사업 - 고령친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 경남도민 평생학습대학 운영지원 - 찾아가는 시군 평생학습 모니터링단 운영
경북	경북연구원 (경북RISE사업추진단)	- 대학중심 지산학연 융합생태계 조성 연구, 경북 농촌지역 대학연계형 청년특화존 조성 방향 등 다수 대학연계 지역발전 연구 추진 - 지방시대지원단 전문기관으로 대학연계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	- 대학 관련 협의체 참여(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지역대학 혁신자문단, 대학 산학협력단장 협의체 등)

구분	전담기관 (센터명)	고등교육 관련 업무, 사업 경험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대구RISE센터)	- (정책과제) 『RISE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발전 연계 대학지원 계획 수립』(2023) - (연구보고서) 『대구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2018) - 『대구형 평생교육 모델 개발』(2014)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 지역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특성화고 대상 장비교육 등 고등교육 관련 사업 경험 다수
부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라이즈센터)	- 지역수요기반 정부(교육부, 산자부, 과기부 등) R&D 발굴・기획 등 공모 지원 - 市 자체 지역대학협력사업 전담기관 수행 ※ 대학혁신연구단지조성사업, 개방형연구실 사업, R&D 씨앗기획사업 등 다수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기업-청년희망 이음사업 등 지자체 및 정부부처 사업 다수 참여 - RIS・미래모빌리티・디지털 헬스케어・디지털콘텐츠 사업 등 대학 협력사업 다수 참여 - 산학연관 네트워크, 세종 일자리 네트워크, 세종 바이오 기술교류회, 기술사업화협의체 등 14개 네트워크 운영 및 참여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추진본부)	-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전반 관내대학 산학협력단 사업 수행
전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RISE 추진단)	- (연구인재 역량강화)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학업을 병행하여 공동연구 활동 수행 - (대학생 글로벌 비전캠프) 국제사회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대상 국외연수기회 제공 - (LiFE 2.0)지역수요를 반영한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개설, 학사제도 도입 등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	-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지역혁신 사업 간 연계 조정 - 지역산업 전략 및 정책 기획 - 전북 수소 경제산업 및 농생명 산업 연계 스파트팜 육성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혁신플랫폼)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충남	충남연구원 (충남 라이즈 센터)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지역평가 - R-PACK사업 협약(도내14개대학MOU)등 인적자원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
충북	충북연구원 (충북지역대학 혁신지원센터)	-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서울	서울연구원 (서울라이즈센터)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및 수탁과제 등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RISE 전담기관)	- (산학협력)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 지역대학 산학협력 지원(디자인), 녹색기후산업(에너지, 탄소저감 등) 육성지원 등

구분	전담기관 (센터명)	고등교육 관련 업무, 사업 경험
		- (취·창업 지원) (취업)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창업)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 (6대 전략산업 육성)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반도체 후공정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항공 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사업, AI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사업 등 - (중소기업 지원) 사업화 R&D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ISE추진TF팀)	- (정책연구)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등 산학연 사업 기획·연구 및 경기도 산업 분야 종합계획 수립 - (인력양성) 도내 대학 선정 및 협력사업 진행(바이오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AI리터러시 교육 운영) - (사업화지원) 도내 대학 선정 및 도내 기업지원(세대융합형 기업컨설팅, 디지털제조혁신 신규 BM모델 발굴 및 산업전환 지원, 산학협력 융합 과제 기술사업화 지원) - (R&D지원) 도내 대학-기업 공동 R&D과제지원(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첫걸음 기업연구소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등) - (창업지원) 도내 대학 창업혁신 공간 조성 지원(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대학 창업지원)

자료: 교육부

따라서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고등교육과 지역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교육부의 대학 분야 정책사업으로서 특화된 분야의 사업은 RISE 체제에서 지자체의 관심도나 사업추진 역량 미흡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의 대학 분야 정책사업으로서 특화된 분야의 사업들이 RISE 체제로 편입될 예정임. 이른바 특수목적 사업들인데, 통합이 확정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3.0)을 비롯해, RISE 체제 편입을 논의 중인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 등은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이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임.

[대학재정지원 관련 특수목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목적	'23년 결산	'24년 예산	사업기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대학·산업계·연구계 간 협력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여 핵심 인재 양성 추진	143,788	201,001	'21.~'26.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대학 내 창의적 자산(기술, 특허, 아이디어 등)의 '탐색-실사-고도화-실용화(기술이전, 기술창업 등)' 전 과정을 지원	16,219	21,000	'23.~'25.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발굴·확산	12,097	15,110	'23.~'24.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이 학과 재구조화, 교수학습법 개발 등을 통한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14,200	14,200	'24.~'26.

자료: 사업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특수목적 사업들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재정지원 사업들이 통합된 RISE 체제로 편입될 경우 지자체의 관심도나 사업추진 역량 미흡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달성하려 했던 특수목적이 형해화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은 2015년 1기 BRIDGE 사업을 시작으로, 2기 BRIDGE+, 3기 BRIDGE 3.0 사업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며 사업의 체계와 성과가 자리 잡았는데, 일부 사업들이 RISE 체제로 편입되면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과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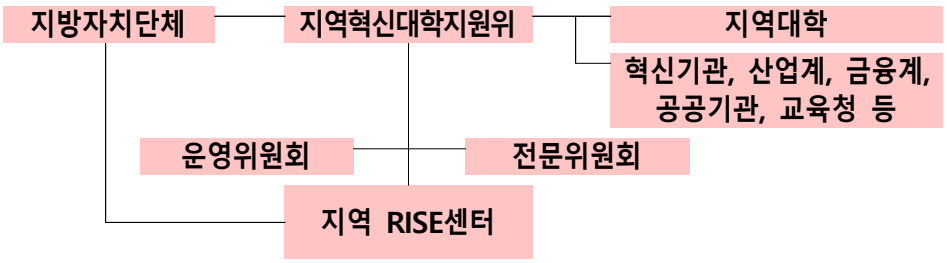
또한 통합이 확정된 1조 2,000억원의 규모의 사업 외에 교육부는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8,000억원 가량의 사업을 RISE 체제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17]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성과와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수평적 관계로 참여하는 (가칭)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 내 RISE 추진 전반

17) 교육부는 8,000억원 가량의 예산 구조조정에 대해, 산학연, 취·창업 등 지역 수요 반영이 필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재정지원 사업 추가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통합 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말 확정 예정이라고 설명함.

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며 대응하겠다는 설명임.

[가칭 지역혁신대학지원위 구성(안)]



▸(구성) 지역 내 대학 총장-시도지사 공동위원장, 위원 구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하되, 대학·혁신기관·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
▸(역할) 지역 RISE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지역 RISE센터 지정·취소 심의 등

자료: 교육부

향후 RISE 체제에서 특화된 분야의 특수목적 사업이 지자체의 관심도나 사업추진 역량 미흡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고,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역 간 경쟁을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되, 지나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RISE 체제에서 각 지역의 과제 달성도에 따라 사업비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어 성과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지역들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목표와 추진 방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RISE 체제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라 성과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업이 충분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역별 성과 편차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사업 시행 전에는 사업 시행의 기반이 되는 RISE 5개년 계획이 각 지역별로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업 시행 후에는 지자체별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 배분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되, 성과평가 내용·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비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글로벌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사업

가. 개 요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2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공급망 대응역량강화를 선정하고, 총 3.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수입선 다변화·국산화 R&D·생산설비 확충 및 공공비축 등을 제시하였음.

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의 해외유전·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으로 해외자원개발융자와 유전개발출자 예산을 전년 대비 2배(0.1조원→0.2조원) 확대 편성하였음.

② 국산화 R&D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신 산업 및 품목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0.2조원(2.1→2.3조원) 증액 편성하였음.

③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턴기업이 국내 생산 설비 등을 신·증설할 경우, 이에 대해 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유턴기업 지원 예산을 0.1조원 투입하였음.

④ 공공비축 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비철금속(니켈 및 알루미늄 등) 및 석유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비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조달청의 희소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전년 대비 0.25조원(0.32→0.57조원) 증액 편성하였음.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나. 주요 재정사업 현황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 및 각 부처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각 세부과제별 주요 재정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23년도 세부과제별 주요 재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과제	부처명	회계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본예산	집행액	예산
수입선 다변화	산업부	에특 회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175,408	175,408	39,817
			유전개발사업 출자	30,130	15,609	48,140
		일반 회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수입선 다변화)	1,581	2,265	1,901
국산화 R&D	과기부	소특 회계	나노・소재기술개발(R&D)	251,100	251,100	223,048
			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R&D)	8,980	8,980	4,320
	산업부	일반 회계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10,046	10,046	10,046
			신시장창출을위한 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R&D)	10,000	10,000	10,500
		소특 회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메타버스를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925	2,925	3,700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신시장창출형디스플레이기술개발 및 실증)	5,600	5,600	6,800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디스플레이장비 국산화를 위한 핵심부분품 기술개발)	5,000	5,000	2,920
생산 설비 확충	산업부	균특 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국내복귀투자보조)	57,000	57,000	100,000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	50,000	50,000	200,000
공공 비축	조달청	조특 회계	회전자금전출금	50,000	50,000	70,000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9,221	2,554	8,619
	농림부	농안 기금	비축지원(수매비축)	231.835	231,835	230,110
	해수부	수발 기금	비축	175,000	127,983	206,500
	환경부	환특 회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활성탄수급안정화)	408	408	8,027
	산업부	에특 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비축출자 사업)	37,232	37,232	233,062
			석유비축사업출자	67,268	67,268	66,595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066	2,066	2,066

주) 정부는 공급망대응역량 강화 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의 2023년도 결산 기준 현황 및 목록을 미공개하고 있어,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 내용 및 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을 선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이하는 글로벌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관리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 관리에 대한 검토, 재정운용 감독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됨.

(1)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① 예산의 집행부진 관리 철저 필요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출자 사업은 출자금 예산 편성 시 제출하였던 출자계획에 맞춰 국내외 기업과 다각도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매도사의 매각의사 철회, 매입 가격 급등 등의 사유로 협상이 종료되어 출자금 예산 145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 사업은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을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271억 8,000만원 중 126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46.6%)되고, 145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전개발 사업에 27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내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내유전 사업에 91억 7,100만원, 해외유전 사업에 180억 900만원의 출자금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3년 유전개발 사업 내내역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내역사업</th><th>편성 근거</th></tr>
<tr><td>국내유전</td><td>
<table>
<tr><td>구분</td><td>투자비</td><td>출자율</td><td>출자액</td></tr>
<tr><td>6-1중·동부</td><td>3,015</td><td>40%</td><td>1,206</td></tr>
<tr><td>8·6-1북부</td><td>19,508</td><td>40%</td><td>7,803</td></tr>
<tr><td>4·5광구</td><td>403</td><td>40%</td><td>162</td></tr>
<tr><td>합계</td><td>22,926</td><td>-</td><td>9,171</td></tr>
</table>
</td></tr>
<tr><td>해외유전</td><td>
<table>
<tr><td>구분</td><td>투자비</td><td>출자율</td><td>출자액</td></tr>
<tr><td>유망생산
자산투자</td><td>72,606</td><td>20%</td><td>14,521</td></tr>
<tr><td>세네갈</td><td>8,720</td><td>40%</td><td>3,488</td></tr>
<tr><td>합계</td><td>81,326</td><td>-</td><td>18,009</td></tr>
</table>
</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초 사업계획상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유전 중 유망한 생산자산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여 일생산량 3,500배럴 규모 추가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UAE 및 오만 등 중동지역 등의 해외유망광구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협상에 실패하여 투자가 불발되었음.

이에 따라 유망생산 자산투자를 위해 편성된 출자금 145억 2,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의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은 사업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의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은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안정적인 보관과 장기적 원자재의 창고 보관을 위한 비축창고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3억 7,500만원 중 25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67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음.

동 사업의 비목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된 실시설계비 1억 5,4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차년도 공사비 86억 2,800만원 중 19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66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건설비	9,221	9,221	154	9,375	2,554	6,772	50	8,619
- 실시설계비 (420-02)	-	-	154	154	127	-	27	
- 공사비 (420-03)	8,628	8,628	-	8,628	1,952	6,652	23	7,849
- 감리비 (420-04)	577	577	-	577	462	115	-	755
- 시설부대비 (420-05)	16	16	-	16	12	4	-	15
합 계	9,221	9,221	154	9,375	2,554	6,772	50	8,619

자료: 조달청

먼저 ① 조달청은 사업지연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설계용역 단계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8개월 가량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2023년 11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공사비의 22.7%에 해당하는 19억 5,200만원만 선금으로 집행되고 남은 66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최근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비축창고 신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② 2023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 감리비 5억 7,700만원을 편성할 당시, 조달청은 2022년 7월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총 감리비 16억 8,900만원 투입을 전제로 사업 1차년도인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3년 예산안 편성 시점 기준 총사업비(2022.7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시건) 현황]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A+B)	공사비 (A)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계 (B)
23,823	21,316	769	1,689	49	2,507

자료: 조달청

그런데 2023년 9월 조달청이 실제로 발주한 '군산 비축창고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액은 14억 7,100만원으로, 당초 총사업비상 감리비 16억 8,900만원과 비교하여 2억 1,8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조달청은 2024년 1월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총 감리비를 14억 7,1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차액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총사업비상 감리비 규모가 16억 8,900만원에서 14억 7,100만원으로 감액조정됨에 따라 1~3차년도 연부액을 조정하여 실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장기계속계약의 특성을 이용하여 1차년도의 용역기간을 2023.11~2024.7월까지, 2차년도의 용역기간을 2024.7~2025.3월까지로 회계연도를 넘겨 설정함으로써 당초 총 감리비 16억 8,900만원 기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배정된 예산 5억 7,700만원과 7억 5,500만원을 일부 조정·불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음.

[건설사업관리용역 장기계속계약 당초 계획 대비 낙찰액에 따른 집행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장기계속계약	당초 총사업비 계획 (2023년 예산안 편성 기준) (A)	실제 낙찰액에 따른 차수별 집행금액		
		집행금액 현황 (B)	용역기간	차액 (B-A)
1차(2023년)	577	577	2023. 11. 21. ~ 2024. 07. 17.	-
2차(2024년)	755	755	2024. 07. 18. ~ 2025. 03. 15.	-
3차(2025년)	357	139	2025. 03. 16. ~ 2025. 05. 13.	△218
합계	1,689	1,471		△218

자료: 조달청

이에 조달청은 2023년 감리비 예산 5억 7,700만원 중 4억 6,2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고, 2024년 예산에 반영된 2차년도 감리비 예산 7억 5,500만원 역시 용역기간을 2025년 3월까지로 설정하여 불용없이 이월 처리하여 집행할 계획임.[1)]

이는 공사비의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차년도 공사비 중 2,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과 대조적임.

따라서 조달청은 총사업비에 낙찰차액을 반영할 시 사업연도별 연부액을 재산출하고 변경된 연부액을 기준으로 연차별 집행금액을 집행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국산화 R&D 과제의 최종집행 관리 필요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 내 세부과제의 경우, 2024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로 하였던 C사의 KrF 스캐너를 도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향후 국산화 R&D 관련 핵심 부품·장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의 포토공정은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2)] 위에 집적회로를 그리

1) 총 감리비 감액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 소요는 3차년도인 2025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억 5,7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으로 2억 1,800만원 감액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임.

기 위하여,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reticle)에 빛을 통과시켜 집적회로 패턴을 웨이퍼 위에 찍어내는 공정임.

KrF 스캐너는 이러한 포토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원의 한 종류인 KrF(Krypton Fluoride) 광원을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집적회로 패턴을 찍어내는 장비로서, 스테퍼(stepper) 방식은 마스크 전체의 이미지가 한 번에 웨이퍼에 형성되는 반면, 스캐너(scanner) 방식은 광원이 통과하는 렌즈의 부분 중 빛번짐 및 왜곡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부분으로만 광원을 투과시킴으로써 제조공정의 정확도 및 세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은 미래신사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R&D 사업비 예산현액 2,511억원이 과제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전액 교부되었음.

동 사업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공동연구소 중점허브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고도화 및 기능확대' 과제는 2023~2028년간 총 연구개발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대학교 산하 반도체공동연구소의 8대 공정 CORE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장비에 대한 사용자 및 공정 교육,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임.

[반도체공동연구소 중점허브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고도화 및 기능확대 과제 개요]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총액
나노・소재 기술개발	반도체공동연구소 중점허브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고도화 및 기능확대	서울대학교	(전체) 2023-05-01 ~ 2028-12-31 (1단계) 2023-05-01 ~ 2026-12-31 (2단계) 2027-01-01 ~ 2028-12-31	30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과제의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정부지원 과제비 60억원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교부받았음.

그런데 동 과제의 최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정부지원 과제비 교부액 60억원을 포함한 2023년 예산현액 60억 8,700만원 중 1억 3,6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2) 웨이퍼는 실리콘(Si), 갈륨 아세나이드(GaAs) 등을 성장시켜 만든 단결정 기둥을 적당한 두께로 얇게 썬 원판을 의미함

[2023년 반도체공동연구소 중점허브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고도화 및 기능확대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수행기간	연구수행기관명	교부액 (국비)	예산현액 (A)	최종 집행액 (B)	최종 집행률 (B/A)
23.5.1~23.12.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6,000	6,087	136	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고가연구장비에 해당하는 KrF 스캐너(당초 총 구입비 배정예산 110억원, 1차년도 구입비 30억원)의 도입지연으로 인하여 과제비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구체적으로는 2023년 최초 동 과제 추진 당시에는 C사의 신규 KrF 스캐너 장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연중 2024년도 R&D 예산 삭감 기조[3]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인하여 장비 구축 금액이 부족해지자 구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이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N사의 중고 KrF 스캐너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의 완료 후 2024년 6월까지 규격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후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의 하위과제인 **‘와이드밴드갭소재기반 차량용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 구축’** 과제가 있음.

동 과제도 당초 사업계획 당시 KrF 스캐너를 A사의 신규장비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이후 A사의 KrF 스캐너 신제품 가격이 폭등하여 당초 계획 35억원 대비 단가가 약 416억(€28,223,940)으로, 약 1,189% 상승하였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R&D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KrF스캐너의 사양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FEC(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심의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당초 계획하였던 A사 신규 장비 구입을 보류하고 신제품 대비 가격이 1/10 수준인 N사의 중고장비를 도입 추진 중임.[4]

3)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2,230억 4,8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80억 5,200만원이 감액(△11.2%)되었음.

4) <세부추진현황>
① 심의 23. 09. 01.
② 입찰 24. 04. 16.
③ 계약 24. 04. 23.
④ 입고 24. 05. 24.
⑤ 구축완료 24. 09. 예정
* 설치/성능검증 추진 중

다만, 도입을 검토하는 N사의 중고장비의 경우 해상도가 180nm로 A사 신규 장비의 해상도 110nm에 비해 1.6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시중 업체인 △△사가 양산단계에서 활용하던 장비로서 제품검수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된 바 있어 보완조치를 시행 중임.

[중고장비에 대한 제품검수 결과]

구분	검수 결과	보완조치 결과
Wafer Loader	Slider Unit, In-Line Unit 흔들림	흔들림 고정
Chamber	MLTC Rack Inverter 정위치 아님 AVIS, RYL, RYR Amp 미고정	각 부품 위치는 사용자 편의에 맞게 조정 가능하며 사업 상황에 맞게 조정 및 고정
BMU Inter Lock	해제후 사용중	Inter Lock 기능을 항상 작동으로 변경하여 사용
GIGA Laser Communication	작동 안됨	레이저와 스캐너간 신호체계 미스매치를 튜닝을 통해 정상 가동
Operation Unit DS 10	커버를 연 채 사용 중	장비커버 작동시 닫은 상태에서 사용
Contral Rack Cover	없음, 발열 발생	보호덮개는 탈부착이 가능해 부착하여 사용, 쿨링 팬을 활용해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발열문제 보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화 R&D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R&D 사업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핵심 장비·부품 구입 추진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 등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양의 장비가 아닌 중고장비를 도입 시 중고장비 활용도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고장비에 대한 제품 검수 결과를 유의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도입 장비 변경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산화 R&D 과제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최종 집행단계에서 연례적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과제비를 전액 교부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최종집행단계에서의 이월현황을 파악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반영하고, 교부된 과제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국산화 R&D 과제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이 추진되었음.

동 내역사업은 혁신 소재·공정을 중심으로 LCD와 OLED에 이은 차세대·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Test-bed용 일괄공정 라인 구축을 통하여 신기술을 검증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은 560억 8,500만원이 반영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560억 8,500만원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전액 집행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동 과제의 하위과제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기반구축’** 사업의 최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신규로 교부된 국비지원 과제비 36억 8,500만원과 매칭과제비 22억 2,000만원 외에도 하위과제 단계에서 과제비 958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동 R&D 하위과제의 과제비는 건축비와 장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 R&D 사업 시공일정보다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비가 이월되고 있었으나, 공사가 정상 진행(24년 7월말 기준 공정률 85.8%)되고 있음에 따라 이월된 건축비는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비비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액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는 점, 장비 잔금은 장비가 현장에 설치되고 정상 가동이 확인된 이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그에 따른 장비비 잔금의 순차적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였음.

최종적으로는 2023년도 과제비 현액 1,017억 1,500만원 중 207억 7,9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245억 4,000만원이 집행된 데에 그침.

[2023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기반구축 사업 하위과제의 최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국비 (a)	2023년 매칭액 (b)	전년도이월 (직전단계 이월금, 직전년도 계속비) (c)	2023년도 현액 (a+b+c)	2023년 12월 말 기준 최종집행액	2024년 3월 기준 최종집행액
3,685	2,220	95,810	101,715	20,779	24,54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정부는 국산화 R&D 사업 내 속한 과제비를 교부하기에 앞서 각 하위과제

내 보유되고 있는 전년도 이월금 현황을 파악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개별 과제 내 이월금이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③ 부적정 집행

첫째, 해외자원개별특별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예산 전액을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국내외 유전개발에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음.

내역사업인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은 해외 석유·가스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국내외 유전개발 소요 336억 1,600만원, 투자위험보증사업 1,391억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은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2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내역사업별 편성 현황]

세사업 명	편성 근거
국내외유전개발	○ 국내외 유전개발 : 33,616백만원 * 10개 사업 융자 수요(305,599백만원) × 조정률 11% ○ 투자위험보증사업 : 139,100백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	○ 광물자원개발 : 2,692백만원 * 1개 사업 융자 수요(22,432백만원) × 조정률 1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2021년까지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자, 2022년부터 두 내역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융자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하고, 두 내역사업이 지원대상 및 목적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 사업의 예산을 전액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집행하고 있음.

[2020~2023년도 융자프로그램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내역사업명	융자프로그램명	연도	융자사업집행부문				
			융자사업 예산	계획		최종실적	
				금액	건	금액	건
국내외 유전개발	국내외유전개발	2021년	33,113	33,113	6	33,113	8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2022년	89,278	89,278	7	90,158	9
		2023년	172,716	172,716	11	175	7
해외 광물자원개발	해외광물 자원개발	2021년	1,816	1,816	5	-	-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2022년	880	880	3	-	-
		2023년	2,692	2,692	1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2023년 예산상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금 26억 9,200만원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수산부는 비축사업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도 저장품매입비(430-02목)로 편성된 비축자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수수료 편성 및 집행 관련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023년 동 사업은 수산물의 비축을 위한 저장품매입비(430-02)로 1,750억원 전액이 편성되어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천일염 및 마른오징어 수매를 위하여 1,279억 8,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2023년도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table>
<tr><th>편성 근거</th><th>예산</th></tr>
<tr><td>○ 물가안정을 위한 저장품매입비(430-02): 17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천원/톤)
<table>
<tr><th>품 목</th><th>물량
(톤)
(A)</th><th>총 소요금액
(A×B×C)</th><th>수매단가
(B)</th><th>부대
비율
(C)</th></tr>
<tr><td>합 계</td><td>31,771</td><td>175,000</td><td></td><td></td></tr>
<tr><td>냉동오징어</td><td>7,801</td><td>40,726</td><td>4,746</td><td>1.10</td></tr>
<tr><td>냉동고등어</td><td>6,098</td><td>29,458</td><td>3,402</td><td>1.42</td></tr>
<tr><td>냉동명태</td><td>11,006</td><td>20,430</td><td>1,485</td><td>1.25</td></tr>
<tr><td>냉동갈치</td><td>3,340</td><td>43,700</td><td>11,682</td><td>1.12</td></tr>
<tr><td>냉동참조기</td><td>3,201</td><td>36,824</td><td>10,364</td><td>1.11</td></tr>
<tr><td>마른멸치</td><td>325</td><td>3,862</td><td>8,934</td><td>1.33</td></tr>
</table></td><td>○ 127,983백만원
- 고등어(1,064톤, 3,568백만원),
오징어(1,388톤, 15,104백만원),
명태(27,391톤, 53,273백만원),
갈치(2,596톤, 30,006백만원),
참조기(220톤, 6,328백만원),
마른멸치(234톤, 3,087백만원),
천일염(12,560톤, 16,287백만원),
마른오징어(7톤, 330백만원)</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비목에서 수산물의 비축과 판매에 따른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로 2021년에는 34억 2,600만원, 2022년에는 40억 6,800만원, 2023년에는 6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1년~'23년 비축사업의 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계	수매	판매	합계	수매	판매	합계	수매	판매
			3,426	1,960	1,466	4,068	2,436	1,632	6,165	2,741	3,424
중앙회	수매사업 실시기관	정부비축 사업단	533	533	-	532	532	-	663	663	-
		수매 사업팀	710	710	-	1,217	1,217	-	1,175	1,175	-
	판매사업 실시기관	정부비축 사업단	601	-	601	730	-	730	2,450	-	2,450
		오프라인 사업팀	143	-	143	191	-	191	230	-	230
		온라인 사업팀	231	-	231	294	-	294	273	-	273
		홈쇼핑 사업팀	-	-	-	-	-	-	27	-	27
		공판장	491	-	491	417	-	417	444	-	444
기타	수매사업 실시기관	회원조합, 중도매인	717	717	-	687	687	-	903	903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결산 관련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러한 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정한 규모의 수수료가 편성 및 집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됨.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지원 사업은 비축사업의 예산을 저장품매입비, 시설장비유지비, 공사비, 비축사업 관리비 등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하여 해양수산부 비축사업의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축사업 관리비가 별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음.

[2023년 농식품부 비축지원 사업 예산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편성 근거	집행내역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2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91백만원 **- 비축사업관리비 : 25,091백만원** - 강원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 : 200백만원 ○ 공사비(420-03) : 2,69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91백만원 ○ **저장품매입비(430-02) : 656,342백만원** 가. 수매(231,835백만원) · 두류(123,447) 25,000톤 × 4,489원/kg × 1.10 · 고추(29,946) 2,685톤 × 10,327원/kg × 1.08 · 마늘(26,605) 7,144톤 × 3,355원/kg × 1.11 · 양파(7,948) 7,729톤 × 627원/kg × 1.64 · 배추(12,022) 13,631톤 × 700원/kg × 1.26 · 무(7,368) 8,767톤 × 609원/kg × 1.38 · 밀(24,499) 20,000톤 × 957원/kg × 1.28 나. 수입(410,507백만원) · 콩(166,896) 187,104톤 × 591$/톤 × 1,290원/$ × 1.17 · 팥(40,298) 17,594톤 × 1,296$/톤 × 1,290원/$ × 1.37 · 참깨(149,225) 51,000톤 × 1,543$/톤 × 1,290원/$ × 1.47 · 고추(15,558) 2,000톤 × 3,677$/톤 × 1,290원/$ × 1.64 · 마늘(35,240) 4,000톤 × 4,350$/톤 × 1,290원/$ × 1.57 · 양파(3,290) 3,000톤 × 506$/톤 × 1,290원/$ × 1.68 다. 긴급가격안정자금(14,00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2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91백만원 **- 비축사업관리비 : 25,091백만원** - 강원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 : 200백만원 ○ 공사비(420-03) : 2,25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91백만원 ○ **저장품매입비(430-02) : 656,342백만원** 가. 수매(150,073백만원) · 두류(58,888) 11,115톤 × 4,816원/kg × 1.10 · 마늘(11,867) 2,789톤 × 3,833원/kg × 1.11 · 양파(10,187) 6,430톤 × 966원/kg × 1.64 · 배추(24,728) 15,526톤 × 1,264원/kg × 1.26 · 무(9,904) 9,893톤 × 725원/kg × 1.38 · 밀(26,099) 18,937톤 × 1,077원/kg × 1.28 · 감자(8,400) 3,360톤 × 2,155원/kg × 1.16 나. 수입(496,269백만원) · 콩(253,485) 175,152톤 × 959$/톤 × 1,290원/$ × 1.17 · 팥(40,298) 15,147톤 × 1,505$/톤 × 1,290원/$ × 1.37 · 참깨(148,000) 38,160톤 × 2,045$/톤 × 1,290원/$ × 1.47 · 고추(25,127) 2,920톤 × 4,067$/톤 × 1,290원/$ × 1.64 · 양파(22,000) 16,209톤 × 626$/톤 × 1,290원/$ × 1.68 · 마늘(119) 보관료 등 119 · 감자(7,240) 2,330톤 × 1,434$/톤 × 1,290원/$ × 1.68 다. 긴급가격안정자금(10,000백만원) * 품목별 단가는 결산기준 연간 확정사업량 및 집행액을 기준으로 역산한 수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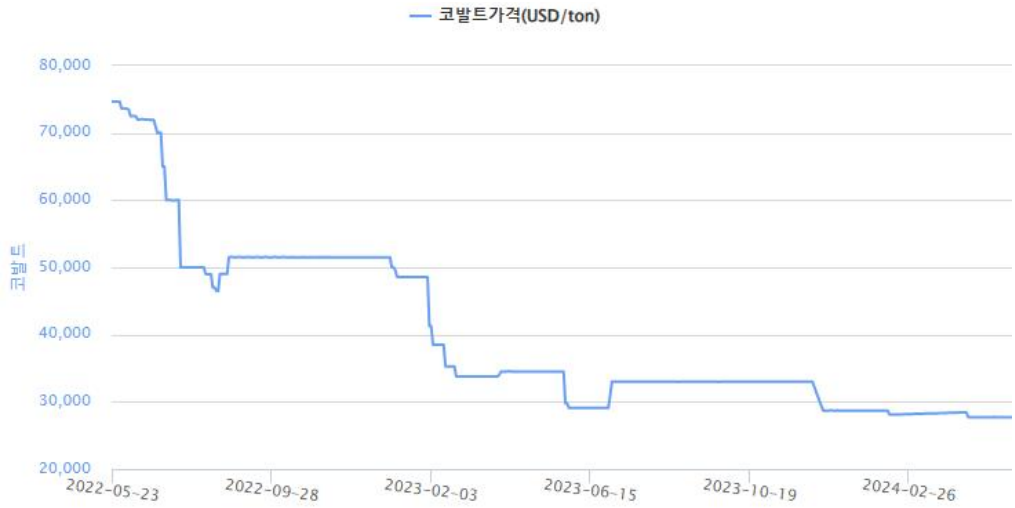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축사업 수매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축일원화를 위한 출자금 89억 6,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산출근거 상 톤당 코발트 가격(7,120만원) 대비 코발트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실제 조달청에 지급된 거래대금은 52억 6,100만원이었으므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교부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출자 규모를 산정하고 출자금을 교부함으로써 공단 내 이관대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코발트의 톤당 단가를 2023년 예산안 편성시

점인 2022년 하반기 시세 수준($50,000)에 근접한 7,12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자금 예산 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최근 2년간 코발트가격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그러나 2023년 2월 초부터 코발트 시세가 급락하여 톤당 단가가 $30,00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광해광업공단이 조달청에 이관비용으로 지급한 이관대금은 52억 6,100만원이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관 세부조건에 따라 코발트(126톤) 이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3년 9월 26일이고, 실물 이관은 2023년 11월에 이루어지는 등 이관과 관련된 절차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시세 수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필요액만큼 교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제 출자금 소요에 대한 고려 없이 코발트(126톤) 이관을 위한 동 출자금 예산 89억 6,600만원과 비축확대를 위한 별도 출자금 예산 282억 6,600만원을 합한 총 372억 3,200만원의 출자금을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액 교부하였음.

더구나 국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주로서 기교부된 출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배당 또는 주식매각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금 교부 시에는 그 규모에 대해 교부시점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출자금 교부 시 출자 필요액을 교부 시점 기준으로 신중히 검증하여, 공단 내 이관대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성과관리 필요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턴기업의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지원 사업은 사업특성상 투자유치 성과가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보조금 지원 전 제출한 투자 및 고용 계획 대비 실적이 일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개선이 필요함.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유턴기업에게 입지·설비 투자액,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자본보조금을 교부(국비지원율 40~75%)하고 있음.

각 지자체는 교부받은 국비 자본보조금과 지방비를 더하여 지역에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령 당시 유턴기업이 제출한 투자 및 고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2020~2023년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수령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일반현황				신청(계획)		실적(2023년 말 기준)	
지역	업체 연번	보조사업 최초 지원 연도	보조금 지원 분류	투자액	추가 고용인원	실투자액 (누적)	실 추가고용 인원
광주	1	2020	입지,설비	38,958	80	37,747	83
충남	2		입지,설비	9,439	30	12,339	67
경북	3		설비	15,502	15	15,502	121
경북	4		입지,설비	61,824	80	57,148	257
부산	5	2021	입지,설비	22,198	85	22,477	-
충남	6		입지,설비	33,403	30	24,063	5
경남	7		설비	4,926	48	4,928	-
충남	8		입지,설비	33,791	50	35,038	73
충남	9		설비	48,652	86	36,027	86
경북	10		입지,설비	25,755	10	22,712	10
대구	11		입지,설비	27,646	20	24,468	63
충북	12	2022	설비	51,388	130	44,445	147
대구	13		입지,설비	30,086	85	30,086	85
경북	14		입지,설비	24,337	30	19,667	12
경남	15		입지,설비	7,815	20	~~전액환수(사업포기)~~	
충남	16		입지,설비	29,547	80	26,227	80
충북	17		입지,설비	6,532	14	1,550	0
경남	18		설비	2,008	10	~~전액환수(사업포기)~~	
대구	19		설비	200,903	64	17,422	-
경북	20		입지,설비	55,293	100	43,375	51
경북	21		설비	56,682	92	56,682	1,132
경북	22	2023	입지,설비	78,262	123	35,253	123
경북	23		이전비용	1,670	-	1,670	-
경남	24		입지,설비	5,955	20	5,071	10
경북	25		설비	21,181	32	-	-
전북	26		입지,설비	85,880	70	2,770	-
대구	27		입지,설비	80,584	82	38,717	30
전북	28		설비	7,909	20	7,900	12
충북	29		설비	48,436	80	33,903	80
경북	30		설비	27,874	30	22,791	33
광주	31		입지,설비	45,354	20	5,167	-
경남	32		설비	5,635	20	5,081	10
경기	33		설비	33,792	83	11,812	-

주) 실투자액과 실추가고용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경우 해당 칸에 음영표시 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2020~2023년 보조금을 교부한 전국 지자체별 유턴기업의 2023년 말 기준 누적 투자액 및 누적 추가고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1개, 2021년 5개, 2022년 6개의 유턴기업이 모두 당초 계획 대비 투자액 및 추가 고용실적이 2023년 말 기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5] 더구나 2022년의 경우 경남이 유치한 2개 유턴기업은 보조금 수령 이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고용 목표의 경우 인력 채용 부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유턴기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목표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유턴기업의 국내유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소비력 제고 및 활성화를 장려할 필요성이 크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유치 유턴기업의 고용 계획이 당초 보조사업 수령 당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 투자를 조건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민간자본보조금(보조율 30~50%) 예산현액 5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2023년 총 10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기업 37개사에 대하여 현금지원 사업 내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였음. 이중 투자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12개사로 나타났는데, 1/3에 해당하는 4개사가 실고용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고용위약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2개사, 20222년 5개사, 2023년 11개사의 경우 모두 투자완료시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 현재 투자와 고용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2014년 이후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중 투자기간이 종료된 기업들의 실적]

일반현황				신청(계획)		실적(2023년 말 기준)		비고
지역	업체 연번	최초 지원 연도	보조금 지원 분류	투자액*	고용 인원 (명)	실투자액(누적)	실고용 인원 (명)	
전북	1	2014	건축비, 설비 등	83 백만유로	80	83 백만유로	37	투자기간 종료, 고용위약금 환수
전남	2		자본재, 설비 등	50 백만불	49	52 백만불	55	투자기간 종료
충남	3	2015	설비	238.8 억원	202	238.8 억원	132	투자기간 종료, 고용위약금 환수
경기	4		고용고용훈련보조금	32.4 백만불	42	32.4 백만불	27	투자기간 종료, 고용위약금 환수
전남	5	2016	자본재, 설비 등	29 백만유로	23	29 백만유로	23	투자기간 종료
경북	6		건축비, 자본재 구입	100 백만불	41	100 백만불	44	투자기간 종료
울산	7	2017	자본재 구입	66 백만불	60	75.7 백만불	79	투자기간 종료
경북	8	2018	자본재, 설비 등	186 억원	62	186 억원	72	투자기간 종료
충남	9		자본재	200 백만불	185	200 백만불	252	투자기간 종료
경기	10	2020	고용고용훈련보조금	138.8백만불	46	231.8 백만불	46	투자기간 종료
경북	11		자본재 구입	15 백만불	105	1.4 백만불	1	투자기간 종료, 투자·고용 위약금 환수
전남	12		건축비, 자본재 구입	420 억원	130	420 억원	189	투자기간 종료

주)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기업의 해당 칸에 음영 표시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③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또 다른 유턴기업 대상 보조사업 중 하나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지원이 이루어진 유턴기업 10개사 중 5개사가 보조금 수령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기지급한 보조금을 전액환수 또는 반납받았음.

[2014년 이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의 실투자액 및 고용 현황]

일반현황				신청(계획)		실적(2023년 말 기준)	
지역	업체 연번	최초 지원 연도	보조금 지원 분류	투자액	고용인원	실투자액(누적)	실고용인원
전북	1	2014	입지,설비	5,269	60	전액환수(사업장 휴업)	
세종	2*	2014	입지,설비	7,000	45	7,388	47
세종	3	2014	입지,설비	5,378	40	전액환수(사업포기)	
광주	4*	2015	설비	15,219	55	16,688	75
전북	5	2016	입지,설비	6,404	50	미지급(채권미확보), 전액반납	
전북	6*	2017	입지,설비	12,193	57	9,844	57
전북	7	2017	입지,설비	2,824	40	1,503	38
세종	8	2017	입지,설비	9,887	32	미지급(채권미확보), 전액반납	
대구	9	2019	입지,설비	12,919	25	미지급(채권미확보), 전액반납	
세종	10	2019	입지,설비	21,294	50	21,642	4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복귀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조금을 국고로 전액 환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성과지표가 100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성과자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와 2023년도 유턴기업의 고용 이행률을 100%로 보고하였음.

[유턴기업 고용이행률]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유턴기업 고용이행률(%)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100	투자정산 보고서의 고용 창출인원 / 보조금 신청서의 고용계획인원	투자정산 보고서의 고용 창출인원 / 보조금 신청서의 고용계획인원	지자체의 보조금신청서, 정산보고문서
	실적	신규	신규	100	100				
	달성도	-	-	100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2022년의 경우 유턴기업 지원대상 기업 중 2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였고, 4개 기업이 2023년 말까지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2023년의 경우에도 총 8개 기업이 같은 해 말까지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성과지표는 2023년 기준 투자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유턴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초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하였던 고용계획 대비 달성인원을 평가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기업은 투자정산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성과지표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예산의 집행 시점과 성과 창출 사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입선 다변화 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한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감면 등 면책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에 세부 내용을 예측가능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국내외유전개발'과 '해외광물자원개발'로 구성되며, 국내외유전개발은 다시 '해외유전개발 융자'와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나뉨.

해외유전개발 융자사업은 석유·가스개발 사업비의 30% 이내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생산사업 등에 융자 후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융자'와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에 융자 후 성공 시 융자원리금 외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 시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특별융자' 사업으로 구분됨.

그런데 ① 2023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개발(미화) 부문의 2023년도 대손액 △912만 4,000달러가 확정 발생하였음.

[2023년 대손액 발생 세부 현황]

(단위: 천원)

기업명	A사				B사			융자금 합계	감면액
연도	가 사업	나 사업	다 사업	A사 소계	라 사업	마 사업	B사 소계		
1992년	141	-	-	141	-	-	-	141	-
1993년	435	-	-	435	-	-	-	435	-
1994년	879	-	-	879	-	-	-	879	-
1995년	1,678	-	-	1,678	-	-	-	1,678	-
1996년	1,497	-	-	1,497	-	-	-	1,497	-
1997년	414	-	-	414	-	-	-	414	-
1998년	50	-	-	50	-	-	-	50	-
1999년	26	-	-	26	-	-	-	26	-
2000년	32	-	-	32	-	-	-	32	-
2001년	55	-	-	55	-	-	-	55	-
2002년	263	-	-	263	-	-	-	263	-
2003년	93	-	-	93	-	-	-	93	-
2005년	-	2,345	-	2,345	-	-	-	2,345	-
2006년	-	-	-	-	921	2,152	3,072	3,072	-
2007년	-	-	3,235	3,235	-	1,433	1,433	4,668	-
합계	5,565	2,345	3,235	11,145	921	3,585	4,505	15,650	-
상환액	3,008	1,845	1,672	6,526			-	6,526	
대손액	2,557	500	1,562	4,619	921	3,585	4,505	9,1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손액이 발생한 투자는 기업 기준 총 2개사로, 2개사 모두 투자기간이 2007년 이전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융자금 미상환이 지속되다가 2023년 모두 대손처리되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시 융자사업 수행 및 원리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3항[6]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로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200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집행액은 총 3,328억 2,000만원이고 이중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융자)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원리금 회수액은 4,817억 1,100만원임에 비해, 자원개발 탐사사업 실패에 따른 융자금 감면액은 이보다 많은 총 7,644억 8,300만원임.

[2023년 말 기준 누적 융자원리금 회수 및 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융자액	원리금 회수(A)	특별부담금(B)	회수 합계(A+B)	감면액
국내외 유전개발 (일반, 특별융자)	330,505	226,916	94,736	321,652	734,716
해외광물자원 개발(일반, 특별융자)	2,315	254,795	315	255,110	29,767
합 계	332,820	481,711	95,051	576,762	764,483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현재 특별융자금은 사업 실패 시 최대 70%가 면제될 수 있으며, 융자금 감면비율은 법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3조제1항 및 부칙<제2017-9호,2017.1.17.> 2호에 근거하고 있음.[7)]

현행「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1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임을 받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8)]은 융자금 감면의 본질적인 사항인 감면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통상

7) 이 부칙을 제정 전에는 특별융자금 전액이 면제될 수 있었으나 이 부칙이 제정된 2017년 1월 17일 이후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여부와 관계없이 융자금의 30% 상환의무가 부과되었음.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 · 석탄 · 우라늄광 · 동광 · 철광 · 아연광 · 연광 · 알루미늄광 · 안티몬광 · 망간광 · 니켈광 · 크롬광 · 텅스텐광 · 코발트광 · 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제5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자원부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3항이 원리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특별융자금 감면은 추후 재정수입의 감소로 귀결되어 감면비율 설정에 따라 재정수입 귀속규모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안과정에서 사전 영향평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재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통령령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9)10)]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9) 또한 행정규칙과 달리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융자금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동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특별융자금 감면비율이 법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명시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 투자촉진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행대로 고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검토하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

(3) 공급망 관련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가) 공공기관 비축사업 수익 사용의 적정성

첫째,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한국석유비축기지 운영수입이 당초 계획 1,524억원 대비 1,093억원 많은 2,617억원을 기록하는 등 석유비축사업 부문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출자금을 통한 부담분과 공사 부담분 간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비축사업출자'**는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구입 소요분 중 정부 부담분과 비축기지 유지보수비를 출자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도 출자금 예산(A+B)	석유비축 구입소요		석유비축기지 유지보수비용(출자금) (B)
	정부부담분(출자금) (A)	공사부담분	
67,268	40,718 (36만배럴)	12,114 (11.2만배럴)	26,5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석유비축 구입소요를 총 47만 2,000배럴로 설정하고, 이 중 정부 부담분에 해당하는 36만 배럴의 비축유 구매자금 407억 1,800만원을 2023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였음.

한국석유공사는 47만 2,000배럴 중 공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11만 2,000배럴의 석유를 석유공사 자체재원 121억 1,400만원을 사용하여 비축하였음.

이와 더불어 석유비축기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출자금 265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음.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의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사업 부문(비축유 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 관리 등)의 매출총액은 2,617억원임에 비해 매출원가는 2,27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346억원 발생하였음.

[2020~2023년 비축유 구입 및 비축기지 운영 부문의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수익 A)	비축유 활용수익(a)		1,506	498	2,033	1,580
	비축시설 활용수익(b)		1,098	898	858	1,037
	비축자산활용수익(a+b)		2,604	1,396	2,891	2,617
매출원가 (비용 B)	비축기지운영 인건비		492	402	418	473
	비축기지 운영경비	기타경비	610	626	675	723
		감가상각비	845	838	1,028	1,075
	소계		1,947	1,866	2,121	2,271
영업이익(A-B)주)			657	△470	770	346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			1,502	368	1,798	1,421

주) 감사보고서의 부문별 손익은 비축사업부문/석유사업부문(유통)/개발사업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실제 비축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상품석유트레이딩의 수익 및 매출원가'는 감사보고서에서 석유사업부문(유통)으로 집계됨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과 차이가 발생

자료: 한국석유공사

뿐만 아니라 2023년 한국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입은 2,617억원으로 2019년 2,025억원 대비 592억원 증가하였음.

[2019~2024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수입	공동비축	497	724	582	299	371	463
	트레이딩	1,386	1,698	714	1,845	1,673	1,651
	비축유대여	60	62	46	231	289	146
	시설대여	32	94	19	17	13	28
	기타수익	50	26	35	54	57	36
	비축유 방출 대여수입	-	-	-	445	214	-
	합계(A)	2,025	2,604	1,396	2,891	2,617	2,324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에 비해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예산에 비축유 구매를 위한 공사 부담분을 121억 1,400만원으로만 책정하였음.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입 확대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구매자금 부담분은

2024년 619억 3,7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나, 2023년 석유비축기지 운영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1,093억원 초과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이익이 346억원만큼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공사 부담계획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출자금 교부에 앞서 한국석유공사 내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입 및 비축사업부문의 매출이익을 고려하여 공사부담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11]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공공비축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WTO 관세할당물량(TRQ) 운영계획에 따라 메밀 시장접근물량 중 국영무역 방식으로 매년 828톤의 메밀에 대한 자체비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0~2023년 간 판매수익금 중 61억 4,700만원을 기관 자체수입에 계상하여 기관운영비로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향후 메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비축지원'**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여금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6,867억 5,000만원 중 6,863억 500만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교부되었음.

[2023년 비축자금(저장품매입비) 편성 내역]

수매(150,073백만원)	수입(496,269백만원)
· 두류(58,888) 11,115톤 × 4,816원/kg × 1.10 · 마늘(11,867) 2,789톤 × 3,833원/kg × 1.11 · 양파(10,187) 6,430톤 × 966원/kg × 1.64 · 배추(24,728) 15,526톤 × 1,264원/kg × 1.26 · 무(9,904) 9,893톤 × 725원/kg × 1.38 · 밀(26,099) 18,937톤 × 1,077원/kg × 1.28 · 감자(8,400) 3,360톤 × 2,155원/kg × 1.16	· 콩(253,485) 175,152톤 × 959$/톤 × 1,290원/$ × 1.17 · 팥(40,298) 15,147톤 × 1,505$/톤 × 1,290원/$ × 1.37 · 참깨(148,000) 38,160톤 × 2,045$/톤 × 1,290원/$ × 1.47 · 고추(25,127) 2,920톤 × 4,067$/톤 × 1,290원/$ × 1.64 · 양파(22,000) 16,209톤 × 626$/톤 × 1,290원/$ × 1.68 · 마늘(119) 보관료 등 119 · 감자(7,240) 2,330톤 × 1,434$/톤 × 1,290원/$ × 1.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는 공사가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로서 매년 이자비용이 약 4,000~5,000억원 발생하는 등, 재무현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바, 비축자산활용수익은 현재에도 우선적으로 비축시책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2023년 수익에 비축기지 운영비용·지출 후 남은 잔액이 크지 않으며, 자본잠식인 석유공사의 재무현황 등을 감안할 시 공사에 추가적인 비축유 구입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임.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비축지원’ 사업을 통한 농산물 비축 외에도, 국영무역 방식으로 매년 828톤의 메밀에 대한 자체비축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1994년 12월 WTO 출범 당시 메밀이 수입이익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시 농림수산부가 메밀 시장접근물량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자체자금으로 수입·판매하고, 수익금은 메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수매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체비축 사업이 시작된 것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WTO 관세할당물량(TRQ: tariff quota rate) 운영계획에 따라 메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3%의 저율로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6.1%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저율관세로 인한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메밀 시장접근물량 1,328톤 중 500톤은 일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권을 공매하여 낙찰금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으로 수납하고 있고, 나머지 828톤에 대해서는 국영무역 방식[12]으로 공사가 직접 수입하는 자체비축을 실시하고 있음.

수입권 공매에서 발생한 낙찰수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납하고 있음에 비해 자체비축(국영무역)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비축 사업의 초과이익금은 국산 메밀 수매사업 등 메밀 농가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0~2023년 자체비축(국영무역) 판매수익금을 국산 메밀에 대한 수매사업 등 메밀농가 지원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 기관의 자체수입에 계상하여 기관운영비로 지출하였음.

12) 국영무역이란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 관리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재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48년 1월에 발족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부터 존재해 온 무역 형태임.

[2020~2023년 메밀 자체비축(국영무역) 판매수익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영무역 판매수익금			판매수익금 사용처	
	매출액 (A)	매출 원가 (B)	수익금 (C=A-B)	수매사업 지원 (D)	자체수입에 계상하여 차년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로 지출 등(E=C-D)
2020	2,146	965	1,181	457	724
2021	3,192	1,067	2,125	107	2,017
2022	3,507	1,413	2,094	39	2,055
2023	2,391	1,035	1,356	5	1,351
합계	11,236	4,480	6,756	608	6,14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2020~2023년 기준 메밀에 대한 자체비축(국영무역) 판매수익금 67억 5,600만원 중 61억 4,700만원이 기관운영비로 자체 사용된 상황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비축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자체비축(국영무역)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메밀 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관운영비에 충당해온 것에 대해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시정하고, 향후 메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3)]

13) 2008년 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비축(국영무역)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금뿐만 아니라, 수입권공매에서 발생한 초과이익금도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8년 9월 수입권공매에서 발생한 초과이익금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으로 수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자체비축(국영무역)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금은 국산 메밀 농가 지원 등을 위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관리·감독 강화 필요

① 현 황

정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시행하였음.

같은 법 제38조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4]

동 기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경제안보품목등[15]으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등・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의미하고 있어, 현재 조달청 회전자금의 비축대상인 비철금속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비축대상인 희소금속,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비축을 포함하여 서비스 및 기반시설까지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동 기금의 주요 재원을 조성[16]하고, 이를 토대로 4대 첨단전략산업, 10대 핵심 전략광물 비축, 물류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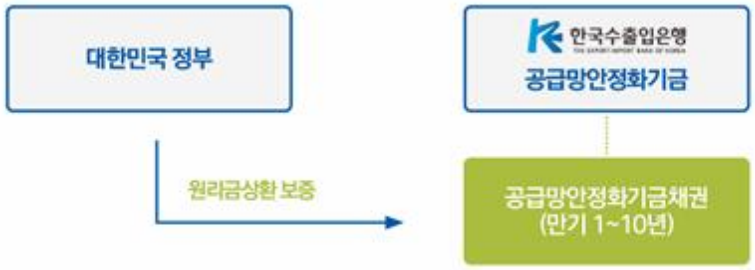
1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 · 개발 · 개량 · 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대출, 보증, 투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임.

[공급망안정화기금 금융지원 재원조달 및 주요 지원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및
국가보증 계획</td><td> 
</td></tr>
<tr><td>중점 지원사업</td><td>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지원조건 및 품목(예시)</th></tr>
<tr><td rowspan="3">4대 첨단
전략산업</td><td>이차전지</td><td>흑연, 전해액, 분리막, 파우치, 양극재</td></tr>
<tr><td>반도체・디스플레이</td><td>희귀가스, 형석, 불화수소</td></tr>
<tr><td>바이오</td><td>바이오배지, 멤브레인, 레진</td></tr>
<tr><td>10대 핵심
전략광물</td><td colspan="2">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td></tr>
<tr><td>물류
서비스 및
인프라</td><td colspan="2">항만, 터미널, 해운, 항공</td></tr>
</table>
</td></tr>
</tabl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공급망안정화기금 금융지원 안내」

대출상품으로는 시설자금・기술자금・투자지금・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공공비축,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D 사업,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융자사업 등 2023년 정부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사업의 기능을 사실상 동일하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② 검토의견

첫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중 하나인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부문의 경우 종전 유사사업의 손실 발생 사례를 감안할 때 손실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금융지원 안내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해외광물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및 기업인수, 해외생산기지 마련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에 대한 투자자금을 제공할 계획임.

[금융지원 중 투자자금에 대한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지원대상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대부투자, 유무형 자산 인수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용도예시	-해외 광물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및 기업인수 -해외생산기지 마련을 위한 해외 합적법인 설립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판매법인 설립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인수 등
대출금액	-실소요자금의 80% 이내 단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기업별 대출한도 범위 내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상환방법	연1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거치기간 3년 이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런데 기존의 해외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산 공시를 살펴보면, 2023년 결산 기준 해외자산계정 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평가 손실이 총 1,767억원 발생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암바토비에서 니켈 과잉공급 등 니켈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현지 프로젝트 전체 기준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의 영향으로 평가손실(1,530억원)이 발생하였고, 꼬브레파나마에서 파나마 대법원의 신규 광업권 계약법 위헌판결 및 파나마 정부의 광산운영중단 명령으로 인하여 평가손실(242억원)이 발생한 것임.

[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장부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취득원가 (A)	장부금액 (B)	B-A	취득원가 (A)	장부금액 (B)	B-A
관계기업	3,088,749	1,922,342	△1,166,407	3,087,154	1,937,707	△1,149,447
공동기업	257,971	302,605	44,634	257,971	323,183	65,212
합계	3,346,720	2,224,947	△1,121,773	3,345,125	2,260,889	△1,084,236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이에 따라 2023년 결산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평가 장부금액은 2조 2,608억 8,900만원으로 취득원가 3조 3,451억 2,500만원 대비 1조 842억 3,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 시 기금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부실이 심화하지 않도록 자금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의하고, 기금 수지적자로 인한 국가보증 또는 정부 차입금 지원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지원의 특성상 실제 사업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공급망 현장에서 당초 계획대로 비축물량 확보,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융자 및 이차보전 등 금융성 지원을 정책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 재정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지원의 자금 집행 실적은 양호하나 최종적인 사업목적은 달성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17]

융자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은 민간의 재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의 이면에 당초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성과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사무 감독 및 명령 권한(법 제40조제2항),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 소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할 의무(시행령 제3조제3항), 자금지원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무(법 제42조)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실제 운용 및 성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더구나 같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17) 예를 들어, ①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2023년 달성률은 30.4%, 2024.4월까지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다른 사례인 ②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은 최신 방지시설 설치 촉진 및 효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를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시멘트 제조업, 석유정제업)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교체하여 미세먼지의 발생·배출량을 저감하려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원 시설은 ① 연소방식을 개선한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② 연소가스의 환원 반응 시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을 촉진하는 SCR 설비, ③ 환원제를 고온부에 직접 주입하려 환원시키는 SNCR 설비 등임.
그런데 사업 추진 이후 SCR 설비는 0건이고, 2021년 SNCR 설치 2건, 2022년 저녹스 버너 설치 1건 지원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노후장비 단순 교체 등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정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집행되었음.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금지원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시설자금·생산자금·투자자금 및 기술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제 비축물자 확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R&D 투자, 물류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생활물가 안정사업

가. 개 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생산과 물류 운송의 제한과 차질이 빚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여 수입물가 및 원재료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국내물가를 자극하여 2022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2로 전년의 102.50 대비 5.1%나 상승하였음.

이에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통하여 생활물가 안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예산의 12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 필수 생계비 경감, 식량안보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는 핵심품목의 비축 확대 및 유통망의 스마트화 등을 통하여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하고, 필수 생계비 경감 분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확대와 에너지 바우처 단가 등의 인상으로 필수 생계비를 경감하며, 식량안보 강화 분야는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및 국제곡물 유통망에 대한 투자 지원 등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생활물가 안정사업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 분야가 61.7%, 필수 생계비 경감 분야가 25.5%, 식량안보 강화 분야가 12.8%로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 6조 1,189억 3,700만원 중 5조 9,813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었음.

[2023년도 생활물가 안정사업 분야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	3,871,068	3,772,808	3,655,239	117,569	96.9	4,504,747
필수생계비 경감	1,360,907	1,562,568	1,558,249	4,319	99.7	1,886,620
식량안보 강화	697,014	783,561	767,887	15,674	98.0	773,587
합 계	5,928,989	6,118,937	5,981,375	137,562	97.8	7,164,9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marine@assembly.go.kr (02-6788-5685)

또한 동 사업을 부처별로 나누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로 구분되고, 예산현액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70.6%, 산업통상자원부는 11.5%, 해양수산부는 9.5%, 문화체육관광부는 4.8%, 기타 3.6%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현액 4조 3,208억 3,300만원 중 4조 2,705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현액 7,049억 4,700만원 중 7,043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예산현액 5,824억 2,700만원 중 4,990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7%)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954억 5,900만원 중 2,954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23년도 생활물가 안정사업 부처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4,309,989	4,320,833	4,270,502	50,331	98.8	4,608,364
산업통상자원부	651,312	704,947	704,367	580	99.9	1,387,497
해양수산부	481,608	582,427	499,074	83,353	85.7	607,781
문화체육관광부	295,459	295,459	295,445	14	100.0	360,006
기획재정부	90,975	105,730	105,730	-	100	108,333
보건복지부	38,228	38,228	37,285	943	97.5	44,272
국토교통부	31,657	42,309	42,263	46	99.9	21,987
여성가족부	17,161	16,404	16,403	1	100.0	19,114
농촌진흥청	12,600	12,600	10,306	2,294	81.8	7,600
합 계	5,928,989	6,118,937	5,981,375	137,562	97.8	7,164,9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2023년도 생활물가 안정사업의 주요 사업별 결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2023년도 생활물가 안정사업 주요 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계획액)
	농식품부	비축지원 (수매비축)	231,835	150,073	150,073	100.0	230,110
		수입양곡대	555,096	479,696	479,696	100.0	616,262

주요 품목 수급 · 가격 안정		양곡매입비	1,407,728	1,433,202	1,433,202	100.0	1,712,421
		농산물생산유통 조절지원	55,635	55,635	22,061	39.7	55,590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등 11개 사업	718,361	745,084	745,002	100.0	690,330
	해수부	비축사업	175,000	175,000	127,983	73.1	206,500
		수산물수매지원(융자)	115,370	115,370	83,329	72.2	115,370
		산지유통시설지원 등 5개 사업	127,238	133,943	129,668	96.8	152,138
	산자부	석유비축사업출자	67,268	67,268	67,268	100.0	66,595
		광해광업공단출자	37,232	37,232	37,232	100.0	251,762
		수출지원기반활용 등 2개 사업	380,305	380,305	379,725	99.8	407,669
필수 생계비 경감	농식품부	농식품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농축산물 할인지원)	108,000	130,500	130,500	100.0	108,000
		축산물 수급관리(보조) 등 3개 사업	548,920	555,682	552,387	99.4	429,664
	해수부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제고(수산물상생할인지원)	64,000	158,114	158,094	99.9	133,773
	국토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	31,657	42,309	42,263	99.9	21,987
	문체부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73,096	73,096	73,096	100.0	100,799
	산자부 등 4개 부처	에너지바우처 등 5개 사업	535,234	602,867	601,909	99.8	1,092,397
식량 안보 강화	농식품부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	3,000	3,000	3,000	100.0	3,000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8,000	8,000	3,966	49.5	6,700
		쌀가루산업화지원	7,100	7,085	7,085	100.0	-
		종자 수매공급	65,956	65,956	65,956	100.0	68,74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 4개 사업	600,358	686,920	677,574	98.6	687,543
	농진청	신기술보급(식량자급률향상 모델기반구축) 등 2개 사업	12,600	12,600	10,306	81.8	7,600
합계		-	5,928,989	6,118,937	5,981,375	97.8	7,164,9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이하는 생활물가 안정사업에 대한 총괄 검토,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에 대한 검토, 필수 생계비 경감 분야에 대한 검토, 식량안보 강화 분야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됨.

(1) 총괄

첫째, 정부는 2023년 총 6조 1,15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물가 안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6% 상승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 물가지수가 각각 6.0%와 5.4%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활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과 비축사업의 약정물량 및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3년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 분야, 필수 생계비 경감 분야, 식량안보 강화 분야 등 3개 분야에 예산현액 기준 총 6조 1,15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물가 안정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전체 예산현액의 61.7%인 3조 7,728억 800만원을 투입하였음.

그런데 통계청의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3.6%에 이르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물가안정 관련 목표 수준인 2%를 한참 초과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생활물가 안정사업의 추진 성과가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2022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현황]

(2020년 100 기준, %)

구분	연간 물가지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07.72	104.85	105.42	106.10	106.83	107.50	108.21	108.73	108.63	108.82	109.16	109.07	109.26
2023	111.59	110.07	110.33	110.52	110.77	111.13	111.16	111.29	112.28	112.83	113.26	112.67	112.71
전년(동월)비	3.6	5.0	4.7	4.2	3.7	3.4	2.7	2.4	3.4	3.7	3.8	3.3	3.2

자료: 통계청

특히 농산물 물가지수와 수산물 물가지수가 각각 6.0%와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 분야의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성과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2년 대비 2023년 농산물물가지수 현황]

(2020년 100 기준, %)

구분	연간 물가지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10.88	112.78	111.90	109.70	109.16	106.75	105.32	112.28	117.98	120.65	113.37	104.78	105.84
2023	117.54	112.07	113.11	114.90	110.65	109.01	108.32	113.64	125.44	130.69	130.00	120.16	122.47
전년(동월)비	6.0	-0.6	1.1	4.7	1.4	2.1	2.8	1.2	6.3	8.3	14.7	14.7	15.7

자료: 통계청

[2022년 대비 2023년 수산물물가지수 현황]

(2020년 100 기준, %)

구분	연간 물가지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04.93	102.70	102.69	102.91	104.27	104.78	104.68	103.70	103.15	105.03	106.67	108.52	110.11
2023	110.56	110.55	111.14	110.56	110.74	111.38	111.09	110.06	109.36	108.74	110.13	110.85	112.13
전년(동월)비	5.4	7.6	8.2	7.4	6.2	6.3	6.1	6.1	6.0	3.5	3.2	2.1	1.8

자료: 통계청

그러므로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과 비축사업의 약정물량 및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가 낮은 상황이고, 해외 농업자원 확보량에 비하여 국내 반입량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국제곡물망 관련 지분 인수 민간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실적 및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자금 대출 실적이 부진[1]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해외

에서 확보한 농업자원의 국내반입량을 늘리고, 국제곡물망 관련 업체 간 교류·조사 등 민간에 대한 충분한 사전탐색 및 정보의 제공과 함께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와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용의 상승, 미중 무역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식량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 관련 우리나라의 순위가 2020년의 40위에서 2021년에는 44위, 2022년에는 39위임.

이는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

연도	2012	2020	2021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	39위	40위	44위	39위

자료: 이코노미스트 발표자료를 재구성

그리고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도 2022년 기준으로 49.3%와 22.3%에 불과하여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2] 연도별 경지면적도 2020년에 156만 4,797ha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3년에는 151만 2,145ha로 3년 만에 3.4%인 5만 2,652ha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22년 시작된 러-우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곡물 터미널 가동중단으로 반입실적이 급감하였다고 설명함

2)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에서 2022년 식량자급률이 서류(감자, 고구마 등) 생체중 기준으로 49.3%를 기록함으로써 전년의 44.4% 대비 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료용을 포함하는 곡물자급률도 22.3%로 전년의 20.9%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2022 양곡연도 쌀 생산량이 388만 2,000톤으로 전 양곡연도보다 10.7% 늘어 쌀 자급률이 104.8%로 전년의 84.6% 대비 20.2%p나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콩과 밀도 조금씩 생산량이 증가하여 자급률이 상승하였음.

[연도별 경지면적 현황]

(단위: ha)

연도		2020	2021	2022	2023
경지면적		1,564,797	1,546,717	1,528,237	1,512,145
	논	823,895	780,440	775,640	763,989
	밭	740,902	766,277	752,597	748,156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 조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하여 2023년에 예산현액 기준으로 7,835억 6,100만원을 투입하였음. 세부 내역사업인 해외진출지원사업('23년 예산액 110억원)의 사업대상인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중 활동 업체의 비중이 30% 수준이며, 해외 농업자원 확보량에 비하여 국내 반입량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에 신규로 도입한 해외곡물망 확보 융자지원사업은 민간업체 사정 변경으로 대출집행이 실행되지 못했으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자금 대출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는 해외 농업업체의 안정적인 국내수요처를 발굴 지원하고 이들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농업자원의 국내반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곡물망 관련 업체 간 교류 및 조사 등 민간의 충분한 사전탐색을 지원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 및 해외곡물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품목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

(가) 현황

주요 품목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는 밀·콩 및 대중성 수산물 등을 비축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 등을 대상으로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망을 온라인화 및 스마트화함으로써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하며 농어가 비료 및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동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비축지원사업·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사업·수입양곡대사업 및 양곡매입비사업 등이 있고, 해양수산부 소관으로는 비축사업 및 수산물 수매지원(융자)사업 등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는 석유비축사업출자사업 및 광해광업공단출자사업 등이 있음.

2023년도 예산현액 3조 7,728억 800만원 중 3조 6,552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96.9%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품목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계획액)
농식품부	농안	비축지원 (수매비축)	231,835	150,073	150,073	-	100.0	230,110
	양특	수입양곡대	555,096	479,696	479,696	-	100.0	616,262
	양특	양곡매입비	1,407,728	1,433,202	1,433,202	-	100.0	1,712,421
	농안	농산물생산유통 조절지원	55,635	55,635	22,061	33,574	39.7	55,590
	기타	사료산업종합지원 (융자) 등 11개 사업	718,361	745,084	745,002	82	100.0	690,330
	소계	-	2,968,655	2,863,690	2,830.034	33,656	98.8	3,304,713
해수부	수발	비축사업	175,000	175,000	127,983	47,017	73.1	206,500
	수발	수산물수매지원 (융자)	115,370	115,370	83,329	32,041	72.2	115,370
	기타	산지유통시설지원 등 5개 사업	127,238	133,943	129,668	4,275	96.8	152,138
	소계	-	417,608	424,313	340,980	83,333	80.4	474,008
산자	에특	석유비축사업출자	67,268	67,268	67,268	-	100.0	66,595
	에특	광해광업공단출자	37,232	37,232	37,232	-	100.0	251,762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계획액)
부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 등 2개 사업	380,305	380,305	379,725	580	99.8	407,669
	소계	-	484,805	484,805	484,225	580	99.9	726,026
합계		-	3,871,068	3,772,808	3,655,239	117,569	96.9	4,504,74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사업별 검토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지원사업은 제한된 재원의 한계 속에서 생산량 대비 수매량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농가와의 사전수매약정을 확대하고, 약정 체결 이후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약정 미참여를 방지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약정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작황 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측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출량을 확대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과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등을 비축대상 품목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및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매비축의 경우 2023년 3월 이후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등 총 11개의 농산물을 그 대상 품목[3]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비축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등 총 9개의 농산물을 비축 대상[4]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품목 중 밀과 콩의 경우 소비량은 많은데 반하여 자급률이 낮은 품목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으므로 해당 품목의 수매비축량을 살펴보면, 우선 밀의 경우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상 수매계획 물량 대비 수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그 외에도 두류,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를 수매비축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있음.

4) 그 외에도 땅콩, 콩, 팥(녹두), 감자를 수입비축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있음.

[연도별 밀 수매비축 현황]

(단위: 톤, 백만원)

연도	예산상 수매계획		수매실적		계획과 실적 간 차이 발생 사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20	3,000	3,000	853	859	기상 악화 등 농가 생산 저하에 따른 매입물량 미확보
2021	10,000	10,986	8,401	8,600	농가의 정부비축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였으나, 계획 물량에 미달
2022	14,000	15,610	16,561	17,503	밀 생산 증가에 따른 농가 정부비축 희망물량 증가로, 비축 예산 품목간 내역조정을 통해 추가 물량 매입
2023	20,000	24,499	18,892	20,343	농안기금 재원 부족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매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에는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저하로 매입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2021년에는 농가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물량에 미달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안기금의 재원부족으로 국산밀 생산단지와 사전약정 체결한 물량 18,980톤 중 매입검사에서 합격한 18,892톤을 매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콩의 경우에는 연도별 예산상 수매계획 대비 수매실적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23년에는 오히려 계획을 초과하여 수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콩 수매비축 현황]

(단위: 톤, 백만원)

연도	예산상 수매계획		수매실적		변경 사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20	16,500	67,573	557	2,950	사전 약정 체결 농가의 당해연도 시장가격 강세에 따른 가격 차이로 인한 미참여
2021	25,000	104,833	2,248	12,184	〃
2022	25,000	106,848	18,697	90,794	〃
2023	25,000	123,447	32,524	*169,000	논타작물 확대 및 전략작물직불제 등 농업정책에 따른 콩 생산량 증가로 수매실적 증가

주) 2023년 수매금액은 정산 진행 중으로 집행예정 금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장가격 강세에 따른 사전약정체결 농가의 수매 미참여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논 타작물 확대

및 전략작물 직불제 등 농업정책에 따른 콩 생산량 증가로 수매실적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콩의 연도별 도매가격은 2021년만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

[연도별 국산 밀·콩 도매가격 현황]

(단위: 원/kg, %)

구분	2020		2021		2022		2023	
	도매가	증감률	도매가	증감률	도매가	증감률	도매가	증감률
밀	975	-	975	-	975	-	975	-
콩	5,348	△2.4	6,413	19.9%	5,879	△8.3%	5,379	△8.5%

주) 밀은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체 및 제분업체 등으로 구성된 (사)국산밀산업협회에서 매년 생산량과 소비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국산밀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민간에서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거래함(연도별 가격은 품질 등급 양호 기준),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유통정보 조사를 통한 도매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국산 흰콩, 상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수매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 대비 수매량의 비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밀의 경우 2021년부터 생산량 대비 수매량의 비중이 30%를 초과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콩은 2023년에 23.0%를 나타냄으로써 밀보다는 낮으나 2020년 및 2021년에 비하여 10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도별 밀·콩 생산량 대비 수매량 및 수요량 대비 방출량 현황]

(단위: 톤, %)

구분	연도	생산량(A)	수매량(B)	수매비중(B/A)	식용수요량(C)	방출량(D)	방출비중(D/C)
밀	2020	16,985	853	5.0	2,085,000	820	0.04
	2021	26,324	8,401	31.9	2,476,000	3,573	0.14
	2022	34,562	16,561	47.9	2,539,000	3,989	0.16
	2023	51,809	18,892	36.5	-	5,245	-
콩	2020	80,926	557	0.7	337,000	8,941	2.7
	2021	110,781	2,248	2.0	333,000	4,902	1.5
	2022	129,925	18,697	14.4	377,000	2,313	0.6
	2023	141,477	32,524	23.0	-	4,247	-

주) 식용수요량은 양곡연도 기준, 2023 양곡연도의 식용수요량은 2024년 10월 즈음에 정산 완료될 예정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용수요량 대비 방출량의 경우 밀은 0.1% 내외로 극히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나 2020년의 0.04%에서 2022년에는 0.16%로 상승하고 있으며, 콩은 2020년에 8,941톤을 방출함으로서 2.7%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4,902톤을 방출하여 1.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313톤의 방출로 0.6%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 중 밀의 경우에는 수매량이 증가함으로써 비록 낮은 비중이지만 식용수요량 대비 방출량의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콩은 수매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출량을 줄임으로써 식용수요량 대비 방출량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콩이 2020년의 가격 하락 이후 2021년에 대폭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2021년에 방출량을 줄인 것은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비축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한된 재원의 한계 속에서 생산량 대비 수매량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농가와의 사전수매약정을 확대하고, 약정 체결 이후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약정 미참여를 방지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약정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작황 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측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출량을 확대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수산부의 비축사업은 2023년도 비축대상 6개 품목 중 고등어·오징어·참조기 및 마른멸치 등 4개 품목의 비축계획량 대비 수매량의 비율이 10.0%에서 47.1%에 불과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의 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비축 물품이 수산물이란 것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사업임.

해양수산부는 소비량 상위 25개 품목 중 대량 생산 가능 여부, 냉동보관 가능여부 및 비축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비축 대상 품목을 결정하며, 2023년에는 2월에 품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중성 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을 비축 품목으로 결정하였음. 예비품목으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삼치, 마른 오징어, 천일염을 선정하였음.

2023년의 비축 대상품목별 비축량은 각 어종별 최근 3개년 간의 생산량, 소비량, 비

축 가능성 및 비축 필요성(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산출하였으며, 품목별 비축계획량은 명태 20,403톤, 고등어 2,559톤, 오징어 4,329톤 등 총 33,257톤으로 결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비축계획량 대비 수매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물량은 33,257톤 대비 45,453톤으로 36.7%인 12,196톤을 초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등어와 오징어 등은 계획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23년 비축계획량 대비 수매량 현황]

(단위: 톤, %)

구분	합계	명태	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계획량(A)	33,257	20,403	2,271	2,559	4,329	2,198	497
수매량(B)	45,453	27,391	2,596	1,064	1,388	220	234
수매율(B/A)	136.7	134.2	114.3	41.6	32.1	10.0	47.1

자료: 해양수산부

고등어는 계획량 2,559톤 대비 41.6%인 1,064톤을 기록하고 있고, 오징어는 32.1%인 1,388톤, 참조기는 10.0%인 220톤, 마른 멸치는 47.1%인 234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2023년 비축사업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계획현액 1,750억원 중 1,279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470억 1,7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집행률이 73.1%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비축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수부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당초	수정					
2023	175,000	175,000	-	175,000	127,983	47,017	73.1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고등어(중대형어), 참조기 등 정부 비축대상 품목의 급격한 생산량 저하로 수매를 하지 못하여 일부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수매량 부족은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 확보가 계획 대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조절시행물량도 채소가격 변동률에 비하여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격상승기에 작동되는 출하장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소농가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사업시행주체인 농협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며 조절시행물량의 집행에 적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5]은 노지채소 등의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농업인[6]에게 면적조절・출하정지・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가격차 보전 또는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즉, 단순히 재배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계약재배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안정 및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배 후 출하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지채소 수급조절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배추와 무・양파・마늘・고추・대파 및 감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생산자가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평년가격 대비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고, 가격상승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운송비, 출하작업비 및 상장수수료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채소가격 안정제 수급조절 내용]

□ 가격하락: 당해 연도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평년 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 보전
- 보전금액: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 거래가격]×개인별 출하물량, 보전구간은 80%에서 60%까지

□ 가격급락: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한 후 포전정리 및 손실보전
- 보전금액: [(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농업인 수취율) - 출하비용]×출하정지 면적

□ 가격 상승: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상승단계에 따라 차등지급
- 보전금액: (주의) 운송비, (경계) 운송비 + 출하작업비, (심각) 운송비 + 출하작업비 + 상장수수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농가 및 이를 통한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가입농가 수를 살펴보면, 2020년의 17,933호에서 2023년에는 14,435호로 감소하고 있으나, 계약재배 농가 수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계약재배 농가 중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농가의 비중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5) 농안기금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생산 유통조절지원사업의 내역사업임.

6) 농안기금의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사업 중 수급안정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품대 등의 융자 지원을 받는 농업인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농가 현황]

(단위: 호, %)

연도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농가(A)	계약재배농가(B)*	체소가격 안정제 가입비율(A/B)
2020	17,933	37,837	47.4
2021	15,945	34,548	46.2
2022	14,454	29,610	48.8
2023	14,435	28,853	50.0

주)채소가격 안정제 대상품목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각 연도별 채소생산량 대비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실적 물량의 비중은 2020년의 15%에서 2023년의 18%로 상승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고,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목표 물량 대비 가입실적 물량의 비중은 2020년의 77.9%에서 해마다 하락하여 2023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는 48.7%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입실적 물량 자체도 62만 2,000톤에서 59만 7,000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7)]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실적 물량 현황]

(단위: 천톤, %)

연도	채소생산량(A)*	가입목표 물량(B)	가입실적 물량(C)	생산량 대비 가입실적 비율(C/A)	가입목표 대비 실적비율(C/B)
2020	3,755	730	569	15	77.9
2021	3,873	863	598	16	69.3
2022	3,763	974	622	17	63.9
2023	3,378	1,227	597	18	48.7

주) 채소가격 안정제 대상품목 평년 생산량의 합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국비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자부담 20%로 설정된 정률보조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할수록 사업주체인 농협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사업물량 확대 유인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는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을 2022년까지 채소생산량의 30%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35%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한편, 2022년과 2023년의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의 실제 조절시행물량은 각각 5만 4,100톤과 6만 100톤으로 채소생산량 대비 각각 1.4%와 1.8%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 대비로는 각각 8.7%와 10.1%로 기록되고 있음.

[채소생산량 및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 대비 조절시행물량 현황]

(단위: 천톤, %)

연도	채소 생산량(A)	채소가격 안정제가입물량(B)	조절시행물량				C/A	C/B
			사전적 면적조절 (출하정지)	가격차 보전	출하 장려	소계(C)		
2022	3,763	622	5.7	44.0	4.4	54.1	1.4	8.7
2023	3,378	597	11.9	45.9	2.3	60.1	1.8	1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 중 실제 수급의무를 이행한 조절시행물량의 비중이 낮음에 따라 동 사업의 2022년과 2023년의 예산실집행실적은 7.6%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 예산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림부						최종사업추진주체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 액	불용 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실집 행액 (B)	이월 액	불용 액	실집 행률 (B/A)
	당초	수정											
2022	45,145	40,443	19,594	60,037	54,598	5,439	54,598	11,482	66,080	5,082	40,666	20,382	7.6
2023	55,190	55,190	-	55,190	22,061	33,129	22,061	40,666	62,727	5,341	32,389	24,997	8.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안정으로 가격차 보전 등 집행수요가 감소하였고,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농안기금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비비성 자금인 동 사업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과 2023년의 채소가격 변동률이 각각 13.2%와 10.2%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채소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채소가격 변동률	15.9	13.4	13.2	1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가격상승의 경우 작동되는 출하장려가 2022년 및 2023년에 각각 4,400톤과 2,300톤에 지나지 않음에 따라 전체조절시행물량 중 비중이 각각 8.1%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실적 물량이 가입목표 물량 대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조절시행물량도 채소가격 변동률에 비하여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격상승기에 작동되는 출하장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 안정제 가입물량 확보를 위하여 채소농가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사업시행주체인 농협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며 조절시행물량의 집행에 적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필수 생계비 경감 분야

(가) 현황

필수 생계비 경감 분야는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인상하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식료품비, 연료비 및 교통비 등을 경감함으로써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소관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이 있음.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5,625억 6,800만원 중 1조 5,582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99.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필수 생계비 경감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계획액)
농식품부	농특	농식품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축산물 할인지원)	108,000	130,500	130,500	-	100.0	108,000
	기타	축산물 수급관리(보조) 등 3개 사업	548,920	555,682	552,387	3,295	99.4	429,664
	소계	-	656,920	686,182	682,887	3,295	99.5	537,664
해수부	농특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수산물상생할인지원)	64,000	158,114	158,094	20	99.9	133,773
국토부	교특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	31,657	42,309	42,263	47	99.9	21,987
문체부	체육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73,096	73,096	73,096	-	100.0	100,799
산자부 등 4개 부처	에특 등	에너지바우처 등 5개 사업	535,234	602,867	601,909	957	99.8	1,092,397
합계		-	1,360,907	1,562,568	1,558,249	4,319	99.7	1,886,6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사업별 검토

첫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물량배분과 관련하여 대형유통경로의 비중이 높으며, 2년 연속 과다한 예비비 배정으로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대형유통경로에 집중된 현상을 개선하고 중소유통경로 배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예비비를 통한 무리한 사업확대를 자제하고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3차 추경에 의하여 추진되었음.

그 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후 2021년 8월의 2차 추경에도 반영되었으며, 2022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되었고 2023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음.

동 사업은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2020년 결산을 통하여 중소유통채널에 쿠폰배분 물량을 확대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받았으며, 2021년 결산에서도 중소유통경로의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받았음.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관련 지적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또는 주요 지적사항
2020년 결산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쿠폰배분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소유통채널에 쿠폰배분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분규모를 개선할 것**
2021년 결산	농축산물 쿠폰의 2021년 **중소유통경로 비중은** 25.0%로 전년(17.6%)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측면이 있고**, 전통시장은 POS 구비가 미비하여 농축산물 쿠폰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e-의안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유통경로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대형유통경로의 비중이 56.0%로 배정되었으나 집행단계에서 60.8%로 확대되었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는 당초 44.0%를 배정받았으나 실제로는 39.2%로 감축 집행되었음.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사용처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배정액	비중	집행액	비중	배정액	비중	집행액	비중
대형 유통경로	59,850	56.0	64,970	60.8	77,441	60.3	77,441	60.3
대형마트	49,100	46.0	54,220	50.7	75,251	58.6	75,251	58.6
대형 온라인몰	10,750	10.1	10,750	10.1	2,190	1.7	2,190	1.7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	46,950	44.0	41,830	39.2	50,999	39.7	50,999	39.7
오프라인	37,350	35.0	33,865	31.7	43,120	33.6	43,120	33.6
온라인몰	9,600	9.0	7,965	7.5	7,879	6.1	7,879	6.1
합계	106,800	100	106,800	100	128,440	100	128,440	100

주) 운영비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2023년에는 배정단계와 실제 집행단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유통경로가 60.3%로 2022년에 비하여 4.3%p 추가 배정받아 집행되었고, 중소유통경로의 배정액은 전년 대비 4.3%p 감축되었으나 집행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하여 집행되었음.[8)]

이는 대형마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이었던 ‘중소유통경로 비중 확대’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유통경로 배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00억원과 225억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각각 81.1%와 61.4%의 실집행률을 기록하는데 그침으로써 각각 56억 5,700만원과 106억 6,900만원의 실집행 단계에서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비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추진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30,000	30,000	-	30,000	24,336	5,657	7	81.1
2023	22,500	22,500	5,657	28,157	17,287	10,669	201	6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 배정 이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사후에 정산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을 배정하여 2년 연속 실집행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예비비 배정 시기가 11월 14일(120억원 배정)과 12월 13일(105억원 배정)로 연말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물량 배분과 관련하여 대형유통경로에 집중된 현상을 개선하고 중소유통경로 배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예비비를 통한 무리한 사업집행을 자제하고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토교통부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사업은 사업수요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그 수혜자가 특정 연령층 및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원이 더욱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비중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4년

8) 해수부의 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대형마트의 비중이 2022년 45.8%에서 2023년 23.1%로 하락하였고, 중소유통경로는 36.2%에서 61.7%로 상승하였음.

5월부터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대상자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므로, 사업 수혜자의 연령별 및 거주지역별 형평성 확보와 저소득층 비중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사업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및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지원 50%와 지방비 50%의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각 연도별 지원인원이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을 초과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지원계획		지원실적	
	계획인원	금액	지원인원	금액
2020	70,000	5,810	163,972	6,332
2021	298,000	17,556	290,474	19,242
2022	440,000	31,080	487,393	30,382
2023	640,000	60,724	1,089,974	81,277

주)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동 사업을 수혜자의 연령층과 거주지역 및 소득 기준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우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비중이 2020년의 54.5%에서 2021년의 44.4%를 거쳐 2022년에는 39.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45.6%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지원실적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연령별 이용 인원	20대 이하	89,376	54.5	128,881	44.4	194,348	39.9	497,113	45.6
	30대	41,739	25.5	91,788	31.6	163,937	33.6	317,284	29.1
	40대	17,440	10.6	34,600	11.9	63,253	13.0	136,973	12.6
	50대	11,476	7.0	24,907	8.6	46,375	9.5	101,808	9.3
	60대 이상	3,941	2.4	10,298	3.5	19,481	4.0	36,796	3.4
	합계	163,972	100.0	290,474	100.0	487,393	100.0	1,089,974	100.0

자료: 국토교통부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금씩 상승하다가 다시 2023년에 하락 반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비중이 2020년에 71.6%로 출발하여 2021년의 70.7%와 2022년의 72.1%를 거쳐 2023년에는 75.9%를 기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수도권의 3배에 이르고 있음.

[수도권 지원실적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지역별 이용 인원	수도권	117,530	71.6	205,319	70.7	351,556	72.1	826,959	75.9
	비수도권	46,442	28.4	85,155	29.3	135,837	27.9	263,015	24.1
	합계	163,972	100.0	290,474	100.0	487,393	100.0	1,089,974	100.0

자료: 국토부

그리고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의 비중이 2020년에는 0.94%를 차지하였고, 2021년에는 1.7%, 2022년 및 2023년에는 각각 2.6%와 2.9%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저소득층 지원실적 현황]

(단위: 명,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전체 이용자 수(A)	163,972	290,474	487,393	1,089,974
저소득 이용자 수(B)	1,542	4,858	12,457	32,018
저소득층 비중(B/A)	0.94	1.7	2.6	2.9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2022년도 기준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이 5.2%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음.

[저소득층 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인구(A)	저소득층 인구			저소득층 비율(B/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	소계(B)	
2022	51,439,038	2,451,458	206,656	2,658,114	5.2

자료: 국가통계포털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업수요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그 수혜자가 특정 연령층 및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원이 더욱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비중이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 이후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전연령층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를 상시 지급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의 수혜 비중이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의 구성 비중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2024년 4월까지만 추진하고 5월부터는 유사한 사업인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Pass)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음.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은 기존 알뜰교통카드사업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보행 또는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적립·지원하던 것과 달리 대중교통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20%~53%)을 적립·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해당 사업대상자로 자동 전환시켜 별도의 회원 재가입이나 카드 재발급 등이 필요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취지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사업수혜자의 연령별 및 거주지역별 형평성 확보와 저소득층 비중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는 그 액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해마다 나타나는 등 그 운영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하여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11호[9]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5~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중 12개월 지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연간 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다 계획보다 지원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지원계획		지원실적		계획 대비 부족 사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0	54,450	24,395	63,468	22,534	ㅇ 계획 대비 실적 차이 발생 사유 1. 지원기간 동안 매달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 차이 발생 2. 지원금액 한도 대비 저렴한 강좌를 수강할 경우 차이 발생
2021	65,000	29,120	71,089	27,589	
2022	75,600	46,571	83,313	39,218	
2023	91,600	73,096	105,101	59,08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기간 동안 매달 강좌를 수강하지 않거나 지원금액 대비 저렴한 강좌를 수강할 경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실집행실적은 예산액 730억 9,600만원 중 590억 8,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8억 3,200만원과 140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10]

9)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0) 2024년에는 1,007억 9,900만원으로 2023년보다 37.9%인 277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체부				최종사업추진주체(지자체)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 액	교부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 액(B)	이월 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0	24,395	24,395	24,395	24,395	24,395	-	24,395	22,534	-	1,861	92.4
2021	29,120	29,120	29,120	29,120	29,120	-	29,120	27,589	-	1,531	94.7
2022	44,983	46,571	46,571	46,571	46,050	-	46,050	39,218	-	6,832	85.2
2023	73,096	73,096	73,096	73,096	73,096	-	73,096	59,089	-	14,007	8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동 사업은 2020년부터 해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89건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부정수급 건수	11	3	2	8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언제든지 스포츠강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는 그 액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해마다 나타나는 등 그 운영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식량안보 강화 분야

(가) 현황

식량안보 강화 분야는 가루쌀산업화 지원 및 밀·콩 생산단지 지원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핵심작물 생산을 촉진하고, 민간업체의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인수 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이차보전 지원함으로써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 농업기업의 현지 곡물 생산 및 원재료 확보 관련 컨설팅 및 현지 생산환경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

융자)사업과 국제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사업, 쌀가루산업화지원사업, 국내채종 기반구축사업 등이 있고, 농촌진흥청 소관으로는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기반조성사업 등이 있음.

2023년도 예산현액 7,835억 6,100만원 중 7,678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98.0%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식량안보 강화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집행률 (B/A)	2024년 예산 (계획액)
농식품부	농지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	3,000	3,000	3,000	-	100.0	3,000
	농지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8,000	8,000	3,966	4,034	49.5	6,700
	양특	쌀가루산업화지원	7,100	7,085	7,085	-	100.0	-
	농특	종자 수매공급	65,956	65,956	65,956	-	100.0	68,744
	기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 4개 사업	600,358	686,920	677,574	9,346	98.6	687,543
	소계	-	684,414	770,961	757,581	13,380	98.3	765,987
농진청	일반	신기술보급(식량자급률향상 모델기반구축) 등 2개 사업	12,600	12,600	10,306	2,294	81.8	7,600
합계		-	697,014	783,561	767,887	15,674	98.0	773,5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사업별 검토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2023년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융자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30% 수준임. 열악한 해외 현지 여건과 국제정세 등 많은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하고 진출부터 정착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농업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농업자원 개발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 확보 및 미래 해외식량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11]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이 2022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4월에 「2023~2027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12]

동 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되고, 보조사업은 인력양성, 정보제공, 환경조사·컨설팅 및 극동 영농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융자의 경우에는 토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영농비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보조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30억원 중 30억원을 집행함으로써 100%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융자의 경우에는 80억원 중 39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3,4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49.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보조, 융자) 예산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보조	3,000	-	3,000	3,000	-	-	100.0
융자	8,000	-	8,000	3,966	-	4,034	49.6
합계	11,000	-	11,000	6,966	-	4,034	6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에 융자사업 모집공고를 7회나 추진하였으나 러·우 전쟁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문의는 많았으나 실제 해외투자는 관망세를 보임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모집공고 시기별 융자신청 및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액 39억 6,600만원 중 30억원은 2022년 10월의 융자신청에 따른 대출금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2023년에 신청 및 대출된 금액은 9억 6,600만원에 불과함.

---

11)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2)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600만톤의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융자사업의 실적 저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융자횟수 상한 3회 제한 및 1분기 대기업 신청 불가와 같은 융자 관련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신고한 업체 중 실제 영업 활동 중인 업체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202개 업체 중 64개 업체가 활동함으로써 31.7%의 활동률을 보인 후 2021년에는 30.1%, 2022년에는 29.8%를 거쳐 2023년에는 222개 업체 중 66개 업체가 활동하여 29.7%의 활동률을 기록함으로써 해마다 조금씩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외농업개발 신고 업체 및 활동 업체 현황]

(단위: 개, %)

연도	2020	2021	2022	2023
신고업체(A)(누적)	202	206	215	222
활동업체(B)	64	62	64	66
활동률(B/A)	31.7	30.1	29.8	29.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영업활동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구체적인 요청사항들을 수렴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소재 진출기업의 곡물터미널 가동 중단으로 인해 2022년부터 곡물확보량이 감소하였고, 인도네시아 지출기업의 오일팜 사업 확대로 비곡물류 확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곡물류의 반입률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마저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수요기업과 해외농업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산업에 기여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농업자원의 확보량 및 국내 반입량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해외자원 확보량이 167만 8,000톤으로 전년 218만 7,000톤 대비 50만 9,000톤(△23.3%)이 감소하였고, 반입량도 전년 25만 7,000톤 대비 15만 9,000톤(△61.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및 반입량 현황]

(단위: 천톤, %)

연도	국내소비량 (A)	확보량 (B)	반입량 (C)	확보량 대비 반입량 비중(C/B)	소비량 대비 확보량 비중(B/A)	소비량 대비 반입량 비중(C/A)
2020	21,921	1,634	109	6.7	7.5	0.5
2021	22,602	2,155	634	29.4	9.5	2.8
2022	22,659	2,187	257	11.8	9.7	1.1
2023	-	1,678	98	5.8	-	-

주) 국내소비량은 양곡연도 기준, 양곡연도별 수요량에서 해외원조량과 수출량 제외, 2023년은 통계 미발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2023년 연해주의 지속적인 강우, 침수 및 습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확보량 대비 반입량의 비중은 2021년의 29.4%를 최고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8%와 5.8%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량 대비 반입량의 비중도 2021년의 2.8%에서 2022년에는 1.1%로 하락하였음.

한편 이와 같은 해외농업자원 확보량을 곡물류와 비곡물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0년에는 밀·콩·옥수수 등 곡물류가 108만 8,000톤으로 전체 중 66.6%를 차지하고 오일팜 및 카사바 등 비곡물류는 54만 6,000톤으로 33.4%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부터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소재 진출기업의 곡물터미널 가동 중단 등으로 그 비중이 완전히 역전되어 2023년에는 곡물류가 52만 1,000톤으로 31.0%를 차지하고 비곡물류가 115만 8,000톤으로 69.0%를 차지하고 있음.

[곡물류와 비곡물류의 확보량 대비 반입량 현황]

(단위: 천톤, %)

연도	구분	확보량	반입량	반입률
2020	곡물류	1,088	105	9.7
	비곡물류	546	4	0.7
	소계	1,634	109	6.7
2021	곡물류	1,252	632	50.5
	비곡물류	903	2	0.2
	소계	2,155	634	29.4
2022	곡물류	723	256	35.4
	비곡물류	1,464	0.2	0.01
	소계	2,187	256.2	11.7
2023	곡물류	521	98	18.8
	비곡물류	1,158	0.5	0.04
	소계	1,678	98	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최근들어 동 사업을 통한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중 곡물류는 감소하고 비곡물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곡물류의 국내반입량 비중은 2020년에는 0.7%, 2021년에는 0.2%, 2022년에는 0.01%, 2023년에는 0.04%를 기록하는 등 너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동 사업이 단순히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을 해외에서 소진하지 않고 국내농업 관련 업체들의 공급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내수요기업과 해외농업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곡물망 확보 융자지원사업은 2023년 대출미집행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등 사업성과가 저조하므로, 민간업체의 사업추진 상황 및 국제여건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식품 및 사료업체와의 협의체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수요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곡물망 확보 투자지원 사업은 국제곡물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필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1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12억 6,500만원의 이차보전은 일반적인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5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로,[14)]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분 상환으로 총 15년간 이차보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에는 아무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제곡물망 확보 투자지원사업 이차보전 대출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예산(이차보전액)	평잔	대출실행액
농업자금 이차보전	국제곡물망확보 투자지원	1,265	-	-

자료: 농식품부

13) 농특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1038-301):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제곡물망 확보 지원이 신규로 포함됨.

14) [2023년 국제곡물망 확보 투자지원사업 이차보전예산액 및 신규대출 가능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기준금리(A)	대출금리(B)	이차보전금리(A-B)	이차보전예산액	신규대출 가능 규모
2023	4.03	1.5	2.53	1,265	5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업체가 해외투자 매물 확보·현지 실사·해외업체와의 협약 및 투자심사 등 사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신청이 지연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4월부터 공모를 한 달간 실시하였으나 신청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공모 기간을 한 달씩 계속 연장한 끝에 12월 8일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사업평가 등 심사를 거쳐 12월 22일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체의 내부사정을 감안하여 대출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경영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6월 말에 대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가 면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신청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업체의 경영여건 변경 등으로 예산액도 전혀 집행되지 못하는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초래되었음.

이는 2011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도로 국제곡물유통망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국제시장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부족과 참여업체의 유동성 위기 등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임.[15)]

동 사업은 당시와는 달리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초년도인 2023년에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6월 말에 해당 업체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전수요조사 불충분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민간업체의 사업추진 상황 및 국제여건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식품 및 사료업체와의 협의체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수요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4년에는 동 사업 예산액이 1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수요조사 및 홍보를 위하여 민간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기업의 국제곡물 사업 현황 파악 및 국제곡물망 확보사업 투자계획 조사 등을 6월까지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는 7월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모집공고가 2023년의 4월보다 3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이 경우 모집공고 후 선정기간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기인 8월에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2024

15) 2011년 농수산식품공사(aT)와 민간업체의 컨소시엄으로 aT Grain Company를 설립하여 미국 등에서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사업을 철수하였음.

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가능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여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없으므로 사전준비를 보다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공모를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10월 말까지 제품개발 및 내부 소비자 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1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기한 내에 개발하여 출시한 업체는 7개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도 5개에 이르고 있는 등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쌀가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가루 사용을 희망하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 대체 프리미업 제품 등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쌀 재배면적 감소보다 소비의 감소 속도가 빠른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기존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가 유리한 가루쌀(분질미)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

이에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재배 확대계획에 따라 2022년의 500톤에 비하여 2023년에 20배로 확대된 가루쌀 생산량 10,000톤의 원활한 소비를 촉진하고, 가루쌀 가공제품의 시장성을 검증 및 제고함으로써 관련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신규 사업임.

[가루쌀 재배면적, 생산량 및 소비량 계획 현황]

(단위: ha, 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배면적	100	2,000	10,000	15,800	42,100	42,100
생산량	500	10,000	50,000	75,000	200,000	200,000
소비량	125	500	10,000	50,000	75,000	200,000

자료: 농식품부

동 사업은 사업운영비 1억원 외에 15개 업체를 상대로 업체당 제품개발비 2억원 중 80%인 1억 6,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실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25억원 중 23억 2,200만원을 실집행하고 1억 7,8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92.9%의 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2023년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유통공사)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2,500	2,500	2,500	-	2,500	2,322	-	178	92.9

자료: 농식품부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말까지 제품 개발 및 내부 소비자 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15개의 쌀가공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한 업체는 7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11월과 12월에 출시한 업체도 3개에 불과하여 2023년 내에 개발하여 출시를 완료한 업체 수가 10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16)]

[2023년도 쌀가루 산업화 지원업체 제품출시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원 업체	10월 내 출시 업체	11월 및 12월 출시 업체	연내 미출시 업체
2023년	15	7	3	5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10월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남은 2개월을 개발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2024년의 사업확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출시 완료한 업체의 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개발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한 쌀가공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은 2년 연속 예산집행실적 및 실지원비율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므로, 국내 종자업체를 상대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재배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2023년 내에 출시하지 못한 5개 업체 중에서 2024년 5월과 6월에 각각 1개 업체씩 출시하였고, 7월에 출시 예정인 업체가 1개, 나머지 2개 업체는 미출시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한 국내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채소품목별 종자 수매단가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채종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의 100%에서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일부 반등하였으나 그 전 4년간의 평균인 88.1%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내채종기반구축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3,363	-	3,363	3,363	-	-	100
2020	4,163	-	4,163	4,090	-	73	98.2
2021	5,485	-	5,485	4,509	-	976	82.2
2022	7,362	-	7,362	5,298	-	2,064	72.0
2023	7,362	△400	6,962	5,563	-	1,399	79.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의 채종계획(신청)량 대비 실지원물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94.6%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미만의 실지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에는 72.4%로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국내채종 기반구축사업 채종물량 현황]

(단위: 톤, %)

연도	채종계획(신청)량(A)	업체수매량	실지원물량(B)	실지원비율(B/A)
2019	228.9	256.6	178.0	77.8
2020	239.6	221.0	183.0	76.4
2021	199.5	197.8	188.7	94.6
2022	200.8	185.1	170.1	84.7
2023	269.2	194.8	194.8	72.4

주)채종계획(신청)량은 종자업체의 채종지원 신청량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충남 및 전남 등 일부 채종지역의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채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예산집행률과 실지원비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예산집행률이 98% 이상 기록되면서 실지원비율이 각각 77.8%와 76.4%로 나타남에 따라 동 사

업의 예산액에 비하여 사업수요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2021년에는 예산액이 증가하면서 집행률이 하락하고 실지원비율이 94.6%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증가 대비 사업수요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산집행률과 실지원비율이 부진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으며, 채종농가의 수도 2019년의 1,080호에서 2022년 1,219호로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1,128호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채종 기반구축사업 채종농가 현황]

(단위: 호)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종농가	1,080	1,051	1,148	1,219	1,128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예산집행실적과 실지원비율이 동시에 부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내 종자업체를 상대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재배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